

2013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3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발 간 사

2013년 한 해 동안의 언론중재위원회 활동내역과 성과를 담은 ‘언론조정
중재 · 시정권고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13년에 2,433건의 조정 및 190건의 중재사건을 처리
하였고, 289건의 기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조정 처리건수는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2,400건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조정성공률 73.4%, 본안성공률
82.5%, 신청효율은 77.6% 등 위원회가 피해구제척도로 파악하고 있는 모든
지표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조정성공률 등 지표의 상승은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언론사들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커진 기대와
이에 부응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원들이 기울인 노력에 기인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5년 시작된 중재제도는 도입 초기 그 이용이 미약했으나, 2009년
부터 위원회가 중재제도 활성화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한 결과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2013년 중재사건은 전년 대비 30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제 중재제도는 사실관계가 명백하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요구되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사건을 효과
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고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금전배상 인용률은 지난 3년간 6% 수준에서 11%로 높아져 두 배 가량 상승했습니다. 주로 손해배상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진 증거조사도 36건으로 전년 대비 13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권리의식 향상으로 신청인들이 정정보도뿐만 아니라 금전배상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졌고, 위원회 차원에서도 손해배상 전담 중재부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보입니다.

아울러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는 총 740여개 매체를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289건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위원회가 하고 있는 시정권고는 조정·중재 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보도에 의한 개인적, 사회적 법익 침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담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을 e-book 형태로 발간하였습니다. 2013년에 처리한 사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50건을 엄선하여 신청내용과 처리결과를 상세히 수록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목록을 별도로 실어 연구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위원회에 신청된 전체사건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이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 및 언론분쟁의 해결절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와 단체, 언론계, 법조계 등에 유익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4월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차 례

제 1 부	언론조정 · 중재 및 시정권고 현황	17

제 2 부	주요 언론조정 · 중재 사례	77

/ 제 1 장 / 명예훼손 사례

사 례 1	국내 한 제약회사가 자사의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신고한 전직 직원을 협박했다고 보도하면서 신고자인 신청인의 신원과 사생활을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이○○ 對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2013서울조정36 손배청구) 78	78
사 례 2	경찰관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권자를 협박하는 등 금전비리 혐의로 해임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정○○ 對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2013서울조정119 · 120 추후 · 손배청구) 81	81
사 례 3	신청인 회사가 산업폐기물인 절삭유 등이 함유된 알루미늄 부산물을 그대로 방치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주식회사 對 주식회사 경남도민신문 (2013경남조정1 · 2, 2013경남조정3 · 4(병합) 각 정정 · 손배청구) 85	85
사 례 4	전력설비 납품과 관련, 신청인 회사가 발전회사 관계자를 영입해 로비를 벌였고, 100억 원 규모의 입찰에 유착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주식회사 ○○기업 對 주식회사 한국원자력신문사 (2013경기조정17 · 18 정정 · 손배청구) 92	92
사 례 5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 담임교사인 신청인이 사건을 방치하는 등 학교 측의 대처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김○○ 對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2013충북조정5 정정청구) 97	97

사 례 6	농림수산물부가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의 신청자격을 대규모 농업회사로 제한했고, 선정된 업체에 유리온실 자리를 30년간 공짜로 빌려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농림수산물식품부 對 한국방송공사 (2013대전조정9 정정청구) 101
사 례 7	서초구청이 구청장 차량 주차안내를 늦게 한 청원경찰에게 24시간 동안 징벌성 옥외근무를 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서초구청 對 주식회사 채널에이 (2013서울조정263 정정청구) 104
사 례 8	국방부장관 후보자인 신청인이 사단장 재직 시절 부대공사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김○○ 對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2013서울조정377, 2013서울조정378(병합) 각 정정청구) 108
사 례 9	인터넷 기차여행 동호회 카페인 신청인 단체가 한국철도공사 지역본부에 대해 무리한 지원요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지주단체 對 (주)아주뉴스코퍼레이션 (2013서울중재36·37 정정·손배청구) 114
사 례 10	서강대학교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경의선 서강역의 명칭을 서강대역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對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2013서울중재42·43 정정·손배청구) 120
사 례 11	신청인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악성 해킹프로그램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주)○○○○○○○○ 對 주식회사 뉴시스 (2013서울중재48·49 정정·반론청구) 124
사 례 12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부 장관에게 “김정은에게 정중한 예의를 갖추라”고 발언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심재권 對 주식회사 조선방송 (2013서울조정469, 2013서울조정471(병합) 각 정정청구) 128
사 례 13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연구비 지원과 실적 과장을 위해 자기논문을 표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손○○ 對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2013서울조정581 반론청구) 133

사 례 14	산양분유업체들이 산양분유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산양유 성분량을 허위로 광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주) 對 1. 한국방송공사, 2.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 (2013서울조정583·584, 2013서울조정585·586(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138
사 례 15	신청인 회사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고화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납품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주)○○○○○○○ 對 주식회사 연합뉴스 (2013서울조정648·649 정정·손배청구) 146
사 례 16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무자격업체에 잠수용역을 맡겨 정부의 바다숲 조성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對 한국방송공사 (2013부산조정20·21, 2013부산조정22·23(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150
사 례 17	한국은행이 국내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000여억 원을 고스란히 날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은행 對 주식회사 조선뉴스프레스 (2013서울조정885·886, 2013서울조정887·888(병합) 각 정정·반론청구) 156
사 례 18	교사인 신청인이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교육감에게 존경심을 표하고자 허리를 굽혀 악수를 청했다는 내용을 사진과 함께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김○○ 對 주식회사 아시아뉴스통신 (2013경기조정기·72 정정·손배청구) 166
사 례 19	성남시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조폭수준의 공권력 행사라고 보도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성남시청 對 주식회사 경제투데이 (2013서울조정921·922 정정·손배청구) ... 169
사 례 20	사회적 기업인 딜○○○가 최초로 보청기 보험을 만들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보청기협회 對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비즈니스네트워크 (2013서울조정925 정정청구) 173
사 례 21	신청인 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유가보조금을 임원들의 개인 출·퇴근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여객자동차(주) 對 주식회사 일간전주 (2013전북조정20, 2013전북조정21(병합) 각 반론청구) 179

사 레 22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한 사건이 ‘부산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신청인의 어린이집이 피해를 입었다. 김○○ 對 주식회사 연합뉴스 (2013서울조정953·954 정정·손배청구) 183
사 레 23	‘선박왕’으로 불리는 신청인이 홍콩에 비밀계좌를 두고 재산을 은닉하다가 발각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권 ○ 對 주식회사 매일경제신문사 (2013서울조정995·996 정정·손배청구) 187
사 레 24	출연한 부부 중 가짜부부를 찾는 예능프로그램에서 신청인 1의 남편(신청인 2의 아버지)과 내연녀를 진짜 부부라고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1. 조○○, 2. 이○○ 對 주식회사 문화방송 (2013서울조정1032·1033 정정·손배청구) 191
사 레 25	로스쿨 학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부산시 7급 공무원 채용 전형 지원자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고, 20여개의 옹호댓글이 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對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2013서울조정1037 반론청구) 196
사 레 26	국회의장의 차량 주유비가 사적으로 사용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국회사무처 對 주식회사 일요시사 (2013서울조정1183, 2013서울조정1207(병합) 각 반론청구) 200
사 레 27	신청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 및 고위 공무원에게 고가의 명절선물 또는 영전 축하금을 보냈으며 당사자가 수령사실을 시인하였고 매년 명절 선물비용으로 수익 원대를 지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 (주)○○○, 2. 홍○○ 對 주식회사 시사저널사 (2013서울조정1192·1193 정정·손배청구) 208
사 레 28	신청인 회사의 영유아용 물티슈 제품에서 호흡기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진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주)○○○ ○○ ○○○ 對 주식회사 문화일보 (2013서울조정1194, 2013서울조정1195(병합) 각 정정청구) 213
사 레 29	신청인 사(史)학회가 집필을 주도한 역사교과서가 5·16은 혁명, 5·18은 폭동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한국○○사학회 對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2013서울조정1322 정정청구) 219

사 례 30 신청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아들에게 상한 음식을 먹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 對 (주)호남프레스 (2013광주조정48·49, 2013광주조정50·51(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222

사 례 3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세계공항서비스평가 평가 1위를 지키기 위해 평가 대상 항공편 승객들에게 보안검색에 대한 특혜를 주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對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2013서울조정1477 정정청구) 231

사 례 32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대표 발의한 ‘4대 중독법안’이 게임중독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게임업체에 떠넘기는 법안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신의진 對 주식회사 중앙게임즈 (2013서울조정1604 정정청구) 238

사 례 33 신청인 학교가 일반전형에서 떨어진 학생들 중 부유층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 전·편입학 전형에 지원하라고 권유했으며, 신청인 학교의 일부 교사가 사교육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對 주식회사 인터넷 한국일보 (2013서울조정1607, 2013서울조정1614(병합) 각 정정청구) 244

사 례 34 국립현대미술관이 청와대의 압력으로 특정 화백들의 작품을 서울관 개관전에서 제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국립현대미술관 對 주식회사 참언론 (2013서울조정1733 정정청구) 249

사 례 35 젊은 세대의 新소비풍속도를 전하면서, 신청인들이 월세를 살면서 빚을 내어 벤츠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1. 최○○, 2. 이○○ 對 주식회사 문화방송 (2013서울조정1766·1767 정정·손배청구) 253

/ 제 2 장 / 초상권 침해 사례

사 례 36 절도사건의 피해자인 신청인의 초상, 성명 등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빛○○○ ○○○○ 對 (주)케이엠에이치 (2013서울조정48 손배청구) 258

사 례 37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범죄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들의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1. 황○○ 외 3인, 2. 김○○ 외 4인 對 1.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2.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2013서울조정78·79, 2013서울조정80·81(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264

사 례 38

온라인 도박 중독 폐해를 보도하면서 동의 없이 신청인의 초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김○○ 對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2013서울조정413, 2013서울조정414(병합)
각 손배청구) 269

사 례 39

신청인의 촬영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고속도로 직원으로 근무하는 신청인의 초상과 성명을 임의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이○○ 對 주식회사 이투데이 (2013서울조정465 손배청구) 272

사 례 40

영화 홍보 차 내한한 미국 영화배우 윌 스미스와 사진을 찍고 있던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김○○ 對 (주)파이미디어 (2013서울조정592 손배청구) 274

사 례 41

촬영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팍빙수를 먹고 있는 신청인들의 초상을 임의로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최○○ 외 2인 對 제이씨엔엘산중양방송주식회사 (2013부산조정53 손배청구) ... 276

사 례 42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행에 관해 보도하면서 마트에서 사식 중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최○○ 對 주식회사 삼척문화방송 (2013강원조정20 손배청구) 278

사 례 43

소아암 치료법에 관해 보도하면서 환자인 신청인 자녀 및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천○○ 對 주식회사 채널에이 (2013서울조정1728 손배청구) 280

/ 제 3 장 / 음성권 침해 사례

- 사 례 44** 시중에 판매되는 원액기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쇼호스트인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무단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이○○ 對 1. 주식회사 문화방송, 2. 주식회사 아이엠비씨 (2013서울조정1, 2013서울조정2(병합) 각 손배청구) 283

/ 제 4 장 / 성명권 침해 사례

- 사 례 45** 대학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건을 다루면서, 이 사건과 무관한 해당 대학의 재학생인 신청인의 실명을 피해자의 가명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김○○ 對 주식회사 대전문화방송 (2013대전조정22 손배청구) 286
- 사 례 46** 신청인들이 부동산 사기로 거액을 강탈했으나 경찰의 부실수사로 무혐의 송치됐다고 잘못 보도하면서 신청인들의 성명을 그대로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김○○ 외 3인 對 주식회사 강원도민일보 (2013강원조정12·13, 2013강원조정14·15(병합) 각 반론·손배청구) 289

/ 제 5 장 / 사생활 침해 사례

- 사 례 47** 취업 때문에 대학 졸업을 미루는 실태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개인신상정보를 동의 없이 방송에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김○○ 對 주식회사 문화방송 (2013서울조정466 손배청구) 295
- 사 례 48** 트위터 상에서 특정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신청인의 트위터 아이디 등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강○○ 對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2013서울조정609 손배청구) 298

/ 제 6 장 / 재산상 손해 사례

사 례 49

신청인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강화마루가 층간 소음 차단에 효과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주) 對 한국방송공사 (2013서울조정481 정정청구) 303

사 례 50

유흥업소 여종업원 살인사건에 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간판이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다.

이○○ 對 (주)이채널 (2013서울조정1367 손해청구) 307

제 3 부

주요 언론조정·중재 사례 색인

309

제 4 부

주요 시정권고 사례

313

제 5 부

언론조정·중재사건 전체 목록

333



제 1 부

언론조정 · 중재 및 시정권고 현황

조정사건 4년 연속 2,000건 상회

위원회는 2013년 한 해 동안 2,433건의 조정사건을 처리하였다. 2012년과 2011년에는 각각 2,401건, 2,124건이었다. 또한 조정성공률 73.4%, 본안성공률 82.5%, 신청효율 77.6%를 기록했다.

중재사건 전년대비 약 3.2배 증가

2013년 중재절차를 통해 처리한 사건수가 2012년 59건에서 2013년 19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추후보도청구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안이 명료한 사건, 언론사 스스로 오보를 인정한 사건 등 양자 간 다툼의 여지가 적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서로의 궁극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인터넷매체에 대한 청구 66.2% 차지

2013년의 경우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에 대한 조정 청구 비율은 66.2%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체 청구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피해구제보도문 개선효과 유지

위원회는 피해구제보도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11년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소위원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정정보도문 등 작성에 관한 세칙’을 제정하였으며 2012년부터 이를 심리에 적용하면서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 2013년 서울중재부의 조정성립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이행된 피해구제보도문을 분석한 결과 그 실효성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제목이 기사의 핵심내용을 추출하여 ‘~ 관련 정정보도문’, ‘~ 관련 바로 잡습니다’ 또는 ‘~, 사실 아닌 것으로 밝혀져’ 등과 같이 구체적인 형태로 작성되었는데, 이러한 경우가 98.3%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피해구제보도문을 1단락이 아닌 2단락 이상으로 작성하여 문제가 되었던 기사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이에 대해 정정이나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독자들이 해당 사안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90.1%의 이행률을 나타냈다. 셋째, 피해구제보도문의 말미에는 가급적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피해구제보도문이 위원회의 조정 결과임을 알리도록 권유하였으며, 이러한 경우가 97.8%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 피해구제보도문 1 [정정보도]

'쌀 직불금 부정수령' 관련 정정

지난 9월 3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줄줄 새는 쌀 직불금」 제목의 보도에서 "쌀 직불금 부정 수령자 명단에 농촌진흥청 등 정부 공무원과 공사 직원들이 줄줄이 올라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쌀 직불금 부정수령자 명단에 정부 공무원과 공사 직원들이 오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해구제보도문 2 [반론보도]

'국회의장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일요시사〉는 지난 7월29일자 정치면 '국회의장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 추적' 기사에서 '강창희 의장은 취임 후 잦은 해외출장으로 국내에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빈도수도 무척 적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유비로 지급받은 금액 중 상당액을 남겨 사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

고, 이 경우 2년간 2160만원의 혈세를 횡령하게 되는 셈'이라고 보도하였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현재 국회 내 모든 전용차량에 대한 주유비를 정액지급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정액지급방식은 일일이 정산하기 어려운 성격의 경비에 대해서 인정되는 예산집행 방식의 한 방식"이라고 밝혔습

니다.

아울러 사무처는 "정액지급방식 제도 하에서는 주유비를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균등지급하되, 차량 이용자의 일정 등에 따라 월별로 발생하는 과부족액을 정산하지 않게 되므로, 특정기간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주유비를 근거로 '사적 유용' '착복' 내지 '횡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관계 및 예산집행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손해배상 전담중재부 운용

위원회는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심리를 내실화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12년 9월 24일부터 손해배상사건 전담 중재부(서울제8중재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증가로 인해 2013년 8월 26일부터는 추가로 손해배상사건 전담 중재부(서울제6중재부)를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손해배상사건 조정액 평균 약 250만 원

2013년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은 평균 6,000만 원이었으며, 중재부의 조정액은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었는데, 중앙액은 175만 원이었고, 평균액은 약 250만 원으로 2012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사건에 비해 조정액이 높지 않은 것은 단순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이 많고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에도 침해의 수위가 비교적 낮은 사건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증거조사 건수 전년 대비 13건 증가

2013년 증거조사 건수는 36건(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13건 증가했고, 그 중 사실조회가 32건을 차지해 전체 증거조사 건수의 88.9%를 차지했다. 심리 전에 신속히 이루어진 증거조사는 손해배상 여부와 금액 산정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조정 · 중재심리 지원 전문가 자문단 구성

위원회는 2013년 12월 언론조정 · 중재신청 사건 심리와 관련하여 전문가 견해를 들어 조정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조정 · 중재심리 지원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다. 의료, 환경, IT · 컴퓨터 등 총 9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중재부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당사자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네이버, 신청건수 78건으로 가장 많아

2013년 접수 · 처리된 사건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2012년에 이어 네이버가 78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2년 118건과 비교해 40건(33.9%)이 감소하였다. 방송매체 중에서는

2012년에 이어 KBS-1·2TV와 KBS지역네트워크를 포함해 한국방송공사가 62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 수를 기록했다. 중앙일간지 중에는 동아일보가 31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 수를 보였다.

시정권고소위원회, 자살 관련 보도 등 총 289건의 시정권고 결정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13년 한 해 동안 각종 법익을 침해한 언론보도 289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2012년 259건과 비교해 30건(11.6%)이 증가했다. 선정적인 사진이나 자극적인 내용으로 독자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주는 보도에 시정을 권고한 사례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원회는 매 분기·반기별로 심의대상 전체 매체에 시정권고 현황을 고지하는 한편, 동일 법익 침해를 반복하는 언론사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는 공한을 보내고 있다. 또한 검찰과 경찰 등 특정 법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기관에는 보도자료 작성 시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저촉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해 보도에 의한 개인적·사회적 법익 침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 1 장

조정사건 접수현황

1. 연도별 현황

2013년 한 해 동안 2,433건의 조정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했다. 이는 전년 2,401건 대비 32건 (1.3%)이 증가한 것이다. 위원회 조정신청 처리 건수는 2010년 2,205건을 시작으로 4년 연속 2,000건을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4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표 1-1] 최근 5년간 조정사건 접수현황

(2009. 1. 1. ~ 2013. 12. 31.)

구 분 \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청 구 건 수	1,573	2,205	2,124	2,401	2,433
전년대비 증감	619	632	-81	277	32

2. 청구권별 현황

2013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2,433건의 청구권별 현황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가 1,195건(49.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손해배상청구 784건(32.2%), 반론보도청구 274건(11.3%), 추후보도청구 180건(7.4%) 순이었다. 지난 3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정정보도가 전체 청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 정도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이는 언론피해 구제의 핵심적인 영역이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한 정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반론 보도만을 독자적으로 청구하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손해배상청구는 대략 30% 선을 유지하고 있다. 추후보도청구의 경우 180건으로 전년도 69건에 비해 160%까지나 증가했다.

[표 1-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2011. 1. 1. ~ 2013. 12. 31.)

연 도 청 구 명	2011	2012	2013	합 계
정 정	1,004 (47.2)	1,223 (50.9)	1,195 (49.1)	3,422 (49.2)
반 론	168 (8.0)	315 (13.1)	274 (11.3)	757 (10.9)
추 후	148 (7.0)	69 (2.9)	180 (7.4)	397 (5.7)
손 배	804 (37.8)	794 (33.1)	784 (32.2)	2,382 (34.2)
계	2,124 (100)	2,401 (100)	2,433 (100)	6,958 (100)

* () 안의 숫자는 %

3.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13년도에는 전체 조정청구 중 개인에 의한 청구가 1,395건(57.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기업체가 383건(15.7%)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일반단체 255건(10.5%), 지자체 103건(4.2%), 공공단체 85건(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2012년 76건(3.2%)에서 2013년 103건(4.2%)으로 늘어났으며 교육기관은 2012년도에 27건(1.2%)에 지나지 않았지만 2013년에는 81건(3.3%)으로 세 배 가량 늘어났다.

[표 1-3]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11. 1. 1. ~ 2013. 12. 31.)

연 도 신 청 인	2011	2012	2013	합 계
개 인	1,283 (60.5)	1,393 (58.0)	1,395 (57.3)	4,071 (58.5)
국가기관	78 (3.7)	96 (4.0)	36 (1.5)	210 (3.0)
지 자 체	71 (3.3)	76 (3.2)	103 (4.2)	250 (3.6)
공공단체	55 (2.6)	92 (3.8)	85 (3.5)	232 (3.3)

연 도 신 청 인	2011	2012	2013	합 계
일반단체	252 (11.9)	310 (12.9)	255 (10.5)	817 (11.7)
종교단체	19 (0.9)	16 (0.7)	31 (1.3)	66 (0.9)
기 업 체	305 (14.3)	306 (12.7)	383 (15.7)	994 (14.3)
언 론 사	31 (1.4)	85 (3.5)	64 (2.7)	180 (2.7)
교육기관	30 (1.4)	27 (1.2)	81 (3.3)	138 (2.0)
계	2,124 (100)	2,401 (100)	2,433 (100)	6,958 (100)

* () 안의 숫자는 %

4. 매체 유형별 현황

매체 유형별 청구건수는 인터넷신문 1,130건(46.4%), 일간신문 380건(15.6%), 인터넷뉴스 서비스 369건(15.2%), 방송 288건(11.8%), 주간신문 142건(5.9%), 뉴스통신 112건(4.6%), 잡지 10건(0.4%), 기타 2건(0.1%) 순이었다. 이처럼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종이신문에 대한 조정신청이 감소한 것은 독자들의 뉴스 소비 행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나타내며,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구제도 오프라인 매체의 보도에 비해 인터넷에 기반을 둔 온라인 매체의 보도에서 더욱더 요구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신문 외에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까지 온라인 매체로 포함시켜 본다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인터넷에 기반을 둔 매체 관련 조정신청 건수는 모두 1,611건으로 전체의 66.2%에 이른다. 이에 반해 인쇄 매체에 대한 조정신청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일간신문을 상대로 한 조정신청은 2012년 496건에서 380건으로 116건(23.4%)이 감소했으며 주간신문과 잡지를 상대로 조정신청 역시 각각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표 1-4]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현황

(2011. 1. 1. ~ 2013. 12. 31.)

연 도		2011	2012	2013	합 계
매체유형	신문	405 (19.1)	496 (20.7)	380 (15.6)	1,281 (18.4)
	주간신문	181 (8.5)	169 (7.0)	142 (5.9)	492 (7.0)
방 송		250 (11.8)	243 (10.0)	288 (11.8)	781 (11.2)
잡 지		9 (0.4)	11 (0.5)	10 (0.4)	30 (0.4)
뉴스통신		62 (2.9)	83 (3.5)	112 (4.6)	257 (3.7)
인터넷신문		705 (33.2)	945 (39.4)	1,130 (46.4)	2,780 (40.0)
인터넷뉴스서비스		510 (24.0)	454 (18.9)	369 (15.2)	1,333 (19.2)
기 타		2 (0.1)		2 (0.1)	4 (0.1)
계		2,124 (100)	2,401 (100)	2,433 (100)	6,958 (100)

* () 안의 숫자는 %

[표 1-5] 2013년도 매체 유형별 현황

(2013. 1. 1. ~ 2013. 12. 31.)

매체 유형 청구 건수	신 문			방 송				잡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	기타
	중앙 일간지	지방 일간지	주간 신문	지상파		종합 유선 방송	종합 편성 채널					
				TV	라디오							
2,433	208	172	142	188		38	62	10	112	1,130	369	2
(100)	(8.5)	(7.1)	(5.9)	(7.7)		(1.6)	(2.5)	(0.4)	(4.6)	(46.4)	(15.2)	(0.1)

* () 안의 숫자는 %

5. 침해 유형별 현황

2013년 조정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가 2,252건으로 나타나 전체의 92.6%를 차지했으며 초상권 침해는 82건(3.4%), 사생활 침해 및 성명권 침해는 각각 45건(1.8%)과 23건(0.9%)을 차지했다. 2012년도에 들어 명예훼손 외에 초상권, 성명권, 사생활 침해에 대한 청구가 대폭 늘어나 다양한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3년도에는 다시 명예훼손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표 1-6]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2011. 1. 1. ~ 2013. 12. 31.)

연 도 침해유형	2011	2012	2013	합 계
명예훼손	2,030 (95.6)	2,110 (87.9)	2,252 (92.6)	6,392 (91.9)
초상권 침해	39 (1.8)	128 (5.3)	82 (3.4)	249 (3.6)
음성권 침해	-	8 (0.3)	5 (0.2)	13 (0.2)
성명권 침해	22 (1.0)	43 (1.8)	23 (0.9)	88 (1.3)
사생활 침해	24 (1.1)	101 (4.2)	45 (1.8)	170 (2.4)
재산상 손해	8 (0.4)	10 (0.4)	26 (1.1)	44 (0.6)
기 타	1 (0.1)	1 (0.1)	-	2 (0.0)
계	2,124 (100)	2,401 (100)	2,433 (100)	6,958 (100)

* () 안의 숫자는 %

* 2011년부터 침해유형 중 기존 신용훼손은 재산상 손해로 변경됨

6. 기타 인격권 침해 세부분류

침해유형 중 명예훼손과 재산상 손해, 기타 사항을 제외한 인격권(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사생활 등) 침해를 원인으로 청구된 155건을 그 원인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초상이나 음성을 공표한 경우가 149건(96.1%)으로 가장 많았고,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서 보도한 경우는 2건(1.3%),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으로 이용한 경우가 3건(1.9%)으로 조사되었다.

[표 1-7] 기타 인격권 침해 세부분류

(2013. 1. 1. ~ 2013. 12. 31.)

기타 인격권 침해 세부분류	청구건수
동의 없이 무단공표	149(96.1)
동의를 범위를 벗어난 보도	2(1.3)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으로 이용	3(1.9)
기 타	1(0.7)
계	155(100)

* () 안의 숫자는 %

7. 조정대상보도의 분야별 현황

2013년 접수 · 처리된 사건을 조정대상보도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사건 · 사고 · 고발 등을 다룬 사회분야가 1,735건으로 전체의 71.3%를 차지했고, 정치 · 선거 분야가 196건으로 8.0%를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 · 산업분야 153건(6.3%), 스포츠 · 연예분야 97건(4.0%), 교육분야가 66건(2.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8] 조정대상보도의 분야별 현황

(2013. 1. 1. ~ 2013. 12. 31.)

조정대상기사 분야	청구건수	조정대상기사 분야	청구건수
정치 · 선거	196 (8.0)	환 경	9 (0.4)
국방 · 외교	13 (0.5)	종 교	50 (2.1)
경제 · 산업	153 (6.3)	노 동	15 (0.6)
사회(사건/사고/고발)	1,735 (71.3)	교 육	66 (2.7)
보건 · 복지	36 (1.5)	미디어	49 (2.0)
스포츠 · 연예	97 (4.0)	기 타	5 (0.2)
레저 · 생활	9 (0.4)	계	2,433 (100)

* () 안의 숫자는 %

8. 조정대상보도의 유형별 현황

2013년 조정사건 중 방송 및 방송내용을 제공 또는 매개한 포털을 제외한 조정대상기사를 보도의 유형별로 살펴 본 결과, 스트레이트 기사가 1,658건으로 83.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탐사·심층·기획보도가 174건(8.7%), 오피니언 56건(2.7%) 순이었다.

[표 1-9] 조정대상보도의 유형별 현황

(2013. 1. 1. ~ 2013. 12. 31.)

조정대상기사 유형	청구건수	조정대상기사 유형	청구건수
스트레이트	1,658 (83.0)	만화·만평	2 (0.1)
사 설	31 (1.6)	사 진	30 (1.5)
오피니언	56 (2.7)	가 십	12 (0.6)
인터뷰	21 (1.1)	기 타	13 (0.7)
탐사·심층·기획보도	174 (8.7)	계	1,997 (100)

* () 안의 숫자는 %

*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은 제외됨

방송 및 방송관련 포털 보도를 장르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뉴스관련 보도가 283건으로 64.9%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시사고발 관련 프로그램이 71건(16.3%), 교양정보 프로그램이 70건(16.1%)으로 뒤를 이었다.

[표 1-10] 조정대상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의 유형별 현황

(2013. 1. 1. ~ 2013. 12. 31.)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 유형	청구건수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 유형	청구건수
뉴 스	283 (64.9)	연예·스포츠	8 (1.8)
시사고발	71 (16.3)	다큐멘터리	4 (0.9)
교양정보	70 (16.1)	계	436 (100)

* () 안의 숫자는 %

9. 중재부별 현황

2013년 중재부별 접수 현황을 보면, 1,806건을 접수 · 처리한 서울중재부가 전체의 74.2%를 차지했고, 이어 경기중재부 195건(8.0%), 광주중재부 78건(3.2%), 대전중재부 75건(3.1%) 등의 순을 보였다. 조정신청 사건의 대부분이 언론사가 집중된 서울에서 접수 · 처리되는 것은 예년과 다름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한편 지역중재부 중에서는 경기중재부에서 접수 · 처리한 사건이 전년 119건에서 2013년 195건으로 집계돼 무려 63.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표 1-11] 최근 3년간 중재부별 현황

(2011. 1. 1. ~ 2013. 12. 31.)

연 도 중 재 부	2011	2012	2013	합 계
서울중재부	1,465 (69.0)	1,832 (76.3)	1,806 (74.2)	5,103 (73.3)
부산중재부	36 (1.7)	50 (2.1)	69 (2.9)	155 (2.2)
대구중재부	26 (1.2)	29 (1.2)	48 (2.0)	103 (1.5)
광주중재부	49 (2.3)	92 (3.8)	78 (3.2)	219 (3.2)
대전중재부	33 (1.6)	53 (2.2)	75 (3.1)	161 (2.3)
경기중재부	118 (5.6)	119 (5.0)	195 (8.0)	432 (6.2)
강원중재부	18 (0.8)	11 (0.5)	20 (0.8)	49 (0.7)
충북중재부	47 (2.2)	55 (2.3)	37 (1.5)	139 (2.0)
전북중재부	28 (1.3)	47 (2.0)	39 (1.6)	114 (1.6)
경남중재부	174 (8.2)	80 (3.3)	63 (2.6)	317 (4.6)
제주중재부	130 (6.1)	33 (1.3)	3 (0.1)	166 (2.4)
계	2,124 (100)	2,401 (100)	2,433 (100)	6,958 (100)

10. 접수 유형별 현황

조정사건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청인들이 빈번하게 이용한 것은 여전히 전자우편(e-메일)으로 집계되었다. 2013년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건수는 1,196건(49.2%)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언론중재 Eye-Net’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접수된 사건은 해가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304건(14.3%)으로 시작된 전자문서 접수는 2012년 525건(21.9%)을 거쳐 2013년에는 750건으로 늘어나 전체의 30.8%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언론중재 Eye-Net’의 이용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 결과로 보인다.

[표 1-12] 최근 3년간 접수 유형별 현황

(2011. 1. 1. ~ 2013. 12. 31.)

구 분 연 도	방 문	우 편	전자우편	전자문서 (Eye-Net)	구 술	기 타	청구건수
2011	409 (19.3)	143 (6.7)	1,221 (57.5)	304 (14.3)	47 (2.2)		2,124 (100)
2012	360 (15.0)	114 (4.7)	1,250 (52.1)	525 (21.9)	152 (6.3)		2,401 (100)
2013	336 (13.8)	137 (5.6)	1,196 (49.2)	750 (30.8)	12 (0.5)	2 (0.1)	2,433 (100)

* () 안의 숫자는 %

* 2011. 1. 1.부터 전자조정중재시스템(언론중재 ‘Eye-Net’)을 통한 전자문서 접수가 가능해짐

제 2 장

조정사건 처리현황

1. 연도별 처리결과

2013년 한 해 동안의 조정사건 2,433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취하 1,089건(44.8%), 조정성립 916건(37.6%), 조정불성립결정 295건(12.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11건(4.6%), 기각 20건(0.8%), 각하 2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정성립은 2012년 805건(33.5%)에 이어 916건(37.6%)으로 나타나, 전체 처리건수 중 1/3 이상이 당사자 간 합의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재부가 양 당사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양 당사자가 수용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취하의 경우 2012년 972건(40.5%), 2013년 1,089건(44.8%)으로 여전히 조정사건 처리결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조정신청 후 조정심리 전에 해당 언론사가 신청인의 신청취지를 적절히 수용함으로써 신청인이 취하를 하거나, 조정심리 중에 중재부의 권유를 받은 피신청인이 사과 표명 혹은 후속보도를 약속함으로써 신청인이 취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2013년에는 심리 전 취하의 경우가 726건으로 심리 중 취하된 363건 보다 2배나 많았는데, 그 이유는 다수 매체를 상대로 조정 신청한 신청인이 먼저 진행된 매체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면 나머지 매체들도 그에 준해서 심리 전에 해결된 경우가 많았던 데서 찾을 수 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111건(동의 54건, 이의 57건)으로 전체 청구건수의 4.6%를 차지해 지난해(5.9%)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조정성공률(73.4%), 본안성공률(82.5%), 신청효율(77.6%) 등 피해구제율은 최근 3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재부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1. 1. 1. ~ 2013. 12. 31.)

연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조정 성공률	본안 성공률	신청 효율
			동의	이의	계속				심리 전	심리 중			
2011	2,124	725	65	40 (3)		285	44	14	506 (382)	445 (298)	70.9%	81.7%	71.3%
	%	34.1	3.0	1.9		13.4	2.1	0.7	23.8	21.0			
2012	2,401	805	76	66		427 (10)	44	11	592 (536)	380 (251)	64.1%	75.7%	71.5%
	%	33.5	3.2	2.7		17.8	1.8	0.5	24.7	15.8			
2013	2,433	916	54	57 (2)		295 (14)	20	2	726 (634)	363 (250)	73.4%	82.5%	77.6%
	%	37.6	2.2	2.4		12.1	0.8	0.1	29.9	14.9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조정성공률 = $\frac{\text{조정성공건수}(\text{조정성립}+\text{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동의})}{\text{조정건수}(\text{조정성립}+\text{조정을 갈음하는 결정}+\text{조정불성립결정})} \times 100$ ※ 본안성공률 = $\frac{\text{본안성공건수}(\text{조정성립}+\text{조정을 갈음하는 결정}+\text{심리 중 취하})}{\text{본안심리건수}(\text{조정성립}+\text{조정을 갈음하는 결정}+\text{조정불성립결정}+\text{심리 중 취하})} \times 100$ ※ 신청효율 = $\frac{\text{신청유효건수}(\text{조정성립}+\text{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동의}+\text{그 외 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text{전체 조정청구건수}-(\text{기각}+\text{각하})} \times 100$

* 신청접수 후 심리실 외에서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중재부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정정보도, 기사삭제 등을 의미함

2. 조정성공률

조정성공률이란 전체 조정청구사건 중에서 형식적 요건에 흠결이 있다거나 신청내용이 부적절해 각하결정이나 기각결정이 이루어진 사건, 그리고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사건을 모두 제외하고 조정심리를 거친 사건 중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사건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즉, 조정심리가 진행된 사건 중에서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당사자가 동의한 사건의 비율을 의미한다.

최근 3년간 조정성공률은 2011년 70.9%, 2012년 64.1%, 2013년 73.4%로 나타났다. 2013년 조정성공률은 2012년에 비해 9.3%p가 증가했다.

[표 2-2] 최근 3년간 조정성공률 현황

(2011. 1. 1. ~ 2013. 12. 31.)

연 도	구 분	청구건수(A)	기각 · 각하 · 취하 건수 (B)	조정건수 (A-B)	조정성공건수 (C)	조정성공률 C/(A-B)
2011		2,124	1,009	1,115	790	70.9%
2012		2,401	1,027	1,374	881	64.1%
2013		2,433	1,111	1,322	970	73.4%
계		6,958	3,147	3,811	2,641	69.3%

3. 본안성공률

본안성공률은 전체 청구사건에서 기각 · 각하된 사건과 심리 전 취하된 사건을 제외한 조정 심리에 부쳐진 사건 중에서 조정 성립되거나 중재부가 인용한 사건 및 심리 중 취하된 사건의 비율을 말한다.

본안성공건수에는 조정성공건수 외에도 중재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건과 심리 중 취하된 사건이 포함된다. 최근 3년간 본안성공률을 살펴보면, 2011년 81.7%, 2012년 75.7%, 2013년 82.5%로 나타났다. 2013년 본안성공률은 2012년에 비해 6.8%p가 증가했다.

[표 2-3] 최근 3년간 본안성공률 현황

(2011. 1. 1. ~ 2013. 12. 31.)

연 도	구 분	청구건수(A)	기각 · 각하 · 심리전 취하 건수 (B)	본안심리건수 (A-B)	본안성공건수 (C)	본안성공률 C/(A-B)
2011		2,124	564	1,560	1,275	81.7%
2012		2,401	647	1,754	1,327	75.7%
2013		2,433	748	1,685	1,390	82.5%
계		6,958	1,959	4,999	3,992	79.9%

4. 신청효율

신청효율은 전체 조정청구건수에서 기각 또는 각하된 건수를 제외한 청구 요건 적합 사건 중 조정심리 개최여부나 심리결과와 상관없이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등이 이루어진 사건의 비율을

뜻한다. 즉 조정이 성립된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 사건, 조정불성립 또는 취하되었으나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등이 이루어진 사건을 합한 것이다.

신청효율은 2010년 역대 최고치인 79.2%를 기록했다가 위원회가 피해구제보도문의 위치·크기의 격상 등 피해구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2011년을 기점으로 71%대까지 하락하기도 하였다. 이후 위원회는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사항과 그 필요성에 대해 피신청인들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대언론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피해구제보도문 개선의 당위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 2013년에는 77.6%의 신청효율을 나타내 다시 예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표 2-4] 최근 3년간 신청효율 현황

(2011. 1. 1. ~ 2013. 12. 31.)

연 도	구 분	청구건수(A)	기각 · 각하 건수(B)	청구요건 적합건수 (A-B)	신청유효건수 (C)	신청효율 C/(A-B)
2011		2,124	58	2,066	1,473	71.3%
2012		2,401	55	2,346	1,678	71.5%
2013		2,433	22	2,411	1,871	77.6%
계		6,958	135	6,823	5,022	73.6%

5. 청구권별 처리결과

2013년 위원회에서 처리된 조정사건을 청구권별로 살펴보면, 추후보도청구의 신청효율이 96.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반론보도(84.9%), 정정보도(7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후보도청구는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청구이므로,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백하고 판결문 등에 의한 입증이 용이하여 언론사가 신청인의 요구에 특별한 이견이 없어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언론사가 피해구제보도문을 이행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 결과로 해석된다.

[표 2-5] 최근 3년간 청구권별 처리결과

(2011. 1. 1. ~ 2013. 12. 31.)

구분 연도	청구명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하			
				동의	이의							
2011	정정	1,004	375	40	23 (1)	150	25	5	386 (249)	70.6	79.7	68.3
	반론	168	72	6		28	7		55 (33)	73.6	78.8	68.9
	추후	148	23	1	1 (1)	7		2	114 (108)	75.0	86.3	91.1
	손배	804	255	18	16 (1)	100	12	7	396 (290)	70.2	81.6	71.8
	계	2,124	725	65	40 (3)	285	44	14	951 (680)	70.9	81.7	71.3
2012	정정	1,223	450	40	35	238 (6)	17	3	440 (338)	64.2	75.5	69.3
	반론	315	113	7	3	35 (2)	11	5	141 (112)	75.9	84.0	78.3
	추후	69	2	2		1			64 (63)	80.0	90.9	97.1
	손배	794	240	27	28	153 (2)	16	3	327 (274)	59.6	72.4	70.1
	계	2,401	805	76	66	427 (10)	44	11	972 (787)	64.1	75.7	71.5
2013	정정	1,195	511	29	39 (2)	155 (8)	11	2	448 (335)	73.6	82.9	74.9
	반론	274	129	8	1	18	3		115 (93)	87.8	90.5	84.9
	추후	180	18		2	1			159 (156)	85.7	96.4	96.7
	손배	784	258	17	15	121 (6)	6		367 (300)	66.9	78.4	74.7
	계	2,433	916	54	57 (2)	295 (14)	20	2	1,089 (884)	73.4	82.5	77.6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6.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신청인 유형별 신청효율을 살펴보면 국가기관이 94.4%로 가장 높았으며 지자체·공공단체(84.6%), 교육기관(76.5%), 회사(74.5%) 등의 순이었다. 2012년도에 78.6%로 가장 높은 신청효율을 보였던 종교단체는 74.2%로 소폭 하락했다.

[표 2-6]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011. 1. 1. ~ 2013. 12. 31.)

구분 연도	신청인유형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1	개 인	1,283	427	37	31 (2)	181	30	12	565 (455)	68.6	79.2	74.2	
	단 체	국가기관	78	21	5 4 (1)	17			31 (12)	55.3	74.2	50.0	
		지자체 공공단체	126	56	6 2	11	1		50 (44)	82.7	88.5	84.8	
		일반단체	252	112	4 2	35	11	2	86 (22)	75.8	82.5	57.7	
		종교단체	19	5	2	2			10 (10)	77.8	81.8	89.5	
		회 사	336	94	11 1	36	2		192 (130)	73.9	82.3	70.4	
		교육기관	30	10		3			17 (7)	76.9	85.7	56.7	
		계	2,124	725	65 40 (3)	285	44	14	951 (680)	70.9	81.7	71.3	
2012	개 인	1,393	434	39	41	206 (1)	26	6	641 (555)	65.7	77.9	70.1	
	단 체	국가기관	96	40	6 3	12	1		34 (23)	75.4	86.0	72.6	
		지자체 공공단체	168	70	7	30 (1)			61 (48)	72.0	76.9	75.0	
		일반단체	310	113	15 2	81 (4)	14		85 (61)	60.7	68.1	65.2	
		종교단체	16	4		2	2		8 (7)	66.7	84.6	78.6	
		회 사	391	134	9 20	88 (4)	1	5	134 (85)	57.0	72.2	60.3	
		교육기관	27	10		8			9 (8)	55.6	61.9	66.7	
		계	2,401	805	76 66	427 (10)	44	11	972 (787)	64.1	75.7	71.5	
2013	개 인	1,395	481	20	25 (1)	154 (10)	11	2	702 (588)	73.7	82.5	79.6	
	단 체	국가기관	36	28	1	1			6 (6)	93.3	96.8	94.4	
		지자체 공공단체	188	96	15 3	14			60 (48)	86.7	91.2	84.6	
		일반단체	255	105	5 4 (1)	65 (4)	9		67 (44)	61.5	69.8	64.6	
		종교단체	31	5	2 1	1			22 (16)	77.8	92.3	74.2	
		회 사	447	172	12 14	58			191 (149)	71.9	82.0	74.5	
		교육기관	81	29	9	2			41 (33)	72.5	96.8	76.5	
		계	2,433	916	54 57 (2)	295 (14)	20	2	1,089 (884)	73.4	82.5	77.6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7.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

2013년 위원회에서 처리된 조정사건을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로 구분해 보면 연예인과 공공기관장이 신청한 사건의 신청효율이 100.0%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 회사원(89.1%), 언론인(88.9%), 문화예술인(87.0%) 등이 비교적 높은 신청효율을 보였다.

한편 법조인과 금융업종사자의 경우 신청한 사건이 모두 조정불성립결정됨에 따라 신청효율이 0.0%로 가장 낮았다. 그밖에 국회의원(62.2%), 시민활동가(50.0%), 의료인(42.4%) 등의 신청효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

(2013. 1. 1. ~ 2013. 12. 31.)

구분 직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은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국회의원	46	21		1	12		1	11 (7)	61.8	70.7	62.2
법조인	3				3				0.0	0.0	0.0
공무원	56	23		3	13			17 (12)	59.0	72.9	62.5
군인·경찰	47	21	3	2	5 (1)		1	15 (8)	77.4	85.3	71.7
기초광역단체장 ·의원	64	35		2	8			19 (8)	77.8	86.4	67.2
정당정치인	22	13		4	1	3		1	72.2	94.4	68.4
의료인	33	8			15			10 (6)	34.8	50.0	42.4
문화예술인	69	28			8			33 (32)	77.8	81.0	87.0
종교인	17	12			3			2 (2)	80.0	82.4	82.4
회사원	202	42	5	2	7	1		145 (132)	83.9	88.9	89.1
언론인	47	14	5	1	4	2		21 (21)	79.2	87.9	88.9
교육자	159	69		2	5			83 (60)	90.8	95.1	81.1
개인사업가	281	80	2		27 (4)	1		171 (148)	75.2	81.6	83.6
금융업종사자	2				2				0.0	0.0	0.0
연예인	6	4						2 (2)	100.0	100.0	100.0
학 생	30	8		1	2			19 (15)	72.7	92.9	76.7
시민활동가	9				4	1		4 (4)	0.0	0.0	50.0
공공기관장	39	1						38 (38)	100.0	100.0	100.0
조합대표협회장	33	14		1	8 (4)			10 (6)	60.9	72.4	72.7
주 부	14	8	3		2			1 (1)	84.6	84.6	85.7
무 직	82	20			9 (1)			53 (47)	69.0	81.6	82.9
알 수 없음	51	23		2	4	1		21 (19)	79.3	90.2	84.0
기 타	83	37	2	4	12	2		26 (20)	70.9	81.8	72.8
계	1,395	481	20	25	154 (10)	11	2	702 (588)	73.7	82.5	79.5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을 같은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8.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매체 유형별 신청효율을 살펴보면 기타가 100.0%로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뉴스서비스(89.1%), 인터넷신문(78.8%), 뉴스통신(75.7%), 신문(71.0%), 방송(70.8%)등의 순이었다. 한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등 인터넷에 기반을 둔 매체들의 경우는 2013년에는 1,611건의 조정사건이 접수되고 그중 838건이 취하되었다. 이는 조정신청 후 문제가 된 기사가 삭제되어 심리 전에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던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인터넷 뉴스서비스는 대부분 언론보도를 단순 매개하기 때문에 기사제공언론사에 관한 조정사건이 잘 해결되면 그 결과 또한 포털사이트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해 취하되는 경우가 많다.

[표 2-8]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2011. 1. 1. ~ 2013. 12. 31.)

구분 연도	매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성 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1	신 문	586	244	19	13	95	22	5	188 (91)	70.9	79.6	63.3	
	방 송	250	75	11	6	61	9	4	84 (33)	56.2	68.9	50.2	
	잡 지	9	5	1		3				66.7	66.7	66.7	
	뉴스통신	62	21	2	2 (2)	7	1		29 (14)	71.9	83.3	63.9	
	인터넷신문	705	230	22	19 (1)	81	10	4	339 (254)	71.6	82.9	73.4	
	인터넷 뉴스서비스	510	150	10		38		1	311 (288)	80.8	89.8	88.0	
	기 타	2					2			-	-	-	
	계	2,124	725	65	40 (3)	285	44	14	951 (680)	70.9	81.7	71.3	
2012	신 문	665	265	27	27	163 (4)	9	5	169 (107)	60.6	71.3	61.9	
	방 송	243	78	10	10	63	10		72 (55)	54.7	68.5	61.4	
	잡 지	11	7			2			2 (2)	77.8	80.0	881.8	
	뉴스통신	83	23	9		18 (2)	2		31 (23)	64.0	71.0	70.4	
	인터넷신문	945	348	26	23	157 (4)	18	5	368 (310)	67.5	76.7	74.6	
	인터넷 뉴스서비스	454	84	4	6	24	5	1	330 (290)	74.6	90.0	84.4	
	계	2,401	805	76	66	427 (10)	44	11	972 (787)	64.1	75.5	71.5	
	신 문	522	236	23	16 (1)	80 (3)	4		163 (105)	73.0	81.1	71.0	
2013	방 송	288	136	7	6	41 (4)	10	1	87 (49)	75.3	82.3	70.8	
	잡 지	10	5		3	1			1 (1)	55.6	90.0	60.0	
	뉴스통신	112	32	2	2	19 (1)		1	56 (49)	61.8	73.6	75.7	
	인터넷신문	1,130	420	20	29 (1)	139 (2)	5		517 (443)	72.4	81.4	78.8	
	인터넷 뉴스서비스	369	85	2	1	15 (4)	1		265 (237)	84.5	92.5	89.1	
	기 타	2	2							100.0	100.0	100.0	
	계	2,433	916	54	57 (2)	295 (14)	20	2	1,089 (884)	73.4	82.5	77.6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9.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3년 위원회에서 처리된 조정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성권 침해(100.0%)와 성명권 침해(95.7%), 사생활 침해(86.7%) 등이 높은 신청효율을 보였고, 이에 반해 가장 청구건수가 많은 명예훼손은 상대적으로 낮은 76.9%를 나타냈다. 음성권이나 성명권, 사생활 침해 등은 명예훼손에 비해 침해의 인정 여부가 좀 더 분명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속에 사생활 및 초상권 보호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역시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9]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1. 1. 1. ~ 2013. 12. 31.)

구분 연도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1	명예훼손	2,030	697	60	35	(3)	272	40	14	912	(656)	71.1	80.7	71.7	
	초상권 침해	39	9	3	1		3	3		20	(15)	75.0	84.2	75.0	
	음성권 침해	3					1			2	(2)	0.0	66.7	66.7	
	성명권 침해	22	3	2	3		9			5		29.4	52.6	22.7	
	사생활 침해	24	15		1			1		7	(5)	93.8	100.0	87.0	
	재산상 손해	5								5	(2)	—	—	40.0	
	기 타	1	1									100.0	100.0	100.0	
	계	2,124	725	65	40	(3)	285	44	14	951	(680)	70.9	81.7	71.3	
2012	명예훼손	2,110	765	65	60		420	(10)	34	10	756	(583)	63.4	74.8	68.9
	초상권 침해	128	23	5	3		4		9	1	83	(81)	80.0	90.7	92.4
	음성권 침해	8	3				1		1		3	(1)	75.0	83.3	57.1
	성명권 침해	43	1		2						40	(40)	33.3	100.0	95.3
	사생활 침해	101	13	6	1		2				79	(79)	86.4	94.3	97.0
	재산상 손해	10									10	(2)	—	100.0	20.0
	기 타	1								1	(1)	—	100.0	100.0	
	계	2,401	805	76	66		427	(10)	44	11	972	(787)	64.1	75.7	71.5
2013	명예훼손	2,252	841	50	52	(2)	287	(14)	14	2	1,006	(812)	72.4	81.7	76.9
	초상권 침해	82	32	2	3		4		1		40	(33)	82.9	91.5	82.7
	음성권 침해	5	4								1	(1)	100.0	100.0	100.0
	성명권 침해	23	7								16	(15)	100.0	100.0	95.7
	사생활 침해	45	25	2	1		2				15	(12)	90.0	94.7	86.7
	재산상 손해	26	7		1		2		5		11	(11)	70.0	86.7	85.7
	기 타												—	—	—
	계	2,433	916	54	57	(2)	295	(14)	20	2	1,089	(884)	73.4	82.5	77.6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10. 매체별 침해 유형 및 처리결과

매체별 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지면을 기반으로 한 일간지, 주간신문, 잡지 등의 매체의 경우 532건의 청구건수 중 명예훼손이 대다수인 511건(96.1%)을 차지하였고 초상권, 음성권 등 명예훼손 외의 인격권 침해가 21건(3.9%)으로 나타났다. 방송은 288건의 청구건수 중 명예훼손이 240건(83.3%), 명예훼손 외 인격권 침해가 48건(16.7%)을 차지했다. 한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은 1,611건의 청구건수 중 명예훼손이 1,499건(93.0%), 명예훼손 외 인격권 침해는 112건(7.0%)로 나타났다. 방송과 인터넷 매체의 명예훼손 외 인격권 침해의 비율이 지면 매체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은 초상, 음성, 성명 등이 주로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공개될 뿐만 아니라, 공개된 영상이나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등 매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케이블 TV는 명예훼손을 제외한 법익 침해가 이루어진 사건이 전체의 23.7%(38건 중 9건)로 나타나는 등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2-10] 매체별 침해 유형 및 처리결과

(2013. 1. 1. ~ 2013. 12. 3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취하
중앙일 간 지	경향신문	15	15							8		1		6
	국민일보	9	8			1				2	1	4		2
	동아일보	31	31							12	2	5		12
	문화일보	10	9				1			5	3	2		
	서울신문	9	9							4		4		1
	세계일보	3	3							1				2
	일간투데이	2	2							2				
	조선일보	29	28	1						13	4	1		11
	중앙일보	24	22	2						12			4	8
	한겨레	28	28							7	7	8		6
	한국일보	14	14							2	1	2		9
	소계	174	169	3		1	1			68	18	27	4	57
지 역 일 간 지	강원도민일보	5	3			2				2		2		1
	경기신문	4	4							3				1
	경기일보	10	8			2						2		8
	경남도민신문	2	2							2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 역 일 간 지	경남도민일보	6	5					1							6
	경남신문	2	2												2
	경도신문	1	1							1					
	경북일보	2	2							1					1
	경상일보	1	1							1					
	경인일보	10	10							7		3			
	광주일보	1	1												1
	광주타임즈	3	3							1					2
	교차로신문	1		1											1
	국제신문	3	2				1			2	1				
	금강일보	7	7							1					6
	기호일보	7	7							2	2				3
	대구신문	2	2												2
	대구일보	3	3									3			
	대전일보	5	5							5					
	대전투데이	2	2							2					
	매일신문	4	4							1					3
	무등일보	1	1							1					
	미래일보	2	2												2
	부산일보	7	6				1			2					5
	새전북신문	2	2							2					
	선경일보	1	1							1					
	수도권일보	1	1							1					
	시민일보	1	1							1					
	아시아일보	4	4							4					
	아시아투데이	4	4							3	1				
	영남일보	3	3							2					1
	울산매일	2	2							2					
	울산신문	1	1							1					
	인천일보	3	3									2			1
	전광일보	4	4							2					2
	전국매일	2	2									2			
	전남매일	1	1												1
	전라일보	3						3		1					2
	전민일보	2	2												2
	전북도민일보	1	1												1
	전북중앙신문	2	2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역 일간지	전주매일	3	3								1				2
	조간호남일보	2	2							1					1
	중도일보	2	2							2					
	중부매일	1	1							1					
	중부일보	3	3							2		1			
	창원일보	1						1							1
	충남일보	1	1							1					
	충북일보	3	3									2			1
	충청매일	4	4							2					2
	충청신문	4	4							2		2			
	충청일보	5	5							5					
	충청타임즈	1	1							1					
	충청투데이	6	6							3					3
	현대일보	6	6							4		2			
	호남매일	1	1							1					
	호남신문	1	1												1
	소 계	172	160	1			4	2	5	80	5	21			66
경제지	매일경제	3	3							3					
	머니투데이	6	6							6					
	한국경제	7	6	1						4		3			
	헤럴드경제	2	2												2
	소 계	18	17	1						13		3			2
스포츠지	스포츠서울	2	2							2					
	일간스포츠	2	2							1					1
	소 계	4	4							3					1
특수 일간지	전자신문	9	9							1	2				6
	소 계	9	9							1	2				6
무료 일간지	City(시티)	1	1												1
	스포츠한국	1	1												1
	이데일리(신문)	1	1												1
	소 계	3	3												3
중앙 방송	EBS-TV	2	2							2					
	KBS-1TV	35	29	4				2		9		11	1		14
	KBS-2TV	12	9	2				1		7				1	4
	MBC-TV	49	43	3	1			1	1	25	7	3			14
	SBS-TV	46	40	3				2	1	20	1	7	3		15
	소 계	144	123	12	1			5	3	63	8	21	4	1	47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 방 방 송	MBC경남(진주,창원)	1						1							1
	강릉MBC-TV	2	2												2
	경인KBS-1TV	1	1							1					
	광주KBS-1TV	3	2	1							1	2			
	대구MBC-TV	1	1												1
	대전KBS-1TV	1	1							1					
	대전MBC-TV	1				1									1
	목포KBS-1TV	1	1								1				
	부산KBS-1TV	4	4							4					
	삼척MBC-TV	1		1						1					
	안동MBC-TV	2	2							2					
	울산KBS-1TV	2	2									2			
	전주MBC-TV	3	3												3
	창원KBS-1TV	2	2									2			
	충주KBS-1TV	1	1												1
	소 계	26	22	2		1		1		9	2	6			9
지 역 민 방	CJB-TV	2	2							1					1
	G1-TV	1					1			1					
	G1 강원민방-TV	1	1							1					
	KBC-TV	2	2							1		1			
	KNN	5	5												5
	OBS경인TV	4	4							3		1			
	TJB-TV	1	1							1					
	UBC	2	1	1											2
	소 계	18	16	1			1			8		2			8
케 이 블 TV	e채널	1	1												1
	JCN 울산중앙방송	1		1						1					
	KCTV	1	1												1
	SBS CNBC-TV	1	1										1		
	TVN	3	2				1			2					1
	YTN	17	16	1						10		2			5
	YTN 사이언스TV	3	1				2			3					
	디원TV	2		2						2					
	리얼TV	1		1						1					
	서울신문STV	1		1						1					
	연합뉴스TV(뉴스Y)	2	2							1					1
	티브로드서부산방송	2	2												2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헬로티비은평뉴스	3	3							3					
	소 계	38	29	6			3			24		2	1		11
종합 편성 채널	JTBC	9	9							6		3			
	MBN	19	15	1	2		1			8	1	1	2		7
	TV조선	14	10	3				1		9	2	1	1		1
	채널A	20	16	2		1	1			9		5	2		4
	소 계	62	50	6	2	1	2	1		32	3	10	5		12
뉴스 통신	KNS뉴스통신	3	3												3
	NSP통신	7	6				1			3					4
	국제뉴스	3	3									1			2
	뉴스1 코리아	25	22	3						7	2	4			12
	뉴스1코리아(광주전남)	3	3							1		1			1
	뉴시스	31	31							8	2	6		1	14
	아시아뉴스통신	2	2							2					
	아시아뉴스통신(경남)	2	2									2			
	연합뉴스	36	34	1				1		11		5			20
	소 계	112	106	4			1	1		32	4	19		1	56
시 사 주 간 신 문	일요서울	3	3							3					
	일요시사	4	4							3		1			
	일요신문	2	2							2					
	주간한국	4	4												4
	중앙Sunday	1		1						1					
	소 계	14	13	1						9		1			4
지 역 주 간 신 문	고령군민신문	2	2												2
	관악뉴스	2	2									2			
	김포신문	2	2							2					
	담양신문	2	2							1	1				
	대가야신문	1	1								1				
	더함안신문	2	2							2					
	동북일보	2	2							2					
	목포신문	1	1							1					
	무안신문	1	1							1					
	백제신문	2	2												2
	보령신문	1	1							1					
	보은사람들	1	1							1					
	보은신문	2	2								2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역 주간 신문	서대문신문	2	2												2
	성동신문	2	2												2
	안산타임스	4	4							2	1	1			
	안양시민신문	1	1							1					
	연수신문	4	4								2	2			
	영남매일	2	2									2			
	완주군민신문	1	1								1				
	용인신문	1	1							1					
	울진신문	1	1									1			
	장강신문	2	2							1					1
	장성군민신문	1	1							1					
	정읍신문	2	2									2			
	주간 강남신문	2	2							1		1			
	주간기장신문	2	2							2					
	주간남해뉴스	2	2							2					
	주간진도신문	2	2									2			
	주간함양	2	2									2			
	청양신문	1	1							1					
	태안미래신문	1	1							1					
	태안신문	1	1							1					
	홍주신문	2	2												2
	화순일보	4	4							2					2
	소 계	63	63							27	8	15			13
특수 주간 신문	PD저널	3	3							3					
	TIN뉴스	1	1							1					
	강서양천신문	2	2								2				
	경기뉴스신문	2	2									2			
	기독교성결신문	1	1												1
	기독교신문	2	2												2
	기독교한국신문	2	2							2					
	미디어오늘	10	10							5		2			3
	방송대신문	1	1							1					
	부천신문	5	5								1	3			1
	서울문화투데이	1	1							1					
	시흥뉴스라인	2	2									2			
	전기신문	2	2							2					
	주간 교회연합신문	4	4							2					2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특수주간신문	주간성형외과신문	2	2									2			
	크리스찬연합신문	2	2							2					
	크리스찬타임	2	2							2					
	파주신문	1	1							1					
	하남신문	1	1							1					
	한국기독신문	2	2									2			
	한국성결신문	3	3							1					2
	함안신문	1	1							1					
	헬스경향	1	1							1					
	소 계	53	53							26	3	13			11
시사주간지	시사IN	1	1							1					
	시사저널	7	7							4	3				
	주간동아	1					1			1					
	주간조선	2	2							2					
	한겨레21	1	1							1					
	소 계	12	11				1			9	3				
잡지	서로를살리는교육민들레	2	2							2					
	신동아	1	1												1
	에스테틱&스파	1		1						1					
	월간조선	5	5							2	3				
	표면처리저널	1	1									1			
	소 계	10	9	1						5	3	1			1
인터넷신문	(주)화순일보	4	4							2					2
	bnt뉴스	1		1											1
	Citydaily(시티데일리)	4	3	1						2					2
	CNBNEWS	2	2							1					1
	CTN	4	4							3					1
	dstv(한국교회공보)	2	2												2
	e-경기뉴스인	1	1									1			
	EBN	2	2												2
	enews24	2	2							2					
	etv	1	1												1
	e그린경제	8	5					3		5			3		
	e뉴조(뉴스앤조이)	3	2				1			1					2
	e대학저널	1	1							1					
	e머니위크	1	1												1
	e머니투데이	19	16	1				2		15					4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 터 넷 신 문	e새한일보	3	3							1					2
	e중앙뉴스	3	3							2					1
	e파이낸셜신문	4	4							4					
	Gvalley	3	3												3
	HKBC환경방송	4	4									2			2
	i-김포뉴스	1	1								1				
	IPF 국제방송	1	1												1
	IT동아	1	1												1
	i태안미래	1	1							1					
	MK뉴스	7	7												7
	SSTV	3	3							2					1
	TV리포트	2	2							1					1
	거제인터넷신문	3	3							2					1
	게임톡	1	1							1					
	경남인뉴스	2	2												2
	경북인터넷뉴스	1	1												1
	경상매일	3	3							2					1
	경인매일닷컴	1	1												1
	경제투데이	2	2							2					
	고발뉴스닷컴	2	2									2			
	광주in	2	2							1					1
	광주일등뉴스	1	1												1
	교회와신앙	1	1							1					
	구리남양주넷	2	2												2
	구리넷	2	2												2
	국민TV뉴스	1	1									1			
	국토매일	1	1							1					
	꿀통뉴스	3	3							2					1
	노컷뉴스	27	27							12		4			11
	뉴데일리	7	7							5	2				
	뉴스 소통	1	1							1					
	뉴스라인	2	2									2			
	뉴스웨어	1	1												1
	뉴스에이	2	2												2
	뉴스엔	7	6				1								7
	뉴스웨이	2	1	1											2
	뉴스일번지	1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신문	뉴스천지	4	2	2											4
	뉴스캔	1	1												1
	뉴스퀵	1	1							1					
	뉴스타파	2	2								1	1			
	뉴스토마토	9	9							2		1			6
	뉴스플러스	2	2												2
	뉴스핍	4	4							1					3
	뉴스한국닷컴	1	1												1
	뉴시스헬스	1	1							1					
	뉴포커스	2	2							2					
	대전시티저널	1	1							1					
	대학뉴스	1	1												1
	더벨	2						2		2					
	데이터넷	1	1												1
	데일리 위기관리경영	4	4							4					
	데일리그리드	1				1									1
	데일리서울파이낸스	2	2												2
	데일리안	2	2												2
	동아닷컴	32	32							9	1	4			18
	디오데오	1	1												1
	디지털 강서양천일보	4	4								2				2
	디지털 에코데일리	2	2									2			
	디지털 포천신문	1	1												1
	디지털세정신문	1	1												1
	디지털 보사	1					1			1					
	리뷰스타	1	1												1
	마이데일리	1	1												1
	매경닷컴	1	1												1
	매일일보 인터넷	1	1							1					
	메디칼타임즈	1	1							1					
	메디컬투데이	2	2												2
	모닝뉴스	2	2												2
	무안신안인터넷뉴스	2	2								1				1
	미디어스	7	6	1						4					3
	미디어와이	4	4							2		2			
	미디어투데이	2	2							2					
	미디어펜(Mediapen)	2	2							2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신문	민주일보	3	3												3
	민중언론 참세상	1	1							1					
	민중의소리	12	10	2						1	1	3	1		6
	베타뉴스	1	1												1
	뷰티한국	1	1												1
	블루투데이	1	1							1					
	사자TV	1	1							1					
	사하인터넷뉴스	2	2							2					
	상조뉴스	1	1							1					
	상조매거진	1	1												1
	서대문인터넷뉴스	2	2								2				
	서울교육방송	4	4							2		2			
	서울신문 Boom(붐)	1	1												1
	성남일보	4	4							1		3			
	성남투데이	2	2							2					
	성형외과신문	2	2									2			
	세계닷컴	9	9												9
	소비자고발신문	2	2							1					1
	수도권지역뉴스	2	2												2
	스타뉴스	3	3							2					1
	스타데일리뉴스	1	1							1					
	스타엔	1	1												1
	스타투데이	1	1												1
	스포츠서울닷컴	7	7							2					5
	시민일보 인터넷	2	2								2				
	시사N Live (시사인 라이브)	2	2							1					1
	아시아경제닷컴	7	6	1						1					6
	아시아투데이닷컴	10	10							5					5
	아이굿뉴스	2	2												2
	아이뉴스24(inews24)	2	2							1					1
	아이피디저널(iPD저널)	1	1												1
	아주뉴스(인터넷아주경제)	13	12	1								1			12
	안성뉴스24	1	1												1
	약사신문	1	1							1					
	에버뉴스	2	2							1					1
	에이블뉴스	1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신문	엑스포초뉴스	3	3												3
	엔디엔뉴스	1	1												1
	연예스포츠팡송	2	2												2
	영남방송	3	2				1					3			
	오마이뉴스	26	24	1		1				13		2			11
	오에스이엔(OSEN)	1	1												1
	온라인 중앙일보	25	23	2						10		2			13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3	3								3				
	이뉴스투데이	1	1							1					
	이데일리(인터넷)	7	3				4			4					3
	이버즈	1	1												1
	이투데이	4	3	1						1					3
	이티뉴스	2	2												2
	익산 인터넷뉴스	2	2												2
	익산시민뉴스	1	1							1					
	인천뉴스	2	2												2
	인터넷 CNB저널	1	1							1					
	인터넷 PD저널	5	5							5					
	인터넷 TIN뉴스	1	1							1					
	인터넷 U s line	2	2									2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6	4			2				2		2			2
	인터넷 경기뉴스인	1	1									1			
	인터넷 경기북부시민신문	1					1			1					
	인터넷 경기신문	8	8							5					3
	인터넷 경기일보	15	13			2				4		2			9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2	2												2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7	6					1							7
	인터넷 경남매일	2	2												2
	인터넷 경남신문	4	3					1							4
	인터넷 경남일보	2	2												2
	인터넷 경북일보	3	3							1					2
	인터넷 경북제일신보	2	2									2			
	인터넷 경상일보	1	1							1					
	인터넷 경인종합일보	1	1							1					
	인터넷 경향신문	12	11				1			5		2			5
	인터넷 관악뉴스	2	2									2			
	인터넷 광주타임즈	5	5							2					3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신문	인터넷 교통환경신문	2	2							1					1
	인터넷 교회연합신문	5	5							2					3
	인터넷 국제경찰신문	2	2												2
	인터넷 국토일보	1	1							1					
	인터넷 굿모닝충청	1	1							1					
	인터넷 금강일보	6	6												6
	인터넷 기독교신문	2	2												2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	2	2							2					
	인터넷 기독교신보	2	2							1		1			
	인터넷 기자협회보	1	1												1
	인터넷 기장신문	2	2							2					
	인터넷 남해뉴스	2	2							2					
	인터넷 뉴스포스트	1	1												1
	인터넷 담양신문	2	2							1	1				
	인터넷 대구신문	2	2												2
	인터넷 대구일보	1	1									1			
	인터넷 대전일보	4	4							4					
	인터넷 대전투데이	2	2							2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1	1												1
	인터넷 독립신문	1		1											1
	인터넷 레프트21	2	2									2			
	인터넷 매일노동뉴스	1	1							1					
	인터넷 매일신문	1	1												1
	인터넷 미래일보	2	2												2
	인터넷 부천신문	7	5	2							1	5			1
	인터넷 새전북신문	2	2							2					
	인터넷 서울경제	2	2												2
	인터넷 서울뉴스통신	1	1							1					
	인터넷 서울문화투데이	1	1							1					
	인터넷 서울신문	6	6							3		1			2
	인터넷 서울타임스	3	3									2			1
	인터넷 서울파이낸스	1	1												1
	인터넷 소비자를 위한 신문	1	1												1
	인터넷 수도권일보	1	1							1					
	인터넷 스포셜경제	1	1												1
	인터넷 스포츠동아	1	1												1
	인터넷 스포츠조선	2	2												2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신문	인터넷 스포츠한국	4	3			1									4
	인터넷 시대일보	1	1							1					
	인터넷 시민의소리	1	1												1
	인터넷 시사 연수신문	4	4								2	2			
	인터넷 시사저널	1	1							1					
	인터넷 신아일보	3	3							2					1
	인터넷 아시아일보	3	3							3					
	인터넷 엠티엔(MTN)	7	2			1	4			5					2
	인터넷 여성소비자신문	1	1												1
	인터넷 울산신문	1	1							1					
	인터넷 월드코리아신문	1	1							1					
	인터넷 위클리오늘	1	1												1
	인터넷 이지경제	1	1												1
	인터넷 일간스포츠	6	6							5					1
	인터넷 일간투데이	4	4							3					1
	인터넷 일요서울	7	7							7					
	인터넷 일요시사	9	8	1						7		1			1
	인터넷 일요신문	2	2							2					
	인터넷 전광일보	6	6							2					4
	인터넷 전국매일	1	1												1
	인터넷 전남매일	1	1												1
	인터넷 정읍신문	2	2									2			
	인터넷 조간호남일보	2	2							1					1
	인터넷 주간 강남신문	2	2							1		1			
	인터넷 주간진도신문	2	2									2			
	인터넷 주간한국	4	4												4
	인터넷 주간현대	1	1												1
	인터넷 중도일보	2	2												2
	인터넷 중부신문	2	2									2			
	인터넷 중소기업신문	1	1												1
	인터넷 중앙Sunday	1		1						1					
	인터넷 청양신문	1	1							1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3	3								1	2			
	인터넷 태안신문	1	1							1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10	10									2			8
	인터넷 파주신문 (파주뉴스)	1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신문	인터넷 한겨레	28	27				1			5	4	7			12
	인터넷 한겨레21	1	1							1					
	인터넷 한국마케팅신문	1	1												1
	인터넷 한국일보	8	8							3	1	1			3
	인터넷 헬스경향	1	1							1					
	인터넷 현대일보	2	2							2					
	인터넷 호남매일	1	1							1					
	인터넷 강원일보	1	1												1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2	2							2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1	1												1
	인터넷 경남신문	1	1												1
	인터넷 경도신문	1	1							1					
	인터넷 경인일보	13	12	1						8		3			2
	인터넷 고령군민신문	2	2												2
	인터넷 광명시민신문	2	2												2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4	4							2					2
	인터넷 국제신문	6	5				1			2	1				3
	인터넷 기호일보	8	8							3	2				3
	인터넷 김포신문	2	2							2					
	인터넷 내일신문	2	2												2
	인터넷 네트워크신문	1	1												1
	인터넷 데일리경제	1	1												1
	인터넷 문화일보	10	10							4	1	2			3
	인터넷 미디어오늘	24	24							12		7			5
	인터넷 미디어워치	2	2							2					
	인터넷 민주신문	3	3							3					
	인터넷 보은사람들	1	1							1					
	인터넷 보은신문	2	2								2				
	인터넷 부산일보	10	9				1			2					8
	인터넷 서울일보	1	1												1
	인터넷 안산타임스	4	4							2	1	1			
	인터넷 안양시민신문	1	1							1					
	인터넷 영남일보	3	3							2					1
	인터넷 용인신문	1	1							1					
	인터넷 월요신문	2	2												2
	인터넷 인천일보	3	3									2			1
	인터넷 전라일보	3						3		1					2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 터 넷 신 문	인터넷 전민일보	2	2												2
	인터넷 전북도민일보	1	1												1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2	2							1					1
	인터넷 전주매일	1	1								1				
	인터넷 주간조선	3	3							3					
	인터넷 주간함양	2	2									2			
	인터넷 중부매일	1	1							1					
	인터넷 중부일보	6	6							1		2			3
	인터넷 창원일보	3	2					1							3
	인터넷 충북일보	4	4									2			2
	인터넷 충청매일	2	2												2
	인터넷 충청일보	5	5							5					
	인터넷 충청투데이	4	3					1		2			1		1
	인터넷 하남신문	1	1							1					
	인터넷 한국기독신문	2	2									2			
	인터넷 한국원자력신문	2	2							2					
	인터넷 한국일보	16	12				4			6					10
	인터넷 헤럴드경제	11	10				1			3		3			5
	인터넷 호남신문	1	1												1
	인터넷뷰365	1	1												1
	일요닷컴	5	5								4				1
	전자신문인터넷	12	12							2	5				5
	제주의소리	2	2									2			
	조선닷컴	39	37	2						16	4	5			14
	조선비즈닷컴	9	9							2		2			5
	조세일보	1	1												1
	조인스엠에스엔	1	1							1					
	주택뉴스	4	4							2		2			
	중앙통신뉴스	1	1												1
	지디넷코리아	1	1												1
	천안매일-천안톱뉴스	1	1							1					
	충남도민일보	1	1							1					
	컨슈머타임스	8	8							3					5
	컵뉴스	4	4							2					2
	케이벤처	1	1												1
	코리아패션뉴스	1	1							1					
	코메디닷컴	2	2									2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신문	쿠키뉴스	18	13	3		1	1			7		2			9
	투데이코리아	5	5							2					3
	티브이데일리	4	2	2						2					2
	티브리포트	1		1						1					
	파도TV	2	2							2					
	파워뉴스	2	2												2
	폴리뉴스	2	2												2
	푸드투데이	3	3								2				1
	프레스바이플	9	9							5		4			
	프레스이안	5	5							1		2			2
	한강타임즈	2	2												2
	한경닷컴	13	12	1						5		3			5
	한국공업신문	2	2							2					
	한국기자연대	2	2												2
	한국대학방송	2	2									2			
	한국무예신문	2	2							1					1
	헬스코리아뉴스	3	2			1									3
	헬스포커스뉴스	1	1							1					
	홍주일보	2	2												2
	소 계	1,130	1,053	30		11	22	14		420	49	139	5		517
인터넷뉴스서비스	EBS 뉴스	2	2							2					
	iKNN	7	7												7
	iMBC	21	18	2	1					11		1			9
	KBS미디어	23	21	1			1			6		6			11
	SBSi	23	21	1				1		13		4			6
	wow한국경제TV	2	2												2
	네이버	78	74	1		1	2			6					72
	네이트	62	59	2		1				4	1				57
	다음	61	57	1		1	2			4	1				56
	와우넷	1				1									1
	인터넷 K-TV	1	1												1
	인터넷 OBS경인TV	4	3	1						3					1
	인터넷 SBS CNBC	3	3										1		2
	인터넷 tvN	1					1								1
	인터넷 TV조선	6	5	1						6					
	인터넷 연합뉴스TV (인터넷 뉴스)	1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뉴스 서 비 스	인터넷 채널A	9	7			1	1			5		3			1
	인터넷 헬로티비은평뉴스	3	3							3					
	인터넷 JTBC	4	4							4					
	인터넷 MBN	18	16	1	1					7	1	1			9
	인터넷 SBS E	1		1											1
	인터넷 YTN	18	17	1						8					10
	총 계	20	19	1						2					18
	소 계	369	340	14	2	5	7	1		85	3	15	1		265
기타	평북민보	2	2							2					
	소 계	2	2							2					
계		2,433	2,252	82	5	23	45	26		916	111	295	20	2	1,089

11. 중재부별 처리결과

중재부를 서울과 지역으로 구분하여 신청효율을 살펴보면, 서울은 81.0%, 지역은 67.9%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제6중재부의 신청효율이 95.0%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서울제1중재부가 89.7%, 서울제4중재부가 89.3%의 신청효율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조정성 공률은 2013년 1~3월까지만 운영된 서울제7중재부를 제외하면, 서울제1중재부가 9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중재부(95.7%) 서울제6중재부(95.6%)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중재부의 경우 지역중재부에 비해 취하되는 사건의 수가 월등히 많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신청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서울의 경우, 포털 등이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함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전체 111건 중 약 83건(74.8%)이 서울 중재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중재부에서 내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경기중재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표 2-11]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처리결과

(2011. 1. 1. ~ 2013. 12. 31.)

구분 연도	중재부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11	서울1	179	61	20	6 (1)	31	7	2	52 (28)	68.6	76.0	64.7			
	서울2	163	68	4		14	13	4	60 (32)	83.7	86.5	71.2			
	서울3	303	93	4	5 (2)	13			188 (162)	84.3	92.3	86.1			
	서울4	334	139	8	4	39	1	2	141 (121)	77.4	82.6	81.0			
	서울5	143	29	9	2	38			65 (39)	48.7	64.8	53.8			
	서울6	165	68	3	10	15	2	2	65 (30)	74.0	88.1	62.7			
	서울7	178	38	1	1	49	11	2	76 (55)	43.8	56.6	57.0			
	소 계	1,465	496	49	28 (3)	199	34	12	647 (467)	70.6	79.5	71.5			
	부산	36	12	1		5			18 (6)	72.2	84.4	52.8			
	대구	26	5			6		2	13 (8)	45.5	66.7	54.2			
	광주	49	12	3	3	19			12 (2)	40.5	50.0	34.7			
	대전	33	16			11			6 (4)	59.3	63.3	60.6			
	경기	118	59		2	22	2		33 (23)	71.1	75.0	70.7			
	강원	18	8		1	5	2		2 (2)	57.1	68.8	62.5			
	충북	47	24	2	1	10	4		6 (2)	70.3	76.2	65.1			
	전북	28	10	4		4			10 (4)	77.8	83.3	64.3			
	경남	174	65	6	5				98 (62)	93.4	100.0	76.4			
	제주	130	18			4	2		106 (100)	81.8	91.3	92.2			
	소 계	659	229	16	12	86	10	2	304 (213)	71.4	82.6	70.8			
	계	2,124	725	64	41 (3)	285	44	14	951 (680)	70.9	81.7	71.3			
2012	서울1	253	64	4		78 (8)	7	5	95 (84)	46.6	58.1	66.4			
	서울2	223	71	6	4	37	9		96 (66)	65.3	78.9	66.8			
	서울3	314	114	6	1	25	3		165 (144)	82.2	87.7	84.9			
	서울4	285	76	6	3	24		1	175 (141)	75.2	86.5	78.5			
	서울5	246	73	18	24	49	4	1	77 (72)	55.5	73.2	67.6			
	서울6	238	86	8	4	45	1		94 (79)	65.7	76.7	73.0			
	서울7	224	65	1	13	36 (2)	12	4	93 (81)	57.4	75.7	71.6			
	서울8	49	8	5	2	7	3		24 (23)	59.1	74.1	78.3			
	소 계	1,832	557	54	51	301 (10)	39	11	819 (690)	63.4	76.7	73.6			
	부산	50	17	2		7	4		20 (11)	73.1	80.0	65.2			
	대구	29	15			6			8 (4)	71.4	76.9	65.5			
	광주	92	49	8	4	7			24 (16)	83.8	90.0	79.3			

구분 연도	중재부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대전	53	24		10	6			13	(13)	60.0	85.0	69.8		
	경기	119	43	3		43			30	(22)	51.7	60.2	57.1		
	강원	11	9			2					81.8	81.8	81.8		
	충북	55	23			16			16	(9)	59.0	60.0	58.2		
	전북	47	18	9		13	1		6	(1)	67.5	68.3	60.9		
	경남	80	27		1	20			32	(17)	56.3	66.7	55.0		
	제주	33	23			6			4	(4)	79.3	79.3	81.8		
	소 계	569	248	22	15	126	5		153	97	65.7	72.6	65.1		
	계	2,401	805	76	66	427	(10)	44	11	972	(787)	64.1	75.7	71.5	
2013	서울1	186	108		4			1		73	(58)	96.4	100.0	89.7	
	서울2	158	69		2	25			62	(44)	71.9	81.1	71.5		
	서울3	228	72	5	10	16	(1)	3		122	(108)	74.8	88.4	82.7	
	서울4	272	92	8	7	4			1	160	(142)	90.1	98.0	89.3	
	서울5	188	48	6	13	(1)	22	(9)	2	1	96	(79)	60.7	81.5	77.3
	서울6	286	146	6	3	4		8		119	(112)	95.6	97.6	95.0	
	서울7	16	7							9	(4)	100.0	100.0	68.8	
	서울8	472	132	11	8	117	(4)	5		199	(173)	53.4	61.8	68.5	
	소 계	1,806	674	36	47	(1)	188	(14)	19	2	840	(720)	75.1	84.5	81.0
	부산	69	29	2		6				32	(14)	83.8	89.1	65.2	
	대구	48	12		1	10				25	(13)	52.2	72.2	52.1	
	광주	78	29	4	1	10				34	(29)	75.0	84.8	79.5	
	대전	75	44			2		1		28	(9)	95.7	96.2	71.6	
	경기	195	78	6	7	49				55	(51)	60.0	68.2	69.2	
	강원	20	9			4				7	(6)	69.2	75.0	75.0	
	충북	37	19	4		4				10	(4)	85.2	86.7	73.0	
	전북	39	9	2	1	(1)	7			20	(9)	57.9	76.7	53.8	
	경남	63	13			13				37	(29)	50.0	55.2	66.7	
	제주	3				2				1		0.0	0.0	0.0	
	소 계	627	242	18	10	(1)	107		1		249	(164)	69.0	77.2	67.9
	계	2,433	916	54	57	(2)	295	(14)	20	2	1,089	884	73.4	82.5	77.6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제 3 장

손해배상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1. 손해배상사건수 및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조정성립이 32.9%,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4.1%, 조정 불성립결정이 15.4%, 취하가 46.8%, 기각이 0.8% 등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취하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신청인이 정정보도 등과 손해배상을 병합하여 청구했다가 조정심리를 통해 신청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정정보도 등이 이행되면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3-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사건수 및 비율

(2011. 1. 1. ~ 2013. 12. 31.)

연도	구분	전체 조정 청구건수	손해배상 청구건수
2011		2,124	804 (37.9)
2012		2,401	794 (33.1)
2013		2,433	784 (32.2)

* () 안의 숫자는 %

[표 3-2]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2011. 1. 1. ~ 2013. 12. 31.)

연도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1	804 (100)	255 (31.7)	18 (2.2)	16 [1] (2.0)	100 (12.4)	12 (1.5)	7 (0.9)	396 [290] (49.3)	70.2	81.6	71.3
2012	794 (100)	240 (30.2)	27 (3.4)	28 (3.5)	153 [2] (19.3)	16 (2.0)	3 (0.4)	327 [274] (41.2)	59.6	72.4	70.1
2013	784 (100)	258 (32.9)	17 (2.2)	15 (1.9)	121 [6] (15.4)	6 (0.8)		367 [300] (46.8)	66.9	78.4	74.7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 안의 숫자는 %

2. 청구액 및 조정액 현황

2013년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은 평균 6,000만 원으로 3년간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상담 단계에서 적절한 안내를 함으로써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재부의 조정액은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었는데, 중앙액은 175만 원이었고 평균액은 약 250만 원으로 2011년과 2012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손해배상 전담부 운영과 함께 적정한 손해배상을 위해 ‘손해배상액 산정 가감표’를 마련한 바 있으며, 조정사건 중 정정보도청구 다음으로 많은 청구건수를 보이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개 손해배상 전담부(서울제6중재부, 서울제8중재부)를 운영함으로써 손해배상 사건이 더욱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손해배상액 산정 가감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중재부는 각 산정요소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사실조회, 현장조사 등의 증거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표 3-3]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현황

(2011. 1. 1. ~ 2013. 12. 31. 단위 : 원)

연 도 \ 구 분	최 저 액	최 고 액	평 균 액	중 앙 액
2011	100,000	50,000,000,000	279,208,198	20,000,000
2012	10,000	3,418,600,000	74,250,871	30,000,000
2013	100,000	5,815,000,000	60,756,386	20,000,000

[표 3-4]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2011. 1. 1. ~ 2013. 12. 31. 단위 : 원)

연 도 \ 구 분	최 저 액	최 고 액	평 균 액	중 앙 액
2011	100,000	20,000,000	2,147,826	1,350,000
2012	300,000	10,000,000	1,895,000	1,500,000
2013	100,000	20,000,000	2,532,000	1,750,000

[표3-5]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분포 현황

(2011. 1. 1. ~ 2013. 12. 31.)

연도 \ 구분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500만 원 미만	500만 원~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	합 계
2011	15 (31.3)	20 (41.7)	10 (20.7)	2 (4.2)	1 (2.1)	48 (100.0)
2012	9 (16.7)	17 (31.5)	25 (46.3)	1 (1.9)	2 (3.6)	54 (100.0)
2013	13 (14.9)	27 (31.0)	35 (40.2)	7 (8.1)	5 (5.8)	87 (100.0)

■ 손해배상사례 1 [사생활 침해]

모 인터넷신문은 국내 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특정 여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보도했다.

이로 인해 해당 인터넷신문은 신청인에게 4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동시에 보도와 관련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기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손해배상사례 2 [초상권 침해]

모 공중파방송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을 보도하면서 오피스텔 분양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하여 마치 이들이 범죄자인 것처럼 방송했다.

이로 인해 해당 방송사는 정정보도와 함께 신청인들에게 방송에 노출된 초상 및 노출시간 정도에 따라 신청인별로 각 7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씩, 모두 1,8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침해 유형별 손해배상 조정액을 보면, 명예훼손의 경우 최고 2,000만 원, 최저 10만 원, 평균 약 317만 원, 초상권 침해의 경우는 최고 1,800만 원, 최저 50만 원, 평균 253만 원, 음성권 침해의 경우는 최고 100만 원, 최저 100만 원, 평균 100만 원 정도였다. 사생활 침해의 경우는 최고 400만 원, 최저 50만 원, 평균 약 178만 원이었다. 특히 명예훼손에 대한 최고액과 평균액, 중앙액은 다른 침해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6] 2013년도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013. 1. 1. ~ 2013. 12. 31. 단위 : 원)

침해유형 \ 조정액	인용 빈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명예훼손	34	100,000	20,000,000	3,172,000	2,000,000	1,000,000
초상권 침해	32	500,000	18,000,000	2,530,000	1,500,000	2,000,000
음성권 침해	2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19	500,000	4,000,000	1,786,000	1,500,000	1,000,000

3.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손해배상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6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초상권 침해 76건, 사생활 침해 38건, 성명권 침해 19건, 재산상 손해 13건, 음성권 침해 5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 2013년도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3. 1. 1. ~ 2013. 12. 31.)

구 분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명예훼손	633 (100)	199 (31.5)	24 (3.8)	114 (18.0)	4 (0.6)		292 (46.1)
초상권 침해	76 (100)	30 (39.5)	5 (6.6)	3 (3.9)	1 (1.3)		37 (48.7)
음성권 침해	5 (100)	4 (80.0)					1 (20.0)
성명권 침해	19 (100)	5 (26.3)					14 (73.7)
사생활 침해	38 (100)	18 (47.4)	3 (7.9)	2 (5.2)			15 (39.5)
재산상 손해	13 (100)	2 (15.4)		2 (15.4)	1 (7.7)		8 (61.5)
기 타							
계	784 (100)	258 (32.9)	32 (4.1)	121 (15.4)	6 (0.8)		367 (46.8)

* () 안의 숫자는 %

* 2011년부터 침해유형 중 기존 신용훼손은 재산상 손해로 변경됨

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개인의 신청이 총 54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가기관의 경우 2013년에 2건이 청구되어 모두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는 국가기관이 설득력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언론사도 주요 취재원인 국가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표 3-8] 2013년도 손해배상청구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013. 1. 1. ~ 2013. 12. 31.)

구 분 신청인유형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은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개 인	549 (100)	178 (32.4)	21 (3.8)	65 (11.9)	4 (0.7)		281 (51.2)
국가기관	2 (100)	2 (100)					
지자체	9 (100)	3 (33.3)		3 (33.3)			3 (33.3)
공공단체	21 (100)	8 (38.1)		1 (4.8)			12 (57.1)
일반단체	78 (100)	26 (33.3)	1 (1.3)	30 (38.5)	2 (2.5)		19 (24.4)
종교단체	9 (100)	2 (22.2)	1 (11.1)				6 (66.7)
기업체	91 (100)	32 (35.2)	3 (3.3)	20 (22.0)			36 (39.5)
언론사	16 (100)	5 (31.0)	5 (31.0)	2 (13.0)			4 (25.0)
교육기관	9 (100)	2 (22.2)	1 (11.1)				6 (66.7)
계	784 (100)	258 (32.9)	32 (4.1)	121 (15.4)	6 (0.8)		367 (46.8)

* () 안의 숫자는 %

제 4 장

인터넷신문 대상 조정신청 및 처리현황

인터넷신문은 2005년 하반기에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정·중재 대상 매체에 새로 포함되었다.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신청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¹⁾ 2013년도는 1,130건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0건을 상회하게 되었다. 전체 신청사건에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상승세가 계속되었는데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선 46.4%를 기록했다. 신청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1] 최근 3년간 인터넷신문 대상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1. 1. 1. ~ 2013. 12. 31.)

구분 연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1	705 (100)	230 (32.7)	22 (3.2)	19 [1] (2.7)	81 (11.5)	10 (1.4)	4 (0.5)	339 [254] (48.0)	71.6	82.4	73.4
2012	945 (100)	348 (36.8)	26 (2.8)	23 (2.4)	157 [4] (16.7)	18 (1.9)	5 (0.5)	368 [310] (38.9)	67.5	76.5	74.6
2013	1,130 (100)	420 (37.2)	20 (1.8)	29 [1] (2.5)	139 [2] (12.3)	5 (0.4)		517 [443] (45.8)	72.4	81.4	78.8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 안의 숫자는 %

1) 인터넷 신문의 경우, 2005년에는 전체 청구건수의 5.4%에 불과했으나 2011년 33.2%, 2012년 39.4%, 2013년 46.4%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수 년 동안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한 조정사건이 급증한 이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09년 8월 7일 시행)에 따라 그동안 조정·중재대상 매체가 아니었던 언론사닷컴이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 5 장

인터넷뉴스서비스 대상 조정신청 및 처리현황

2009년 개정 언론중재법의 시행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포털 및 방송사닷컴)도 조정 · 중재대상 매체에 새로이 포함되었다.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포털 등의 전자간행물을 의미하며, 언론중재법 시행령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 개념의 지나친 확대로 인한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은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외시켰다.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신청건수는 2011년 510건, 2012년 454건, 2013년 369건으로 최근 3년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인링크²⁾ 기사와 아웃링크³⁾ 기사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아웃링크 기사의 경우 기사제공언론사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게시하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도 자동으로 이를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신청인들은 아웃링크 기사에 대해 별도로 조정을 신청할 실익이 없다고 여기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의 인링크 기사에 대해서만 조정을 신청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에 대한 조정신청 건수를 감소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또한 일부 인터넷뉴스서비스사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포털 시장에 과점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뉴스 소비 역시 두세 개 대형 인터넷뉴스서비스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도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신청 건수를 감소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분석된다.

2) 인링크 : 기사제공언론사가 제공한 보도를 포털이 자사의 뉴스섹션에 별도로 게재함

3) 아웃링크 : 포털에서 검색된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제공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사로 링크를 시켜줌

[표 5-1] 최근 3년간 인터넷뉴스서비스 대상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1. 1. 1. ~ 2013. 12. 31.)

구분 연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1	510 (100)	150 (29.5)	10 (1.9)		38 (7.5)		1 (0.2)	311 [288] (60.9)	80.8	87.1	88.0
2012	454 (100)	84 (18.5)	4 (0.9)	6 (1.3)	24 (5.3)	5 (1.1)	1 (0.2)	330 [290] (72.7)	74.6	89.8	84.4
2013	369 (100)	85 (23.0)	2 (0.5)	1 (0.3)	15 [4] (4.1)	1 (0.3)		265 [237] (71.8)	84.5	92.5	89.1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 안의 숫자는 %

2013년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사건을 처리결과에 따라 살펴보면 취하가 265건(71.8%)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기사제공언론사를 상대로 한 조정청구가 조정성립 등으로 원만히 처리될 경우, 기사제공언론사의 기사를 게재한 포털에서도 신속하게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포털을 상대로 한 청구가 취하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는 조정성립 85건(23.0%), 조정불성립결정 15건(4.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건(0.8%) 등의 순이었다.

제 6 장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중재제도는 당사자 합의를 우선시 하는 조정과는 달리 중재부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중재결정을 내려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도입 이후 2008년까지 위원회가 처리한 중재건수는 모두 31건으로 제도 활용이 다소 미진했으나 2009년부터 위원회 중점추진과제로 중재제도 활성화를 선정하고 중재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9년 111건, 2010년 77건, 2011년 113건, 2012년 59건, 2013년 190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중재제도는 사실관계가 명백한 사건이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요구되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에 관련된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 침해 유형별 현황

2013년 신청된 중재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190건 중 188건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그 외에는 사생활 침해가 2건 있었다.

[표 6-1]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중재사건 청구현황

(2011. 1. 1. ~ 2013. 12. 31.)

구 분 연 도	청구 건수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성명권 침해	음성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2011	113	112	1					
2012	59	56	3					
2013	190	188				2		

2. 청구권별 현황

중재사건을 청구권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정정청구가 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반론청구가 59건, 추후청구가 33건, 손해청구가 21건을 차지했다. 그 결과 188건의 중재결정과 2건의 중재화해결정이 내려졌다.

[표 6-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중재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

(2011. 1. 1. ~ 2013. 12. 31.)

구 분 연 도	청 구 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2011	정 정	63	60				3	
	반 론	27	24				3	
	추 후	12	12					
	손 배	11	11					
	계	113	107				6	
2012	정 정	31	31					
	반 론	16	16					
	추 후	7	7					
	손 배	5	5					
	계	59	59					
2013	정 정	77	77					
	반 론	59	59					
	추 후	33	33					
	손 배	21	19	2				
	계	190	188	2				

3. 매체 유형별 현황

2013년 신청된 중재사건을 매체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에 대한 중재 건수가 104건(54.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가 72건(37.9%)을 차지했으며 뉴스통신, 방송 등 타 매체는 14건(7.4%)으로 나타났다. 2012년까지 중재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인터넷신문 등 일반매체에 대한 중재사건은 크게 증가했다.

[표 6-3]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중재사건 청구현황

(2011. 1. 1. ~ 2013. 12. 31.)

구 분 연 도	청구건수	인터넷 뉴스서비스	인터넷신문	신 문	뉴스 통신	방 송	잡 지
2011	113 (100)	99 (87.6)	8 (7.1)	3 (2.7)	2 (1.8)	1 (0.8)	
2012	59 (100)	51 (86.4)	4 (6.8)		1 (1.7)	2 (3.4)	1 (1.7)
2013	190 (100)	72 (37.9)	104 (54.7)	2 (1.1)	8 (4.2)	4 (2.1)	

* () 안의 숫자는 %

제 7 장

자동소제기 현황

2013년 위원회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가 신청되어 자동소제기가 된 사건은 모두 57건이었다. 그 중 법원에서 인용된 사건이 21건, 취하가 11건, 기각, 각하가 7건,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 18건이다.

[표 7-1] 최근 3년간 자동소제기 현황 및 1심 법원 판결결과 현황

(2011. 1. 1. ~ 2013. 12. 31.)

구분 연도	건수	청구명				이의신청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추후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 각하	계속
2011	38	23		15		6	30	2	20	11	7	
2012	64	33	3	28		26	28	10	29	13	22	
2013	57	41	1	14	1	10	42	5	21	11	7	18
계	159	97	4	57	1	42	100	17	70	35	36	18

자동소제기된 사건을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신문인 전자신문 인터넷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방송인 MBC-TV와 인터넷 신문인 일요닷컴이 각각 4건, 잡지인 월간조선과 인터넷 신문인 인터넷 월간조선이 각각 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7-2] 2013년도 매체별 자동소제기현황

(2013. 1. 1. ~ 2013. 12. 31.)

매체 유형	매체명	건수	청 구 명				이의신청인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추후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 각하	계속
중앙 일간지	국민일보	1	1					1			1		
	동아일보	2	1			1		2		2			
	문화일보	2	1		1			2			2		
	조선일보	1	1				1						1
	한국일보	1	1					1				1	
지역 일간지	부천신문	1	1					1				1	
	연수신문	2	1		1		2			2			
특수 일간지	전자신문	2	2					2			2		
지역 주간신문	대가야신문	1	1					1			1		
	완주 군민신문	1	1				1			1			
시사 주간지	시사저널	2	1		1				2				2
중앙 방송	MBC-TV	4	3		1			3	1			1	3
	SBS-TV	1	1				1						1
종합편성 채널	MBN	1			1			1			1		
잡지	월간조선	3	2		1			3		3			
뉴스 통신	뉴스1코리아	2	1		1			2		2			
인터넷 신문	1-김포뉴스	1	1					1				1	
	뉴데일리	2	1		1		2			1		1	
	뉴스타파	1	1					1					1
	동아닷컴	1	1					1		1			
	무안新安 인터넷뉴스	1	1					1					1
	민중의소리	1			1			1					1
	서대문 인터넷뉴스	2	1		1				2				2
	시민일보 인터넷	2	2					2					2

매체 유형	매체명	건수	청 구 명				이의신청인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추후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 각하	계속
인터넷 신문	인터넷 크리스천 투데이	1	1					1		1			
	인터넷 부천신문	1	1					1				1	
	인터넷 연수신문	2	1		1		2			2			
	인터넷 월간조선	3	2		1			3		3			
	인터넷 한국일보	1	1					1				1	
	일요닷컴	4	2	1	1			4		3			1
	전자신문 인터넷	5	5					5			3		2
	조선닷컴	1	1				1						1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인터넷 MBN	1			1			1			1		
계		57	41	1	14	1	10	42	5	21	11	7	18

▶ 연도별 언론조정 ·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

조 정

(1981. 3. 31. ~ 2013. 12. 31.)

구분 연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동의	같은하는 이의	결정 계속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1981	44	9				12 (5)	1	2	20 (2)		42.9	39.0
1982	50	19				19 (5)		2	10 (4)		50.0	58.3
1983	71	21				22 (7)	1	1	26 (8)		48.8	52.2
1984	54	12				29 (8)	3		10 (5)		29.3	49.0
1985	59	12				28 (5)	4		15 (7)		30.0	43.6
1986	49	14				10 (2)	1		24 (11)		58.3	56.3
1987	47	10				9 (4)	1		27 (2)		52.6	34.8
1988	55	16				12 (5)		1	26 (13)		57.1	63.0
1989	121	29				35 (10)		6	51 (21)		45.3	52.2
1990	159	42				43 (10)	1	2	71 (40)		49.4	59.0
1991	220	52				48 (9)	3	1	116 (43)		52.0	48.1
1992	381	81				79 (12)	19		202 (107)		50.6	55.2
1993	423	132				96 (16)	8	2	185 (84)		57.9	56.2
1994	541	162				127 (10)	7		245 (128)		56.1	56.2
1995	528	111				150 (25)	26	3	238 (124)		42.5	52.1
1996	556	129	2	7 (1)		169 (21)	9	1	239 (137)		42.7	53.1
1997	490	161	10	5 (1)		79 (13)	8	4	223 (108)		67.1	61.3
1998	602	226	14	10 (2)		97 (8)	5		250 (106)		69.2	59.6
1999	641	244	11	18 (2)		102 (17)	24	5	237 (92)		68.0	59.8
2000	607	198	10	15 (2)		66 (10)	14	2	302 (156)		72.0	63.6
2001	659	229	6	23 (3)		132 (27)	18	2	249 (133)		60.3	62.3
2002	511	182	18	17 (3)		62 (9)	8	1	223 (101)		71.7	62.4
2003	724	287	15	15 (1)		101 (11)	27	3	276 (158)		72.2	68.0
2004	759	283	46	22 (6)		140 (12)	13		255 (148)		67.0	66.4
2005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64.5	62.4
2006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3	60.6
2007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2.8	64.8
2008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5.5	72.9
2009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82.6	73.9
2010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9.0	79.2
2011	2,124	725	65	40 (3)		285	44	14	951 (680)		70.9	71.3
2012	2,401	805	76	66		427 (10)	44	11	972 (787)		64.1	71.5
2013	2,433	916	54	57 (2)		295 (14)	20	2	1,089 (884)		73.4	77.6
계	23,054	7,726	619	471 (34)		3,645 (301)	807	114	9,672 (6,245)		67.0	67.4
	100.0%	33.5%	2.7%	2.0%		15.8%	3.5%	0.5%	42.0%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을 같은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중 재

(2005. 7. 28. ~ 2013. 12. 31.)

구 분 연 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2006	7	7					
2007	14	14					
2008	10	10					
2009	111	65	46				
2010	77	76		1			
2011	113	107				6	
2012	59	59					
2013	190	188	2				
계	581	526	48	1		6	
	100.0%	90.5%	8.3%	0.2%		1.0%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의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향후 유사한 보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치로, 언론사의 자율규제나 조정·중재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의 역할을 해왔다.

2012년에 위원회는 시정권고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TF팀을 구성하여 시정권고 효과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11년 11월 제정한 ‘시정권고 결정문 등의 송부에 관한 예규’에 따라 분기별·반기별로 언론사에 시정권고 결정현황 등을 꾸준히 송부해오고 있다.

1. 침해 유형별 분석

2013년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보도에 시정을 권고한 건수는 59건으로 2012년 53건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2013년 한 해 동안 피의자·피고인 신원을 공개해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보도는 35건(12.1%)으로 개인적 법익침해 유형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나 전년도(40건)에 비해 다소 줄었다. 이에 비해 사생활을 침해하여 시정을 권고한 건수는 2012년 5건에서 2013년 23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보도 중 마약 및 약물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2011년 95건, 2012년 116건으로 크게 늘었으나 2013년에 89건으로 감소했다. 또한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은 2011년 189건에서 2012년 49건으로 감소했다가 2013년에는 78건으로 증가했다.

[표 1-1]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1. 1. 1. ~ 2013. 12. 31.)

연도	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 등	마약 및 약물 보도	자살 관련 보도	범죄 수법 상세 묘사	기타 (혐오 감 등)	
2011	426 (100)	2 (0.5)		100 (23.5)		36 (8.5)	95 (22.3)	189 (44.4)	4 (0.9)		
2012	259 (100)	5 (1.9)	3 (1.2)	40 (15.4)		5 (1.9)	116 (44.8)	49 (18.9)	40 (15.4)	1 (0.4)	
2013	289 (100)		1 (0.3)	35 (12.1)		23 (8.0)	89 (30.8)	78 (27.0)	31 (10.7)	32 (11.1)	

* () 안의 숫자는 %

2. 매체 유형별 분석

2013년 한 해 동안 내려진 289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매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이 187건(64.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간지 73건(25.3%), 뉴스통신 27건(9.3%), 주간지 2건(0.7%), 월간지 0건(0.0%) 순으로 나타났다.

시정을 권고한 언론사 중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9.3%, 2012년 61.8%, 2013년 64.7%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전체 심의대상 매체 중 인터넷신문의 수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인터넷신문 가운데 다수를 이루는 신생 매체가 각종 법익 침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사를 작성하거나 지면 제한이 없다는 특성에 기인하여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한 선정적인 보도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표 1-2]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1. 1. 1. ~ 2013.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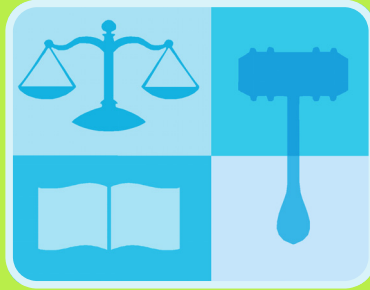
구 분 연 도	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일간지		월간지	주간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방 송
		중앙 일간지	지역 일간지					
2011	426 (100)	46 (10.8)	60 (14.1)	1 (0.2)	20 (4.9)	41 (9.6)	253 (59.3)	5 (1.2)
2012	259 (100)	51 (19.7)	23 (8.9)	1 (0.4)	3 (1.2)	21 (8.1)	160 (61.8)	
2013	289 (100)	29 (10.1)	44 (15.2)		2 (0.7)	27 (9.3)	187 (64.7)	

* () 안의 숫자는 %

[표 1-3] 연도별 시정권고현황

(1981. 3. 31. ~ 2013. 12. 31.)

연도	구분	침 해 유 형										종 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일간 지	주간 지	월간 지	뉴스 통신	인터 넷 신문	방송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 공개	사생활 침해 등	마약 용량 용법 등 공개	자살 관련 보도	범죄 수법 상세 묘사	기타 (혐 오감 등)							
1981																	
1982																	
1983	3									3		1	2				
1984																	
1985																	
1986	3					3								3			
1987	6	2				4						3	2	1			
1988	37	9		3		16				9		29	2	2	4		
1989	180	52		92		36						173	1		6		
1990	311	63		169	12	67						301	1		9		
1991	264	70		140	16	34	1			3		247	8	3	6		
1992	390	123		227	3	34				3		379			11		
1993	344	106		228		10						336	1		7		
1994	204	58		132		7	7					195	1		8		
1995	282	29		131			121			1		271	1		10		
1996	310	26	8	122	22	11	117	4				304		1	5		
1997	469	21	78	76	182	2	109			1		461	1		7		
1998	348	16	14	29	151		137	1				336	2	2	8		
1999	240	17	11	20	126		66					234			6		
2000	234	54	6	8	67	2	97					213	4		17		
2001	231	22	10	9	70	1	119					211	7		13		
2002	142	9			88	1	44					129	1		12		
2003	237	13	1	41	153	2	20			7		219	2		16		
2004	283	7	1	114	68	2	52	21		18		247	14	1	21		
2005	278	11		88	24	10	47	85		13		246	8	1	19	3	1
2006	190	4	2	69	22	3	10	73	6	1		150	9		15	16	
2007	202	1	2	80	21	14	30	44		10		127	11	1	20	43	
2008	289	4		48	8	30	27	97	62	13		124	19	1	31	112	2
2009	253		1	97	6	15		93	2	39		57	15		20	132	29
2010	284	2		49	2	10	4	199	17	1		96	14	5	20	149	
2011	426	2		100		36	95	189	4			106	20	1	41	253	5
2012	259	5	3	40		5	116	49	40	1		74	3	1	21	160	
2013	289		1	35		23	89	78	31	32		73	2		27	187	
계	6,988	726	138	2,147	1,041	378	1,308	933	162	155		5,342	151	23	380	1,055	37
	100.0%	10.4%	2.0%	30.7%	14.9%	5.4%	18.7%	13.4%	2.3%	2.2%		76.4%	2.2%	0.3%	5.4%	15.1%	0.5%



제 2 부

주요 언론조정 · 중재 사례

- 제2부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2013년 한 해 동안 접수 · 처리한 총 2,433건의 조정사건과 190건의 중재사건 중 50건의 주요 사례를 선별하여 수록합니다. 주요 사례는 언론조정 · 중재사건이 접수된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수록되었습니다.
- 연구 목적으로 인용하고자 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실명 또는 익명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사 례 1

국내 한 제약회사가 자사의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신고한 전직 직원을 협박했다고 보도하면서 신고자인 신청인의 신원과 사생활을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36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3. 01. 15.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국내의 한 제약회사가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수사기관에 폭로한 전 직원과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사생활을 공개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보도를 통해 제보자인 본인의 신원과 여자관계 등이 드러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으며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인터넷 경향신문 :** 『○○제약, 내부제보자 입 막으려 이런 짓까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1일자)
- **내 용 :** 국내 ○위 제약업체인 ○○제약 전·현 임직원 7명이 구매대행(에이전시) 업체를 기고 전국 병·의원에 수십억 원대 리베이트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시행된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제약은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제보자에 대한 협박을 일삼고 증거자료 삭제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10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제약 허 모 전무(55)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박 모 전 상무(56)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제약과 계약을 맺고 리베이트 제공 역할을 맡은 에이전시 4곳의 대표이사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400여개 거래처 병·의원에 48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제약은 정부의 리베이트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능화된 수법을 사용했다. 과거 영업사원을 통해 병·의원에 현금이나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단순한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서는 판촉을 대행하는 에이전시 4곳을 내세워 금전 외에 물품이나 용역 등을 제공하고 인터넷 강의료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됐다.

○○제약은 에이전시(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리베이트 대상 병원 원장들에게 1,1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1,600만 원 상당의 오디오 세트를 제공했다.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병원 원장 자녀의 어학연수비 1,400만 원과 병원 소속 의사 가족의 해외여행비 790만 원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해 병원 소속 의사에게 강의를 부탁한 뒤 강의료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무상 제작해주거나 병원의 지하철·버스 광고비를 대신 내준 사례도 있었다.

특히 ○○제약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내부 제보자의 입을 막기 위해 제보자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는 등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 차장 정 모 씨(44)는 퇴사한 직원 이 모 씨가 지난해 9월 언론사와 수사기관에 제보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씨 집을 방문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수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가 말을 듣지 않자 정씨는 본격적인 협박에 나섰다. 정씨는 이씨의 여성 관계 관련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이씨를 불러낸 후 “노트북 복원을 다했는데 재미있는 자료(피해자 여성관계 관련자료)가 많더라. 내일 경찰관 대동하고 잡으러 올 것”이라며 그를 협박했다. 정씨는 이어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면 네가 지은 죄에 대해 법무법인 통해 끝까지 고소하겠다.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게 하겠다”고 공갈을 쳤다.

정씨는 심지어 이씨의 가족에 대해서도 협박을 시도했다. 정씨는 이씨의 부인 박 모 씨를 찾아가 “남편이 언론과 검찰에 제보했다는데 사실이냐, 아니면 남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해달라, 아니면 제보한 것으로 알고 남편을 구속시키겠다. 이미 구속영장 청구한 상태다”며 이씨가 작성한 각서를 보여줬다. 각서에는 ○○제약DCC와 관련된 자료를 일체 누설하지 않고 이를 어기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정씨는 각서를 메시지로 부인에게 전송하며 “(이씨의) 노트북 자료를 보면 가정파탄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도 했다.

줄기찬 회사의 협박에 이씨는 결국 굴복했다. 정씨는 서울 서초동의 한 일식집에서 이씨를 만나 자필로 미리 워드까지 작성해 준비한 진정취하서와 A4 2장을 내밀었다. 정씨가 내민 취하서에는 ‘권고사직까지 당하는 바람에 서운한 마음에 복수심만 불탔기 때문에, ○○제약에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제가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주로 관련 직원으로부터 들었거나 업계에 떠도는 소문 등을 토대로 재정리 하였던 자료라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순간적인 감정에 복받쳐 제가 근무했던 회사를 음해하게 되었다는 책임을 통감하고 종전에 했던 진정 내용은 제 추측에 기하였던 점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진정취하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씨는 이씨가 쓴 취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냈다.

○○제약은 증거 인멸에도 나섰다. ○○제약은 올해 10월 서울 ○○동 ○○제약 본사에 리베이트전담수사반의 압수수색팀이 들이닥치자 서버에서 처방금액 100만 원 이상의 일반병원 의약품 처방현황 자료와 종합병원 의약품 처방현황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년 2월 4일까지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신청인은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1. 28.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사 례 2

경찰관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권자를 협박하는 등 금전비리 혐의로 해임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사 건 : 2013서울조정119·120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3. 02. 01.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근무하는 신청인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여 채권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소속 경찰서 서장이 본인을 공갈 등으로 직무 고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신청인에 대한 허위투서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일이며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히며 추후보도 및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무혐의 사실을 알리는 추후보도를 게재함과 동시에(조정성립사항 1. 참조), 보도내용이 지나치게 단정적임을 인정해 신청인에게 7,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조정성립사항 2. 참조)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경찰이 조직폭력배 동원...협박해 돈 갈취』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30일자 20:00)

■ **내 용 :** ▷ 앵커 :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찰들이 협박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잇따라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폭력조직원을 동원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찰이 있는가 하면 뺑소니 피의자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은 경찰도 있습니다. 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중고차 매매업을 하던 32살 김 모 씨는 지난해 6월 지인을 통해 서울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정 모 경위를 만났습니다.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정 경위는 김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김 모 씨(피해자) : (돈을 빌려달라고) 하루에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씩 잡아놓고 아니면 전화를 몇 십번 한다든지….

▷ 기자 : 수백만 원씩 빌려준 돈은 모두 1천5백만 원, 이 가운데 정 경위는 6백만 원은 차일피일 미루며 결국 갚지 않았습니다.

또 정 경위는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이 모 씨에게 9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 씨는 정 경위가 돈을 갚지 않자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 정 경위는 폭력조직원들과 함께 이 씨를 찾아와 할부금을 대신 내라고 협박하고 2백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 이 모 씨(피해자) : 저희 집에 수차례 찾아와서, 집 앞에 잠복하고 조직폭력배들과 오고 그래서 (돈을 주었습니다).

▷ 기자 : 정 경위는 결국 내부감찰에 적발돼 해임됐습니다. 교통사고조사계 소속의 또 다른 경찰도 뺑소니 사고 피의자를 협박해 3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파면됐습니다. 직원 비리가 잇따르자 ○○경찰서장은 5년 이상 교통사고조사계에 근무한 직원 8명을 모두 전보조치했습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추후보도문을 SBS-TV 〈SBS 8 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송 진행자(앵커)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가. 제 목 : 〈“조직폭력배 동원… 협박해 돈 갈취한 경찰” 보도내용 무혐의로 밝혀져〉

나. 본 문 : 본 방송은 2011년 5월 30일 〈SBS 8 뉴스〉 프로그램에 “돈을 갚지 않겠다며 조직폭력배를 동원하고, 돈을 뜯기 위해 협박도 서슴치 않은 경찰이 있습니다. 영화 속 부패 경찰 얘기가 아닙니다” 라는 내용으로 서울○○경찰서 소속 교통조사계 정 모 경위가 해임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경찰서장이 정 모 경위를 공갈 등으로 직무고발한 사실이 있으나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서울○○경찰서 교통조사계 정 경위는 2012년 11월 14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1. 보도문

가. 제 목 : ‘경찰이 조직폭력배 동원... 협박해 돈 갈취’ 관련, 추후보도문

나.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11년 5월 30일자 SBS 8시뉴스 프로그램 ‘경찰이 조직폭력배 동원... 협박해 돈 갈취’ 제하의 보도에서 “서울○○경찰서 교통조사계 정 모 경위가 조폭을 동원하여 특정인을 협박, 돈을 갈취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정 경위는 위 내용과 관련 2012년 11월 14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3년 2월 22일까지 <SBS 8시 뉴스> 프로그램 말미(기상정보 전)에 진행자의 멘트로 보도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한다. 또한 제1항의 보도문을 SBS 홈페이지 원 조정대상보도 하단에도 박스처리하여 별도 게재하고, 해당 보도문을 네이버, 네이트 등 포털에도 전송하여 노출되도록 한다.
3.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피신청인이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 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013. 02. 13.

조정성립사항 2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년 2월 28일까지 금 7,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향후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그들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2. 18.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1

-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추후보도문] ‘경찰이 조직폭력배 동원…협박해 돈 갈취’ 관련』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22일자 20:00)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1 참조>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2

손해배상금 7,000,000원 지급

사 례 3

신청인 회사가 산업폐기물인 절삭유 등이 함유된 알루미늄 부산물을 그대로 방치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경남조정1·2, 2013경남조정3·4(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 주식회사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남도민신문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13. 02. 05.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가 산업폐기물을 방치해 연마유, 절삭유 등 엄청난 양의 독극물이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알루미늄 분철은 독극물이 아닌 재활용품이고, 절삭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사천시청의 현장 확인 결과 절삭유 등이 흐르거나 흘러보낸 흔적이 없었음이 확인됐으며, 정정보도 및 총 2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1

■ **경남도민신문** : 『사천 알미늄부산물업체 환경오염 심각』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3일자 3면)

■ **내 용** : 행정의 이원화로 산업폐기물을 아무렇게나 방치해 1년 여 동안 연마유와 절삭유 등 엄청난 양의 독극물이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켜도 단속은커녕 사천시 관계자는 연마유와 절삭유가 지정 폐기물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업체만 두둔해 주변의 빈축을 사고 있다.

사천시는 ○○면 ○○리 ○○-○ 외 1필지에 2012년 1월 1일자로 알루미늄 부산물을 압연·압출 및 연산제품 제조업을 하는 ○·○○○·○○(주)에 공장등록을 허가했으나 그 제품 속에 함유된 연마유와 절삭유 금속가공물은 지정폐기물로서 낙동강유역 환경관리청에서 등록 후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지도 및 단속한 사실도 없고 교육조차 시킨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업체는 ○○○로부터 기름이 함유된 알루미늄 부산물을 일반쓰레기 수거차량으로 싣고 와 시멘트 바닥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쌓아두고 생산된 제품마저도 바깥에 그대로 방치해 기름이 흘러내리는데도 사천시나 낙동강유역 환경관리청에서 단 한 차례도 단속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천시 폐기물관리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확인하고도 업체를 두둔하면서 기자에게 폐기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등 단속의지가 전혀 없는 가운데 유분의 80~90%는 바닥에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상태다.

○·○○○·○○(주)은 지난해 12월 27일자로 7000kg을 김해시 ○○읍 ○○리에 주소를 둔 (주)○○○○에 위탁처리를 했으나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은 폐기되는 유량이 맞는지 그 어떤 조치도 없는 채 묵인하고 넘어가고 있다.

아울러 시 행정당국은 ○·○○○·○○(주)가 ○○○에서 가져오는 연마유와 절삭유가 얼마만한 양이 사용되고 얼마만한 양이 수거됐는지를 확인해야 무단방출을 막을 수 있지만 이조차 따지질 않고 있는데다 이원화된 행정에 단속공무원마저 업체를 두둔하고 있어 1년에 엄청난 양의 유분이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정대상보도 2

-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 『사천 알미늄부산물업체 환경오염 심각』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2일자)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1. 경남도민신문의 건

가. 피신청인은 2013년 1월 23일 경남도민신문 사회(3)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1)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인 “사천 알미늄 부산물 업체 환경오염심각”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인터넷 경남도민신문의 건

가. 피신청인은 인터넷 경남도민신문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2)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 (2)가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 (2)를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가. 제 목 : “사천 알미늄부산물업체 환경오염심각” 관련 정정보도문

“○○○○○○(주) 연마유 절삭유 마구 흘려보내” 관련 사실과 다르며 발생한 절삭유는 적법절차를 밟아 배출하였으므로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본 신문은 2013년 1월 23일자 사회(3)면에 “사천 알미늄부산물업체 환경오염심각”이라는 제목으로

① “산업폐기물을 아무렇게나 방치해 1년 여 동안 연마유와 절삭유 등 엄청난 양의 독극물이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켜”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알루미늄 분철은 독극물이 함유된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재활용품으로서 2012년 12월 기준 톤(TON)당 단가가 1,106,000원으로 매입하였으며 알루미늄 분철에 묻어있는 절삭유를 압축하여 발생한 절삭유는 적법 처리하여 폐기물관리대장에 명백한 자료가 있어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킨 사례가 없음이 확인된 바 해당기사를 바로잡습니다.

② “사천시 관계자는 연마유와 절삭유가 지정 폐기물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업체만 두둔해 주변의 빈축을 사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는데, 그러나 ○○○○○○○(주)가 위탁한

경상남도 환경연구원 폐기물 검사결과에 의하면 기름성분 1%~1.6%로 나타났고 피신청인 김○○ 기자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고발하여 알루미늄 분철 시료를 채취하여 가져간 후 분석한 시료분석결과서에 따르면 기름성분 0.8%로 나타났으며 지정폐기물기준 기름성분 5%이상일 때 지정폐기물을 인정하게 되나 그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나 폐수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폐수처리 업체가 없어 할 수 없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지정폐기물로 배출신고를 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대하여 사천시 관계자가 업체를 두둔하였다는 사실무근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③ “특히 이 업체는 ○○○로부터 기름이 함유된 알루미늄 부산물을 일반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싣고 와 시멘트 바닥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쌓아두고 생산된 제품 마저도 바깥에 그대로 방치해 기름이 흘러내리는데도 사천시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단 한 차례도 단속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하였는데, 그러나 알루미늄 분철은 대부분 공장건물 내부에 적재하게 되나 수거 물량이 많아 부득이 공장 내 콘크리트 바닥에 적재하고 쾌청한 날씨에는 수분이 증발되도록 놔두는 경우는 있지만 철저하게 비를 맞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보관하였으며, 피신청인 김○○ 기자가 사천시청 환경과에 고발하여 환경과 직원 4명이 현장에 와서 절삭유가 흘러내리는 흔적을 찾아보았지만 찾아볼 수 없었고, 우기시를 대비한 시정조치를 하여 신청인은 보관하기 수월하게 공장건물을 증축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현재 사천시청에 건물 허가를 신청 중이며 그 후 피신청인 김○○ 기자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고발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 직원 2명이 단속하러 왔을 때도 절삭유를 흘려보낸 흔적을 찾지 못하였지만 우기시 대비할 수 있는 주의사항과 지정폐기물 보관통에 표시판을 1개 외 통마다 부착하라는 시정사항이 있었고 조치 내용을 통보하라고 하여 부착 후 사진첨부 통보하였으며, 폐기물 관리대장 확인 후 알루미늄 분철 시료를 채취하여 갔으며 시료분석 결과를 통보 받은바 사실과 다른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④ “유분의 80~90%는 바닥에 그래도 버려지고 있는 상태다. ○·○○○·○○(주)는 지난해 12월 27일자로 7000kg을 김해시 ○○읍 ○○리에 주소를 둔 (주)○○○○에 위탁처리 하였으나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은 폐기되는 유량이 맞는지 그 어떤 조치도 없는 채 묵인하고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분의 80~90%는 바닥에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였는데 ③항에서 밝힌바 절삭유를 흘려보낸 사실이 없음이 확인 되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업장지정폐기물 배출 신고 후 2012년 한 해 동안 제품생산 공정으로 발생된 절삭유는 무려 619,100kg이나 되었으며,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용은 ₩82,742,000원을 지불하였는데도 터무니없는 88.4배나

축소하여 7,000kg을 위탁처리 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지정폐기물은 배출업체, 운반 업체, 처리업체가 일괄적으로 인계서를 교부되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도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청인을 매도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①②③④ 항의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

가. 제 목 : “사천 알미늄부산물업체 환경오염심각” 관련 정정보도문

“○○○○○○(주) 연마유 절삭유 마구 흘러보내” 관련 사실과 다르며 발생한 절삭유는 적법절차를 밟아 배출하였으므로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본 인터넷 홈페이지 2013년 1월 22일자 사회면에 “사천 알미늄부산물업체 환경오염 심각” 이라는 제목으로

- ① “산업폐기물을 아무렇게나 방치해 1년여 동안 연마유와 절삭유 등 엄청난 양의 독극물이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켜”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알루미늄 분철은 독극물이 함유된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재활용품으로서 2012년 12월 기준 톤(TON)당 단가가 1,106,000원으로 매입 하였으며 알루미늄 분철에 묻어있는 절삭유를 압축하여 발생한 절삭유는 적법 처리하여 폐기물관리대장에 명백한 자료가 있어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킨 사례가 없음이 확인된 바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② “사천시 관계자는 연마유와 절삭유가 지정 폐기물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업체만 두둔해 주변의 빈축을 사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는데, 그러나 ○○○○○○○(주)가 위탁한 경상남도 환경연구원 폐기물 검사결과에 의하면 기름성분 1%~1.6%로 나타났고 피신청인 김○○기자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고발하여 알루미늄 분철 시료를 채취하여 가져간 후 분석한 시료분석결과서에 따르면 기름성분 0.8%로 나타났으며 지정폐기물 기준 기름성분 5%이상일 때 지정폐기물을 인정하게 되나 그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나 폐수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폐수처리 업체가 없어 할 수 없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지정폐기물로 배출신고를 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대하여 사천시 관계자가 업체를 두둔하였다는 사실무근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③ “특히 이 업체는 ○○○로부터 기름이 함유된 알루미늄 부산물을 일반 쓰레기 수거차량으로 신고와 시멘트 바닥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쌓아두고 생산된 제품마저도 바깥에 그대로 방치해 기름이 흘러내리는데도 사천시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단 한 차례도 단속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하였는데, 그러나 알루미늄

분철은 대부분 공장건물 내부에 적재하게 되나 수거 물량이 많아 부득이 공장 내 콘크리트 바닥에 적재하고 쾌청한 날씨에는 수분이 증발되도록 놔두는 경우는 있지만 철저하게 비를 맞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보관하였으며, 피신청인 김○○기자가 사천 시청 환경과에 고발하여 환경과 직원 4명이 현장에 와서 절삭유가 흘러내리는 흔적을 찾아보았지만 찾아볼 수 없었고, 우기시를 대비한 시정조치를 하여 신청인은 보관하기 수월하게 공장건물을 증축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현재 사천시청에 건물허가를 신청 중이며 그 후 피신청인 김○○기자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고발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 직원 2명이 단속하러 왔을 때도 절삭유를 흘려보낸 흔적을 찾지 못하였지만 우기 시 대비할 수 있는 주의사항과 지정폐기물 보관통에 표시판을 1개의 통마다 부착하라는 시정사항이 있었고 조치 내용을 통보하라고 하여 부착 후 사진첨부 통보하였으며, 폐기물 관리대장 확인 후 알루미늄 분철 시료를 채취하여 갔으며 시료분석결과를 통보 받은바 사실과 다른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④ “유분의 80~90%는 바닥에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상태다. ○·○○○·○○(주)는 지난해 12월 27일자로 7,000kg을 김해시 ○○읍 ○○리에 주소를 둔 (주)○○○○에 위탁처리 하였으나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은 폐기되는 유량이 맞는지 그 어떤 조치도 없는 채 묵인하고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분의 80~90%는 바닥에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였는데 ③항에서 밝힌바 절삭유를 흘려보낸 사실이 없음이 확인 되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업장지정폐기물 배출 신고 후 2012년 한 해 동안 제품 생산 공정으로 발생된 절삭유는 무려 619,100kg이나 되었으며,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용은 ₩82,742,000원을 지불하였는데도 터무니없는 88.4배나 축소하여 7,000kg을 위탁처리 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지정폐기물은 배출업체, 운반업체, 처리업체가 일괄적으로 인계서를 교부되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도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청인을 매도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①②③④ 항의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사천 알미늄부산물업체 환경오염 심각’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본 신문은 2013년 1월 23일자 3면 『사천 알미늄부산물업체 환경오염 심각』이라는 제목으로 “산업폐기물을 아무렇게나 방치해 1년여 동안 연마유, 절삭유 등 엄청난 양의 독극물이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알루미늄 분철은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재활용품이며,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는 적법절차를 밟아 배출하였으며,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현장 확인 결과 사업장 내에 알루미늄 분철로부터 절삭유가 흘러내리고 있거나 흘러보낸 흔적이 없었음이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3. 2. 21.자 <경남도민신문> 3면에 보도하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주) 연마유 절삭유 마구 흘러 보내]와 동일한 크기로 2단 이상으로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은 2013. 2. 21. 09:00부터 2. 23. 09:00까지 2일간 <경남도민신문>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ndomin.com/>)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경남도민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그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며 본 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언론사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2. 1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1

- **경남도민신문** : 『사천 알미늄부산물업체 환경오염 심각’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2일자 3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2

-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 『사천 알미늄부산물업체 환경오염 심각’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1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4

전력설비 납품과 관련, 신청인 회사가 발전회사 관계자를 영입해 로비를 벌였고, 100억 원 규모의 입찰에 유착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경기조정17·18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기업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원자력신문사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13. 02. 06.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세종시에 건설 중인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된 100억 원 규모의 입찰에서 신청인 회사가 발전회사 관계자를 영입하여 로비를 펼치는 등 설비담당자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과거에도 신청인 회사를 위한 밀어주기식 입찰이 진행돼 공개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의 민원으로 입찰이 무기한 보류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회사는 입찰을 거쳐 대규모 중공업회사의 하도급 형태로 4억 원 규모의 보조설비를 납품한 사실이 있을 뿐, 발전회사 설비담당자와 유착이 있었다거나 밀어주기 입찰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2,0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사과보도를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의 신청인 관련 부분을 삭제하며, 포털사이트의 검색에 있어서도 삭제 후의 기사가 검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인터넷 한국원자력신문 :** 『설비 납품비리…한전-5개 발전사도 만만치 않아』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1일자)
- **내 용 :** 전력설비 납품비리가 세간에 이목을 받는 것은 산업전반과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간산업에서 발생돼 충격이 큰 탓이다. 특히 발전설비 중지 등 사고가 잇따르고, 대부분 사고가 부품고장으로 밝혀지면서 부품선정 및 납품과정의 투명성 저하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발전시설은 보안을 이유로 외부와 단절되고, 폐쇄적으로 운영돼 부품 교체과정 등에서 납품업체들의 집중적인 로비와 더불어 긴급, 부품의 호환성 등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편의적으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방식을 지나치게 적용한다는 지적이 끝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납품검사 담당자에게 집중된 재량권으로 특정납품업체와 유착 가능성이 높고, 제품의 납품 과정에서 부패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비리수단으로 악용되는 수의계약 납발을 방지하고, 납품검사·검수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견제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 권익위, 수의계약 연관 비리 전력그룹사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는 발전회사에 전력설비가 납품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리를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설비를 책임지는데도 불구하고 보안을 이유로 이들 발전회사들의 설비 납품 과정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업체들의 집중적인 로비대상이 돼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문제나 납품검사 담당자의 집중된 재량권으로 인한 각종 비리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중략)

◆ 한수원 사건 못지않은 발전회사 비리정황 포착

권익위는 계약요청자인 설비담당자에게 재량권이 집중되면서 특정업체와 유착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부분 납품비리의 연루자도 설비담당자라고 지적했다. 설비담당자가 특정업체의 로비로 설비납품을 결정하거나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납품검사·검수 시 편의 제공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올 한해 떠들썩했던 한수원 비리사건은 납품업체 등록 및 수주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수수 한 혐의로 31명이 구속 기소되고, 1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업무의 보안성, 특수성으로 인해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주요 국가기간시설인 원자력 발전소 관계자들의 금품수수, 입찰담합, 자재납품 편의제공 및 이를 둘러싼 로비스트와의 유착관계 등 구조적 비리를 확인한 수사였다.

특히 한수원 사건은 ‘제도적 장치를 교묘히 이용한 금품수수 수법’으로 ‘신제품’, ‘신기술’, ‘친환경인증제품’ 등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건의 물품구매를 발주해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식이었다.

특정업체를 추천해 설비나 부품을 개발하게 한 후 이를 ‘개발선포품’으로 지정, 다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현장기술개발과제’ 제도 원래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

하고 오히려 특정업체 밀어주기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다.

실제로 본 지가 발전회사를 취재 중 현재 세종시에 건설 중인 복합화력발전소에 적용될 ‘확장 Zigbee 네트워크 통신을 이용한 Heat Tracing System의 통합 감시 및 제어기술’과 관련해 100억 원 규모 입찰에 있어서 특정업체 K사와 설비담당자 유착 가능성이 포착됐으며 금품수수 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사는 건설 중인 발전소를 주관하는 발전회사의 기술본부장 출신의 P씨를 상임고문으로 영입해 로비를 펼쳤을 것으로 예측된다.

취재 과정에서 K사로 밀어주기식 입찰이 타 발전회사에도 진행돼 공개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의 민원제기로 관련 입찰이 무기한 보류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한국원자력신문(<http://www.knpnews.com>)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이 시각 주요뉴스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정정보도문의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설비 납품비리…한전-5개 발전사도 만만치 않아”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나. 본 문 : 본 신문은 2012년 12월 21일자 특집기획면에 “설비 납품비리… 한전-5개 발전사도 만만치 않아”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확인 결과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현재 세종시에 건설 중인 발전소는 복합화력발전소가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이며, “특정업체 K사”로 거론된 회사가 개발한 “확장 Zigbee 네트워크 통신을 이용한 Heat Tracing System의 통합 감시 및 제어 기술”과 관련하여 발전회사에서 발주한 100억 원 규모의 입찰은 없었습니다. 위 회사가 설비담당자와 유착하거나 금품수수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위 회사는 발전회사의 기술본부장 출신 P씨와 무관하며 상임고문으로 영입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위 회사가 발전회사에 로비를 하거나 발전회사에서 위 회사로 밀어주기식 입찰이 진행된 사실도 없었습니다.

본 신문은 이 사건 기사로 인해 위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합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K사 설비 납품비리” 관련 정정보도

나. 본 문 : 본지는 지난 2012년 12월 21일『설비 납품비리… 한전-5개 발전사도 만만치 않아』 제하의 기사에서 세종시에 건설 중인 100억 원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입찰시 K사가 발전 회사 기술본부장 출신의 P씨를 상임고문으로 영입해 로비를 펼치는 등 K사와 설비담당자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타 발전회사에서도 K사에 밀어주기식 입찰이 진행돼 공개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의 민원으로 입찰이 무기한 보류된 사실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현재 K사가 참여하여 세종시에 건설 중인 발전소는 복합화력발전소가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이며, K사는 ○○중공업에 하도급 형태로 4억 원 규모의 보조설비를 납품했을 뿐 입찰 규모가 100억 원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K사는 P씨를 상임고문으로 영입한 사실이 없으며, 발전회사로부터 직접 수주를 하는 형태가 아닌 하도급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회사 설비담당자와 유착 가능성이 있거나 밀어주기 입찰이 진행되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 기사에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K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해 지면을 빌어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2. 피신청인은 2013. 2. 18. 09:00부터 2. 20. 09:00까지 2일간 〈한국원자력신문〉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npnews.com>) 초기화면 이 시각 주요뉴스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1항의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제목 및 본문 활자는 2012. 12. 21. 인터넷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설비 납품비리…)및 본문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한다. 또한, 인터넷 조정대상기사 (<http://www.kn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63>)에서 아래와 같은 신청인 관련 부분을 2013. 2. 18. 09:00까지 삭제하고 포털사이트의 기사 검색에 있어서도 삭제 후의 기사가 검색될 수 있도록 한다.

〈신청인 관련 부분〉

실제로 본지가 발전회사를 취재 중 현재 세종시에 건설 중인 복합화력발전소에 적용될 ‘확장 Zigbee 네트워크 통신을 이용한 Heat Tracing System의 통합 감시 및 제어기술’과 관련해 100억 원 규모 입찰에 있어서 특정업체 K사와 설비담당자의 유착 가능성이 포착됐으며 금품수수 협의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K사는 건설 중인 발전소를 주관하는 발전회사의 기술본부장 출신의 P씨를 상임고문으로 영입해 로비를 펼쳤을 것으로 예측된다.

취재 과정에서 K사로 밀어주기식 입찰이 타 발전회사에도 진행돼 공개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의 민원제기로 관련 입찰이 무기한 보류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3. 피신청인이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 등)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을 피신청인이 이행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2. 15.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인터넷 한국원자력신문 : 『[K사 설비 납품비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8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5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 담임교사인 신청인이 사건을 방치하는 등 학교 측의 대처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충북조정5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13. 02. 12.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50대 담임 여교사가 중학생 A군과 어머니를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을 전하면서, 검찰이 최근 두 모자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 덧붙여 위 사건의 발단은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던 A군을 위해 해당 교사 및 학교 측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했으며, 담임교사와 학교 측의 초기 대처가 잘 이루어졌다면 A군의 가족이 고통을 겪지 않았으리라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해당 교사인 신청인은 A군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알려옴에 따라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및 117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대처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조정대상기사를 통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노컷뉴스** : 『중학생 담임교사 폭행의 진실?...무너진 사제의 정』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5일자)

■ **내 용** : 지난해 8월 중학생과 학부모가 담임 여교사를 폭행해 파문이 일었던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랐다. [관련기사 2012. 8. 27 청주 중학생 여교사 폭행, “학교 폭력 방치” vs “교권 침해”, 2012. 8. 26 노컷뉴스 청주 중학생이 50대 여교사 폭행 ‘파문’]

학교 폭력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에 대한 세상의 오해는 풀렸지만 가족들에겐 씻지 못할 상처가 남았다.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50대 담임 여교사가 폭행을 당했다며 중학생 A군과 어머니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청주지검은 최근 A군의 어머니가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조사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학교 관계자들의 진술이 있었고 피해 교사가 누구에게 폭행을 당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청주지법 소년부(민○○ 부장판사)도 최근 A군의 상해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당시 흥분한 상태로 애초부터 교사를 폭행할 의향이 없었고 학교 폭력의 큰 상처를 입어 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학교와 담임교사마저 감싸주지 않은 A군의 우발적 행동에 대해 재판부가 선처한 것이다.

재판부는 A군의 이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계속된 학교 내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쌓인 억울함과 분노가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A군의 어머니는 “14살의 어린 아들과 함께 법원과 경찰서를 오고가면서 수치심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며 “누군가를 흠집내기위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우발적 사건에 대한 오해는 풀렸지만 학교에 대한 신뢰, 친구들과의 소속감, 교사에 대한 존경심까지 무너진 A군은 6개월이 넘는 현재까지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쌓인 억울함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A군의 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담임교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A군이 하루빨리 상처를 씻고 학교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A군의 어머니는 “아들에게는 선생님이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바랄 것이 없겠다”며 “현 상태로 학교에 갔다가 또다시 문제가 발생한다면 아들의 장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의 가족들은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의 신속한 대응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A군의 아버지는 “학교 폭력으로 같은 반 4명의 친구들이 전학을 가게 돼 책임을 져야 했던 담임교사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4명의 제자들을 생각했던 것처럼 상처 받은 한 명의 제자도 생각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와 담임교사가 초기에 대처를 잘했다면 고소까지 이어지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있었다면 한 가정이 겪지 않았을 고통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학교 폭력에 대응하는 학교와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노컷뉴스(<http://http://www.nocutnews.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중학생 담임교사 폭행에 관한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본 인터넷 신문은 2월 5일자 사회면에 “중학생 담임교사 폭행의 진실?...무너진 사제의 정”라는 제목으로 A군 측은 피해자의 입장이며 법원의 선처를 받아 이로써 세상에 대한 오해가 풀렸고,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을 방치한 것이 아쉽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보도와는 다르게 증거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제 형사재판을 받은 가족은 A군, 어머니 말고도 A군의 아버지 까지 총 3명이며 A군의 아버지는 교사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담임교사는 총 6가지의 병명으로 총 6개월간 요양 중인 사실 역시 보도에는 없습니다.

또한, A군 측이 담임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학교폭력 처리를 방치했다는 과정 상 문제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한 결과 역시 담임교사와 학교의 처리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중학생 담임교사 폭행’ 관련 반론보도

나. 본 문 : 지난 2월 5일 본지 사회면 『중학교 담임교사 폭행의 진실?...무너진 사제의 정』 제하의 기사에서 중학교 교사가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중학생과 어머니를 고소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조사과정에 양측이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학교관계자들의 진술이 있었고 담임교사가 학교 폭력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조사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을 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해당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알려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및 117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해당학생과 부모를 만나고자 노력을 했으나 만나주지 않았을 뿐이지 학교폭력을 대처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2013. 2. 26. 09:00부터 2. 28. 09:00까지 2일간 <노컷뉴스> 인터넷 홈페이지 (<http://http://www.nocutnews.co.kr>)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1항의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제목 및 본문화자는 인터넷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화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한다. 또한, 인터넷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그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 등)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을 피신청인이 이행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2. 21.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노컷뉴스 : 『‘중학생 담임교사 폭행’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6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6

농림수산식품부가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의 신청자격을 대규모 농업회사로 제한했고, 선정된 업체에 유리온실 자리를 30년간 공짜로 빌려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대전조정9 정정청구

신 청 인 : 농림수산식품부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13. 02. 21.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을 명목으로 공모자격을 대규모 농업회사로 제한함으로써 대기업 진출을 지원했으며, 12헥타르에 달하는 유리온실 자리를 30년간이나 공짜로 빌려주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2010년 1월에 실시한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 공모 시 신청자격을 대규모 농업 회사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유리온실 자리는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라 연간 6천6백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 한편, 신청인은 동일한 보도를 게재한 KBS미디어를 대상으로 별도로 정정청구(2013대전조정10)를 하였고, 심리결과 KBS미디어가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되었다.

조정대상보도

- **대전KBS-1TV :** KBS 뉴스9(대전) 프로그램 『농림부가 대기업 지원』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8일자 21:00)

- **내 용 :** ▷ 앵커 : 대기업이 농업 생산 분야까지 진출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농림부가 간척지 시범사업을 이유로 대기업 진출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농민들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수출을 기치로 농업생산 분야에 진출한 ○○그룹 소유의 이 온실에서 지난해

생산한 토마토는 천 2백 톤. 그러나 주력시장인 일본을 포함한 해외 수출 물량은 60여 톤. 고작 5%에 불과합니다.

▷ 녹취(○○팜 직원) :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품질에 대한 굉장히 까다로운 요구를 하고 있고.”

▷ 리포트 : 결국 생산량의 90% 이상이 내수시장에 출하돼 농민들 몫을 잠식했습니다. 대형마트가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에 타격을 주는 것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룹의 시장 진출에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룹이 농업생산 시장 진출에 농림부가 적극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출진흥을 빌미로 ○○가 경기도 화홍간척지에 세운 12헥타르에 달하는 유리온실 자리를 30년 간이나 공짜로 빌려주고 전기 등 기반시설 건설비 87억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 인터뷰(강○○,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업정책과) : “해외 수출 시장 개척이라든지 연관 산업 발전 가능성이 대기업 쪽에서 참여를 해주는 게 농업계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 리포트 : 농민들은 반 농민적 정책을 펴고 있다며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 녹취(토마토 재배 농민) : “우리 농업은 이제 끝이다. 좌절이 아니고 절망을 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구요.”

▷ 리포트 : 눈 앞의 성과 때문에 가뜰이나 FTA로 위기에 처한 우리 농민들을 농림부가 더 궁지로 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입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KBS대전 <뉴스9> 프로그램에서, 뉴스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농림부의 두 얼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나.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1월 8일자 뉴스9에 방영된 “농림부의 두 얼굴”이라는 보도에서 “농식품부가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을 이유로 사업자 선정공모시 대규모 농업회사로 공모자격을 제한하여 대기업 진출을 지원”하였으며 “30년간이나 공짜로 빌려주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농림수산물식품부는 2010년 1월에 실시한 첨단유리온실 시범 사업 공모시 신청자격을 대규모 농업회사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장기 무상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사업자와 한국농어촌 공사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6천6백만 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보도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유리온실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

나. 내 용 : 지난 1월 8일 “농림부가 대기업 지원” 제목의 기사에서 농림부가 첨단유리온실 시범 사업을 명목으로 공모자격을 대규모 농업회사로 제한해 대기업 진출을 지원했으며, 12헥타르에 달하는 유리온실 자리를 30년간이나 공짜로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유리온실 자리는 무상임대가 아닌 연 6천6백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는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 공모시 신청자격을 대규모 농업회사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3년 3월 5일 대전KBS-TV ‘뉴스9’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3. 피신청인이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 등)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본 건 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2. 2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대전KBS-1TV : KBS 뉴스9(대전) 프로그램 『유리온실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5일자 21:00)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7

서초구청이 구청장 차량 주차안내를 늦게 한 청원경찰에게 24시간 동안 징벌성 옥외근무를 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263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초구청

피신청인 : 주식회사 채널에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3. 03. 05.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서초구에 근무하던 청원경찰이 서초구청장 관용차량을 늦게 안내한 별로 장시간 옥외근무를 하고, 근무 직후 추위에 의한 쇼크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청원경찰이 장시간 옥외근무를 한 사실이 없으며, 사망원인도 추위에 의한 쇼크가 아니라 급성심근경색 및 폐부종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또한 검찰 조사 결과 조정대상보도의 사망원인이 오보임이 드러날 경우 별도의 정정보도를 방송하기로 합의했다.

조정대상보도

■ **채 널 A :** 박종진의 뉴스쇼 왜도난마 (1부) 프로그램 『서초구 오리털 파카도 사줬다... 청원경찰 돌연사 논란』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25일자 16:00)

■ **내 용 :** ▷ 앵커 :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 서초구 청원경찰이 징벌근무 직후에 돌연사 했다. 그래서 일이 커지고 있다. 서초구청장 관용차량 뒤늦게 안내한 그 죄로, 별로 24시간 추운겨울에 옥외근무했다. 근무 직후 이 추위 쇼크로 사망했다. 서초구청측은 사망과 관련해서 책임이 없다 이런 입장이지만 누리꾼들은 추운날씨에 옥외근무 너무 가혹, 그것도 24시간은.. 청원경찰의 정확한 사유 요구하고 있다. 지금이 군사독재시대냐? 구청장이 그렇게 높은 자리냐? 구청장 차량 늦게 안내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놈의 권위

주의 어디서 배우는 겁니까? 청원경찰 가족들이 얼마나 울화통이 터질까요? 본격적으로 진행하러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이거 뭐니까? 서초구청장입니까? 청원경찰이 원래 이렇게 군대에서도 차오면 딱 안내하고 잘해야 하는데.. 이거 잘 못한 분인 거 같은. 그렇다고 24시간 밖에서 근무해라 옥외근무하라고 하나? 문을 잠궜다 그래요. 그 초소 문을 못 들어가게 잠근 모양이다. 그래서 이분이 추위에 떨다가 지금 돌아가신 모양입니다.

▷ 이○○(정치평론가) : 할 말이 없습니다.

▷ 앵커 :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정치평론가) : 그렇다고 법조항이 있어서 무슨 파면시킬 수도 없고.. 언론에 질타 받으니 반성하실 것이다. 이○○ 후보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기사 내리라고 하고 기사 걸어왔다고 하더라. 부하직원 함부로 대하는.. 최소한 인권유린은 지양해야한다. 이○○ 후보자도 내부에서 고발 일어나고 내부에서 평판이 안 좋아 문제됐다. 내부사람 아니면 모르는 건데 부하직원 인간적으로...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별지의 정정보도문을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서초구청 청원경찰 돌연사 관련’ 정정보도

나.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1월 25일 채널A 시사프로그램인 「박종진의 쾌도난마」에서 ‘서초구 오리털 파카도 사줬다...청원경찰 돌연사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자가 “서초구청장 관용차량을 뒤늦게 안내한 그 죄로, 별로 24시간 추운겨울에 옥외 근무시키고, 근무 직후 이 추위 쇼크로 사망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기에 정정합니다. 서초구청 주차장 청원경찰은 1시간 근무 후 2시간 휴식하는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어 하루 근무시간은 총 3시간이므로 24시간 옥외근무는 사실과 다른 보도였습니다.

구청장 차량주차 안내 지연에 대한 벌칙이란 내용도 사실에 어긋난 보도였습니다. 서초구청에는 구청장 차량 안내직원이 따로 있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논란이 된 2013. 1. 2 11시경에는 사망 직원의 근무시간도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이 그렇게 높은 자리입니까? 그 놈의 권위주의는 어디서 배운 겁니까?”란 진행자의 멘트는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논평이었기에 바로잡습니다.

고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및 폐부종이었으며, 고인은 평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급성심근경색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는 3가지 만성질환을 모두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24시간 추위에 노출되어 쇼크로 사망했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오보였음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며 서초구의 명예에 누를 끼쳐 드린 점을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청원경찰 돌연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나.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월 25일 서초구 청원경찰의 돌연사 논란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도내용 중 사망한 이모 씨가 24시간 옥외근무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 확인 결과, 1시간 근무 후 2시간 휴식하는 방식이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초구는 사망원인이 장시간 옥외근무에 의한 추위 쇼크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3년 3월 22일까지 채널A의 〈박종진의 쾌도난마〉 프로그램 말미에 블랙바탕에 흰자막으로 표시하되, 제1항의 보도문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20초~30초 동안 계속 표시한다.

3. 위 반론보도 중 사망원인과 관련된 부분은 검찰조사결과 오보로 밝혀질 경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별도의 정정보도를 방송하며, 방송시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내용과 방식을 정하되, 위원회의 조정합의 양식에 준한다.
4. 신청인은 향후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그들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3. 1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채 널 A** : 박종진의 뉴스쇼 쾌도난마 (2부) 프로그램 『「청원경찰 돌연사」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22일자 17:00)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8

국방부장관 후보자인 신청인이 사단장 재직 시절 부대공사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377, 2013서울조정378(병합)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3. 03. 21.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신청인이 2사단장으로 복무하던 당시 부대공사와 관련한 리베이트 문제로 군사령부의 감찰조사를 받았으며, 감찰 결과 신청인이 로비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 또한 K2 전차의 핵심부품인 파워팩 수입과 관련하여 납품업체인 독일 엠티유가 한국정부와 직거래를 희망했으나, 방위사업청이 거액의 수수료가 들어가는 중개업체를 통한 납품을 고집했고, 그 과정에서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있던 신청인이 모종의 역할을 한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2사단장으로 복무하던 당시, 부대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리베이트도 받은 사실이 없고, 어떠한 감찰조사도 받은 바가 없으며, 우리 군의 기동장비 디젤엔진 합작생산 공장 설립을 위한 자문을 위해 무기중개업체의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K2 파워팩 관련 업무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1

■ **한 거 레 :** (1) 『김○○ 2사단장 시절 공사 ‘리베이트’ 물의』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1면)

■ **내 용 :** 김○○(65·사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사단장으로 복무하던 1999년 부대공사와 관련한 리베이트 문제로 군사령부의 감찰을 받았으며, 감찰 결과 김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군 검찰 당국은 김 후보자가 이 돈을 부대 물품을 사는 데 쓴 것으로 판단해 구두경고를 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김 후보자가 사단장일 때 2사단에서 근무했던 한 장교는 “당시 2사단에는 군 아파트 신축, 사단 본청 공사, 체육관 개보수 등을 포함해 병영시설 개선을 위한 건설공사가 유난히 많았다. 당시 김 후보자가 공사 수의계약 리베이트와 관련돼 있다는 제보가 상급부대에 접수돼 군사령부에서 사단을 감찰했고, 이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파악돼 사적으로 썼는지 여부를 따졌다”고 밝혔다. 이 장교는 “사령부는 당시 김 후보자가 받은 돈을 위성항법장치(GPS) 장비와 공학용 계산기를 사서 예하 부대에 보급하는 데 썼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당시 김 후보자의 지휘계통에 있었던 한 예비역 장성도 “당시 2사단장과 21사단장이 업체 로비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국방부에서 들었다. 그 뒤 육군본부에서 지시를 받은 군사령부가 나서서 감찰을 했다. 결과적으로 21사단장은 군사령부 회의에서 정식으로 경고장이 나갔고, 2사단장이었던 김○○ 후보자는 자신이 챙긴 게 아니라 부대를 위해 썼으니 구두경고로 그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시 참모에게 위문금으로 쓰라고 줬고, 그 돈으로 포병에게 필요한 부대 훈련장비를 샀다. 당시 받은 돈은 2,000만 원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돈을 건넨 상대방에 대해서는 “친구들”이라며 “당시 문제됐던 건설업체 사람들도 아니고, 군 쪽에 관계된 사람들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두 번째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돈이 아니라 장비를 현물로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김 후보자는 “돈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해당 금액(2,000만 원)만큼의 장비를 직접 받았다. 실제로 내가 돈을 받았다면 그때 그냥 넘어갔을 리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사단장 재직 때 부대 위문금 800만 원가량을 본인 명의의 통장에 넣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나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통장을 관리하던 참모가 부대 명의로 통장을 만들 수 없다고 해 그런 줄 알았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사단급 부대에서는 부대 명의의 통장 개설이 가능했다.

■ **한 거 레** : (2) 『군 ‘K2 파워팩’ 중개상 끼워 구매... 김○○ 소속 업체도 43억 원 챙겨』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2일자 1~2면)

■ **내 용** : K2 전차의 핵심 부품인 파워팩 사업자로 독일 군수업체 엠티유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김○○(65)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있던 무기중개상 ○○○○이 43억 원의

중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독일 엠티유 임원이 독일 주재 우리 무관을 통해 중개상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납품하겠다는 뜻을 국방부에 밝혔음에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이를 묵살한 사실도 확인됐다. 중간업체 배제를 희망하는 독일 업체의 의사와 달리 거액의 수수료가 들어가는 중개 방식을 고수하게 된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일정한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1일 <한겨레>가 입수한 파워팩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내용을 보면, 2012년 1월 18일 독일 주재 한국 국방무관은 엠티유 임원과의 면담 내용을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엠티유에서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파워팩 100대를 무기중개상을 통해 납품하기를 (한국 쪽이) 요청하고 있으나, 납품하는 제품이 100% 독일 생산품인데 왜 직접 납품하지 말고 생산도 하지 않는 중개상인 ○사를 통해 납품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엠티유 임원의 발언이 담겨 있었다. 감사원 자료에는 “정보본부장은 다음날인 1월 19일 방위사업청의 사업 관계자(장성급)에게 전달했으나 이 내용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묵살됐다”고 적혀 있다. 이후 파워팩 수입계약 협상은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있는 ○○○○을 포함해 ○사, ○사 등이 중개하는 원안대로 진행됐고, 2012년 4월 계약이 체결됐다. 이 과정에서 ○○○○은 중개 수수료로 43억 원(현재 환율기준)을 챙겼다. 이 수수료는 엠티유가 ○○○○에 지불하는 것이지만,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이 나서지 않아 중개상의 개입을 방치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쪽의 커미션 등이 발생하면서 구매비용이 높아져 지출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커미션(중개 수수료)을 없애면 무기 구입 예산 20%를 줄일 수 있다’고 직접 언급한 뒤 국방부가 산하기관인 방위사업청과 함께 커미션 실태를 집중 점검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다. 파워팩 사업 규모가 1,000억 원대이니 최소 수십억 원이 커미션으로 나가는 게 뻔한 상황에서 중개상을 배제하자고 판매업체 쪽에서 먼저 나섰는데도 이를 우리 쪽에서 묵살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의 내부 규정에도 200만 달러 이상의 거래는 판매사와 직접 거래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가 ○○○○에서 일한 시기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로, 무기 수입 계약의 최종 결정기구인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가 국산 파워팩 생산을 결정했다가 독일산(엠티유) 파워팩 수입으로 방침을 변경하는 시기(2010년 12월~2012년 4월)와 겹친다. 김 후보자는 2012년 6월 ○○○○을 떠나면서 7,000만 원을 한꺼번에 받았는데, 업계에서는 관행상 이 돈이 로비 활동에 대한 ‘성공 보수’의 일부로

추정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고문으로 있으면서 엠티유와 ○○○○의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자문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의 수수료가 약 43억 원으로 확인되면서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일하면서 받은 돈이 성공 보수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무기중개상 ○○○○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받은 돈의 총 액수는 2억1500만 원으로 ○○○○ 수익의 5% 정도에 해당한다. 한 무기중개업체 관계자는 “(업계의 관행을 기준으로 할 때) 2년 동안 1억4000여만 원을 받고나서 마지막 달에 7,000만 원을 받은 것을 보면, 2년 영입 계약과 함께 성공 보수 액수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7,000만 원이 성공 보수라면 아마도 3~5년 더 7,000만 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평소 급여와 성공 보수를 합한 전체 지급액은 사업 수익의 10% 가량으로 책정된다”고 덧붙였다. K2 전차 파워팩과 같은 대형사업의 수주전이 시작되면 전역 장성 등을 2년 또는 3년 기한으로 영입한 뒤 그 기간 동안은 책정된 연봉을 월급으로 쪼개서 지급하고, 만약 수주에 성공하게 되면 원래 책정된 연봉을 3~5년치 정도 더 지급하는 게 업계의 관행이라는 것이다.

조정대상보도 2

- 인터넷 한겨레 : (1) 『김○○ 2사단장 시절 공사 ‘리베이트’ 물의』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①의 보도내용 (1) 참조>
- 인터넷 한겨레 : (2) 『군 ‘K2 파워팩’ 중개상 끼워 구매... 김○○ 소속 업체도 43억 원 챙겨』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①의 보도내용 (2) 참조>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2013. 4. 10.까지(토, 일요일 제외) 한겨레 3면 상단에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한겨레 2013. 2. 22.자 1면 “군 K-2 파워팩 ~ 소속업체도 43억 원 챙겨” 활자와 동일한 서체 및 크기로 2단에 걸쳐 게재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한다.

2.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한겨레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중간 상단에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나타나도록 하고,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각 조정대상기사(2월 20일자, 2월 22일자)의 하단에도 이어서 게재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김○○ 전 국방장관 후보자 관련 정정보도

나. 본 문 : 한겨레 지난 2월 20일자 및 22일자 김○○ 국방장관 후보자 관련 기사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합니다.

- ① 김 후보자가 1999년 2사단장 재직 시 부대 시설공사와 관련된 리베이트 문제로 군사령부의 감찰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당시 김 후보자는 공사업체로부터 어떠한 리베이트도 수수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 군 당국의 감찰을 받은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② K2전차의 핵심부품인 파워팩 수입과 관련, 납품업체인 독일 엠티유가 한국정부와 직거래를 희망했으나, 방위사업청이 거액의 수수료가 들어가는 중개업체를 통한 납품을 고집했고, 그 과정에서 중개업체 비상근 고문으로 있던 김 후보자가 역할을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확인결과, 당시 ○○○○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한 김 후보자는 우리 군의 기동장비 디젤엔진 합작공장 설립에 관해 자문한 바 있으나, 기사에 언급된 K2전차 파워팩 업무에는 일체 간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피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포털사들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즉시 통보하고 게재를 요청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김○○ 전 국방장관 후보자 관련 정정보도

나. 본 문 : 〈한겨레〉는 지난 2월 20일치 김○○ 전 국방장관 후보자 관련 기사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합니다.

김 전 후보자가 1999년 2사단장 재직시 부대 시설공사와 관련된 리베이트 문제로 군사령부의 감찰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당시 김 전 후보자는 공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 군 당국의 감찰을 받은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한겨레〉 2013년 4월 9일 또는 10일자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의 활자크기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중 2013년 2월 22일자 1면 기사의 부제목(독일업체서 “중개상 배제” 제안...)크기와 동일자 동일면 ‘한겨레 기자 통화 기록 10개월치 들여다 본 검찰’기사의 제목크기의 중간크기로 하고,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인터넷 한겨레〉(<http://www.hani.co.kr>) 초기화면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제2항의 이행일 12:00부터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김○○ 2사단장 시절 공사 ‘리베이트’ 물의)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24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은 위 제1항~제3항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피신청인이 위 제1항~제3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이미 제기한 고소나 소송이 있을 경우, 이를 취한다.)

2013. 04. 05.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1

- 한 겨 레 : 『김○○ 전 국방장관 후보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0일자 2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2

- 인터넷 한겨레 : 『[김○○ 전 국방장관 후보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0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9

인터넷 기차여행 동호회 카페인 신청인 단체가 한국철도공사 지역본부에 대해 무리한 지원요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중재36·37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 지주단체

피신청인 : (주)아주뉴스코퍼레이션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3. 03. 26.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중재대상기사에서 코레일 지역본부 다수가 인터넷 기차여행 카페인 신청인의 운영진으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 선물과 무료여행 등을 제공하면서도 운영진의 무리한 요구에 휘둘린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카페 운영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정정보도 및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2013서울조정273·274)을 신청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2차 조정기일 심리 전에 양 당사자가 이 사건을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2013서울중재36·37)를 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도록 중재결정을 했다.
-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동 기사를 전송받아 게시한 네이트(2013서울조정275·276)를 대상으로도 정정보도 및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1차 조정기일 심리전에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2013서울중재28·29)가 이루어져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중재대상보도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단독〉 일개 인터넷 동호회에 ‘질질’ 끌려다닌 코레일』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3일자)

- **내 용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지역본부 다수가 한 인터넷 기차여행 카페 운영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선물과 무료여행 등을 제공하면서도 운영진의 정책과 무리한 요구에 휘둘리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장시간 자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지역본부는 본사가

해당 카페에 지출을 멈추고 각종 홍보를 중단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린 후에도 여행 상품의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본사 지시를 불이행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코레일의 다수 지역본부는 국내 최대규모 인터넷 기차여행 전문 카페인 B 모 카페에 각종 선물과 협찬을 지난 수년간 무더기로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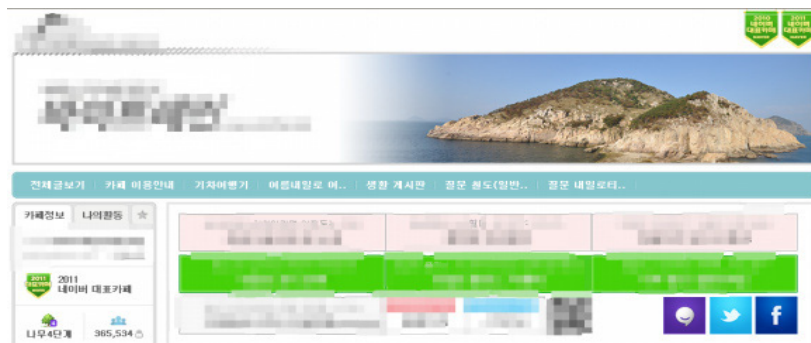
호남권 한 본부는 운영진 등 주요회원 다수를 초청해 공짜 1박2일 여행을 제공했고, 충청 지역 한 본부는 지역의 한 지자체와 연계해 당일 나들이와 함께 고가의 선물까지 넘겨줬다. 이외에도 많은 본부가 카페 운영진을 대상으로 편의와 선물을 제공했다.

카페와 한번 인연을 맺은 이들 일부 본부는 이후 카페 측의 무리한 지원 요구를 받는다. 하지만 상당수는 순순히 따랐다. 카페의 행사에 지원금과 다양한 편의도 제공했다. 수도권 한 본부는 카페 자체행사에 장소와 470만 원을 단번에 지원하기도 했다.

이처럼 코레일의 지역본부가 일개 인터넷 기차여행 카페의 소수 운영회원에 절절매는 이유는 평일 아침 매일 사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내일로 티켓 판매실적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코레일 직원은 “코레일의 개별 지역본부가 내일로가 활성화된 2008년부터 이후 5년동안 B카페에 지원한 사항을 금액으로 환산해 합치면 억 대에 달할 것”이라며 “다만 많은 본부는 ‘병어리 냉가슴’ 상태다. 대도시를 낀 본부는 실적 채우는 데 어려움이 없다. 그렇지만 소규모 본부는 절박해 인터넷과 전화로 외지에 통신 판매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카페에 ‘찍히면’ 내일로 판매량은 급감한다”고 말했다.

실제 대다수 지역본부는 아주경제의 질문에 “카페의 시안성 높은 주요 위치에 본부를 알리고 카페 운영진이 정한 규정횟수 이상 본부를 알리는 홍보 게시물을 올리고자 카페 운영진 측과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고 답했다. 코레일 다수 지역본부가 ‘갑(甲)’이 아닌 ‘병(丙)’ 또는 ‘정(丁)’의 포지션에서 해당 카페에 절절매 이유다.



<코레일의 다수 지역본부는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 기차여행 카페인 B 모 카페에 여러 가지 금품과 협찬을 지난 수년간 대량 퍼부으면서도 카페 운영진 측의 요구에 굴종하듯 행동하며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다. 다음은 B모 네이버 카페 메인화면 상단 캡처. >

지난 2007년 여름 출시된 ‘내일로’ 티켓은 만 25세 이하면 누구든지 새마을호·누리로·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를 입석이나 자유석으로 총 7일간 무제한 이용 가능한 상품이다. 여름·겨울방학 기간에만 출시되며, 가격은 5만 6,500원(2012~2013 동계기준)이다.

출시 당시 7,000여장이 판매됐지만 이후 판매 촉진책을 통해 판매량은 매년 급증했다. 2012~2013 겨울 티켓은 22일 현재 18만장 넘게 판매됐다. 출시 이후 5년간 25배 이상 성장했다.

코레일은 내일로 티켓 판매를 늘리고자 지역본부 별로 판매량을 매일 집계했다. 이같은 실적은 별도 문서로 제작돼 사장에게 보고됐다. 본부 평가에도 반영되자 모든 본부는 내일로 판매에 앞장섰다. 자연스레 개별 본부 별로 과한 마케팅이 다수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전남 화순의 성추행사건 또한 과도한 마케팅을 근본 원인으로 꼽는다. 내일로 티켓 판매를 늘리고자 무통장 입금 형태로 전국에 티켓을 팔면서 마케팅을 위해 빈곳이 많은 시골역을 개조해 구입자 대상의 숙소로 제공해왔던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최근 대형카페의 횡포에 대응하고자 각종 협조를 금하는 공문을 보냈고, 자체 홈페이지도 새로 구축했다. 실적체크 또한 폐지했다”면서 “지역본부에 주의를 요구하겠다. 또한 본사 차원에서 더욱 나은 혜택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재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주경제(<http://www.ajunews.com>)의 홈페이지 부동산>교통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B카페의 금품 수수 및 무리한 협조 요구’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나.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2월 23일자 부동산>교통면 초기화면에 “〈단독〉 일개 인터넷 동호회에 ‘질질’ 끌려다닌 코레일”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 해당 부서 및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 (1) 코레일 지역본부 다수가 한 인터넷 기차여행 카페 운영진의 환심을 사기위해 선물과 무료여행 등을 제공하면서도 운영진의 정책과 무리한 요구에 휘둘린다고 하였으나,

실제 확인 결과 코레일에서는 이에 대해 운영자들의 무리한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 (2) 코레일 지역본부의 초청을 받아 팸투어 등의 여행을 다녀온 것은 사실이나, 현지 이동 차비 및 여행 현장 기초 비용은 여행자가 실비로 부담하였고 특정 운영자만이 아닌 일반 회원도 참여한 모임이었으며, 이 때 받은 선물은 김 또는 머드팩 정도의 여행지 홍보용 기념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3) 또한 수도권 한 본부는 카페 자체행사에 장소와 470만 원을 단번에 지원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실제로 한 본부가 아닌 코레일 홍보실(현 홍보문화실)에 철도문화증진을 목적으로 기획서를 제출한 것이 채택되어 정식으로 후급 지원을 받았으며, 당시 한국 철도공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사 자체가 내일로 티켓과 그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것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 (4) 끝으로, 익명을 요구한 한 코레일 직원은 “코레일의 개별 지역본부가 내일로가 활성화화된 2008년부터 이후 5년 동안 B카페에 지원한 사항을 금액으로 환산해 합치면 억 대에 달할 것”이라 하였으나, 코레일 담당부서에 집행사실을 확인한 결과 내일로 티켓 판촉과 관련되어 해당 B카페에 지원한 내역을 확인되지 않았음을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아주경제(<http://www.ajunews.com/>)에 <별지>의 반론보도문을,
 - 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48시간 동안 중재대상기사와 동일한 섹션(뉴스)(한국어)> 부동산>교통)에 제목을 클릭하면 전체 내용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게재하되, 기사순서는 최초에는 위에서 첫 번째에 등재하고 새로운 다른 기사 업데이트에 따라 차례로 아래로 내려오도록 하며, 제목 및 본문화자는 중재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각각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한다.
 - 나. 이 사건 중재대상기사 본문 바로 아래에 게시하여 중재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기재의 반론보도문을 네이트(<http://www.nate.com/>) 등 이 사건 중재대상기사를 매개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전송하여 중재대상기사가 게재된 동일한 섹션에 게재되고 검색될 수 있도록 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모두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5. 피신청인이 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에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이 유

1. 신청이유

피신청인은 2013. 2. 23.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아주경제(<http://www.ajunews.com/>)의 [뉴스>(한국어)>부동산>교통] 섹션에『<단독> 일개 인터넷 동호회에 ‘질질’ 끌려다닌 코레일』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이 기사에는 코레일의 다수 지역본부가 신청인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 기차여행 전문 B모 카페에 각종 선물과 협찬을 지난 수년간 무더기 제공했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코레일에 무리한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여 받은 적이 없다며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2013서울조정273·274).

양 당사자는 조정신청 후 중재부 권고안을 토대로 서로 합의한 결과에초의 청구취지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대신에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그 보도문안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본 후, 이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전환신청을 하였다.

2. 판 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 동법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동법 제15조 제4항 및 제16조 제3항은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지 않을 경우 이를 언론사가 거부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중재대상기사에 신청인의 반론을 반영한 사실이 없는 점, 양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종합하면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할만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며, 당사자간 합의한 보도 문안이 중재부의 의견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는 이유 있고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를 이행함이 적당하다.

3. 결 론

양 당사자의 주장과 당사자간 합의사항, 원 기사의 보도방법 및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03. 26.

〈별지〉

1. 제목 : 『기차여행 B카페의 금품수수 및 무리한 협조요구』 관련 반론보도문

2. 본문 : 본보는 지난 2월 23일자 『일개 인터넷 동호회에 ‘질질’ 끌려다닌 코레일』 제목의 기사에서 코레일의 다수 지역본부가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 기차여행 전문 B모 카페에 각종 선물과 협찬을 지난 수년간 무더기 제공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B카페에서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첫째, “B카페가 코레일 지역본부의 초청을 받아 ‘팜투어’ 등의 여행을 다녀온 것은 사실이나, 열차경비 및 현장 기초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하였고, 지역에서 받은 선물은 김, 머드팩 등 여행지의 홍보용 기념품이었습니다.”

둘째, “B카페가 코레일 수도권의 한 본부로부터 ‘철도게임축제’의 행사 장소와 비용을 지원받은 것은 B카페가 코레일 홍보실에 철도문화증진을 위한 기획서를 제출한 것이 채택되어 정식으로 지원 받은 것이며, 코레일의 ‘내일로’ 티켓 판매 실적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셋째, “코레일 개별 지역본부가 2008년 이후로 5년간 지원한 내역이 억대에 달한다는 내용은 과장된 표현이며, B카페는 팜투어의 기초 지원 형태를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본부로부터 금품 또는 현물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중재결정사항 이행결과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반론보도문〉 ‘기차여행 B카페의 금품수수 및 무리한 협조요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9일자)
- **내 용** : 〈중재 결정서의 별지 참조〉

사 례 10

서강대학교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경의선 서강역의 명칭을 서강대역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중재42·43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피신청인 :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3. 03. 26.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중재대상기사에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개통된 경의선 서강역을 서강대역으로 명칭을 변경해달라는 서강대와 학생들의 민원을 거절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단체는 서강대역과 관련된 민원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사실이 없고, 대학 평가 순위도 허위 보도 하는 등 학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2013서울조정320·321)을 신청했다.
- 이후 1차 조정기일 전에 당사자 간 중재합의(2013서울중재42·43)가 이루어졌고,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중재결정을 했다.
- 한편, 신청인은 문화일보(2013서울조정312·313)와 인터넷 문화일보(2013서울조정314·315)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게시한 네이버(2013서울조정316·317), 네이트(2013서울조정318·319)에 대해서도 각각 정정보도 및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문화일보와 인터넷 문화일보를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은 병합되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이후 1차 조정기일 심리전에 네이버(2013서울중재38·39)와 네이트(2013서울중재40·41) 역시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가 이루어져 담당중재부는 각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중재결정을 내렸다.

중재대상보도

- **다 음 :** 『비서진 달랑 1명…차에 홀대 우울한 서강대』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9일자)
- **내 용 :** 내각 및 청와대 인선 과정에서 출신 인사들이 중용되지 못한 데다 숙원사업이던 전철역 명칭 변경도 좌절되는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모교인 서강대가 ‘박근혜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장관 후보자 중 서강대 출신은 한 명도 없었고 18일과 19일 발표된 청와대 비서진 인선에서도 서강대 출신은 고작 1명이 포함되는 데 그쳤다. 이에 반해 사학 라이벌인 성균관대 출신 인사는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핵심 보직에 7명이나 포함됐다. 박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 이후 김○○ 국가미래연구원장과 김○○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등 서강대 출신 인사 및 교수들이 중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 인선 결과는 학내 안팎에서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 측이 1년 가까이 추진해 온 서강역 명칭 변경 요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거절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개통된 경의선 서강역을 ‘서강대역’으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서강대와 학생들의 민원을 거절했다. 반면 지하철 1호선 성북역은 오는 25일부터 광운대역으로 이름이 바뀐다.

서강대는 최근 각종 대학평가에서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차에 박 당선인의 모교로 인지도 상승 등의 효과를 노렸던 터라 더욱 아쉬움을 느끼는 분위기다.

중재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다음(<http://www.daum.net>)의 홈페이지 미디어다음 사회면 초기화면 중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조정대상기사(비서진 달랑 1명…차에 홀대 우울한 서강대)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 3. 31.까지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연할 경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가. 제 목 : 비서진 달랑 1명…차에 홀대 우울한 서강대’ 정정보도문(또는 ‘비서진 달랑 1명…차에 홀대 우울한 서강대’ 관련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나. 본 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월19일자 홈페이지 인터넷 뉴스에 「비서진 달랑 1명…차에 홀대 우울한 서강대」라는 제목으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개통된 경의선 서강역을 서강대역으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서강대와 학생들의 민원을 거절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확인한 결과, 서강대학교는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주식회사 문화일보로부터 전송받은 <별지>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미디어다음(<http://media.daum.net/>)의,
 - 가. 이 사건 중재대상기사가 위치한 동일한 섹션에 반영하여 검색되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 활자는 중재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크기·활자체와 각각 같게 한다.
 - 나. 뉴스룸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란에 게시하도록 한다.
2.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4.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 까지 1일에 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이 유

1. 신청이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미디어 다음(<http://media.daum.net/>)을 통해 주식회사 문화일보의 『비서진 달랑 1명…차에 홀대 우물한 서강대』제목의 기사(2013. 2. 19.자, 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불특정 다수에게 매개하였는데, 이 사건 보도에는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개통된 경의선 서강역을 ‘서강대역’으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서강대와 학생들의 민원을 거절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서강대학교는 국토부에 서강역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이후 양 당사자는 이 조정신청 사건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의해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전환신청을 하였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

가. 관련 법률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중재) ①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②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판 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포털사이트 〈미디어 다음〉을 운영하며 주식회사 문화일보로부터 이 사건 기사를 제공받아 별도로 수정하거나 편집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매개하였음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기사의 제공자인 주식회사 문화일보를 상대로 한 신청인의 조정신청사건(2013 서울조정314·315)은 〈별지〉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되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사제공언론사로부터 전송받은 기사를 매개하거나 제공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는 현실적 상황을 인정하여, 주식회사 문화일보로부터 〈별지〉 기재 기사를 제공받아 이를 포털사이트 〈미디어 다음〉을 통해 제3자에게 매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3. 결 론

기사제공언론사를 상대로 한 조정신청사건의 처리결과, 원 기사의 게시방법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03. 26.

〈별 지〉

1. 제 목 : 『차에 홀대받는 우울한 서강대』관련 바로잡습니다

2. 본 문 : 본보는 지난 2월 19일자 11면 『차에 홀대받는 우울한 서강대』 제목 기사에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개통된 경의선 서강역을 ‘서강대역’으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서강대와 학생들의 민원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서강대 학교법인은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중재결정사항 이행결과

■ 다 음 : 『차에 홀대받는 우울한 서강대』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8일자)

■ 내 용 : 〈중재 결정서의 별지 참조〉

사례 11

신청인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악성 해킹프로그램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중재48·49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주)○○○○○○○○

피신청인 : 주식회사 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3. 04. 02.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중재대상기사에서 'MBC가 2012년 5월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직원들의 전기통신을 감청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MBC 노조의 발표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회사는 MBC 노조가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자사에서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해킹방지 솔루션으로서 2007. 10.경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부터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을 받았으며, 2011. 1.경 IT보안인증사무국으로부터 인증 받은 범용 프로그램이라고 밝히면서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회사 영업활동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2013서울조정361)을 신청했다.
- 이후 1차 조정기일 심리 전에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2013서울중재48·49)가 이루어졌고,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중재결정을 했다.

중재대상보도

- 뉴시스 : 『MBC 위법 경찰 수사 촉구하는 MBC 노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내 용 : 14일 오후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MBC 노조가 방송사 MBC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며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접수하기에 앞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 자리에는 이○○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신○○ 변호사, 이△△ MBC본부 위원장, 김○○ MBC본부 수석부위원장, 김△△ 영화감독이 참석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대표적 공영방송사 MBC가 2012년 5월께 ‘○○○○(○○○○○○○○○○)’이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무차별적으로 전기통신을 감청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은 벌금형이 없는 중대한 범죄로, 노회찬 의원도 이 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문화방송 노동조합이 지난 9월 6일 서울 남부지검에 소장을 제출 후 5개월 넘게 지난 지금까지 이 사건은 남부지청 담당 영등포경찰서에 계류돼 있어 경찰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중재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뉴시스(<http://www.newsis.com/>)’의 홈페이지 [뉴스] 포토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가. 제 목 : ‘○○○○’ 악성 혹은 해킹 프로그램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뉴시스는 지난 3월 15일자에 “MBC 위법 경찰 수사 촉구하는 MBC 노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MBC 노조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이 악성프로그램”이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국내 중소보안업체인 (주)○○○○○○○○가 개발하여 특허와 GS 인증 및 국제공통규격인 CC인증까지 취득한 차세대 해킹방지 제품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주)○○○○○○○○는 “○○○○은 특정 고객을 위해 맞춤형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범용 제품이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중재결정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시스(<http://www.newsis.com/>)의 [뉴스] 포토섹션에 <별지> 기재 보도문을 게시하되, 제목과 본문의 활자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의 각 활자와 같도록 한다.
2. 제1항의 이행에 있어 <별지> 기재 보도문의 게시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이 유

1. 신청 이유

피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뉴시스(<http://www.newsis.com/>) 2013. 3. 14.자 「MBC 위법 경찰 수사 촉구하는 MBC 노조」제하의 기사를 통해 ‘MBC가 2012년 5월께 ○○○○(○○○○○○○○○○)이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직원들의 전기통신을 감청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촉구한다’는 MBC 노조의 발표를 인용하여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 회사는 MBC 노조가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한 ○○○○은 신청인 회사에서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해킹방지 솔루션으로서 2007. 10.경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부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2011. 1.경 IT보안인증사무국으로부터 인증 받은 범용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며 중재대상기사를 바로잡고 독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정보도와 함께 반론보도를 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이 사건 신청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중재부를 매개로 한 당사자 간 사전협의를 통해 보도할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세부적인 보도문안, 보도일, 보도위치 및 보도방법 등 구체적인 보도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중재부가 최종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판단하건대, 이 사건 기사에서 피신청인은 ‘MBC가 2012년 5월께 ○○○○(○○○○○○○○○○)이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직원들을 감청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MBC 노조의 성명발표를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해당 기사를 접한 독자로 하여금 신청인 회사에서 개발하고 시중에 보급한 ○○○○이란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이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개연성이 인정되는 데도 해당 기사에서는 신청인 회사의 의견이나 주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바, 신청인 회사가 개발한 ○○○○이란 프로그램은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범용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반론보도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은 2007. 10.경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부터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을 받고 2011. 1.경 IT보안인증사무국으로부터 공인 받은 범용 제품이기에도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한 MBC 노조의 성명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MBC 노조는 스스로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신청인 회사의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이라고 주관적

으로 평가하였고 피신청인은 MBC 노조의 발표를 보도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MBC 노조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여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행히 양 당사자는 이 사건 분쟁 진행 중에 사전 협의한 보도문을 당 중재부에 각 제출하였고, 중재부는 그 협의된 문안이 중재부의 의견과도 거의 합치되는 것으로 판단하는바, 양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론보도를 이행하도록 하고, 보도의 이행방법에 대해서는 뉴시스가 뉴스통신사로서 통상적으로 행하는 반론보도의 방식을 따르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당 중재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협의사항·실익, 원 기사의 크기와 보도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04. 03.

〈별 지〉

1. 제목 : 〈MBC 위법 경찰 수사 촉구하는 MBC 노조〉 관련 알림
2. 내용 : 뉴시스는 지난달 14일 〈MBC 위법 경찰 수사 촉구하는 MBC 노조〉 제하의 기사를 통해, ‘MBC가 2012년 5월께 ○○○○(○○○○○○○○○○)이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직원들의 전기통신을 감청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촉구한다’는 MBC 노조의 발표를 인용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은 “MBC 노조가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한 ○○○○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IT보안인증사무국 등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해킹방지 솔루션으로 범용제품일 뿐 결코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다”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중재결정사항 이행결과

- 뉴 시 스 : 『〈MBC 위법 경찰 수사 촉구하는 MBC 노조〉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9일자)
- 내 용 : 〈중재 결정서의 별지 참조〉

사 례 12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부 장관에게 “김정은에게 정중한 예의를 갖추라”고 발언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469, 2013서울조정471(병합)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 심 재 권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방송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3. 04. 15. (2013서울조정469)

2013. 04. 16. (2013서울조정471)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통일부 장관에게 김정은의 호칭을 정중하게 표현할 것을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당시 발언의 전체 내용 중 중간 부분을 생략하고 앞뒤 부분만을 편집·보도함으로써 신청인의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인터넷 TV조선에 게시하는 VOD에도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1

- **TV 조 선 :** 뉴스쇼 판 프로그램 『도 넘은 ‘북한 감싸기’』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9일자 21:50)

- **내 용 :** ▷ 앵커 : 북한이 말과 행동은 저렇게 하지만 설마 뭘 하겠느냐, 저도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전국민 단결해야 하는 준 전시, 비상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평상시면 몰라도, 동족이다, 같은 한민족이다, 지금 북한을 이렇게 낭만적으로 볼 때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국론 분열과 같은 모습들이 보여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이○○ 기자입니다.

- ▷ 리포트 :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개성공단 중단 사태를 우리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 ▷ 녹취 (이정희/통합진보당 대표) : “조용히 있던 개성공단을 건드려서 도대체 누가 무슨 이득을 얻었느냐. 북에 어떤 큰 타격을 줬느냐”
- ▷ 리포트 : 우리 정부와 군이 북한을 자극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당장 대북 특사를 통한 남북 대화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 ▷ 녹취 (이정희/통합진보당 대표) : “대화는 전쟁이 터진 다음에나 고려할 생각이냐”
- ▷ 리포트 : 하지만 북한 정부의 핵실험, 미사일발사, 남북합의 파기 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지나친 감싸기가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 ▷ 인터뷰 (이○○/서울 대흥동) : “계속 대화로 풀려고 했지만 그 쪽에서 거부를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좀 강경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 리포트 : 민주통합당 일부 의원들도 사태의 본질과는 관련 없는 발언으로 핵심을 흐리는 듯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호칭을 제대로 붙여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 ▷ 녹취 (심재권/민주통합당 의원) : “우리 정부 공식 문제에서 김정은이라 하나. 앞으로 이런 것 하나도 정중하게.”
- ▷ 리포트 : 전문가들은 국론분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 녹취 (허○○/전 국토통일원 장관) : “북한의 대변인 같은 얘기를 한국 내부에서 했다는 건 문자 그대로 적반하장이고 이적행위인데”
- ▷ 리포트 :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내부가 갈라지는 남남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TV조선 이○○입니다.

조정대상보도 2

- 인터넷 TV조선 : 『이 와중에 일부는 김정은 예우?』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9일자)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참고>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 (1)을 <TV조선, 뉴스쇼 판>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 (1)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한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 TV조선(<http://tv.chosun.com/main.html>)의 홈페이지 정치면 초기 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2)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 (2)가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 (2)를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가. 제 목 : 심재권 의원, “김정은에게 정중한 예 갖추라”고 한적 없어

나.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4월 9일 “뉴스쇼 판” 프로그램에서 “도 넘은 북한감싸기 <본 방송분>”, 이 와중에 일부는 친북행위<인터넷 판>”라는 제목으로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이 “김정은에게 정중한 예의를 갖추라”고 발언한 것처럼 편집하여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심재권 의원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천의지를 북한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적으로는 어떻게 부르든 적어도 정부 공식 문서상에서 만큼은 공식 호칭을 불러야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

가. 제 목 : 심재권 의원, “김정은에게 정중한 예 갖추라”고 한적 없어

나. 본 문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9일 “뉴스쇼 판” 프로그램에서 “이 와중에 일부는 친북행위”(4월 12일 저녁시간 무렵부터는 “이 와중에 일부는 김정은 예우?”라고 바뀌어 게재되고 있음)라는 제목으로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이 “김정은에게 정중한 예의를 갖추라”고 발언한 것처럼 편집하여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심재권 의원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천의지를 북한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적으로는 어떻게 부르든 적어도 정부

공식 문서상에서 만큼은 공식 호칭을 불러야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심재권 의원, “김정은 호칭 정중하게” 관련 반론보도문

나. 본 문 : 지난 4월 9일 「뉴스쇼 판」 프로그램에서 『도 넘은 ‘북한감싸기』라는 제목으로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부 장관에게 김정은의 호칭을 정중하게 할 것을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재권 의원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천의지를 북한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적으로는 어떻게 부르든 적어도 정부 공식 문서상에서 만큼은 공식 호칭을 불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의 본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TV조선에 2013년 4월 26일까지 「뉴스쇼 판」 프로그램 끝 부분에 아나운서 육성으로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그 동안 제목을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위치 및 크기와 동일하게,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각각 계속 표시한다.
3.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TV조선의 뉴스면(<http://news.tv.chosun.com/>)에 게시하는 VOD에도 반영한다.
4.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6. 피신청인이 위 제2, 3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에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013. 04. 2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1

- **TV 조 선** : 뉴스쇼 판 프로그램 『심재권 의원 “김정은 호칭 정중하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26일자 10:30)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2

- **인터넷 TV조선** : 『심재권 의원 “김정은 호칭 정중하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13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연구비 지원과 실적 과장을 위해 자기논문을 표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581 반론청구

신 청 인 : 손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13. 05. 09.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실적을 과장하기 위해 교수들의 ‘자기논문 표절’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교수인 신청인이 2008년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사업공모에 제출한 논문과 관련하여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당시에는 국내 학회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으며, 2007년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을 수여한 교육부가 시상취소를 검토했지만 이에 대해 한국연구재단은 상훈은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실적을 과장하기 위해 자기표절을 한 적이 없고, 학회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한 사실도 없으며, 교육부가 ‘2007년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시상 취소를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심의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선일보** : 『연구비 따내려... 명문대 교수도 자기논문 다시 베껴』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일자 10면)
- **내 용** : 서울의 K대학교 연구팀은 한 연구원의 석사 학위논문의 핵심 연구 데이터를 재탕해 WCU 연구 성과로 제출했다. 해당 연구팀 대표 교수는 “석사논문을 학술지에 인용 없이 다시 올리는 것은 학계의 관행”이라고 말했지만, WCU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연구재단은 “사업 취지에 어울리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했다.

연구비를 따오거나 자신의 실적을 과장하기 위해 학계에서 자기 표절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WCU 사업 공모 1차 심사를 통과했던 ○○대 S 교수도 제출 논문 자기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S 교수는 “(저명 교수의 논문을 읽고 싶어하는) 국내 학회들이 실어달라고 부탁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고, ○○대는 S 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S 교수에게 ‘2007년 올해의 ○○과학기술자상’을 수여한 교육부는 시상(施賞) 취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연구재단은 “현재 S 교수의 상훈은 아무 문제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학 관계자는 “평생 한 분야만을 연구하는 교수·학자들은 항상 자기 표절 유혹에 시달린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매년 새 논문을 써야 실적이 쌓이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분야의 교수들은 예전 연구에 약간의 성과만 보태 논문을 내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때 문장을 손이라도 좀 보고 논문을 내야 하는데 그런 성의마저 안 보이는 교수들이 많다”고 했다.

표절에 관대한 학계의 태도가 실적 부풀리기용 자기 표절까지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올해 3월 입각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각각 학술 논문과 박사 학위논문 자기 표절 의혹을 받았지만, 청문회를 통과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8~2012년 6월 30일까지 교수 83명이 논문 표절로 각종 징계를 받았지만, 이 중 해임·파면은 24명에 그쳤다. 54명에게는 단순 경고·견책 등의 경징계 조치만 취해졌으며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랐다.

학계의 빈번한 자기 표절에 대해 한 서울대 교수는 “자정작용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15~20년 전쯤부터 학계에 양적인 연구 실적 측량 시스템이 도입됐고, 해외 학술지 게재 열풍이 불면서 교수들이 연구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졌다”면서 “이 때문에 논문을 통한 사회문제 논쟁이 사라졌고 서로의 논문은 보지 않는 풍토가 생겼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대 교수는 “일부 연구자들에게 자기 표절, 중복 게재 등 엄연한 연구 부정(不正)이 일종의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논문 게재 실적 등 양적 성과가 연구비 지원과 교수 개인의 승진·평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부 교수들이 연구윤리를 저버리는 유혹에 빠진다”고 진단했다.

■ 자기 표절(Self-plagiarism)

자신의 옛 저작 중 상당한 부분을 똑같이 또는 거의 똑같이 다시 사용해 새로운 연구결과나 성과·업적으로 사용하면서 원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 학계에서는 ‘중복 게재’ 또는 ‘중복 출판’이라고도 불린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조선일보 사회면에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반론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죄의식 없는 ‘표절 대한민국’ <5> 양심 파는 대학”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가. 제 목 : 연구비 따내려… 명문대 교수도 자기논문 다시 베껴

죄의식 없는 ‘표절 대한민국’ <5> 양심 파는 대학’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나.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일자 사회면 화면에 “연구비 따내려… 명문대 교수도 자기논문 다시 베껴”, “죄의식 없는 ‘표절 대한민국’ <5> 양심 파는 대학”이라는 제목 하에 연구비를 따오거나 자신의 실적을 과장하기 위해 학계에서 자기 표절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WCU 사업 공모 1차 심사를 통과했던 ○○대 S 교수도 제출 논문 자기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S교수는(‘저명 교수의 논문을 읽고 싶어하는’) 국내 학회들이 실어달라고 부탁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고, ○○대는 S 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S 교수에게 ‘2007년 올해의 ○○과학기술자상’을 수여한 교육부는 시상(施賞) 취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연구재단은 “현재 S 교수의 상훈은 아무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라고 보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S 교수는, 당시 “기 출판된 국문논문 연구를 기반으로 이후 나온 영문논문의 출판이 문제가 된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범적으로 국내외 관심 있는 관·산학연 각 기관의 독자들에게 필요한 연구결과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던 차라 이번일이 무척 당황스러울 뿐이다. 영문은 또 다른 저작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영문논문 작성 시 Journal의 방향에 따라 많은 수정이 가해질 때가 많다.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다른 언어로 된 국문과 영문 두 가지 논문이 동일하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으며 두 논문의 순기능을 위해 매진해 온 연구자로 이번 일이 혼동스러울 뿐이다”라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후 그는 논의 대상이 되었던 논문관련 국제 저널에 그 사안을 알리는 ‘사사’ 제출로 Corrigendum 을 출판하였으며 이러한 추가 ‘사사’가 불필요하다고 한 국제저널도 있었음을 참고할 때 더 이상의 불필요한 마녀사냥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연구결과를 국내 발표 1회로만 끝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할 때 작금의 논란은 우리글 연구결과 발표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측면에

서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09년에 수상내역을 재검토한 한국연구재단 역시 ‘S 교수의 상훈은 아무 문제가 없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아니라 수상의 근간이 되었던 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그의 우수한 연구를 더 격려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시기에 왜곡된 기사와 선정적인 표현으로 피해를 끼치는 일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라고 밝혀 왔습니다.

위의 사항을 기사가 나오기 전인 2013년 3월 31일 김○○ 기자로부터 반론 요청이 왔을 때 충분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기사와 선정적 표현(다시 베껴, 죄의식 없는, 양심 파는, 연구비 따내려, 실적을 과장하기 위해, 중징계, 시상취소)으로 정신적 피해를 끼친 점에 기자는 사과하고 해당 기사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원 출처를 인용하지 않고,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타 신문사 인터넷 기사를 보고 위 기사를 쓴 것에 대해 기자는 사과하는 바입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명문대 교수 자기표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본 문 : 본지는 4월 1일자 10면 ‘표절 기획기사’에서 ○○대 S교수가 실적을 과장하기 위해 자기표절을 한 듯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측은 보도기사와 같은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혀왔으며, 해당 교수는 논의대상이 된 영문논문은 국문논문을 발전시켜 게재한 것으로 추후 인용사사를 게재했고 국내 학회들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국내학술지에 국문논문을 실었다고 해명한 사실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2007년 과학기술자상 시상취소를 검토한 바 없으며 한국연구재단은 시상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3년 6월 8일까지 <조선일보> 사회면에 제1항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의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실적 부풀리기 성행’)과 동일한 활자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고, 본문 활자 크기도 조정대상기사 본문과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이 제1, 2항의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신청인은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6. 0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1

- **조선일보** : 『명문대 교수 자기표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8일자 10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2

- **조선닷컴** : 『명문대 교수 자기표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7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14

산양분유업체들이 산양분유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산양유 성분량을 허위로 광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583 · 584, 2013서울조정585 · 586(병합)

각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주)

피신청인 : 1. 한국방송공사, 2.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3. 05. 13.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들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산양분유의 성분으로 산양유 고형분 외에 유당(우유)이 함유되어 있는 것에 대해 산양분유 제조업체가 유당(우유)은 젖소유당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100% 산양유성분으로 된 산양분유는 원래 있을 수 없고, 유당(우유) 표기는 현행법 규정에 따라 타당하며 젖소유당이나 산양유당으로 구분하여 표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없으며, 보도에서 과장광고의 근거로 제시된 홍보물은 산양분유의 것이 아니라 산양유아식의 홍보물이라며 정정보도와 함께 피신청인1, 2에게 각각 100,000,000원과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들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KBS 미디어의 경우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 한편, KBS-1TV의 경우 신청인이 인터넷 포털 및 기타 온라인매체 측에 조정대상 보도 및 조정대상 보도 관련 기사에 대한 접근차단을 요청할 시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조정대상보도 1

- **KBS-1TV** :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산양유만 100% 담았다? 소비자 우롱하는 산양분유의 진실!』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5일자 19:30)

■ 내 용 : (전략)

▷ 내레이션 : 소중남! 산양분유를 속속들히 파헤쳐 봤습니다. 첫 번째 의문! 산양분유는 100% 산양유 성분일까요?

▷ 소비자 인터뷰(방○○) : 당연히 100%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 프로그램 관계자 : 산양유 100%로 만들어진 건가요?

▷ 마트 점원 : 네. 이게 뉴질랜드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이거 인정하고 많이 사가요.

▷ 내레이션 : 판매 점원도 100% 산양분유라 자신하는데요, 직접 살펴봤더니 이게 뭘니까? 산양유 고형분 51.2%라구요? 100%는 커녕 산양유 고형분 함유량 12%도 있네요?

▷ 소비자 인터뷰(김○○) : 농락당하는 기분이에요. 비싼 돈 주고 샀는데도 100%인 게 있고 아닌 게 있다는 걸 소비자는 알 수가 없잖아요.

▷ 소비자 인터뷰(김△△) : 산양유라고 하면 산양 젖으로 전체를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 내레이션 : 이에 대한 업체의 입장이 궁금했습니다. 직접 찾아가봤는데요.

▷ 프로그램 관계자 : 문의 드리려고 회사에 방문을 했거든요.

▷ 내레이션 : 어렵게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 A업체 본사 관계자 : 어머니의 모유와 가장 비슷한 분유를 제조하고 그런 제품을 아이에게 먹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산양유 100%다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나름 현명하신 소비자들은 판단하고 계시겠죠.

▷ 내레이션 :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해라? 이거 좀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다른 업체를 찾아가봤습니다.

▷ B업체 본사 관계자 : 제가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순 없고요. 일단 보고를 드리고요. 며칠 뒤 서면으로 온 답변입니다.

▷ 내레이션 : 산양유 성분만으로 만든 산양분유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 과연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이 광고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이 이 광고를 본다면 100% 산양유 성분으로 만들어진 분유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0년간 국내 분유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업계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 업계 관계자 인터뷰(이○○(가명)) : 산양유 성분이 20%나 30%나 100%나 다 산양유라는 명칭을 쓰다보니까 이게 엄마들은 (시중에 판매되는 산양분유가) 다 (산양유) 100%인 줄 알고 먹이고 있거든요. 이런 건 정말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내레이션 : 두번째 의문! 산양분유에 정작 산양유 성분은 50% 남짓! 그렇다면 나머지는 뭘로 만들어진 걸까요? 분유 성분표에서 공통으로 ‘유당’이라는 성분표 발견! 이게 도대체 뭘까요?

(중략)

▷ B업체 관계자 : 저희도 제품을 만들면서 원료라든가 사용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 아래에서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 쪽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없겠지만 고객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산양분유니까 산양 유당까지 다 포함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의견 주신 건 해당 부서 쪽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내레이션 : 대부분의 산양분유엔 젖소유당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왜 젖소라는 말은 표기하지 않은 걸까요? 조사에선 굳이 젖소 유당이라고 쓰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 내레이션 : 물론 모든 업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산양유 유당을 쓰는 업체도 있는데요. 모든 제조사가 산양유 유당을 쓸 수는 없는 걸까요?

▷ 프로그램 관계자 : 산양분유에 젖소 유당을 왜 쓰는 건가요?

▷ 업계 관계자 인터뷰(이○○(가명)) : 제가 판단할 때는 첫째로는 (산양 유당을) 구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로는 원가 부담이 큼니다. 젖소 유당과 산양 유당의 가격차가 5~6배 정도 납니다. 즉, 산양 유당이 5~6배 정도 (젖소 유당에 비해) 원가가 높습니다.

▷ 프로그램 관계자 : 그 이유 때문에... 원가 절감의 차원인가요?

▷ 업계 관계자 인터뷰(이○○(가명)) : 원가 절감은 아니고요. 산양분유의 본질이죠. 산양분유는 반드시 산양 유당을 써야 하는 것이 맞죠.

▷ 소비자 인터뷰1 :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몇 배나 주고 먹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 소비자 인터뷰2 : 말이 안 되죠. 그럼 그런 걸 표시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소비자 인터뷰3 : 좀 속은 기분은 드는데... 아기 건 전부 좋은 것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좀 뒤통수를 맞은 기분도 들고 그러네요. 가격차가 적은 것도 아닌데...

▷ 내레이션 : 더군다나 시중에 판매되는 산양분유는 일반 분유의 2배 이상! 모유와 유사한 성분으로 소화흡수가 잘 되고 아기들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 인터뷰(세종대 생명식품공학부 김□□ 교수)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산양유가 우유보다 훨씬 더 좋든지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굉장히 미비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에서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황금변이나 점도가 낮은 변을 보는 데에 (산양분유가) 도움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 진행자 멘트 : 자, 어떻습니까? 젖소라는 말을 교묘하게 빼 소비자들을 기만한 제조사들에게 시민들이 말합니다.

▷ 소비자 인터뷰(김◇◇◇) : 산양분유면 산양유의 함량도 높이고 이름에 맞게 (산양의) 성분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만약 젖소 유당이 들어갔다면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크게 알아볼 수 있게 표기해야 할 것 같아요.

▷ 소비자 인터뷰(김◎◎) : 성분 함량 같은 것을 확실하게 기재해서 소비자들이 헛갈리지 않도록 하고 가격 조정도 해서 어린 아이들이 튼튼하게 잘 자라고 바른 먹거리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모든 제조사들이 좋은 분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하게, 숨김없이 만들어 주세요~!

조정대상보도 2

■ **KBS미디어** : 『[다시보기] 산양유만 100% 담았다? 소비자 우롱하는 산양분유의 진실!』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5일자)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 1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KBS-1TV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시청자가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2. 피신청인 1은 정정보도 사실을 통상적인 프로그램의 예고편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고 방송하여 시청자들에게 미리 알린다.
3.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4. 피신청인 2는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KBS 홈페이지 <소비자고발> 섹션 기사목록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5.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산양분유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2월 15일자 “산양유만 답았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산양분유의 진실” 편에서 기존업체들의 산양분유가 100% 산양유성분이 아니며 젓소유당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첫째, 100% 산양유 성분으로 된 산양분유는 원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산양분유 업체들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없으며, 특정업체 제품만 100% 산양유성분인 것처럼 보도된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둘째, 기존 산양분유 업체가 100% 산양유성분이라고 광고했다는 증거로 보여준 홍보물은 산양분유가 아닌 산양유아식의 홍보물입니다. 그 내용 또한 전체가 아니라 “유성분 중 산양유성분 100%”라는 것이기에 사실 그대로이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셋째, 젓소유당이나 산양유당이라는 말은 특정업체가 홍보를 위해 만들어낸 용어로써 올바른 표시방법이 아닙니다. 기존 산양분유 업체들은 유당성분에 대해 관련법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정직하게 표시해 왔으며,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없습니다.

넷째, 유당은 우유, 산양유에 관계없이 구조와 효능이 동일한 성분입니다. 그러므로 산양유와 우유의 유당이 다르고, 산양분유라면 산양유당을 써야 한다는 특정업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최초로 산양분유를 개발하여 20여 개국에 수출해 온 뉴질랜드 테어리고트사의 표준적 조제법 또한 우유유래 유당을 사용합니다.

다섯째, 산양분유의 효과가 없다는 내용의 인터뷰는 일부의 의견일 뿐이며, 많은 의사와 학자들은 우유를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아기들에게 산양분유를 권장합니다.

또한 산양분유는 다수의 임상실험을 통해 아토피 개선, 모유에 가까운 변성 등 특징점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EFSA) 등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영유아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인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25년간 세계 각국의 시장에서 직접 검증을 받아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1. 보도문

가. 제 목 : 산양분유의 산양유 성분에 관한 반론보도

나. 본 문 : 지난 2월 15일 제 246회에 방송한 <산양유만 100% 담았다? 산양분유에 관한 오해와 진실>편에서 산양분유의 유성분 중 산양유고형분 외에 유당(우유)이 함유되어 있는 것에 대해 산양분유 제조업체가 유당(우유)은 젖소유당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아니냐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측은 100% 산양유성분으로 된 산양분유는 원래 있을 수 없고, 유당(우유) 표기는 현행 관련법 규정에 따라 타당하며 젖소유당이나 산양유당으로 구분하여 표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는 “다수의 임상실험을 통해 산양분유가 모유에 가장 가깝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며 산양분유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본 방송의 인터뷰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한편, ○○○○○가 100% 산양유성분이라고 광고했다는 근거로 방영된 홍보물은 산양분유의 것이 아닌 산양유아식 홍보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 1은 위 보도문을 2013년 5월 31일 <똑똑한 소비자리포트>프로그램 말미에 방송하되, 제목을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중에 사용된 관련 화면을 방송하면서, 본문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단 피신청인 1의 사정으로 결방 시에는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음 회에 방영한다.

3. 피신청인 1이 위 제2항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 1은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피신청인 1이 위 제2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1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만·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5. 피신청인 1이 위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6. 신청인이 인터넷포털 및 기타 온라인매체 측에 조정대상보도 및 조정대상보도 관련 기사에 대한 접근차단을 요청할 시 피신청인 1은 협조한다.

2013. 05. 28.

조정성립사항 2

1. 보도문

가. 제 목 : 산양분유의 산양유 성분에 관한 반론보도

나. 본 문 : 지난 2월 15일 제 246회에 방송한 <산양유만 100% 담았다? 산양분유에 관한 오해와 진실>편에서 산양분유의 유성분 중 산양유 고형분 외에 유당(우유)이 함유되어 있는 것에 대해 산양분유 제조업체가 유당(우유)은 젖소유당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아니냐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측은 100% 산양유성분으로 된 산양분유는 원래 있을 수 없고, 유당(우유) 표기는 현행 관련법 규정에 따라 타당하며 젖소유당이나 산양유당으로 구분하여 표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는 “다수의 임상실험을 통해 산양분유가 모유에 가장 가깝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며 산양분유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본 방송의 인터뷰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한편, ○○○○○가 100% 산양유성분이라고 광고했다는 근거로 방영된 홍보물은 산양분유의 것이 아닌 산양유아식 홍보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 1이 위 제1항의 보도문을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에 방송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신청인 2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는 피신청인 2의 홈페이지 내 <똑똑한 소비자리포트>코너 내 ‘방송다시보기’ 코너(http://www.kbs.co.kr/1tv/sisa/1004/view/old_view/63916_index.html)에 게재한다.

3. 피신청인 2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는 피신청인2의 홈페이지 내 <똑똑한 소비자리포트>코너 내 ‘방송다시보기’ 코너에 있는 ‘조정대상보도’ (http://www.kbs.co.kr/1tv/sisa/1004/view/old_view/2106118_63918.html)에 대한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한다.
4. 피신청인 2가 위 제2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 2는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피신청인 2가 위 제2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2 및 피신청인 2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6. 피신청인 2가 위 제2항 내지 제3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013. 05. 28.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1

- **KBS-1TV** :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산양분유의 산양유 성분에 관한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31일자 19:30)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2

- **KBS미디어** : 『[다시보기] 산양분유의 산양유 성분에 관한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15

신청인 회사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고화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납품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648 · 649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주)○○○○○○○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3. 05. 27.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 회사가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고화제(매립지를 덮는 흙을 만드는 재료)를 만들어 이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납품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금강유역환경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고화제에 사용된 폴리실리콘 제조 공정 부산물은 발암물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무해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정정보도 및 8,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신청 이후, 피신청인은 후속보도를 게재했고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취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연합뉴스** : 『수도권매립지에 유해 매립자재 납품 의혹… 경찰 수사』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일자)
- **내 용** :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고화제(매립지를 덮는 흙을 만드는 재료)가 사용됐다는 제보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2일 인천시 서구 ○○동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서 A업체가 매립지를 덮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든 고화제를 사용했다는 고발이 들어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 완주군에 있는 이 업체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고화제를 납품해 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해 성분을 검사하고 있다”면서 “고발대로 발암물질이 검출되면 관련 업체 대표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제보한 A업체의 관계자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A사가 원료비를 아끼려고 폴리실리콘 제조공정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든 자재로 고화제를 만들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납품했고 고화제 샘플조사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A사는 2011년 6월과 7월에도 불량 고화제를 만들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사는 또 고화제의 시험성적서도 2011년 4월과 8월 두 차례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지자 A업체가 납품한 고화제를 전북대 공학기술연구센터에서 성분검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벤젠과 실란이 검출됐다.

A 사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매립지관리공사에 고화제 6만8천935t을 납품했다.

이는 같은 기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납품받은 고화제의 50%가 넘는 수치다.

이○○ 매립지관리공사 자원사업실 부장은 “A업체가 고화제를 납품할 당시 2011년 6월 10일과 7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불량 고화제를 납품했다”면서 “고화제 검사 담당 직원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보고를 해 납품을 정지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화제가 단시간에 생산할 수 있지 않아 수급에 문제가 있어 2012년 2월에 다시 A업체로부터 계약기간인 2012월 12월까지 고화제를 다시 납품받았다”면서 “계약이 끝난 뒤로는 불미스러운 여러 사건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 고화제를 자체 생산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A업체의 대표이사는 “아직 경찰에서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당시에 벤젠과 실란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는 정성분석(성분검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 유해성 여부를 따지려면 정량분석(기준치 이상 검출 검사)를 해야한다”면서 “정성분석은 소량만 들어 있어도 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 누군가 우리 업체를 음해하려는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불량 고화제에 대한 고발을 보고받았지만 현장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인터넷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여,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수도권매립지에 유해 매립자재 납품 의혹…경찰수사’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4월 2일자 사회면에 “수도권매립지에 유해 매립자재 납품 의혹…경찰수사”라는 제목으로 ‘A’사가 수도권매립지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폴리실리콘 제조공정 유해 부산물로 고화제를 만들어 납품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금강유역환경청에 분석의뢰한 시험 결과 및 전북 완주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의뢰한 시험 결과 모두, 고화제에 사용된 폴리실리콘 제조 공정 부산물은 발암물질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무해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한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 연합뉴스 : 『매립지 발암물질 고화제 의혹... 공사 “안전 문제 없어”』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일자)
- 내 용 : 수도권매립지에 발암물질이 포함된 고화제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는 2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립지공사는 매립장을 대상으로 페놀과 벤젠 등 유해 물질 검사를 매달 해 온 결과 늘 기준치로 나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매립지공사 자회사인 환경 조사업체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시행한 조사에서 페놀은 2012년 2월 딱 1차례 검출됐는데 수치가 2.7ppm으로 기준치인 4ppm 이내였다.

벤젠은 2차례 검출됐다. 2011년 6월 0.6ppm, 2012년 3월 0.1ppm으로 기준치인 1ppm 이내로 나왔다.

매립지공사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내로 검출된 데다 의혹이 제기된 제2매립장 내 고화제의 양이 매립 폐기물의 양에 비해 미미해 영향이 없다고 했다.

매립지공사에 따르면 제2매립장 매립 폐기물의 양은 6천325만t이고 문제가 된 고화제의 양은 148t이다.

매립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발암물질이 섞인 고화제가 실제 매립지에 납품됐다고 해도 매립장에서 일했던 분이나 주변 주민에게 유해한 영향이 있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수도권매립지에서 A업체가 매립지를 덮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든 고화제를 사용했다는 고발이 들어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 례 16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무자격업체에 잠수용역을 맡겨 정부의 바다숲 조성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부산조정20 · 21, 2013부산조정22 · 23(병합)

각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13. 06. 07.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바다숲 조성사업과 관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해양 관련 '잠수용역 사업'은 자격을 갖춘 업체만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무자격업체에 맡겨 부실의혹이 일고 있으며, 공단이 용역을 발주하면서 사업기간과 사업비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주는 '수퍼갑'의 횡포를 휘둘러왔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공단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잠수용역은 자격업체에만 용역을 맡기고 그렇지 않은 잠수용역은 비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맡겨왔으며, 또한 과업내용과 사업 기간에 따른 비용 산정은 정부공인기관의 원가계산에 의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총 6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했다.

조정대상보도

- 부산KBS-1TV : (1) KBS 뉴스 9 프로그램 『바다숲 조사 무자격자에게 용역 맡겨』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10일자 21:00)
- 내 용 : ▷ 아나운서(남)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아나운서(여) : KBS 9시 부산뉴스입니다.

▷ 아나운서(남) : 오늘은 바다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첫 바다식목일입니다.

▷ 아나운서(여) : 하지만 푸른 바다숲이 제대로 가꿔질지 의문입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관련 사업을 무자격업체에 맡겨 부실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바다 속에서 다양한 생물들의 은신처가 되는 물고기집. 인공어초입니다.

인공어초를 이용해 바다숲을 조성하는 사업은 전문 기술이 필수적인 분야, 이 때문에 해양관련 ‘잠수조사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이 사업을 무자격자에게 맡겨왔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참여업체 42곳 가운데 등록 업체는 11곳, 나머지 31곳은 관련 자격증이 없는 미등록 업체입니다.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여러 가지 법을 전부 적용해서 될 수 있으면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 기자 : 그러나 무자격자가 맡은 사업은 재하도급으로 이어지고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고 관계업자들은 말합니다.

▷ 해양 관련 등록업체 대표 : 기술자도 확보하지 않고 페이퍼 컴퍼니들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수주를 하고 난 뒤에 하도를 줍니다. 그 자체가 용역이 백프로 부실이라고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 기자 : 게다가 입찰 결과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무한한 생명의 보고인 바다의 미래를 법도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사업을 발주하는 이런 공단에 맡겨도 되는 걸까요? 공단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뉴스 최○○입니다.

■ 부산KBS-1TV : (2) KBS 뉴스 9 프로그램 『수퍼갑의 횡포 사업비 후려치기』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15일자 21:00)

■ 내 용 : ▷ 아나운서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무자격자에게 관련 사업을 맡겨드렸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공단이 사업기간은 물론 비용도 제 몇대로 정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주는 등 이른 바 슈퍼갑의 횡포를 휘둘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해양조사업체를 운영하는 곽○○씨, 곽씨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지난해 발주한 전국 갯 녹음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국 15개 지점에서 갯 녹음조사를 하면서 잠수사가 실제 바다에서 작업한 날은 모두 126일 재경비와 기술료를 모두 다 빼고 잠수인력의 인건비와 숙박비 선박 용선료만 따져도 2억6천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지급한 전체 사업비는 1억4천5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 업체대표 : 등록된 대가대로 대가를 정당한 대가로 지불을 해야는데 그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그에 맞는 용역 수행이 되지 않는거죠, 부실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 기자 : 공단 측은 작업과 난이도에 따라 대가기준을 달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 공단 : 어떤 난이도에 따라서 직업을 단순화 시킨다던지 좀 더 고난도의 작업을 요구하는 작업에 따라서 대가기준을 서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 기자 : 그러나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서 제시하는 대가기준표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해도 숙련도에 따른 잠수사 인건비등 하루 평균 비용은 670만 원 실제 작업한 126일로 계산하면 총 금액은 8억4천만 원 공단이 준 돈에 6배 수준입니다. 여기서 공단은 잠수인력에 게 4대 보험도 적용하지 않아 사고가 나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해양업체 : 뚜껑을 열어보면 이진 부러먹는거지, 머슴이지 머슴. 그래도 가서 일을 안 하면 패널티를 주지, 업자는 죽어라 하다보니까.

▷ 기자 : 무자격자에게 일감 몰아주기였다 사업비 후려치기까지 슈퍼갑 공공기관의 횡포가 도를 넘으면서 부실사업은 물론 해양수산분야 종사업체가 고사위기에 놓였습니다. KBS뉴스 최○○입니다.

조정신청취지

1. 2013부산조정20·21 관련

가.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 (1)을 KBS1-TV <뉴스 9>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 (1)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2. 2013부산조정22·23 관련

가.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 (2)를 KBS1-TV <뉴스 9>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 (2)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가. 제 목 : ‘바다 숲 조사 무자격자에게 용역 맡겨’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2013년 5월 10일 및 5월 11일 뉴스프로그램에서 ‘바다 숲 조사 무자격자에게 용역 맡겨’ 라는 제목으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바다 숲 조사 잠수용역을 발주하면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자격업체가 아닌 무자격 업체에 맡겨 재하도급 및페이퍼컴퍼니의 부실 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입찰결과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확인한 결과, 공단은 잠수용역의 과업특성 상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잠수용역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만 용역을 맡기고 해당하지 않는 잠수용역은 비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맡겨 온 바, 무자격자에 맡기지 않았고, 입찰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정보처리장치인 나라장터에 공개되어 있으며 제안서 평가점수에 대해서 공단에게 공개 의무가 없는 것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

가. 제 목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슈퍼갑 횡포’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2013년 5월 15일 뉴스프로그램에서 ‘슈퍼 갑의 횡포 사업비 후려치기’라는 제목으로 전국 갯 녹음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제보업체는 실제 작업한 일수가 126일임에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사업기간 및 비용을 제 몇대로 정하고 이를 어기면 임의로 불이익을 주는 등 슈퍼갑의 횡포를 휘둘러 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실제 작업일수는 62일로 보도에서 언급한 126일과는 차이가 있었으며 대가 산정 시에는 해상 날씨 등을 고려하여 74일로 설계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과업내용과 사업 기간에 따른 비용 산정은 정부공인기관의 원가계산에 의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신청인이 임의로 업체에 불이익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업기간 및 비용 산정을 임의로 하여 슈퍼 갑의 횡포를 하고 있으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업비를 후려쳐서 부실을 조장한다고 보도를 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수산자원공단 “무자격자에게 용역 안맡겨”

나. 내 용 : 지난 5월 10일과 15일 바다숲 조성 보도와 관련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는 잠수용역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용역을 맡기고, 비엔지니어링 잠수용역은 일반잠수사업자에게 맡겨 무자격자에게 맡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체의 주장과는 달리 과업내용과 사업기간에 따른 비용 산정은 정부 공인기관의 원가 계산에 의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임의로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3. 7. 3. KBS부산 <뉴스9> 및 2013. 7. 4. KBS부산 <뉴스광장> 프로그램 중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내용(제목, 본문, 보도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013. 07. 01.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부산KBS-1TV : (1) KBS 뉴스 9 프로그램 『수산자원공단 “무자격자에 용역 안 맡겨”』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3일자 21:00)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부산KBS-1TV : (2)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수산자원공단 “무자격자에 용역 안 맡겨”』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4일자 06:00)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17

한국은행이 국내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000여억 원을 고스란히 날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885 · 886, 2013서울조정887 · 888(병합)

각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 한국은행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뉴스프레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3. 06. 13.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한국은행이 자신들이 보유한 국내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000여 억 원을 고스란히 날렸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한국은행의 국내은행 주식처분 여부나 매각 가격은 한국은행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되므로 한국은행의 국내은행 지분매각을 놓고 ‘세금손실’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한국은행이 손실 회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등의 내용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으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1

■ **주간조선 :** 『MB앤 김○○ △△금융 앞에선 왜 작아지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0일자 커버스토리면)

■ **내 용 :** 한국은행(총재 김○○)이 자신들이 보유한 한국○○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033억7,150만 원(이하 1,034억 원으로 표기)을 고스란히 날렸다. 한국은행이 날린 세금 1,034억 원만큼 사실상 이득을 본 곳은 △△금융지주(회장 김□□)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1,034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고스란히 날린 이후, 이를 회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도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배경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 나아가 이렇게 되면 ‘(업무상) 배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은 △△금융지주에 이은 한국○○은행(행장 윤○○·이하 ○○은행으로 표기)의 2대 주주였다. ○○은행은 1967년 한국은행 외환관리과에서 분리돼 만들어졌다. 사실 한국은행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영리기업이나 단체를 소유·운영할 수 없다’는 ‘한국은행법(103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중은행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1967년 한국은행 외환관리과에서 분리된 ○○은행에 한국은행이 국민 세금으로 100% 출자하면서, 이 역사를 인정받아 ○○은행 지분을 계속 보유해 왔다. 특히 이를 합법 화해 주기 위해 ‘한국은행의 ○○은행 지분의 소유를 인정’해 주는 ‘○○은행법(8조)’의 특례 조항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은행이 영리기업인 △△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전환되면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은행 주식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1989년 ○○은행법이 폐지되면서 한국은행법 103조에 따라 한국은행은 기존 ○○은행 주식 이외 영리기업인 △△금융지주 지분은 가질 수 없게 된 것이다.

한국은행이 보유한 ○○은행 지분은 6.1%(3950만주)로 확정된 장부 가치로만 ‘주당 1만 원’, 총 3,950억 원 규모였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초 자신들이 보유하던 ○○은행 지분을 주당 7,383원씩 총 2,916억2,850만 원(이하 2,916억 원으로 표기)에 △△금융지주에 매각했고, 이로 인해 1,034억 원에 이르는 세금 손실이 발생했다.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은행 지분 6.1%는 세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1,034억 원의 손해는 온전한 세금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중략)

한국은행은 4월 초까지만 해도 ‘1,000억 원대 세금 손실 발생, 주주가치 훼손, 최대주주의 비상식적 경영’ 등의 이유로 △△금융지주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강력히 반대했었다. 당시 한국은행은 ○○은행 주식 5.28주와 △△금융지주 주식 1주를 맞교환하는 방안과, 하나금융지주가 제시한 주식 매수청구 가격(주당 7,383원)을 비상식적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국은행은 올 2~3월 △△금융지주가 정한 ○○은행 주식 1주 매수청구 가격 7,383원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법률 검토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회에 7,383원에 불과한 매수청구 가격 조정을 의뢰하기도 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금융지주가 강행한 ○○은행 주식과 △△금융지주의 ‘포괄적 주식교환’ 자체의 법적 문제에 대해 지난 3월 이후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법률 자문도 받았다. 한국은행 신○○ 팀장은 “세금 1,000억 원이 날아간 건 올 1월 △△금융지주가 2대 주주인 한국은행과 아무 협의도 없이 일방적이고 전격적으로 자기들끼리 일을 벌였기 때문”이라며 “△△금융지주가 추진한 ‘포괄적 주식교환’ ‘○○은행 상장폐지’ ‘저가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에 대해 소송 문제까지 포함한 법률 자문을 얼마 전까지 받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렇던 한국은행이 3월 중순 김○○(66) 총재의 최종 결정으로 ○○은행 지분을 △△금융지주에 넘겼다.(최종 지분매각 대금 결제는 4월 3일쯤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그 후 부터 세금 손실 회수 등과 관련해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소극적 입장’으로 갑작스럽게 자세를 전환했다. 즉 1,000억 원대의 손실을 빚은 ‘포괄적 주식교환’ 결정을 문제 삼기 위한 소송 제기 등 법률 자문을 한 달 전부터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융지주·○○은행을 상대로 아무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한국은행의 ‘기류 변화’는 한국은행 관계자의 말에 그대로 녹아 있다. 신○○ 팀장은 “지분 60%를 가진 △△금융지주가 지배권을 비상식적으로 행사한 횡포”라고 불만을 털어 놓으면서도 “한국은행이 애초 ○○은행에 출자를 한 건 (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국은행이 ○○은행에 출자한 건 이윤 추구 때문이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봐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장부상 세금 손실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고, △△금융지주에 대한 정서상...”이라며 말을 흐렸다.

그런 신 팀장에게 “이미 소송 등 법률 자문·검토까지 받은 상황에서, 세금 회수를 위한 조치가 더 늦어지면 이번 사건이 희석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그럴 수도 있지만...”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곤 “법률 자문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한국은행이) 소송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 입장은 아니다”며 “그냥 모든 걸 고려해 계속 고민 중인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그에게 “법적 자문까지 끝내놓고 손실이 난 세금 회수를 위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라도 자칫 (업무상) 배임 논란 같은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시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아 달라”고 했다.

공중으로 날아간 1,000억 원대 손실 회수에 대한 의지가 더는 없어 보이는 한국은행의 소극적 자세가 이어지자 금융시장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치적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시장에선 ‘한국은행이 △△금융지주와 ○○은행을 상대로 1,000억 원대 세금 손실, 주주 가치 훼손과 관련한 소송 등 법적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것이다. 법적 문제보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한국은행의 행보가 소극적으로 전환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금융지주의 ○○은행 인수는 △△금융지주는 물론 지난해 3월까지 △△금융지주 회장이었던 김○○(70)씨의 최대 치적으로 포장돼 있다. 알려진 대로 김○○ 전 회장은 이명박(MB) 정권 시절 MB 금융인맥의 좌장이었다. 김○○ 회장이 ○○은행 인수를 주도한 지 1년 만에, 김 회장의 최측근으로 사실상 영향권 아래 있는 현 △△금융지주 김□□ 회장이 ‘포괄적 주식교환’과 ○○ 은행 상장폐지를 주도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주식교환’의 맞상대였던 김○○ 현 한국은행 총재 역시 금융권에서는 MB 금융인맥의 핵심으로 분류되고 있다. 금융권의 마지막 MB맨으로 생존해 있는 김○○ 총재가 같은 MB 금융인맥인 김○○ 전 회장의 치적은 물론, 김 회장의 최측근 김□□ 회장이 주도한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일각의 해석이다. 김○○ 총재가 승소 여부를 떠나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은 수장인 김○○ 총재가 △△금융지주를 향해 세금 회수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강하게 나타내지 않는 한 한국은행 실무진의 독자 판단으로 법적 대응 같은 움직임을 취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게 금융시장의 대체적 시각이다.

물론 끈끈한 MB 금융인맥으로 엮인 한국은행과 △△금융지주, 김○○·김○○·김□□씨의 관계가 날아간 국민 세금 1,034억 원 회수 의지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단지 국민의 세금 1,034억 원을 날린 지 두 달이 돼 가고, 또 날린 세금 회수를 위한 법적 자문을 받은 지 한 달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이런저런 정치적 해석이 떠도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의 전○○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상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여러 관련 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이라며 “하지만 세세히 들여다보면 법적 논란과 문제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청한 또 다른 금융·기업법 전문 변호사는 “시간이 흘러 사건이 희석되기 전에 공적기관인 한국은행이 법적 대응 등 어떤 형태로라도 신속히 조치를 취하는 게 1,000억 원이 넘는 세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했다.

조정대상보도 2

- 인터넷 주간조선 : 『MB맨 김○○ △△금융 앞에선 왜 작아지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0일자)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주간조선의 커버스토리에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 (1)을 게재하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 ‘MB맨 김○○ △△금융 앞에선 왜 작아지나’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주간조선 인터넷뉴스(weekly.chosun.com) 커버스토리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 (2)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 (2)가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 (2)를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그리고,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 글자 크기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1)>

가. 제 목 : 본지가 2013. 6. 10. 게재한 ‘MB맨 김○○ △△금융 앞에선 왜 작아지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게재합니다.

나. 본 문 : 본지는 지난 2013년 6월 10일자 2260호 커버스토리에 ‘MB맨 김○○ △△금융 앞에선 왜 작아지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으며, 동 기사 중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본지는 한국은행이 자신들이 보유한 한국○○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033억 7,150만 원을 고스란히 날렸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 문제는 한국은행이 1,034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고스란히 날린 이후,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은행이 3월 중순 김○○ 총재의 최종결정으로 ○○은행 지분을 △△금융주에 넘긴 이후 세금 손실 회수 등과 관련해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 ‘소극적 입장’으로 자세를 전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주식 보유는 이윤추구 목적이 아닌 수출 진흥 및 외국환업무 지원 등 국가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은행법제 4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은행 주식 매각가격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등 주식 보유 동기 및 매각 과정상에 특수성이 있었으며 더욱이

배당금을 포함한 총 회수액이 5,977억 원으로 출자원금을 2,000억 원 이상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주식 매각 이후 2013. 4. 9. 금융위원회에 주식매수 가격 상향 조정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고, 이후 법원 앞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 등 법에 정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 등 출자금 회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본지는 다음의 기사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기사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해왔기에 알려드립니다.

본지는 ‘MB맨 김○○ △△금융 앞에선 왜 작아지나’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동 제목은 한국은행을 대표하는 김○○ 총재가 마치 △△금융 지주와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은행 김○○ 총재는 △△금융지주와 관련하여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취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본지는 △△금융지주 김○○ 전 회장이 이명박(MB)정권 시절 MB금융인맥의 좌장이고 김○○ 한국은행 총재 역시 MB금융인맥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하면서 금융권의 마지막 MB맨으로 생존해 있는 김○○ 총재가 같은 MB 금융인맥인 김○○ 전 회장의 치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일각의 해석이며, 이는 김○○ 총재가 승소여부를 떠나 △△금융지주와 한국○○은행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동행을 대표하는 김○○ 총재가 지난 2013. 5. 3. 인도 뉴델리 ADB총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원 앞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취할 조치는 기간 내에 다 하겠다”고 밝히는 등 동 사안에 대하여 그동안 적극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왔는데, 위 보도에서와 같이 한국은행 총재가 법적 조치를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여 왔습니다.

특히 ‘금융권의 마지막 MB맨으로 생존해 있는 김○○ 총재가 같은 MB 금융인맥인 김○○ 전 회장의 치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왜곡된 사실관계를 제시함으로써 한국은행을 대표하는 김○○ 총재와 한국은행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지적하여 왔습니다.

본 보도와 관련하여 한국은행과 한국은행 김○○ 총재에게 사과를 표명합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2)〉

가. 제 목 : 본 인터넷뉴스가 2013. 6. 10. 게재한 ‘MB맨 김○○ △△금융 앞에선 왜 작아지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게재합니다.

나. 본 문 : 본 인터넷뉴스는 지난 2013. 6. 10. 커버스토리에 ‘MB맨 김○○ △△금융 앞에선 왜 작아지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으며, 동 기사 중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본 인터넷뉴스는 한국은행이 자신들이 보유한 한국○○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033억 7,150만 원을 고스란히 날렸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 문제는 한국은행이 1,034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고스란히 날린 이후,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은행이 3월 중순 김○○ 총재의 최종결정으로 ○○은행 지분을 △△금융지주에 넘긴 이후 세금 손실 회수 등과 관련해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 ‘소극적 입장’으로 자세를 전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주식 보유는 이윤추구 목적이 아닌 수출 진흥 및 외국환업무 지원 등 국가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은행법 제4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은행 주식 매각가격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등 주식 보유 동기 및 매각 과정상에 특수성이 있었으며 더욱이 배당금을 포함한 총 회수액이 5,977억 원으로 출자원금을 2,000억 원 이상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주식 매각 이후 2013. 4. 9. 금융위원회에 주식매수 가격 상향 조정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고, 이후 법원 앞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 등 법에 정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 등 출자금 회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본 인터넷뉴스는 다음의 기사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기사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해왔기에 알려드립니다.

본 인터넷뉴스는 ‘MB맨 김○○ △△금융 앞에선 왜 작아지나’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동 제목은 한국은행을 대표하는 김○○ 총재가 마치 △△금융지주와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은행 김○○ 총재는 △△금융지주와 관련하여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취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본 인터넷뉴스는 △△금융지주 김○○ 전 회장이 이명박(MB)정권 시절 MB금융인맥의 좌장이고 김○○ 한국은행 총재 역시 MB금융인맥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하면서 금융권의 마지막 MB맨으로 생존해 있는 김○○ 총재가 같은 MB 금융인맥인 김○○ 전 회장의 치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일각의 해석이며, 이는 김○○ 총재가 승소여부를 떠나 △△금융지주와 한국○○은행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동행을 대표하는 김○○ 총재가 지난 2013. 5. 3. 인도 뉴델리 ADB총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원 앞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취할 조치는 기간 내에 다 하겠다”고 밝히는 등 동 사안에 대하여 그동안 적극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왔는바, 위 보도에서와 같이 한국은행 총재가 법적 조치를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여 왔습니다.

특히 ‘금융권의 마지막 MB맨으로 생존해 있는 김○○ 총재가 같은 MB 금융인맥인 김○○ 전 회장의 치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왜곡된 사실관계를 제시함으로써 한국은행을 대표하는 김○○ 총재와 한국은행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지적하여 왔습니다.

본 보도와 관련하여 한국은행과 한국은행 김○○ 총재에게 사과를 표명합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한국은행의 ○○은행 지분 매각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나. 내 용 : 본보 지난 2013년 6월 10일자 2260호(주간조선) 커버스토리에 ‘MB맨 김○○ △△금융 앞에선 왜 작아지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행이 자신들이 보유한 ○○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033여 억 원을 고스란히 날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한은의 ○○은행 주식처분 여부나 매각가격은 한국은행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되므로 한국은행의 ○○은행 지분매각을

놓고 ‘세금손실’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굳이 손익을 논하자면, ○○은행 지분 매각을 통해 한국은행이 받은 액수는 출자원금을 2,000억 원 이상 상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본보는 ”한국은행이 지분매각 이후 손실부분을 회수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한은은 ○○은행 주식 매각 이후 금융위에 주식매수가격 상향조정청구를 비롯해 법원 앞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 등 출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본보는 “금융권의 마지막 MB맨으로 생존해 있는 김○○ 총재가 같은 MB 금융인맥인 김○○ 전 회장의 치적에 대해 이익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일각의 해석”이며 김 총재가 △△금융 앞에서 유독 소극적인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김○○ 총재는 지난 2013. 5. 3. 인도 뉴델리 ADB총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원 앞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취할 조치는 기간 내에 다 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 사건에 대하여 그동안 적극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왔으며, 김 총재가 △△금융지주와 관련하여 유착관계를 의심 받을만한 행동을 취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주간조선 제2264호(2013. 7. 8. 발행) 「커버스토리」지면에 제1항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의 활자 및 크기는 조정대상기사 제14면 발문(“1,000억 원 대의 손실을 빚은 ‘포괄적 주식교환’ 결정을 문제삼기 위한...”)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2단 이상에 걸쳐 박스기사로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은 2013년 7월 9일(화) 12:00부터 인터넷 주간조선의 홈페이지(<http://weekly.chosun.com>)의 커버스토리 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24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이 위 제2항 및 제3항과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피신청인이 위 제2항 및 제3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6. 피신청인이 위 제2항 및 제3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 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013. 07. 0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1

- **주간조선** : 『한국은행의 ○○은행 지분 매각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16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2

- **인터넷 주간조선** : 『한국은행의 ○○은행 지분 매각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0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18

교사인 신청인이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교육감에게 존경심을 표하고자 허리를 굽혀 악수를 청했다는 내용을 사진과 함께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경기조정기·72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아시아뉴스통신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13. 06. 17.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교사인 신청인이 근무평정서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지역 교육감에게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 허리를 굽혀 악수를 청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사진을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당시 교육감이 먼저 악수를 청해 단순 응대한 것이며, 보도내용으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교직활동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사과보도를 게재하는 동시에 조정대상기사와 더불어 신청인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향후 제3자에 의해 재보도 되었을 경우 삭제요청을 하도록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아시아뉴스통신 :** 『나근형 교육감, “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현장지도』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7일자)
- **내 용 :**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7일 인천○○초등학교에 방문해 “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현장지도 했다.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정서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나교육감이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 90도로 허리를 굽혀 악수를 청하는 여교사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시아뉴스통신(<http://www.aneusa.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기사가 절대로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검색되어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나근혜 교육감 현장지도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본 뉴스통신은 지난 5월 7일자 사회면에 “나근혜교육감, “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현장지도. 입만열면 청렴, 몸으로는 술선수範...犯?”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신문에 여교사가 마치 사진속의 여교사가 나근혜 교육감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굽신거리는 것처럼 직접 보지도 않은 사건을 단지 사진만 보고 추측성 허위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사진속의 여교사는 단지 어린인 나 교육감이 먼저 악수를 청해 어른에 대한 예의로 악수에 응대하였고, 더구나 90도로 고개를 숙인 적이 전혀 없으므로 잘못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인천 ○○초, 나근형 교육감 현장지도’ 관련 정정보도

나. 내 용 : 본지는 지난 5월 7일자 『나근형 교육감, “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현장지도』 제목의 보도와 관련하여, 사진에 게재된 인천○○초등학교의 여교사는 “당시 나교육감이 먼저 악수를 청해 단순 응대만 것이다.”라고 밝혀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본 기사에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해당 여교사에게 지면을 빌어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3. 7. 2. 09:00부터 7. 4. 09:00까지 2일간 <아시아뉴스통신>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news.com>)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제목 및 본문화자는 인터넷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화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한다.

3. 피신청인은 인터넷 조정대상기사(<http://www.anews.com/detail.php?number=489306&thread=01r01>) 및 신청인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향후 제3자에 의해 재보도 되었을 경우 삭제요청을 하도록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을 피신청인이 이행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7. 01.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아시아뉴스통신 : 『‘인천 ○○초, 나근형 교육감 현장지도’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19

성남시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조폭수준의 공권력 행사라고 보도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921·922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성남시청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제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3. 06. 18.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조폭수준의 무자비한 공권력을 행사했으며, 이후 일련의 행위에 대해 사과의 뜻을 공식 발표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공무집행은 적법한 것이며, 일련의 행위에 대해 사과의 뜻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 및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경제투데이 :** 『[기자수첩 ‘과력난신’ 성남시의 LH 습격사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1일자)
- **내 용 :** # 80년대 조폭도 아니고 수백명에 이르는 직원과 포크레인까지 앞세워 마치 시위 진압을 연상케 한 성남시의 LH 진입시도는 공직조직의 도덕성을 망각한 비뚤어진 공권력 행사의 표본일 수밖에 없습니다. (K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LH 본사 사옥 앞에서 펼쳐진 성남시 공무원들의 습격사건은 마치 권력의 힘을 통해 상대방을 통제하려던 80년대 초 군부독재나 폭력으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조직폭력배의 모습을 재연하는 착각에 빠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각본을 쓰고 성남시 소속 공무원 수백명이 대형 포크레인을 앞세워 등장한 작품 ‘LH 습격사건’은 짧은 기간 수 많은 관객들의 시선을 잡아끄는데 성공한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를 방불케 했다.

불법구조물을 철거한다는 시나리오를 앞세운 한 무더기 성남시 공무원들의 액션장면이 등장하는 영화의 시작은 이렇다.

지난 2009년 말 1900가구 규모의 백현마을 이주민 아파트 단지가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입주가 지연돼 LH가 일반임대공급 방식으로 분양공고를 시도한데 대해 성남시가 불법 분양이라고 반대하면서 비롯됐다.

성남시는 중단된 재개발사업을 재개하고 세입자를 먼저 이주민 단지로 이전할 것을 요구한 반면 LH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성남 구도심 재개발 사업을 재촉하더라도 장기간 입주가 지연돼 유명단지로 전락할 수 있어 차라리 일반 임대분양을 통해 단지를 살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시를 관장하는 성남시의 요구를 LH가 일방적으로 묵인하고 문제의 백현마을 이주민 단지에 대해 LH가 일반 분양을 위한 공고를 시도하자 자존심이 상한 성남시는 LH본사를 상대로 ‘행정대집행’을 위해 성남시 소속 공무원 수백명이 LH 본사를 습격하며 한낮의 거친 액션을 소화해 낸 것이다.

지난 29일 성남시는 공적 기관인 성남시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이성에서 벗어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법과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법과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성남시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공적기관의 상식을 벗어난 구태행위를 지켜본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한 도시를 책임지는 공적기관이 자신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기업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한 행태에 대한 책임은 회피한 채 뒤늦게 법과 절차를 찾는 성남시의 빗나간 논리는 이해단체의 집단이기주의를 고스란히 투영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성남시가 시민들의 주택복지를 위해 개발사업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뜻에 반한다 하여 공기업을 상대로 조폭 수준의 무자비한 공권력 행사는 결과적으로 공적기관의 도리를 벗어난 낯 뜨겁고 추한 이번 사건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LH 습격사건을 진두지휘한 성남시 수장인 이재명 시장은 이유를 막론하고 사회 분위기를 다잡아야 할 공직 지도자가 오히려 평지풍파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각인되면서 도덕성을 잃은 공직자의 표본이 됐다.

‘존덕성도문학(尊德性道問學)’이라는 옛 고사가 있다. ‘中庸(중용)’에 나오는 이 뜻을 풀이하면 유교에서 제시하는 도덕수양의 두 가지 방법을 의미한다. 존덕성은 인간에게 부여된 선한 덕성을 수양을 통해 높이고 보존하는 방법이다.

도문학은 학문을 통해 덕성을 배양하는 방법을 일컫는 말로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과 특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에게 꼭 필요한 옛 성현의 말씀이다.

조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선생의 문집에도 자주 등장하는 ‘존덕성도문학’ 이 말은 마치 ‘괴력난신(怪力亂神)’과 같은 괴이한 폭력과 패란을 일으킨 성남시가 꼭 한번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경제투데이(<http://www.eto.co.kr>) 홈페이지 오피니언 취재수첩 란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괴력난신’ 성남시의 LH 습격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5월 31일자 오피니언(취재수첩)에 「‘괴력난신’ 성남시의 LH 습격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성남시의 공무집행 행위에 대하여 “LH 본사 습격사건”으로 표현하고, “공기업을 상대로 조폭수준의 무자비한 공권력 행사”, “이번 사태에 대한 성남시의 사과의 뜻 공식발표”, “그 후 성남시의 책임 회피” 및 “집단이기주의”, 한편, 이재명 시장에 대해 “도덕성을 잃은 공직자의 표본”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법 절차를 준수하며 공무집행에 임했으며, LH가 도리어 다수의 직원을 동원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성남시의 사과의 뜻 공식발표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성남시 LH습격사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나. 본 문 : 본지는 지난 5월 31일자 기사수첩 “‘괴력난신’ 성남시의 LH습격사건” 제하의 기사에서 성남시가 LH를 상대로 비이성적으로 공무를 집행했으며, 일련의 행위에 대해 사과했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남시가 LH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사과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성남시는 LH를 상대로 한 공무집행은 법과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문제가 없으며, 따라서 이재명 시장이 도덕성을 잃은 공직자로 표현된 것은 잘못된 것 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3년 6월 28일 오전 9시부터 〈경제투데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4.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6. 26.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경제투데이 : 『[‘성남시 LH 습격사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8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20

사회적 기업인 딜○○○가 최초로 보청기 보험을 만들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925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보청기협회

파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비즈니스네트워크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3. 06. 19.

사 건 개 요

- 파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사회적 기업인 딜○○○가 국내 최초로 보청기 보험을 만들었고, 이 회사의 제품이 타사의 비싼 보청기와 기능면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매우 저렴하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국내 최초로 보청기 보험을 만든 곳은 포○○○였고, 딜○○○가 ‘사회적 기업’ 임을 무단으로 표방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던 것 등을 들어 조정대상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이 직접 지명된 바 없으므로 신청인과 이 사건 보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 한편, 신청인은 동일한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SBS CNBC를 대상으로 정정청구(2013서울조정926)를 신청했고, 담당중재부는 위 사건(2013서울조정925)과 같이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정대상보도

- **SBS CNBC-TV** : SBS CNBC 뉴스 프로그램 『‘소셜벤처’ 딜○○○, 34만 원 보청기 어떻게 가능했나?』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14일자 19:00)
- **내 용** : ▷ 리포트 : 100만 원대를 호가하는 보청기 시장에 시중가보다 50~70% 저렴한 34만 원짜리 보청기를 공급하며 큰 이슈를 모으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사회적 기업, 딜○○○다. 설립 3년 만에 42억 원 매출을 올린 김○○ 딜○○○ 대표와 김△△ 사회적 기업 컨설턴트가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돈이 없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신념 하에 소셜 벤처를 만든 청년의 이야기. 김○○ 딜○○○ 대표는 청인들을 위한 보청기 회사를 설립, 2010년에는 고용노동부 소셜 벤처 경연대회 청년창업 부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딜○○○의 보청기 가격은 34만 원이다. 최고 500만 원, 국외에서는 800만 원까지도 가는 것과는 대조적인 최저가로 보청기를 공급하고 있다. 보청기 가격이 비싸지는 이유는 편의적인 부가 기능 때문이다.

그렇지만 김○○ 대표는 “경제력이 취약한 분들에게는 편의적인 기능보다는 본연의 기능(소리를 듣는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34만 원 보청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딜○○○는 34만 원 보청기와 함께 기능성 제품들도 같이 공급하고 있다.

딜○○○의 보청기 가격을 34만 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김○○ 대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청기 지원 금액에 맞춘 것”이라며 “소외계층을 위해 가격을 34만 원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보청기를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이유는 샘플링을 통한 표준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 생산 원가를 절감해 제품 가격을 낮췄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직영점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중간 마진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딜○○○는 국내 최초로 보청기 보험을 만들기도 했다. 김○○ 대표는 “보청기를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아 보험상품을 만들게 됐다”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무상으로 보험을 들어 드린다”고 전했다. 보청기를 분실했을 경우 30%만 부담하면 다시 완제품을 받을 수 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 (1)을 SBS CNBC <21:35 뉴스 945>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 (1)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 SBS CNBC 홈페이지 경제면에 게재된 ① 인터넷 방송물을 삭제하면서, 아울러 ② 아래의 정정보도문(2)를 홈페이지 경제면에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소셜벤처’ 딜○○○, 34만 원 보청기 어떻게 가능했나?”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또한 아래의 정정보도문(2)를 DB에 저장해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가. 제 목 : ‘소셜벤처 딜○○○, 34만 원 보청기 어떻게 가능했나?’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나.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5월 14일 ‘집중분석 takE BEST’ 프로그램에서 ‘소셜벤처’ 딜○○○, 34만 원 보청기 어떻게 가능했나? 라는 제목으로, “① 딜○○○는 국내 최초로 보청기 보험을 만들기도 했다. ② 저렴한 보청기를 공급하며 큰 이슈를 모으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사회적 기업, 딜○○○다. ③ 기존 500만 원 보청기는 딜○○○ 34만 원 보청기와는 듣는 기능엔 차이가 없으나 부가적인 기능으로 비싸다. ④ 보청기 착용 인구가 낮은 이유는 외국계 기업이 국내시장을 대부분 차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고가로 형성됐기 때문이다. ⑤ 타사 제품들 다 사서 분해해보고 관련 전문가들이나 교수나 연구원들 만나서 줄라가면서 계속 물어보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체 개발했다.”라는 내용으로, ‘딜○○○’ 김○○ 대표가 출연한 프로그램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보청기협회 등에 확인한 바,

- ① 딜○○○는 국내 최초로 보청기 보험을 만들기도 했다.라는 보도는,
→ 국내 최초는 ‘포○○○’였으며,
- ② 저렴한 보청기를 공급하며 큰 이슈를 모으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사회적 기업, 딜○○○다라는 보도는,
→ 딜○○○가 ‘사회적 기업’ 무단 사용으로 고용노동부의 벌금형을 받았기에 딜○○○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며,
- ③ 기존 500만 원 보청기는 딜○○○ 34만 원 보청기와는 듣는 기능엔 차이가 없으나 부가적인 기능으로 비싸다라는 보도는,
→ 고가 이어폰이 본연의 기능보다 편의기능으로 비싸다고 함과 같기에, 이는 딜○○○ 저가 보청기 홍보를 위한 타사 제품의 매도였고,
- ④ 보청기 착용 인구가 낮은 이유는 외국계 기업이 국내시장을 대부분 차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고가로 형성됐기 때문이다라는 보도는,
→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딜○○○ 저가 보청기 홍보를 위한 매도이며,
- ⑤ 타사 제품들 다 사서 분해해보고 관련 전문가들이나 교수나 연구원들 만나서 줄라가면서 계속 물어보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렇게 개발했다 라는 보도는,
→ 딜○○○의 납품업체가 무허가 제조판매로 식약청의 6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받음으로 허위 의혹이 있기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

가. 제 목 : ‘소셜벤처 딜○○○, 34만 원 보청기 어떻게 가능했나?’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나.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5월 14일 ‘집중분석 takE BEST’ 프로그램에서 ‘소셜벤처’ 딜○○○, 34만 원 보청기 어떻게 가능했나? 라는 제목으로, “① 딜○○○는 국내 최초로 보청기 보험을 만들기도 했다. ② 저렴한 보청기를 공급하며 큰 이슈를 모으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사회적 기업, 딜○○○다. ③ 기존 500만 원 보청기는 딜○○○ 34만 원 보청기와는 듣는 기능엔 차이가 없으나 부가적인 기능으로 비싸다.” 라는 내용으로, ‘딜○○○’ 김○○ 대표가 출연한 방송물과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보청기협회 등에 확인한 바,

① 딜○○○는 국내 최초로 보청기 보험을 만들기도 했더라는 보도는,

→ 국내 최초는 ‘포○○○’였으며,

② 저렴한 보청기를 공급하며 큰 이슈를 모으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사회적 기업, 딜○○○다라는 보도는,

→ 딜○○○가 ‘사회적 기업’ 무단 사용으로 고용노동부의 벌금형을 받았기에 딜○○○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며,

③ 기존 500만 원 보청기는 딜○○○ 34만 원 보청기와는 듣는 기능엔 차이가 없으나 부가적인 기능으로 비싸다라는 보도는,

→ 고가 이어폰이 본연의 기능보다 편의기능으로 비싸다고 함과 같기에, 이는 딜○○○ 저가 보청기 홍보를 위한 타사 제품의 매도였기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기각결정

기각 결정서

주 문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비즈니스네트워크는 〈SBS CNBC-TV〉 2013. 5. 14. 09:20 [집중분석TAKE 1부]프로그램에서 「34만 원 보청기」라는 제목으로 보청기업체 딜○○○의 김○○ 대표이사와의 인터뷰를 방송(이하 ‘이 사건보도 1’라 한다)하였다.

나. 피신청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는 〈인터넷 SBS CNBC〉에 이 사건보도 1의 일부 내용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셜벤처」 딜○○○, 34만 원 보청기 어떻게 가능했나?」라는 제목으로 기사(<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564485>, 이하 ‘이 사건보도2’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보도1과 2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른데도, 피신청인들이 방송기관으로서 딜○○○의 이력성과 기업성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방송하였으므로, ‘공익성’차원에서 정정보도를 구하는 이 사건 조정을 신청하였다.

- 다 음 -

첫째, 국내 최초로 보청기 보험을 만든 것은 딜○○○가 아닌 ‘포○○○’이다. (이 사건보도 1과 2에 대하여)

둘째, 저렴한 보청기를 공급하며 큰 이슈를 모으고 있는 곳이 사회적 기업 ‘딜○○○’라고 방송하였으나, 딜○○○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다. (이 사건보도 1과 2에 대하여)

셋째, 기존 500만 원 보청기는 딜○○○의 34만 원 보청기와는 듣는 기능엔 차이가 없으나 부가적 기능으로 비싸다는 방송내용은 타사제품에 대한 매도이다. (이 사건보도 1과 2에 대하여)

넷째, 보청기 착용 인구가 낮은 이유는 외국계 기업이 국내시장을 대부분 차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고가로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방송내용은 객관적인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 사건보도 1에 대하여)

다섯째, 딜○○○가 타사 제품을 다 사서 분해해보고 관련 전문가들이나 교수나 연구원을 불러가면서 계속 물어보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렇게 개발했다는 주장은 딜○○○의 납품업체가 무허가 제조판매로 식약청으로부터 6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허위의 의혹이 있다. (이 사건보도 1에 대하여)

3. 판단

가.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0.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판단

- 1)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 등 참고).
- 2) 이 사건 보도에서 신청인이 직접 지명된 바 없으므로 신청인과 이 사건 보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신청인과 이 사건 보도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면, 이 사건 보도1과 2가 ‘딜○○○’에 대해 긍정적 또는 홍보성으로 언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는 신청인과 이 사건 보도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보도에서 딜○○○의 ‘34만 원 제품’ 및 ‘직영점’과 각 비교 대상을 지칭하는데 사용된 ‘500만 원 짜리(보청기)’, ‘외국계 회사들의 대리점’ 등의 표현이 곧 ‘보청기 판매 종사자의 조직’인 신청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역시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청구는 청구의 요건을 결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해 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06. 28.

사 례 21

신청인 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유가보조금을 임원들의 개인 출·퇴근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전북조정20, 2013전북조정21(병합) 각 반론청구

신 청 인 : ○○○여객자동차(주)

피신청인 : 주식회사 일간전주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13. 06. 25.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를 통해 진안, 무주, 장수지역 등의 대중교통운송수단인 신청인 회사의 임원이 수년간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유가보조금을 개인용으로 사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유가보조금과 임직원 유류보조비는 엄격히 분리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1

■ **전주매일 :** 『자치단체 유가보조금 ‘버스회사 주머니 속으로’』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7일자 9면)

■ **내 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벽지노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버스회사에 대한 보조금을 임원들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난 14일 진안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여객(진안군 ○○읍)은 진안, 무주, 장수 등 벽지노선을 운행하며, 급격한 인구감소와 자가용 차량 증가로 손님이 줄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유가보조 지원금’ 등을 지원 받고 있다.

○○○여객은 지난해 진안군 17억4,095만2,510원, 무주군 8억2,224만8,000원 장수군 6억 160만3,950원 등 3개 군에서 총 31억6,480만4,460원을 보조받아 버스연료비, 임원과 직원 들 급료,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해왔다.

그러나 ○○○여객 임원들은 수년간 자치단체에서 지원 받은 보조금으로 주유를 하고 출퇴근 및 휴일 나들이까지 하고 있으면서도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에도 버스에는 에어컨 가동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 손님들은 짜증을 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에 임원들이 사용한 유류는 1,356L(256만1,484원)로 1년으로 환산하면 1만6,272L(3,000여만 원)을 몇몇 임원들의 개인용으로 사용됐으나 관련부서에서는 감사를 실시했어도 찾아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여객 관계자는 “진안군에서 버스가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 L당 380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임원들이 사용하는 유류는 보조금이 아니고 회사의 공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2년도에 ○○○여객 버스가 126만9,380L을 사용했다며 진안군에 4억8,247만 8,930원을 보조받았으나 같은 해 정유회사에서 구입된 유류는 총 119만2,000L이고, 전년도에 이월된 8만523L의 유류를 합쳐도 127만2,523L로 진안군에 신청한 유류와 거의 비슷한 양이다.

이에 따라 ○○○여객 관계자의 주장대로 임원들의 주유는 회사공금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설득력이 떨어지며, 설령 회사공금으로 지원했다 해도 3개 군 군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임원들이 그동안 사용한 유류는 환수조치와 함께 지원금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조정대상보도 2

- 인터넷 전주매일 : 『자치단체의 유가보조금, 버스회사 임원들 출퇴근용』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6일자)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전주매일 경제·사회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 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자치단체 유가보조금 ‘버스회사 주머니 속으로’”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1)〉

가. 제 목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보도에 대한 반론

나.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6월 17일자 경제·사회면(9면)에 “자치단체 유가보조금 ‘버스회사 주머니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여객 임원들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개인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객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가주유시스템(RFID system)을 사용하며 유가보조신청과 임직원 유류지원은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

가. 제 목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보도에 대한 반론

나.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6월 16일자 사회면에 “자치단체의 유가보조금, 버스회사 임원들 출퇴근 용”이라는 제목으로 ○○○여객 임원들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개인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객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가주유시스템(RFID system)을 사용하며 유가보조신청과 임직원 유류지원은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의 반론보도문을 전주매일 9면 우측 상단에 게재하되, 제목은 15호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전주매일(<http://www.jjmaeil.com>)의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의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의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만약 피신청인이 제1항과 2항을 즉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은 각 위반행위 개시일(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6일째 되는 날)로부터 그 위반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각 위반행위 1일당 100만 원씩을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이 제1항과 2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2013년 6월 17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또는 관련 임직원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이 유

위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07. 01.

〈별 지〉

가. 제 목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반론보도문

나.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17일 9면 “자치단체 유가보조금 ‘버스회사 주머니 속으로’” 제하의 기사에서 “○○○여객 임원들은 수년간 자치단체에서 지원 받은 보조금으로 주유를 하고 출퇴근 및 휴일 나들이까지 하고 있으면서도...”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객은 ‘유가보조 지원금’을 임직원의 출퇴근이나 휴일 나들이 비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유가보조 지원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가주유시스템(RFID system)을 통해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 실시된 전라북도의 ○○○여객에 대한 ‘유가보조 지원금’ 사용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아무런 하자도 지적된 바가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1

- 전주매일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보도에 대한 반론』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5일자 9면)
- 내 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의 별지 참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2

- 인터넷 전주매일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0일자)
- 내 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의 별지 참조〉

사 례 22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한 사건이 ‘부산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신청인의 어린이집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953·954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3. 06. 25.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소재 모 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부산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자가 4명이나 된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기사의 제목을 ‘부산 어린이집’이라고 표기하여, 현재 부산 학장동에서 동일한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본인이 영업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기사에 언급된 어린이집이 부산 학장동의 ‘부산 어린이집’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한편, 동일한 취지의 기사가 인터넷 서울신문 외 33개 매체에 보도되었으며(2013서울조정955~1122, 2013경기조정97~102, 2013경기조정115, 2013부산조정51),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알리기사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거나 피신청인이 알리기사를 게재함에 따라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였다.

조정대상정보

■ **연합뉴스 :** (1)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 4명…원장도 영장』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일자)

■ **내 용 :** 부산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가 4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장과 보육교사 2명이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유아들이 울면서 징징댄다는 이유로 교실과 원장실에서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린 것이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 모 공립 어린이집 원장 민 모(40·여)씨와 보육교사 김 모(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육교사 서 모(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민 원장은 지난해 11월 초 정오께 원장실에서 윤 모(1·여)양의 이마를 엄지손가락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12월 초에는 낮 12시 40분께 원장실에서 주 모(1)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낮 12시 12분께 교실에서 이 모(1·여)양을 밀치고서 얼굴에다가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18일 오후 3시 14분께는 교실에서 안 모(1·여)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려친 혐의다.

서씨는 지난달 17일 낮 12시 8분께 교실에서 이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려친 혐의로 입건됐다.

이양은 4분 간격으로 여교사 2명에게 잇따라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다. 경찰은 보육교사들이 유아를 학대하는 장면이 찍힌 CCTV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여교사들은 경찰에서 “아이들이 종일 울며 징징대서 짜증이 나 때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민 원장이 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김씨 등 전·현직 보육교사 3명이 구체적이고 한 결 같이 진술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을 상대로 피해 어린이가 더 있는지 확인중이다.

부산 수영구는 지난달 26일 민 원장과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을 취소하고 29일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가진 6급 직원을 해당 어린이집에 원장 직무대행으로 파견,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안양의 부모가 지난달 19일 경찰에 진정한 데 이어 안양의 고모가 23일 인터넷과 SNS에 피해 사실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민 원장은 당초 안양 가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나오자 취하해 빈축을 샀다.

■ 연합뉴스 : (2) 『아동학대 부산 어린이집 원장·교사 영장 청구』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일자)

- **내 용**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박○○ 부장검사)는 3일 유아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부산 모 공립 어린이집 원장 민 모(40·여)씨와 교사 김 모(32·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주 초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해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아동 전담 검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씨는 지난해 11월 초 정오께 원장실에서 윤 모(1·여)양의 이마를 엄지손가락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12월 초에는 낮 12시 40분께 원장실에서 주 모(1)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낮 12시 12분께 교실에서 이 모(1·여)양을 밀치고서 얼굴에다가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18일 오후 3시 14분께는 교실에서 안 모(1·여)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려친 혐의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부산어린이집 어린이폭행사건 관련, 밝혀드립니다.

나. 본 문 : 본 뉴스통신이 지난 2013년 4월 28일자, 5월 2일자 및 5월 3일자로 보도한 부산어린이집 폭행사건은 학장동의 <부산어린이집>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이를 밝혀드립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관련 알림

나. 본 문 : 본보 지난 4월 28일, 5월 2일 및 3일자에서 보도한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부산 학장동의 <부산어린이집>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3년 7월 16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의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면에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로 08:00부터 48시간 이상 게재하되, 제목과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한다.

3.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5. 피신청인이 위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에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013. 07. 1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연합뉴스 : 『<알림>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3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23

‘선박왕’으로 불리는 신청인이 홍콩에 비밀계좌를 두고 재산을 은닉하다가 발각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995·996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권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매일경제신문사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13. 07. 02.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속칭 보물섬이라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유명인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한국계 큰손들은 홍콩을 선호하며, CJ홍콩 및 선박왕 등의 비밀 계좌가 발각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홍콩 비밀계좌에 재산을 은닉하다가 발견된 듯이 보도되었으나, 자신은 홍콩에서 실제 해운업을 경영하고 있고 정상적인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갖고 있을 뿐 비밀계좌는 없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매일경제 : 『보물섬 명단공개』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4일자 34면)

■ 내 용 : 완벽한 줄 알았던 판도라 상자를 갑자기 열어젖히는 일 또한 신(神)이 부리는 조화다. 버진아일랜드에 돈을 숨긴 장본인들은 들킬 줄 꿈엔들 상상이나 했겠는가. 뉴스 타파에 의해 이○○, 최○○, 김○○와 윤○○, 전○○ 아들 전△△ 등 이름이 갑자기 호명됐다. 속칭 보물섬이라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나 계좌를 개설한 게 법 위반은 아니다. 다만 단서가 붙는다. 10만달러 이상을 유치하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

이번에 아랍은행에까지 계좌를 튼 전○○은 된통 걸린 느낌이며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을 왜 과거 정부들은 못 거뒀느냐”고 질타한 것과 오비이락이 됐다.

뉴스타파가 잇을 만하면 일주일 간격으로 터뜨리는 명단을 보면서 무슨 느낌을 가졌는가. 필자는 빅샷(bigshot)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 안도했다. 특히 과거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전직 대통령, 총수, 정치인들이 스위스 비밀계좌를 가지고 있다더라는 루머가 워낙 돌았지 않았던가. 만약 굴지의 그룹 총수 이름이 나왔으면 살벌한 경제민주화 판에 어떻게 될 뻔했는가. 여기서 우리는 보물섬의 정체에 대해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는 30년 전쟁(1618~1648년)을 겪으면서 세상에 난리통이 나면 부호들은 중립국에 재산과 가족을 몰래 보내고 여차하면 본인도 내빼려는 본능을 발견했다. 그 무렵 영세 중립국을 선포하고 1·2차 대전을 겪으면서 크게 재미를 봤다. 1934년 은행법을 고쳐 세계 최초로 고객 비밀을 발설하면 무겁게 처벌한다는 법령을 선포했다. 스위스로 돈을 넘기고 2차 대전에 살아남지 못한 유대인,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 연합국의 영국 군부 재산 등 무수한 양다리를 걸쳐 큰돈을 뜯었다. 원가 안 드는 장사를 혼자 먹게 놔두겠는가.

룩셈부르크 벨기에 안도라 리히텐슈타인을 거쳐 카리브해에 있는 영국령 14개 휴양도시들이 ‘보물섬 영업’을 자청하고 나섰다. 미국도 델라웨어 등이 가세했다.

이번에 미국 애플이 국외에서 번 돈은 모두 세율이 2%도 안 되는 아일랜드에 만든 법인에 유치토록 해 세금을 440억 달러(약 50조 원)나 회피한 사실이 드러나 미국 의회가 발각 뒤집혔다. 니컬러스 색슨이 저술한 보물섬 을 보면 북한 김정일 일가가 룩셈부르크에 40억 달러를 숨겨 놓았다고 폭로하고 있다. 색슨은 이 세상에 가장 큰 보물섬은 야자수와 요트가 한가로이 떠다니는 케이맨, 바하마, 버뮤다 같은 곳이 아니라 맨해튼과 런던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큰손들은 홍콩을 가장 선호한다는 게 한국 당국의 관측이다. CJ 홍콩 계좌와 선박왕 등 계좌가 발각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국제탐사보도(ICIJ)가 판도라 상자라며 열어젖힌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명단은 빙산의 일각 축에도 못 드는 것이다.

갈수록 정부 부채는 커지고 세금은 안 걷히고 양극화는 심화되는데 돈 많은 개인과 기업들은 보물섬으로 뛰어버린다? 그렇다. 현실이 그렇다. OECD는 2002년 ① 영(零)세율이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세율 ② 투명화가 없는 곳 ③ 조세 정보 교환을 안 하는 지역을 조세피난처라고 명시하고 전 세계 35개 보물섬에 개선을 명령했다. 2009년 금융위기가 나자 미국은 스위스 비밀계좌를 깨버리기로 결심하고 미국인 거액 고객 명단을 내놓으라고 UBS에 9000억 원가량 벌금을 매기고 목을 비틀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주 80년 전 제정한 은행비밀주의 법을 개정하겠다고 항복(?)했다.

그러나 비밀자금을 끌어들이는 보물섬들은 세계에서 최고로 똑똑한 로펌, 회계사 조직을 동원하고 고객 계좌를 소시소나지(saucissonnage) 기법으로 잘게 부숴 누가 계좌를 까봐도 알아보지 못하는 기술로 진화해 나간다. 이번에 명단이 까진 사례는 순진한 아마추어들이고 그런 자들에게 돈을 맡겨 탄로가 났다는 것이다. 전 세계 보물섬 60여 곳 가운데 한 곳을 손대니 이 정도 명단이 쏟아졌다는 게 뭘 의미할까. 정보교환협정이 발효된 곳은 2곳뿐이다. 국세청은 아직 스위스 비밀계좌 한 건도 밝혀내지 못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매일경제 사설면에 보도하되, 제목 및 본문의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크기와 같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CJ홍콩 계좌와 선박왕 등 계좌가 발각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나. 본 문 : 본 신문사는 지난 6월 14일 신문 34면 김△△ 칼럼에서 [보물섬 명단공개]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신청인(선박왕)이 마치 CJ의 홍콩 계좌와 같이 재산을 은닉하다가 발각된 것처럼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선박왕은 홍콩에 비밀계좌가 없고 홍콩에서 실제 해운업을 경영하고 있는 등 사실과 다름으로 확인되어 해당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보물섬 명단 공개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본지는 2013년 6월 14일자 「보물섬 명단공개」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계 큰손들은 홍콩을 선호하며, CJ홍콩 및 선박왕 등의 계좌가 발각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선박왕은 홍콩에 현지 법인을 운영하며 거래를 위한 정상적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뿐 조세회피를 위하여 비밀리에 계좌를 보유한 것을 확인하지는 못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3년 7월 26일까지 <매일경제> 사회면에 제1항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의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유력 재벌 · 총수 명단 없어 다행이나)과 동일한 활자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고, 본문 활자 크기도 조정대상기사 본문과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은 2013년 7월 26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매일경제 홈페이지(www.mk.co.kr) 사회면의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24시간동안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24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게재한 즉시,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제1항의 보도문을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하며,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원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 게재한다.
5. 피신청인이 제1, 2, 3, 4항의 내용(제목, 본문, 보도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은 경우,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6. 신청인은 본 보도와 관련하여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7. 23.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1

- 매일경제 : 『보물섬 명단 공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6일자 26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2

- MK뉴스 : 『[보물섬 명단 공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24

출연한 부부 중 가짜부부를 찾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신청인 1의 남편(신청인 2의 아버지)과 내연녀를 진짜 부부라고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1032·1033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조○○, 2. 이○○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3. 07. 10.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가짜부부를 찾아라’는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노부부를 ‘결혼한 지 45년이나 되었으며, 항상 젊게 살고 있는 진짜부부’ 라고 방송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노부부 중 남편으로 출연한 남성출연자의 실제 부인과 아들로서, 노부부로 출연한 두 사람은 내연관계에 있는 사이라고 밝히면서, 방송을 통해 그들이 진짜 부부로 알려짐에 따라 신청인들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정정보도 및 총 13,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함과 동시에 iMBC에 게시된 ‘경제매거진 M’과 ‘TV 특종! 놀라운 세상’ 프로그램 중 내연관계의 두 사람이 출연한 다시보기 동영상 일부를 삭제하며, 신청인들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이후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 **MBC-TV** : 블라인드 테스트 180° 프로그램 『가짜부부를 찾아라』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16일자 09:15)

- **내 용** : (전략)

▷ MC : 이어서 4번째 부부 나와주세요.

▷ 성○○ : 어우 너무 멋지시다.

▷ 박○○ : 어머어머.

▷ 이○○ : 우와.

▷ 4번 남 : 인생을 늘 푸르게 사는..

▷ 4번 여 : 결혼 45년차 언제나 청춘 부부입니다.

▷ 성○○ : 정말 부부라면 저는 정말 이렇게 이분들처럼 살고 싶어요. 결혼 하셨지만 40년이 됐지만 손을 꼭 잡고 계시는데.

(중략)

▷ MC : 5팀이 나왔는데요. 이 다섯 팀 중에서 4팀은 실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실제 부부고요. 이중에 한 팀은 전혀 모르는 남남 커플입니다.

▷ △ : 오늘 처음 만난 것 이지요.

▷ MC : 네.

(중략)

▷ 박○○ : 4번부부도 혹시 스킨십 있으세요?

▷ 4번 여 : 네 스킨십이..

▷ 주○○ : 추신다 아 댄스스포츠다. 아 제가 뒤에서 봤는데 이분들은 100% 진짜 부부입니다.

▷ 성○○ : 진짜예요 진짜.

▷ 주○○ : 일단 춤을 굉장히 못추시는데 여자분이 등을 뒤로 돌렸을때 남자분을 보고 이쪽이잖아 이쪽. 화를 내더라고요 화를. 이쪽이잖아 남편이니까 화를 내실 수 있는 거 아니예요.

▷ 이○○ : 스텝이 좀 꼬이시니까 원투 차차차.

▷ 주○○ : 원투. 예 화를 내시더라고요.

(중략)

▷ MC : 정말 저희에게 궁금증을 자아냈던 4번.

▷ 장○○ : 어우 진짜 아 정말 진짜 너무 멋있으셔서 가지고.

▷ 박○○ : 아니 앞에 앞에 좀 봐주세요 몸 좀 예 예.

▷ 전○○ : 아니 저기요 포즈를 잡아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 ▷ 장○○ : 너무 멋있으셔서가지고 가짜 같았어요.
- ▷ 전○○ : 결혼 몇 년째 신거죠?
- ▷ 4번 여 : 45년이에요.
- ▷ 박○○ : 두 분은 뭐 하시는 분 들이세요?
- ▷ 4번 여 : 그냥 평범한 부부...
- ▷ 장○○ : 진짜요?
- ▷ 4번 여 : 근데 제가 사실은 젊었을 때 음 제 꿈이 모델이었어요.
- ▷ 전○○ : 역시.
- ▷ 4번 여 : 제가 이 사람을 만남으로서 그걸 접게 되었어요.
- (후략)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MBC-TV 방송 “블라인드 테스트쇼 180도” 방송 시간대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활자인 “블라인드 테스트쇼 180도”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되, 정정보도문의 본문활자는 조정대상방송의 부제목인 “가짜부부를 찾아라” 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가. 제 목 : ‘가짜부부를 찾아라’ 코너에 출연한 ‘4번 언제나 청춘 부부’ 또한 가짜 부부로 밝혀져
- 나.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2013년 6월 16일 제22회 ‘가짜 부부를 찾아라’라는 코너에서 ‘4번 언제나 청춘 부부’를 진짜 부부라고 방송하였으나 이들은 진짜 부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1에게 금 10,000,000원, 신청인 2에게 금 3,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확정 전 이행도 가능)에 아래의 보도문을 [블라인드 테스트쇼 180도] 프로그램 말미에 멘트로 보도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보도문 제목과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한다.

가. 제 목 : “가짜부부를 찾아라” 관련, 정정보도

나.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6월 16일 “가짜 부부를 찾아라” 제하에서 한 노부부를 ‘언제나 청춘부부’라고 소개하며 진짜 부부라고 방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 분들은 법률적 혼인관계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확정 전 이행도 가능)에 인터넷 홈페이지(iMBC)에서 아래 방송들의 다시보기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한다.

가. 경제매거진M 2013년 6월 8일자 [문화 즐기고 돈도 벌고! 즐거운 백발청춘]

나. TV특종 놀라운세상 2012년 3월 13일자 [황혼의 댄서, 백발의 노부부]

4.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확정 전 이행도 가능)에 신청인들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5. 피신청인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에게 유감을 표명한다.

6. 신청인들은 본 조정대상보도 및 위 3항에서 언급한 방송들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08. 1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1

- **MBC-TV** : 블라인드 테스트 180° 프로그램 『“가짜부부를 찾아라”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18일자 09:15)
- **내 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참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2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사 례 25

로스쿨 학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부산시 7급 공무원 채용 전형 지원자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고, 20여개의 옹호댓글이 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1037 반론청구

신 청 인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13. 07. 10.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부산시가 변호사, 회계사 등을 7급으로 선발하는 인용시험 계획 공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로스쿨 학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지원자는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이를 1000여 명이 조회했고 옹호 댓글이 20여 개 달렸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사이트에 ‘지원자는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적 없고, 지방직 7급 지원에 관련된 하나의 게시글에 ‘7급, 경위, 일반직’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명단을 공개해서 망신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댓글이 하나 달렸을 뿐이므로 조정대상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고 이에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조정대상기사와 신청인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신청인이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정대상보도

- **중앙일보 :** 『부산, 7급 공무원에 변호사 채용 공고, 로스쿨생들 “법조계 욕... 신상 털자”』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7일자 13면)
- **내 용 :** “7급 공무원은 변호사 자격증썩이나 필요한 자리가 아니다.”
“썩은 떡밥’을 무는 지원자는 신상을 털어야 한다.”

부산시에서 변호사를 7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두고 로스쿨생들의 인터넷 카페 ‘○○○○(www.○○○○○○○○.net)’에 올라온 글들이다. ○○○○는 로스쿨생(수험생) 5,600여 명이 가입한 최대 규모 카페다. 등록금 영수증을 내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을 만큼 폐쇄적이다.

이 카페 게시판에는 최근 7급 채용과 관련한 비난 글 수십 개가 올라왔다. 16일 현재 글마다 조회 수가 200~1000여 건이 기록됐고, 댓글이 수십 개씩 달릴 정도로 찬반 논쟁이 활발하다.

계기는 부산시청이 12일 낸 채용공고다. 공고엔 ‘행정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변호사·공인 회계사 자격 소지자 1명씩을 행정직 7급 공무원으로 채용한다’고 돼 있다. ○○○○에선 즉각 “지원자는 법조계 전체를 욕 먹이는 사람”, “지원하기 전에 로스쿨 선후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숙고하라”, “변호사 자격증까지 따놓고 시청에서 6급 공무원에게 커피나 타며 인생 보내고 싶다면 안 말린다”는 등의 비난 글이 줄줄이 올라왔다.

문제는 채용을 보이콧(거부)하거나 지원자 신상을 공개하자는 등 과격한 주장들도 여과 없이 올라와 있고 이런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는 이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지원자는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란 내용의 글은 1000여 명이 조회했고 옹호 댓글 20여 개가 달렸다.

한 대학의 로스쿨 카페에선 7급·경위(경찰)·일반직 지원자 명단을 각 로스쿨에 공개하자는 논의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은 개인의 자유”, “변호사 자격증만으로 대우받길 원하는 로스쿨생의 이기심”이란 식의 글도 올라왔지만 소수였다. 부산시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선 이미 6급 공무원으로 선발한 바 있고, 선발 과정에서 자격 미달로 떨어진 로스쿨생도 많다”며 “7급 대우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공고를 냈는데 왜 지원자의 자유까지 침해하려 드느냐”고 말했다.

과거 ○○○○에선 로스쿨 졸업생에 대한 ○○제약의 일반직 직원 채용공고, 국가인권위원회·인천시·조달청의 6급 채용공고가 났을 때도 보이콧 움직임이 있었다. 최근엔 로스쿨생에게 불편한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 위○○(55)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로스쿨 강연 거부운동도 일었다. 한 로스쿨생은 “취업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예비 법조인답게 균형 있는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로스쿨생들이 민감해진 건 취업난 때문이다. 유기홍(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로스쿨 1기 졸업생의 취업률은 81.7%다. 로스쿨생들은 전국 단위 학생협의회를 조직해 기자회견을 여는 등 불리한 여론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49) 로스쿨협의회 사무국장은 “변호사 자격증이 곧 능력인 것은 아니다”며 “로스쿨 설립 취지대로 각자의 능력·적성에 따라 법조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라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

피 신청인은 중앙일보 사회면에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반론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 활자인 “썩은 떡밥’ 7급 공무원 지원 변호사 신상 털자”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가. 제 목 : ○○○○ 게시판 “지원자는 실명 공개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글에 옹호 댓글 20여개 달린 것 사실 아니야(또는 “7급 공무원 지원자 신상 털자” 보도 관련 반론 보도문)

나.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4월 17일자 사회면에 “썩은 떡밥’ 7급 공무원 지원 변호사 신상 털자”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내용은 부산시가 같은 달 15일 변호사, 회계사 등을 7급으로 선발하는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법학전문 대학원 재학생, 졸업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www.○○○○○○○.net)에서 지원자를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으며 ‘지원자는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1000여명이 조회했고 옹호 댓글 20여개가 달렸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의 해당 게시판을 확인한 결과, ‘지원자는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지방직 7급 쓰시려는 분들이 만약 있다면..’이라는 제목의 글(2013. 4. 15. 00:34에 게재된 글 번호 번의 글)에서 ‘D대법관’이라는 필명으로 ‘다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주장되었던 것처럼 7급, 경위, 일반직 ->이 3종 세트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명단을 공개해서 망신을 줘야 합니다. (후략)’라는 내용의 댓글이 작성된 바 있고 이 댓글에는 총 5개의 공감과 10개의 비공감이 달린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기사는 사실과 어긋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기각결정

기각 결정서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13. 4. 17.자 13면 「부산, 7급 공무원에 변호사 채용 공고. 로스쿨생들 “법조계 욕…〈지원자〉신상 털자”」제하의 기사를 통해 인터넷카페 ○○○○(www.○○○○○○○○.net)에 해당 채용을 보이콧(거부)하거나 지원자 신상을 공개하자는 등 과격한 주장들도 여과 없이 올라와 있고 이런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는 이도 적지 않으며, “지원자는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1,000여 명이 조회했고 옹호 댓글 20여 개가 달렸다고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했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에 언급된 내용의 글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지방직 7급 쓰시려는 분들이 만약 있다면’이라는 제목의 글에 지원자의 명단을 공개해야한다는 요지의 댓글이 달렸고 이 댓글에는 총 5개의 공감과 10개의 비공감 의견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반론보도를 구한다.

2. 판 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보도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그 동일성을 추지할 수 있거나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 개인적 법익이 침해된 자를 가리킨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보도 중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지원자는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란 내용의 글은 1,000여 명이 조회했고 옹호 댓글 20여개가 달렸다)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거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 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 언론조정 중재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07. 23.

사 례 26

국회의장의 차량 주유비가 사적으로 사용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1183, 2013서울조정1207(병합) 각 반론청구

신 청 인 : 국회사무처

피신청인 : 주식회사 일요시사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3. 07. 31. (2013서울조정1183)

2013. 08. 06. (2013서울조정1207)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강창희 국회의장이 취임 후 잦은 해외출장으로 국내에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빈도수도 무척 적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유비로 지급받은 금액 중 상당액을 남겨 사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동급 차량을 사용하는 국회 사무총장의 같은 기간의 이용거리와 비교하면 매달 90만 원 이상의 주유비를 착복하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현재 국회 내 모든 전용차량에 대한 주유비를 정액지급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정액지급방식은 일일이 정산하기 어려운 성격의 경비에 대해서 인정되는 예산집행의 한 방식으로, 정액지급방식 제도 하에서는 주유비를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균등지급하되, 차량이용자의 일정 등에 따라 월별로 발생하는 과부족액을 정산하지 않게 되므로, 특정기간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주유비를 근거로 ‘사적 유용’, ‘착복’ 내지 ‘횡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1

- 인터넷 일요시사 : 『〈단독〉 국회의장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 추적』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9일자)

■ **내 용** : 강창희 국회의장이 매달 150만 원의 주유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도 남은 주유비를 단 한 번도 반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후 잦은 해외출장으로 관용차량 이용 빈도도 적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 의장은 국민 혈세로 지급한 주유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일까? 강 의장의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을 〈일요시사〉가 파헤쳐 봤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지급받은 주유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후 지금까지 매달 150만 원의 주유비를 꼬박꼬박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하지만 남은 주유비를 반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유비=쌈짓돈?

지난 1월 사실상 박근혜정부의 첫 인선으로 평가받던 이○○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낙마했다. 이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정된 업무에만 써야하는 특정업무경비를 금융투자상품과 연결된 개인통장에 넣어 놓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자진 사퇴했다.

강 의장의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은 이 전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사적유용 의혹과 너무 나도 닮아있다. 횡령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지만 강 의장 측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 전 후보자는 청문회 당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당해 현재까지도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감사원은 이 전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논란 이후 각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게다가 강 의장이 사용하는 관용차량은 ‘국회사무처 공용차량 내규’에 따라 운행일지도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장은 지금까지 주유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지급받은 주유비 중 실제로 주유비로 사용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 또 남은 돈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파악할 자료가 전혀 없다.

반면 일반 업무용 관용차량은 차량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1년에 한차례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선관위에 내면서 주유비로 사용한 경비의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해외 장기출장 후에도 주유비 꼬박꼬박

남은 주유비 반납 전무, 어디에 썼기에?

또 강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후 잦은 해외출장으로 국내에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빈도수도 무척 적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유비로 지급받은 금액 중 상당액을 남겨 사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의장은 지난 2012년 7월 취임했다. 이제 겨우 취임 후 1년이 지났지만 강 의장은 벌써 5차례나 해외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달에도 13일 동안 케냐·탄자니아·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하는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편 국회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정진석 사무총장의 관용차량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7,235km를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장과 정 사무총장의 관용차량은 모두 ‘에쿠스 3.8’이다. 이 차는 공인연비가 L당 8.9km다. 하지만 냉난방기 사용여부 및 과속 등의 경우를 감안해 실제연비를 L당 5km로 산정하고 계산을 해봐도 한 달 주유비는 60만 원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강 의장도 정 사무총장과 비슷하게 관용차량을 사용했다면 매달 90만 원 이상의 주유비를 착복한 것이 된다.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2년 간 매달 90만 원 이상의 주유비를 사적으로 유용한다면 약 2,160만 원의 혈세를 횡령하게 되는 셈이다.

〈일요시사〉는 강 의장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수차례 답변을 요구했지만 강 의장 측은 끝내 모르쇠로 일관했다. 다만 국회 사무처 측은 이와 관련 “주말 또는 공휴일에 공무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주로 개인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용차량의 운행거리만으로 주유비의 과다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행정부 장·차관급의 경우도 주유비가 정액 지급되고 있으며,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를 마치 국회의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본지가 확인한 결과 강 의장뿐만 아니라 이병석 국회 부의장과 박병석 국회 부의장 역시 매달 현금으로 주유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액은 강 의장보다 다소 적은 130만 원을 매달 지급받고 있었다. 이 부의장과 박 부의장 역시 지금까지 남은 주유비를 반납한 사례가 없었다. 이 부의장 측은 강 의장과 마찬가지로 답변을 내놓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반면 박 부의장 측은 “남은 주유비를 반납해야 하는지도 몰랐다”며 “하지만 평소 지역구를 오가며 장거리 운행을 하는데다 차량관리비가 따로 나오지 않아 지급되는 주유비를 차량관리비로도 사용해 남은 돈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취재기자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주유비가 남은 적이 없었냐?”고 재차 질문하자 박 부의장 측 관계자는 “그것까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치권 관계자들은 강 의장의 주유비 사적유용 논란에 대해 침예하게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현행 제도 안에서 강 의장이 잘못된 것은 없지 않느냐. 잘못된 것은 제도 그 자체”라며 “운행일지도 작성할 필요 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주유비는 횡령을 장려하는 제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리 현행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심적으로 주유비를 사용하고 남은 돈은 자진 반납했어야 한다”며 “주유비로 지급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아무리 변명을 늘어놓아도 횡령에 해당된다. 지금이라도 그동안 남았던 주유비는 반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전 후보자의 사례처럼 강 의장이 지금까지 지급받은 주유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그 결과에 따라 검찰고발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횡령 적용할 수도

끝으로 한 정치전문가는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모든 비용은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쓰여야 한다”며 “다른 곳도 모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변명은 비겁하다. 지금이라도 국회의장단의 관용차량 주유비가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대상보도 2

- **일요시사** : 『국민혈세로 지급한 기름값이 의장님 쌈짓돈?』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8일자 10면)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인터넷 일요시사 홈페이지 기사목록에 아래의 반론보도문 (1)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반론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국민혈세로 지급한 기름값이 의장님 쌈짓돈?”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DB에 저장해 검색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아래의 반론보도문 (1)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2013서울조정1183)

2. 피신청인은 일요시사 지면에 지난 ‘국민혈세로 지급한 기름 값이 의장님 쌔짓돈?’이라는 제목의 기사(일요시사 제916호)와 같은 면(제10면)에 아래의 아래의 반론보도문 (2)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한다. 반론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국회의장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 추적”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2013서울조정1207)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1)〉

가. 제 목 : ‘국회의장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 추적’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나.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7월 29일자 정치면에 “국회의장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 추적”라는 제목으로 ① 강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후 잦은 해외출장으로 국내에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빈도수도 무척 적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유비로 지급받은 금액 중 상당액을 남겨 사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② 강 의장도 정 사무총장과 비슷하게 관용차량을 사용했다면 매달 90만 원 이상의 주유비를 착복한 것이 된다, ③ 2년간 매달 90만 원 이상의 주유비를 사적으로 유용한다면 약 2,160만 원의 혈세를 횡령하게 되는 셈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와 관련하여 국회사무처는 “현재 국회 내 모든 전용차량에 대한 주유비를 정액지급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정액지급방식은 일일이 정산하기 어려운 성격의 경비에 대해서 인정되는 예산집행의 한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액지급방식 제도 하에서는 세출예산서에 편성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매월 균등지급하되, 차량이용자의 일정 등에 따라 월별로 발생하는 과부족액을 정산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기간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주유비를 근거로 ‘사적 유용’, ‘착복’ 내지 ‘횡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장에게 지급되는 월 주유비(150만 원)와 양 부의장 및 국회 사무총장에게 지급되는 월 주유비(130만 원)는 기획재정부의 편성 및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세출예산서상의 금액으로, 타 부처 장관급의 경우에도 국회와 유사한 수준(월 150만 원 내외)의 차량주유비가 집행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편성·지급되는 주유비가 결코 과도한 수준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

가. 제 목 : ‘국민혈세로 지급한 기름값이 의장님 쌔짓돈?’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나.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제916호 제10면에 “국민혈세로 지급한 기름 값이 의장님 쌔짓돈?” 라는 제목으로 「① 강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후 잦은 해외출장으로 국내에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빈도수도 무척 적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유비로 지급받은 금액 중 상당액을 남겨 사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② 강 의장도 정 사무총장과 비슷하게 관용차량을 사용했다면 매달 90만 원 이상의 주유비를 착복한 것이 된다, ③ 2년간 매달 90만 원 이상의 주유비를 사적으로 유용한다면 약 2,160만 원의 혈세를 횡령하게 되는 셈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도와 관련하여 국회사무처는 “현재 국회 내 모든 전용차량에 대한 주유비를 정액 지급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정액지급방식은 일일이 정산하기 어려운 성격의 경비에 대해서 인정되는 예산집행의 한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액지급방식 제도 하에서는 세출예산서에 편성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매월 균등지급하되, 차량이용자의 일정 등에 따라 월별로 발생하는 과부족액을 정산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기간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주유비를 근거로 ‘사적 유용’, ‘착복’ 내지 ‘횡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장에게 지급되는 월 주유비(150만 원)와 양 부의장 및 국회 사무총장에게 지급되는 월 주유비(130만 원)는 기획재정부의 편성 및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세출예산서상의 금액으로, 타 부처 장관급의 경우에도 국회와 유사한 수준(월 150만 원 내외)의 차량주유비가 집행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편성·지급되는 주유비가 결코 과도한 수준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1. 보도문

가. 제 목 : ‘국회의장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나. 본 문 : 〈일요시사〉는 지난 7월 29일자 정치면 「국회의장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 추적」 기사에서 ‘강창희 의장은 취임 후 잦은 해외출장으로 국내에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빈도수도 무척 적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유비로 지급받은 금액 중 상당액을 남겨 사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동급 차량을 사용하는 국회 사무총장의 같은 기간의 이용거리와 비교하면 매달 90만 원 이상의 주유비를 착복한 것이 되고, 이 경우 2년간 2,160만 원의 혈세를 횡령하게 되는 셈’이라고 보도하였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현재 국회 내 모든 전용차량에 대한 주유비를 정액지급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정액지급방식은 일일이 정산하기 어려운 성격의 경비에 대해서 인정되는 예산집행의 한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무처는 “정액지급방식 제도 하에서는 주유비를 편성된 예산의범위 내에서 매월 균등 지급되되, 차량이용자의 일정 등에 따라 월별로 발생하는 과부족액을 정산하지 않게 되므로, 특정기간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주유비를 근거로 ‘사적 유용’, ‘착복’ 내지 ‘횡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 및 예산집행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일요시사〉 2013년 8월 26일자 정치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국회의장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의 글자크기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의 중간제목 중 ‘해외 장기출장 후에도 주유비 꼬박꼬박’의 글자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의 글자크기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글자 크기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인터넷 일요시사〉(<http://www.ilyosisa.co.kr>) 초기화면 기사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013년 8월 19일 정오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 기재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40762>)의 본문하단에도 이어서 게재하고,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이 위 제1항~제3항과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피신청인이 위 제1항~제3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들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보도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8. 16.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1

- 인터넷 일요시사 : 『[‘국회의장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9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2

- 일요시사 : 『[‘국회의장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일자 10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27

신청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 및 고위 공무원에게 고가의 명절선물 또는 영전 축하금을 보냈으며 당사자가 수령사실을 시인하였고 매년 명절 선물비용으로 수익 원대를 지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1192 · 1193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1. (주)○○○, 2. 홍○○

피신청인 : 주식회사 시사저널사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3. 08. 02.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 2가 대표로 있는 신청인 1 회사가 대통령 및 고위 공무원에게 고가의 명절선물이나 영전 축하금을 보냈으며 수령자들이 전화 통화로 ‘비서 통해 선물 수령’ 또는 ‘선물 또는 영전 축하금 수령’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특정 고위 공무원 영전 시 꽃바구니를 보낸 적은 있지만 대통령 및 고위 공무원에게 고가의 명절선물이나 영전 축하금을 보낸 적이 없으므로 정정보도와 함께 총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신청인들에게 각 1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양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 한편, 신청인은 동일한 주제로 기사를 게재한 일요신문과 인터넷 일요신문을 대상으로 각 정정 및 손해배청구(2013서울조정1387~1388, 2013서울조정1389~1390, 병합)를 제기했고, 일요신문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인터넷 일요신문에서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또한 인터넷 일요신문의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함과 더불어 포털에 전송한 기사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하도록 했다.

조정대상보도

- **시사저널 :** 『[특집1] ○○○○○ Outlet 이명박 · 원○○도 받았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3일자 34~40면)

■ **내 용**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아울렛 홍○○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명절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이 회사 선물 리스트에는 이 전 대통령 외에도 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 전 환경부장관, 박○○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차관급) 등 MB 정권 초기의 장·차관이 대거 포함돼 있다. 선물 용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렛측은 “(홍 회장이)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선물을 받은 인사는 경영대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만난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가격도 30만 원 미만으로 대가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홍○○ 회장도 7월 10일 기자와 만나 곤혹스러움을 토로했다. 그는 “지인에게 보낸 선물 내역이 외부로 유출돼 당혹스럽다. 선물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별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별도로 연락을 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이 확인한 결과 홍 회장은 원○○ 전 국정원장과 이○○ 전 장관, 박○○ 전 국무차장이 취임할 때 별도로 ‘영전 축하금’까지 건넸다. 지방법원장을 지낸 한 변호사의 경우 170만 원 상당의 쇼핑 비용을 대신 지불하기도 했다. 때문에 ‘선물 리스트’를 둘러싼 의혹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의 문건은 2007년, 2008년, 2009년에 걸쳐 작성됐다. 홍 회장이 매년 설과 추석 때 선물을 보낸 인사와 선물 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 처우에 불만을 품은 한 직원이 나가면서 이 문건을 빼갔다. 외부에 문건을 유출시킨 직원과는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가 명절 선물 용도 놓고 논란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사의 면면은 화려하다. 국회의원부터 장·차관, 지방법원장, 지검장, 경찰서장, 세무서장, 구청장, 은행장, 기업인, 언론인 등 정·관·재·언론계 고위급 인사가 즐비하다. 홍 회장은 이들을 등급을 나눠 관리했다. 등급은 최고 수준인 S급부터 A, B, C, D급까지 5종류였다. S급에게는 주로 25만~30만 원 상당의 명품 굴비 세트를 보냈다. 국회의원이나 기관장이 대다수다. ○○○아울렛에 음식점이 새로 오픈할 때도 이들을 초대해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음식을 대접했다. A급에겐 22만 원 상당의 갈비세트, B급에겐 15만 원 상당의 고급 와인을 보냈고, C~D급에겐 8만~10만 원 상당의 중급 와인을 선물했다.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했다. 한 번에 선물을 보낸 인원은 800명 정도. 선물 가격이 10만~30만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매년 수억 원을 명절 선물로 지출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취를 거절한 인사는 별도로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다. 리스트에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구청 공무원이나 경찰서장, 국정원 직원도 있다. 홍 회장은 2007년부터 소송을 진행 중이던 한국산업단지공단 박○○ 전 이사장에게 여러 차례 선물을 보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수취 거절을 한 한 인사는 “사업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던 ○○○아울렛에서 매년 선물을 보내와 당혹스러웠다. 수취 거절을 하고 돌려보낸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시사저널 특집 1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목차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 및 게재 쪽수를 다른 목차 부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정정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이명박·원○○도 받았다”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 이상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아울렛 선물 리스트’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7월 17일자 특집1면에 “이명박·원○○도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아울렛의 대표이사 홍○○ 회장이 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고가의 명절 선물을 주었고 ‘○○○아울렛 선물 리스트’에 이명박 대통령 내외의 이름도 나와 있으며(34면, 37면), ② 원○○ 전 국정원장과 이○○ 전 장관, 박○○ 전 국무차장이 취임할 때 별도로 ‘영전 축하금’까지 건넸고(34면), ③ 이명박 전 대통령, 원○○ 전 국정원장, 이○○ 전 장관, 박○○ 전 국무차장이 전화 통화로 ‘비서 통해 선물 수령’ 또는 ‘선물 또는 영전 축하금’ 수령을 시인하였으며(36면), ④ 홍○○ 회장이 매년 명절 선물비용으로 수익원을 지출하였고(35면), ⑤ 한국산업단지공단 박○○ 전 이사장에게 여러 차례 선물을 보냈다가 거절당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35면).

그러나 해당 인사 및 관련 기관에 확인한 결과, ○○○아울렛 홍○○ 회장은 ①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로부터 의례적인 명절 선물을 받은 적이 있을 뿐, 선물을 보낸 사실이 전혀 없고, 본 신문이 게재한 ‘○○○아울렛 선물 리스트’는 홍○○ 회장이 선물을 보낸 내역이 아니라, 홍○○ 회장이 지인들로부터 받은 선물의 내역일 뿐이며, ② 원○○ 전 국정원장과 이○○ 전 장관, 박○○ 전 국무차장에게 영전 시 꽃바구니를 보낸 적이 있을 뿐, 현금성의 ‘영전 축하금’을 건넨 사실은 전혀 없고, ③ 이명박 전 대통령, 원○○

전 국정원장, 이○○ 전 장관, 박○○ 전 국무차장이 본 신문과 직접 통화하여 ‘비서 통해 선물 수령’ 또는 ‘선물 또는 영전 축하금’ 수령을 시인한 사실은 없으며, ④ 선물의 가격대는 최하 3만 원에서 평균 10~30만 원 수준으로 명절 선물로 지출한 총 금액은 매년 수천만 원 정도였고, ⑤ 한국산업단지공단 박○○ 전 이사장에게는 2008년 추석 때 단 1회 선물을 보냈다가 수취거절된 적이 있을 뿐 여러 차례 선물을 보낸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금 5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아래의 보도문을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시사저널> 35면 우측하단에 박스기사로 보도하되, 아래 보도문의 제목을 [] 로 써서 목차란(2면)의 활자와 같은 크기 및 형식으로 피해구제보도문 게재 지면(35면)과 함께 표시한다.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부제목(‘구로공단의 전설’ 홍○○은 누구?)과 같은 크기로 하되 2단으로 편집하고,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 본문 활자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동일 기간 내에 아래의 보도문을 <시사저널>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단, 본문의 활자크기, 줄간격은 원 조정대상기사 설명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가. 제 목 : ○○○아울렛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본보는 지난 7월 16일자 제1239호 34면~40면「이명박·원○○도 받았다」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아울렛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에게 선물을 보낸 사실이 전혀 없고, 본 신문이 게재한 ‘○○○아울렛 선물 리스트’는 홍○○ 회장이 선물을 보낸 내역이 아니라, 홍 회장이 지인들로 부터 받은 선물의 내역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원○○ 전 국정원장과 이○○ 전 장관, 박○○ 전 국무차장에게 영전 시 꽃바구니를 보낸 적이 있을 뿐, 현금성의 ‘영전 축하금’을 건넨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명박 전 대통령, 원○○ 전 국정원장, 이○○ 전 장관, 박○○ 전 국무차장이 본 주간지와 직접 통화하여 ‘비서 통해 선물 수령’ 또는 ‘선물 또는 영전 축하금 수령’ 등의 사실을 시인한 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 회장이 지인들에게 보낸 선물의 가격대는 최하 3만 원에서 평균 10~30만 원 수준으로 명절 선물로 지출한 총 금액은 매년 수천만 원 정도였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박○○ 전 이사장에게는 2008년 추석 때 단 1회 선물을 보냈다가 수취거절된 적이 있을 뿐 여러 차례 선물을 보낸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 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5.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09. 0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 례 28

신청인 회사의 영유아용 물티슈 제품에서 호흡기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진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1194, 2013서울조정1195(병합)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3. 08. 02.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소비자시민모임이 시중에 유통 중인 14종 물티슈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신청인 회사의 물티슈 제품에서 캐나다와 일본에서 화장품 사용에 제한되었으며 호흡기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진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소비자시민모임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는 모든 제품의 성분이 기준치에 부합해 안전하다고 나와 있고, 신청인 회사의 물티슈 제품에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정정보도 청구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1

- **문화일보** : 『영유아용 물티슈 알고보니 毒티슈?』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일자 16면)
- **내 용** : “시중에 물티슈 제품이 많다 보니 브랜드 파워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 왔는데 속았다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아이의 몸에 유독물질을 주입한 꼴이네요.”

경기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주부 김○○(32) 씨는 물티슈 이야기가 나오자 분통을 터뜨렸다. 김 씨는 두 살난 아들의 위생 관리를 위해 평상시 손·발·사타구니 등을 물티슈로 자주 닦아주곤 했다.

그는 아이에게 쓰는 물건이라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무형광증백제’ ‘무포름알데히드’ ‘무화학향’이라고 광고하던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샀다. 하지만 뒤늦게 성분표시를 확인해 보니 해당 물티슈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중추신경을 억제하고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는 유독물질이라고 경고한 페녹시에탄올이 함유되어 있었다.

올해 아들을 출산한 주부 김○○(31) 씨도 아이의 손발을 닦아줄 때 사용하던 물티슈에 페녹시에탄올이 들어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는 앞으로 물티슈를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다.

김 씨는 “향이 나는 물티슈가 좋은 것인 줄 알았다”며 “유독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쓰지 않았을 텐데 제조업체의 꼼수에 놀아난 느낌”이라고 말했다.

1일 관련업체에 따르면 저출산 기조와 핵가족화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일회용 유아용품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유아용 물티슈 시장은 지난해 업계추산 2,600억 원 규모까지 성장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선보이는 제품만 수십 가지가 넘을 정도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많은 제품에서 유아에게 치명적인 유기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물티슈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170호에 따라 물티슈 유해물질 안전 요건이 신설, 전 성분 표시가 의무화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전 제품에 성분 표시를 강제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아예 영유아용 물티슈의 관리 규정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16일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14종 물티슈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기준치인 kg당 100mg 이하였지만 ‘○○○ ○○○’(61mg)과 ‘○○○ 물티슈’(23mg) 두 제품에서 캐나다와 일본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가슴기 살균제에 혼합물 제형으로 쓰이면서 호흡기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된 것이다.

‘○ ○○○ ○ ○○○ 물티슈’와 ‘○○○ ○○○ 물티슈 마일드’ ‘○○○ ○○○○○ ○○○’에선 페녹시에탄올이 검출됐다. 세 제품 모두 기준치(kg당 1만mg) 이하량이 검출됐지만 페녹시에탄올이 유아에게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는 유독물질이라는 점에서 유아들의 이용이 많은 물티슈에 이 성분이 사용된다는 건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문화일보가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독일 ○○○사의 ○○○ 물티슈의 경우 페녹시에탄올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무자극, 무독성, 무알레르기’라고 버젓이 광고하고 있었다.

이같이 물티슈에 유독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이유는 국내에선 물티슈 관련 안전기준이 섬유 유연제 등 생활화학 가정용품에 적용되는 공산품에 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르면 물티슈엔 납, 수은, 비소, 카드뮴, 크로뮴 등 금속물질이 kg당 20mg 이하면 기준치에 적합하다.

하지만 공산품이 아닌 화장품 안전기준을 적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납·수은·비소·카드뮴은 g당 10 μ g(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제품의 특성상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해 화장품 원료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유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티슈를 화장품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7월 10일 환경부 및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인증기술 본부와 함께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방안 설명회’를 열어 업계 관계자들과 물티슈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연내에 현황조사와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안전관리기준 개정안을 도출할 계획을 세웠다.

홍○○ 소비자시민모임 팀장은 “기준치 이하라곤 하지만 MIT나 페녹시에탄올 같은 물질들이 영유아용 물티슈에 들어있으면 분명 아이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물티슈 관리기준을 화장품 원료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 물티슈를 생산하는 유○○○○ 관계자는 “물티슈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품 및 유아용 제품의 원료로 국내외에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되어 온 페녹시에탄올을 기준치 미만으로 사용해 왔다”면서도 “현행 물티슈 관리 기준으로는 안전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물티슈를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으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정대상보도 2

- 인터넷 문화일보 : 『영유아용 물티슈 알고보니 毒티슈?』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일자)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문화일보 Consumer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영유아용 물티슈 알고보니 毒티슈?”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 문화일보(<http://www.munhwa.com>)의 홈페이지 경제면 Consumer 탭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 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안전성 테스트 통과한 ○○○ 물티슈, 안전 이상무’ (또는 ‘영유아용 물티슈 알고보니 毒티슈?’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8월 1일자 Consumer면에 “영유아용 물티슈 알고보니 毒티슈?” 라는 제목으로 지난 7월 16일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14종 물티슈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으며, ‘○○○ ○○○’에 캐나다와 일본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가습기 살균제에 혼합물 제형으로 쓰이면서 호흡기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7월 16일 발표한 내용은 시중에서 유통 중인 14종 물티슈 성분을 조사해본 바, 모두 기준치에 부합해 안전하다는 내용이었으며, ‘독티슈’라는 자극적인 기사와는 달리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물티슈 제품 중 ‘○○○ ○○○’는 지난 5월부터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 물티슈 보도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나. 내 용 : 본보 지난 2013년 8월 1일자 Consumer면 『영아용 물티슈 알고 보니 毒티슈?』제하의 기사에서 “허용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 ○○○’에 인체유해성분인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 물티슈’에 들어간 문제의 MIT 함유량은 공산품 기준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일본이 적용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 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 제품의 판매원인 ○○○○○ ○○○는 “지난 5월 제조분부터는 아예 이를 사용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3년 8월 29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문화일보 Consumer면 또는 16면에 제1항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발문(무형광증백제 광고 브랜드에 중추 신경 억제·설사유발성분 폐녹시에탄올 함유사실 확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제2항을 이행한 당일 12:00부터 문화일보의 홈페이지(<http://www.munhwa.com>)의 <경제> 섹션 기사목록(전체리스트) 앞부분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80101031624098005>)의 본문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다만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피신청인이 위 제2항 내지 제4항과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사항을 이행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6. 피신청인이 위 제2항 내지 제4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7. 피신청인이 위 제2항 내지 제4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 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013. 08. 20.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1

- **문화일보** : 『‘○○○’ 물티슈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2일자 23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2

- **인터넷 문화일보** : 『[‘○○○’ 물티슈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2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29

신청인 사(史)학회가 집필을 주도한 역사교과서가 5·16은 혁명, 5·18은 폭동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1322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사학회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13. 09. 03.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 “뉴라이트 교과서에 ‘5.16은 혁명, 5.18은 폭동’”이라는 기사 제목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기사 제목은 사실이 아니며, 이 기사로 인해 교○○와 이 교과서의 저자들이 속해 있는 한국○○사학회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비록 피신청인이 이 내용이 허위임을 인지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기사 제목을 수정하긴 했으나, 원래의 기사 제목이 잘못되었음을 독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 조정신청 이후, 피신청인은 사과의 내용을 포함한 정정보도를 했고, 신청인은 신청을 취하였다.

조정대상정보

- 인터넷 한겨레 : 『뉴라이트 교과서엔 “5·16은 혁명, 5·18은 폭동”』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1일자)

- 내 용 : 현행 역사교과서를 좌편향·친북 교과서라고 비판하며 이승만·박정희 시대를 미화해온 ‘뉴라이트’ 세력이 만든 역사교과서가 검정 본심사를 통과했다. 별다른 문제만 없다면 이들이 집필한 교과서는 내년부터 학교별로 교육 현장에서 채택될 수 있다. 독재 시대에 대한 학생들의 시각이 왜곡될 우려도 있다.

뉴라이트 등 보수 학자들이 집필하고 교학사가 발행하는 한국사 교과서가 지난달 10일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과서 검정심의위원회의 검정 본심사를 통과하고 현재 수정·보완중이다. 8월30일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데, 검정 본심사 통과 뒤 탈락한 경우는 없었다. 이들 학자는 ‘2009 교육과정’ 개정으로 올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가 전반적으로 검정을 다시 하는 데 발맞춰 지난 1월 새로 집필한 교과서를 검정심의위에 제출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지난해 검정을 새로 했다.

이들이 쓰는 교과서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뉴라이트 학자들이 밝혀온 견해를 고려하면 집필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모인 교과서 포럼이 2008년 내놓은 이른바 ‘대안교과서’는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했다. 4·19 혁명도 ‘학생운동’으로 폄하됐다.

이번 교과서 작업을 주도한 단체는 한국○○사학회다. 이 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권○○ 한국학○○연구원 교수가 대표 집필을 맡았고, 학회의 교과서위원장인 이○○ ○○교육연합 상임대표(공주대 교수)와 권 교수가 모은 고교 교사 4명이 참여했다. 권○○ 교수는 31일 열린 ‘교과서 문제를 생각한다’ 학술회의에서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해방과 더불어 만들어졌다고 서술한 교과서는 없다. 교과서들은 4·19 이후, 87년 체제 이후에 민주화됐다고 보는데, 이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학사 관계자는 “권 교수가 우리 쪽에 교과서를 집필하고 싶다고 먼저 제의해 왔다. 이번에 만든 교과서는 특정 사건과 인물의 분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표 집필자의 성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과서에서 우려되는 대목은 제주4·3사건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국가가 민간인에게 저지른 폭력을 단순히 ‘폭동’으로 기술하는 등 역사적 사실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산업화의 아버지’로 보고 그 시절 이뤄진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은 축소하고, 긍정적인 면은 지나치게 부풀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 성공회대 교수(한국사)는 “이승만은 의회와 정당제도에 의존하지 않은 채 독재를 했고, 박정희 역시 독재를 했다. 이 둘은 자유민주주의의 파괴자”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승만의 건국이나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옹호하는 논리는 현대사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들한테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번 교과서 사태는 지난해부터 예상돼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전 5·16 쿠데타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월 인사 청문회 당시 5·16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교과서에 기술된 것을 존중한다”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 직답을 못 드리는 이유를 이해해 달라”고 어정쩡한 답변을 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황교안(법무부)·유○○(안전행정부) 등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비슷한 태도를 보여 입길에 올랐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사과를 포함한 정정보도를 한겨레신문 인터넷판에 올린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가. 제 목 : “뉴라이트 교과서에 “5.16은 혁명, 5.18은 폭동” 이란 제목이 잘못되었기에 정정합니다.
- 나. 본 문 : 본지는 2013년 5월 31일자 22시 15분 기사에서 “뉴라이트 교과서에 “5.16은 혁명, 5.18은 폭동”이란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 아님을 인지한 후 제목을 바꿨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엔 그런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기사에 언급된 관계자들과 해당 기관, 단체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 인터넷 한겨레 : 『[정정] ‘이승만·박정희 독재 미화’ 뉴라이트, 역사흔들기 본격화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3일자)
- 내 용 : 본지는 2013년 5월 31일자 22시15분 기사에서 “뉴라이트 교과서에 5.16은 혁명, 5.18은 폭동”이란 제목을 달았습니다. 해당 제목이 사실이 아님을 인지한 후 제목을 바꿨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엔 그런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기사에 언급된 관계자들과 해당 기관, 단체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 례 30

신청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아들에게 상한 음식을 먹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광주조정48·49, 2013광주조정50·51(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주)호남프레스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13. 09. 25.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아들에게 오래된 도넛과 부실한 간식, 썩은 김치를 먹이고, 냉·난방 없이 어두컴컴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원장의 비인간적인 대우 때문에 7명의 교사가 한꺼번에 모두 사직하였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원아들에게 썩은 김치와 상한 음식을 먹인 적이 없으며, 교실의 냉난방 시설과 조명 시설은 평소 정상적으로 가동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청인의 비인간적인 대우로 7명의 교사가 한꺼번에 사직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합의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였다.

조정대상보도 1

- **조간호남일보** : (1) 『옥상에 방치한 부패 김치...상한 수입산 음식』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4일자 1면)

- **내 용** : 광주시 남구 한 유치원이 아이들에게 상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교사들은 비인간적으로 대우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던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열악한 보육 시설과 원생 인권유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고 당국이 대책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드러난 실태여서 충격파가 크다.

전직 교사와 학부모들의 폭로로 유치원 아이들은 부실하고 비위생적인 음식을 매일 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치는 보기에다 부패 상태가 심각한데도 버젓이 제공됐다. 간식용 도넛은 오래된 것이고 냉동만두 한 봉지로 90명에게 먹이도록 했다는 것이다.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한다는 광고와는 달리 모든 식자재는 수입산이었고 정수기나 주방의 위생 상태도 엉망이었다. ‘부실 대접’은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4월 개원한 이 유치원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교사가 바뀌었다. 이는 원장의 비인간적인 대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꺼번에 7명의 교사가 사직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퇴근이 늦은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매일 오후 10시까지 근무한다. 공휴일에는 모두 출근, 계단 청소 같은 잡일을 해야 했고 식사도 제공되지 않아 컵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다.

원장 방침에 따라 냉·난방은 엄두도 못내 폭염과 혹한에는 수업을 진행하기 힘들었다. 전등도 제대로 켤 수 없어 아이들은 어두컴컴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았고 어두워 계단을 걷기 힘들었다. 30도가 넘는 더위에도 절대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하던 원장이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기 30분 전에는 꼭 에어컨을 틀었다. 땀을 식혀서 귀가시키려는 의도다. 3층짜리 유치원 건물에는 원장의 가족들도 함께 산다.

이 유치원 전직 교사는 “아이들 먹일 음식도 많지 않은데 원장 식구들까지 함께 먹어버리니 아이들에게 돌아갈 몫은 더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며 “심지어 좋은 식재료가 원장 식구들 밥상에 오르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교육청과 구청은 점점 한번 나오지 않았다”면서 “부실 운영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문제를 개선하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광주시 남구 한 유치원의 비인도적 처사는 관계 당국의 무관심 속에 악화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언론매체를 통해 해당 유치원의 부실한 간식 문제가 알려지기 전에 광주시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해당 유치원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을 원장의 해명을 듣는데 할애했다. 교육청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교사들의 입장을 듣는 데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와 언론 보도로 드러난 간식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나가보니 문제가 없더라”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청은 5~7살의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그 문제는 유치원 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급식과 간식의 양이 적다고 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전직 보육교사와 학부모들을 만나서는 “원장 선생님과 잘 해결해보시라”며 무책임하게 대응했다고도 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을 방문해 정기 점검까지 벌였지만 어떠한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조간호남일보** : (2) 『[社說] ○○ 유치원 단속직원 책임 물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6일자 15면)

■ **내 용** : 광주시 남구 ○○ 유치원의 비위생적이고 부실한 운영 실태를 접한 사람이라면 자녀를 이 유치원에 보내고 싶은 부모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옥상에 방치해둔 썩은 김치, 말라빠진 미역과 도넛. 냉동 만두를 간식으로 제공했다. 설치해놓은 냉방기기를 가동하지 않았고 전기를 아낀다며 불을 켜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기 일쑤였다. 복도가 어두워 걸어 다니기도 힘들었다. 마치 후진 독재국가의 수용소를 연상케 하는 분위기다 묻어난다.

하지만 이 유치원은 1년 넘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일류 취급을 받았다.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일류 유치원으로 건재했다면 감독기관의 단속 업무가 부실했다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 건강을 위협하는 비위생적이고 부실한 간식을 제공해온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 유치원 전직 교사가 양심선언을 했고 그녀는 실상을 카메라에 담아 언론사에 제보했다.

언론매체에 공개된 몇 장의 사진은 실상을 그대로 담고 있다. 감독기관은 현장 감독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강변한다. 충실히 라는 의미는 구석구석을 뒤져보고 직원들과 유아들의 상태, 면담도 펼치는 정도는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매뉴얼대로 현장을 점검했는데도 별문제가 없었다고 단속기관은 해명한다.

그들의 주장처럼 철저히 단속을 했는데도 부패한 식재료를 1년 넘게 사용했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러한 식재료나 썩은 김치는 방치된 옥상을 올라가 보고 냉장고를 열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을 보면 부패한 비위생적인 간식과 음식이라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다.

단속기관의 철저한 점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감독기관이 단속 의지가 강했다면 교사들을 상대로 부실 실태를 조사했더라면 상세한 정보를 얼마든지 입수했을 개연성이 높다. 교사들의 처우가 수준 이하였고 비인격적으로 대해 불만이 높았다. ‘부실 대접’을 받아온 교사들이었으므로 실태를 어느 정도 털어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해 4월 개원한 이 유치원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교사가 바뀌었다. 이는 원장의 비인간적인 대우 때문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일시에 7명의 교사가 사직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퇴근이 늦은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매일 오후 10시까지 근무했다.

공휴일에는 모두 출근, 계단 청소 같은 잡일을 해야 했고 식사도 제공되지 않아 컵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한다. 인지능력이 원생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준급인 교사들에게마저 이토록 천대해왔으니 원생들이 정상대접 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유치원의 부실간식과 비교육적 운영은 더는 내버려둘 수 없는 최악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기관은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를 진행해나가겠지만, 그와는 별도로 유치원 단속업무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단속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같은 최악의 사태로까지는 번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자체 감사를 펴야 하며 관계 직원의 근무 태만이 있다면 엄하게 징계해야 한다.

○○ 유치원의 비인간적 운영을 보는 시민들의 감정을 헤아려야 한다.

단속기관에 대한 질타도 ○○ 유치원 못지않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광주시 교육청과 위생을 담당하는 남구청은 신속하게 대응팀을 가동 실상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정대상보도 2

■ 인터넷 조간호남일보 : (1) 『옥상에 방치한 부패 김치상한 수입산 음식』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3일자)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1) 참조>

■ 인터넷 조간호남일보 : (2) 『교육청구청 관리감독 이중 구조가 주범』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3일자)

■ 내 용 :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국민적 이슈가 된 가운데 급식과 간식이 비위생적이고 부실 하는 등 끊이지 않는 아동수용시설의 문제점은 관리 감독체계가 이원화된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업무를 분담하고 있어 업무와 책임 떠넘기가 일상화되어 이들 수용시설이 문제의식 없이 비리와 비위생적 급식 등 탈선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관리 감독의 구조적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설립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

25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에 따르면 관내에서는 공·사립을 포함해 유치원 285곳과 어린이집 1천 244곳이 운영 중이다. 유치원은 119곳, 사립 166곳으로 공·사립 숫자가 엇비슷하지만, 어린이집은 국·공립 31곳,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07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립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내에서 각각 2만2천 명, 4만7천 명의 7세 이하 영유아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인가와 관리감독 체계는 완전히 분리돼 있다.

이처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함께 운영하는 곳이 많아 관리 감독기관은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는 교육청 담당직원이 유치원장 자격요건도 모르고 있을 정도다. 유치원은 시 교육청이 인가와 교육과정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관할 구청에서 맡고 있다. 또 급식 위생 감독업무는 유치원이라 하더라도 구청 위생담당이 맡고, 간식과 관련된 업무는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시 교육청과 구청으로 나뉘어 있다.

이 때문에 영유아들이 섭취하는 음식에 관련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교육청과 구청이 자기 업무인지 아닌 지부터 따지고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 광주 남구 ○○ 유치원에서 터진 부실 간식급식과 원장의 유치원 운영 사례에서 실감 나게 드러났다.

시 교육청은 음식위생과 관련된 일이라며 관리감독을 게을리 했고 구청은 유치원과 관련된 일이라며 대응을 소홀히 하다가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 사태가 확산한 이후에야 나서고 있다. 시 교육청의 해당 장학사는 사건발생 이후에도 유치원 원장 자격요건과 설립요건조차 파악하지 못해 비난을 샀다.

또 사고가 발생한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함께 있는데 시 교육청과 구청, 시청 어디도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하는 유치원이 몇 군데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인가와 위생관리, 교육과정 감독 등이 기관에 따라 또 기관 내부에서도 따로 돼 있어 이를 한 부서에서 모두 파악하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이원적인 관리감독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인터넷 조간호남일보 : (3) 『○○ 유치원 합동 조사착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5일자)

■ 내 용 : 원생들에게 상한 음식재료로 만든 음식과 부실한 간식을 제공해 파문을 일으킨 광주 남구 ○○ 유치원에 대해 합동 조사와 경찰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부실 급식’ 논란을 빚고 있는 이 유치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급식비와 간식비의 집행 내역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유치원이 원생들로부터 개인당 4만원의 급식비를 받는 만큼 지난 1년간 식비 지출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 중이다.

교육청은 담당 직원을 유치원에 파견, 보조금 집행 내역을 검토하고 교육과정과 특별활동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이고 있다. 인허가 과정과 원장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적법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또 교사들의 사직과 이직이 잦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장과 교사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 중이다. 관할 기관인 광주 남구청도 정수기나 주방의 위생 상태, 음식물 관리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 유치원의 설립자가 인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어린이

집의 급식 상태와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도 인터넷과 언론 등에서 나온 사실을 토대로 관련 정보를 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원장과 교사들을 상대로 급식비 집행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보조금 집행과 회계 처리에서 횡령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관리·감독의 주체가 다르고 관련자 조사에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구청, 경찰과 협조해 부적절한 운영 실태를 적발해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인터넷 조간호남일보 : (4) 『○○ 유치원 단속직원 책임 물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6일자)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2) 참조>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조간호남일보 사회면과 사설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1)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부제목 활자인 “옥상에 방치한 부패김치·상한 수입산 음식”, “○○유치원 단속직원 책임 물어야”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조간호남일보(<http://www.honamnews.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과 사설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2)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 (2)가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2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가. 제 목 : ‘옥상에 방치한 부패김치·상한 수입산 음식’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본 문 : 본 신문은 2013년 6월 24일 1면 ‘옥상에 방치한 부패김치·상한 수입산 음식’, 6월 26일 15면 ‘○○유치원 단속직원 책임 물어야’ 제목의 기사와 사설에서 “해당 유치원이 원아들에게 오래된 도넛과 부실한 간식을 제공하고, 옥상에 방치해 둔 썩은 김치를 먹이고, 냉난방 없이 어두컴컴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며, 원장의 비인간적인 대우 때문에 7명의 교사가 한꺼번에 모두 사직한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유치원 원장의 비인간적인 대우로 7명의 교사가 한꺼번에 사직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급식과 관련해서 광주서부교육청 및 광주 남구청의 점검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원아들에게 썩은 김치와 상한 음식을 먹인 적이 없으며, 보존 기한이 넘은 도넛을 간식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교실의 냉난방 시설과 조명 시설은 평소 정상적으로 가동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

가. 제 목 : “옥상에 방치한 부패김치·상한 수입산 음식”

“교육청 구청 관리감독 이중구조가 주범”

“○○유치원 합동 조사 착수”

“○○유치원 단속직원 책임 물어야”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나. 본 문 : 본 신문은 2013년 6월 23일 “옥상에 방치한 부패김치·상한 수입산 음식”, 2013년 6월 25일 “교육청 구청 관리감독 이중구조가 주범”, 2013년 6월 25일 “○○유치원 합동 조사 착수”라는 제목에서 오래된 도넛, 냉난방 없이 어두컴컴한 교실에서 수업진행, 광주 남구 ○○ 유치원 부실 간식 실상 드러나 파문확산이라고 보도하였고, 2013년 6월 26일 “○○유치원 단속직원 책임 물어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옥상에 방치해 둔 썩은 김치를 먹인 것처럼 보도하고 교사들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일시에 7명의 교사가 사직한 것처럼 허위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와 관련하여 광주 서부교육청, 광주 남구청등 관련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결과 ○○유치원은 “옥상에 방치한 부패한 썩은 김치·상한 수입산 음식”을 먹이지 않았고, “오래된 도넛을 간식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냉·난방 없이 어두컴컴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며 교사들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일시에 모두 사직한 것이 아님이 확인 되었기에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 손해청구 : 취하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옥상에 방치한 부패김치상한 수입산 음식’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내 용 : 본 신문은 2013년 6월 24일 1면 ‘옥상에 방치한 부패김치·상한 수입산 음식’, 6월 26일 15면 ‘○○유치원 단속직원 책임 물어야’ 제목의 기사와 사설에서 “해당 유치원이 원아들에게 오래된 도넛과 부실한 간식을 제공하고, 옥상에 방치해 둔 썩은 김치를 먹이고, 냉난방 없이 어두컴컴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며, 원장의 비인간적인 대우 때문에 7명의 교사가 한꺼번에 모두 사직한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유치원 원장의 비인간적인 대우로 7명의 교사가 한꺼번에 사직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급식과 관련하여 광주서부교육청 및 광주 남구청의 점검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원아들에게 썩은 김치와 상한 음식을 먹인 적이 없으며, 보존 기한이 넘은 도넛을 간식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교실의 냉난방 시설과 조명 시설은 평소 정상적으로 가동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3년 10월 11일까지 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조간호남일보 8면 우측 상단에 게재하되, 제목은 15호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3. 피신청인은 2013년 10월 11일까지 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인터넷 조간호남일보(<http://www.honamnews.co.kr>) 홈페이지 초기 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위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의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4.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한 날로부터 매일 금 50만 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013. 10. 0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1

- **조간호남일보** : 『‘옥상에 방치한 부패김치·상한 수입산 음식’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0일자 8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2

- **인터넷 조간호남일보** : 『‘옥상에 방치한 부패김치·상한 수입산 음식’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1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3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세계공항서비스평가 평가 1위를 지키기 위해 평가 대상 항공편 승객들에게 보안검색에 대한 특혜를 주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1477 정정청구

신 청 인 : 인천국제공항공사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13. 10. 08.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이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순위를 위하여 ASQ 대상 항공편의 승객들에게 보안검색에 대한 특혜를 줬고, 이 특혜가 신청인이 ASQ에서 8년간 1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준 것처럼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ASQ 대상 승객을 위한 특혜를 준 사실이 없고, ASQ 평가항목 중 보안검색은 보조지표의 일부에 불과하여 평가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 조정신청 이후,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게재했고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취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경향신문** : (1) 『인천공항 ‘서비스 평가 8연패’ 비결은 ‘특혜 보안검색’』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4일자 14면)
- **내 용** : 9월2일, 국제공항협의회(ACI)가 주관하는 공항서비스(ASQ) 평가 설문조사가 있는 날이었다. ASQ는 공항접근 교통~항공권 구입·교환~보안검색 등 출입국 수속~면세점~공항 내 각종 편의시설 이용~항공기 탑승의 서비스에 대한 승객의 만족도를 평가한다. 경향신문 기자 두 명은 이중 보안검색 과정을 직접 비교 체험했다. 보안검색은 인천공항공사와 계약한 용역업체가 진행했다. 두 기자가 체험한 항공기는 이날 오후 일본 나리타로 출발하는 ASQ 평가 대상 국적 항공기와 비슷한 시각 일본 나고야로 가는

일반 국적 항공기로 모두 아시아나항공 소속이었다. 두 기자 모두 기내 반입금지품목인 ‘100ml 이상의 액체류’ 리○○○ 가글(250ml), 페○○ 치약(120g), 키○ 로션(125ml), 이○○○○ 로션(160ml)을 가방에 넣었다. 로션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브랜드의 잘 알려진 제품들이었다.

[비ASQ 승객 탑승기]

▲ 규정대로 “100ml 반입 불가” 통보

통사정도 안 통해… 결국 다 버려

9월2일 오후 2시27분 인천국제공항. 오후 3시10분에 출발하는 일본 나고야행 아시아나항공 OZ0124편을 타기 위해 4번 출국장으로 들어갔다. 탑승권과 여권 확인을 받은 뒤 출국장 앞에 섰다. 자동문 입구에 서 있던 하늘색 피를 두른 남자직원이 다시 탑승권을 확인했다. 그는 왼쪽 보안검색대로 가라고 안내했다.

■ 출국장 통과에 ‘15분’

왼쪽 보안검색대 중 한 곳에 줄을 섰다. 승객 4~5명이 대기하고 있다. 차례가 왔다. 절반쯤 마신 500ml 생수병과 배낭을 바구니에 담고, 기내용 캐리어를 검색대에 올렸다. 전신 검색대를 통과한 뒤 양팔을 좌우로 벌려 꼼꼼하게 몸수색을 받았다. 검문이 끝나자 컨베이어 벨트 쪽에 있던 남자 보안검색요원이 기자의 생수병을 들고 말했다.

“물은 여기에 버리든지 다 마시고 들어가세요.”

“여기서 어떻게 다 마십니까?”라고 묻자 보안검색요원은 “면세점에 식수대가 있으니 물을 포기하거나 다 마시고 가세요”라고 말했다.

보안검색요원의 옆에 있는 은색 수거통에는 이미 다른 승객들이 버리고 간 음료수병 10여개가 들어 있다. 실랑이 끝에 “버려달라”고 하자 곧바로 동그란 은색 수거통에 물을 쏟아 버렸다.

기자의 가방이 찍힌 검색모니터를 보고 있던 보안검색요원이 조금 전 물을 버린 남자 보안검색요원을 불렀다. 잠시 뒤 돌아온 그가 “고객님, 가방 좀 저희가 열어봐도 될까요?”라고 물었다. 그는 답하기도 전에 이미 가방을 열고 옷가지 사이에 있던 반입금지품목인 가글(250ml)과 치약(120g), 로션(160ml)을 꺼내 들었다.

■ “규정상 액체류는 100ml 이상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이것들도 반입금지물품이에요. 액체류는 100ml 이상은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규정에 공지돼 있어요.”

“그런데 다 필요한 물건이라 가져가야 하는데…” 기자가 말끝을 흐리자 잠시 기자를 바라보던 보안검색요원이 말했다. “잠시 비행편명 좀 다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기자의 탑승권을 다시 확인한 그가 말했다. “(이 물품들은) 반입이 안 되세요. 여기 놓고 가시든지 도로 나가서 짐을 다시 부치셔야 돼요.” 물통에 이어 2차 실랑이가 벌어졌다. “놓고 가라고요? 그럼 나중에 귀국할 때 다시 찾을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반입 금지된 물품은 포기하시는 거예요. 가져가길 원하시면 나가서 가방을 미리 부치세요.”

“양치는 해야 하니 물통에 치약 조금만 짜서 가져가면 안돼요?” 보안검색요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것도 안 됩니다. 2시40분부터 탑승 시작인데 고객님의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물건 포기하시겠어요?” “그럼 로션은 얼마 쓰지도 않은 거라 아까운데 이것만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자 보안검색요원이 손으로 천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도 그러고 싶지만 규정상 안 되세요. (위를 가리키며) 그리고 여기 CCTV가 다 찍고 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보안검색요원이 재촉하기 시작했다. “나가서 짐 부치시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가져갈까요?”

“그럼 그냥 버려주세요.” 가글과 치약, 로션은 모두 보안검색요원 옆의 반투명 비닐봉지에 버려졌다.

검색을 마친 뒤 가방을 챙겨 법무부 심사대를 빠져나오자 시계는 2시50분을 가리켰다. 심사 전 취재 정리에 소요된 시간을 제외하고도 약 15분이 걸렸다.

■ 경향신문 : (2) 『ASQ 평가 대상 항공기 탑승자 검색 특혜 사실』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8일자 9면)

■ **내 용** :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공항서비스(ASQ) 평가에서 ‘8년 연속 1위’를 차지하게 된 이면에 ASQ 평가 대상 항공기 탑승 승객에게 특혜가 있었다는 지적(경향신문 9월14일자 14면 보도)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로 사실이 아니다” “일부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는 보안검색 요원들이 서비스를 잘하려는 마음에 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공항의 보안검색 용역업체 전직 직원들은 “모든 잘못을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용역업체 직원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현직 보안검색 요원들은 “국토교통부 등이 합동 조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보안검색과 관련된 언급을 피했다. 지난 15일 경향신문 인터뷰에 응한 용역업체 전직 직원 3명은 하나같이 “ASQ 평가가 진행되는 날에는 ASQ 평가 대상 항공기 탑승 승객들을 위한 보안검색대를 열고 ‘3·3’이란 은어로 이들을 구분한 뒤, 100ml 이상의 액체류를 그냥 통과시켜준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1년 동안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담당했던 ㄱ씨는 “사실 ASQ 편명 승객의 편의를 위해 보안검색대를 열면 5명의 인원이 그쪽으로 빠지고, 남은 인력만으로 일반 승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두 배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사시간도 짧아지고 휴무인 직원들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위에서 시키지 않았다면 우리가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ㄴ씨는 ASQ 편명에 탑승할 때 특혜를 준 승객을 얼마 뒤 일반 편명에서 다시 만나게 돼 당황했던 일화를 털어냈다. 공항을 자주 이용해 낮익은 승객이 ASQ 편명에 탑승할 때는 100ml가 넘는 액체류를 갖고 와도 그냥 통과시켜줬는데, 얼마 뒤 일반 편명 탑승자로 다시 왔을 때는 ‘안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ㄱ씨도 “간혹 일부 승객들이 텅텅 비어 있는 ASQ 쪽 보안검색대를 보고 ‘왜 저쪽은 비어 있는데 줄을 못 서게 하느냐, 저쪽으로 가겠다’고 할 때마다 난감했다”며 “일반 편명 승객들을 ASQ 평가 검색대로 보내면 혼나기 때문에 이리저리 둘러대 다른 보안검색대로 보내곤 했다”고 말했다.

ㄴ씨는 “예전에 한 ASQ 평가 대상 항공기 탑승 승객의 가방에서 반입금지물품이 나와 승강이를 벌이고 있는데, 보안업체 간부급인 부장이 와서 ‘우리 직원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하다’고 말한 뒤 그냥 통과시켜줬다”며 “그나마 계장·과장급 직원들이 간부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 종종 이의제기를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ㄷ씨는 ASQ 승객에 대한 특혜 관행이 계속돼온 이유에 대해 “공항공사가 ‘하늘’이라면 보안업체와 용역 직원은 ‘땅’”이라며 “직접적으로 ‘규정을 어기라’는 말은 하지 않았더라도 무언의 압박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 (3) 『[마감 후] 인천공항의 눈치와 억지』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7일자 30면)

■ **내 용** : 인천국제공항은 국제항공협회의가 주관하는 공항서비스(ASQ) 평가에서 2005년부터 작년까지 8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 전 세계 공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ASQ 평가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보안검색, 친절성, 신속성 등을 물어 그 결과를 반영한다.

현장 취재결과 ASQ 평가가 이뤄지는 항공기 승객과 그렇지 않은 일반 항공기 승객의 출국장 검색 강도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공항 직원들은 평가 대상이 되는 승객에겐 의뭉스미 눈치 보듯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100ml 이상 액체류도 무사통과시키는 등 과도함을 넘어 위법한 친절을 보였다. 반면 일반 항공기 승객에게는 액체류 반입을 철저히 불허했다. ASQ 평가 1위를 의식해 정작 승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항공보안에는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항공기 내 액체류 반입은 승객 안전을 위해 결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단 한번의 테러에도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9·11테러 이후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항공보안을 전담하는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정부 역시 9·11테러 직후 항공안전본부를 설치하는 등 보안 업무를 강화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후진적 보안검색이 낳을 수 있는 심각성을 점차 잊어가고 있는 것만 같다.

공사 측이 이번 보도를 전후해 보인 모습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보도 전 여러 차례 비보도 등을 요청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돌연 “기사가 나가면 소송을 하겠다”며 공격적 태도를 보였다. 기사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꺼낸 ‘소송 대응’ 카드는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전략적 봉쇄 소송의 의지로 비쳐졌다.

취재기자의 동선을 따라 공항 내 폐쇄회로TV를 샅샅이 뒤지고 반입금지 물품을 통과시킨 보안업체 직원 색출에 나섰다. 보안업체 직원들의 ‘ASQ 승객 눈치보기’가 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등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 개선하려 하기보다는 책임을 위탁업체에 떠넘기거나 최소화하려는 모습이 역력해 보였다. 보도 이후에는 송편을 뒤집어 팔떡이라고 우기는 꼴의 좀체 이해되지 않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100ml 액체류 휴대를 허용한 적이 없다. 특별한 예우를 하지 않는다. 공사는 일절 모르는 일이다”는 등 기사 내용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직 보안업체 직원들의 “ASQ 승객들은 반입금지 품목을 종종 허용한다”는 증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역지가 사촌보다 낫다고 차라리 취재기자들이 허깨비를 보고 헛것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해명자료를 내는 편이 나을 법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공사 측은 이 보도로 인천국제공항의 명예가 실추되고, 내년 초 시행 예정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인 인천공항 내 미국행 2차 보안검색 폐지 일정에 악영향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익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언론은 늘 고민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그 고민은 원칙과 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를 벗어난 국익과 명예는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만약 까다로운 보안검색으로 승객들의 불만이 늘어 ASQ 평가 1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그런 구차한 명예는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것이 진정한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뚝뚝하게 나아가는 길일 것이다.

인천공항을 관리·운영하는 공사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중 역대 연봉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파악됐다. 임직원의 14%가 역대 연봉을 받고 있다. 1인당 성과급 지급액 역시 평균 2134만 원으로 최고다. 돈 많이 받는 것을 탓하자는 게 아니고, 공항은 승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공사는 지난 6월 ASQ 평가 대상 수상식을 마친 뒤 보도자료에서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공항의 기본원칙은 ‘편리와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생명을 담보하는 항공보안 업무에서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은 실수나 착오가 아닌 범죄다. 공사는 세계 으뜸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국민들의 자부심에 큰 실망감을 안겼다는 사실도 간과 해선 안된다.

조정신청취지

1. 주위적 신청취지

가. 제 목 : (2013.9.14.자, 2013.9.18.자, 2013.9.27.자 조정대상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본지는 지난 2013.9.14.“인천공항‘서비스 평가 8연패’비결은‘특혜 보안검색’?”, 2013.9.18.“ASQ 평가 대상 항공시 탑승자 검색 특혜 사실”, 2013.9.27.“인천공항의 눈치와 억지”라는 각 제목의 기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순위를 위하여 ASQ 대상 항공편의 승객들에게 보안검색에 대한 특혜를 주었고, 위 특혜가 인천공항이 ASQ 평가에서 8년간 1위를 차지한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처럼 인식될 수 있도록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SQ 대상 승객을 위한 전용 검색대를 운영하는 등 보도내용과 같은 보안검색 특혜를 준 사실이 없고, ASQ 평가항목 중 보안검색은 보조지표의 일부에 불과하여 평가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러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관계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2. 예비적 신청취지

가. 제 목 : 2013.9.18.자 조정대상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나. 본 문 : 본지는 지난 2013.9.18.“ASQ 평가 대상 항공기 탑승자 검색 특혜 사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직 보안검색업체 직원 진술의 형태로, 인천국제공항사가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순위를 정하여 ASQ 대상 항공편의 승객들에게 보안검색에 대한 특혜를 준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의 합동조사 및 근무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ASQ평가 대상여객을 위한 별도의 전용 검색대를 운영하거나 반입금지 품목인 100㎖ 초과 액체류를 통과시킨 사실이 없고, 보

안검색업체 직원들이 ASQ평가 대상여객을‘일반 3·3’이라는 약어로 지칭하였다는 보도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 **경향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7일자)
- **내 용**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본지의 지난 9월18일자 ‘ASQ 평가대상 항공기 탑승자 검색 특혜 사실’ 보도에 대해 “ASQ 평가대상 승객을 위한 전용 검색대는 존재하지 않으며, 보안검색업체 직원들이 ASQ 평가대상 여객을 ‘일반 3·3’이라는 약어로 지칭하거나 반입 금지 품목인 100ml 초과 액체류를 통과시킨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 례 32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대표 발의한 ‘4대 중독법안’이 게임중독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게임업계에 떠넘기는 법안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1604 정정청구

신 청 인 : 신 의 진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앙게임즈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3. 11. 13.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새누리당이 게임을 마약, 알콜, 도박과 함께 중독물질로 보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게임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만화(카툰)와 함께 보도했다.
- 삽입된 만화(카툰)에는 법안을 대표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중독 치유기금’ 조성을 위해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매출의 5%를 걷겠다는 내용과 함께 법안이 게임중독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게임업계에 떠넘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관련 법안은 게임업계를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게임중독을 예방·치료하고 게임중독의 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게 임 특 :** 『[만화 4대 중독법] 술-도박-마약 그리고 게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1일자)

■ **내 용 :** 지난달 7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게임을 ‘마약, 알콜, 도박 등 4대 중독’에 포함하며 ‘4대 악’으로 규정한 교섭단체 발표 연설하면서 게임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10만 명에 달하는 게임 종사자들을 자존심이 깃뻛혔다며 반대서명 운동을 전개해 20만 명이 훌쩍 넘어섰다.

게임업계와 게임 유저들이 가장 큰 반발한 것은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마약 제조에 비유되고 개발자들을 중독유발 물질을 만드는 사람으로 인식될 있도록 ‘4대약’으로 혐오 산업 종사자’로 비유한 점.

실제로 정부는 술, 도박, 마약 등 중독 물질과 함께 게임을 특별 중독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하겠다고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입법을 예고했다. 당 대표가 연설에 내용을 포함돼 금번 국회 회기에서 법안 상정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는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하고 그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며 ‘꼰대적 발상’이라고 비판을 하고, 입법을 한 신의진 의원이 “규제”를 목적으로 만든 법이 아니다. 법적으로 처벌하는 처벌규정이 없다. 의사의 밥그릇 챙기기는 인신공격’이라며 반박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게임 산업과 시장 전체가 마약 등과 같이 4대중독법 이슈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업계는 K-IDEA를 중심으로 하는 보다 더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게임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행사 등에 대해 단체 보이콧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강도 높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독(中毒)

1. 생체가 음식물이나 약물의 독성에 의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일.
2.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3.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깊이 빠져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

※네이버 사전 발췌



4대 중독법

술, 도박, 마약 그리고 게임





4대 중독법이란?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으로
게임을 마약, 술,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로 규정
이를 국가에서
통합 관리한다는 내용

여성부에서 내세운 실효성 없는 **셋다운제**에



엇친데 덮친격으로 **중독법**까지~~



근본적인 원인은 파악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게임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게임톡(<http://gametoc.hankyung.com/>)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만화 4대 중독법] 술-도박-마약 그리고 게임' 보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나. 본 문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1월 11일자 칼럼면 초기화면에 '만화 4대 중독법] 술-도박-마약 그리고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카툰을 통해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중독 치유기금으로 매출 5%를 걷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과 모든 책임을 게임 업계에 떠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법안은 중독 치유기금으로 게임회사의 매출 5%를 걷는 등 책임을 게임업계에 떠넘기는 내용이 없으며, 또한 규제법이 아닌 기본법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중독예방법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나. 내 용 : 본보는 지난 11월 11일자 산업면에 ‘[만화 4대 중독법] 술-도박-마약 그리고 게임’이라는 제하의 카툰내용 중 ‘중독 치유기금’ 조성을 위해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매출의 5%를 걷는 내용이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포함된 것처럼 언급한 바 있으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은 “해당법안은 게임업계를 규제하거나 업계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의 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3년 11월 21일(목) 12:00부터 게임톡의 홈페이지(<http://gametoc.hankyung.com>)의 <뉴스>섹션 초기화면 좌측상단 기사목록 부분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24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http://gametoc.han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24>)의 본문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다만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피신청인이 위 제2항 및 제3항과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피신청인이 위 제2항 및 제3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6. 피신청인이 위 제2항 및 제3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013. 11. 19.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게 임 톡 :** 『중독예방법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1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33

신청인 학교가 일반전형에서 떨어진 학생들 중 부유층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 전·편입학 전형에 지원하라고 권유했으며, 신청인 학교의 일부 교사가 사교육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1607, 2013서울조정1614(병합)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피신청인 : 주식회사 인터넷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3. 11. 13. (2013서울조정1607)

2013. 11. 14. (2013서울조정1614)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 고등학교가 일반전형에서 떨어진 부유층 자녀들에게 전·편입학 전형지원을 하도록 전화를 돌렸으며, 영어과 교사 등 일부 교사가 영작평가를 담당한 사교육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보도된 내용 모두가 사실무근이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인터넷 한국일보 :** (1) 『○○○○고 전·편입학 부정… 교육 당국은 무덤덤』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3일자)

■ **내 용 :** 올해 서울대에 45명을 입학시켜 자율형 사립고 중 가장 많은 수를 배출한 ○○○○○고가 전·편입학과 특례전형에서 부적격자를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교육 당국은 허술한 감사와 숨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12일 유기홍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고는 2011~2013학년도 정원 외 전·편입생 28명 중 24명을 선발 지침을 어기고 선발했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입학정원(350명)의 3% 내에서 뽑을 수 있도록 한 정원 외 선발을 통해 학기 초 전·편입학한 이들이다. 하지만 원서 접수시점에 ○○시에 거주하도록 돼 있는 지침을 어기고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만 옮기거나 원서 접수 후 ○○시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에 신입생 선발전형에서는 특례입학대상자 등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지만 거의 합격자를 내지 않고 전 편입학에서 28명이나 정원 외로 선발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일반전형에서 떨어진 학생들의 집안 형편을 살펴 부유층 자녀들에게 전 편입학 전형에 지원하라고 전화를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사, 변호사 등 부유층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위한 통로로 전·편입학이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는 타 지역의 고교 입학예정자 중 ○○시로 이전한 이들을 주로 1학기 전편입학 대상으로 공고해 서울 강남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7월 전국 75개 특목고와 자사고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장과 입학관리부장 등 전편입학 책임자들에게 ‘경고’ 처분을 요구하는 데 그쳤다. 경고만 받아도 진급이나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경고는 영향력 없는 징계일 뿐이다. 또한 부유층 자녀를 편법으로 편입학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도교육청은 “감사관실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만 밝혔다.

그런데도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에서 ○○○고에 대한 지적사항은 전혀 없었다”고 밝혀 감사와 처분이 엉터리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도교육청이 ○○○고를 감사해 문제가 드러났지만 교육부가 지적사항 하나 없다고 발표한 것은 감사가 보여주기가 싫었다는 방증”이라며 “철저히 재조사해 관계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부정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는 2012학년도 특례입학 전형에서도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사실이 5~6월 감사원의 민생비리 특별점검에서 드러났다. 정원 외로 뽑는 특례입학은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외국에 거주했거나 탈북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감사원이 적발한 학생은 초5~중3 동안 부모 없이 미국 학교를 다닌 소위 미인정 유학자였다.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도교육청은 “국정감사와 행정감사 탓에 바꿨다”며 아직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고 측은 “전·편입학 지원을 위한 독려전화를 돌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 **인터넷 한국일보** : (2) 『사교육업체에 평가 맡겨 성적 반영한 ○○○고』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4일자)

■ **내 용** : 편입학 관련 부정 의혹이 제기된 ○○○고(본보 11월 13일자 10면)가 성적관리도 제멋대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고는 2005년 개교한 이래 올해 1학기까지 영어 과목 수행평가에 사교육업체의 영어 작문 평가를 반영했다. ○○○고는 학기마다 6~7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자비(작문 1편당 1만 원정도) 부담으로 사교육업체에 영어 작문을 제출케 하고 작문 제출 편수를 영어 성적에 5점을 반영했다.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학교가 학기 초 등록금 고지서에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걷어 학교회계에 편입시킨 후 지불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영어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의 작문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 여기고 업체에 맡겼다”고 말했다.

일부 학교 관계자들은 이 사교육업체가 영어과 교사 일부와 관리자급 교사들에게 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올해 7월 도교육청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올 2학기부터 평가 항목에서 제외했다. ○○○고 관계자는 “해당 교사 어느 누구도 사교육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고는 또 해외 대학 진출을 위해 한 학년당 3반으로 구성된 국제반 학생들의 영어 성적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한 반 평균 95점 정도가 나와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수’를 몇 %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외 대학 진학을 목표로 삼고 있는 국제반 학생들은 영어 실력이 우수해 성적이 대체로 높았다”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변별력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인터넷 한국일보(<http://news.hankooki.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1)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 (1)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 (1)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11. 13.자 인터넷한국일보)

2. 피신청인은 인터넷 한국일보(<http://news.hankooki.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2)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 (2)가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 (2)를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11. 14.자 인터넷한국일보)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가. 제 목 : “○○○고 전·편입학 부정… 교육 당국은 무덤덤”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11월 13일자 사회면에 ‘○○○고 전·편입학 부정…교육 당국은 무덤덤’이라는 제목으로 이 학교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학교 측에서 일반 전형에서 떨어진 학생들의 집안 형편을 살펴 부유층 자녀들에게 전편입학 전형에 지원 하라고 전화를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사, 변호사 등 부유층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위한 통로로 전편입학이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에 확인한 결과, 학교에서 아무도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고 전편입학 업무 담당자 및 그 책임자인 학교관계자(관련실무자, 부장, 교감, 학교장) 또한 그와 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

가. 제 목 : ‘사교육업체에 평가 맡겨 성적 반영한 ○○○고’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11월 14일자 사회면에 ‘사교육업체에 평가 맡겨 성적 반영한 ○○○고’ 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 중에서 “일부 학교 관계자들은 이 사교육 업체가 영어과 교사 일부와 관리자급 교사들에게 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에 확인한 결과, 학교에서는 기사내용과 같이 영어과 교사 일부와 관리자급 교사들이 해당업체로부터 상품권 등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일부 학교 관계자들은” 이라고 기사의 출처를 명시하고 있으나 학교관계자 누구도 그와 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어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고” 관련 반론보도

나. 내 용 : 본 인터넷신문 지난 11월 13일자 사회면 ○○○고 전·편입학 부정 기사와 관련해 ○○○고는 전편입학 지원을 위한 독려 전화를 돌린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4일자 “일부 교사 금품 수수” 의혹 기사와 관련해 ○○○고는 해당 교사 어느 누구도 사교육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3년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한국일보> 홈페이지 사회면에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지면보도에 대해서도 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2013. 11. 2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인터넷 한국일보 : 『‘○○○고’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8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34

국립현대미술관이 청와대의 압력으로 특정 화백들의 작품을 서울관 개관전에서 제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1733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립현대미술관

피신청인 : 주식회사 참언론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3. 12. 05.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전에 전시될 예정이던 특정 화백들의 작품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제외되었으며, 이 사실을 전시회 기획자가 당사자인 모 화백 측에게 알려주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특정 화백들의 작품이 전시되지 않은 것은 전시회 기획자의 판단이었을 뿐 청와대의 압력은 없었으며, 관련 사실을 당사자인 모 화백 측에 확인해 준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시사 IN : 『‘시대정신’ 속 빠진 시대정신 전시회』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30일자 60~62면)

■ 내 용 : 문제가 된 작품은 임○○ 화백이 그린 고 문익환 목사 그림이었다.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이름의 이 그림은 분단의 장벽을 넘어서는 문 목사를 종이 부조로 표현한 것으로 임○○ 특유의 부감과 입체감을 살린 작품이다. 함께 문제가 된 또 다른 작품은 1980년대의 암울한 시대를 인물들의 일그러진 얼굴로 나타낸 이○○ 화백의 ‘생각의 기록’이다. 사람들 표정이 마치 고문을 당하는 듯해서 마음이 편치 않은 작품이다.

11월 12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전에서 전시될 예정이던 이 두 작품이 제외되자 임○○ 화백이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과는 이랬다. 11월 12일 개관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해서 11월 7일 오후 청와대 직원들이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했다. 그런데 이후 자신의 작품을 비롯한 몇몇 작품이 전시에서 제외되었다는 것. 임 화백은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제외되었다는 사과를 기획자로부터 받았으며 이를 폭로했다.

기획자인 정○○ 서울대 교수는 “애초에 외압이라는 말 자체를 꺼낸 적이 없다. 전시장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온 줄도 몰랐고 그들과 말을 섞은 적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최○○ 학예연구1실장은 “청와대 직원들이 미술관을 사전 방문한 것은 맞지만 안전 점검을 위한 것이고 작품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며 오보라고 주장했다.

진실은 무엇일까? 서울관 내부 근무자를 통해 임○○ 화백의 작품과 이○○ 화백의 작품이 전시관에 이미 걸렸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서울관 개관전만 2년을 준비했다고 말한 바 있다. 2년을 준비한 개관전 작품이 청와대 직원이 방문하고 나서 하루 이틀 사이에 바뀌었다는 얘기다. 문제를 제기한 임○○ 화백은 외압을 파악한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다. “바로 내 앞에서 청와대의 압력을 중계방송했다. 나와 전시 관련 논의를 하던 담당자가 전화를 받으며 ‘그게 정말이야? 청와대가? 말이 돼? 몇 점이나 빼라는 거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정○○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중략)

전시된 작품들은 공통점이 있다. 치열한 1980년대에 현장에 있지 않고 유학을 갔던 작가들의 작품이 많다.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나온 현대사의 시대정신이 아니라, 예술을 통제하려는 박근혜 시대의 시대정신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임○○ 화백은 “이번 일을 당하면서 1980년과 2013년 사이가 통째로 다 사라져버린 느낌이 들었다. 그냥 1980년대의 연장선에서 계속 살고 있는 기분이다. 앞으로 허투루 살면 안 되겠구나, 다시 긴장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시사IN> 60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인 “시대정신 속 빠진 시대정신 전시회”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전시회 청와대 외압설’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나. 본 문 : 본 잡지는 지난 11월 30일자 문화면 60면 내지 61면에 걸쳐 “시대정신 속 빠진 시대정신 전시회”라는 제목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전시회에서 임○○ 화백과 이○○ 화백의 작품이 제외되면서 청와대 외압설이 불거지고 있다. 취재과정에서 신○○ 화백의 작품도 개막 직전에 빠진 것을 확인했다”라는 부제목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전에서 전시될 예정이던 임○○ 화백과 이○○ 화백 등의 작품이 2013년 1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제외되었으며 이를 전시회의 기획자인 정○○ 교수가 임○○ 화백에게 직접 확인을 해 주었다는 임○○ 화백의 주장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임○○ 화백의 주장과는 달리 임○○ 화백의 작품인 <하나됨을 위하여>가 전시되지 않은 것은 기획자인 정○○ 교수가 본인의 판단으로 전체 구성을 고려하여 전시확정작이 아닌 전시에정작이었던 임○○ 화백의 작품을 제외한 것 뿐이고, 임○○ 화백의 주장과같이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거나 정○○ 교수가 임○○ 화백에게 청와대의 압력 행사를 확인해 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국립현대미술관 개관전, 청와대 외압설’ 관련 반론보도

나. 본 문 : 〈시사IN〉은 지난 11월 30일자(제324호) 60~62면 ‘시대정신 속 빠진 시대정신 전시회’ 기사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전에 전시될 예정이던 일부 화백 등의 작품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제외된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립현대미술관은 “청와대로부터 일부 화백의 작품을 제외하라는 내용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전시회의 전체 구성을 고려하여 자율적 판단 결정한 것이다” 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시사IN’ 2013년 12월 28일자(제328호) ‘여기는’ (오피니언면)에 보도하되, 제목의 글자크기는 2013년 11월 30일자 9면 우측「정기구독 주소변경 배달 사고 문의는」의 글자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의 글자는 통상의 기사의 본문글자크기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제1항~제2항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피신청인이 위 제1항~제2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12. 13.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시사 IN : 『‘국립현대미술관 개관전, 청와대 외압설’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8일자 9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 례 35

젊은 세대의 新소비풍속도를 전하면서, 신청인들이 월세를 살면서 빚을 내어 벤츠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1766 · 1767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1. 최○○, 2. 이○○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3. 12. 18.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본인들의 소득 수준을 넘는 외제차를 구입하여 빚더미에 앉게 되는 ‘카푸어족’ 세태를 보도하면서 모자이크 처리한 신청인들의 초상을 방송에 내 보냈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당초 피신청인으로부터 요즘 젊은 소비자들의 변화된 소비 트렌드에 대해 보도를 한다고 들었고 부정적인 기사도 아니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을 믿고 취재에 응했는데, 실제 방영 내용은 이와 달라서 초상권 승낙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고, 신청인들이 월세 세입자 이고 ‘유예할부’로 수입차를 구입했다는 방송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 및 각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게재함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각 2,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 이후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는 집을 살 수 없는 젊은이들이 좋은 차를 사는 새로운 트렌드를 보도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혔고, 신청인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으며, 신청인들의 불만을 고려해 신청인 홈페이지에서도 기사를 삭제하는 이외에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에도 연락을 취해 기사를 삭제하는 등 충분한 사후 조치를 취하였다고 반박하며 이익을 신청했다.

조정대상보도

-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新풍속도.. 월세살며 벤츠타다』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30일자 19:55)
- **내 용** : ▷ 앵커 :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수입차 구매 고객의 절반 가량이 20~30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월세 수십만 원짜리 원룸에 살면서 5천만 원이 넘는 고급차를 타는 사람들을 흔히 ‘카푸어족’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젊은층에서 ‘카푸어족’들이 늘고 있는 이유 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 기자 : 보증금 5백만 원에 월세 5십만 원이면 방을 구할 수 있는 경기도의 원룸촌. 한집 건너 한집 꼴로 수입차가 서 있습니다. 연봉 4천만 원대의 직장인 김 모 씨도 5천만 원 넘는 벤츠 C클래스를 탑니다.
▷ 인터뷰(김 모 씨/30세) : “지금 행복해야 나중에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차를) 할부로 구입했죠...”



- ▷ 기자 : 수입차를 타는 연령층은 꾸준히 낮아져 수입차를 산 사람의 절반 가량이 2~30대 젊은 층입니다.
- ▷ 인터뷰(이 모 씨/29세) : “개성을 중시하기도 하고 자기 표현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 기자 : 특히 차 값의 70%까지는 3년 뒤에 내는 ‘유예할부’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수입차 갖기는 더 쉬워졌습니다.

▷ 인터뷰(이○○/○○○○ 영업팀장) : “유예할부가 당장은 부담은 안돼서 조금 더 좋은 수입차를 탈 수 있다는 장점...”

▷ 기자 : 문제는 무리해 비싼 차를 샀다 빚더미에 앉는 이른바 ‘카푸어’족. 할부기간이 끝나도 차값을 못갚아 경매로 팔리는 수입차가 2008년 78대에서 2012년 400대로 급증했습니다.

▷ 인터뷰(곽○○/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 “20~30대는 굉장히 혜택을 받을 세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 미래를 위해서 저축한다든지 이러한 것보다 지금 당장의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를 하게 되고...”

▷ 기자 : 40~50대 하우스푸어와 30~40대 렌트 푸어가 집 때문에 빚을 졌다면 20~30대는 차 사느라 빚을 지고 있습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MBC-TV <8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벤츠 카푸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나.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11월 30일 MBC뉴스프로그램에서 “20-30대 젊은 소비자들, 소비트렌드가 바뀌다”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방송 당시 사전예고 없이 “新풍속도.. 월세살며 벤츠탄다”라는 주제로 바꾸어 보도하여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월세에 살며 유예리스로 빚을 지며 힘겹게 벤츠(수입차)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사실을 확인한 결과, 보도 인터뷰 당사자들은 월세를 살지도 않을뿐더러 유예리스 상품을 이용하지 않음이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실제 인터뷰 주제 및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보도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각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확정 전 이행도 가능)에 MBC-TV의 <8시 뉴스 데스크> 프로그램 말미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하단에 <별지>의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별지>의 내용은 프로그램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 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행을 지체한 날부터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신청인에게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확정 전 이행도 가능)에 신청인 최○○에게 2,000,000원을, 신청인 이○○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이 유

중재부는 신청인의 청구취지, 신청인의 주장 및 소명자료의 수준, 피신청인 매체의 성격과 영향력, 피신청인이 조정대상보도를 방송하게 된 경위, 조정 대상보도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 그리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조정심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별지〉

1. 제 목 : 〈카푸어 보도 관련〉 반론보도

2. 본 문 : MBC는 2013년 11월 30일 〈8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카푸어족’ 관련 방송을 보도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월세를 살면서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녀 빗더미에 앉는 ‘카푸어족’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에 사례로 나온 인터뷰 당사자들은 카푸어족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3. 01. 20.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 례 36

절도사건의 피해자인 신청인의 초상, 성명 등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48 손배청구

신 청 인 : 빗○○○ ○○○○

피신청인 : (주)케이엠에이치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3. 01. 16.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절도의 피해자인 신청인의 얼굴, 목소리, 이름, 국적, 사는 집 등을 방송에 모두 공개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범죄용의자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처리, 음성변조 등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갖추었으면서도 정작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호 없이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1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5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함과 더불어 조정대상보도(사냥꾼 이대우 1회, 9회)가 방송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조정대상보도의 저작자인 CJ E&M(주)이 향후 해당 보도를 방송 또는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내용(경위 포함)을 담은 공식 문서를 신청인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디원 TV :** (1) 사냥꾼 이대우 프로그램 『1화 - 고독한 추적』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24일자 19:30)
- **내 용 :** ▷ 내레이션 : 고시원에 사는 이탈리아 여성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다.



- ▷ 경찰 1 : 문을 열어놔었어?
- ▷ 경찰 2 : 시정을 안해 놔드립니다.
- ▷ 내레이션 : 외국인 아가씨가 전 재산인 노트북을 도난당해 버렸다.



- ▷ 경찰 2 : How old are u?
- ▷ 신청인 : 스물한살
- ▷ 내레이션 : 도둑 맞은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이수라장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랐을까?
(신청인 방을 비추며) 놀란 가슴을 달래주는 건 막내 경호 몫이다.



▷ 경찰 2 : 바로 해야지 신고를.... 어제 밤에 라스트 나이트 바로 신고 해야지



▷ 신청인 : 근데 저는 전화번호 몰랐어요 , 그 남자 아래 통화 했어요 이야기 했어요

▷ 경찰 2 : 관리자한테? 매니저한테?

▷ 신청인 : 네 근데 그..



▷ 경찰 2 : 답에 혹시 뭐 하면은, 일 있으면 일 생기면 112로 해요 전화.

▷ 신청인 : 네 지금 알았어요

▷ 내레이션 : 지문이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 경찰 3 : 지문은 없어요

▷ 경찰 2 : 없어, 핑거프린터 없어

▷ 신청인 : 아, 죽겠다..

▷ 경찰 1 : 문 시정하고요 같이 가야죠 저희하고

▷ 신청인 : 어디?

▷ 경찰 1 : 경찰서

▷ 신청인 : 네... 많이(오래) 걸릴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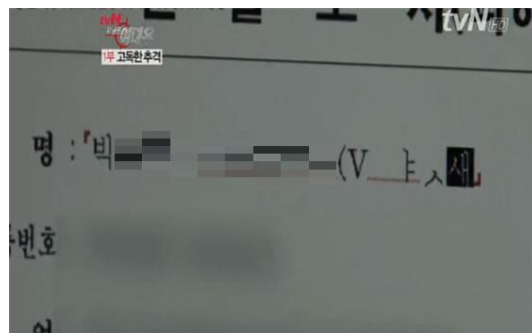
▷ 경찰 1 : 아니요 또 모셔다 드릴 테니까 나오세요 문 잠그고
(경찰서 안)



▷ 내레이션 : (통역을 부를 만한 상황도 아니고 아가씨가 한국말을 알아듣긴 하니 되는 대로 조서를 써보기로 했는데

▷ 경찰(빨간옷) : 빅○○○○ ○..○...○...

(신청인 성명이 화면에 그대로 다나옴)



▷ 내레이션 : 쉽지 않은 모양이다 일단 영어자판 치는 것만으로도 힘겨워 보인다.

▷ 경찰 :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잉?

▷ 신청인 : (신청인 얼굴화면 ZOOM UP하면서) 1월? 2월? 경찰? 경찰에 갔어요.

(신청인 얼굴을 경찰얼굴과 함께 크게 띄우며)



- ▷ 내레이션 : 물어보는 사람도 속이타고 무슨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더 속이 타고 답답한 상황을 경호가 부드럽게 넘겨준다
- ▷ 경찰(경호) :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 ▷ 신청인 : 컴퓨터 없어요...저는 컴퓨터로 매일매일 이야기 했어요
- ▷ 경찰(경호) : 엄마랑?
- ▷ 신청인 : 네 엄마랑 남동생이랑
- ▷ 신청인 : 한국사람...
- ▷ 내레이션 :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엄마 동생 얼굴도 보고 얘기도 하던 노트북을 도둑 맞았으니 오죽 속이 상할까?
- ▷ 경찰(경호) : 도둑 물건 훔쳐간 사람 잡는데 잡아줄게요
- ▷ 신청인 : 진짜요?
- ▷ 경찰(경호) : 하이튼, 잡는, 범인, 도둑놈,
- ▷ 나레이션 : 어떻게든 해결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다. 팀원들도 똑 같은 마음 일꺼다.

- **디원 TV** : (2) 사냥꾼 이대우 프로그램 『9화』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24일자 20:25)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년 2월 8일까지 금 5,5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향후 피신청인은 원 조정대상보도(사냥꾼 이대우 1회, 9회)가 방송되지 않도록 한다.
3. CJ E&M(주)은 해당 원 조정대상보도(사냥꾼 이대우 1회, 9회)가 향후 방송 또는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내용(경위 포함)을 담은 공식 문서를 신청인에게 2월 8일까지 전달하도록 한다.
4. 신청인 및 신청인 대리인은 향후 본 보도(사냥꾼 이대우 1회, 9회)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CJ E&M(주)과 그들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1. 28.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5,500,000원 지급

사 례 37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범죄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들의 사진을 자료 화면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78·79, 2013서울조정80·81(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황○○ 외 3인,

2. 김○○ 외 4인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2.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3. 01. 29.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범죄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모델하우스에서 근무 중인 신청인들의 모습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보도내용과 무관한 본인들의 모습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내 개인의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생업인 분업업무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총 1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신청인 1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각 7,000,000원, 5,000,000원, 3,000,000원, 3,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했으며(조정성립사항 1. 참조), 신청인 2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조정성립사항 2. 참조).

조정대상보도 1

- **SBS-TV** : SBS 생활경제 프로그램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24일자 11:00)
- **내 용** : ▷ 진행자 : 기획부동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토지를 거짓으로 분양해서 폭리를 취하는 사기업체 인데요. 갈수록 그 방식이 교묘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기획부동산은 주로 임야 등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등기도 하지 않고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토지를 팔아넘기거나 소유주로부터 사용 승낙이나 임대만 받아 부동산을 팔고 도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략)

▷ 진행자 : 일부 기획부동산은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조건을 제시해 사람을 고용한 후에 고용된 사람이 토지를 구입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다단계 판매 유형으로 투자자들을 모으고 또한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수익률을 허위로 내세우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임의로 유용하거나 잠적하는 등 펀드식 투자자 모집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경화면에 신청인들 등장]



(후략)

조정대상보도 2

- **SBSi** :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4일자)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SBS-TV 〈SBS 생활경제〉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2. 피신청인은 SBSi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제목 : 본 방송은 지난 1월 24일 ‘SBS 생활경제’에서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방송하면서 ○○ ○○○○○ ○○○ 모델하우스의 팀장 및 직원들이 상담하고 있는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팀장과 직원들은 해당 방송 내용인 기획부동산 사기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들에게

황○○ : 60,000,000원

홍○○, 양○○, 신○○ : 40,000,000원

김○○, 김△△, 최○○, 황○○, 정○○ : 20,000,000원을

각각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1. 보도문

가. 제 목 :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본 방송 지난 1월 24일자 SBS생활경제 프로그램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제하의 보도에서 사용한 ○○ ○○○○○○ ○○○ 모델하우스의 팀장 및 직원들의 근무 모습은 해당 기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는 제1항의 보도문을 2013년 2월 22일까지 〈SBS 생활경제〉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의 멘트로 보도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한다.
3.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들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들 각자에게 2013년 2월 27일까지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성 명	금 액
신청인 황○○	7,000,000원
신청인 홍○○	5,000,000원
신청인 신○○	3,000,000원
신청인 양○○	3,000,000원

5. 신청인들은 향후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들과 그들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2. 13.

조정성립사항 2

1. 보도문

가. 제 목 :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본 방송 지난 1월 24일자 SBS생활경제 프로그램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제하의 보도에서 사용한 ○○ ○○○○○○ ○○○ 모델하우스의 팀장 및 직원들의 근무 모습은 해당 기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는 제1항의 보도문을 2013년 2월 22일까지 <SBS 생활경제>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의 멘트로 보도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한다.

3.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들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피신청인들이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5. 신청인들은 향후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들과 그들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2. 13.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1

■ **SBS-TV** : SBS 생활경제 프로그램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9일자 11:20)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1, 2 참조>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2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금 각 7,000,000원, 5,000,000원, 3,000,000원, 3,000,000원 지급

사 례 38

온라인 도박 중독 피해를 보도하면서 동의 없이 신청인의 초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413, 2013서울조정414(병합) 각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3. 03. 27.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온라인 도박 중독 피해를 보도하면서 모자이크 처리 없이 신청인의 초상을 게재하고 신청인이 기초수급자 대상자이며 폐결핵을 앓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최대한 초상권을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피신청인의 촬영에 응했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얼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실어, 신청인이 도박에 중독되어 있고 기초수급자인 사실이 주변인들에게 알려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사진 데이터베이스에서 신청인의 사진을 모두 삭제함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2,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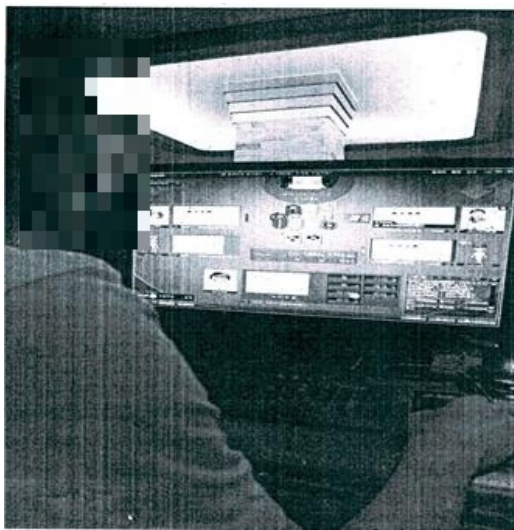
조정대상보도 1

■ **중앙Sunday** : 『게임머니 환전 ‘머니상’에 걸리면 도박 폐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7일자 8면)

■ **내 용** : 게임머니 환전 ‘머니상’에 걸리면 도박 폐인

#1. “빚이 5억 원입니다.” 김 모(45) 씨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탁했다. 직장을 잃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된 것도 모자라 폐결핵까지 걸렸다. 어두운 PC 방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줄담배를 피웠기 때문이라. 최근에는 뇌종양까지 생겨 전전긍긍하고 있다. 김씨는 “웹보드 게임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고 한탄했다. 처음 시작한 건 14년 전. 누구나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재미 삼아 하던 고스톱·포커 게임이었다. 하지만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상을 만나며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환전상을 알고부터 게임머니가 곧 현금이 됐고 게임이 직업이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게임용 아바타 환불 건으로 NHN·한게임을 상대로 소송을 건 상태다. 4월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중략)

게임회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게임 홍보 담당 황○○ 과장은 “게임회사들도 불법환전상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입장”이라며 “다양한 근절 대책을 세워 꾸준히 실천하고 있지만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고액 베팅 금지 등 문화부 지침 이행 ▶불법환전 신고센터 등 업계 공동 대응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한 자체 프로그램 운영 등 대책을 시행 중이다.

단속의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불법 환전상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시로 바꿔 수사상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가 아닌 합법 게임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조정대상보도 2

- 인터넷 중앙Sunday : 『게임머니 환전 ‘머니상’에 걸리면 도박 폐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7일자)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사진 데이터베이스에서 신청인의 사진을 모두 삭제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년 4월 12일까지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그들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4. 08.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사 례 39

신청인의 촬영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고속도로 직원으로 근무하는 신청인의 초상과 성명을 임의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465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이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3. 04. 10.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 인상에 대한 기사에서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신청인의 초상 및 이름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촬영 당시 명백하게 촬영 거부의사를 밝혔고, 이에 피신청인이 요금표만 찍겠다는 약속을 한 후, 이를 어기고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청인은 전 남편의 폭력 성향이 심하여 신청인의 취업 및 근무지를 전 남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으나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신문에 신청인의 초상과 이름이 여과 없이 보도되어 피해가 크다면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이투데이 :**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 인상』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7일자)
- **내 용 :**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330원 인상된 27일 오전 신공항 톨게이트의 요금소에 가격 조정을 알리는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 인천대교 등 전국 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노선별로 100~4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년 4월 30일까지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향후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그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만·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4. 2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사 례 40

영화 홍보 차 내한한 미국 영화배우 월 스미스와 사진을 찍고 있던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592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주)파이미디어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3. 05. 13.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미국 영화배우 월 스미스의 내한 행사를 보도하며 팬으로서 함께 사진을 촬영하던 신청인의 초상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공공의 이익과 전혀 관련 없는 개인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무단으로 보도하여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했다.

조정대상보도

- **티비리포트** : 『월 스미스 ‘아리따운 여성팬과 셀카를~’』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7일자)
- **내 용** : 할리우드 배우 월 스미스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외화 ‘애프터 어스’(M. 나이트 샤말란 감독) 공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팬들과 만남을 갖고 있다.

월 스미스, 제이든 스미스 부자가 출연하는 ‘애프터 어스’는 3072년 인류에게 버림받아 황폐해진 지구에 불시착한 아버지와 아들이 공격적으로 진화한 생명체들에 맞서 생존이 걸린 극한의 대결을 펼치는 이야기로 오는 30일 전 세계 최초 개봉한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년 6월 5일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향후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5. 2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000,000원 지급

사 례 41

촬영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팔빙수를 먹고 있는 신청인들의 초상을 임의로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부산조정53 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외 2인

피신청인 : 제이씨엔을산중앙방송주식회사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13. 08. 19.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지역 맛집을 소개하면서 신청인들이 팔빙수를 먹는 장면을 방영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촬영 당시 명시적으로 촬영을 거부하였고, 특히 신청인1의 경우 눈 성형 수술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주변인들을 만나지 않고 있었는데 이 방송으로 인해 주변에서 수술 부작용이 있느냐는 이야기를 듣는 등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여 각 1,5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 1에게 700,000원, 신청인 2와 신청인 3에게 각 3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 **JCN 울산중앙방송 :** 김PD의 맛짱 프로그램 『팔빙수편』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18일자 17:29) (2013년 7월 18일자 10:28)
- **내 용 :** (내용 생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 1, 신청인 2, 신청인 3에게 각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2013. 8. 31.까지 신청인 1에게 금 700,000원, 신청인 2 및 3에게 각 금 3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각 지급한다.
2.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만·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8. 26.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신청인 1에게 손해배상금 700,000원, 신청인 2와 신청인 3에게 손해배상금 각 300,000원 지급

사 례 42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행에 관해 보도하면서 마트에서 시식 중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강원조정20 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삼척문화방송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13. 10. 24.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동해시 관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 예고에 관해 보도하면서 마트에서 시식 중인 신청인의 모습을 방영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촬영 당시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이후 다른 내용 보도 시에도 신청인의 초상이 담긴 영상을 여러 차례 재사용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1,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조정대상보도를 포함하여 신청인이 보도된 영상 일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며, 향후 재방송 및 인터넷 VOD영상에도 방송되지 않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삼척MBC-TV :** MBC 뉴스데스크(삼척) 프로그램 『대형마트 영업제한 행정예고, 다음달 시행 예정』 제하의 보도 (2013년 9월 9일자 20:40)
- **내 용 :** 강원도가 대형마트의 영업규제와 관련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도내 18개 시군에 전달했습니다.

표준 조례안은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가 점포가 의무휴업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세무 당국이 발행한 농수산물 매출 증명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동안 농산품의 범위 내 매출액 비중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발생했던 논란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원의 지적을 반영해, 둘째와 넷째주로 못 박았던 의무휴업일을 대형마트와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원도는 빠르면 다음 달 중 각 시군의 조례가 재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삼척문화방송(삼척MBC-TV)은 신청인에게 2013년 11월 30일까지 5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2013년 11월 8일까지 조정대상방송을 포함하여 신청인이 보도된 영상 일체를 데이터 베이스에서 삭제하고, 향후 재방송 및 인터넷 VOD 영상에도 방송되지 않도록 한다.
3. 제1항 내지 제2항을 피신청인이 이행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11. 0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500,000원 지급

사 례 43

소아암 치료법에 관해 보도하면서 환자인 신청인 자녀 및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1728 손배청구

신 청 인 : 천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채널에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3. 12. 04.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소아암에 양성자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양성자 치료를 받고 있는 신청인의 자녀 사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가족의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촬영 당시 초상을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위 보도로 인해 피신청인으로부터 금전상의 이득을 얻은 것이 없음에도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촬영에 응했다는 주변의 오해도 받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해당 방송을 여러 차례 재방송하고 타 방송사에 이를 재판매 하기도 하여 이 내용이 확산된 피해를 입었다며 6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채널 A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조정대상방송에서 신청인과 신청인 가족 방송 부분을 삭제하고, 해당 프로그램 다시 보기 화면에 일정한 안내 문구를 게시하며, 해당 프로그램이 게시된 다음과 네이버 사이트 관리자에게 해당 방송분이 게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향후 신청인이 조정대상 프로그램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었다고 통지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경우 피신청인이 배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채널 A : 이영돈PD, 논리로 풀다 프로그램 『9회 - 암 4부』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21일자 21:50, 7월 25일자 00:10, 7월 27일자 11:20, 7월 30일자 02:20, 8월 2일자 13:00)
- 내 용 : (방송 내용 생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기한은 2014년 1월 22일로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채널 A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조정대상방송에서 신청인과 신청인 가족 방송 부분을 삭제하고, 해당 프로그램 다시 보기 화면에 ‘초상권 침해 문제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제기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였으므로 불법으로 다운받아 배포할 시 법적 책임을 물겠다’는 취지의 안내 문구를 게시하며, 해당 프로그램이 게시된 다음과 네이버 사이트 관리자에게 해당 방송분이 게시되지 않도록 2014년 1월 20일까지 조치를 완료한다. 또한 향후 신청인이 조정대상 프로그램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었다고 통지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경우 그 통지나 삭제를 요청받은 때로부터 1주일 이내에 피신청인은 배포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
4. 피신청인이 위 3항 전단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일 100만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5.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금전적 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01. 08.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5,000,000원 지급

제 3 장 : 음성권 침해 사례

사 례 44

시중에 판매되는 원액기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쇼호스트인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무단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1, 2013서울조정2(병합) 각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2. 주식회사 아이엠비씨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3. 01. 04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원액기로 짠 주스의 영양소가 낮다는 취지의 방송에서 원액기를 판매한 쇼호스트인 신청인의 음성과 초상을 방영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음성과 초상권 이용에 승낙한 사실이 없고, 음성 변조나 모자이크 처리 등도 되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이 방송으로 인해 왜곡된 판매 방송을 하는 쇼호스트로 인식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iMBC의 조정대상 보도 동영상 중 신청인(초상 및 음성)이 나와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향후 이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신청인에게 해당 방송과 관련,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당사간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1

■ **MBC-TV** : 불만제로 UP 프로그램 『[5회] 고소한 실험 - 원액기 열풍 속에서 현명하게 살아남는 법』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8일자 20:50)

■ **내 용** : (전략)

▷ 음성 (00:36:13~00:36:18)

“그 안에 노란색 정말 보라색 영양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짜주는 거예요.”

▷ 음성 (00:36:23)

“네”

▷ 손, 얼굴 노출 (00:36:26~00:36:30)

석류 씨를 들고 있는 신청인 오른쪽 손. 이어서, 모자이크처리 없이 인식 가능한 얼굴 부분만 살짝 초점이 흐릿한 채로 신청인이 석류원액을 마시는 모습

▷ 얼굴만 흐릿하게 상반신 움직임 전체 노출 (00:42:56~00:42:58)

▷ 음성, 손, 상반신 움직임 노출 (00:46:43~00:46:56)

“이게 여러분 실처럼 찌꺼기가 실 됐어요. 바느질 하겠어요. 이 껌질에 이 실 보이세요? 이걸 소화 안 되는 거 잿아요? 이걸 소화 안 되는 거 잿아요? (반복사용)
이것만 버리고 나머지 앞으로 다 잿어요. 한 잔을 신선하게“

(후략)

조정대상보도 2

- **IMBC** : 『[다시보기] 고소한 실험 - 원액기 열풍 속에서 현명하게 살아남는 법』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8일자)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 및 사건 조정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2013년 1월 18일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아이엠비씨는 2013년 1월 18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해당 조정대상보도 동영상 중 신청인(초상 및 음성)이 나와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향후 이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 방송과 관련, 유감을 표명한다.
4. 피신청인 주식회사 아이엠비씨가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5. 신청인은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들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1. 1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1,000,000원 지급

제 4 장 : 성명권 침해 사례

사 례 45

대학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건을 다루면서, 이 사건과 무관한 해당 대학의 재학생인 신청인의 실명을 피해자의 가명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대전조정22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대전문화방송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13. 04. 16.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모 대학 교수의 제자 성추행 관련 보도를 하면서, 피해자와의 인터뷰 방송 화면에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신청인의 실명을 피해자의 가명으로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름이 비록 방송에서 성추행 피해자의 가명으로 기재되기는 했으나, 신청인은 동 대학 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어서 주변인들로부터 성추행 피해자인 것처럼 오해 받는 상황이 발생했고, 피신청인이 J교수라고 가해자를 기재한 것을 보면 피해자도 이니셜 표기로 대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솔하게 이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 이름으로 가명 처리를 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신청인은 1차 심리 때 피신청인의 유감표명이 있었으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소송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히며 조정신청을 취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대전MBC-TV :** 시사플러스 프로그램 『제자 성추행, 교수사회 이대로 좋은가』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12일자 23:15)
- **내 용 :** ▷ 이○○(가명/성추행 피해자) : 대체적으로 실기수업이다 보니까, 뒤에 서 있어서 어떻게 접촉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잠깐 비켜봐라, 하면서 살짝 끌어안는 느낌을 준다던가...

▷ 김△△(가명/성추행 피해자) : 술을 먹으러 가면 강압적으로 나오시고,

1, 2학년 과대표들은 더 (집에) 못 가게 해서 노래방에 가서 브루스까지 쫓고...

▷ 이○○(가명/성추행 피해자) : 친구들한테 들었던 말들이었어요. 선배들 말이 맞았다. 우리끼리만 있으니깐 더 그러더라, 만지더라, 자꾸 접촉을 해온다...

▷ ○○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생 : 졸업생 반응은 놀랍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사실. 굶을 대로 굶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 C교수(○○대학교) : 지금까지 상황들이 너무 사실과 다르고, 너무 왜곡됐고, 과장됐고. 부끄러운 행동한 적이 없어요.

▷ 김○○(가명/성추행 피해자) : 노래방에서 교수가 몸을 더듬는 것 같아서 도망을 다녔는데도 저를 계속 쫓아와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끔 자기 몸으로 저를 가린 다음에 제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학생의 엉덩이도 만졌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남자 학우들의 주요 신체부위를 만졌습니다.

▷ J교수(△△대학교) : 저는 완전히 필름이 끊겨가지고 만취한 상태였고, 저는 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여학생을 몰래 으스스한 곳으로 불러내서 추행했다고 하는 이런 것과 다르지 않냐... 한 번 취해가지고 실수한 건데...

▷ 김○○(가명/성추행 피해자) : 작년 9월 이 교수가 부임한 이후에 9월 말 경에 저에게 행한 것과 동일한 수위의 추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 당시 교수가 작성하고 서명까지 한 각서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스스로 교수직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가해 교수는 당시 술자리에 있던 학생들을 불러서 저를 찾아내려고 계속 시도를 했고, 법조계가 좁다, 그런 태도로는 법조계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등의 얘기를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신입생이었고 앞으로 입학할 해서 이분을 빼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저에게 왜 이러시냐고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 이○○(가명/성추행 피해자) : 저희 생계를 진 분이잖아요 그분들이 학점이든 나중에 추후에 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생활이든. 그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 △△대학교 학생처 관계자 : 신문에 난대로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저희 손에서는 떠났어요.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사 례 46

신청인들이 부동산 사기로 거액을 강탈했으나 경찰의 부실수사로 무혐의 송치됐다고 잘못 보도하면서 신청인들의 성명을 그대로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강원조정12·13, 2013강원조정14·15(병합)

각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외 3인

피신청인 : 주식회사 강원도민일보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13. 06. 26.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부동산 사기로 거액을 강탈했지만 경찰의 부실수사로 무혐의 송치됐다고 하면서 신청인들의 성명이 적시된 플랜카드 사진을 그대로 기사에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기사 작성 전 신청인들에게 인터뷰 요청도 없이 일방의 주장만을 보도하면서 신청인들의 성명을 기사에 그대로 노출시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반론보도 및 신청인들에게 각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를 게재함과 동시에 신청인들에게 각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인터넷 강원도민일보의 조정대상기사 및 신청인들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향후 제3자에 의해 재보도 되었을 경우 삭제요청을 하도록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1

- 강원도민일보 : 『“부동산 사기 부실수사… 경찰 징계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2일자 12면)
- 내 용 : 사법정의 국민연대 시위 평창경찰서 “재조사 하겠다”



▲ 사법정의 국민연대(이하 사법연대) 회원 10여명은 11일 평창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갖고 부동산 사기로 거액을 강탈한 홍 모 씨 등 4명을 구속의견으로 송치하고 이들을 돌봐준 경찰관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평창/산현대

사법정의 국민연대(이하 사법연대) 회원 10여명은 11일 평창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갖고 부동산 사기로 거액을 강탈한 홍 모 씨 등 4명을 구속의견으로 송치하고 이들을 돌봐준 경찰관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사법연대에 따르면 홍씨 등 4명은 최 모(48·여·평창군 ○○면)씨에게 “펜션을 매수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다”는 등의 공갈로 시가 4억여 원짜리 펜션을 8억 3,000여 만 원에 사도록 해 금품을 강탈하고 이를 고소해 조사를 벌인 평창경찰서의 경찰관은 부실수사로 홍씨를 무혐의 송치했다는 것. 이에 따라 사법연대는 홍씨 등 4명을 구속의견으로 송치할 것과 담당 경찰관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평창경찰서 관계자는 “고소내용에 대한 충실한 조사가 이뤄졌으나 사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며 “추가 고소장이 접수돼 다시 한 번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정대상보도 2

-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 『“부동산 사기 부실수사… 경찰 징계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2일자)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강원도민일보 (12면-원주·횡성·영월·평창·정선)에 아래의 반론보도문 (1)을 게재하되, 반론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 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사법정의 국민연대시위’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1)〉

가. 제 목 : 반론보도문

나. 본 문 : 본 신문이 지난 2013년 6월 12일 「“부동산 사기 부실수사…경찰 징계해야” 제하의 기사에서 ‘사법정의 국민연대 회원 10여 명은 부동산 사기로 거액을 강탈한 홍 모 씨 등 4명을 구속의견으로 송치하고 이들을 돌봐준 경찰관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홍 모 씨 등 4명은 최 모 (48.여.평창군 ○○면)씨에게 펜션을 강매하는 등 공갈협박 및 금품을 강탈한 사실이 없으며, 최 모 씨가 자신의 기도터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매입을 원하여 김 모 씨와 박 모 씨 부부는 평소 10억에 매매 하려던 펜션을 8억 3000여 만 원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또한 무숙인 홍 모 씨는 이 거래에 어떠한 관련이 없으며, 홍 모 씨 또한 평소 알고 지내던 최 모 씨가 펜션을 구매하는데 있어 어떠한 주장을 한 것이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펜션을 구매한 최 모 씨가 7개월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한 사실도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최 모 씨가 증거제시를 전혀 하지 못하였기에 무혐의 송치가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평창경찰서 담당 경찰관과 어떠한 유착관계가 전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아래의 반론보도문 (2)를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의 홈페이지 지역-평창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반론보도문 (2)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반론보도문 (2)가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반론보도문 (2)를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

가. 제 목 : 반론보도문

나. 본 문 : 본 신문이 지난 2013년 6월 12일「“부동산 사기 부실수사…경찰 징계해야” 제하의 기사에서 ‘사법정의 국민연대 회원 10여명은 부동산 사기로 거액을 강탈한 홍 모 씨 등 4명을 구속의견으로 송치하고 이들을 돌봐준 경찰관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홍 모 씨 등 4명은 최 모 (48.여.평창군 ○○면)씨에게 펜션을 강매하는 등 공갈협박 및 금품을 강탈한 사실이 없으며, 최 모 씨가 자신의 기도터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매매를 원하여 김 모 씨와 박 모 씨 부부는 평소 10억에 매매 하려던 펜션을 8억 3000여 만 원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또한 무속인 홍 모 씨는 이 거래에 어떠한 관련이 없으며, 홍 모 씨 또한 평소 알고 지내던 최 모 씨가 펜션을 구매하는데 있어 어떠한 주장을 한 것이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펜션을 구매한 최 모 씨가 7개월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한 사실도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최 모 씨가 증거제시를 전혀 하지 못하였기에 무혐의 송치가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평창경찰서 담당 경찰관과 어떠한 유착관계가 전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반론보도문

나. 본 문 : 본지는 지난 6월 12일자 『“부동산 사기 부실수사…경찰 징계해야”』제하의 기사에서 사법정의 국민연대 회원 10여명은 부동산 사기로 거액을 강탈한 홍 모 씨 등 4명을 구속의견으로 송치하고 이들을 돌봐준 경찰관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 홍△△, 김○○, 박○○은 “경찰조사결과 최 모 씨가 증거제시를 전혀 하지 못하였기에 무혐의 송치가 된 것이다”라고 전해왔으며, 평창경찰서 담당 경찰관과의 유착관계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3. 7. 5.자 <강원도민일보> 12면에 보도하되, 제목 활자는 2013. 6. 12.자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인 『“부동산 사기 부실수사…경찰 징계해야”』활자와 동일한 크기와 글씨체로 2단 이상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은 2013. 7. 5. 09:00부터 7. 7. 09:00까지 2일간 <강원도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ado.net/>) 지역-평창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제목 및 본문활자는 인터넷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한다. 또한 초기화면 보도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은 인터넷 조정대상기사(<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30179>) 및 신청인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향후 제3자에 의해 재보도 되었을 경우 삭제요청을 하도록 한다.
5. 피신청인 주식회사 강원도민일보는 신청인들에게 2013년 7월 31일까지 각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6. 제1항 내지 제5항을 피신청인이 이행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7. 0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1

- 강원도민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5일자 12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2

-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5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3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금 각 1,000,000원 지급

사 례 47

취업 때문에 대학 졸업을 미루는 실태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개인신상정보를 동의 없이 방송에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466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3. 04. 10.

사 건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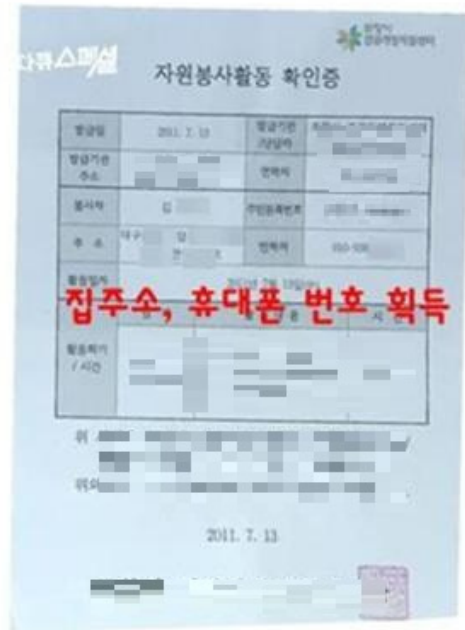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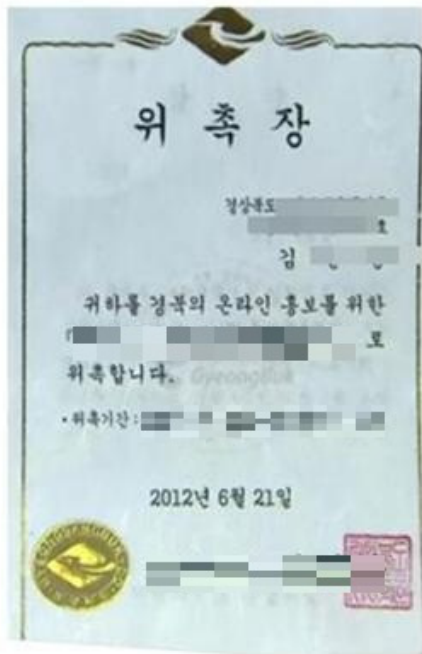
- 피신청인은 좁은 취업문 때문에 대학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이 많아지는 실상에 대한 방송에서 신청인의 대학생활과 관련된 상장과 수료증에 기재되어있는 주민등록번호, 본적지, 현거주지, 핸드폰 번호 및 기타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들을 모자이크처리 없이 그대로 방영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개인 신상이 모두 방송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다면서 40,000,000원의 손해 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함과 더불어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의 개인정보(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학번)가 노출된 화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며, 추후 해당 조치가 되지 않은 영상이 포털(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등 인터넷에서 발견될 경우(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포함),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MBC TV** : 다큐스페셜 프로그램 『대학 5학년, 불편한 청춘』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18일자 23:15)
- **내 용** : (수료증, 임명장, 상장 등이 바닥에 쌓이는 장면)

▷ 멘트 : ○○씨가 지난 4년 동안 쌓은 스펙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했을까 싶은데요.

(방송 화면)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년 4월 30일까지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원 조정대상 보도 중 신청인의 개인정보(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학번)가 노출된 화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며, 추후 해당 조치가 되지 않은 영상이 포털(블로그, 카페 등) 등 인터넷에서 발견될 경우(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포함),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한다.
3. 신청인은 향후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4. 2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3,000,000원 지급

사 례 48

트위터 상에서 특정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신청인의 트위터 아이디 등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609 손배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3. 05. 15.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일부 지식인들의 성희롱에 대한 기사에서 성추행 피해자인 신청인의 트위터 아이디를 그대로 기사에 노출시켰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청인의 아이디가 추후 삭제가 불가능한 종이신문에 그대로 공개되어 사생활 침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3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주간동아 :** 『진보 지식인들 진짜 그럴래』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일자 28~29면)
- **내 용 :** 대한민국 남자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고위층 성접대로 말썽을 일으키질 않나, 국회의원이 회의하면서 여성 나체 사진을 보질 않나, 국제○○○○ 인권위원을 지낸 이가 카카오톡으로 딸뻘의 젊은 여성에게 성희롱을 하질 않나. 그런데 거기 아무 상관도 없는 제3의 남자(나는 고○○, 고△△ 두 사람이 성이 같은 남자라는 사실밖에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 대한민국 시계가 잠시 씨족사회로 뒷걸음질 쳤나 의아했다)가 피해 여성에게 2차 피해를 가하질 않나. 그뿐이 아니다. 가수 조○○은 거기에 기름을 붓는다.

조〇〇은 최근 한 TV 연예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은 젊은 여성 리포터 무릎에 자꾸 손을 얹으려고 시도하면서 몇 번이나 그녀에게 닥달하듯 “사귄래?”, “우리 사귀자”라는 명백한 성희롱을 했다. 우연히 아침에 내 두 눈으로 직접 본 사실이다. 그러더니 조〇〇의 여자친구가 29명이 넘는다는 기사가 나왔다.

아무 상관없는 도덕적 엄숙주의 논란

당시 TV를 보며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신문기자 시절 그를 인터뷰한 경험이 있어서 그가 전형적인 ‘꼰딱남’이라는 사실은 익히 알았다. 그런데 TV 인터뷰 도중에도 여전히 ‘꼰딱대는’ 모습을 보니 하도 기가 막혀 “나이가 70은 넘었을 테니 ‘노망’ 든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잊어버렸다. 한 사람의 시청자로서 나는 매우 불쾌했는데 당한 여성은 어땠을지 모르겠다. 당사자가 불쾌하지 않았다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삼기 힘든 것이 바로 성희롱 문제다.

사정이 이러니 여성 처지에서 보자면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 여성 대통령이 이끄는 나라에서 이 지경이니 거국적인 특단의 조치라도 내려야 할 것 같다. 하긴 여성 대통령선거(대선) 후보한테 생식기 운운하는 교수도 있었으니 오죽하겠는가.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니 그 말을 했던 교수의 요즘 꿈자리가 어떨지 궁금하다.

그럼 문제의 남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자. 먼저 인권운동가라는 고〇〇 교수. 그는 상대 여성이 그가 한 말들을 폭로하자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카카오톡 대화가 있었다. 변명하자면, 나는 당시 상대방도 그런 대화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사과 글을 바로 트위터에 올렸다.

그가 그녀에게 했다는 성희롱적 발언을 시시콜콜 따지지 않겠다. 그런 것들은 대등한 관계의 남녀 성인이 서로 합의했다면 어쩔 수 없는 분야에 속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와 관계없는 타인의 성적 취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문제는 “상대방도 그런 대화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그의 변명에 있다. 그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했을까. 더구나 피해 여성은 아버지뻘의 50대 남성인 그를 인권운동가로 존경했다고 한다. 남녀 간 서로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다. 여자의 ‘No’는 ‘Yes’라는, 남성의 뿌리 깊은 성차별적 착각이 성희롱과 강간, 성폭력을 부른다.

또 하나. 그는 엄연히 유부남이다. 그러나 한국 남자들은 자기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늘 잊고 사는 것 같다. 성희롱을 일삼으며 성적 자유를 맘껏 누리는 유부남들, 자기 아내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아내에게도 자기와 똑같은 성적 자유를 허용하는지 여론조사라도 해보고 싶은 심정이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 유부남들은 여성문제에 관한 한 정말 문제가 많다.

2007년 5월 서울 을지로에서 열린 국제○○○○ 연례보고서 발표회에서 당시 국제○○○○한국 지부 이사장이 글로벌 인권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아래).



20대 여성을 성희롱하는 내용으로 트위터 글이 공개돼 논란을 빚은 고○○ ○○대 교수가 이후 자신의 SNS에 올린 사과문.



제발 여자에 꺾떡대지 마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누드 사진을 검색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뒤 거짓해명으로 물의를 일으킨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또 이런 경우에 꼭 나오는 논란이 ‘도덕적 엄숙주의’다. 진보 남성에게 대한 비판이라도 할라치면 어김없이 나오는 얘기인데, 왜 진보 남성들에게만 도덕적 엄숙주의를 강요하는 불멘소리다. 그러나 성희롱 문제와 도덕적 엄숙주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문제는

그 사건이 성희롱이나 아니냐에 있지, ‘엄숙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가 자유롭게 성을 구가하는 여성이라도 그녀의 의사에 반해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진보 남성들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불평하는 남성들, 정말 무엇이 진보인지 다시 공부해야 한다. 여성은 가장 대표적인 약자다. 여성문제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없이 인권이 어찌고저찌고 떠드는 것은 말짱 개소리다. 여성문제가 인권문제로, 인권문제가 여성문제인 것이다. 그러니 성도덕에서는 보수적 남성들이 차라리 더 낫다는 얘기도 나온다.

두 번째 남자 고△△으로 가보자. 나는 그가 한겨레 기자 시절 썼던 글을 애독하던 한 사람이다. 그는 고○○ 교수의 성희롱 논란을 보면서 피해자의 과거 기록을 뒤져 리트위트해 또 다른 파문을 일으켰다. 이번 논란과 상관없는 과거 글들로 피해 여성의 평소 처신을 문제삼는 데 대해 누리꾼의 비난이 잇따르자 그는 “사건 피해자가 강인하고 리버럴하며 독립적 여성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리트위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건 또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인가. ‘강인하고 리버럴하며 독립적인 여성’은 성희롱을 당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 그의 말에서 진보 남성들이 꿈꾸는 이상형의 여자 모습이 그려진다. 고△△의 논리대로라면 △리버럴(그는 이 말을 개방적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 같다)한 여성은 누구에게나 성희롱을 허용하고 △성희롱을 개의치 않을 정도로 ‘강인하며’ △성희롱을 당해도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거나 상의하지 않는 ‘독립적인’ 여성인 것 같다.

나는 직업으로 글을 쓰는 고△△에게 진정으로 충고를 하나 하고 싶다. 단어 뜻 제대로 알고 쓰라고. △‘리버럴’한 여성은 남자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여성이고 △‘강인한’ 여성은 남자들에게 언감생심 성희롱할 생각은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강한 여성을 의미하며 △‘독립적인’ 여성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대표 ‘꼰대남’ 조○○. 그는 만나는 모든 여성을 나이나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로맨스 상대로 보는 것 같다. 그런 걸 페미니스트는 ‘여성의 성적 대상화’라고 표현한다. 그가 얼마나 절륜한 정력을 자랑하는지는 내 알 바 아니지만, 바라건대 제발 여자한테 그만 좀 꼰대대면 좋겠다. 노추를 넘어 밥맛이다. 대한민국 남자들,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5,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년 6월 26일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향후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그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6. 1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000,000원 지급

사 례 49

신청인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강화마루가 층간 소음 차단에 효과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481 정정청구

신 청 인 : ○○ ○○○○(주)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3. 04. 17.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급증하는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방송에서 신청인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강화마루가 층간 소음 차단에 효과가 없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서 제조한 강화마루는 다른 바닥재보다 소음저감 효과가 높다는 여러 관련 실험 결과가 있으므로 방송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은 강화마루의 효과를 광고하는 PR보도를 함과 동시에 KBS미디어 및 피신청인과 콘텐츠 공급계약을 통해 외부에 제공하는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모두 삭제하여, 다시 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다만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중 문제된 ‘강화바닥재(또는 강화마루)’ 관련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재편집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KBS-2TV** : 위기탈출 넘버원 프로그램 『급증하는 층간소음 문제』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1일자 20:50)

- **내 용** : (전략)

▷ 내레이션 : 넘버원에서 소음 관련한 속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끄러운 음악이 있는 곳이라면 한번쯤 설치해본 계란판!! 정말 계란판 효과 있을까요? 정답은, 효과 없음!

자, 두 번째 방법은 강화바닥재! 딱딱한 바닥재가 위층의 소음을 차단해 줄 거라 생각 되지만~ 효과 없습니다~!!



<소음 '차단'의 효과없음을 고지>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에서는 무용지물~ 비싼 시공비용을 들여, 바닥재를 하는 것 대신 저렴한 매트나 슬리퍼를 사용하는 것이 소음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위기탈출 넘버원’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 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강화바닥재 ‘충간소음 효과’ 관련 정정보도문

가.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2013년 4월 1일자(377회차) “위기탈출 넘버원” 프로그램에서 “충간소음을 해결해 주는 도구는 두꺼운 슬리퍼”편에서 강화바닥재나 강화마루가 충간소음 차단에 효과가 없다고 방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업체 등에 확인한 결과 강화마루는 다른 바닥재에 비하여 바닥 소음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고 이에 따라 충간 소음 차단에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시청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해당업체 등에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하여 제작진은 정중히 사과드리며,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내용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별지〉 기재 방송대본을 2013년 5월 27일 〈위기탈출 넘버원〉 프로그램에 방송한다.
2. 피신청인은 2013년 5월 16일까지 KBS인터넷홈페이지 및 피신청인과 콘텐츠 공급계약을 통해 외부에 제공하는 이 사건 조정대상방송을 모두 삭제하여, 다시 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한다. 단, 이 사건 조정대상방송 중 ‘강화바닥재(또는 강화마루)’관련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재편집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단, 공식 공급계약에 의해 콘텐츠를 공급하였으나 삭제가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삭제해야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제1항~제2항과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피신청인이 위 제1항~제2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만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5. 09.

〈별 지〉

〈 위기탈출 넘버원 〉 제 384화

- MC : 김○○ / 장○○ / 김△△

#1. 오프닝

[MC 위치]

김○○ // 장○○ // 김△△

김○○ : 몸도 튼튼! 안전도 튼튼! 여기는 대한민국 안전의 중심! 위기탈출~

다같이 : (오른쪽 엄지손가락 내밀며) 넘버~원!

- 다 같이 환호 & 박수

김○○ : ○○씨, 어젯밤에 잠 잘 못 잤죠?

장○○ : (놀라) 어떻게 알았어요?

김△△ : 에이~ 남자친구랑 밤새.... (놀리듯) 전화했구나!!!

장○○ : (실망) 그랬으면 기분이라도 좋죠. 실은... 밤새!!!

김△△ : 밤새!!

장○○ : 층간소음 때문에 한 숨도 못 잤어요.... 휴우~

김△△ : 그럴 때는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두꺼운 슬리퍼를 신으면 좋다고 알려드렸잖아요.
윗집에 선물하세요!!

장○○ : 아! 그렇구나~~ 또 좋은 방법 없을까요?

김○○ : 있죠!! 집에 바닥재 선택하실 때 <강화마루>도 층간소음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 : (좋아하며) 어머!! 나도 신혼집 고를 때 꼭!! 참고 해야겠다!! △△씨는요?

김△△ : 이미 깔았지~~ ^^ 김○○씨는요?

김○○ : (한숨) 바닥재만 잘 고르면 뭐합니까? 아직 신부감을 못 골랐는데... 제가 노총각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그날을 위해!! 위기탈출 넘버원!! 시작해볼까요??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KBS-2TV** : 위기탈출 넘버원 프로그램 『강화마루도 층간 소음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27일자 20:50)
- **내 용** : <조정성립사항의 별지 참조>

사 례 50

유흥업소 여종업원 살인사건에 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간판이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1367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이채널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3. 09. 10.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유흥업소 여종업원 살인사건과 관련한 방송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진 업소와는 무관한 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간판을 방영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유흥업소 자료화면으로 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옆 간판과 정면 간판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사용되어 손님들로부터 신청인 가게에 종사하던 여종업원이 살인사건의 피해자인가 하는 질문을 받는 등 부득이 가게 간판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3,5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도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e 채널** : 대한민국 사건파일 No.5 프로그램 『11화 - 진실게임, 죽은 자는 알고 있다』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23일자 23:00)
- **내 용** : ▷ 리포트 : 밝혀진 사망자의 신원은 30살의 여성 곽 모씨.



<신청인 업소 네온 사인 간판>

▷ 리포트 :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그녀는 가족과도 연락이 끊겨 실종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는데...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500,000원을 지급한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제 3 부

주요 언론조정 · 중재 사례 색인

2013년도 : 주요 언론조정 · 중재 사례 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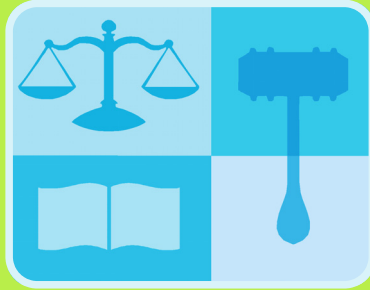
제 3 부

주요 언론조정 · 중재 사례 색인

신청인	대상매체	사건번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고	사례 번호	면
(ㄱ)							
강○○	주간동아	2013서울조정609	손배	조정성립		48	298
국립현대미술관	시사IN	2013서울조정1733	정정	조정성립		34	249
국회사무처	1. 인터넷 일요시사, 2. 일요시사	2013서울조정1183, 2013서울조정1207(병합)	각 반론	조정성립		26	200
권 ○	매일경제	2013서울조정995 · 996	정정 · 손배	조정성립		23	187
김○○	1. 중앙Sunday, 2. 인터넷 중앙Sunday	2013서울조정413, 2013서울조정414(병합)	각 손배	조정성립		38	269
김○○	1. 한겨레, 2. 인터넷 한겨레	2013서울조정377, 2013서울조정378(병합)	각 정정	조정성립		8	108
김○○	대전MBC-TV	2013대전조정22	손배	취하		45	286
김○○	노컷뉴스	2013충북조정5	정정	조정성립		5	97
김○○	연합뉴스	2013서울조정953 · 954	정정 · 손배	조정성립		22	183
김○○	티비리포트	2013서울조정592	손배	조정성립		40	274
김○○ 외 3인	강원도민일보	2013강원조정12 · 13, 2013강원조정14 · 15(병합)	각 반론 · 손배	조정성립		46	289
김○○	MBC-TV	2013서울조정466	손배	조정성립		47	295
김○○	아시아뉴스통신	2013경기조정71 · 72	정정 · 손배	조정성립		18	166
(ㄴ)							
농림수산식품부	대전KBS-1TV	2013대전조정9	정정	조정성립		6	101
(ㄷ)							
○○ ○○○○ (주)	KBS-2TV	2013서울조정481	정정	조정성립		49	303
(ㄹ)							
○○○여객자동차 (주)	1. 전주매일, 2. 인터넷 전주매일	2013전북조정20, 2013전북조정21(병합)	각 반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1	179
(ㅁ)							
○○○○○ 지주 단체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2013서울중재36 · 37	정정 · 손배	중재결정		9	114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중앙일보	2013서울조정1037	반론	기각결정		25	196
빗○○○ ○○○○	다원TV	2013서울조정48	손배	조정성립		36	258

신청인	대상매체	사건번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고	사례 번호	면
(스)							
서초구청	채널A	2013서울조정263	정정	조정성립		7	104
성남시청	경제투데이	2013서울조정921 · 922	정정 · 손배	조정성립		19	169
손○○	조선일보	2013서울조정581	반론	조정성립		13	133
신의진	게임톡	2013서울조정1604	정정	조정성립		32	238
심재권	1. TV조선, 2. 인터넷 TV조선	2013서울조정469, 2013서울조정471(병합)	각 정정	조정성립		12	128
(ㅇ)							
이○○	1. MBC-TV, 2. iMBC	2013서울조정1, 2013서울조정2(병합)	각 손배	조정성립		44	283
이○○	인터넷 경향신문	2013서울조정36	손배	조정성립		1	78
이○○	e채널	2013서울조정1367	손배	취하		50	307
이○○	이투데이	2013서울조정465	손배	조정성립		39	272
인천국제공항공사	경향신문	2013서울조정1477	정정	취하		31	231
○○○○○○(주)	1. KBS-1TV, 2. KBS미디어	2013서울조정583 · 584, 2013서울조정585 · 586(병합)	각 정정 · 손배	조정성립		14	138
(ㅈ)							
정○○	SBS-TV	2013서울조정119 · 120	추후 · 손배	조정성립		2	81
조○○	1. 조간호남일보, 2. 인터넷 조간호남일보	2013광주조정48 · 49, 2013광주조정50 · 51(병합)	각 정정 · 손배	조정성립		30	222
1. 조○○, 2. 이○○	MBC-TV	2013서울조정1032 · 1033	정정 · 손배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		24	191
주식회사 ○○기업	인터넷 한국원자력신문	2013경기조정17 · 18	정정 · 손배	조정성립		4	92
1. (주)○○○, 2. 홍○○	시사저널	2013서울조정1192 · 1193	정정 · 손배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	양당사자 이의신청	27	208
(주)○○○○○○○	연합뉴스	2013서울조정648 · 649	정정 · 손배	취하		15	146
(주)○○○○○○○○	뉴시스	2013서울중재48 · 49	정정 · 반론	중재결정		11	124

신청인	대상매체	사건번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고	사례 번호	면
(주)○○○ ○○ ○○○	1. 문화일보, 2. 인터넷 문화일보	2013서울조정1194, 2013서울조정1195(병합)	각 정정	조정성립		28	213
○○○○○○○ 주식회사	1. 경남도민신문, 2.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2013경남조정1·2, 2013경남조정3·4(병합)	각 정정·손배	조정성립		3	85
(ㄱ)							
천○○	채널A	2013서울조정1728	손배	조정성립		43	280
최○○	삼척MBC-TV	2013강원조정20	손배	조정성립		42	278
최○○ 외 2인	JCN 울산중앙방송	2013부산조정53	손배	조정성립		41	276
1. 최○○ , 2. 이○○	MBC-TV	2013서울조정1766·1767	정정·손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5	253
(ㄴ)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다음	2013서울중재42·43	정정·손배	중재결정		10	120
한국보청기협회	SBS CNBC-TV	2013서울조정925	정정	기각결정		20	173
한국수산자원관리 공단	부산KBS-1TV	2013부산조정20·21, 2013서울조정22·23(병합)	각 정정·손배	조정성립		16	150
○○○○○대학교 부속 ○○○○○ 고등학교	인터넷 한국일보	2013서울조정1607, 2013서울조정1614(병합)	각 정정	조정성립		33	244
한국은행	1. 주간조선, 2. 인터넷 주간조선	2013서울조정885·886, 2013서울조정887·888(병합)	각 정정·반론	조정성립		17	156
한국○○사학회	인터넷 한겨레	2013서울조정1322	정정	취하		29	219
1. 황○○ 외 3인, 2. 김○○ 외 4인	1. SBS-TV, 2. SBSi	2013서울조정78·79, 2013서울조정80·81(병합)	각 정정·손배	조정성립		37	264



제 4 부

주요 시정권고 사례

- 제4부에서는 2013년 한 해 동안 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한 289건의 언론보도 중 14건의 주요 사례를 선별하여 수록합니다. 주요 사례는 침해 유형별 의결번호의 선후를 기준으로 수록되었습니다.
- 연구 목적으로 인용하고자 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실명 또는 익명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사 례 1

의결번호 제2013-62호

- 언 론 사** ▶ 조선닷컴
- 보도일시 및 위치** ▶ 2013년 4월 4일자 사회면
- 기 사 제 목** ▶ 불쌍해 취직시켜줬더니...
친구 운영 사우나서 야금야금 돈 빼가

1. 보도내용

「불쌍해 취직시켜줬더니...친구 운영 사우나서 야금야금 돈 빼가」 제하의 보도사진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피의자의 CCTV 사진을 게재하여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 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chosun.com

불쌍해 취직시켜줬더니...친구 운영 사우나서 야금야금 돈빼가

이치온 기자 ja@chosun.com

입력 : 2013.04.04 15:05 | 수정 : 2013.04.04 15:06



친구 운영 사우나 돈을 가져가고 있는 송씨의 모습/서울 서부경찰서 제공

서울은평구에서 24시 사우나를 운영하는 이모(여·51)씨는 최근 6개월간 매출이 떨어져 고민이었다.

손님이 준 것도 아닌데, 결산을해보면 돈이 늘 100여만원씩 맞지 않았다. 남편이 훔쳐 쓰는 것이라고 의심한 이씨는 지난해 9월 카운터 구석에 몰래 CCTV를 설치했다.

몇달 뒤 CCTV 화면을 확인한 이씨는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범인은 다름 아닌 그의 친구 송모(여·50)씨. 화면에서 송씨는 카운터로 다가가 두리번거리며 기척을 살피고는 돈을 꺼내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다. 깜짝 놀란 이씨가 이전 영상까지 모두 확인해보니 범행은 100차례가 넘었다.

경찰조사 결과 송씨는 지난해 8월부터 7개월간 이씨가 잠깐 자리를 비울 때를 이용해 총 112회에 걸쳐 650만원 상당의 현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송씨와 지난해 산악회에서 등산을 하며 알게 됐다. 취미도 대화도 잘 맞는 동년배라 친하게 지내왔다. 이씨는 남편 없이 다세대주택 지하방에서 자식을 키우는 송씨의 사정이 마음에 걸렸다. 이씨는 믿음직한 친구인 송씨에게 자신의 사우나 여탕 관리인 일자리를 마련해줬다.

그러나 생활고에 시달리던 송씨는 카운터에 쌓인 돈을 보고 욕심이 났다. 처음엔 몇천원을 집어갔지만 나중에는 금고나 서랍을 뒤흔쳐 적게는 3만원 많게는 7만원씩 빼돌렸다. 주로 이씨가 자리를 비울 때를 이용해 옷을 갈아입거나 창고에 물건을 가지러 가는 척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의심을 사지 않도록 5만원권 1매, 1만원권 3~7매를 소량만 빼내곤 했다.

이씨가 눈치 채지 못하자 범행은 점점 대담해졌다. 바로 옆에서 이씨가 손님을 맞고 있을 때도 카운터 밑 작은 서랍에서 돈을 빼내기도 했다.

송씨는 훔친 돈으로 아웃도어 등 등산용품들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4일 송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불구속인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사 례 1

의결번호 제2013-24호

언 론 사 ▶ 이타임즈

보도일시 및 위치 ▶ 2013년 1월 31일자 사회면

기 사 제 목 ▶ 22개월 어린이집 원생 떡볶이 먹다 질식사

1. 보도내용

「22개월 어린이집 원생 떡볶이 먹다 질식사」 제하의 보도사진

2. 권고사항

언론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또는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현재 게재되어 있는 사진은 향후 지속적으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모자이크 처리나 삭제하기를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기사와 무관하다고 보이는 아동들의 사진을 게재하여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언론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초상을 사용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etimes
이 타 일 즈

22개월 어린이집 원생 떡볶이 먹다 질식사



(철곡=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22개월된 어린이집 원생이 떡볶이를 먹다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오후 5시 20분에 경북 철곡읍 왜관읍 모 어린이집에서 생후 22개월된 원생 이모군이 떡볶이를 먹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사고 직후 어린이집측이 응급조치를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모군이 떡볶이를 먹다가 질식사 숨진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어린이집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바일업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김용민 yongmin@yna.co.kr 2013/01/31 10:32:47)

Copyright 연합뉴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times
www.etimes.net

137-87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989-6번지 대우빌딩 2호 (대표이사:양영철) 사업자등록번호: 120-87-08947
Copyright (주)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589-8079 wrn@etimes.net

사 례 2

의결번호 제2013-217호

언 론 사 ▶ 데일리안

보도일시 및 위치 ▶ 2013년 10월 26일자 연예면

기 사 제 목 ▶ 김○○ 부부 폭행 맞고소 ‘남편 대마초 혐의 시인’

1. 보도내용

「김○○ 부부 폭행 맞고소 ‘남편 대마초 혐의 시인’」 제하의 보도사진

2. 권고사항

언론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또는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 뉴스앵커 출신 김○○ 기자의 이혼소송 사실을 보도하면서 남편의 초상을 공개했다. 비록 김○○가 유명인이라 하여도 이혼소송중이라는 불미스러운 기사에서의 가족 초상은 설사 이전 방송에서 본인의 허락 하에 촬영된 사진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유로 사용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다시 얻어 기사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에 따라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김○○ 부부 폭행 맞고소 '남편 대마초 혐의 시인'

선정목 '정보채취' | 등록 : 2013-10-26 10:00



▲ 대마초를 숨긴 김○○ 부부. © 데일리안 DB

김○○ 부부는 김○○(40)가 결혼 9년 만에 파경을 맞은 가운데, 양 측이 맞고소하며 쟁쟁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 부부는 상해 혐의로 남편을 고소하고 전근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상태. 그러나 여동 조매는 시어머니로부터 편박 혐의로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김○○은 시어머니는 애꿎은 차에 말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금융연인 남편 김○○(43)도 김○○을 상대로 오히려 재산도 폭행을 당했다며 맞고소했다.

특히 김○○ 씨는 최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조사를 받아 체포되기도 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대마초를 피웠음을 시인해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음탕 관청이 나와 구속 유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인 처벌은 피한다 하더라도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부부는 내달 6월 첫 조정거원을 갖는다. 이들의 법적 다툼이 어디까지 치달을지 주목된다.

한편, 김○○ 부부는 2004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재배포, 무단배포 금지

사 례 1

의결번호 제2013-7호

언 론 사 ▶ 메디컬투데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2년 12월 10일자 사건사고면

기 사 제 목 ▶ ○○○ ○○○ 대마+○○○ 배합 신종마약 유통한 美 탈영병 검거

1. 보도내용

「○○○ ○○○ 대마로 알려진 ‘○○○’와 ○○○ 등을 배합한 신종마약을 제조 및 유통한 미군 탈영병 4명이 검거됐다. (중략) 경찰은 대량의 합성○○ 마약가루를 커피 국제우편 택배로 위장 밀반입해 이를 고양이 흥분제 ○○○로 알려진 허브 종류의 식물 ‘○○○’와 휘발성 액체 ○○○, ○○ 청정제 ○○○을 적당히 배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신종마약 ○○○○를 전자 저울로 측정, 1g 당 ○○~○○달러에 판매한 미군 탈영병 4명을 검거했다. (이하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구입경로와 신종마약(○○○○)의 제조 원료 및 제조방법, 판매가격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 같은 보도는 해당 마약을 알지 못하던 일반 독자들에게 약물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2

의결번호 제2013-29호

언 론 사 ▶ 스포츠서울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3년 1월 24일자 사회면

기 사 제 목 ▶ ‘우유주사’ ○○○○, “한번 맞으면 그 맛 잊지 못해”

1. 보도내용

「우유주사」 ○○○○, “한번 맞으면 그 맛 잊지 못해”

(전략) “○○○○에 빠지는 이유는 아마도 약을 투여한 이후의 맛 때문일 것”이라며 “○○○○을 맞으면 숙면을 취하고 잠에서 깨어난 기분이 든다. 아마도 그 맛을 잊지 못해 빠지게 되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하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약물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제목과 내용에서 ○○○○의 환각적 효능을 자극적으로 상세하게 적시하였다. 이 같은 보도는 해당 약물의 환각적 효능을 알지 못하는 일반 독자들에게 약물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3

의결번호 제2013-35호

언 론 사 ▶ 한국경제

보도일시 및 위치 ▶ 2013년 1월 30일자 28면

기 사 제 목 ▶ 성폭행 악용되는 ○○○, ○○○ 주문 ○시간 만에 배달

1. 보도내용

「(전략) 피해 여성 A씨는 화장실에 간 사이 김씨 등이 술잔에 ○○○을 섞어 잠들게 한 뒤 두 사람이 차례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김씨 일행이 건넌 술을 마시자 평소와는 다르게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정신이 몽롱했고, 이날 일의 상당 부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중략)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젊은 여성 4명에게 ○○○을 먹이고 집단으로 성폭행한 일당이 붙잡혔다. (중략) 채용면접을 빌미로 ○○○을 커피 등에 타 먹인 뒤 여성 3명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붙잡히는 등 ○○○을 이용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마약 성분이 함유돼 있는 ○○○을 ○○○ 등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자가 ○○○ ○○ 검색창에 ‘○○○’을 입력하자 ○○○이나 ○○○ 등에서 ‘○○○과 같은 환각제를 판매한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게시판에 나온 번호를 골라 전화하자 판매자는 “1정에 ○만○○○○원이고 입금 후 ○시간 안에 ○○○으로 배달해 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판매자는 “국내에서 처방받는 ○○○의 용량은 정당 ○○mg이지만 해외 제품은 ○○mg으로 환각이 더 오래 지속된다”며 “○~○정만 술에 타서 여성에게 먹일 경우 거의 기억을 못하는 마약의 일종”이라고 소개했다. ○○○뿐만이 아니다. 이날 방문한 서울 ○동의 한 내과에선 ○○○에 시달린다는 기자의 말에 담당 의사가 ○○○ 두 달치(○○정)를 바로 처방해줬다. (이하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성분이 함유된 ○○유도제인 ○○○의 구입경로와 성폭행에 사용된 약물의 사용량, 사용방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 같은 보도는 해당 마약을 알지 못하던 일반 독자들에게 약물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모방범죄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제2항과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4

의결번호 제2013-75호

언 론 사 ▶ 경남매일

보도일시 및 위치 ▶ 2013년 4월 17일자 4면

기 사 제 목 ▶ 원룸서 ○○약 이용 ○○○ 제조

1. 보도내용

「(전략) 이들은 시중에 흔히 보이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을 구매해 인터넷에서 검색한 제조법으로 ○○○을 제조하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제조한 ○○○을 인터넷을 이용,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기까지 했다. (중략) 구속된 이들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4월 초까지 창원시 의창구의 한 원룸에서 중합 ○○약에서 마약류 원료물질인 ○○○○○○○을 추출, 정제하는 방법으로 ○○○ ○○g(시가 ○억 ○천○○○만 원)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략) 이들은 매주 1회 ○○○ ○g씩을 제조해 총○○g(시가 ○억○천○○○만 원 상당)을 제조했으며 주거지인 원룸에서 이씨는 160여 차례, 김씨는 50여 차례 ○○○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번 ○○○을 추출·정제하는데 중합 ○○약 ○○여 통을 썼으며, 제조과정에서는 특유의 약취가 나지만 일주일에 ○g가량씩 조금씩만 제조해 들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하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제조 원료인 ○○약 성분명(○○○○○○○)을 적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마약을 제조할 수 있음을 공개하였다. 이는 해당 마약을 알지 못하던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을 사용하거나 제조할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1

의결번호 제2013-88호

언 론 사 ▶ 뉴시스

보도일시 및 위치 ▶ 2013년 5월 12일자 사회면

기 사 제 목 ▶ 퇴임 앞둔 ○○ 학교에서 목 매…우울증 심해서?

1. 보도내용

「퇴임을 앞둔 중학교 ○○이 학교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강원 횡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8분께 횡성군 ○○리 ○○중학교 ○층 ○학년 교실에서 이 학교 남 모(59) ○○이 문고리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교직원 변 모(39)씨가 발견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의 자살 사실을 보도하면서 자살자가 근무하던 학교의 이름과 주소를 적시하여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사자 및 유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침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2

의결번호 제2013-282호

언 론 사 ▶ e머니투데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3년 11월 6일자 사회면

기 사 제 목 ▶ ○○대 건물 7층서 남학생 투신 숨져

1. 보도내용

「우울증을 겪고 있던 대학생이 학교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6일 서울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대학교 ○○관 7층 복도 계단 쪽에서 재학생 한 모 씨(21·남)가 뛰어내렸다. (중략) ○○○학과에 재학 중인 한씨는 평소 우울증을 겪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하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 외에 학교명과 학과를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하는 것은 본인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침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3

의결번호 제2013-289호

언 론 사 ▶ 시사포커스신문

보도일시 및 위치 ▶ 2013년 11월 17일자 사회면

기 사 제 목 ▶ 회사 업무 힘들다고 40대 회사원 자살

1. 보도내용

「충북 영동군 ○○면 ○○리의 한 야산에서 16일 오후 5시 55분께 ○○○○○○○○○○에서 근무하고 있던 서 모(40)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서씨의 형이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하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 외에 근무처를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 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하는 것은 본인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침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1

의결번호 제2013-42호

언 론 사 ▶ 무등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3년 2월 19일자 5면

기 사 제 목 ▶ 하룻밤새 차량 10대 털었다

1. 보도내용

「(전략)임씨는 ○○ ○○○○를 이용, ○○석 ○○을 깨는 수법으로 경보기도 울리지 않게 차량을 털어왔다. 그는 ○○○○를 ○○석 ○쪽 ○○과 ○○○○ 사이에 넣고 뒤로 젖혀 최대한 차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을 꺾다. 깨진 ○○가 차 안쪽으로 쏟아지고 ○○된 유리는 그 소리마저 적게 나 주변에서 눈치채기 어려워 범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 경보기는 ○○가 심하게 흔들리지 않고 ○ ○을 열지 않으면 울리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했다. (이하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범죄에 사용된 도구 및 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여, 모방범죄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2

의결번호 제2013-65호

언 론 사 ▶ 매일경제

보도일시 및 위치 ▶ 2013년 4월 18일자 10면

기 사 제 목 ▶ 100달러로 쉽게 만들 수 있어 테러범 애용

1. 보도내용

『(전략) 엄마 ○○○에서 폭탄을 만드는 법(Make a Bomb in the ○○○○○○○○ of Your Mom)이라는 제목으로 된 기사에 따르면 ○○○ ○쪽에 ○○ 파편이나 ○ 등 유해 물질을 부착하고 ○○ 등 인화 물질로 ○○○을 채운다. 그리고 나서 ○○○○○○○○ 장식으로 활용 되는 ○○를 ○○○에 연결해 ○○ 장치로 활용한다. 이후 ○○ 등 ○○○ 장치를 ○○장치에 연결해 원하는 시간이 흐른 뒤 터지도록 할 수 있다. 알카에다는 “○○○이 폭탄 제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는 ○○○ 폭탄의 위험성을 일찌감치 감지하고 2004년부터 경고해왔다. (이하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사제폭탄의 제조방법을 상세하게 묘사하여 일반 독자들이 하여금 이를 모방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1

의결번호 제2013-178호

언 론 사 ▶ 동아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3년 7월 11일자 12면

기 사 제 목 ▶ ‘10대 오○○’… 소녀 성폭행 후 ○○살인 “호러영화 흥내”

1. 보도내용

「(전략) 이때부터 그는 김 양의 시신을 훼손했다. 시신을 욕조로 옮긴 뒤 ○○○ ○○○로 ○○을 내려다 여의치 않자 ○○을 도려내기 시작했다. 사용하던 ○이 부러지자 9일 오전 1시 반경 모텔 인근의 편의점에서 손잡이 길이 ○○cm, 날 길이 ○cm의 ○○○ ○○○을 새로 구입해 계속 시신을 훼손했다. 9일 오후 1시 16분, 약 ○○시간에 걸친 시신 훼손이 대략 마무리됐다. 그는 검은 ○○○ ○○○○를 구입해 시체를 옮겨 담았다. 도려낸 ○○은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에 넣고 ○을 내려 유기했다. 수습 차례 같은 일을 반복했다. 나머지 뼈는 ○○○○에 담기 좋게 ○○을 냈다. (중략)

심 군이 ○○ 낸 시신의 뼈는 모두 ○○조각이었다. ○을 도려내 ○만 남은 상태로 ○○kg 가량 무게였다. 심 군은 경찰에서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을까 봐 죽인 뒤 시체를 가져나갈 방법이 없어 ○○을 도려냈다”고 진술했다. (이하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용인의 10대 ○○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과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 례 2

의결번호 제2013-199호

언 론 사 ▶ 경북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3년 9월 11일자 4면

기 사 제 목 ▶ 유흥음식업 집회 중 분신

1. 보도내용

「유흥음식업 집회 중 분신」 제하의 보도사진

2.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유흥음식업 관련 집회를 보도하면서 집회 도중 분신하는 장면을 여과없이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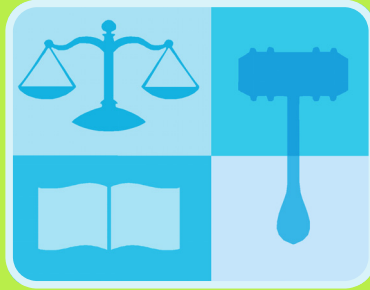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경북일보

2013년 09월 11일
04면 (사회)

유흥음식업 집회 중 분신 10일 오후 2시께 춘천시 춘천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영세유흥음식업 개별소비세 소급부과 지침철회 규탄대회에서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정영수(68) 지회장이 분신을 하고 있다. 사고 직후 정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중태다.

(15.5×10.3)cm



제 5 부

언론조정 · 중재사건 전체 목록

- 제5부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2013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언론조정·중재 사건의 전체 목록을 게재합니다. 전체목록은 언론조정·중재 사건이 접수된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게재되었습니다.
-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공인이나 국가기관(공공단체 포함) 및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익명으로 (○○표시) 표기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내 ‘처리내용’ 중 부제소 조항과 이행강제금 조항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제소 조항 : 당사자 간 합의하거나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중재결정(이하 ‘결정’으로 표기함)한 사항을 피신청인이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함
이행강제금 조항 :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중재부가 결정(쌍방 동의)한 사항을 피신청인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정 금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
- 처리결과 내 ‘이행방법’은 방송이나 인터넷매체 대상사건 중 조정조서(조정성립의 경우)나 결정서에 적시된 피해구제 보도 방법을 의미합니다. 편집자 주

제 1 장 : 조정사건 전체 목록

2013경기조정1~2	
(매체별 정정청구) 부천○○재단 對 부천신문, 인터넷 부천신문	
조 정 대 상	• 부천신문 : 『[기고] 부천시 ○○재단 대표이사 ‘스스로 물러나야’』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일자 11면) • 인터넷 부천신문 : 『〈기고〉 “부천시○○재단 대표이사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재단이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대하는 등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이 행 결 과	『부천○○재단측, 특정 대선 후보지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부천신문 2013년 1월 17일자 2면, 인터넷 부천신문 1월 12일자)
2013서울조정1~2	
(매체별 손해청구) (병합) 이○○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불만제로 UP 프로그램 『5회』 고소한 실험 - 원액기 열풍 속에서 현명하게 살아남는 법』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8일자 20:50) • iMBC : 『[다시보기] 고소한 실험 - 원액기 열풍 속에서 현명하게 살아남는 법』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시중에 판매되는 원액기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쇼호스트인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무단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iMBC 기사삭제,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iMBC 기사삭제] 홈페이지의 조정대상보도 동영상 중 신청인(초상 및 음성)이 나와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향후 이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함
2013경기조정3~4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인천광역시 ○○군 ○○기자실 對 수도권일보, 인터넷 수도권일보	
조 정 대 상	『군청출입 사이비기자 행태 비난 빗발』 제하의 기사 (수도권일보 2012년 10월 8일자 15면, 인터넷 수도권일보 10월 8일자)
신청인주장	군청 출입기자들로 구성된 신청인 단체가 관내 기업체를 상대로 상품권 등 물품을 요구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수도권일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군청 출입기자 기업체 상품권 요구”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수도권일보 2013년 1월 31일자 15면, 인터넷 수도권일보 1월 30일자)

2013대전조정1~2	(반론·손배청구) 1. (사)충남○○○부모회 ○○지회, 2. 한○○ 對 파워뉴스
조 정 대 상	『“공갈·협박 문자...신변보호” 요청』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회원 수를 부풀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대전조정3~4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전국○○○○○○노동조합 ○○○○지역본부 對 대전일보, 인터넷 대전일보
조 정 대 상	• 대전일보 : 『○○의료원 알고도 은폐 물의』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0일자 7면) • 인터넷 대전일보 : 『마취과의사 척추환자 상습시술 조직적 은폐』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의 구성원이 지역의료원 마취과의사의 해임과정에서 해당의사를 두둔하고, 해임이 결정될 경우 물리적인 행사에 나서겠다는 식의 압력을 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대전일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노조 ○○○○지역본부 압력 행사'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7일자)

2013서울조정3	(정정청구) 김○○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고양시 풍동 백마교 밑 가건물 강제철거 '눈치보기'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신청인주장	고양시의원인 신청인이 백마교 밑 불법가건물 철거를 반대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전국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고양시 백마교 밑 가건물 강제철거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8일자)

2013서울조정4~5, 62~71	(매체별 손배청구) 송○○ 對 인터넷 스포츠한국 ⁽⁴⁾ , 와우넷 ⁽⁵⁾ , bnt뉴스 ⁽⁶²⁾ , 헬스코리아뉴스 ⁽⁶³⁾ , 인터넷 일요시사 ⁽⁶⁴⁾ , Citydaily(시티데일리) ⁽⁶⁵⁾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⁶⁶⁾ , 인터넷 엠티엔(MTN) ⁽⁶⁷⁾ , 뉴스웨이 ⁽⁶⁸⁾ , 인터넷 SBS E ⁽⁶⁹⁾ , 뉴스엔 ⁽⁷⁰⁾ , 데일리그ريد ⁽⁷¹⁾
조 정 대 상	• 인터넷 스포츠한국 : 『○○○○○ 박○○ 교제설 논란 덮고 국내 컴백 집중』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1일자) • 와우넷 : (1) 『송○○, 박○○ 폭로 “난 너한테 도대체 뭐였니...아는척도 하지말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 박○○, 11살 연상녀 결별 폭로 논란 “이용 당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1일자)

조 정 대 상

- **bnt뉴스** : (1) 『“송○○ 교제논란” 박○○ 출국, 일본서 프로모션 진행 예정』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2) 『송○○, 박○○ 폭로 “난 너한테 도대체 뭐였니…아는척도 하지말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3) 『박○○ 측 “송○○과 일적인 관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4) 『박○○ 공식입장 “송○○과 교제 사실무근, 업무적 관계일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5) 『송○○ 박○○ 반박 “막무가내 정신병자 취급에 협박까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헬스코리아뉴스** : 『박○○ “송○○ 디자이너와 친분은 있지만 교제는 사실 아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인터넷 일요시사** : 『박○○ 해명 “송○○과 교제? 사실무근”…송○○은 누구?』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Citydaily(시티데일리)** : (1) 『송○○ ○○○○○ 박○○ 연인 선언 아닌 결별폭로!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2) 『박○○ 송○○ 디자이너와 열애 논란에도 일본 프로모션 감행』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3) 『박○○ 해명, 송○○ 글에 ‘사적으로 만난 적 없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4) 『송○○ 페이스북 2차 해명글 두고 네티즌들 ‘갑론을박’』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1) 『송○○ 폭로 “내가 이용하기 쉬운 사람이었나?” 분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2) 『박○○ 해명 “송○○과 사적 만남 없었다. 이런 글 황당” 반박』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3) 『박○○ 디자이너 송○○과 관계 전면 부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4) 『송○○ 반박글 “막무가내로 정신병자 취급이라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인터넷 엠티엔(MTN)** : (1) 『박○○ 출국, 논란 뒤로 한 채 日 프로모션 일정 소화』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2) 『박○○ 해명, 송○○과 교제사실 사실 아냐, ‘업무적인 관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3) 『디자이너 송○○, 박○○과 결별 폭로? ‘난 대체 뭐였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4) 『송○○, 박○○ 관련 글 삭제 후 ‘정신병자 취급이라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뉴스웨이** : 『박○○, 송○○ SNS 글 “한밤의 해프닝” 공식 입장 전해』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인터넷 SBS E** : 『박○○ 측, “송○○과는 업무관계일 뿐” 공식입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뉴스엔** : (1) 『송○○ 박○○ 비밀관계 폭로 “오랜 열애 배신감..이용당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 (2) 『박○○ “송○○과 연인사이 아니었다, 오해있는 듯” 해명』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3) 『송○○ 심경 “박○○ 관련 추호의 거짓없다…막무가내 정신병자 취급”』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4) 『박○○ 측 “송○○과 교제 100% 사실 아니다” 해명 공식입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데일리그리드** : 『디자이너 송○○, 박○○과 결별폭로, “나를 찌질이로 만들어줘서 고맙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6~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주)○○○○○ 對 전자신문, 이티뉴스
조 정 대 상	- 전자신문 : 『SCM(공급망관리) 토종 솔루션 양대산맥...엇갈린 행보 왜?』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일자 13면) - 이티뉴스 : 『토종 SCM 솔루션 양대 업체 희비 갈렸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31일자)
신청인주장	공급망관리(SCM) 솔루션 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수주실패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약속)

2013서울조정10~11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은수미 對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 중앙일보 : 『은수미 민주당 의원 ‘음주 국감’ 물의』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8일자 12면) - 온라인 중앙일보 : 『“새누리 반대하면...” 민주당원 ‘음주국정’ 발각』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8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음주 질의를 벌여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끝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온라인 중앙일보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온라인 중앙일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면에 최신뉴스의 기사목록 상위 5번째 이내에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을 게재함, 이후로는 10일 동안 뉴스면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은수미 민주당 의원 음주국감 물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3년 1월 23일자 6면, 온라인 중앙일보 1월 23일자)

2013광주조정1~2	(정정·반론청구) ○○중학교 對 인터넷 전광일보
조 정 대 상	『학교폭력 피해학생 황당한 전학조치 ‘물의’』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전학조치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황당한 전학조치 물의”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6일자)

2013서울조정12~13	
조 정 대 상	(정정 · 손해청구) 1. 김○○, 2. 김△△ 對 KBS-2TV
신청인주장	의뢰인 K 프로그램 『53회』 위기의 K - 365일 물 새는 집?』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20일자 20:50)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손해청구 :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200만 원 지급) ※ 이행방법 : [기사삭제] KBS미디어의 조정대상보도 ‘다시보기’ 동영상 전체를 삭제함
2013서울조정14~15	
조 정 대 상	(매체별 손해청구) 장○○ 對 이데일리(신문), 이데일리(인터넷)
신청인주장	• 이데일리(신문) : 『야후의 쓴소리』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7일자 1면) • 이데일리(인터넷) : 『“韓 소비자 지나치게 까다롭다”...야후 前 임직원 작심 발언』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4일자)
처 리 결 과	신청인이 개인 블로그에 쓴 글을 신청인의 동의 없이 왜곡 편집하여 기사에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서울중재 5~6 참조)]
2013서울조정16	
조 정 대 상	(정정청구) 1. ○○○○○○주식회사, 2. 김○○ 對 뉴시스
신청인주장	(1) 『고발하고 협박당안』 농어촌공사 의혹 증폭』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9일자) (2) 『폐기물 업체 단속정보 미리 알린 나주시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0일자)
처 리 결 과	농업용수를 무단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청인 회사가 해당 사실을 고발한 한국농어촌공사를 협박하였고, 관할 시청으로부터 업체단속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7~24	
조 정 대 상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장하나 對 문화일보 ^(17~18) , 인터넷 문화일보 ^(19~20, 17~18과 병합) , 네이버 ^(21~22) , 다음 ^(23~24)
신청인주장	• 문화일보 : 『제주해군기지 또 발목잡은 민주당의 반안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일자 39면) • 인터넷 문화일보 · 네이버 · 다음 : 『[사설] 제주해군기지 또 발목잡은 민주당의 반안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일자)
처 리 결 과	신청인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명박 처형, 국민명령 하달’이라는 글을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문화일보 · 인터넷 문화일보 : 조정불성립결정 • 네이버 · 다음 : 각 취하

2013서울조정25	(반론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미디어스
조 정 대 상	『블랙아웃 사고낸 KBS경인방송, '1년' 재허가』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9일자)
신청인주장	방송통신위원회가 KBS경인방송의 재허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 것이 블랙아웃 사고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7 참조)]

2013대구조정1~4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변○○ 對 경북일보, 인터넷 경북일보
조 정 대 상	『동구청, 서기관 승진인사 관련 '시골'』 제하의 기사 (경북일보 2012년 12월 26일자 8면, 인터넷 경북일보 12월 26일자)
신청인주장	구청의 서기관 승진인사와 관련해 구청 노동조합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신청인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두고, 신청인이 “노조가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과잉충성하려는 의도” 라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 이행방법 : [인터넷 경북일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지역뉴스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72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동구청 승진인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북일보 2013년 1월 18일자 6면, 인터넷 경북일보 1월 17일자)

2013서울조정26~27	(정정·반론청구) 양천구시설관리공단 對 디지털 강서양천일보
조 정 대 상	『양천시설관리공단, 부당해고·모해위중 '소요'』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공단이 직원을 부당 해고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3~4 참조)]

2013서울조정28~29	(정정·반론청구) (주)○○교육 對 프레스바이플
조 정 대 상	(1) 『초등학교 학습지에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발전(?)”』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5일자) (2) 『○○교육 “학습지에 친일요소 없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초등학교 사회 학습지가 일제 강점기 한국에 새로운 문물이 들어와 사회가 발전했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국·검정 교과서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기사삭제] 조정대상기사 (1), (2)를 홈페이지에서 더 이상 검색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함

2013서울조정30		(정정청구) 경찰청 對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할인 가능한데 굳이 정가구입 ‘수상한 포돌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8일자 8면)	
신청인주장	경찰인 신청인이 순찰차에 태블릿PC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할인가 대신 정가로 물품을 구입할 계획이므로 세금이 낭비될 것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경찰 순찰차 태블릿 PC예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8일자 8면)	
2013서울조정31~32		(정정 · 손해청구) 조○○ 對 MBC-TV
조 정 대 상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 『[시청자 제보] 뒷집 스토커 때문에 집 밖으로 못 나오는 여자』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14일자 08:3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실재하지 않는 스토커에게 시달리고 있고, 아파트 관리실 직원과 주민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유감표명, 손해배상 375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조정대상보도 및 신청인 관련 촬영분을 ‘재방송’, ‘다시보기 서비스’, ‘자료화면’ 등 그 방식을 불문하고 사용하지 아니함	
이 행 결 과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 『‘위층 스토커 때문에 집 밖에 못 나오는 여자’ 방송 관련 알림』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25일자 08:30)	
2013서울조정33		(정정청구) 정동영 對 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정동영, 트위터에 ‘노인 폄하 발언’ 논란』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15일자 19:55)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지난 제17대 총선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노인 폄하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일간지 보도내용을 발체 인용한 것을 직접 발언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34~35		(매체별 정정청구) 국가정보원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박근혜 시대 - 인사가 만사다 <2> 국정원장』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12월 24일자 A1~3면, 동아닷컴 12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북한 붕괴 임박론’ 및 ‘2011년 5월 김정은 방중(訪中)’ 등과 같은 잘못된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이 행 결 과	• 동아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9일자 2면) • 동아닷컴 : 『[알려왔습니다] 본보 2012년 12월 24일자 A1·2·3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9일자)	

2013서울조정36, 39~40	(매체별 손해청구) 이○○ 對 인터넷 경향신문 ⁽³⁶⁾ , 네이버 ⁽³⁹⁾ , 다음 ⁽⁴⁰⁾
조 정 대 상	『○○제약, 내부제보자 입 막으려 이런 짓까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1일자)
신청인주장	국내 한 제약회사가 자사의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신고한 전직 직원을 협박했다고 보도하면서 신고자인 신청인의 신원과 사생활을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인터넷 경향신문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2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3서울조정37~38	(정정·손배청구) 사단법인 지리산○○○○○○○○보존연합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인○○의 지리산 별장, 계속 유지될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3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관리중인 유적지가 새누리당 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인 모 씨의 개인별장이고, 문화재 보존 가치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손해청구 :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약속)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 ‘인○○의 지리산 별장...’ 보도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5일자)
2013서울조정41~43, 828	(매체별 손해청구) 이○○ 對 쿠키뉴스 ⁽⁴¹⁾ , 네이버 ⁽⁴²⁾ , 다음 ⁽⁴³⁾ , 디지털 보사 ⁽⁸²⁸⁾
조 정 대 상	• 쿠키뉴스 :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게 하겠다”... 리베이트 제약회사 내부제보자 협박』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1일자) • 네이버·다음 : 『“끝까지 고소, 대한민국서 살 수 없게 하겠다”... ‘리베이트 ○○제약’ 내부제보자 협박』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2일자) • 디지털 보사 : 『○○ 리베이트 공판 또 연기... 진실 공방 본격화』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0일자)
신청인주장	국내 한 제약회사가 자사의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신고한 전직 직원을 협박했다고 보도하면서 신고자인 신청인의 신원과 사생활을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쿠키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디지털 보사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강원조정1	(손배청구) 광○○ 對 G1 강원민방-TV
조 정 대 상	생방송 투데이 강원 프로그램 『투데이 시사』 연말 음주사고 천태만상』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24일자 18:30)
신청인주장	연말 음주사고에 대해 보도하면서, 공익근무요원인 신청인이 피해자로 작성한 진술서를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기사삭제] G1 강원민방-TV 홈페이지 내 조정대상보도, 재방송 및 인터넷 VOD영상에서 신청인 관련 부분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함
2013서울조정44~46	(매체별 정정청구) (주)○○○○○○서비스 對 컨슈머타임스⁽⁴⁴⁾, 네이버⁽⁴⁵⁾, 다음⁽⁴⁶⁾
조 정 대 상	『○○디스크 · ○○박스는 ‘아동’ 유통채널인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서비스하는 웹 하드가 유해정보 필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음란물 유통채널로 활용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서울조정47	(손배청구) 홍○○ 외 2인 對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조○○ 죽었으니 나도…” 암 투병 50대 주부 자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1일자 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가족 구성원이 자살한 사건을 전직 프로야구 선수의 모방자살인 것처럼 보도하고 유가족의 신원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3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익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를 통해 고인과 유가족이 피해자로 특정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로써 객관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013서울조정48~49	(매체별 손배청구) 빗○○○ ○○○○ 對 디원TV, 서울신문STV
조 정 대 상	(1) 사냥꾼 이대우 프로그램 『1화 - 고독한 추격』 제하의 보도 (디원TV 2012년 12월 24일자 10:20, 서울신문STV 12월) (2) 사냥꾼 이대우 프로그램 『9화』 제하의 보도 (디원TV 2012년 12월 24일자 10:20, 서울신문STV 12월)
신청인주장	절도사건의 피해자인 신청인의 초상, 성명 등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55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디원TV · 서울신문STV : 향후 조정대상보도(사냥꾼 이대우 1화, 9화)가 방송되지 않도록 조치함, CJ E&M(주)은 조정대상보도(사냥꾼 이대우 1화, 9화)가 향후 방송 또는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내용(경위 포함)을 담은 공식 문서를 신청인에게 전달하도록 함

2013서울조정50	(반론청구) 박○○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천연기념물 흑두루미 내쫓는 4대강사업 막읍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8일자)
신청인주장	흑두루미 도래지인 해평습지를 대체하기 위해 조성된 강정생태하천이 대학교수인 신청인의 자문에 따라 조성된 곳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8 참조)]

2013서울조정51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신아일보
조 정 대 상	『“범죄예방등 민생치안 매진” 취지 무색?』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6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노래방 업주인 동문에게 단속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불법 영업을 묵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경기조정5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시대일보
조 정 대 상	『경찰관은 팔이 밖으로 굽어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6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노래방 업주인 동문에게 단속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불법 영업을 묵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경찰관은 팔이 밖으로 굽어야 한다”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0일자)

2013서울조정52~53	(매체별 손해청구) (병합) 1. 이○○, 2. 김○○ 對 TV조선, 인터넷 TV조선
조 정 대 상	• TV조선 : 주말뉴스 7 프로그램 『남녀 3명 승용차서 숨진채 발견...동반자살 추정』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12일자 19:00) • 인터넷 TV조선 : 『남녀 3명 승용차서 숨진채 발견...동반자살 추정』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집단지살사건을 보도하면서 유가족인 신청인들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50만 원,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서울조정54	(정정청구) ○○○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조 정 대 상	(1) 『광주 미혼모보호시설, 미혼모 상대로 진술서 작성 요구』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1일자) (2) 『광주 ○구, 프로그램 불참한 미혼모 ‘체벌’ 경악』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4일자)
신청인주장	미혼모보호시설인 신청인 기관이 입소자에게 입양과 양육에 관련된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프로그램에 불참한 입소자에게 체벌을 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서울조정55, 82~85, 91~118, 294, 297~298	(매체별 반론청구) ○○○○○○○(주) 對 스포츠서울닷컴⁽⁵⁵⁾, 인터넷 채널A⁽⁸²⁾, 인터넷 경향신문⁽⁸³⁾, 노컷뉴스⁽⁸⁴⁾, 뉴스1 코리아⁽⁸⁵⁾, 뉴스토마토⁽⁹¹⁾, 뉴스핌⁽⁹²⁾, 뉴시스⁽⁹³⁾, 매경닷컴⁽⁹⁴⁾, e머니투데이⁽⁹⁵⁾, 메디컬투데이⁽⁹⁶⁾, 인터넷 서울경제⁽⁹⁷⁾, 아시아경제닷컴⁽⁹⁸⁾, 아이뉴스24(inews24)⁽⁹⁹⁾,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¹⁰⁰⁾, 이데일리(인터넷)⁽¹⁰¹⁾, 연합뉴스⁽¹⁰²⁾, 인터넷 일간스포츠⁽¹⁰³⁾, 조선비즈닷컴⁽¹⁰⁴⁾, 조세일보⁽¹⁰⁵⁾, 인터넷 파이낸셜뉴스⁽¹⁰⁶⁾, 뷰티한국⁽¹⁰⁷⁾, EBN⁽¹⁰⁸⁾, KBSI⁽¹⁰⁹⁾, 인터넷 K-TV⁽¹¹⁰⁾, 인터넷 MBN⁽¹¹¹⁾, 인터넷 SBS CNBC⁽¹¹²⁾, 인터넷 이지경제⁽¹¹³⁾, 투데이코리아⁽¹¹⁴⁾, 인터넷 일간투데이⁽¹¹⁵⁾, e중앙뉴스⁽¹¹⁶⁾, 인터넷 소비자를 위한 신문⁽¹¹⁷⁾, 인터넷 네트워크신문⁽¹¹⁸⁾, SBSI⁽¹¹⁹⁾, 상조매거진⁽²⁹⁷⁾, 인터넷 한국일보⁽²⁹⁸⁾
조 정 대 상	• 스포츠서울닷컴 : 『“유족 울린’ ○○○○○○○, 고객 돈 부실 관리 공정위 철폐』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인터넷 채널A : 『[뉴스A] 내가 든 상조업체도 흑시? 가입 10만 명 ‘불안 불온’』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인터넷 경향신문 : 『고객 돌려줄 장례비 적립도 없고… 몸집만 불린 상조업체』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노컷뉴스 : 『선수금 못 채운 채 무작정 몸집키운 상조업체 적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뉴스1 코리아 : 『공정위,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회사 3개업체 검찰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뉴스토마토 : 『이관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 ‘방치’..상조회사 제재』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뉴스핌 : 『○○○○○○○○, 거짓광고로 소비자 기만…공정위 ‘시정명령’』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뉴시스 : (1) 『공정위, ○○○○○○○ 등 상조업체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2) 『공정위, 선수금 보전한 것처럼 속인 상조회사 검찰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매경닷컴 : 『공정위, 고객 돈 부실 관리·거짓 광고 상조업체…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e머니투데이 : 『공정위, ○○○○○○○ 등 상조업체 3곳 검찰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메디컬투데이 : 『회원이관 과정에서 불법행위 3개 상조업체 고발조치』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인터넷 서울경제 : (1) 『선수금 보전 안한 상조업체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2) 『공정위, ‘고객돈 관리부실’ 상조업체에 시정명령·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아시아경제닷컴 : 『“선수금 보전도 안하고 회원 넘겨버려?”…공정위 제재』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아이뉴스24(inews24) : 『“회원인수 과정서 불법” 상조업체 적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공정위, ○○○○○○○·○○·○○ 등 상조업체 3곳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이데일리(인터넷) : 『고객 선수금 제대로 인수하지 않은 상조업체, 공정위에 ‘철폐’』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연합뉴스 : 『상조업체 고객장례비 적립없고 거짓광고…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인터넷 일간스포츠 : 『공정위, 고객 선수금 속인 상조회사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조선비즈닷컴 : 『선수금 속이고 피해보험계약 건너뛴 상조업체 3개 제재』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조세일보 : 『불안한 상조업체, 선수금 속이고 미등록 불법영업』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공정위, ‘고객 돈 부실관리’ 상조업체 3곳 검찰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뷰티한국 : 『회원이관 과정에서 불법행위 한 상조업체 적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조 정 대 상	• EBN : 『공정위, ○○○○○○○○ 등 3곳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KBSi : (1) 『‘선수금 예치’ 위반, 상조업체 첫 제재』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2) 『‘선수금 예치’ 위반, 상조업체 3곳 첫 적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0일자) • 인터넷 K-TV : 『‘고객 돈 부실 관리’ 상조업체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0일자) • 인터넷 MBN : 『부실 상조 ‘깜짝 마’...예치 은행 권리 강화』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인터넷 SBS CNBC : (1) 『공정위, ○○○○○○○○ 등 상조업체 3곳 검찰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2) 『상조업체 고객장례비 적립않고 거짓광고...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인터넷 이지경제 : 『공정위, ○○○○○○○○ 등 상조업체 3곳 검찰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투데이코리아 : 『공정위, 선수금 관련 서류조작한 상조회사 검찰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인터넷 일간투데이 : 『공정위, “상조업체 인수합병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검찰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e중앙뉴스 : 『상조업체 고객 장례비 적립 않고 거짓광고』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0일자) • 인터넷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선수금보전 관련 법위반, 상조업체 제재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1일자) • 인터넷 네트워크신문 : 『공정위, 장례비 누락 상조업체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SBSi : 『상조업체 고객 장례비 적립 않고 거짓광고』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상조매거진 : 『공정위, 선수금 속여 예치한 ○○○○○○○○ 등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인터넷 한국일보 : 『선수금 자료 속인 상조업체 3곳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신청인주장	상조회사인 신청인 업체가 고객 돈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이다.
처 리 결 과	• 스포츠서울닷컴 · 인터넷 경향신문 · 뉴스1 코리아 · 뉴스토마토 · 뉴시스 · 매경닷컴 · 메디컬투데이 · 인터넷 서울경제 · 아시아경제닷컴 · 아이뉴스24(inews24)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이데일리(인터넷) · 인터넷 일간스포츠 · 조세일보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뷰티한국 · EBN · KBSi · 인터넷 K-TV · 인터넷 MBN · 인터넷 SBS CNBC · 인터넷 이지경제 · 투데이코리아 · 인터넷 일간투데이 · e중앙뉴스 · 인터넷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인터넷 네트워크신문 · SBSi · 인터넷 한국일보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인터넷 채널A : 조정불성립결정 • 노컷뉴스 · 뉴스핌 · 연합뉴스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e머니투데이 :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 조선비즈닷컴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27 참조)] • 상조매거진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노컷뉴스 : [반론보도] 홈페이지 경제섹션 뉴스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 뉴스핌 : [반론보도] 홈페이지 정치 섹션 산업정책뉴스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 e머니투데이 : [후속보도] 홈페이지 정책분석 섹션 경제정책뉴스 목록 상단에 후속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 연합뉴스 : [반론보도] 홈페이지 경제섹션 주요뉴스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 노컷뉴스 :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2일자) • 뉴스핌 :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4일자) • e머니투데이 : 『‘○○○○○○○○’ 관련 추가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4일자) • 연합뉴스 :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4일자) • 상조매거진 :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7일자)

2013서울조정56, 222~225, 250, 260~262, 285, 435	(매체별 손배청구) 박○○ 對 뉴스토마토 ⁽⁵⁶⁾ , 조선닷컴 ⁽²²²⁾ , 세계닷컴 ⁽²²³⁾ , 아시아경제닷컴 ⁽²²⁴⁾ , 인터넷 주간현대 ⁽²²⁵⁾ , MK뉴스 ⁽²⁵⁰⁾ , 뉴시스 ⁽²⁶⁰⁾ , 노컷뉴스 ⁽²⁶¹⁾ , 동아닷컴 ⁽²⁶²⁾ , 온라인 중앙일보 ⁽²⁸⁵⁾ , 뉴스엔 ⁽⁴³⁵⁾
조 정 대 상	• 뉴스토마토 : 『파혼당하자 협박..‘화성인 바이러스’ 출연 여성CEO 불구속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4일자) • 조선닷컴 : 『‘파혼에 앙심’...협박 일삼은 30대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4일자) • 세계닷컴 : 『“사과해라” 30대 여성 사업가, 파혼 남성 협박』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5일자) • 아시아경제닷컴 : 『“피눈물 흘리길 바라” 협박한 여사장의 최후』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5일자) • 인터넷 주간현대 : 『파혼남성에 ‘피눈물 흘리길 바란다’ 협박 이메일 보낸 40대』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6일자) • MK뉴스 : 『“결혼하자더니...” 여성CEO 파혼男 협박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4일자) • 뉴시스 : 『‘파혼에 앙심’...협박 일삼은 30대女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4일자) • 노컷뉴스 : 『‘파혼 당하자 협박’ 여성 사업가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4일자) • 동아닷컴 : 『“10년간 괴롭히겠다” 파혼男 협박 여성CEO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4일자) • 온라인 중앙일보 : 『“10년간 괴롭히겠다” 파혼男 협박 여성CEO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뉴스엔 : 『30대女, 의사와 파혼하자 “피눈물 흘리기 바란다” 섬뜩 이메일』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갑작스런 파혼에 앙심을 품고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상대방의 차량 등을 손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뉴스토마토 : 조정불성립결정 • 조선닷컴 · 세계닷컴 · 아시아경제닷컴 · 인터넷 주간현대 · MK뉴스 · 뉴시스 · 노컷뉴스 · 동아닷컴 · 온라인 중앙일보 · 뉴스엔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57~60	(매체별 조정 · 손배청구) 이○○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 ○○문화수련원 국고 횡령 규모 눈덩이』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3년 1월 16일자 13면, 인터넷 한국일보 1월 15일자)
신청인주장	문화수련원 원장인 신청인이 국고보조금을 받아 일부를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서울조정61	(손배청구) 최○○ 對 SBS-TV
조 정 대 상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 『152회 - ‘변태사진사!’ 그는 왜, 여중생결에 서있나?』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18일자 20:5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인근에서 영업하고 있는 이발소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몰래 촬영해 방송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3경기조정6~7	(매체별 손배청구) 송○○ 對 인터넷 OBS경인TV, 인터넷 경인일보
조 정 대 상	• 인터넷 OBS경인TV : (1) 『박○○ 해명 “연인사이? 업무적인 관계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송○○, 박○○에 “다른 사람 맘에 두고 날 만났냐” 폭로』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송○○, 박○○ 측 해명에 “난 추호의 거짓도 없이 말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박○○과 비밀연애 주장한 송○○, 그녀는 누구인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5) 『송○○과 진실공방 휩싸인 박○○, 그는 누구인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6) 『박○○, 디자이너 송○○과 어떻게 알게 된 사이?』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7) 『[독특한 연예뉴스] 박○○, 11살 연상녀 송○○과의 염문설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일자) • 인터넷 경인일보 : 『송○○ 박○○ “사졌다” vs “업무적 관계일 뿐이다”... 과연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경기조정8~9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오○○ 외 21인 對 경기신문, 인터넷 경기신문
조 정 대 상	『“조용한 마을에 승마장 조성 안 될 말”』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3년 1월 16일자 8면, 인터넷 경기신문 1월 16일자)
신청인주장	남양주시 승마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해당마을 주민인 신청인들이 승마장 공사 업체에 도로 지분을 분배해 달라는 등 터무니 없는 사항을 요구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경기신문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남양주시 ○○○ ○○○ 승마장 조성’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3년 2월 13일자 8면, 인터넷 경기신문 2월 13일자)

2013대구조정5~8	(매체별 조정 · 손해청구) 이○○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 ○○문화수련원 국고 횡령 규모 눈덩이』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3년 1월 16일자 13면, 인터넷 한국일보 1월 15일자)
신청인주장	문화수련원 원장인 신청인이 국고보조금을 받아 일부를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서울조정72~73	(정정 · 손해청구) 박○○ 對 이데일리(인터넷)
조 정 대 상	『투운, 휴대폰 번호 공개.. 매시간 수백 통화 몰려』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아이돌 스타 투운의 전화번호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후속보도, 손해배상 50만 원,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기사수정]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의 전화번호(010-○○○○-○○○○)가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함 [기사수정] 조정성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정대상기사가 잘못되었음을 알리고 투운 중 지윤의 전화번호는 <010-○○○○-○○○○>임을 재공지함으로써 잘못된 전화번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후속기사를 게시함
이 행 결 과	『투운, 휴대폰 번호 꼭 확인해 주세요』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3일자)

2013전북조정1~4	(매체별 조정 · 반론청구) 기독교○○○○교회○○○○교회 對 전민일보, 인터넷 전민일보
조 정 대 상	- 전민일보 : 『신축현장 인근 ‘주민 집 무너질 판’』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3자 8면) - 인터넷 전민일보 : 『삼학동 주택가 신축현장 인근 주민 집 무너질 판』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교회가 신축하고 있는 공사 현장 주변의 주민 집에 균열이 생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서울조정74~77	(매체별 조정 · 손해청구) 전국○○○○노동조합 ○○○○분과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아찔한 짝퉁 덤프트럭...8t 청소차 불법개조해 27t 싣고 질주』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12월 17일자 A14면, 동아닷컴 12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청소용 차량 차주들이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과적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 각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정보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손해청구 : 각 취하 ※ 이행방법 : [동아닷컴에 정정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섹션 뉴스목록 상단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2013경기조정10~13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경기일보, 인터넷 경기일보
조 정 대 상	『구리시, 왕숙천 체육공원 위탁계약 ‘몰아주기’』 제하의 기사 (경기일보 2013년 1월 25일자 7면, 인터넷 경기일보 1월 25일자)
신청인주장	구리시가 왕숙천 체육공원 경비와 시설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인 업체에 특혜를 준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3서울조정78~8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1. 황○○ 외 3인, 2. 김○○ 외 4인 對 SBS-TV, SBSi
조 정 대 상	• SBS-TV : SBS 생활경제 프로그램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24일자 11:00) • SBSi :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범죄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들의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SBS-TV에 정정보도, 신청인 1에게 각 7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연대하여 손해배상,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SBS 생활경제 프로그램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SBS-TV 2013년 2월 19일자 11:20)
2013경기조정14	(반론청구) 이○○ 對 성남투데이
조 정 대 상	(1) 『성남시의회 이○○ 의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5일자) (2) 『“성남 여성장애인 성추행 이○○ 시의원 사퇴하라”』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9일자) (3) 『여성장애인 성추행 ‘이○○ 의원’ 윤리위 제소될까?』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여성 장애인의 가슴을 밀치는 등 성추행을 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수정) ※ 기타 합의사항 : 인터넷 유튜브에 게시한 “이○○(새)시의원의 장애인 성추행 관련 규탄 시위” 제목의 동영상 삭제 완료함 ※ 이행방법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기사수정] 조정대상기사의 동영상을 삭제함
이 행 결 과	『‘성남시의회 이○○ 의원’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5일자)
2013서울조정86~8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이○○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1) 『국회에서 대선 개표방식 시연회 열어줬더니...“시연회 자체가 조작” 생떼』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8일자 1면), (2) 『국회서 개표 시연해줘도... “이건 쇼”라는 사람들』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8일자 5면) • 조선닷컴 : 『선관위가 개표 보여줘도... “이건 쇼”라는 사람들』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대선 전자개표 시연회가 조작이라며 거칠게 항의하고, 행사장 바닥에 드러누워 생떼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선일보 :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조선닷컴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조선일보 : 『국회 대선 개표방식 시연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2면)
2013서울조정90	(정정청구) 박○○ 對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전(박○○) 현직(진익철) 구청장 갈등 “서초구는 만신창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8일자 17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서초구청장 재임시절 5천만 원을 횡령했으며, 현 구청장의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과 협의하여 인터뷰 기사 보도 약속, 조건부 후속보도 약속) ※ 이행방법 : [조건부 후속보도 약속] 경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리될 경우 무혐의 사실을 충실하게 지면에 반영하기로 함
2013대구조정9~10	(정정·손배청구) 진○○ 외 6인 對 매일신문
조 정 대 상	『안동 ○○의용소방대, 공금 유용 ‘말썽’』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6일자 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의용소방대 공금을 유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안동 ○○소방대 공금 유용’ 경비 자체 회칙 근거 지출』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8일자 6면)
2013광주조정3~4	(정정·손배청구) 양○○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여수경찰 총체적 기강 난맥 노출…‘조직 위기’』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전직 경찰서장인 신청인이 사행성 오락 게임장 비리 사건과 관련해 문책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대전조정5~8	(매체별 정정청구) 1. 천안동남경찰서, 2. 정 ○ 對 꼴통뉴스⁽⁵⁾, 뉴스 소통⁽⁶⁾, 천안매일-천안톱뉴스⁽⁷⁾, 충남도민일보⁽⁸⁾
조 정 대 상	• 꼴통뉴스 : (1) 『천안동남경찰서 정보관, “퇴거 확인서 작성?” 이주 종용?』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7일자), (2)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민가, “부수고,태우고” 전쟁터 방불』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9일자) • 뉴스 소통 : (1) 『[단독]천안동남경찰서, 정보관 “퇴거 확인서 작성?” 이주 종용?』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7일자), (2) 『[단독]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민가, “부수고,태우고”전쟁터 방불』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9일자)

조 정 대 상	• 천안매일-천안투데이 : (1) 『천안동남경찰서 정보관, “이주중용 했다.” 의혹제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31일자), (2) 『병천면 가전리 민가, “부수고,태우고”전쟁터 ???』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일자) • 충남도민일보 :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민가, “부수고,태우고”전쟁터 방불』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31일자)
신청인주장	천안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천안동남경찰서 정보관이 해당 주민들에게 퇴거확인서 작성을 종용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폴통뉴스·뉴스 소통·천안매일-천안투데이·충남도민일보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폴통뉴스·뉴스 소통·천안매일-천안투데이·충남도민일보 : 추후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함 ※ 이행방법 • 폴통뉴스·뉴스 소통·천안매일-천안투데이·충남도민일보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 폴통뉴스 : 『[동남경찰서 정보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4일자) • 뉴스 소통 : 『[동남경찰서 정보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4일자) • 천안매일-천안투데이 : [동남경찰서 정보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4일자) • 충남도민일보 : 『[천안모경찰서 정보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4일자)

2013서울조정119~126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정○○ 對 SBS-TV ^(119~120) , SBSi ^(121~122) , 네이버 ^(123~124) , 네이트 ^(125~126)	
조 정 대 상	•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경찰이 조직폭력배 동원…협박해 돈 갈취』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30일자 20:00) • SBSi·네이버·네이트 : 『[단독] 경찰이 조직폭력배 동원…협박해 돈 갈취』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권자를 협박하는 등 금전비리 혐의로 해임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SBS-TV :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SBSi에 추후보도, 손해배상 7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SBSi·네이버·네이트 :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약속) ※ 기타 합의사항 • SBS-TV : 추후보도문을 네이버, 네이트 등 포털에도 전송하여 노출되도록 함 ※ 이행방법 • SBS-TV : [SBSi에 추후보도] SBSi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박스처리하여 추후 보도문을 별도로 게재함
이 행 결 과	•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추후보도문] ‘경찰이 조직폭력배 동원…협박해 돈 갈취’ 관련』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22일자 20:00) • SBSi·네이버·네이트 : 『[추후보도] 경찰이 폭력배 동원 돈 갈취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2일자)

2013서울조정127~134	(매체별 추후 · 손배청구) 정○○ 對 연합뉴스 ^(127~128) , 네이버 ^(129~130) , 다음 ^(131~132) , 네이트 ^(133~134)
조 정 대 상	『경찰이 지인 돈 뜯거나 뺑소니 피의자 갈취』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권자를 협박하는 등 금전비리 혐의로 해임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연합뉴스 : ▷ 추후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기사삭제)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약속) • 네이버 · 다음 · 네이트 : ▷ 추후청구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2013서울중재9~11 참조)] ▷ 손배청구 -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약속) ※ 기타 합의사항 • 연합뉴스 : 추후보도문을 게재한 즉시, 계약관계 각 포털사에 제1항의 보도문을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 이행방법 • 연합뉴스 : 홈페이지 사회면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연합뉴스 : 『[‘지인 돈 뜯은 경찰’ 기사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2013서울조정135~142	(매체별 추후 · 손배청구) 정○○ 對 YTN ^(135~136) , 인터넷 YTN ^(137~138, 135~136과 병합) , 네이버 ^(139~140) , 다음 ^(141~142)
조 정 대 상	• YTN : YTN24 프로그램 『협박 통해 돈 뜯어낸 경찰 해임』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30일자 00:00) • 인터넷 YTN · 네이버 · 다음 : 『협박 통해 돈 뜯어낸 경찰 해임』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권자를 협박하는 등 금전비리 혐의로 해임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YTN · 인터넷 YTN : ▷ 추후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약속) • 네이버 · 다음 : ▷ 추후청구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2013서울중재12~13 참조)] ▷ 손배청구 -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약속) ※ 이행방법 • YTN · 인터넷 YTN : [인터넷 YTN에 추후보도] YTN이 <YTN24> 프로그램에서 추후보도한 후 2일 이내에 이행한 보도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함
이 행 결 과	• YTN : YTN24 프로그램 『공갈혐의 경찰관, 무혐의처분받아』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9일자 00:00) • 인터넷 YTN : 『[추후 보도문] 공갈혐의 경찰관, 무혐의처분받아』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9일자)

2013서울조정143~150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정○○ 對 뉴시스 ^(143~144) , 네이버 ^(145~146) , 다음 ^(147~148) , 네이트 ^(149~150)	
조 정 대 상	『‘조폭 동원하고… 뽕소니 무마하고…’ 돈 뜯어낸 경찰』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권자를 협박하는 등 금전비리 혐의로 해임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뉴시스 : ▷ 추후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계약관계 포털사에 추후보도문 전송, 부제소)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약속) • 네이버·다음·네이트 : ▷ 추후청구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2013서울중재14~16 참조)] ▷ 손배청구 -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약속) ※ 기타 합의사항 • 뉴시스 : 추후보도문을 게재한 즉시, 계약관계 각 포털사에 추후보도문을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 이행방법 • 뉴시스 : 홈페이지 사회면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추후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뉴시스 : 『‘돈 뜯은 경찰’기사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2013서울조정151~156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정○○ 對 인터넷 한국일보 ^(151~152) , 네이버 ^(153~154) , 다음 ^(155~156)	
조 정 대 상	『뽕소니 사고 피의자에게 돈 뜯은 경찰』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권자를 협박하는 등 금전비리 혐의로 해임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3서울조정157~164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정○○ 對 인터넷 MBN ^(157~158) , 네이버 ^(159~160) , 네이트 ^(161~162) , 동아닷컴 ^(163~164)	
조 정 대 상	• 인터넷 MBN·네이버·네이트 : 『교통경찰관 잇따라 금전 비리…경찰 진화 나서』 제하의 기사 (인터넷 MBN·네이버 2011년 5월 30일자, 네이트 5월 31일자) • 동아닷컴 : 『경찰이 지인 돈뜯거나 뽕소니 피의자 갈취』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1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권자를 협박하는 등 금전비리 혐의로 해임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인터넷 MBN·네이버·네이트 : ▷ 추후청구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 보도(2013서울중재21~23 참조)] ▷ 손배청구 -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약속) • 동아닷컴 : ▷ 추후청구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기사삭제(2013서울중재24 참조)]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약속)

2013서울조정165~168 (매체별 손해청구) 홍○○ 對 SBS-TV ⁽¹⁶⁵⁾ , SBSi ^(166, 165와 병합) , 네이버 ⁽¹⁶⁷⁾ , 다음 ⁽¹⁶⁸⁾	
조 정 대 상	• SBS-TV : SBS 스페셜 프로그램 『학교의 눈물 3부 질풍노도를 넘어』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27일자 23:05) • SBSi : 『[다시보기] SBS 스페셜 - 학교의 눈물 3부 질풍노도를 넘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8일자) • 네이버·다음 : 『[학교의 눈물 3부] 질풍노도를 넘어 ①』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8일자)
신청인주장	학교 내 따돌림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동의없이 촬영하고 음성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SBS-TV·SBSi : 조정성립 (내용 : SBSi 기사삭제, 부제소) • 네이버·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기타 합의사항 • SBS-TV·SBSi : SBSi의 조정대상기가 매개된 포털에도 기사를 삭제하도록 조치함 ※ 이행방법 • SBS-TV·SBSi : [SBSi 기사삭제] SBSi 홈페이지 내 조정대상보도 동영상상을 삭제하고 관련 동영상상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더 이상 방송되지 않도록 함
2013대구조정11 (반론청구) ○○○○○○○○(주) 對 인터넷 경북일보	
조 정 대 상	『상주 올리는 '부실 상조'』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상조회사인 신청인 업체가 고객 돈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69 (정정청구) ○○어린이집 對 SBS-TV	
조 정 대 상	SBS 8 뉴스 프로그램 『[단독] 어린이집 결핵 집단 감염』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30일자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 어린이집 소속 교사와 원아들이 집단으로 결핵에 감염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SBS에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SBS에 반론보도] SBSi의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며,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SBSi : 『「어린이집 결핵 집단감염」 보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7일자)
2013경기조정15~16 (매체별 반론청구) ○○○○○○○○(주) 對 인터넷 전국매일, 인터넷 YTN	
조 정 대 상	• 인터넷 전국매일 : 『상조업체 고객 적립 않고 거짓광고』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 인터넷 YTN : 『 '회원 인수 과정서 위법' 상조업체 제재』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신청인주장	상조회사인 신청인 업체가 고객 돈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70~171 (정정·손배청구) 현○○ 對 월간조선	
조 정 대 상	『[뉴스추적] 朴元淳 서울시장, 북촌 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호 164~171면)
신청인주장	박원순 시장의 지인인 신청인이 한옥게스트하우스 관련, 서울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朴元淳 서울시장, 북촌 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 특혜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호 399면)
2013경남조정1~4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 주식회사 對 경남도민신문,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조 정 대 상	『사천 알미늄부산물업체 환경오염 심각』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신문 2013년 1월 23일자 3면,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1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산업폐기물인 절삭유 등이 함유된 알루미늄 부산물을 그대로 방치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경남도민신문에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사천 알미늄부산물업체 환경오염 심각』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신문 2013년 2월 22일자 3면,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2월 21일자)
2013서울조정172 (정정청구) 부산영도경찰서 對 인터넷 매일노동뉴스	
조 정 대 상	『경찰, ○○중 ○○조선소 농성자 생필품 반입까지 원천봉쇄』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서가 모 중공업 회사의 조선소 농성자들에게 제공되는 생필품 등의 반입을 막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 “경찰, ○○중 ○○조선소 원천봉쇄” 보도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4일자)
2013서울조정173~174 (정정·손배 청구) 윤○○ 對 조선비즈닷컴	
조 정 대 상	『[스몰캡돋보기] 증시에 진출한 S라인의 대가(?)』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엮혔던 코스닥 기업들이 상장 폐지되거나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 지정되었다고 보도 하였으나 이는 신청인과는 관련이 없는 사실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경기조정17~18	(정정 · 손해 청구) 주식회사 ○○기업 對 인터넷 한국원자력신문
조 정 대 상	『설비 납품비리...한전-5개 발전사도 만만치 않아』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전력설비 납품과 관련, 신청인 회사가 발전회사 관계자를 영입해 로비를 벌였고, 100억 원 규모의 입찰에 유착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사과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 이행방법 [정정 및 사과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주요뉴스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사과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기사수정] 조정대상기사의 신청인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의 기사 검색에 있어서도 삭제 후의 기사가 검색될 수 있도록 함
이 행 결 과	『K사 설비 납품비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8일자)
2013서울조정175	(정정청구) (주)○○○○○○○○○ 對 KBS-2TV
조 정 대 상	추적 60분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전성시대, 골목이 아프다』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30일자 23:20)
신청인주장	신청인 가맹점이 본사의 묵인 아래 계열사 영업점간 거리제한을 어기고 동일 가맹점 인근에 출점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추적 60분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전성시대, 골목이 아프다」 관련, ○○○○ ○○○ 측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20일자 23:05)
2013서울조정176~187	(매체별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1. 고○○, 2. 최○○ 對 미디어오늘 ^(176~178) , 인터넷 미디어오늘 ^(179~181, 176~178과 병합) , 네이버 ^(182~184) , 다음 ^(185~187)
조 정 대 상	• 미디어오늘 : 『○○○시청 기자실서 '대낮 폭행신고'』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0일자 2면) • 인터넷 미디어오늘 · 네이버 · 다음 : 『「대낮 폭행신고」... ○○○시청 기자실에 무슨일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기자인 신청인들이 상습적으로 음주, 폭행 등을 하여 기자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미디어오늘 · 인터넷 미디어오늘 : ▷ 정정 · 반론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인터넷 미디어오늘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손해청구 - 취하 • 네이버 · 다음 : ▷ 정정 · 반론청구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 보도, 기사수정(2013서울중재17~20 참조)] ▷ 손해청구 - 각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약속) ※ 기타 합의사항 • 미디어오늘 · 인터넷 미디어오늘 : 2013년 2월 20일까지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송고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이 기사를 매개하고 검색될 수 있도록 함 ※ 이행방법 • 미디어오늘 · 인터넷 미디어오늘 [인터넷 미디어오늘에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함 [인터넷 미디어오늘 기사수정] 조정대상기사의 특정 내용을 삭제함
이 행 결 과	• 미디어오늘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시청 기자실 폭행 사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3년 2월 20일자 2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2월 20일자)

2013서울조정188~189 (정정·손배청구) 김○○ 對 한국무예신문	
조 정 대 상	『회장의 ○○태권도 ‘명품화’ 방침에 전무이사가 걸림돌?』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1일자)
신청인주장	지역 태권도협회의 전무이사인 신청인이 지역선출 대의원을 요직에 배당하고, 기술심의 위원회 등 주요자리에 신청인의 측근들이 배치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약속)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8일자)
2013서울조정190 (반론청구) ○○○건설(주)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소송 선고 앞두고 용인시 긴장』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이 다른 건설회사가 제기한 소송들과 마찬가지로 지금난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용인 ○○지구 소송 왜 이렇게 많나했더니』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일자)
2013서울조정191~192 (정정·손배청구) ○○○코리아(주) 對 프레시안	
조 정 대 상	『“캔에 소변보며 23시간 근무...그런데 사장은 수억원 슬쩍?”』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대학 교내 주차장을 위탁 운영하면서 대학 측과 맺은 표준 계약서보다 적은 인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약 10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대 주차관리 위탁 업체 부당이득 취득 의혹”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8일자)
2013충북조정1~4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강○○ 對 충청매일, 인터넷 충청매일	
조 정 대 상	『○○ 공무원, 미화원 규정 위반 모르쇠』 제하의 기사 (충청매일 2013년 2월 1일자 7면, 인터넷 충청매일 1월 31일자)
신청인주장	환경미화원인 신청인이 규정을 위반한 채 청소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서울조정193~200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2. 김○○ 對 주간한국 ^(193~194, 197~198) , 인터넷 주간한국 ^(195~196, 199~200)
조 정 대 상	『김○○ 회장, 가짜 국가유공자?』 제하의 기사 (주간한국 2013년 2월 4일자 14면, 인터넷 주간한국 1월 28일자)
신청인주장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인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자격이 논란이 되고 있고 신청인이 상이군경회 정관에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정치 활동을 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서신 발송)
2013서울조정201~204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뉴스투데이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시민일보 인터넷
조 정 대 상	• 아시아투데이닷컴 : (1) 『목포시 13개 장애인 단체 “목포지역신문 왜곡보도 규탄”』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0일자) (2) 『목포시의회 서○○ 의원 “왜곡보도...언론을 빙자한 폭력행위”』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0일자) (3) 『목포시의회 동료의식 상실한 ‘냉혈 집단’ 비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1일자) (4) 『목포시 ○○○○장애인연대 “악의적인 목포주간신문 법적 대응”』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6일자) • 시민일보 인터넷 : 『목포시의회, 장애인의원 활동보조금 놓고 시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신청인주장	목포투데이를 발행하는 신청인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예술전시회 사업이 자체자금 없이 시 보조금만으로 시행됐고 특혜 시비와 실효성 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아시아투데이닷컴 :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약속) • 시민일보 인터넷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익신청 (사유 : 중재부의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이행방법 • 아시아투데이닷컴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섹션 사회면의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후 조정대상기사 (1), (2)의 본문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 시민일보 인터넷 :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후 2일 이내에 홈페이지의 뉴스섹션 정치면 초기화면의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아시아투데이닷컴 : 『목포투데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2013서울조정205~208, 211~214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1. 윤○○, 2. 윤△△ 對 인터넷 엠티엔(MTN) ^{(205~206, 207~208)(병합)} , 인터넷 한국일보 ^{(211~212, 213~214)(병합)}
조 정 대 상	• 인터넷 MTN : 『[단독]푸틴 둘째딸 한국인과 크레타섬에서 약혼식』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6일자) • 인터넷 한국일보 : 『푸틴 딸, 그리스에서 한국인 남친과… 깜짝』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1의 아들인 신청인2가 푸틴 러시아 총리의 막내딸과 약혼식을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인터넷 MTN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사과보도, 기사삭제, 신청인별 손해배상 각 3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인터넷 한국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사과보고, 기사삭제, 신청인별 손해배상 각 15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인터넷 MTN·인터넷 한국일보 :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고, 조정대상 기사가 게재된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버 등)에도 요청하여 삭제 조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함, 또한 신청인 2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딸 사이의 결혼을 신청인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한 신청인들의 동의 없이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함 ※ 이행방법 • 인터넷 MTN : [정정 및 사과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 및 사과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 인터넷 한국일보 : [정정 및 사과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 및 사과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인터넷 MTN : 『‘푸틴 둘째딸 한국인과 크레타섬에서 약혼식’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2일자) • 인터넷 한국일보 : 『‘푸틴 딸, 그리스에서 한국인 남친과…깜짝’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5일자)
2013서울조정209~210	(정정·손배청구) 윤○○ 對 이데일리(인터넷)
조 정 대 상	『[특징주] 한러 가스관 사업 기대 고조..관련株 ‘강세’』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푸틴 러시아 총리의 막내딸과 약혼식을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사과보도, 기사삭제,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고, 조정대상 기사가 게재된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버 등)에도 요청하여 삭제 조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함, 또한 신청인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딸 사이의 결혼을 신청인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한 신청인의 동의 없이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청인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함 ※ 이행방법 : [정정 및 사과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 및 사과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한러 가스관 사업 기대 고조..관련株 ‘강세’」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5일자)

2013경기조정19~22 (정정 · 손배청구) (병합) 부천시 ○○○ ○○봉사단 對 부천신문, 인터넷 부천신문	
조 정 대 상	• 부천신문 : (1) 『“회원 명부조작 지원금 받아냈다” 의혹제기』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1일자 1면), (2) 『제보자 A씨 “공무원들 준다며 27만원 상당 선물 구입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1일자 3면) • 인터넷 부천신문: (1) 『부천시 ○○○ ○○ 봉사단 ‘轉入佳境’-①』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5일자), (2) 『부천시 ○○○ ○○ 봉사단 ‘轉入佳境’-②』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부천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급조된 단체이며, 봉사활동을 빌미로 돈벌이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215~216 (정정 · 손배청구) 극단 ○○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박근혜 취임 앞 ‘박정희 미화’ 공연 공립극장 대관에 연극인들 부글』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극단의 공연작품에 대해 서울연극협회가 “국민정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인터넷 한겨레에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에 정정보도] 홈페이지 문화면 중앙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박근혜 취임 앞 ‘박정희 미화’ 공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5일자)
2013서울조정217~220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양천구시설관리공단 對 강서양천신문, 디지털 강서양천일보	
조 정 대 상	『[기자 수첩] 콧대 높은 양천시설공단』 제하의 기사 (강서양천신문 2013년 1월 14일자 3면, 디지털 강서양천일보 1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공단 이사장이 예약을 안했다는 이유로 지역인사의 면담신청을 문전박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디지털 강서양천일보 :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홈페이지 정치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되, 제목은 [] 안에 표시하여 1개월 이상 게시함
이 행 결 과	『‘콧대 높은 양천시설공단’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강서양천신문 2013년 3월 11일자 2면, 디지털 강서양천일보 3월 4일자)

2013충북조정5 (정정청구) 김○○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중학생 담임교사 폭행의 진실?...무너진 사제의 정』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5일자)
신청인주장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 담임교사인 신청인이 사건을 방치하는 등 학교 측의 대처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중학생 담임교사 폭행』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6일자)
2013서울조정221 (손배청구) 방○○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	
조 정 대 상	『여자 화장실 몰래 훑쳐보다 걸리면 무슨 죄?』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5일자)
신청인주장	대학교 내 여성 화장실을 몰래 훑쳐보다 붙잡힌 남성에게 관해 보도하면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신청인이 기사의 게재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함과 더불어 조정대상기사가 매개된 포털 사에도 해당 기사를 삭제하도록 요청함
2013서울조정226~227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주식회사 ○○○○ 對 TV조선, 인터넷 TV조선	
조 정 대 상	• TV조선 : 홍혜걸의 닥터 콘서트 프로그램 『7회 - 대장 건강을 다룬 '변비 vs 장 트러블'편』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5일자 23:50) • 인터넷 TV조선 : 『[다시보기] 7회 - 대장 건강을 다룬 '변비 vs 장 트러블'편』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시중에 행해지는 커피관장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증받고 의로기기로 정식 등록된 신청인 회사의 제품 이미지를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TV조선 기사수정, 부제소) ※ 이행방법 [반론보도] <홍혜걸의 닥터 콘서트> 프로그램 말미에 블랙바탕에 흰자막으로 표시하고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도록 함 [인터넷 TV조선 기사수정] 인터넷 TV조선 홈페이지의 <홍혜걸의 닥터콘서트> 다시보기코너에 게시된 해당VOD 말미에 “본 방송 중 판넬자료로 사용된 ○○○○제품은 장내 가스 제거 제품으로, 커피관장과는 무관한 제품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라는 멘트를 블랙바탕에 흰자막으로 삽입하도록 함

2013서울조정228~231 (매체별 반론청구) 김○○ 對 한국일보 ⁽²²⁸⁾ , 인터넷 한국일보 ^(229, 228과 병합) , 네이버 ⁽²³⁰⁾ , 다음 ⁽²³¹⁾	
조 정 대 상	• 한국일보 : 『“○○○ 주가조작” 김○○ 前대사 구속 방침』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9일자 1면) • 인터넷 한국일보 · 네이버 · 다음 : 『“○○○ 주가조작” 김○○ 전 대사 구속 방침』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9일자)
신청인주장	에너지자원대사를 역임한 신청인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과 관련한 외교통상부의 보도자료 발표 직전에 친인척 명의로 회사주식을 사들여 수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한국일보 · 인터넷 한국일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 · 다음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25~26 참조)] ※ 기타 합의사항 • 한국일보 · 인터넷 한국일보 : 반론보도문을 네이버, 다음 등 조정대상기사를 매개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전송하여 인터넷 포털에서도 이 기사를 매개하고 검색될 수 있도록 함 ※ 이행방법 • 한국일보 · 인터넷 한국일보 : [인터넷 한국일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섹션 사회면의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함, 또한 최초 게재부터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바로 아래에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가 검색 되는 한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함
이 행 결 과	• 한국일보 : 『김○○ 전 대사 “친인척 명의 ○○○주식 사들인 적 없어”』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7일자 10면) • 인터넷 한국일보 : 『[알려왔습니다] 김○○ 전 대사 “친인척 명의 ○○○주식 사들인 적 없어”』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7일자)
2013서울조정232~233 (매체별 손해청구) (병합) 한○○ 對 MBN, 인터넷 MBN	
조 정 대 상	• MBN : MBN뉴스8 프로그램 『신입생만 카드 안 돼』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3일자 20:00) • 인터넷 MBN : 『꿈수 부리는 대학 “신입생은 카드 안 받아요”』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3일자)
신청인주장	대학들이 신입생 등록금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거부이유를 설명하는 신청인의 발언을 동의 없이 녹음 ·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인터넷 MBN 기사수정, 부제소) ※ 이행방법 : [기사수정] 인터넷 MBN의 조정대상기사 내 동영상상 삭제함과 더불어 MBN의 조정대상보도 동영상상 매개된 포털 사에도 해당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청함
2013경기조정23 (정정청구) 남양주시부정부패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對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부정부패 특위 조사 못받아” 남양주시 · 의회, 갈등 심화』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4일자 6면)
신청인주장	남양주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계획서에서 특정한 사안이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중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처 리 결 과	『“남양주시 부정부패 특위 조사계획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5일자 7면)

2013경기조정24~25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남○○ 對 중부일보,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학생·교사 참가 유럽연수 “시의원이 거길 왜 따라가?”』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3년 1월 24일자 5면, 인터넷 중부일보 1월 24일자)
신청인주장	남양주시의회 시의원인 신청인이 학생·교사 참가 유럽 연수에 참가한 것은 위유성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234~235 (매체별 정정청구) 박○○ 對 SBS-TV, SBSi	
조 정 대 상	•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주민회사 만들자더니..온 마을 ‘발각’』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5일자 20:00) • SBS-i : 『“회사 차리자” 공군 대령 한마디에 마을 ‘발각’』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마을 주민들의 투자를 받아 설립한 건설회사의 경영 부진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신청인만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SBS-TV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SBSi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SBS-TV : [반론보도] <모닝와이드 1부>(06:30) 프로그램에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부에 2단 자막으로 게시함 • SBSi : [반론보도]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시를 완료하고,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SBS-TV : 토요일집 모닝와이드 (1부) 프로그램 『<주민회사 만들자더니.. 온 마을 ‘발각’>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9일자 06:00) • SBSi : 『「주민회사 만들자더니..온 마을 ‘발각’」 보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9일자)
2013서울조정236~237 (매체별 손해청구) (병합) 이○○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MBC 뉴스투데이 (1부) 프로그램 『명절 노린 ‘위조지폐 주의보’...진짜-가짜 감별법은?』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9일자 06:30) • iMBC : 『[다시보기] 명절 노린 ‘위조지폐 주의보’...진짜-가짜 감별법은?』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9일자)
신청인주장	명절 현금거래가 많아지면서 위조지폐가 기승을 부린다고 보도하면서 대형마트의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동의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50만 원, iMBC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iMBC 기사삭제]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중 다시보기 영상을 삭제함

2013서울조정238~239 (정정 · 손해청구) 이○○ 對 인터넷 교통환경신문	
조 정 대 상	(1) 『석연치 않은 ○○개별협회』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8일자) (2) 『○○개별협회 이○○, 후보 자격 있는가? 없는가?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4일자)
신청인주장	모 운송사업협회 제4대 이사장인 신청인의 제5대 이사장 선거 입후보자 자격에 논란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교통환경신문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교통환경신문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처 리 결 과	『○○개별○○운송사업협회 이○○ 전 이사장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교통환경신문 2013년 3월 7일자, 교통환경신문 3월 11일자 5면)
2013서울조정240~243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정○○ 對 JTBC, 인터넷 JTBC	
조 정 대 상	• JTBC : 진실 추적자 탐사코드 프로그램 『40회 - ‘기적인가? 사이비인가? 예수님을 보는 아이들’』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9일자 21:55) • 인터넷 JTBC : 『[다시보기] 40회 - ‘기적인가? 사이비인가? 예수님을 보는 아이들’』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신청인주장	목사인 신청인이 제보자의 아이를 감금하고 가족을 버리라고 강요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JTBC · 인터넷 JTBC : 신청인이 조정대상 방송과 관련해 제기한 일체의 민원을 모두 취하함 ※ 이행방법 • JTBC : [기사삭제] <진실 추적자 탐사코드> 프로그램 중 조정대상보도에 대해 ‘다시보기’나 ‘미리보기’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아니함 • 인터넷 JTBC : [기사삭제]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의 동영상에 ‘다시보기’나 ‘미리보기’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되지 않도록 함
2013서울조정244~247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정○○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불만제로 UP 프로그램 『[9회] 제로맨이 간다 - 대한민국 진짜 온천은 없다?』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27일자 20:50) • iMBC : 『[다시보기] 불만제로 UP 9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온천이 온천수에 지하수를 섞어쓰는 불법 온천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대전조정9~10 (매체별 정정청구) 농림수산물부 對 대전KBS-1TV, KBS미디어	
조 정 대 상	- 대전KBS-1TV : KBS 뉴스9(대전) 프로그램 『농림부가 대기업 지원』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8일자 21:00) - KBS미디어 : 『[뉴스9](속보)농림부의 두 얼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8일자)
신청인주장	농림수산물부가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의 신청자격을 대규모 농업회사로 제한했고, 선정된 업체에 유리온실 자리를 30년간 공짜로 빌려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대전KBS-1TV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KBS미디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KBS미디어 : [정정 및 반론보도] 대전KBS-1TV의 조정대상보도를 홈페이지의 다시보기 코너에서 삭제하고,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는 대전KBS-1TV의 뉴스를 홈페이지에서 라이브 및 다시보기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함
이 행 결 과	- 대전KBS-1TV : KBS 뉴스9(대전) 프로그램 『유리온실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5일자 21:00) - KBS미디어 : 『[뉴스9] 유리온실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5일자)
2013대전조정11~12 (정정·손배청구) 서○○ 對 충청투데이	
조 정 대 상	『대학 ‘학점분쟁’ 격화』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9일자 1면)
신청인주장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학생들에게 수업거부로 폐강위기에 처한 교수의 수업을 들으라고 강요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6일자 2면)
2013서울조정248~249 (정정·손배청구) ○○정보(주) 對 소비자고발신문	
조 정 대 상	『“○○ 알바생 고용 의혹” 잇따라 제기』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7일자)
신청인주장	결혼정보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맞선파트너로 소개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약속)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알바생 고용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6일자)

2013전북조정5~10 (매체별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병합) 이○○ 對 전라일보, 인터넷 전라일보	
조 정 대 상	• 전라일보 : 『“공장 악취 때문에 골이 다 아파”』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9일자 4면) • 인터넷 전라일보 : 『“악취 때문에 골이 다 아파”』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스티로폼을 제조하는 신청인 회사에서 악취가 발생해 공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 반론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전라일보 기사삭제, 이행강제금) ▷ 손해청구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 기타 합의사항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인터넷 전라일보의 조정대상기사가 검색되지 않도록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요청함 ※ 이행방법 : [인터넷 전라일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전라일보 : 『[알려왔습니다] 스티로폼 재생공장 악취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8일자 4면) • 인터넷 전라일보 : 『스티로폼 재생공장 악취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8일자)
2013서울조정251~252 (매체별 정정청구) 방위사업청 對 세계일보,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 세계일보 : (1) 『해상작전헬기 美 시호크 탈락』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5일자 1면), (2) 『美와 군수지원 밀약 의혹… ‘잡음’ 막으려 급선회?』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6일자 7면) • 세계닷컴 : (1) 『[단독] 해상작전헬기 美 시호크 탈락<세계일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5일자) (2) 『[단독] 美와 군수지원 밀약 의혹… ‘잡음’ 막으려 급선회?<세계일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6일자)
신청인주장	방위사업청이 해상작전헬기로 영국산 ‘링스와일드캣’을 최종 선택한 이유가 미국산 ‘시호크’ 생산업체와의 이면계약 문제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세계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8일자 2면) • 세계닷컴 : 『[정정보도문]해상작전헬기 美 ‘링스 와일드캣’ 선정 배경 보도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2일자)
2013서울조정253~254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주)케이티○○○○○○○ 對 뉴스토마토	
조 정 대 상	(1) 『○○○○○○도 MSO와 ‘채널 바터’.. “방송생태계 교란행위”』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2) 『○○○○○○ ‘담합 탈선’..방통위는 ‘수수방관’』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1일자) (3) 『양문석 위원 “○○○○○○등 ‘채널 바터’ 뿌리뽑아야’』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1일자) (4) 『○○○○○○, 특정 SO 무더기로 넣고도 담합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자사 채널을 3개씩 맞교환(바터)하기로 합의했고, 이는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을 위태롭게 만들어 방송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행위 등을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이상 게시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MSO 채널 바터’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8일자)

2013제주조정1	
(정정청구) ○○정보기술(주) 對 KCTV	
조 정 대 상	KCTV 종합뉴스 프로그램 『통합관제센터』 검증도 안하나?』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3일자 19: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CCTV통합관제센터에 납품하는 통합저장장치(스토리지)가 관제센터 측에 이미 설치된 타사의 서버와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강원조정2	
(정정청구) 조○○ 對 강원도민일보	
조 정 대 상	『홍천 ‘○○ 아파트’ 분양시기 유보』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3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 전 대표인 신청인이 입주민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다고 보도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강원조정3~6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황○○ 對 강원도민일보,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조 정 대 상	- 강원도민일보 : (1) 『의회가 규제 풀고 의원이 혜택 받고』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5일자 5면), (2) 『원주시 경사도 완화 조례 재의 ‘고심’』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6일자 12면) (3) 『시의원이 조례 개정 수혜… 비난 ‘폭주’』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7일자 10면) (4) 『[기자수첩] 경사도 완화…李下不整冠』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8일자 12면) (5) 『경사도 완화 시의원, 윤리규범 위반』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10면) (6) 『“원주시장 도시계획조례 재의 요구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3일자 12면) (7) 『“조례 개정 수혜 시의원 윤리위 회부하라”』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5일자 12면) (8) 『“원주 경사도 완화 조례 재의” 촉구』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6일자 8면) (9) 『원주시의원 6명 규제완화 땅 소유』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8일자 12면) (10) 『윤리특위 회부 초미 관심』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9일자 10면) (11) 『경사도 완화 조례 재의’ 수용여부 관심』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12면) (12) 『“원주 공직사회 도덕적 해이 심각”』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12면) (13) 『亂 개발에 앞장서는 원주시의회』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1일자 7면) (14) 『“녹지 개발 경사도 완화땀 난개발 우려”』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2일자 12면) -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 (1) 『의회가 규제 풀고 의원이 혜택 받고』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5일자) (2) 『원주시 경사도 완화 조례 재의 ‘고심’』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6일자) (3) 『시의원이 조례 개정 수혜… 비난 ‘폭주’』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7일자) (4) 『[기자수첩] 경사도 완화…李下不整冠』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8일자) (5) 『경사도 완화 시의원, 윤리규범 위반』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6) 『“원주시장 도시계획조례 재의 요구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3일자) (7) 『“조례 개정 수혜 시의원 윤리위 회부하라”』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5일자) (8) 『“원주 경사도 완화 조례 재의” 촉구』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6일자) (9) 『원주시의원 6명 규제완화 땅 소유』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8일자) (10) 『윤리특위 회부 초미 관심』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9일자) (11) 『“원주 공직사회 도덕적 해이 심각”』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12) 『亂 개발에 앞장서는 원주시의회』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1일자) (13) 『“녹지 개발 경사도 완화땀 난개발 우려”』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원주시의회가 도시지역 개발행위 가능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시의원인 신청인이 해당 조례개정에 적극 나서 직접적인 수혜를 입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255~256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對 KBS-2TV, KBS미디어	
조 정 대 상	• KBS-2TV : 굿모닝 대한민국 (1부) 프로그램 『진화하는 보톡스, 필러 불법 시술』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21일자 06:00) • KBS미디어 : 『[방송보기] 굿모닝 대한민국 (1부) 진화하는 보톡스, 필러 불법 시술』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치과치료를 위한 시술 외에 미용목적 등의 보톡스·필러 시술이 모두가 불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KBS-2TV에 반론보도] <굿모닝 대한민국> 프로그램 1부에 반론보도, 진행자의 클로징 멘트 부분에 위 반론보도문을 전체 화면의 1/4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여 자막으로 20초 이상 계속 표시함 [KBS미디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다시보기 코너에 게시된 KBS-2TV의 조정대상보도(VOD)의 말미에 반론보도문 내용을 삽입함
이 행 결 과	• KBS-2TV : 굿모닝 대한민국 프로그램 (1부) 『지난 1월 21일 「굿모닝 대한민국」 프로그램에 서는...』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15일자 06:00)
2013경기조정26~27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대학교 對 OBS경인TV, 인터넷 OBS경인TV	
조 정 대 상	• OBS경인TV : (1) OBS 뉴스 M 프로그램 『[단독] ○대, 교수 임용 비리 말썽...‘철회’』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23일자 19:45) (2) 『○○○대 교수 임용 비리 의혹 ‘일파만파’』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24일자 19:45) (3) 『“○대 임용 비리 빙산 일각”...뒤틀린 커넥션 뒤편은』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25일자 19:45) (4) 『○○○대, 비리검증 ‘뒤틀린’...연구자 사실상 ‘생매장’』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5일자 19:45) • 인터넷 OBS경인TV : (1) 『[단독] ○대, 교수 임용 비리 말썽...‘철회’』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3일자) (2) 『○○○대 교수 임용 비리 의혹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4일자) (3) 『“○대 임용 비리 빙산 일각”...뒤틀린 커넥션 뒤편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5일자) (4) 『○○○대, 비리검증 ‘뒤틀린’...연구자 사실상 ‘생매장’』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대학에서 진행 중인 교수임용 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OBS경인TV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 OBS경인TV : OBS 뉴스 M 프로그램 『○○○대 교수임용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14일자 19:45) • 인터넷 OBS경인TV : 『○○○대 교수임용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2013서울조정257~258 (정정·손배청구) (주)케이티○○○○○○○ 對 뉴스토마토	
조 정 대 상	(1) 『‘채널 담합’ ○○○○○○, 손해보는 계약 왜?』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2일자) (2) 『‘무리한 주파수 쪼개기’..○○○○○○○ ‘HD’, 불편한 진실』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채널 담합 등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259	(정정청구) 기독교○○○○교회 ○○○교회 對 기독교성결신문
조 정 대 상	(1) 『선교사 파직, 정치적 희생양』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6일자 1면) (2) 『[1면에 이어서] 선교사 파직, 정치적 희생양』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6일자 9면) (3) 『“유○○·여○○ 전·현직 해선위원장 의도갖고 압력”』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3일자 1면) (4) 『[▶1면에서 이어] 전·현직 해선위원장 의도갖고 압력』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3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교회가 교회헌금으로 설립된 학교재산을 성도들을 속이고 사유화 하려고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중단 약속)

2013대전조정13	(반론청구) ○○마취통증의학회 對 대전일보
조 정 대 상	『○○의료원 알고도 은폐 물의』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0일자 7면)
신청인주장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척추질환 환자에게 진료영역을 뛰어넘는 시술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마취과 의사, 척추질환 환자 상습 시술”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8일자 7면)

2013대구조정12	(정정청구) 손○○ 對 뉴스일번지
조 정 대 상	『구미시의원의 이상한 입장정리 - 오비이락(烏飛梨落)』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7일자)
신청인주장	대구공항공리무진 버스가 거래하던 주유소를 구미시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로 변경한 것을 두고 모종의 밀약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보도] 정치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72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구미시의원의 이상한 입장정리] 보도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2013서울조정263	(정정청구) 서초구청 對 채널A
조 정 대 상	박종진의 뉴스쇼 쾌도난마 (1부) 프로그램 『서초구 오리털 파카도 사줬다...청원경찰 돌연사 논란』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25일자 16:00)
신청인주장	서초구청이 구청장 차량 주차안내를 늦게 한 청원경찰에게 24시간 동안 징벌성 옥외근무를 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조건부 후속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정정 및 반론보도] 〈박종진의 뉴스쇼 쾌도난마〉 프로그램 말미에 블랙바탕에 흰자막으로 표시하되,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20초~30초 동안 계속 표시함 [조건부 후속보도] 반론보도 중 사망원인과 관련된 부분은 검찰조사결과 오보로 밝혀질 경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별도의 정정보도를 방송하며, 방송시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내용과 방식을 정하되, 위원회의 조정합의 양식에 준함
이 행 결 과	박종진의 뉴스쇼 쾌도난마 (2부) 프로그램 『「청원경찰 돌연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22일자 17:00)

2013경기조정28~3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부천시 ○○○ ○○봉사단 對 부천신문, 인터넷 부천신문	
조 정 대 상	• 부천신문 : 『참여했던 회원 및 임원들 ‘정산서류 조작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1일자 1면) • 인터넷 부천신문 : 『○○○ ○○봉사단 ‘轉入佳境’-③』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부천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사유는 모두 이유 없는 것이어서 기각되어야 하므로 정정 및 반론 보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손배청구 - 조정불성립결정 ※ 이행방법 : [인터넷 부천신문에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종합뉴스섹션 지역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함
2013서울조정264~265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주)○○○테크 對 채널A, 인터넷 채널A	
조 정 대 상	• 채널A : 뉴스A 프로그램 『구직자 울리는 ‘꽃뱀 다단계’』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20일자 22:00) • 인터넷 채널A : 『[뉴스A]女 손에 이끌려 찜질방 갔더니...구직자 울리는 ‘꽃뱀 다단계’』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신청인주장	불법 다단계업체의 피해를 보도하면서 신청인 업체의 건물 외관을 방송했으나 신청인 업체는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채널A에 반론보도] <채널A 아침뉴스>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의 멘트로 반론보도,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함 [인터넷 채널A에 반론보도] 채널A에서 반론보도 후 인터넷상의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채널A : 채널A 아침뉴스 프로그램 『꽃뱀 다단계』 관련 반론』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14일자 07:50) • 인터넷 채널A : 『[아침뉴스] 강남일대 ‘꽃뱀다단계’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2013서울조정266 (반론청구) (주)○○○○산업 對 KBS-1TV	
조 정 대 상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247회] 가격의 자격 - 놀이매트』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22일자 19:30)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생산하는 어린이 놀이매트에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제품은 국가인증 안전기준을 모두 통과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KBS미디어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KBS미디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내 KBS-1TV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의 인터넷 게시판 내 ‘알려드립니다’ 코너 중 [247회 ‘가격의 자격-놀이매트 편’ 관련 정보] 하단부분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함
이 행 결 과	• KBS미디어 : 『[알려드립니다] 247회 ‘가격의 자격 - 놀이매트 편’ 관련 정보』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2013서울조정267~268, 726~73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홍○○ 對 중앙일보 ^(267~268) , 뉴데일리 ^(726~727) , TV조선 ^(728~729) , 인터넷 TV조선 ^(730~731)
조 정 대 상	• 중앙일보 : 『[취재일기] 불행한 죽음을 희화화한 진영의식』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4일자 37면) • 뉴데일리 : 『사람 죽었는데..前 통진당 홍○○ “RT사실이면 땡큐”』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일자) • TV조선 : 뉴스와이드 참 프로그램 『[김○○의 @세상] 박근혜 보좌관 사망』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3일자 12:50) • 인터넷 TV조선 : 『[김○○의 @세상] 안철수 해단식…SNS에서도 ‘와글와글’』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3일자)
신청인주장	통합진보당 전 부위원장인 신청인이 지난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보좌관의 교통사고 사망소식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 ‘땡큐’라는 글을 게시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타인의 글을 인용한 것이다.
처 리 결 과	• 중앙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반론·사과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뉴데일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TV조선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인터넷 TV조선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뉴데일리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 섹션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함 • TV조선 : [반론보도] <TV조선 뉴스 1>(13:45~14:40)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함 • 인터넷 TV조선 : [반론보도]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시 완료함
이 행 결 과	• 중앙일보 : 『‘불행한 죽음 희화화한 진영의식’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6일자 2면) • 뉴데일리 : 『[사람 죽었는데..前 통진당 홍○○ “RT사실이면 땡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9일자) • TV조선 : TV조선 뉴스 1 프로그램 『<전 통진당 부위원장, ‘땡큐’ 악성 트윗 파문>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21일자 12:50) • 인터넷 TV조선 : 『[‘통진당 부위원장, 땡큐 악성 트윗 파문’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1일자)
2013대구조정13~14	(반론·손배청구) (사)○○○○진흥원 對 경상매일
조 정 대 상	(1) 『경주시, ‘215억짜리 시설’ 연간 1,927만 원대 임대』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8일자) (2) 『○○한옥마을, 민간업자 배불리기』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9일자) (3) 『경주시 ‘○○한옥마을’ 계약 해지키로』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3일자)
신청인주장	경주시 내 한옥마을 민간위탁사업자인 신청인이 영리에만 급급해 과도한 임대료를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72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경주○○한옥마을 민간업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2013서울조정269		(정정청구) 김○○ 외 3인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빙판길에 미끄러진 마을버스 보고 놀라 넘어진 60대 사망』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의 가족구성원 빙판길에 마을버스가 미끄러지는 모습에 놀라 넘어져 사망했다고 보도됐으나, 고인은 빙판길에 미끄러진 마을버스의 앞 범퍼에 치여 사망한 것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3경남조정5~6		(매체별 정정청구) 김○○ 對 경남신문, 인터넷 경남신문
조 정 대 상	- 경남신문 : 『“인터넷 쪽지 논란 교감” 비위 제보』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8일자 5면) - 인터넷 경남신문 : 『“돈은 좀 그렇고 주유 상품권으로 해라” 교감의 ‘인터넷 쪽지’ 비위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8일자)	
신청인주장	교감인 신청인이 인사이드의 대가로 교사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경남조정7~8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김○○ 對 경남도민일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조 정 대 상	『“교원성과급 등급, 내가 많이 생각해서 준 거 알죠?”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3년 2월 27일자 1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2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성과상여금 평가에 대한 생색내기용으로 교사들에게 인터넷쪽지를 보낸 것처럼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270~271		(매체별 손해청구) (병합) 조○○ 對 한국경제, 한경닷컴
조 정 대 상	『장사 안되는데 ‘5년 계약’에 묶여 ... 점포 망해도 월세 ‘자동 입금’』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3년 3월 2일자 A3면, 한경닷컴 3월 1일자)	
신청인주장	상가장기계약에 따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치킨전문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과거 사진을 동의없이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3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서울조정272		(정정청구) 신○○ 對 SBS-TV
조 정 대 상	SBS 8 뉴스 프로그램 『10분 거린데.. 9만6천 원』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6일자 20:00)	
신청인주장	외국인을 상대로 한 불법 ‘콜밴’ 차량의 횡포를 보도하면서 ‘일반 택시’ 차량사진을 배경 화면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의 성명, 초상 등 인적사항이 언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도 전혀 적시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도가 신청인에 관한 것이라는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13경남조정9 (정정청구) 경상남도 對 창원KBS-1TV	
조 정 대 상	KBS 뉴스9 프로그램 『○○의료원 폐업, 공공의료 포기?』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26일자 21:00)
신청인주장	경상남도가 지역의료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273~276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 지주단체 對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네이트	
조 정 대 상	『〈단독〉 일개 인터넷 동호회에 ‘질질’ 끌려다닌 코레일』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인터넷 기차여행 동호회 카페인 신청인 단체가 한국철도공사 지역본부에 대해 무리한 지원요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서울중재36~37 참조)] • 네이트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서울중재 28~29 참조)]
2013서울조정277~278 (매체별 반론청구) ○○○○○교회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 한겨레 : (1) 『검찰, 조○○ 목사 ‘100억대 배임’ 확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8일자 1면), (2) 『조○○ 목사가 사실상 주도 정황 증여세 줄이려 서류조작 하기도』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8일자 10면) • 인터넷 한겨레 : (1) 『[단독] 검찰, 조○○ 목사 ‘100억대 배임’ 확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8일자), (2) 『[단독] 조○○·조○○ 부자 배임·탈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교회 소속의 목사가 배임 혐의로 기소될 방침이라고 보도됐으나, 검찰의 방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서울조정279~284 (매체별 정정청구) 김○○ 對 한국일보 ⁽²⁷⁹⁾ , 인터넷 한국일보 ⁽²⁸⁰⁾ , 네이버 ⁽²⁸¹⁾ , 다음 ⁽²⁸²⁾ , 네이트 ⁽²⁸³⁾ , 줌 ⁽²⁸⁴⁾	
조 정 대 상	『대한민국 대학생들 고위층 막말에 둔감』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3년 3월 4일자 11면, 인터넷 한국일보·네이버·다음·네이트·줌 3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석사학위논문 연구결과, 화자와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막말에 대한 청자의 실망감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한국일보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인터넷 한국일보·네이버·다음·네이트·줌 :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한국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2일자 12면)

2013부산조정1		(손배청구) 박○○ 對 인터넷 국제신문
조 정 대 상	『“10년간 괴롭히겠다” 파혼男 협박 여성CEO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갑작스런 파혼에 앙심을 품고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상대방의 차량 등을 손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286~287		(정정 · 손배청구) 박○○ 對 SBS-TV
조 정 대 상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 『157회 - 공포의 민원왕! 그는 왜, 하루 4번 이웃을 고발하나?』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22일자 20:5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경찰시험에 불합격하여 복수심에 6천건 이상의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288~289, 295~296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김○○ 對 미래일보, 인터넷 미래일보
조 정 대 상	• 미래일보 : (1) 『“가짜 유공자” 의혹 증폭』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1일자 1면) (2) 『해군 본부 전역 명령』에는 진해병원 소속, 모든 서류는 ‘서울병원’으로 기록 ‘가짜증명’』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1일자 4면) (3) 『포탄 파편, 북부충상으로 공상 ‘거짓말’,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도 조작 의혹 짙어』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1일자 5면) • 인터넷 미래일보 : 『[심층취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김○○ 회장, ‘가짜 유공자’ 의혹 증폭』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1일자)	
신청인주장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인 신청인이 가짜 국가유공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290~291		(정정 · 손배청구) 1. 문○○, 2. 구○○ 對 민중의소리
조 정 대 상	(1) 『부산 의료사고, 싸늘한 시신을 대학병원으로 옮겨...』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3일자) (2) 『부산 의료사고, 엠블런스 기사가 남편한테 “이미 죽었다”고...[전문공개]』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3일자) (3) 『부산 의료사고, “혈액봉지 들고 왔다갔다...물어도 모른다고 변명만”』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3일자) (4) 『부산 의료사고, 충격적 사실은 한해 평균 4만명이 봉변』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병원이 의료사고를 내고 이미 사망한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 반론 · 추후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손배청구 - 취하 (내용 : 정정 · 반론 · 추후보도 게재 약속) ※ 이행방법 [정정 · 반론 · 추후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 · 반론 ·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기사삭제] 정정 · 반론 · 추후보도를 24시간 동안 게재한 이후에는 관련 조정대상 기사를 모두 삭제하여 포털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함	
이 행 결 과	『[부산 ○○○○병원 ‘산모 사망사건’, 무혐의 내사 종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8일자)	

2013대구조정15 (반론청구) 이○○ 對 대구MBC-TV	
조 정 대 상	대구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송전탑 보상금 검은 거래?』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7일자 20:35)
신청인주장	청도군의회 의장인 신청인이 한전의 지원금으로 설립된 장학회 이사장으로부터 장학회 기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약속)
2013서울조정292 (반론청구) 관악경찰서 對 인터넷 엠티엔(MTN)	
조 정 대 상	(1) 『[단독] 정신줄 놓은 경찰? 폭행 사망 50대 부실수사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1일자) (2) 『“억울한 장파열 죽음, 형사들은 뒷짐만...”』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2일자)
신청인주장	50대 남성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사망하자 재수사에 나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e머니투데이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인터넷 엠티엔(MTN)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센터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e머니투데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코너 사회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인터넷 엠티엔(MTN) : 『관악경찰서 부실수사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2일자) - e머니투데이 : 『[관악경찰서 부실수사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2일자)
2013서울조정293 (정정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TV 출연 유명 건강전도사 알고보니 가짜』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5일자 1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방송사의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 자문위원으로 출연한 사람이 가짜 건강전도사 행세를 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프로그램에는 그런 사람이 출연한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5일자 2면)

2013서울조정299~301 (매체별 반론청구) 엄○○ 對 YTN ⁽²⁹⁹⁾ , 인터넷 YTN ⁽³⁰⁰⁾ , 뉴스1 코리아 ⁽³⁰¹⁾	
조 정 대 상	• YTN : (1) 뉴스오늘 (1부) 프로그램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적절 발언’』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8일자 07:58) (2) 뉴스오늘 (2부) 프로그램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적절 발언’』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8일자 08:58) (3) 뉴스현장 (2부) 프로그램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적절 발언’』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8일자 10:58) (4) 뉴스12 프로그램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적절 발언’』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8일자 11:58) (5) 뉴스&이슈 (1부) 프로그램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적절 발언’』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8일자 12:58) (6) 뉴스&이슈 (2부) 프로그램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적절 발언’』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8일자 13:58) • 인터넷 YTN :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적절 발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8일자) • 뉴스1 코리아 :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 “아빠랑 사귀었냐”』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의붓딸이 신청인한테 성폭행 피해를 받았던 것으로 단정하여 보도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YTN · 인터넷 YTN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기사삭제 (2013 서울중재30~33 참조)] • 뉴스1 코리아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34~35 참조)]
2013서울조정302 (정정청구) 광산구청 외 4인 對 민중언론 참세상	
조 정 대 상	『광산구청 직원, 건설노조 조합원 폭행 논란...1명 중태』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구청 직원이 건설노조원을 폭행하는 등 건설노조를 정당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건설노조 조합원 폭행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2일자)
2013경기조정32 (정정청구) 성남시 對 성남일보	
조 정 대 상	『이재명 시장 부채 숫자놀음 중단하라!』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9일자)
신청인주장	판교특별회계 재산매각 수입금,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이루어진 성남시의 부채상환 노력이 예산 절감이 아닌 허구적인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이재명 시장 부채 숫자놀음 중단하라!”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7일자)

2013대구조정16~17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해운(주) 對 영남일보, 인터넷 영남일보	
조 정 대 상	『업체간 경쟁 유도 선사지정제 도입 목소리』 제하의 기사 (영남일보 2013년 2월 12일자 10면, 인터넷 영남일보 2월 12일자)
신청인주장	포항항 예선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예인작업 사용료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임의로 예선을 배정해 선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경기조정33 (정정청구) 씨티21뉴스 對 i-김포뉴스	
조 정 대 상	『김포시의회, 의회 광고료로 시민세금 제멋대로 사용』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4일자)
신청인주장	김포시의회가 지역신문사들에게 지급한 광고료를 지적하면서, 보도내용과 무관한 신청인 언론사를 언급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수집된 취재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중재부가 결정한 반론보도문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 ※ 이행방법 :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함
2013대전조정14~15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김○○ 對 청양신문, 인터넷 청양신문	
조 정 대 상	『청양군의의회 총무위 파행 ‘빈축’』 제하의 기사 (청양신문 2012년 12월 10일자 2면, 인터넷 청양신문 12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청양군의의회 총무위 위원장인 신청인이 회의를 파행시켰다고 보도했으나, 회의를 파행시킨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청양신문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청양군의의회 총무위 파행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청양신문 2013년 4월 1일자 2면, 인터넷 청양신문 4월 1일자)

2013대전조정16~19	(매체별 조정청구) 이○○ 對 금강일보 ⁽¹⁶⁾ , 중도일보 ⁽¹⁷⁾ , 충청투데이 ⁽¹⁸⁾ , 보령신문 ⁽¹⁹⁾
조 정 대 상	• 금강일보 : 『보령시 불법 산림훼손 방지 주민들 원성』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4일자 18면) • 중도일보 : 『보령 ○○리 임야 수년간 불법훼손』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4일자 16면) • 충청투데이 : 『보령시 낙장행정 산림자원 훼손 확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4일자 18면) • 보령신문 : 『市낙장행정 수년간 불법 산림훼손 방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6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간이화장실과 쉼터를 설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PR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금강일보 · 중도일보 · 충청투데이 · 보령신문 : [PR보도] 신청인의 숲길조성사업을 홍보하는 기사를 2013년 3월말까지 게재함
이 행 결 과	• 금강일보 · 인터넷 금강일보 : 『발걸음마다 묻어내는 문화의 향기』 제하의 기사 (금강일보 2013년 3월 27일자 18면, 인터넷 금강일보 3월 27일자) • 중도일보 · 인터넷 중도일보 : 『자연 속 문학힐링 ‘시와 숲길’ 공원』 제하의 기사 (중도일보 2013년 3월 27일자 16면, 인터넷 중도일보 3월 27일자) • 충청투데이 · 인터넷 충청투데이 : 『보령 주산면 “詩가 숲을 이루다”』 제하의 기사 (충청투데이 2013년 3월 27일자 18면, 인터넷 충청투데이 3월 27일자) • 보령신문 · 인터넷 보령신문 : 『보령시 주산면 ‘시와 숲길’ 인기』 제하의 기사 (보령신문 2013년 4월 3일자 2면, 인터넷 보령신문 3월 26일자)
2013서울조정303~311	(매체별 조정 · 반론 · 손해청구) 윤○○ 對 중앙일보 ⁽³⁰³⁻³⁰⁵⁾ , 온라인 중앙일보 ⁽³⁰⁶⁻³⁰⁸⁾ , 민주일보 ⁽³⁰⁹⁻³¹¹⁾
조 정 대 상	• 중앙일보 : 『“빈자의 성인” ○○공동체 설립자 강남에 30억 땅』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8일자 12면) • 온라인 중앙일보 · 민주일보 : 『강남서 한웃 주위 살던 ○○왕, 재산이 무려...』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8일자)
신청인주장	집단공동체 설립자인 신청인이 구성원들이 수거해온 옷을 빼돌려 팔아 큰 재산을 형성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중앙일보 · 온라인 중앙일보 : ▷ 정정 · 반론청구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손해청구 - 각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약속) • 민주일보 :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온라인 중앙일보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섹션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통상적인 활자와 크기로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중앙일보 · 온라인 중앙일보 : 『윤○○ ○○공동체 설립자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3년 3월 29일자 14면, 온라인 중앙일보 3월 29일자) • 민주일보 : 『[정정 및 반론보도문] “○○공동체 구성원 한웃 빼돌려 강남 30억 땅 산 사실 없어”』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5일자)

2013충북조정6~11	(병합)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 對 충청일보 ^(6~7 정정·손배청구, 10 정정청구) , 인터넷 충청일보 ^(8~9 정정·손배청구, 11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서산 간척지 부실시공 파문 확산』 제하의 기사 (충청일보 2012년 12월 17일자 3면, 인터넷 충청일보 12월 16일자) (2) 『서산 간척지 재정비 부실공사 강행』 제하의 기사 (충청일보 2012년 12월 24일자 4면, 인터넷 충청일보 12월 23일자) (3) 『서산 간척지 재정비 부실시공 여전』 제하의 기사 (충청일보 2013년 1월 14일자 4면, 인터넷 충청일보 1월 13일자) (4) 『서산 간척지 방수제 도로 ‘침하’』 제하의 기사 (충청일보 2013년 1월 28일자 3면, 인터넷 충청일보 1월 27일자) (5) 『한국농어촌공사 도 넘은 기강해이』 제하의 기사 (충청일보 2013년 3월 11일자 3면, 인터넷 충청일보 3월 10일자) (6) 『서산 간월호 준설 수질악화 우려』 제하의 기사 (충청일보 2013년 3월 18일자 3면, 인터넷 충청일보 3월 17일자)
신청인주장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서산간척지 재정비 사업이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으며 수질개선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호내 골재를 채취하려는 꼼수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충청일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 충청일보 : 『〈반론보도문〉 서산 A간척지 재정비 사업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9일자 2면) • 인터넷 충청일보 : 『서산 A간척지 재정비사업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8일자)
2013대전조정20~21	(정정·손배청구) 김○○ 외 8인 對 충청신문
조 정 대 상	(1) 『불법 쓰레기 매립 파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5일자 1면) (2) 『통장, 주민위에 군림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6일자 1면)
신청인주장	지역의 광역권 쓰레기 매립장 주민협의체 위원인 신청인들이 회의록을 조작해 불법으로 쓰레기를 매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312~321	(매체별 조정·손배청구)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對 문화일보 ^(312~313) , 인터넷 문화일보 ^(314~315, 312~313과 병합) , 네이버 ^(316~317) , 네이트 ^(318~319) , 다음 ^(320~321)
조 정 대 상	- 문화일보 : 『차에 홀대받는 우울한 서강대』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9일자 11면) - 인터넷 문화일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비서진 달랑 1명...차에 홀대 우울한 서강대』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대학교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경의선 서강역의 명칭을 서강대역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문화일보 · 인터넷 문화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인터넷 문화일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서울중재38~43 참조)] ※ 기타 합의사항 - 문화일보 · 인터넷 문화일보 : 인터넷 문화일보는 정정보도문을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조정대상기사를 매개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전송하되, 조정대상기사가 게재된 동일한 섹션에 게재되고 검색될 수 있도록 함 ※ 이행방법 - 문화일보 · 인터넷 문화일보 : [인터넷 문화일보에 정정보도] 홈페이지의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섹션(뉴스)사회)사회일반)에 기사순서 위에서 5번째 이내로 제목을 클릭하면 전체 내용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문화일보 · 인터넷 문화일보 : 『차에 홀대받는 우울한 서강대』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3년 3월 28일자 12면, 인터넷 문화일보 3월 28일자)
2013서울조정322~323	(조정·손배청구) 최○○ 對 컨슈머타임스
조 정 대 상	『“SPA브랜드 AS불가” 보도자료 왜곡...업체 ‘신음’』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신청인 회사가 왜곡된 업계사정을 반영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 이행방법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면 주요 뉴스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기사수정] 조정대상기사의 내용 중에서 특정 문장을 삭제함
이 행 결 과	『[“○○○리서치 SPA브랜드 보도자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0일자)

2013서울조정324~325 (정정·손배청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對 SBS-TV	
조 정 대 상	현장 21 프로그램 『92회 - 아파트는 지금 비리복마전』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5일자 20:55)
신청인주장	신청인 아파트의 동대표가 직업 동대표이고, 일부 임원이 공사업체에 금품을 요구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이 행 결 과	현장 21 프로그램 『〈아파트 비리복마전〉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9일자 20:55)
2013서울조정326 (정정청구) 이○○ 對 블루투데이	
조 정 대 상	『17년 고정간첩 이○○ 감옥에서도 ‘투쟁중’』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북한에서 조선로동당 당원증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48시간 이상 게재함
이 행 결 과	『〈17년 고정간첩 이○○ 감옥에서도 ‘투쟁중’〉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27일자)
2013경기조정34 (정정청구) 이재명 對 성남일보	
조 정 대 상	(1) 『이재명 시장 측근, 과문자 발송 혐의 경찰 조사』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1일자) (2) 『이재명 성남시장 과문자 발송 진상 밝혀라』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일자)
신청인주장	새누리당 의원에게 과문자를 발송한 지역 시민단체의 K모 사무국장이 신청인의 측근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327~334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이○○ 對 enews24 ^(327~328) , 네이버 ^(329~330) , 네이트 ^(331~332) , 다음 ^(333~334)	
조 정 대 상	『[단독] 이○○ ‘결혼해줄래’ 작곡가 이○○, 사칭 동명이인 고소』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신청인주장	D엔터테인먼트 소속인 신청인이 ‘결혼해줄래’ 등의 노래를 작곡한 동명이인의 다른 작곡가를 사칭하고 다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enews24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조건부 후속보도, 부제소) • 네이버·네이트·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기타 합의사항 :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한 이후 계약관계 각 포털사에 제공한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도 삭제하여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함 ※ 이행방법 • enews24 : [조건부 후속보도] 조정대상기사에 기술된 고소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 또는 재판결과, 신청인에 관한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협의해 관련 사실에 대해 정정보도를 게재하되,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의 1/2 이상의 분량으로 보도함

2013서울조정335~34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이○○ 對 스타뉴스 ^(335~336) , 네이버 ^(337~338) , 네이트 ^(339~340) , 다음 ^(341~342)
조 정 대 상	『작곡가 이○○, 사칭 동명이인 고소 “명의도용 심각”』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신청인주장	D엔터테인먼트 소속인 신청인이 ‘결혼해줄래’ 등의 노래를 작곡한 동명이인의 다른 작곡가를 사칭하고 다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스타뉴스 :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조건부 정정보도, 부제소) • 네이버·네이트·다음 : 각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스타뉴스 : 후속보도문을 게재한 즉시, 계약관계 각 포털사에 후속보도문을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 이행방법 • 스타뉴스 [후속보도] : 홈페이지에 인터뷰 기사를 게재함 [조건부 정정보도] 조정대상기사에 기술된 고소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 또는 재판결과, 신청인의 혐의가 ‘무혐의’, ‘무죄’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협의해 관련 사실에 대해 정정보도를 게재하되,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의 1/20이상의 분량으로 보도함 • 네이버·네이트·다음 : [후속보도] : 기사제공언론사(주)스타뉴스로부터 신청인의 인터뷰 기사를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후속보도문(스타뉴스로부터 전송받은 인터뷰 기사)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해당 후속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음악감독 이○○ “한류사업에 1인프로젝트 앨범까지”(인터뷰)』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0일자)
2013서울조정343~344	(정정·손배청구) 1. ○○기업(주), 2. ○○이엔티(주) 對 HKBC환경방송
조 정 대 상	『유명기업 산속에 감춘 폐기물 매립 현장 발견』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업이 5년여동안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대구조정18	(정정청구) 윤○○ 對 경북인터넷뉴스
조 정 대 상	『구미시의회, 시의원들 왜 이러나? 이제는 인면수심적 행태까지 벌어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6일자)
신청인주장	구미시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경남조정10~11 (정정·손배청구) 박○○ 對 더함안신문	
조 정 대 상	『[이런일 저런일] 우째 이런 일이...』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6일자 2면)
신청인주장	마을 이장인 신청인이 지역의 민속 줄다리기 행사추진위원회가 불법과 편법으로 비용을 지출했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우째 이런 일이...’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7일자 2면)
2013충북조정12~13 (정정·손배청구) 김○○ 외 8인 對 충청매일	
조 정 대 상	『“시와 짜고 쓰레기 불법 처리”』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5일자 3면)
신청인주장	지역의 광역권 쓰레기 매립장 주민협약체 위원인 신청인들이 회의를 조작해 불법으로 쓰레기를 매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시와 짜고 쓰레기 불법 처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9일자 3면)
2013서울조정345, 348~349 (매체별 정정청구) (재)○○방송 對 미디어오늘 ⁽³⁴⁵⁾ , 네이버 ⁽³⁴⁸⁾ , 다음 ⁽³⁴⁹⁾	
조 정 대 상	• 미디어오늘 : (1) 『○○방송, 천만 달러에 미 국무부 주파수 대여 추진』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3일자 1면), (2) 『\1면, ;○○방송, 천만...’서 계속』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3일자 2면) • 네이버·다음 : 『[단독] ○○방송, 천만 달러 받고 미 국무부에 주파수 대여 추진』 제하의 기사 (2013년도 3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천만 달러를 받고 미국 국무부에 주파수를 대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미디어오늘 : 취하 • 네이버·다음 :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3서울조정346~347 (정정·손배청구) 1. (재)○○방송, 2. 김○○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단독] ○○방송, 천만 달러 받고 미 국무부에 주파수 대여 추진』 제하의 기사 (2013년도 3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1 방송사가 천만 달러를 받고 미국 국무부에 주파수를 대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인 2가 미국 CIA의 첩자라는 설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3경남조정12~15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 주식회사 對 주간함양, 인터넷 주간함양
조 정 대 상	• 주간함양 : (1) 『만평 <132> 유○○ 화백』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4일자 2면) (2) 『외지 蔘 반입 업체 퇴출운동 확산』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5일자 1면) (3) 『만평 <134> 유○○ 화백』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5일자 2면) (4) 『“명품 함양 산양삼 다함께 만들자”』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4일자 1면) (5) 『〈1면서 계속〉 함양 산양삼 결의대회』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4일자 3면) • 인터넷 주간함양 : (1) 『〈457호 - 2013년 2월 4일자〉 만평』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4일자) (2) 『외지 蔘 반입 업체 퇴출운동 확산, 군·경찰·군의회 철저한 진상규명 착수』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5일자) (3) 『〈459호 - 2013년 2월 25일자〉 만평』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5일자) (4) 『“명품 함양 산양삼 다함께 만들어 가자”,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결의대회 열려』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외지 삼으로 담근 산삼주를 함양의 산양삼으로 담근 것처럼 광고하며 판매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350~351	(매체별 정정청구) 농업회사법인 (주)○○○축산 對 SBS-TV, SBSi
조 정 대 상	•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현장 Report - 다운너 · 죽은 소 마구잡이 불법 도축』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14일자 20:00) • SBSi : 『[단독] 쓰러진 소를 ‘질질’...불법 도축 포착』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신청인주장	병든 소를 불법도축하여 시중에 고기를 판매한 축산업체에 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의 도축작업장인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SBS-TV : 조정성립 (내용 : SBS에 반론보도, 조건부 후속보도, 부제소) • SBSi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조건부 후속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SBS-TV [SBS에 반론보도] SBSi의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함 [조건부 후속보도] 조정대상보도에서 언급된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에 대한 경찰수사(검찰수사 포함) 결과 혐의가 없다거나 이와 동등한 형태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사건이 종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후속보도를 이행하도록 함 • SBSi [SBS에 반론보도]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함 [조건부 후속보도] 조정대상보도에서 언급된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에 대한 경찰수사(검찰수사 포함) 결과 혐의가 없다거나 이와 동등한 형태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사건이 종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후속보도를 이행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 SBSi : 『〈쓰러진 소를 ‘질질’...불법 도축 포착〉 보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8일자)

2013경기조정35	(손배청구) 이○○ 對 에스텍&스파
조 정 대 상	『리테일 판매수익의 원천, Front Dest Sale』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호 146~147면)
신청인주장	스파 마케팅에 대한 보도와 함께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기사삭제] 신청인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함
2013경기조정36~37	(매체별 정정청구) 농업회사법인 (주)○○○축산 對 경기일보, 인터넷 경기일보
조 정 대 상	『경찰, ‘다우너·죽은 소’ 화성 도축장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경기일보 2013년 3월 18일자 6면, 인터넷 경기일보 3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죽거나 병든 소를 불법 도축한 혐의로 현재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경기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5일자 6면) - 인터넷 경기일보 : 『[알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5일자)
2013서울조정352~35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MBC-TV⁽³⁵²⁻³⁵³⁾, iMBC^(354-355, 352-353과 병합), 네이버⁽³⁵⁶⁻³⁵⁷⁾, 다음⁽³⁵⁸⁻³⁵⁹⁾
조 정 대 상	-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집중취재] 엉터리 오존 살균기』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7일자 20:00) - iMBC·네이버·다음 : 『[집중취재] 학교 식중독 예방 오존살균기 ‘엉터리’』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만든 오존살균기가 제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기까지 하는 엉터리 제품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MBC-TV·iMBC : 조정성립 (내용 : MBC-TV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다음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44~47 참조)] ※ 기타 합의사항 - MBC-TV·iMBC : iMBC의 조정대상 기사를 매개한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에 반론 보도문을 전송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함 ※ 이행방법 - MBC-TV·iMBC : [MBC-TV에 반론보도] <TV 속의 TV> 프로그램 끝부분에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의 본문을 아나운서 육성으로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되, 낭독하는 동안 제목과 본문 내용을 전체 화면의 1/3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여 15초 이상 계속 표시함
이 행 결 과	- MBC-TV : TV 속의 TV 프로그램 『990회 - 「학교 식중독 예방 오존살균기 ‘엉터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8일자 12:20) - iMBC : 『학교 식중독 예방 오존살균기 ‘엉터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8일자)

2013서울조정360	(반론청구) 1. 재외동포재단, 2. 김○○ 對 인터넷 월드코리아신문
조 정 대 상	『수첩』 로마 스페인광장에서의 ‘사모님 논쟁’』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유럽 출장길에 동반한 수행 여직원을 두고 주변에서 ‘사모님’ 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반론보도문을 뉴스레터를 통해 독자들에게 조정대상기사와 함께 발송함 ※ 이행방법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기사삭제] 반론보도문을 뉴스레터를 통해 독자들에게 조정대상기사와 함께 발송한 후 48시간 이후에는 반론보도문과 조정대상 기사를 모두 삭제함
이 행 결 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8일자)
2013서울조정361~374	(매체별 정정청구) (주)○○○○○○○○ 對 뉴시스 ⁽³⁶¹⁾ , 연합뉴스 ⁽³⁶²⁾ , 뉴스1 코리아 ⁽³⁶³⁾ , 디지털 세종신문 ⁽³⁶⁴⁾ , 스타뉴스 ⁽³⁶⁵⁾ , 미디어스 ⁽³⁶⁶⁾ , 노컷뉴스 ⁽³⁶⁷⁾ , 인터넷 기자협회보 ⁽³⁶⁸⁾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³⁶⁹⁾ , 오마이뉴스 ⁽³⁷⁰⁾ , 인터넷 미디어오늘 ⁽³⁷¹⁾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³⁷²⁾ , 온라인 중앙일보 ⁽³⁷³⁾ , 아이피디저널(IPD저널) ⁽³⁷⁴⁾
조 정 대 상	• 뉴시스 : 『MBC 위법 경찰 수사 촉구하는 MBC 노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연합뉴스 : 『MBC노조, ‘해킹 의혹’ 사측에 7 천만 원 손해소송』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뉴스1 코리아 : 『MBC 노조 김○○ 사장 상대 손해 청구』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디지털 세종신문 : 『MBC 노조, 김○○ 사장 등 상대로 손해배상 제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5일자) • 스타뉴스 : 『MBC 노조 “사측 해킹프로그램 유포”..7 천만 원 손해소』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5일자) • 미디어스 : 『MBC노조, 김○○ 사장과 MBC에 ‘7천만 원’ 손해소』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노컷뉴스 : 『MBC노조 “사측이 악성프로그램으로 해킹했다” 7천만 원 손해소』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인터넷 기자협회보 : 『MBC 노조, ‘○○○○’ 손해배상 소송 제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MBC노조, ‘해킹 피해’로 사측에 손해소송 제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오마이뉴스 : 『회사가 조직원 해킹?...MBC 노조원 회사 상대로 민사소송』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인터넷 미디어오늘 : 『MBC 노조, 사측 ‘해킹’ 의혹에 손해배상 제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MBC노조, ‘해킹 의혹’ 사측에 7천만 원 손해소송』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온라인 중앙일보 : 『MBC노조 “사측이 악성프로그램으로 해킹했다” 7천만 원 손해소』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아이피디저널(IPD저널) : 『MBC노조, 사측 ‘해킹’ 의혹에 7000만 원 손해소』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악성 해킹프로그램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뉴시스·연합뉴스·뉴스1 코리아·디지털 세종신문·스타뉴스·미디어스·노컷뉴스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48~61 참조)] • 인터넷 기자협회보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74~75 참조)]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오마이뉴스·인터넷 미디어오늘·인터넷 파이낸셜뉴스·온라인 중앙일보·아이피디저널(IPD저널)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62~73 참조)]

2013서울조정375~376 (정정·반론청구) 영상물등급위원회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특하면 제한상영가 판정... 영등위 심의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애매한 기준을 가지고 제한상영가 등급을 잇달아 매기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경기조정38~39 (정정·손배청구) 주○○ 對 인터넷 경기신문	
조 정 대 상	『교복업체 특허 쥐고 ‘甲 행세’... 신입생 사복등교』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신청인주장	한복교복을 제작하는 신청인이 교복디자인에 대한 특허권을 이용해 학교에 갑(甲) 행세를 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교복업체 특허 쥐고 甲행세’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3일자)
2013충북조정14 (정정청구) (주)○○○○컨트리클럽 對 인터넷 충북일보	
조 정 대 상	『충주 ○○○○ CC 9홀 ‘대중제 전환’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신청인주장	회원제인 신청인 골프장의 일부 홀을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최근 크게 저조한 경영실적을 만회하기 위한 속임수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377~381 (매체별 정정청구) 김병관 對 한겨레 ⁽³⁷⁷⁾ , 인터넷 한겨레 ^(378, 377과 병합) , 네이버 ⁽³⁷⁹⁾ , 네이트 ⁽³⁸⁰⁾ , 다음 ⁽³⁸¹⁾	
조 정 대 상	(1) 『김○○ 2사단장 시절 공사 ‘리베이트’ 물의』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3년 2월 20일자 1면, 인터넷 한겨레·네이버·네이트·다음 2월 20일자) (2) 『군 ‘K2 파워팩’ 중개상 끼워 구매... 김○○ 소속 업체도 43억 원 챙겨』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3년 2월 22일자 1~2면, 인터넷 한겨레·네이버·네이트·다음 2월 22일자)
신청인주장	국방부장관 후보자인 신청인이 사단장 재직 시절 부대공사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한겨레·인터넷 한겨레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네이버·네이트·다음 :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에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한겨레 : 『김○○ 전 국방장관 후보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0일자 2면) • 인터넷 한겨레·네이버·네이트·다음 : 『[김○○ 전 국방장관 후보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0일자)

2013서울조정382~383 (정정 · 손해청구) (주)○○○○○○○ 對 뉴스플러스	
조 정 대 상	『SH공사 음식물쓰레기처리기 1년도 안 돼 먹통, 주민들 “좋은 것 놔두고 왜 불량품을?, 유착 관계 의심”』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4일자)
신청인주장	SH공사가 거액을 들여 신청인 회사가 개발한 음식물처리기를 시범 설치하는 등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SH공사 음식물쓰레기처리기 1년도 안 돼 먹통, 주민들 ‘좋은 것 놔두고 왜 불량품을?, 유착관계 의심’” 보도,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8일자)
2013서울조정384 (정정청구) 김○○ 對 미디어스	
조 정 대 상	『MBC 제3노조 위원장 “MBC 공정성, 문제제기 안할 것”』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5일자)
신청인주장	MBC 노조위원장인 신청인이 ‘방송사의 현 사장은 보도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MBC 제3노조위원장 인터뷰”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9일자)
2013서울조정385~393, 403 (매체별 정정청구) 주식회사○○○엔터테인먼트 對 TV리포트 ⁽³⁸⁵⁾ , 스포츠한국 ⁽³⁸⁶⁾ , 스타엔 ⁽³⁸⁷⁾ , 리뷰스타 ⁽³⁸⁸⁾ , 마이데일리 ⁽³⁸⁹⁾ , 인터넷 MBN ⁽³⁹⁰⁾ , 뉴스엔 ⁽³⁹¹⁾ , 티브이데일리 ⁽³⁹²⁾ , 스타투데이 ⁽³⁹³⁾ , 인터넷 스포츠한국 ⁽⁴⁰³⁾	
조 정 대 상	• TV리포트 : 『[단독] 폭행논란 정○○ 복귀… 이○○와 ‘슈퍼맨 강보상’ 캐스팅』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0일자) • 스타엔 : 『정○○ 복귀, 영화 ‘슈퍼맨 강보상’ 캐스팅 ‘이○○와 호흡’』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0일자) • 리뷰스타 : 『정○○, 폭행혐의 벗고 스크린 복귀… ‘이○○’와 코믹 호흡 기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0일자) • 마이데일리 : 『정○○, 4년만에 스크린 복귀… ‘슈퍼맨 강보상’』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0일자) • 인터넷 MBN : 『폭행논란 정○○ 복귀, 영화 ‘슈퍼맨 강보상’으로 컴백』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0일자) • 뉴스엔 : 『정○○ 5년만에 ‘슈퍼맨 강보상’ 스크린 복귀, 이○○와 호흡』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0일자) • 티브이데일리 : 『정○○ 복귀, 이○○ 주연 ‘슈퍼맨 강보상’ 캐스팅』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0일자) • 스타투데이 : 『‘폭행논란’ 정○○, 이○○와 영화 ‘슈퍼맨 강보상’ 주연 발탁』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0일자) • 인터넷 스포츠한국 : 『폭행논란 정○○, ‘슈퍼맨 강보상’으로 영화계 복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제작을 준비하고 있는 영화에 폭행혐의로 물의를 빚은 영화배우가 출연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TV리포트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스포츠한국 : 취하 (사유 : 지면 미게재) • 스타엔 · 리뷰스타 · 마이데일리 · 인터넷 MBN · 뉴스엔 · 티브이데일리 · 스타투데이 · 인터넷 스포츠한국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이행방법 • TV리포트 : [정정보도] 2013년 4월 5일 12:00부터 뉴스섹션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통상적인 활자와 크기로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 TV리포트 : 『영화화 되는 ‘슈퍼맨 강보상’ 캐스팅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5일자)

2013전북조정11~12	(기사별 정정 · 손배청구) 1. 이○○, 2. (주)○○○엔지니어링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1) 『전북 익산시장 최측근 친구, 각종 공사에 막강한 영향력 행사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3일자) (2) 『전북 익산 현직 시의원, 역대 재산 누락 신고 물의』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익산시에서 진행중인 각종 공사에 익산시장의 친구인 신청인이 직 · 간접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제기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광주조정5~8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의료법인 ○○의료재단 對 화순일보, (주)화순일보
조 정 대 상	(1) 『A의료재단법인 국고 보조금 편취 ‘의혹’』 제하의 기사 (화순일보 2013년 3월 4일자 1면, (주)화순일보 3월 4일자) (2) 『A의료재단, 또 국고 보조금 빼먹기인가?』 제하의 기사 (화순일보 2013년 3월 4일자 11면, (주)화순일보 3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의료재단이 허위 문서를 꾸며 인건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적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약속) ※ 이행방법 : [화순일보에 반론보도] 2013년 4월 30일까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화순 A의료재단 국고보조금 편취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화순일보 2013년 4월 29일자 2면, (주)화순일보 4월 27일자)

2013서울조정394 (정정청구) 박○○ 對 스포츠서울닷컴	
조 정 대 상	『[단독] 경찰 “박○○ 거짓말탐지기 결과 ‘모두 거짓’”』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연예인인 신청인이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수사를 받으면서 한 발언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모두 거짓으로 나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조건부 추후 및 사과보도)
2013서울조정395 (정정청구) 박○○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단독] 경찰 “박○○ 기소의견... 필요하면 구속영장도 신청”』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연예인인 신청인이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수사를 받으면서 한 발언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모두 거짓으로 나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이 행 결 과	『성폭행 피소 박○○ 측 “수사 의견 결정 안 됐다” [반론]』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5일자)
2013서울조정396~397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김○○ 對 SBS-TV, SBSi	
조 정 대 상	•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시의원은 영업 중?』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10일자 20:07) • SBSi : 『입만 열면 “램프 교체”... 시의원의 두 얼굴』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성남시의원인 신청인이 조명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 내 가로등 램프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등 영리행위를 도모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SBS-TV에 반론보도]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에 반론보도를 내보내되, 방송 중 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화면으로 함
이 행 결 과	• SBS-TV :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시의원은 영업 중?” 보도 관련 반론』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25일자 07:10) • SBSi : 『[반론보도문] “시의원은 영업 중?” 보도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5일자)
2013서울조정398~401 (매체별 반론 · 손해청구) (병합) 이○○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급식비 떼먹은 ‘양심 불량 어린이집’... 재발 대책은?』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13일자 19:55) • iMBC : 『[다시보기] 급식비 떼먹은 ‘양심 불량 어린이집’... 재발 대책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급식 재료 업체와 싸고, 급식비로 지원되는 국가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MBC-TV에 조건부 추후보도, 손해배상 5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MBC-TV에 조건부 추후보도] 조정대상보도 내용과 관련해 신청인이 무죄판결을 받거나 수사결과 혐의 없음이 인정된 경우, 신청인과 사전 협의하여 그 내용을 <MBC 이브닝 뉴스>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도록 함

2013서울조정402	(정정청구) 경찰청 對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1~2회 구매는 처벌 NO, 3차례 이상은 스톱킹?』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2일자 6면)
신청인주장	경찰의 경범죄 처벌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인터넷 서울신문 기사수정)

2013경기조정40	(기사별 반론청구) 김○○ 對 성남투데이
조 정 대 상	(1) 『성남시의회 겸직으로 부적절한 처신 ‘눈살’』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1일자) (2) 『성남시의회, 동료의원 이권개입 의혹 폭로 ‘공방전’』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성남시의원인 신청인이 조명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 내 가로등 램프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등 영리행위를 도모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피신청인이 2013년 3월 17일 유튜브 사이트에 게시한 『의회열전2』 성남시의회 강○○의원의 의혹제기와 김○○의원의 해명』 제하의 동영상 자막을 2013년 4월 10일 09:00까지 삭제하도록 함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성남시의회 김○○ 의원’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0일자)

2013서울조정404~408	(매체별 정정청구) 이 ○ 對 한국경제 ⁽⁴⁰⁴⁾ , 한경닷컴 ⁽⁴⁰⁵⁾ , 민중의소리 ⁽⁴⁰⁶⁾ , 대학뉴스 ⁽⁴⁰⁷⁾ , e대학저널 ⁽⁴⁰⁸⁾
조 정 대 상	• 한국경제·한경닷컴 : 『법원 “○○여대 설립자 조○○”』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3년 3월 11일자 27면, 한경닷컴 3월 11일자) • 민중의소리·대학뉴스 : 『법원 “○○여대 설립자는 조○○”... 1심 판결 번복』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1일자) • e대학저널 : 『○○여대, 설립자 논쟁에서 ‘승’』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1일자)
신청인주장	모 대학교재단 설립자(故 이 모 씨)의 손자인 신청인이 제기한 설립자 기재 정정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취소하고故 조 모 씨를 설립자로 인정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공동 설립자로 인정한 것이다.
처 리 결 과	• 한국경제 :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 한경닷컴 :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민중의소리·대학뉴스 :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 e대학저널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한경닷컴 : [후속보도] 2013년 4월 30일 09:00부터 5월 2일 09:00까지 뉴스면 주요 뉴스 목록 상단에 후속보도문 제목을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 한국경제·한경닷컴 : 『○○여대 설립자 논란 대법서 결판』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3년 4월 24일자 28면, 한경닷컴 4월 24일자) • 민중의소리·대학뉴스 : 『법원 “조○○·이○○, 모두 ○○여대 설립자”』 제하의 기사 (민중의 소리 2013년 3월 29일자, 대학뉴스 4월 1일자)

2013서울조정409~412 (매체별 조정 · 손해청구) (병합) 선○○ 對 KBS-1TV, KBS 미디어	
조 정 대 상	•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사행성 게임장 활개』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18일자 21:00) • KBS 미디어 : 『[현장추적] 단속 ‘뒷집’ 속 사행성 게임장 다시 활개』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이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는 불법 사행업소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413~414 (매체별 손해청구) (병합) 김○○ 對 중앙Sunday, 인터넷 중앙Sunday	
조 정 대 상	『게임머니 환전 ‘머니상’에 걸리면 도박 폐인』 제하의 기사 (중앙Sunday 2013년3월 17일자 8면, 인터넷 중앙Sunday 3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온라인 도박 중독 폐해를 보도하면서 동의 없이 신청인의 초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2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피신청인 회사의 사진 데이터베이스에서 신청인의 사진을 모두 삭제하도록 함
2013광주조정9 (정정청구) 1. ○○대학교, 2. 지○○ 對 광주일보	
조 정 대 상	『○○대 총장, ○○병원장 동기 추천 물의』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5일자 6면)
신청인주장	대학교 총장인 신청인이 취임 이후 학장 임명 및 대학병원의 신임병원장 선임 등과 관련하여 원칙과 관행을 무시한 인사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415~418 (매체별 조정 · 손해청구) 대한불교조계종 ○○사 對 뉴시스, 네이버	
조 정 대 상	• 뉴시스 : (1) 『‘도박 파문’ 스님, 보도한 언론사 대표 폭행』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3일자) (2) 『○○ 스님, ‘불자가 술·담배도 모자라 살인까지 하려 들어’』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5일자) (3) 『○○사 부주지 등 살인혐의로 고발한 ○○ 스님』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5일자) • 네이버 : (1) 『○○사 前 부주지,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3일자) (2) 『○○ 스님, ‘불자가 술·담배도 모자라 살인까지 하려 들어’』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5일자) (3) 『○○사 부주지 등 살인혐의로 고발한 ○○ 스님』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사찰 소속 부주지와 승려들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뉴시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보도 (2013서울중재76~77 참조)] ※ 기타 결정사항 • 뉴시스 : 조정대상기사를 매개했던 네이버에 정정보도문을 전송하여 정정보도문도 매개될 수 있도록 함 ※ 이행방법 • 뉴시스 : [정정보도] 홈페이지 사회 일반면 및 포토 국내사진면 초기화면에서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48시간 이상 각 게재함
이 행 결 과	• 뉴시스 : 『○○사 前 부주지,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3일자)

2013부산조정2~3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부산광역시 기장군 對 주간기장신문, 인터넷 기장신문
조 정 대 상	『신도시, 때 아닌 부동산 가격 논란』 제하의 기사 (주간기장신문 2013년 3월 8일자 1면, 인터넷 기장신문 3월 8일자)
신청인주장	기장군이 핵의과학단지 승인을 전제로 폐기물매립장을 조건부 수용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기장군은 매립장 부지 선정 권한이 없으며, 조건부 수용을 합의한 사실도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기장신문에 반론보도] 2013년 4월 4일부터 2일간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기장군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주간기장신문 2013년 4월 17일자 1면, 인터넷 기장신문 4월 4일)
2013서울조정419	(기사별 정정청구) 재단법인 기독교○○○○○○○○회 對 국민일보
조 정 대 상	(1) 『조○○ 목사 ‘임시통합총회장’ 추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6일자 29면) (2) 『“교단 통합으로 제2 부흥역사 일구자”』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6일자 30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교단이 조 모 목사를 교단 임시통합총회장으로 추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피신청인 이익신청 (사유 : 신청인의 주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2013서울조정420	(반론청구) 주식회사 ○○○○○○사 對 SBS-TV
조 정 대 상	SBS 8 뉴스 프로그램 『“생계 보장한다더니” 한강 떠나는 영세상인들』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8일자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서울시의 한강편의점 영세상인 복직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 <SBS 뉴스> 프로그램 끝부분에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의 본문을 아나운서 육성으로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되, 그 동안 위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계속 표시 하고, 전체 배경화면에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의 자료화면을 방영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SBS 뉴스 프로그램 『[한국 떠나는 영세상인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16일자 10:30)

2013서울조정421~422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노○○ 對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닷컴	
조 정 대 상	• 아시아투데이 : 『투자금 모르쇠' 갈라진 우정』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8일자 14면) • 아시아투데이닷컴 : 『○○, 노○○ 대표 30억 민사소송 당해... 친구 투자문제와 도덕성 도마』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주식회사를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상의 없이 기존 회사를 폐업시키고 기존회사의 핵심인사 및 기술을 빼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사과보도, 아시아투데이닷컴 기사삭제,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아시아투데이닷컴 : 정정 및 사과보도 후 24시간이 지나면, 원 조정대상기사와 함께 정정 및 사과보도문도 삭제하도록 함 ※ 이행방법 : [아시아투데이닷컴에 정정 및 사과보도] 홈페이지 산업면에 정정 및 사과보도문의 제목을 []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아시아투데이 : 『○○ 노○○ 대표 30억 민사 피소』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9일자 14면) • 아시아투데이닷컴 : 『“○○ 노○○ 대표 30억 민사소송 피소”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9일자)
2013서울조정423~427 변○○ 對 경향신문 ^(423 정정청구) , 인터넷 경향신문 ^(424 정정청구, 423과 병합) , 노컷뉴스 ^(425 정정청구) , 다음 ^(426 정정청구) , 조선닷컴 ^(427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 경향신문 : 『“박원순·공○○·○○은 종북주의자” 국정원의 황당 강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4일자 1면) • 인터넷 경향신문 : (1) 『[단독] 국정원 ‘종북 낙인찍기’ 시민 강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4일자) • (2) 『“박원순 시장 중복세력 매도, 국정원법 위반”』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4일자) • (3) 『[단독] 국정원 강연서 “박원순·공○○… ○○○도 종북주의자”』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4일자) • 노컷뉴스·다음 : 『○○○ “내가 종북? 귀여운 변○○, 열심히 사세요”』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5일자) • 조선닷컴 : (1) 『○○○ “변○○ 오빠, 내가 친노종북? 짹하네요, 양!”』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5일자), (2) 『변○○-○○○, ‘종북주의자’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모 방송인을 종북주의자라고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경향신문·인터넷 경향신문·노컷뉴스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다음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조선닷컴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기타 합의사항 • 노컷뉴스 : 반론보도문을 게재한 즉시, 계약관계 각 포털사에 반론보도문을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 이행방법 • 경향신문·인터넷 경향신문 : [인터넷 경향신문에 반론보도] 사회면 초기화면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 노컷뉴스 : [반론보도] 정치면 초기화면의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 다음 : [반론보도] 초기화면 뉴스면 기사 목록 부분에 2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함
이 행 결 과	• 경향신문·인터넷 경향신문 : 『“○○○은 종북주의자” 기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3년 4월 16일자 2면, 인터넷 경향신문 4월 16일자) • 노컷뉴스·다음 : 『“변○○-○○○ 보도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노컷뉴스 2013년 4월 16일자, 다음 4월 26일자) • 조선닷컴 : 『“○○○은 종북주의자” 기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7일자)

2013서울조정428 (손배청구) 이○○ 對 KBS-ITV	
조 정 대 상	인간극장 프로그램 『○○와 ○○, 그들이 사는 세상』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27일자 07:50)
신청인주장	강연에 참석하여 간식을 수령하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방송에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KBS 미디어 기사수정)
2013서울조정429 (정정청구) ○○중학교 對 e새한일보	
조 정 대 상	『시대에 뒤떨어진 학교운영위원회』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학교장의 명패를 운영위원장의 명패보다 더 크게 붙이는 등 위원회를 권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광명 C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2일자)
2013서울조정430~432 (매체별 추후청구) 성○○ 對 중앙일보 ⁽⁴³⁰⁾ , 동아일보 ⁽⁴³¹⁾ , 조선닷컴 ⁽⁴³²⁾	
조 정 대 상	• 중앙일보 : 『김정일 처남 만나 술접대 받고… “연평도 완패 축하” 글 올리고』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7일자 1면) • 동아일보 : 『김정일 처남 만나고… 北 찬양글 126차례 배포』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7일자 2면) • 조선닷컴 : 『김정일 처남 만나 술접대 받고 北 찬양글 살포한 일당 체포』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신문사 편집인이었던 신청인이 2008년부터 중국에서 김정일의 처남 등 북한 인사들과 직접 접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보도했으나 대부분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중앙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온라인 중앙일보 기사삭제, 부제소) • 동아일보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추후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불기소처분 사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소유예 사안은 관련 기관에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중재부의 추후보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 조선닷컴 :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조선닷컴 : [추후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주요 뉴스 목록 상단에 추후보도문 제목을 24시간 동안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중앙일보·조선닷컴 : 『“이적 표현물 반포 성모씨”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3년 4월 12일자 12면, 조선닷컴 4월 10일자)

2013경기조정41 (정정청구) ○○중학교 對 경인매일닷컴	
조 정 대 상	『학교운영위원회 ‘구호만 요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학교장의 명패를 운영위원장의 명패보다 더 크게 붙이는 등 위원회를 권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광명 C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4일자)
2013경기조정42~43 (정정 · 손배청구) 조○○ 외 4인 對 인터넷 부천신문	
조 정 대 상	『부천시 ○○○ 가요 봉사단 ‘漸入佳境’- ①』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지역 여성 봉사단체 창립총회에 참석한 신청인들의 모습이 동의 없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충북조정15~16 (매체별 정정청구) 1. 배○○, 2. 오○○ 對 충북일보, 인터넷 충북일보	
조 정 대 상	• 충북일보 : 『○○ 기름 유출로 식수원 오염 위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7일자 3면) • 인터넷 충북일보 : 『○○ 기름 유출로 식수원 오염 가능성』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6일자)
신청인주장	면장과 관내 치안센터장인 신청인들이 주민들의 농업용수 및 식수원이 오염될 수 있는 기름 유출 사고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이 행 결 과	• 충북일보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8일자 9면) • 인터넷 충북일보 :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7일자)
2013서울조정433 (반론청구) 김○○ 對 방송대신문	
조 정 대 상	『○○○연합 문제 ‘오리무중’』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8일자 5면)
신청인주장	연합회 회장인 신청인의 관리 하에 회칙에 따라 치러진 차기 회장 선거에 문제가 많았던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김○○ 전 회장, ○○○ 선거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5일자 4면)
2013서울조정434 (손배청구) 주식회사 코스콤 對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조 정 대 상	『‘낙하산 천국’ 코스콤, 오명 벗어날 기회가 왔나?』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5일자)
신청인주장	기타 공공기관인 신청인 회사의 기관장이 낙하산 인사를 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시스템 장애문제가 발생한 무렵 사태 수습을 뒤로하고 일본으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대구조정19~20 (기사별 정정·반론청구) (주)○○○○해운 對 매일신문	
조 정 대 상	(1) 『포항~울릉 화물료 제주보다 비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7일자 1면), (2) 『부산~제주보다 더 비싼 포항~울릉 화물 요금』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7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포항-울릉 간 노선 화물료 운항원가가 타 항로에 비해 가장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싼 화물 운반료를 받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해운 포항~울릉 운임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4일자 2면)
2013서울조정436 (정정청구) 오○○ 對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조 정 대 상	『○○건설 “○○○○○○ 부실시공 논란은 사실 왜곡”』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일자)
신청인주장	건설사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신청인이 아파트 부실시공을 진행하고 이를 빌미로 소속업체에 금품을 요구하고, 입주예정자협의회에 제보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437~448 (매체별 정정청구) 신○○ 외 17인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 ⁽⁴³⁷⁾ , 베타뉴스 ⁽⁴³⁸⁾ , 지디넷코리아 ⁽⁴³⁹⁾ , 뉴스웨이 ⁽⁴⁴⁰⁾ , 뉴스1 코리아 ⁽⁴⁴¹⁾ , 뉴스핌 ⁽⁴⁴²⁾ , Citydaily(시티데일리) ⁽⁴⁴³⁾ , 케이벤처 ⁽⁴⁴⁴⁾ , City(시티) ⁽⁴⁴⁵⁾ , 조선닷컴 ⁽⁴⁴⁶⁾ , 뉴스엔 ⁽⁴⁴⁷⁾ , IT동아 ⁽⁴⁴⁸⁾	
조 정 대 상	• 인터넷 헤럴드경제 : 『○○모바일 “보조금 먹튀 아니다” 반박,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4일자) • 베타뉴스 : 『○○모바일, ‘보조금 먹튀 아냐’ 법적대응할 것』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4일자) • 지디넷코리아 : 『○○모바일 버력 “먹튀 사실아냐... 강경대응”』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4일자) • 뉴스웨이 : 『‘먹튀논란’ ○○모바일 “히든보조금 지급 완료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4일자) • 뉴스1코리아 : 『‘200억 보조금먹튀’ 논란 휩싸인 ○○모바일 “법적대응”』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일자) • 뉴스핌 : 『○○모바일 “먹튀논란 사실아냐... 허위사실 법적 대응”』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4일자) • Citydaily(시티데일리) : 『○○모바일, ‘보조금 먹튀’ 반박나서... 법적대응할 것』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4일자) • 케이벤처 : 『○○모바일 현재도 정상 운영, ‘먹튀 논란’ 억울하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4일자) • City(시티) : 『‘먹튀 논란’ ○○모바일 발끈』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4일자 15면) • 조선닷컴 : 『‘빨간색 글자’에 속은 사람들... ‘○○먹튀’ 사건 전말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일자) • 뉴스엔 : 『○○모바일 공식입장 “보조금지급 언급한적 없다, 법적대응할 것”』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일자) • IT동아 : 『“우리가 ‘먹튀’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 ○○모바일 반박 나서』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4일자)

신청인주장	모 휴대폰 판매업체에서 휴대폰을 구입했다 피해를 입은 신청인들이 언론사에 제보한 피해내용이 허위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인터넷 헤럴드경제 · 베타뉴스 · 지디넷코리아 · 뉴스웨이 · 뉴스코리아 · 뉴스핌 · 케이벤처 · 뉴스엔 · IT동아 :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약속) - Citydaily(시티데일리) · City(시티) · 조선닷컴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인터넷 헤럴드경제 · 베타뉴스 : 『‘보조금 미지급 논란’ ○○모바일, 기소의견 검찰 송치』 제하의 기사 (인터넷 헤럴드경제 2013년 7월 11일자, 베타뉴스 7월 9일자) - 지디넷코리아 : 『‘보조금 사기’ ○○모바일, 기소의견 송치』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9일자) - 뉴스웨이 : 『‘보조금 사기 논란 ‘○○모바일’ 기소의견 검찰 송치』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 뉴스코리아 : 『경찰, ○○모바일 보조금 사기혐의로 검찰송치』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9일자) - 뉴스핌 : 『‘보조금 미지급 논란 ‘○○모바일’, 검찰 송치』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 케이벤처 : 『‘휴대폰 보조금 사기’ ○○모바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9일자) - 뉴스엔 : 『‘○○모바일 보조금사건 피해자측 “○○모바일 해명,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5일자) - IT동아 : 『‘○○모바일 피해자 측, “○○모바일 주장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9일자)

2013서울조정449	(기사별 정정청구) 1. 서울특별시, 2. 안○○ 對 아시아투데이
조 정 대 상	(1) 『현행 법 무시한 1200억 규모 공사 승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0일자 19면) (2) 『지하주차장 편법 동원... 위태위태한 진입로』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1일자 19면) (3) 『환승센터→주차장’ 둔갑... 도시계획위의 꼼수』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2일자 19면)
신청인주장	서울시의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공사 승인과정에서 법규위반과 특혜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아시아투데이닷컴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아시아투데이닷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에 24시간 이상 게재함
이 행 결 과	『‘잠실역 환승센터 특혜 의혹’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일자 18면)

2013강원조정7	(정정청구) 춘천시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기자회견 강경진압 소홀” 춘천시, 청원경찰 징계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춘천시가 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하며 퇴거명령에 불응한 시민단체에 유리한 법정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한 청원경찰을 직위해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춘천네트워크, 청원경찰 징계 철회 촉구』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9일자)

2013서울조정450 (손배청구) 유○○ 對 MBN	
조 정 대 상	MBN뉴스8 프로그램 『내부 고발자 보호 외면』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28일자 20:00)
신청인주장	내부 고발자 보호 소홀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면서 가구납품비리를 고발했다가 업계를 떠나게 된 신청인의 초상 등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3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서울조정451~452 (매체별 반론청구) (주)에어라인○○○○ 對 채널A, 인터넷 채널A	
조 정 대 상	• 채널A : 채널A 종합뉴스 프로그램 『“스튜어디스 특채 보장” 구직자 울리는 바가지 수강료』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2일자 21:40) • 인터넷 채널A : 『“스튜어디스 특채 보장” 구직자 울리는 바가지 수강료』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일자)
신청인주장	스튜어디스 학원업체에서 항공사 ‘특채’를 보장한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학원의 로고와 내부시설 등을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인터넷 채널A 기사수정,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채널A 기사수정] 조정대상보도 영상(1분에서 1분 49초)의 배경이 신청인의 관련시설임을 일반 시청자가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함
2013서울조정453~454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對 문화일보, 인터넷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1) 『세종문화회관 9개 예술단 정기공연 26개중 25개 적자』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3년 1월 11일자 11면, 인터넷 문화일보 1월 11일자) (2) 『외면받는 세종문화회관 ‘찾아가는 공연’ “무료공연 수준... 누가 보나” 객석 ‘딩딩’』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3년 3월 18일자 13면, 인터넷 문화일보 3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세종문화회관 9개 예술단의 공연수준이 낮아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으며, 예술단 정년제도가 적자경영의 주요원인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문화일보에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에 08:00부터 24시간 이상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세종문화회관 예술단 적자 공연’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3년 5월 3일자 11면, 인터넷 문화일보 5월 3일자)
2013서울조정455~456 (정정·손배청구) 유 ○ 對 인터넷 일요시사	
조 정 대 상	『‘막장교육’ 인천 A전문학교 실체』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인천의 모 전문학교 대표인 신청인이 학과를 임의로 폐지하는 등 ‘막장교육’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 2013년 4월 24일 12:00부터 사회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인천 A전문학교 부실운영’ 보도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2013경기조정44~45	(정정 · 손해청구) 1. 양○○, 2. 강○○ 對 dstv(한국교회공보)
조 정 대 상	『○○교도소, 이번엔 ‘인사바리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교도소 직원인 신청인들이 배후 영향력 때문에 승진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457~464, 539~541	이○○ 對 MBN ^(457~458 정정 · 손해청구) , 연합뉴스 ^(459~460 정정 · 손해청구) , 인터넷 헤럴드경제 ^(461~462 정정 · 손해청구) , e머니투데이 ^(463~464 정정 · 손해청구) , iMBC ^(539 손해청구) , Citydaily(시티데일리) ^(540~541 정정 ·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 MBN : MBN뉴스8 프로그램 『[단독]경찰 간부, 무용 강사 ‘성추행’ 피소... 대기발령 조치』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4일자 20:00) • 연합뉴스 · 인터넷 헤럴드경제 : 『경찰 간부, 성추행 미수 혐의로 피소』 제하의 기사 (연합뉴스 2013년 4월 4일자, 인터넷 헤럴드경제 4월 5일자) • e머니투데이 : 『현직 경찰간부, 女강사 성폭행 미수 혐의 피소』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5일자) • iMBC : 『현직 경찰 간부, 성추행 혐의로 피소』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4일자) • Citydaily(시티데일리) : 『경찰간부, 성추행 미수 혐의로 검찰 조사』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5일자)
신청인주장	성추행 피해자인 신청인이 돈을 노리고 경찰 간부인 피의자에게 접근했다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MBN : 조정성립 (내용 : 인터넷 MBN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연합뉴스 · 인터넷 헤럴드경제 · e머니투데이 · iMBC · Citydaily(시티데일리)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서울조정465	(손해청구) 이○○ 對 이투데이
조 정 대 상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 인상』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촬영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고속도로 직원으로 근무하는 신청인의 초상과 성명을 임의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2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서울조정466	(손해청구) 김○○ 對 MBC-TV
조 정 대 상	MBC 다큐스페셜 프로그램 『대학 5학년, 불편한 청춘』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18일자 23:15)
신청인주장	취업 때문에 대학 졸업을 미루는 실태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개인신상정보를 동의 없이 방송에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3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의 개인정보(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학번)가 노출된 화면을 일반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며, 추후 해당 조치가 되지 않은 영상이 포털(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에서 발견될 경우(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포함),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사후 조치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

2013서울조정467~468 (정정·손배청구) (주)○○○ 對 채널A	
조 정 대 상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 『골뱅이를 전복으로 속여 제조』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15일자 23: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골뱅이를 전복으로 속여 죽집 등에 납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469, 471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심재권 對 TV조선, 인터넷 TV조선	
조 정 대 상	• TV조선 : 뉴스쇼 판 프로그램 『도 넘은 ‘북한 감싸기’』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9일자 21:50) • 인터넷 TV조선 : 『이 와중에 일부는 김정은 예우?』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9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부 장관에게 “김정은에게 정중한 예의를 갖추라”고 발언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TV조선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면 VOD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 TV조선 : 뉴스쇼 판 프로그램 『심재권 의원 “김정은 호칭 정중하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26일자 10:30) • 인터넷 TV조선 : 『심재권 의원 “김정은 호칭 정중하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2013서울조정470 (정정청구) 신안군 對 시민일보	
조 정 대 상	『빛낸 혈세로 멀쩡한 도로포장』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8일자 14면)
신청인주장	신안군이 군민의 혈세로 멀쩡한 도로에 포장 공사를 강행하고, 군 의회에서 정상적인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빛낸 혈세로 멀쩡한 도로포장”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14면)
2013서울조정472 (병합) 전○○ 외 2인 對 TV조선 ^(472 손배청구) , 조선일보 ^(473~474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TV조선 : 가족, 두 개의 문 프로그램 『완벽한 어머니와 무심한 두 아들』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4일자 20:50) • 조선일보 : 『완벽주의자 어머니와 갈등 겪는 두 아들』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4일자 B11면)
신청인주장	가족관계 치유 프로그램에서 신청인 가족의 이름, 초상 등을 동의 없이 방송에 내보낸 동시에 신청인 가족의 이야기를 왜곡하여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200만 원, 인터넷 TV조선 기사삭제, 조선닷컴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서울조정475~480, 523~528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조선일보 ^(475~477, 523~525) , 조선닷컴 ^(478~480, 526~528)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전쟁 나면 국가 기간방송 역할해야 할 KBS, 무방비로 당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1일자 2면) - 조선닷컴 : 『[3·20 사이버테러] 전쟁 나면 국가 기간방송 역할해야 할 KBS, 무방비로 당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전쟁이 나면 국가 기간방송 역할을 해야 할 KBS가 사이버 테러에 무방비로 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선일보 : ▷ 2013서울조정475~477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 2013서울조정523~525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조선닷컴 : ▷ 2013서울조정478~480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 2013서울조정526~528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조선닷컴 : [정정 및 반론보도] 초기화면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조선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8일자 2면) - 조선닷컴 : 『[알려왔습니다] 3월 21일자 A2면 KBS 사이버 테러 대책 기사』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8일자)

2013대전조정22	(손배청구) 김○○ 對 대전MBC-TV
조 정 대 상	시사플러스 프로그램 『제자 성추행, 교수사회 이대로 좋은가』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12일자 23:15)
신청인주장	대학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건을 다루면서, 이 사건과 무관한 해당 대학의 재학생인 신청인의 실명을 피해자의 가명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481	(정정청구) ○○○○마루(주) 對 KBS-2TV
조 정 대 상	위기탈출 넘버원 프로그램 『급증하는 층간 소음 문제』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1일자 20:5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강화마루가 층간 소음 차단에 효과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PR보도,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KBS 미디어 및 피신청인과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통해 외부에 제공하는 조정대상보도를 모두 삭제하여, 다시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함, 단 조정 대상보도 중 강화마루 관련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재편집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음(공식 공급계약에 의해 콘텐츠를 공급하였으나 삭제가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삭제해야 함) ※ 이행방법 : [PR보도] 강화마루가 층간소음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위기탈출 넘버원 프로그램 『강화마루도 층간 소음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27일자 20:50)

2013서울조정482 (손배청구) 임○○ 對 MBC-TV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진단도 치료시기도 놓친 채 치매 위험에 노출돼 있는 노인들의 실태』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14일자 20:50)
신청인주장	치매환자를 검사하는 의료인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200만 원 지급)
2013서울조정483~484 (매체별 정정청구) 김○○ 對 SBS-TV, SBSi	
조 정 대 상	•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폭력에 막말까지... 어린이집 모니터링 시급』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3일자 20:00) • SBSi : 『폭력에 막말까지... 어린이집 모니터링 시급』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급식이 부실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서울조정485~487 (정정·반론·손배청구) 도○○ 對 일요닷컴	
조 정 대 상	『도○○ ○○○○재단 이사장 산림청 부지 훼손하며 호화 주택 건립 논란 속...』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주택을 리모델링하면서 산림청 부지를 훼손하였고, 이웃 주민과 분쟁 중 폭언을 했다고 허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300만 원,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자신의 주택 건립과 산림청 부지 훼손과는 무관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산림청 관계부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반론보도의 기회를 제공했으나 이를 거절하여 반론 포기 의사로 생각했기 때문에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2013서울조정488~490 (정정·반론·손배청구) 도○○ 對 인터넷 민주신문	
조 정 대 상	『한국의 전통 이웃사촌 문화 짓밟은 ○○○○ 도○○ 이사장 추태』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주택을 불법 증·개축해 이웃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했으나, 관계 기관의 정식 승인을 받고 적법하게 공사한 것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반론·사과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반론·사과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반론·사과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도○○ ○○○○ 재단 이사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일자)

2013서울조정491 (정정청구) 신안군 對 인터넷 일간투데이	
조 정 대 상	『신안군, 특정단체에 선심성 여행경비지원 발생!』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안군이 신안교육청의 교육관련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일간투데이에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사회·전국 섹션 내 호남 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인터넷 일간투데이 : 『“신안군 신안교육청 사업비지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5일자) - 일간투데이 : 『“신안군 신안교육청 사업비지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6일자 14면)
2013서울조정492~493 (정정·손배청구) ○○○○단체총연합회 對 동아일보	
조 정 대 상	『“국민훈장 동백장은 4000만 원”... ○○연합 ‘훈·포장 장사’』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0일자 1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정부에 훈·포장을 추천해주는 대가로 회원들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연합회 훈·포장 장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5월 9일자 12면, 동아닷컴 5월 9일자)
2013서울조정494~49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주)○○○○ 對 더벨,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 더벨 : (1) 『○○○○, 경영권 매각 추진』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4일자), (2) 『○○○○, 라텍스 가격 급등으로 영업환경 ‘악화’』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9일자) - e머니투데이 : (1) 『“콘돔1위” ○○○○, M&A 매물로 등장』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9일자), (2) 『○○○○, 라텍스값 급등, 영업환경 ‘악화’』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최대 주주인 전 대표가 회사 매각을 위해 보유 지분 전량과 경영권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더벨 :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더벨 무료기사 섹션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게재일 10:00 이전부터 게재하기 시작하여 48시간 이상 게재함 - e머니투데이 : [정정보도] 홈페이지 뉴스 산업 섹션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게재일 15:00 이전부터 게재하기 시작하여 48시간 이상 게재함
이 행 결 과	『“○○○○ 경영권 매각,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일자)

2013서울조정498~499 (매체별 손해청구) 최○○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PD수첩 프로그램 『무자식이 상팔자 - 자식 빛에 우는 부모들』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16일자 23:15) • iMBC : 『[다시보기] 무자식이 상팔자 - 자식 빛에 우는 부모들』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취업준비생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광주조정10~13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의료법인 ○○의료재단 對 화순일보, (주)화순일보	
조 정 대 상	• 화순일보 : 『화순 A의료재단법인 부당급여 수급 의혹 ‘점입가경’』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일자 1면), (2) 『A의료재단 ‘기관(허가)취소’ 이뤄질지』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일자 7면) • (주)화순일보 : (1) 『A의료재단 ‘기관(허가)취소’ 이뤄질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8일자), (2) 『“A의료재단 문제” 진실 제대로 밝혀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의료재단에서 부당 급여를 수급한 의혹이 있고, 이로 인해 기관 취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화순일보 :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손해청구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 (주)화순일보 :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이행강제금) ▷ 손해청구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화순 A의료재단 부당급여 수급의혹 ‘점입가경’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화순일보 2013년 4월 29일자 2면, (주)화순일보 4월 27일자)
2013서울조정500~503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김○○ 對 KBS-2TV, KBS 미디어	
조 정 대 상	• KBS-2TV : 의뢰인 K 프로그램 『비정한 엄마 - 불법 입양한 딸 학대 사망 사건』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11일자 20:50) • KBS 미디어 : 『[다시보기] 비정한 엄마 - 불법 입양한 딸 학대 사망 사건』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전경을 동의 없이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금 100만 원 지급,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충북조정17~20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병합) 이○○ 對 인터넷 충북일보, 충북일보
조 정 대 상	(1) 『○○도립교향악단에 바란다』 제하의 기사 (인터넷 충북일보 2013년 1월 21일자, 충북일보 1월 22일자 15면) (2) 『○○도 감사 지적사항도 ‘무시’』 제하의 기사 (인터넷 충북일보 2013년 1월 29일자, 충북일보 1월 30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재임 당시에 단원 실기 평정을 앞두고 일부 단원들의 레슨을 맡아 평정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지역축제 현장에서 물의를 빚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504		(손배청구) 1. 임○○, 2. 심○○ 對 아시아경제닷컴
조 정 대 상	『[포토] 여의도 드디어 벚꽃에 빠지다』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서 상춘객들이 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들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신청인 각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대구조정21		(정정청구) 강석호 對 울진신문
조 정 대 상	『영덕과 울진발전 차이 수치로 확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5일자 5면)	
신청인주장	국회의원 신청인이 배부한 의정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영덕군에 투입된 사업비 예산이 울진군에 비해 6배나 많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대전조정23~26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병합) 김○○ 외 5인 對 충청투데이, 인터넷 충청투데이
조 정 대 상	- 충청투데이 : 『교사들 사분오열... 천안 ○○○고 파행』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1일자 17면) - 인터넷 충청투데이 : 『교사들 사분오열... 천안 ○○○ 고등학교 파행』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천안의 고등학교 전교조 교사인 신청인들이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편 가르기를 강요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충청투데이에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충남지역판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교사들 사분오열... 천안 ○○○고 파행”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충청투데이 2013년 5월 8일자 17면, 인터넷 충청투데이 5월 8일자)	

2013서울조정505~512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김○○ 對 오마이뉴스 ⁽⁵⁰⁵⁻⁵⁰⁶⁾ , 네이버 ⁽⁵⁰⁷⁻⁵⁰⁸⁾ , 네이트 ⁽⁵⁰⁹⁻⁵¹⁰⁾ , 다음 ⁽⁵¹¹⁻⁵¹²⁾
조 정 대 상	『“벽보고 움직이지 마”... 어린이집 아동학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오마이뉴스·네이버 :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트·다음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기사삭제 (2013서울중재78~81 참조)] ※ 기타 합의사항 • 오마이뉴스 : 기사삭제 후 1일 이내에 기사전송 관계에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에게 기사전송 취소를 통보하도록 함
2013경기조정46~49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병합) 김포시 對 김포신문, 인터넷 김포신문
조 정 대 상	(1) 『김포도시철도 입찰, 불법 투성이』 제하의 기사 (김포신문 2013년 3월 28일자 1면, 인터넷 김포신문 3월 27일자) (2) 『가전제품과 주파수 대역 동일... 사고 위험 높아』 제하의 기사 (김포신문 2013년 3월 28일자 4면, 인터넷 김포신문 3월 27일자) (3) 『사설 I 김포도시철도 논란, 유 시장 무한 책임져야』 제하의 기사 (김포신문 2013년 3월 28일자 15면, 인터넷 김포신문 3월 27일자) (4) 『김포도시철도 통합발주 이유 ‘인터페이스 때문’ 명분 없다』 제하의 기사 (김포신문 2013년 4월 4일자 1~2면, 인터넷 김포신문 4월 3일자) (5) 『세계적인 신호회사 간부 A씨 일문일답 “통합발주 인터페이스와 무관... 차량회사 선정 못해 결국 입찰 불참”』 제하의 기사 (김포신문 2013년 4월 4일자 3면, 인터넷 김포신문 4월 3일자) (6) 『〈사설〉 김포지하철사업단 믿을 수 없다』 제하의 기사 (김포신문 2013년 4월 4일자 15면, 인터넷 김포신문 4월 3일자)
신청인주장	김포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철도 열차운영시스템 구매입찰이 불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김포신문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 김포신문 : 『도시철도 관련 김포시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9일자 2면) • 인터넷 김포신문 : 『[김포 시철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8일자)
2013서울조정513~514	(정정·손배청구) 김○○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나는 알고 있다, ○○○ 리스트의 모든 것을』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3일자 26면)
신청인주장	연예기획사 사장이었던 신청인이 고인이 된 여성 연예인에게 성상납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515~516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한국○○○회 對 KBS-1TV, KBS 미디어	
조 정 대 상	•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집중진단』 훈·포장 돈 거래 의혹... 추천 검증 '허술'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18일자 21:00) • KBS 미디어 : 『집중진단』 훈·포장 돈 거래 의혹... 추천 검증 '허술'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훈·포장을 추천하면서 수상자들과 돈거래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PR보도 약속, 유감표명)
2013서울조정517~520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한국방송공사 對 월간조선,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조 정 대 상	『추적』 KBS강태원재단에 무슨 일이... 기부자의 뜻은 간 데 없고 KBS의 '프로그램 제작비'로 전용』 제하의 기사 (월간조선 2013년 4월 1일자 382~397면,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4월 1일자)
신청인주장	한국방송공사가 KBS강태원복지재단을 설립할 당시 기부자 강태원의 뜻과 다른 정관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재단 기금을 KBS 프로그램 제작비로 전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1,0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관련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고 조정대상기사는 언론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하므로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 이행방법 : [월간조선 뉴스서비스에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기화면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2013서울조정521 (손배청구) 이○○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한국이 시범운영 중인 '중1 진로체험' 현장 가보니 학생들, 체험시간 짧고 재미 못 느껴... 문제집 꺼내 풀기도』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4일자 8면)
신청인주장	서울시교육청에서 시범운영 중인 중1 진로체험에 대해 부정적 기사를 보도하면서 교사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522 (정정청구) ○○○○○(주) 對 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어이없는 예산낭비... 가로등보다 비싼 두꺼비집』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9일자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누전차단기가 가격만 비싸고 성능은 검증되지도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양당사자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은 반론보도 이외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원하며,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가 공익 목적의 보도로서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행방법 :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MBC 정오 뉴스> 프로그램 또는 <MBC 3시 뉴스> 프로그램에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되,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 화면으로 하도록 함

2013서울조정529~530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사회복지법인 KBS강태원복지재단 對 월간조선,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조 정 대 상	『[추적] KBS강태원재단에 무슨 일이... 기부자의 뜻은 간 데 없고 KBS의 ‘프로그램 제작비’로 전용』 제하의 기사 (월간조선 2013년 4월 1일자 382~397면,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4월 1일자)
신청인주장	한국방송공사가 신청인 재단을 설립하고 정관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기부자인 강태원 회장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조정대상기사는 언론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하므로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 이행방법 : [월간조선 뉴스서비스에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기화면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도록 함
2013서울조정531~532 (정정·손배청구) 학교법인 ○○학원 외 2인 對 뉴데일리	
조 정 대 상	(1) 『○○대학, “학교 살리자” 개혁요구 교직원 30여명 대량학살!』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4일자) (2) 『○○대학 홍○○ 총장 형사기소됐다! 어찌 되려나?』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대학이 개혁을 요구하는 교직원 30여명을 부당하게 징계했다고 보도했으나, 그 징계는 적법한 것이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 (피신청인은 2013년에 4월 27일자로 악의적인 후속기사를 게재하였으므로 중재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기타 결정사항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네이버 등 조정대상기사를 매개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전송하여 반론보도문이 인터넷 포털에서도 검색될 수 있도록 함 ※ 이행방법 :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에 48시간 이상 게재함
2013서울조정533 (정정청구) ○○○○○○ 주식회사 對 SBS-TV	
조 정 대 상	SBS 8 뉴스 프로그램 『KTX 선로 4만 4천여 곳에서 균열 발견』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22일자 20:00)
신청인주장	전라선 KTX 일부구간 콘크리트 선로 균열의 원인이 신청인 회사가 생산한 레일패드라고 방송했으나, 균열의 원인은 레일패드가 아니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건조수축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모호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정보도가 게재되길 원한다) ※ 기타 결정사항 : SBS-TV에서 반론보도를 이행한 이후에는 SBSi를 통해 반론보도문이 검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이행방법 :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SBS 뉴스> (10:30)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도록 함

2013서울조정534~535 (정정 · 손해청구) 윤○○ 對 MBC-TV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의문의 형집행정지』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21일자 23:15)
신청인주장	감옥에 수감생활 중이었던 신청인이 건강에 이상이 없음에도 형집행정지를 받기 위해 주치의로부터 허위의 소견서를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정정보도가 이루어지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도록 함 ※ 이행방법 : [정정보도] 정정보도문을 블랙바탕에 흰자막으로 10~15초간에 걸쳐 표시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의문의 형집행정지』 보도관련 알림』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2일자 23:15)
2013서울조정536~538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對 NSP통신	
조 정 대 상	『농수산유통공사, 콩나물 콩 이상한 발아검사... 수입업체, ○○ 비리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8일자)
신청인주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콩나물 콩의 수입과 관련하여 기존 수입업체에게 특혜를 주려고 새로 공급계약을 맺은 업체에게 공급포기를 강요하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정정 및 반론보도를 이행한 후에는 조정대상기사와 정정 및 반론보도문 모두 삭제하도록 함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년 5월 15일 09:00부터 18:00까지 홈페이지 초기화면 Top2 섹션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농수산유통공사의 콩나물 콩 수입업무 관련 비리 의혹 보도에 관한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2013충북조정21~22 (기사별 정정 · 손해청구) 1. ○○○노인○○병원, 2. ○○의료재단 對 CJB-TV	
조 정 대 상	(1) CJB 8 뉴스 프로그램 『1년 만에 10억 적자』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10일자 20:35) (2) CJB 7 뉴스 프로그램 『1년 만에 10억 적자』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11일자 07:10)
신청인주장	신청인 1 병원이 신청인 2 재단에 위탁된 지 1년 만에 10억 원의 적자를 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손해청구 :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1) CJB 8 뉴스 프로그램 『〈○○○노인○○병원 부정의혹〉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6일자 20:35) (2) CJB 7 뉴스 프로그램 『〈○○○노인○○병원 부정의혹〉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7일자 07:10)

2013경기조정50~51 (정정·손배청구) 황○○ 對 인터넷 경인일보	
조 정 대 상	『○○대 교수 논문 중복게재 연구비 수천만 원 부당 수령』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3일자)
신청인주장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자신의 논문을 다른 학술지 등에 중복 게재하고 수천만 원의 연구비를 부당 수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약속) ※ 이행방법 : [기사수정]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중 “수천만 원 부당 수령 교내윤리위 적발...” 부분을 “600만원 환수 당해 2년 전 학연위 확인...”으로 대체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대 교수 논문 중복게재 연구비 600만 원 환수 당해 2년 전 학연위 확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8일자)
2013서울조정542 (반론청구) ○○○○발전(주) 對 인터넷 중소기업신문	
조 정 대 상	『MB낙하산 “짐싸라”... ‘돈잔치’ 장○○ ○○발전 사장은 ‘영순위’』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 임원들이 두둑한 보수를 챙기면서 돈잔치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MB 낙하산 “짐싸라”... ‘돈잔치’ 장○○ ○○발전 사장은 ‘영순위’ 보도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30일자)
2013서울조정543~546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병합) ○○○○협회노동조합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비리 저질러도 감싸는 노조... ‘신이 숨겨둔 직장’ ○○협회』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4월 26일자 25면, 동아닷컴 4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 노동조합이 비리를 저지른 직원을 두둔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동아닷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협회노동조합”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5월 8일자 25면, 동아닷컴 5월 8일자)
2013서울조정547 (기사별 정정청구) 최○○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1) 『최○○ 중수부장, 사찰 핵심물증 틀어쥐고 시간 끌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8일자 1면) (2) 『상부서 “총선 전 진경락 조사 말라”... 결국 총선 지나 체포』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8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민간인사찰 사건 관련 재수사 과정에서 핵심물증을 바로 수사팀에 전달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548	(손배청구) 여○○ 對 SBS-TV
조 정 대 상	SBS 8 뉴스 프로그램 『“오빠인 척 행동” 협박, 교회 가던 어린이 납치』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22일자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피해자인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동네의 주택가 전경을 방송에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부산조정4~17	조○○ 對 부산일보 ^(4-5 정정·반론청구) , 인터넷 부산일보 ^(6-7 정정·반론청구, 4-5와 병합) , 국제신문 ^(8-9 정정·반론청구) , 인터넷 국제신문 ^(10-11 정정·반론청구, 8-9와 병합) , 티브로드 서부산방송 ^(12-13 정정·반론청구) , iKNN ^(14-15 정정·반론청구) , 사하인터넷뉴스 ^(16-17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 부산일보·인터넷 부산일보 : 『구의원, 조폭 시켜 아파트 허위 유치권으로 수억 원 갈취 시도』 제하의 기사 (부산일보 2013년 4월 23일자 6면, 인터넷 부산일보 4월 23일자) - 국제신문·인터넷 국제신문 : 『구의원이 조폭 시켜 경매된 아파트 무단 점유』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3년 4월 24일자 10면, 인터넷 국제신문 4월 23일자) - 티브로드 서부산방송 : 부산뉴스 6시 프로그램 『구의원, 조폭과 아파트 불법 점유』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25일자 18:00) - iKNN : 『경매 아파트 무단점거 16명 검거』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3일자) - 사하인터넷뉴스 : 『조폭 동원해 수억 원 갈취 시도 혐의 건축업자·구의원 사전구속영장 신청』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3일자)
신청인주장	현직 구의원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아파트 유치권을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부산일보·인터넷 부산일보 : 취하 (사유 : 조건부 추후보도 게재 약속) - 국제신문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인터넷 국제신문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 티브로드 서부산방송 :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 iKNN :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약속) - 사하인터넷뉴스 : 조정성립 (내용 : 복간 시 반론보도, 기사삭제) ※ 이행방법 사하인터넷뉴스 : [복간 시 반론보도] 복간 당일부터 2일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 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함
이 행 결 과	국제신문 : 『조○○ 구의원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10면)
2013광주조정14	(정정청구) 신안군 對 목포신문
조 정 대 상	『신안군, 채무부담행위 위법성 도마』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7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안군이 도로포장공사 등을 발주하면서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신안군, 채무부담행위 위법성 도마”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2일자 2면)

2013서울조정549~550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박○○ 對 SBS-TV, SBSi
조 정 대 상	• SBS-TV : 생방송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아동 폭행 감금한 “정부인증” 어린이집?!』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28일자 07:30) • SBSi : 『[다시보기] 아동 폭행 감금한 “정부인증” 어린이집?!』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아이들을 학대하고 감금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551~552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추미애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불법 정치자금에 증여세 첫 부과』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3년 4월 29일자 1면, 인터넷 한국일보 4월 29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로비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국일보 :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추미애 의원 증여세 부과’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3년 5월 21일자 2면, 인터넷 한국일보 5월 21일자)

2013서울조정553	(정정청구) 변○○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변○○, “박원순, 5억 빛에 기부?” 조사 주장, 사실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연봉으로 빛은 안 갚고 기부하고 있다고 비난한 내용을 다루면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뉴스 정치 섹션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2013년 5월 16일 15:00 이전부터 게재하기 시작하여 48시간 이상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변○○ “박원순, 5억 빛에 기부?” 조사 주장, 사실은...〉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6일자)

2013전북조정13	(정정청구) 국○○ 對 완주군민신문
조 정 대 상	『국○○ ○○농협조합장, 완주군을 상대로 사기극?』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4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완주군과 전주시 통합에 대한 지역 내 사회단체의 여론과 다르게, 모두가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는 플래카드를 내걸어 사기극을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국○○ ○○농협조합장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2일자 2면)

2013서울조정554~556 (매체별 반론청구) 남○○ 對 e머니투데이 ⁽⁵⁵⁴⁾ , 연합뉴스 ⁽⁵⁵⁵⁾ , 뉴시스 ⁽⁵⁵⁶⁾	
조 정 대 상	• e머니투데이 : 『“고수익 보장한다” 속여 150억 투자받은 일당』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일자) • 연합뉴스 : 『“의료기기 투자하면 고수익” 꾀어 150억여 원 챙겨(종합)』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일자) • 뉴시스 : 『운동·의료기 고수익 미끼 150억 챙긴 사기범 입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고수익을 미끼로 의료기기 투자금을 유치해 거액을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e머니투데이·연합뉴스·뉴시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조정 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지만 이는 추후보도청구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이행방법 • e머니투데이 :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사회)사건’ 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상위 5번째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하도록 함 • 연합뉴스 :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사회’ 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상위 5번째 이내에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을 게재함 • 뉴시스 :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사회일반’ 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상위 5번째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e머니투데이 : 『“의료기기 투자 고수익” 속여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6일자) • 연합뉴스 : 『“의료기기 투자 고수익” 꾀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 뉴시스 : 『“운동·의료기 고수익 미끼 사기범”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2013서울조정557 (정정청구) 영양군청 對 KBS-2TV	
조 정 대 상	추적 60분 프로그램 『영양댐이 이상하다』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10일자 23:20)
신청인주장	영양군청이 실시하는 각종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추적 60분 프로그램 『영양군 공원조성공사 등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25일자 22:25)
2013대구조정22 (정정청구) (사)○○○○진흥원 對 경상매일	
조 정 대 상	『본지에 언론 조정신청·손배 요구』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7일자)
신청인주장	한옥마을 민간위탁사업자인 신청인이 연간 임(전)대료를 경주시가 정한 상한가 보다 6억 1천 만 원 이상 높은 금액으로 책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경주 ○○한옥마을 민간위탁자 임대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9일자)

2013서울조정558~565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조○○ 對 조선일보 ^(558~559) , 조선닷컴 ^(560~561) , 온라인 중앙일보 ^(562~563) , 쿠키뉴스 ^(564~565)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조선닷컴 : 『남의 아파트 무단입주한 區의원과 조폭』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3년 4월 24일자 14면, 조선닷컴 4월 24일자) • 온라인 중앙일보 : 『부산경찰, 경매 넘어간 아파트 무단점거·강제집행 방해 16명 적발』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3일자) • 쿠키뉴스 : 『함께 폭력 휘두른 조폭과 구의원, 경매 아파트 무단 점거』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3일자)
신청인주장	구의원인 신청인이 아파트 경매 낙찰자에게 퇴거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선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조건부 추후보도, 부제소) • 조선닷컴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온라인 중앙일보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이행강제금) • 쿠키뉴스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조선일보 : [조건부 추후보도] 조정대상기사에서 언급한 신청인의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 결과 혹은 법원의 재판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로 확정된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추후보도를 이행하도록 함 • 쿠키뉴스 : [반론보도] 2013년 5월 24일 15:00까지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쿠키뉴스 : 『부산 사하구의원 조모씨 폭행 사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4일자)
2013대전조정27~30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 ○○○○입주자 대표회의 對 인터넷 대전일보, 대전일보
조 정 대 상	『○○○○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갈등』 제하의 기사 (인터넷 대전일보 2013년 4월 30일자, 대전일보 4월 30일자 1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단체가 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 동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선거인 명단을 조작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갈등’ 관련』 제하의 기사 (인터넷 대전일보 2013년 5월 21일자, 대전일보 5월 22일자 14면)
2013대전조정31~32	(정정·손배청구) 송○○ 對 충청신문
조 정 대 상	『○○쓰레기매립장 지원금 법적 공방 예고』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3일자 1면)
신청인주장	지역 광역권 쓰레기 매립장 주민협의체 피해지원금 선정과정에서 신청인이 통장으로 있는 마을의 불교사찰이 제외되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다른 사찰의 스님이 별개의 사안으로 항의를 제기하는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쓰레기매립장 지원금’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1일자 2면)

2013서울조정566~569, 648~651	(매체별 조정 · 손배청구) (주)○○○○○○○ 對 한겨레 ⁽⁵⁶⁶⁻⁵⁶⁷⁾ , 인터넷 한겨레 ^(568-569, 566-567과 병합) , 연합뉴스 ⁽⁶⁴⁸⁻⁶⁴⁹⁾ , 인터넷 내일신문 ⁽⁶⁵⁰⁻⁶⁵¹⁾
조 정 대 상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 『인천 매립지 ‘발암물질’ 수사』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3년 4월 2일자 11면, 인터넷 한겨레 4월 1일자) • 연합뉴스 : 『수도권매립지에 유해 매립자재 납품 의혹… 경찰 수사』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일자) • 인터넷 내일신문 : 『‘매립지에 발암물질’ 사실일까?』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고화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납품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 취하 • 연합뉴스 · 인터넷 내일신문 :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연합뉴스 : 『매립지 발암물질 고화제 의혹… 공사 “안전 문제 없어”』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일자) • 인터넷 내일신문 : 『수도권매립지 복토재 “유해물질 검출 안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9일자)
2013서울조정570~571	(조정 · 손배청구) (주)○○ 對 SBS-TV
조 정 대 상	SBS 8 뉴스 프로그램 『유통기한 지난 닭, 어디갔나 했더니...』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26일자 20:00)
신청인주장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유통시켜 판매한 불량업체의 적발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회사의 간판 및 음식 사진에 방송에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572	(정정청구) 웹○○연구소 對 전자신문
조 정 대 상	『한국이란 나라 문을 열라』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1일자 17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진행한 정부부처 웹 개방성 평가 프로젝트를 다른 업체가 진행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573~576	(매체별 조정 · 손배청구) (병합) 재단법인 ○○○○○○재단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학내 성추행’ 불거진 ○○○○대학, 도대체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5월 3일자 5면, 동아닷컴 5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대학이 학내 성희롱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3서울조정577~580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여○○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1) 『평화를 가르치는 교수에 학생들이 분노한 까닭은』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5월 3일자 1면, 동아닷컴 5월 3일자) (2) 『‘학내 성추행’ 불거진 ○○○○대학, 도대체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5월 3일자 5면, 동아닷컴 5월 3일자)
신청인주장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학생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사퇴를 약속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경기조정52~53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안양시 對 안양시민신문, 인터넷 안양시민신문	
조 정 대 상	『안양하수장 선정 비리, 전자현수막 선정에도?』 제하의 기사 (안양시민신문 2013년 5월 6일자 5면, 인터넷 안양시민신문 5월 6일자)
신청인주장	안양시의 LED 전자게시대 사업 평가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운영 위탁업체가 결정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안양시민신문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안양시 LED 전자게시대 사업’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안양시민신문 2013년 5월 27일자 5면, 인터넷 안양시민신문 5월 27일자)
2013서울조정581~582 (매체별 반론청구) 손○○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연구비 따내려... 명문대 교수도 자기논문 다시 베껴』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3년 4월 1일자 10면, 조선닷컴 4월 1일자)
신청인주장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연구비 지원과 실적 과장을 위해 자기논문을 표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선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조선닷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반론·사과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조선닷컴 :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정정·반론·사과보도문을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하며, 포털에 게재된 원 조정대상기사에도 기사수정이 반영되도록 함 ※ 이행방법 • 조선닷컴 : [정정·반론·사과보도] 홈페이지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정정·반론·사과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명문대 교수 자기표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3년 6월 8일자 10면, 조선닷컴 6월 7일자)

2013부산조정18~19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부산광역시 기장군 對 주간기장신문, 인터넷 기장신문
조 정 대 상	『김○○, “인기영합 사업에 치중하면…”』 제하의 기사 (주간기장신문 2013년 5월 1일자 5면, 인터넷 기장신문 4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기장군이 불법행정을 자행하고 있으며, 재정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특정 군의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기장신문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기장군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주간기장신문 2013년 6월 12일자 5면, 인터넷 기장신문 6월 12일자)
2013서울조정583~586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주) 對 KBS-1TV, KBS 미디어
조 정 대 상	• KBS-1TV :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산양유만 100% 담았다? 소비자 우롱하는 산양분유의 진실!』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5일자 19:30) • KBS 미디어 : 『[다시보기] 산양유만 100% 담았다? 소비자 우롱하는 산양분유의 진실!』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산양분유업체들이 산양분유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산양유 성분량을 허위로 광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KBS-1TV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KBS 미디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KBS-1TV : 신청인이 인터넷 포털 및 기타 온라인매체 측에 조정대상보도 및 조정대상 보도 관련 기사에 대한 접근차단을 요청할 시 협조하도록 함 ※ 이행방법 • KBS-1TV : [정정 및 반론보도]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말미에 정정 및 반론보도, 조정대상보도 중에 사용된 관련 화면을 방송하도록 함 • KBS 미디어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방송 다시보기 코너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함
이 행 결 과	• KBS-1TV :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산양분유의 산양유 성분에 관한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31일자 19:30) • KBS 미디어 : 『[다시보기] 산양분유의 산양유 성분에 관한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일자)

2013서울조정587 (정정청구) (사)○○○○저작권협회 對 MBC-TV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 프로그램 『노래교실에 무슨 일이』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31일자 23:10)
신청인주장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주민센터 노래교실의 저작권료를 노래강사나 참가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TV 속의 TV> 프로그램 끝 부분에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을 푸른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10초간 방영 하되, 글씨 크기는 일반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보도문의 내용이 전체 화면의 1/2 이상을 차지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TV 속의 TV 프로그램 『○○○○저작권협회의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3일자 12:20)
2013광주조정15 (정정청구) 심○○ 對 뉴스1코리아(광주전남)	
조 정 대 상	『“노부 폭행” 어버이날에 법정 선 부부』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토지 소유권 문제로 노부를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588~589 (정정·손배청구) 1. ○○○○연료공업협동조합, 2. 김○○ 對 e중앙뉴스	
조 정 대 상	『[단독] 황우석 박사, 드디어 음해의 명예를 벗다』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특허를 노리고 황우석 박사 연구소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유치하려다 황박사의 거절로 인해 그의 지지카페를 비난카페로 전향시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반론·사과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2013년 5월 22일까지 조정대상기사 뿐 아니라 신청인 관련 기사를 모두 삭제하여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하고, 신청인들에 대한 기사를 더 이상 게재하지 않도록 함 ※ 이행방법 : [정정·반론·사과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정정·반론·사과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013년 5월 22일 12:00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황우석 박사 대여금 소송 기사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2일자)
2013서울조정590~591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여성병원 對 CNBNEWS, 인터넷 CNB저널	
조 정 대 상	• CNBNEWS : 『[단독] 강남세무서, ‘○○○○ 여성병원’ 숨방망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7일자) • 인터넷 CNB저널 : 『강남세무서, ‘○○○○ 여성병원’ 숨방망이 탈세 조사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병원이 수술횟수를 줄여 신고하거나 현금거래 등을 통해 100억 원대의 탈세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CNBNEWS에 반론보도] 홈페이지에서 조정대상기사가 게재된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로 48시간 이상 반론보도문을 게재함 [인터넷 CNB저널에 반론보도] 홈페이지에서 조정대상기사가 게재된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기사 순서 상위 5번째 이내로 48시간 이상 반론보도문을 게재함
이 행 결 과	『“○○○○ 여성병원 탈세 조사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0일자)

2013서울조정592~596 (매체별 손해청구) 김○○ 對 티비리포트 ⁽⁵⁹²⁾ , 네이버 ⁽⁵⁹³⁾ , 다음 ⁽⁵⁹⁴⁾ , 네이트 ⁽⁵⁹⁵⁾ , 줌 ⁽⁵⁹⁶⁾	
조 정 대 상	『월 스미스 ‘아리따운 여성팬과 셀카를~’』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7일자)
신청인주장	영화 홍보 차 내한한 미국 영화배우 월 스미스와 사진을 찍고 있던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티비리포트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 · 다음 · 네이트 · 줌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597~598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사)○○○○진흥원 對 서울신문, 인터넷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경주 ○○한옥마을 문 열자마자 소송 휘말려 ‘빠격’』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3년 4월 12일자 14면, 인터넷 서울신문 4월 12일자)
신청인주장	한옥마을 위탁사업자인 신청인이 경주시의 승인도 없이 마을을 재임대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서울신문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행정> 섹션 내 <지방자치> 섹션 초기 화면의 기사 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경주 ○○마을 임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3년 5월 30일자 14면, 인터넷 서울신문 5월 30일자)
2013서울조정599 (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	
조 정 대 상	『대구소방본부, 휴대폰 역추적... 응급환자 살려!!!』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2일자)
신청인주장	대구소방본부가 휴대폰 역추적으로 응급환자를 살렸다고 보도하면서 당시 응급상태에 있었던 신청인의 근무처와 집주소 등을 공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600~603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병합) 청량리동주민센터 對 일간투데이, 인터넷 일간투데이	
조 정 대 상	• 일간투데이 : 『공무원이 예산 빼내려 계획서 조작』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0일자 15면) • 인터넷 일간투데이 : 『정신나간 공무원, 예산 빼내려 사업계획서 조작』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9일자)
신청인주장	동대문구 청량리동 주민센터가 벽화사업 예산을 빼내기 위해 사업 계획서를 조작하여 예산을 부풀리는 등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유감표명,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신청인은 반론보도가 이루어질 경우, 피신청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취하하도록 함 ※ 이행방법 : [인터넷 일간투데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일간투데이 : 『“청량리동 벽화사업”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4일자 15면) • 인터넷 일간투데이 : 『“청량리동 벽화사업”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3일자)

2013서울조정604~605 (매체별 손해청구) (병합) 류○○ 對 SBS-TV, SBSi	
조 정 대 상	• SBS-TV :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싸움인 줄 알고 말리려다... 20살 청년 참변』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8일자 06:00) • SBSi : 『싸움인 줄 알고 말리려다... 20살 청년 참변』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싸움을 말리려던 20살 청년이 시비를 건다는 오해로 집단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소유의 가게 전경을 방송에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606~607 (매체별 정정청구) 서초구청 對 일요시사, 인터넷 일요시사	
조 정 대 상	• 일요시사 : 『공사 좋아하는 ‘리틀 MB’ 터질락 말락 ‘처남 스캔들’』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8일자 26~27면) • 인터넷 일요시사 : 『서초구 수백억 건설뇌관 ‘막전막후’』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일자)
신청인주장	서초구청이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언더그라운드시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608 (기사별 정정청구) 김○○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1) 『“전직교수 반복적 성희롱 인정하나 해임은 지나쳐”』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0일자) (2) 『〈기자수첩〉 문화재청장의 ‘아바타’』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0일자)
신청인주장	문화학교 교수로 재직했던 신청인에 대한 학교 측의 해임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판결이 잘못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향후 신청인이 포털을 통해 검색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후속보도문 (인터뷰기사)을 게시해 줄 것을 포털사에 요청하여 포털사가 피신청인에게 동의를 구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함, 신청인은 각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에게 일체의 금전적 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함 ※ 이행방법 : [후속보도] 2013년 6월 5일 10:00까지 홈페이지 문화면에 후속보도문(인터뷰 기사)을 게시함
이 행 결 과	『〈기자수첩〉 문화재청장의 ‘아바타’ 등 관련 반론 인터뷰』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2013경기조정54~56	(매체별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경기신문 ⁽⁵⁴⁾ , 인터넷 기호일보 ⁽⁵⁵⁾ , 인터넷 중부일보 ⁽⁵⁶⁾
조 정 대 상	• 인터넷 경기신문 : 『오산시의회, 정치색 띤 논쟁 ‘도마위’』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6일자) • 인터넷 기호일보 : 『오산시 “시정질의서 정치공세” 시의회 “문제 제기를 매도하나”』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7일자) • 인터넷 중부일보 : 『오산시장 골프모임 화동, 정치적 비하vs부적절 화동 양론 논쟁』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6일자)
신청인주장	오산시의회 부의장인 신청인이 회의규칙에서 벗어난 시정질의를 남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인터넷 경기신문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인터넷 기호일보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 인터넷 중부일보 :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609~611, 947	(매체별 손해청구) 강○○ 對 주간동아 ⁽⁶⁰⁹⁾ , 채널A ⁽⁶¹⁰⁾ , 인터넷 채널A ^(611, 610과 병합) , 인터넷 한겨레 ⁽⁹⁴⁷⁾
조 정 대 상	• 주간동아 : 『진보 지식인들 진짜 그럴래』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8일자 커브스토리면) • 채널A : (1)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 『인권운동가 고○○, 20대 여성 성희롱 논란』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21일자 11:40), (2) 종합뉴스 프로그램 『인권운동가 고○○, 변태적 관계 요구하며... 성희롱 파문』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21일자 20:00) • 인터넷 채널A : (1) 『[뉴스 와이드] 인권운동가 고○○, 20대 여성 성희롱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1일자), (2) 『[종합뉴스] 인권운동가 고○○, 변태적 관계 요구하며... 성희롱 파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1일자) • 인터넷 한겨레 : 『인권운동가 고○○ 교수, 트위터로 성희롱 시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1일자)
신청인주장	트위터 상에서 특정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신청인의 트위터 아이디 등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주간동아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채널A · 인터넷 채널A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5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인터넷 한겨레 :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100만 원 지급)
2013서울조정612~615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병합) 주식회사 ○○건설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벨트월의 비밀』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5일자 23:15) • iMBC : 『[다시보기] ‘벨트월’의 비밀』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시공한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처분이 안전진단결과 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MBC-TV에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을 2013년 6월 16일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 보도, 조정대상보도 중에 사용된 관련 화면을 방송하도록 함 [iMBC에 반론보도]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내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다시보기’ 코너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 MBC-TV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청라○○○○ 안전성 관련 후속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16일자 23:15) • iMBC : 『[다시보기] 청라○○○○ 안전성 관련 후속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8일자)

2013서울조정616~617 (정정·반론청구) 유한회사 ○○○○○○○○○코리아 對 Gvalley	
조 정 대 상	『독일 치과장비업체 ○○○, 중고 판매 의혹과 무성의한 A/S 로 도마위 올라』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8일자)
신청인주장	치과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신청인이 중고품을 새 것처럼 판매한 의혹이 있으며 고객의 A/S 요청에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광주조정16~1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여○○ 對 전광일보, 인터넷 전광일보	
조 정 대 상	『담양군 ○○○○○협회 지회장 공금 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 (전광일보 2013년 5월 13일자 11면, 인터넷 전광일보 5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소속된 협회의 공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약속) ※ 이행방법 • 인터넷 전광일보 : [정정보도] 2013년 5월 27일까지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전광일보 : 『“○○○○○○협회 담양군지회장 공금 횡령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7일자 11면) • 인터넷 전광일보 : 『[“○○○○○○협회 담양군지회장 공금 횡령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6일자)
2013서울조정618~619 (기사별 추후·손배청구) 1. 송○○, 2. 최○○ 對 한국성결신문	
조 정 대 상	(1) 『계약, 지출 등서 총체적인 문제점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4일자 11면) (2) 『쓰레기통(?)에 처박힌 한국성결신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4일자 11면) (3) 『총회 재정비리 사태를 보는 시선』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2일자 15면) (4) 『총무 당선무효 처리 놓고 임원회 충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2일자1면) (5) 『○○○○○○·목사안수식 확정』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6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업무상 횡령 등을 저질렀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620~623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주)○○○○○○카드 對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 정 대 상	『○○○○○○카드 “시장 못 내줘”... 힘 겨루기에 막힌 모바일 교통카드』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3년 5월 14일자 12면, 쿠키뉴스 5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후불교통카드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모바일터미니 후불결제 서비스 확대』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3년 5월 27일자 15면, 쿠키뉴스 5월 26일자)

2013서울조정624 (정정청구) 재단법인 ○○○ 對 동아일보	
조 정 대 상	『집단수용 69명 나이-건강상태 등 꼼꼼히 기록』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9일자 10면)
신청인주장	북한에서 강제노역한 국군포로에 관한 기사에 이와 무관한 신청인 재단의 북한 결핵퇴치 활동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알림기사,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재단의 방북활동 사진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8일자 10면)
2013충북조정23~24 (매체별 정정청구) ○○○○아동보호○○기관 對 충주KBS-1TV, KBS 미디어	
조 정 대 상	- 충주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아동학대, 감시 ‘एंटर리’』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9일자 21:00) - KBS 미디어 : 『아동학대, 감시 ‘एंटर리’』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아동보호기관이 사회복지 유관기관들의 아동학대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대전조정33~36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사회복지법인 ○○○○ ○○마을 對 홍주신문, 홍주일보	
조 정 대 상	『보조금 13억여 원만 허공 날린 꼴』 제하의 기사 (홍주신문 2013년 5월 2일자 2면, 홍주일보 5월 5일자)
신청인주장	국고보조금으로 건립된 신청인의 사회복지시설이 건물만 지어진 채 흉물로 방치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3서울조정625~626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창원시 對 일간스포츠, 인터넷 일간스포츠	
조 정 대 상	- 일간스포츠 : 『“NC · KBO · 지역민 합의 없인 국비 지원 없다”』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6면) - 인터넷 일간스포츠 : 『정부, 창원시에 새 야구장 건설 재검토 판정』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창원시가 계획 중인 새 야구장 건립 부지에 대해 정부가 재검토 결정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인터넷 일간스포츠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일간스포츠에 후속보도] 후속보도문(인터뷰기사)을 24시간 동안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함
이 행 결 과	- 일간스포츠 : 『“부지 재검토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7일자 6면) - 인터넷 일간스포츠 : 『통합창원시에 듣는다 ‘새 야구장 건설 과정과 지향점’』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7일자)

2013서울조정627, 661, 743, 1045~1046	(매체별 정정청구) 송○○ 對 뉴시스 ^(627, 661, 1045) , 인터넷 JTBC ⁽⁷⁴³⁾ , 인터넷 채널A ⁽¹⁰⁴⁶⁾
조 정 대 상	• 뉴시스 : (1) 『세종○○ 어린이집 교사 원아 폭행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0일자), (2) 『“군대 같았어요~” 세종○○ 어린이집 폭행 ‘폭로’』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0일자) • 인터넷 JTBC : 『세종○○ 어린이집서 폭행... 교사 부모가 오히려 ‘협박’』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0일자) • 인터넷 채널A : 『한 살배기 머리 내리쳐... 세종○○ 어린이집 원아 폭행』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세종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상습 폭행의혹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의 부친인 신청인이 피해아동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국방부 고위관료인데 가만두지 않겠다며 수차례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뉴시스 : ▷ 2013서울조정627 - 취하 ▷ 2013서울조정661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2013서울조정1045 - 각하결정 (사유 : 신청인은 2013년 5월 28일 조정대상 기사 (1), (2)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고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신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담당기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신청인의 별도의 정정보도 청구는 부적법하다) • 인터넷 JTBC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다시보기 기사삭제, 부제소) • 인터넷 채널A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뉴시스·인터넷 채널A :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정정보도문을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하며,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 게재하도록 함 • 인터넷 JTBC : 검찰수사, 노동위원회 조정 및 국방부 민원조치 결과가 종결되면 관련 기사와 정정보도문을 삭제하고 포털에 게시된 JTBC 관련 기사를 삭제하도록 함 ※ 이행방법 • 뉴시스 :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동안 게재함 • 인터넷 JTBC :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 인터넷 채널A : [정정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뉴시스 :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가족의 피해아동 학부모 협박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인터넷 JTBC : 『[“세종시 어린이집 폭행”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5일자) • 인터넷 채널A : 『[세종○○ 어린이집 원아폭행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2013서울조정628~629, 641~642	(매체별 조정 · 반론청구) (병합) 김○○ 對 성형외과신문, 주간성형외과신문
조 정 대 상	• 성형외과신문 : 『“광대뼈 벌어질줄 알았다면 수술 안했을 것을...”』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 주간성형외과신문 : 『“광대뼈 벌어질줄 알았다면 수술 안했어요”』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3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으로부터 안면윤곽성형(광대뼈)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광대뼈가 벌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630	(손배청구) 박○○ 對 민중의소리
조 정 대 상	『5.18은 ‘폭동’, 진보강연은 ‘종북’... 표면에 떠오른 ‘청년 국우’』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초상을 관련 없는 내용의 보도에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2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의 초상이 담긴 사진은 조정대상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있으며, 조정대상기사는 공익성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2013서울조정631~639, 733~734	(매체별 추후청구) 최○○ 對 인터넷 경향신문 ⁽⁶³¹⁾ , 동아닷컴 ⁽⁶³²⁾ , MK뉴스 ⁽⁶³³⁾ , e머니투데이 ⁽⁶³⁴⁾ , 인터넷 문화일보 ⁽⁶³⁵⁾ , 한경닷컴 ⁽⁶³⁶⁾ , SBSi ⁽⁶³⁷⁾ , 인터넷 YTN ⁽⁶³⁸⁾ , 인터넷 MBN ⁽⁶³⁹⁾ , YTN ⁽⁷³³⁾ , 연합뉴스TV(뉴스Y) ⁽⁷³⁴⁾
조 정 대 상	• 인터넷 경향신문 : 『국내산 고급 홍삼 알고봤더니... 중국산 수삼』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 동아닷컴 : 『아침에 먹은 홍삼, 혹시 중국산?』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3일자) • MK뉴스 : 『중국산 수삼을 홍삼으로 속여 판매』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 e머니투데이 : 『중국산 홍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일당 검거』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 인터넷 문화일보 : 『中 수삼을 ‘국산홍삼’ 둔갑 제조·유통시킨 60대 딜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 한경닷컴 : 『중국산 수삼, 국산홍삼으로 둔갑』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3일자) • SBSi : 『중국산 인삼이 ‘고려 홍삼’ 둔갑... 구별법은』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3일자) • 인터넷 YTN : 『중국 인삼 ‘고려 홍삼’으로 둔갑』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 인터넷 MBN : 『중국산 인삼, 국산 홍삼으로 ‘둔갑’』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 YTN : 뉴스출발 프로그램 『중국 인삼 ‘고려 홍삼’으로 둔갑』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2일 05:57) • 연합뉴스TV(뉴스Y) : 뉴스 프로그램 『가짜 홍삼 1억 원 어치 판매 일당 검거』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2일자 09: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중국산 수삼을 국내산 홍삼으로 표시하여 판매해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인터넷 경향신문 · MK뉴스 · e머니투데이 · 인터넷 문화일보 · 한경닷컴 · 인터넷 YTN · 인터넷 MBN · YTN · 연합뉴스TV(뉴스Y)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 보도 (2013서울중재82~88, 93~94 참조)] - 동아닷컴 :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 SBSi : 취하 (사유 : 추후보도 약속) ※ 이행방법 - 동아닷컴 : [추후보도] 홈페이지 사회란 초기화면에 추후보도문 제목을 2013년 6월 5일 17:00 이전부터 게재하기 시작하여 48시간 이상 게시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동아닷컴 : 『[보도문] ‘중국산 홍삼, 국내산으로 판매’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SBSi : 『「중국산 인삼이 ‘고려 홍삼’ 둔갑」 보도 관련 추후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7일자)

2013서울조정640	(정정청구) 박○○ 對 SBS-TV
조 정 대 상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 『홍합 볶음면의 달인』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13일자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최초 개발한 홍합 볶음면을 다른 사람이 개발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SBSi에 정정보도 게재, SBSi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SBSi : 『380회 방송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일자)

2013서울조정643~644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농업 협동조합 對 인터넷 신아일보
조 정 대 상	『○○시 지역농협, 농약지원 시보조금 독식』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농협의 일부 임원 및 농자재 담당자가 농협을 통해 농약을 구입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정정보도] 정정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위치에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로 48시간 이상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시 지역농협, 농약지원 시보조금 독식』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3일자)

2013서울조정645	(손배청구) 박○○ 對 e뉴스(뉴스앤조이)
조 정 대 상	『신분 숨기고 불륜 저지른 다락방 출신 목사』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7일자)
신청인주장	목사였던 신청인이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서울조정646~647 (매체별 정정청구) (주)○○○아츠 對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학점은행제 인정 기관 대학 둔갑해 학위 장사』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3년 3월 11일자 14면, 온라인 중앙일보 3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예술계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수강생 모집광고와 달리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휴강이 잦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중앙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0일자 2면) • 온라인 중앙일보 : 『[알려왔습니다] 중앙일보 3월 11일자 학점은행제 인정기관 대학 둔갑해 학위 장사』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0일자)
2013서울조정652~653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김○○ 對 서울신문, 인터넷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1) 『문화재청=성희롱청?』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3년 5월 24일자 11면, 인터넷 서울신문 5월 24일자) (2) 『여학생 성희롱 교수, 알고보니 고위직女공무원과』 제하의 기사 (인터넷 서울신문 2013년 5월 24일자)
신청인주장	교수인 신청인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으며, 전 소속 대학교의 상급기관 대표가 신청인을 비호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654~659 (매체별 정정청구) ○○○어린이집연합회 ○○○위원회 對 중앙일보⁽⁶⁵⁴⁾, 온라인 중앙일보^(655, 654와 병합), 네이버⁽⁶⁵⁶⁾, 다음⁽⁶⁵⁷⁾, 네이트⁽⁶⁵⁸⁾, 줌⁽⁶⁵⁹⁾	
조 정 대 상	(1) 『살생부 오른 어린이집 교사 “살려달라”』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3년 5월 9일자 2면, 온라인 중앙일보 · 네이버 · 다음 · 네이트 · 줌 5월 9일자) (2) 『어린이집, 집단행동 거두고 투명 운영 나서야』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3년 5월 9일자 34면, 온라인 중앙일보 · 네이버 · 다음 · 네이트 · 줌 5월 9일자)
신청인주장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에 협조한 보육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돌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중앙일보 · 온라인 중앙일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 · 다음 · 네이트 · 줌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 89~92 참조)] ※ 기타 합의사항 • 중앙일보 · 온라인 중앙일보 : 네이버, 다음, 네이트, 줌 등 조정대상기사를 매개하고 있는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반론보도문을 전송하여 포털에서 이 기사가 검색될 수 있도록 함 ※ 이행방법 : [온라인 중앙일보에 반론보도]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위치에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로 48시간 이상 게재함
이 행 결 과	• 중앙일보 · 온라인 중앙일보 : 『어린이집 블랙리스트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3년 6월 13일자 2면, 온라인 중앙일보 6월 13일자)

2013서울조정660 (정정청구) ○○○○예비역○○○○연합회 對 뉴스타파	
조 정 대 상	『‘제주 4.3’ 진실 왜곡 단체에 국민혈세 지원』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제주 4.3사건 진실 왜곡 단체이며, 4.3 평화기념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전북조정14~15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순창○○○○○ 對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북도민일보	
조 정 대 상	• 전북도민일보 : 『순창○○○○○ 간부 2명 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2일자 10면) • 인터넷 전북도민일보 : 『순창○○○○○ 간부 업무상배임 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의 이사장과 전무가 업무용 부동산과 건물을 이사회 승인 없이 계약 체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강원조정8~9 (정정·반론청구) ○○시체육회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시장배 고교체육대회 ‘선심성 행사’ 우려』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지역 시장배 고교체육대회를 관련 교육청과 협의 없이 개최한 것이 문제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시장배 고교 체육대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3일자)
2013서울조정662~665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1. 이○○, 2. 금○○ 對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두 돌 안 된 아이까지 특활비... 명목은 베이비 마사지』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3년 5월 6일자 5면, 온라인 중앙일보 5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의 초상을 몰래 촬영·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온라인 중앙일보 기사수정)

2013충북조정25~26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보은군청 對 보은신문, 인터넷 보은신문	
조 정 대 상	『고의인가, 착오인가. 군민 우롱하는 보은군』 제하의 기사 (보은신문 2013년 5월 2일자 15면, 인터넷 보은신문 5월 2일자)
신청인주장	보은군이 미국 글렌데일시 전 시장의 방문을 현 시장이 방문한 것처럼 홍보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보은신문에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종합면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고의인가, 착오인가. 군민 우롱하는 보은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보은신문 2013년 6월 27일자 11면, 인터넷 보은신문 6월 27일자)
2013충북조정27 (정정청구) ○○농업협동조합 對 충청타임즈	
조 정 대 상	『○○ 지역농협 시보조금 독식』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1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농협의 일부 임원 및 농자재 담당자가 농협을 통해 농약을 구입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시 지역농협, 농약지원 시보조금 독식』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7일자 12면)
2013경기조정57~58 (정정 · 손배청구) ○○농업 협동조합 對 전국매일	
조 정 대 상	(1) 『○○시 지역농협, 농약지원 시보조금 독식』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3일자 1면) (2) 『○○농협, 농민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야』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0일자 1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농협의 일부 임원 및 농자재 담당자가 농협을 통해 농약을 구입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대전조정37~38 (매체별 정정청구) ○○농업 협동조합 對 충남일보, CTN	
조 정 대 상	- 충남일보 : 『○○ 지역농협, 농약지원 시보조금 독식』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3일자 11면) - CTN : 『○○시 지역농협, 농약지원 시보조금 독식』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농협의 일부 임원 및 농자재 담당자가 농협을 통해 농약을 구입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CTN : [반론보도] 2013년 6월 13일 09:00부터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함
이 행 결 과	- 충남일보 : 『“○○시 지역농협, 농약지원 보조금 독식”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4일자 지역면) - CTN : 『[반론보도] ○○시 지역농협, 농약지원 시보조금 독식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3일자)

2013서울조정666~669 (매체별 정정청구) 주식회사 ○○건설 對 조선닷컴 ⁽⁶⁶⁶⁾ , TV조선 ⁽⁶⁶⁷⁾ , 동아닷컴 ⁽⁶⁶⁸⁾ , 채널A ⁽⁶⁶⁹⁾	
조 정 대 상	• 조선닷컴 : 『‘성접대’ 윤○○씨에 로비 받은 혐의... ○○건설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5일자) • TV조선 : (1) 뉴스쇼 판 프로그램 『경찰, ○○건설 압수수색... 성접대 연관?』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24일자 21:40) (2) 뉴스 9 프로그램 『윤○○ 로비 정황’ ○○건설 압수수색』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2일자 08:50) (3) 뉴스 12 프로그램 『경찰, ○○건설 압수수색』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25일자 11:40) • 동아닷컴 :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씨 ○○건설 사장에 그림 로비”』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9일자) • 채널A : 아침뉴스 프로그램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건설 사장에 그림 로비”』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29일자 08:10)
신청인주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 모 씨가 신청인 회사를 운영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조선닷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TV조선 : 저녁뉴스 7 프로그램 『[바로잡습니다] “윤○○씨는 ○○건설 대표 맡은 적 없어”』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4일자 18:40) • 동아닷컴 : 『[정정보도문]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 씨 ○○건설 사장에 그림 로비 기사』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0일자) • 채널A : 아침뉴스 프로그램 『바로잡습니다/윤○○ 씨, ○○건설 경영한 사실 없어』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7일자 08:10)
2013서울조정670~674 (매체별 정정청구) (주)○○○ 對 뉴시스 ⁽⁶⁷⁰⁾ , 네이버 ⁽⁶⁷¹⁾ , 다음 ⁽⁶⁷²⁾ , 네이트 ⁽⁶⁷³⁾ , 줌 ⁽⁶⁷⁴⁾	
조 정 대 상	(1) 『태백 브랜드택시사업, 장비하자 논란에 출발부터 삐걱』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3일자) (2) 『브랜드택시사업, 악취 진동』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8일자)
신청인주장	태백시 브랜드택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 회사가 제안요청서와 달리 저가품을 고가에 납품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뉴시스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 네이버 · 다음 · 네이트 · 줌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기사삭제 (2013서울 중재95~98 참조)] ※ 기타 합의사항 • 뉴시스 : 2013년 6월 17일 10:00까지 조정대상기사 외 신청인 관련 기사 2건도 삭제하여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함, 계약관계 각 포털사에 제공한 관련 기사도 삭제하도록 하여 검색되지 않도록 함

2013전북조정16~19	
(매체별 조정 · 손배청구) (병합) ○○레저○○주식회사 對 전북중앙신문,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조 정 대 상	『○○○○ 친환경 골프장' 눈가림 영업』 제하의 기사 (전북중앙신문 2013년 5월 15일자 10면,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5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친환경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신청인 골프장에서 농약 잔류 검사결과 유독성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 이행방법 : [인터넷 전북중앙신문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전북중앙신문 : 『“○○○○ 친환경 골프장' 눈가림 영업”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7일자 10면) -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 『[“○○○○ 친환경 골프장' 눈가림 영업”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6일자)
2013서울조정675~676	
(조정 · 손배청구) 송○○ 對 뉴스천지	
조 정 대 상	『[현장고발 I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석 달] 가격은 어디? 미용실 '꼼수'여전』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서울시가 이 · 미용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옥외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매장 전경이 담긴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3서울조정677	
(손배청구) 김○○ 對 뉴스천지	
조 정 대 상	『[현장고발 I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석 달] 가격은 어디? 미용실 '꼼수'여전』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서울시가 이 · 미용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옥외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매장에서 근무 중인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3서울조정678	
(손배청구) 현○○ 對 뉴스천지	
조 정 대 상	『[현장고발 I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석 달] 가격은 어디? 미용실 '꼼수'여전』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서울시가 이 · 미용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옥외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매장에서 근무 중인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3대전조정39~40	(매체별 정정청구) ○○제약 주식회사 對 충청투데이, 인터넷 충청투데이
조 정 대 상	(1) 『○○제약, 음성에 ‘통큰 투자’... ○○○○○차 생산 준비』 제하의 기사 (충청투데이 2013년 5월 20일자 2면, 인터넷 충청투데이 5월 20일자) (2) 『음료 주력 ○○제약이 혁신형 제약사?』 제하의 기사 (충청투데이 2013년 5월 23일자 2면, 인터넷 충청투데이 5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판매중인 음료 제품의 생산을 위해 충북 음성에 설비투자를 결정했고, 음료 부문을 확대하면서 제약 부문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음에도 ‘혁신형 제약사’로 선정됨에 따라 제약업계의 우려가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서울조정679~690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이○○ 對 SBS-TV ⁽⁶⁷⁹⁻⁶⁸⁰⁾ , SBSi ^(681-682, 679-680과 병합) , 네이버 ⁽⁶⁸³⁻⁶⁸⁴⁾ , 다음 ⁽⁶⁸⁵⁻⁶⁸⁶⁾ , 네이트 ⁽⁶⁸⁷⁻⁶⁸⁸⁾ , 줌 ⁽⁶⁸⁹⁻⁶⁹⁰⁾
조 정 대 상	•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학기 초에 서열 싸움... 학교 속 ‘교실의 법칙’』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17일자 20:00) • SBSi : 『[다시보기] 학기 초에 서열 싸움... 학교 속 ‘교실의 법칙’』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7일자) • 네이버·다음·네이트·줌 : 『학기 초에 서열 싸움... 학교 속 ‘교실의 법칙’』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7일자)
신청인주장	학교 폭력의 일종인 교내 ‘서열 정하기 싸움’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SBS-TV·SBSi : 조정성립 (내용 : SBS-TV 유감표명, SBSi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다음·네이트·줌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경기조정59~6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조○○ 對 연수신문, 인터넷 시사 연수신문
조 정 대 상	『노인회 ○○○지회, 경로당 회장 사퇴강요 물의』 제하의 기사 (연수신문 2013년 3월 12일자 1면, 인터넷 시사 연수신문 3월 12일자)
신청인주장	대한노인회 지회장인 신청인이 지역 내 일반 경로당 회장들의 사퇴를 강요하고, 일부 경로당의 회계장부를 감시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중재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이행방법 : [인터넷 시사 연수신문에 반론보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회면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함
2013서울조정691	(기사별 손배청구) 김○○ 對 민중의소리
조 정 대 상	(1) 『국정원 ○○ 초청 안보특강, 보수성향 강사들 하는 말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4일자) (2) 『[현장] 국정원 안보 특강 집결지... “나는 ‘○○’ 아니에요”』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5일자)
신청인주장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들을 초청한 국정원 안보 특강이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강연에 참석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에서 사용한 사진에 나온 신청인의 뒷모습만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013서울조정692~693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노동조합 對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 임단협안 투표 조작 의혹』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3년 6월 3일자 16면, 인터넷 경향신문 6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노조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임금·단체협약 협상안을 만들기를 포기하고 이를 사측에 위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694~705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YTN ^(694-695, 696-697과 병합) , YTN ⁽⁶⁹⁶⁻⁶⁹⁷⁾ , 네이버 ⁽⁶⁹⁸⁻⁶⁹⁹⁾ , 다음 ⁽⁷⁰⁰⁻⁷⁰¹⁾ , 네이트 ⁽⁷⁰²⁻⁷⁰³⁾ , 줌 ⁽⁷⁰⁴⁻⁷⁰⁵⁾
조 정 대 상	- 인터넷 YTN·네이버·다음·네이트·줌 : 『자격증 ‘우후죽순’... 돈벌이 전락!』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0일자) - YTN : YTN 뉴스 프로그램 『자격증 ‘우후죽순’... 돈벌이 전락!』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30일자 09:50)	
신청인주장	극심한 취업난을 틈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자격증 취득 학원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이 경영 중인 업체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인터넷 YTN·YTN : 조정성립 (내용 : 인터넷 YTN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다음·네이트·줌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기사수정 (2013서울 중재99~106 참조)] ※ 기타 합의사항 - 인터넷 YTN·YTN : 네이버, 다음, 네이트, 줌 등 이 건 조정대상기사를 매개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에서도 기사수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이행방법 - 인터넷 YTN·YTN : [인터넷 YTN 기사수정] 신청인이 운영하는 학원 및 수강생과 관련된 영상 및 음성을 모두 삭제함	
2013서울조정706~71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사)○○DMZ○○○○○○○ 對 YTN ⁽⁷⁰⁶⁻⁷⁰⁷⁾ , 인터넷 YTN ^(708-709, 706-707과 병합) , 네이버 ⁽⁷¹⁰⁻⁷¹¹⁾ , 다음 ⁽⁷¹²⁻⁷¹³⁾ , 네이트 ⁽⁷¹⁴⁻⁷¹⁵⁾ , 줌 ⁽⁷¹⁶⁻⁷¹⁷⁾
조 정 대 상	- YTN : YTN24 프로그램 『적자투성 DMZ 관광시설 애물단지』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3일자 00:00) - 인터넷 YTN·네이버·다음·네이트·줌 : 『적자투성 DMZ 관광시설 애물단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3일자)	
신청인주장	비무장지대 관련 전시·교육기관인 신청인 단체에 이용객이 매우 적어 전시관에 불을 꺼놓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YTN·인터넷 YTN : 계약관계 각 포털사에 반론보도문을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 이행방법 [YTN에 반론보도] 조정대상보도 중에 사용된 관련 화면을 방송화면으로 함 [인터넷 YTN에 반론보도] 홈페이지에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을 게재함	
이 행 결 과	- YTN : YTN24 프로그램 『적자투성이 DMZ 관광시설 애물단지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23일자 00:00) - 인터넷 YTN·네이버·다음·네이트·줌 : 『적자투성이 DMZ 관광시설 애물단지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3일자)	

2013서울조정718~725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문○○ 외 44인 對 e머니투데이 ^(718~719) , 네이버 ^(720~721) , 다음 ^(722~723) , 네이트 ^(724~725)
조 정 대 상	『○○○○구역 찬성파 “주민투표 실시하라”... 시청 점거농성』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지역 재개발사업을 찬성하는 주민의 점거농성을 보도하면서 빌라 사업자들이 개발을 반대하고 있으며, 빌라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사업성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e머니투데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다음·네이트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정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 서울중재107~112 참조)] ※ 기타 합의사항 • e머니투데이 :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조정대상기사를 매개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전송하여 인터넷 포털의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위치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매개하도록 함 ※ 이행방법 • e머니투데이 : [정정 및 반론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2013년 6월 20일까지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위치에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로 08:00부터 48시간 이상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 e머니투데이 : 『○○○○구역 재개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2013서울조정732	(추후청구) 1. 송○○, 2. 최○○ 對 한국성결신문
조 정 대 상	(1) 『계약, 지출 등서 총체적인 문제점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4일자 11면) (2) 『쓰레기통(?)에 처박힌 한국성결신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4일자 11면) (3) 『총회 재정비리 사태를 보는 시선』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2일자 15면) (4) 『총무 당선무효 처리 놓고 임원회 충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2일자 1면) (5) 『성결인대회·목사안수식 확정』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6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업무상 횡령 등을 저질렀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검찰, 송○○ 전 총무 등 무혐의로 결론』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5일자 1면)
2013서울조정735~736	(매체별 정정청구) ○○○○예술직업전문학교 對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학점은행제 인정 기관 대학 둔갑해 학위 장사』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3년 3월 11일자 14면, 온라인 중앙일보 3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연예인에게 개인 레슨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서울조정737~738	(정정 · 손해청구) 홍○○ 對 인터넷 일요서울
조 정 대 상	『도○○ ○○○○ 재단 이사장 “인신공격 · 왜곡보도 더 이상 못 참는다”』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이웃 주민의 땅을 빼앗는 등 문제가 많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2013대구조정23~24	(정정 · 손해청구) 이○○ 對 대구일보
조 정 대 상	(1)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막바지 차질』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30일자 5면) (2) 『“○○ 토지구획” 조합비 부당수령 추가 확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3일자 5면) (3) 『○○ 토지구획 조합장 불법 토지소유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9일자 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자격 없이 토지구획정리조합장직을 수행하면서 조합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불법으로 토지를 소유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경기조정63~66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병합) 김○○ 對 경기일보, 인터넷 경기일보
조 정 대 상	- 경기일보 : 『○○○○청 ○○이 술자리서 더듬고… 뽀뽀까지』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0일자 6면) - 인터넷 경기일보 : 『은밀한 손길에 뽀뽀까지... ○○님은 능구렁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부하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과도한 스킨십을 일삼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739~742	(매체별 정정청구) ○○○○(주) 對 MBC-TV ⁽⁷³⁹⁾ , iMBC ^(740, 739와 병합) , MBN ⁽⁷⁴¹⁾ , 인터넷 MBN ^(742, 741과 병합)
조 정 대 상	- MBC-TV : (1)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보이지 않는 위협 ‘전자파’ 비상』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31일자 06:00), (2)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전자파 차단물 효과 있나?』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31일자 19:55) - iMBC : (1) 『“보이지 않는 위협” 전자파, 신체에 접촉하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1일자), (2) 『전자파 차단장치 효과 있을까?... 30cm 이상 거리둬야』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1일자) - MBN : MBN 뉴스 8 프로그램 『전자파 차단 필터 효과 ‘제로’』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30일자 20:00) - 인터넷 MBN : 『전자파 차단 필터 효과 ‘제로’』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가전제품의 전자파 노출을 막는 차단필터 제품의 효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의 제품을 방송에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744 (정정청구) 김○○ 對 쿠키뉴스	
조 정 대 상	『[현장] ‘오프라인으로 커밍아웃’ 포르노급 묘사 동인소설, 구민센터서 버젓이 판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포르노급으로 묘사된 동인소설을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 2013년 6월 24일까지 뉴스란 사회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오프라인으로 커밍아웃’ 포르노급 묘사 동인소설...』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2013서울조정745 (정정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對 메디칼타임즈	
조 정 대 상	(1) 『돈줄 움켜진 공단은 수퍼갑 “주는대로 받아라!”』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0일자) (2) 『수가 받고 싶으면 성분명처방·총액계약제 합의하라』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1일자) (3) 『“감히 수퍼갑에 대들어!” ○○○은 공단의 든든한 뺨』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2일자)
신청인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을 하면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수가인하만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의 횡포’를 일삼아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섹션 내 의료사회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2013서울조정746~755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김 ○ 對 뉴시스 ^(746~747) , 네이버 ^(748~749) , 다음 ^(750~751) , 네이트 ^(752~753) , 줌 ^(754~755)	
조 정 대 상	『건보공단·○○ 심부름센터에 고객정보 제공 11명 검거』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신청인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신청인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개인정보 유출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2일자)
2013서울조정756~763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김 ○ 對 연합뉴스 ^(756~757) , 네이버 ^(758~759) , 다음 ^(760~761) , 네이트 ^(762~763)	
조 정 대 상	『공공기관·기업체 개인정보 불법 심부름센터로 ‘술술’』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신청인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신청인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건강보험공단 직원 개인정보 유출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1일자)

2013서울조정764~773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김 ○ 對 노컷뉴스 ^(764~765) , 네이버 ^(766~767) , 다음 ^(768~769) , 네이트 ^(770~771) , 줌 ^(772~773)
조 정 대 상	『○○·건보공단 직원, 심부름센터에 고객정보 팔아 넘겨』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신청인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신청인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개인정보 유출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7일자)
2013서울조정774~781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김 ○ 對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774~775) , e새한일보 ^(776~777) , 투데이코리아 ^(778~779) , 데일리서울파이낸스 ^(780~781)
조 정 대 상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공공기관 직원, 불법 심부름센터 개인정보 빼내다 들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 e새한일보 : 『공기업 직원 매수 개인정보 빼낸 심부름센터 일당 적발』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 투데이코리아 : 『건보공단직원 매수 개인정보 빼낸 일당 적발』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6일자) • 데일리서울파이낸스 : 『○○·건보공단 직원, 심부름센터에 개인정보 넘겨』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6일자)
신청인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신청인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개인정보 유출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7일자)
2013서울조정782~791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김 ○ 對 MK뉴스 ^(782~783) , 네이버 ^(784~785) , 다음 ^(786~787) , 네이트 ^(788~789) , 줌 ^(790~791)
조 정 대 상	『공공기관·기업체 보안 믿을 수 없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신청인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신청인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최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개인정보 유출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0일자)

2013서울조정792~803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김 ○ 對 YTN ^(792~793) , 인터넷 YTN ^(794~795) , 네이버 ^(796~797) , 다음 ^(798~799) , 네이트 ^(800~801) , 줌 ^(802~803)
조 정 대 상	• YTN : YTN 뉴스나이트 프로그램 『줄줄 새는 개인정보』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15일자 22:00) • 인터넷 YTN · 네이버 · 다음 · 네이트 · 줌 : 『줄줄 새는 개인정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신청인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신청인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YTN :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 『줄줄 새는 개인정보’ 관련 추후 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15일자 22:00) • 인터넷 YTN · 네이버 · 다음 · 네이트 · 줌 : 『줄줄 새는 개인정보’ 관련 추후 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5일자)
2013서울조정804~815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김 ○ 對 MBN ^(804~805) , 인터넷 MBN ^(806~807) , 네이버 ^(808~809) , 다음 ^(810~811) , 네이트 ^(812~813) , 줌 ^(814~815)
조 정 대 상	• MBN : MBN 뉴스 8 프로그램 『○○직원 매수해 개인정보 빼낸 심부름센터』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15일자 20:00) • 인터넷 MBN · 네이버 · 다음 · 네이트 · 줌 : 『○○직원 매수해 개인정보 빼낸 심부름센터』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신청인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신청인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MBN : 세상의 눈 프로그램 『개인정보 유출 혐의… 건강보험 공단 직원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12일자 09:00) • 인터넷 MBN · 네이버 · 다음 · 네이트 · 줌 : 『개인정보 유출 혐의… 건강보험 공단 직원 무혐의』 제하의 기사 (인터넷 MBN · 네이버 · 다음 · 네이트 2013년 6월 11일자, 줌 6월 12일자)
2013서울조정816~819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김 ○ 對 KBS-1TV, KBS 미디어
조 정 대 상	• KBS-1TV : KBS 뉴스12 프로그램 『○○직원, 300명 개인 정보 유출… 관리 허술』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16일자 12:00) • KBS 미디어 : 『○○직원, 300명 개인 정보 유출… 관리 허술』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6일자)
신청인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신청인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KBS-1TV : 창원KBS-1TV 뉴스 프로그램 『개인정보 심부름센터 제공 4명 구속 기소』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11일자 09:30) • KBS 미디어 : KBS창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심부름센터 제공 4명 구속 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1일자)

2013부산조정20~23 (기사별 조정 · 손해청구)(병합)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對 부산KBS-1TV	
조 정 대 상	(1) KBS 뉴스 9 프로그램 『바다숲 조사 무자격자에게 용역 맡겨』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10일자 21:00) (2) KBS 뉴스 9 프로그램 『수퍼갑의 횡포 사업비 후려치기』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15일자 21:00)
신청인주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무자격업체에 잠수용역을 맡겨 정부의 바다숲 조성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반론보도] 2013년 7월 3일 <KBS 뉴스 9> 프로그램 및 2013년 7월 4일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반론보도문을 낭독하고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함
이 행 결 과	(1) KBS 뉴스 9 프로그램 『수산자원공단 “무자격자에 용역 안 맡겨”』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3일자 21:00) (2)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수산자원공단 “무자격자에 용역 안 맡겨”』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4일자 06:00)
2013서울조정820~821 (정정 · 손해청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對 KBS-1TV	
조 정 대 상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바다숲 조사 무자격자에게 용역 맡겨』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11일자 06:00)
신청인주장	신청인 공단이 무자격업체에 잠수용역을 맡겨 정부의 바다숲 조성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수산자원공단 “무자격자에게 용역 안 맡겨”』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3일자 06:00)
2013대전조정41~44 (매체별 조정 · 손해청구) 김○○ 對 금강일보, 인터넷 금강일보	
조 정 대 상	『“제자 성추행한 교수 2명 外 성폭행 시도 교수도 있었다”』 제하의 기사 (금강일보 2013년 5월 10일자 6면, 인터넷 금강일보 5월 9일자)
신청인주장	미대 교수로 재직 중인 신청인이 지난 2008년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대전조정45~48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김○○ 對 금강일보, 인터넷 금강일보	
조 정 대 상	『제자 성추행 대학교수 이번엔 학위조작?』 제하의 기사 (금강일보 2013년 5월 31일자 5면, 인터넷 금강일보 5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대학교수 채용 과정에서 학위와 논문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대전조정49~5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김○○ 對 금강일보, 인터넷 금강일보	
조 정 대 상	『○○ 모 미대 교수 ‘백화점식 비리’ 충격』 제하의 기사 (금강일보 2013년 6월 3일자 15면, 인터넷 금강일보 6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임용고사 출제위원임을 이용해 사적으로 임용캠프를 운영하고 사전에 문제를 유출시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부산조정24~25 (정정·손배청구) 1. 이○○, 2. 이△△ 對 울산KBS-1TV	
조 정 대 상	(1) KBS 뉴스9 프로그램 『문화재 망치는 흉물』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22일자 21:00) (2)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문화재 망치는 흉물』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23일자 06:00) (3) KBS 뉴스9 프로그램 『공용땅 개인에게 헌납』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23일자 21:00) (4)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공용땅 개인에게 헌납』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24일자 06:00) (5) KBS 뉴스9 프로그램 『서로 남 탓 타령만...』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24일자 21:00) (6) KBS 뉴스9 프로그램 『서로 남 탓 타령만...』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26일자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문화재 주변에 불법으로 건축공사를 하고 있으며, 건축부지에 인접한 하천부지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은 것이 특혜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부산조정26~27 (정정·손배청구) ○○○○노동조합총연맹 외 2인 對 한국공업신문	
조 정 대 상	『○○자동차, 망하는 길만 남았다... 이유는 단하나... 노조 때문에』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노동조합총연맹과 금속노동조합 및 소속 지부가 고의적으로 모 자동차 회사를 위태롭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피신청인 사과, 기사삭제)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10일간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노총, ○○노조, ○○자동차지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6일자)

2013서울조정822 (손배청구) 1. 오○○, 2. 홍○○ 對 KBS-2TV	
조 정 대 상	생생정보통 프로그램 『공포의 살인진드기』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29일자 18:10)
신청인주장	살인진드기 사망 사고에 대해 보도하면서 유족인 신청인들의 집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인터뷰 내용을 무단 녹음 ·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150만 원 지급)
2013부산조정28~31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남○○ 對 KNN, iKNN	
조 정 대 상	• KNN : 8시 뉴스 프로그램 『횡령도 모자라 회사파산까지?』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24일자 20:00) • iKNN : 『횡령도 모자라 회사 파산까지?』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횡령사실을 감추기 위해 다른 직원과 함께 사장 잠적설 등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KNN에 조건부 추후보도 약속, iKNN 기사삭제) ※ 이행방법 : [KNN에 조건부 추후보도 약속] 횡령 등 혐의 부분에 대해 무혐의로 밝혀지면 추후보도 하도록 함
2013서울조정823~824 (정정 · 반론청구) 순천시청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순천시는 낙안읍성 입장료 수입 사용처 공개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순천시가 낙안읍성 입장료 수입과 관련 전횡 · 횡령 · 착복한 의혹이 있다는 낙안읍성 보존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문화면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동안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순천시 낙안읍성 입장료 전횡 의혹 관련 정정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0일자)
2013경기조정67 (추후청구) 최○○ 對 OBS경인TV	
조 정 대 상	경찰25시 프로그램 『7년 전 공범』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15일자 23:05)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훔친 차량을 알선하여 체포된 것으로 방송하였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부산조정32~39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김 ○ 對 인터넷 부산일보 ^(32~33) , 인터넷 국제신문 ^(34~35) , KNN ^(36~37) , iKNN ^(38~39)
조 정 대 상	• 인터넷 부산일보 : 『공기업에서 개인 정보가 샌다』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 인터넷 국제신문 : 『건보공단·○○ 직원 매수 개인정보 빼낸 일당 적발』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 KNN : KNN 뉴스아이 프로그램 『줄줄 새는 개인정보』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15일자 20:35) • iKNN : 『줄줄 새는 개인정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신청인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신청인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인터넷 부산일보·인터넷 국제신문 :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 KNN·iKNN : 각 취하
이 행 결 과	• 인터넷 부산일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개인정보 누설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2일자) • 인터넷 국제신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개인정보 누설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3일자)
2013서울조정825~826	(정정·손배청구) (주)○○아이디어스 對 tvN
조 정 대 상	SNL코리아 프로그램 『신종 사기 “스미싱” 기승... 모바일 청첩장 링크 위장』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1일자 23:00)
신청인주장	신종 사기인 ‘스미싱’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업체의 상품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후속보도] 2013년 9월 30일까지 신청인과 관련하여 별도의 보도를 하도록 함

2013경남조정16~31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김 ○ 對 인터넷 경남신문 ⁽¹⁶⁻¹⁷⁾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¹⁸⁻¹⁹⁾ , 인터넷 경남일보 ⁽²⁰⁻²¹⁾ , 인터넷 경남매일 ⁽²²⁻²³⁾ , 인터넷 창원일보 ⁽²⁴⁻²⁵⁾ ,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²⁶⁻²⁷⁾ , 경남인뉴스 ⁽²⁸⁻²⁹⁾ , 모닝뉴스 ⁽³⁰⁻³¹⁾
조 정 대 상	- 인터넷 경남신문 : 『공기업 직원 연루, 개인정보 빼낸 ○○ 불법심부름센터 일당 적발』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 『건보공단·○○ 직원까지 가담… 개인정보 빼내다 적발』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6일자) - 인터넷 경남일보 : 『개인정보 빼내기 “어렵지 않아요?”』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6일자) - 인터넷 경남매일 : 『전국 4천여명 개인정보 불법 수집』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 인터넷 창원일보 : 『“당신의 개인정보는 안전합니까?” 공공기관·기업체로부터 불법수집』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 『전국을 무대로 개인정보 빼 부당 이득 챙긴 일당 무더기 검거』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 경남인뉴스 : 『“공기업(○○) 직원이 심부름센터 연루”』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 모닝뉴스 : 『공기업 직원 낀 불법홍신소 운영 일당 검거』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신청인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신청인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인터넷 경남신문 : 『건강보험공단 직원 개인정보 유출 무혐의처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2일자)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 『검찰, 건보공단 직원 개인정보 유출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3일자) - 인터넷 경남일보 : 『건강보험공단 직원 개인정보 유출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3일자) - 인터넷 경남매일 : 『[정정보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개인정보 유출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1일자) - 인터넷 창원일보 : 『건보공단 직원 개인정보 유출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1일자) -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개인정보 유출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2일자) - 경남인뉴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개인정보 유출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2일자) - 모닝뉴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개인정보유출 무혐의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2일자)
2013서울조정827	(손배청구) (주)○○○○○ 對 표면처리저널
조 정 대 상	『자동도금설비에서 대량 불량 발생』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30일자 22~23면)
신청인주장	자동도금설비에서 대량 불량이 발생한 원인이 신청인 회사가 제작한 설비의 기계적인 결함이 원인이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829	(손배청구) 강○○ 對 뉴스1 코리아
조 정 대 상	『‘주말 편법 보조금’ 덕에 ○○○○ 9만9천 원』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0일자)
신청인주장	휴대폰 편법 보조금 관련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3서울조정830	(손배청구) 양○○ 對 SBS-TV
조 정 대 상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감춰진 얼굴 누가 핸들을 잡았나』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9일자 23:10)
신청인주장	뺑소니 교통사고를 보도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신청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방송에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831~832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서울특별시 對 한국경제, 한경닷컴
조 정 대 상	『박원순 “적립금 7천억 줄테니 사용기간 연장” 인천시 “당연히 써야할 돈... 말도 안되는 제안”』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3년 5월 14일자 32면, 한경닷컴 5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의 대가로 7천억 원을 인천시에 재정지원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한경닷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을 게재함
이 행 결 과	『‘박원순 서울시장 수도권 매립지 발언’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3년 6월 25일자 32면, 한경닷컴 6월 25일자)
2013서울조정833	(정정청구) 송○○ 對 데이터넷
조 정 대 상	『○○○, 컬러 스마트 IC칩 내장 신용카드 상용화 개발』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컬러 스마트 IC칩이 내장된 신용카드 상용화에 성공한 모 회사를 보도했으나, 이는 신청인 회사가 개발해서 상용화를 시도한 것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834~836, 878 (매체별 추후청구) 은○○對 뉴데일리 ⁽⁸³⁴⁾ , 뉴스엔 ⁽⁸³⁵⁾ , 동아닷컴 ⁽⁸³⁶⁾ , 네이버 ⁽⁸⁷⁸⁾	
조 정 대 상	• 뉴데일리 : 『은○○ 前PD는 칼 맞고 박○○은 전전궁금 중...』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일자) • 뉴스엔 : 『나꼼수, 강○○ 신○○ 검찰소환 예상 “정치비리 은페카드” 주장』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5일자) • 동아닷컴 · 네이버 : 『은○○ 前 PD ‘식칼 테러’ 50대는 조폭 두목』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저축은행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뉴데일리 :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 뉴스엔 · 동아닷컴 · 네이버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2013서울중재 113~114, 118 참조)] ※ 기타 합의사항 • 뉴데일리 : 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배상책임을 묻지 않도록 함 ※ 이행방법 • 뉴데일리 : [추후보도] 홈페이지 사회 섹션에 2013년 6월 24일까지 추후보도문을 게재함
이 행 결 과	• 뉴데일리 : 『[은○○ 前 PD ○○저축은행 불법대출]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9일자)
2013서울조정837, 879 (매체별 추후청구) 은○○對 오마이뉴스, 네이버	
조 정 대 상	『검찰소환설’ 신○○, 음모론 피해자가 되선 안 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저축은행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2013서울중재115, 119 참조)]
2013서울조정838, 880 (매체별 추후청구) 은○○對 인터넷 스포츠한국, 네이버	
조 정 대 상	『강○○에 엄청난 시련 닥치나... 나꼼수 주장 파문』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저축은행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2013서울중재116, 120 참조)]
2013서울조정839, 881 (매체별 추후청구) 은○○對 인터넷 한국일보, 네이버	
조 정 대 상	『은○○ 전 PD 불법대출’ 연예계 뒤흔드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저축은행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2013서울중재117, 121 참조)]

2013서울조정840, 882 (매체별 추후청구) 은○○ 對 시사IN Live(시사인 라이브), 네이버	
조 정 대 상	(1) 『○○ 최대 저축은행이 거덜난 까닭』 제하의 기사 (시사인 Live 2010년 10월 25일자, 네이버 11월 3일자) (2) 『저축은행 수사, 핵심은 다 빠졌네』 제하의 기사 (시사인 Live 2012년 7월 9일자, 네이버 7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저축은행 불법대출에 관련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시사IN Live(시사인 라이브) :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 네이버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2013서울중재122 참조)] ※ 이행방법 • 시사IN Live(시사인 라이브) : [추후보도] 2013년 7월 1일부터 추후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시하되,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행 결 과	• 시사IN Live(시사인 라이브) : 『“은○○ 전PD ○○저축은행 불법대출’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일자)
2013서울조정841 (손배청구) 이○○ 對 약사신문	
조 정 대 상	『○○제약 리베이트 핵심인물 3명 미스터리』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1일자)
신청인주장	국내 모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내부고발자인 신청인의 신원을 노출하고 특정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400만 원,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강원조정10 (정정청구) 윤○○ 對 G1 강원민방-TV	
조 정 대 상	G1 뉴스 820 프로그램 『중매 뗏가 독촉... ‘물의’』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14일자 20:35)
신청인주장	장애인단체장인 신청인이 결혼 중매를 대가로 장애인부부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G1뉴스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장애인 단체 중매 뗏가 독촉”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6일자)
2013부산조정40~41 (매체별 손배청구) (병합) 이○○ 對 부산일보, 인터넷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뇌염을 독감 오진 의료진 3억 배상하라』 제하의 기사 (부산일보 2013년 6월 7일자 6면, 인터넷 부산일보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뇌염을 독감으로 오진한 의료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뇌염 후유증 및 장애를 구체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인터넷 부산일보 기사수정 약속)

2013서울조정842 (정정청구) 주식회사 ○○○○ ○ 조선헌즈닷컴	
조 정 대 상	『○○ 대형상가, 관리비 횡령으로 상인 2천여명 피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상가 관리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총 600억 원이 넘는 건물 관리비를 횡령해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 2013년 7월 10일까지 반론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위치에서 48시간 이상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반론] ○○ 대형상가 관리비 횡령 보도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2013서울조정843~844 (정정 · 손해청구) 박창식 ○ 구리남양주넷	
조 정 대 상	(1) 『박창식의 정치철학에 대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1일자) (2) 『‘발’로 뛰는 윤.. ‘말’로 뛰는 박』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새누리당 구리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인 신청인이 구리시의회 등을 무시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유감표명)
이 행 결 과	『<바로 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5일자)
2013서울조정845, 1051~1053 (매체별 정정청구) (사)○○○신학 및 교회○○○ ○ e뉴스(뉴스앤조이) ⁽⁸⁴⁵⁾ , 인터넷 교회연합신문 ⁽¹⁰⁵¹⁾ , 컵뉴스 ⁽¹⁰⁵²⁾ , 아이굿뉴스 ⁽¹⁰⁵³⁾	
조 정 대 상	• e뉴스(뉴스앤조이) : 『○○○○, 인적 채신 시동 거냐』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0일자) • 인터넷 교회연합신문 : 『○○○○, 회원 의무 위반한 22명 징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7일자) • 컵뉴스 : 『“확실히 옳고 그름 가르는 것이 득”』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1일자) • 아이굿뉴스 : 『○○○○, 다시 한 번 채신 나선다』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의 목사 안수식이 무자격 · 이단 논란을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e뉴스(뉴스앤조이) · 아이굿뉴스 : 『[반론보도] ○○신학 및 교회○○○ 목사 안수식 관련』 제하의 기사 (e뉴스(뉴스앤조이) 2013년 6월 24일자, 아이굿뉴스 7월 15일자) • 인터넷 교회연합신문 : 『“○○신학 및 교회○○○” 기사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 컵뉴스 : 『[반론보도] ○○○○ ‘우리의 입장’ 성명서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6일자)

2013서울조정846, 1054~1055	(매체별 정정청구) ○○○○신학대학원 對 e뉴조(뉴스앤조이) ⁽⁸⁴⁶⁾ , 컵뉴스 ⁽¹⁰⁵⁴⁾ , 아이굿뉴스 ⁽¹⁰⁵⁵⁾
조 정 대 상	• e뉴조(뉴스앤조이) : 『○○○○, 인적 채신 시동 거나』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0일자) • 컵뉴스 : 『“확실히 옳고 그름 가르는 것이 득”』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1일자) • 아이굿뉴스 : 『○○○○, 다시 한 번 채신 나선다』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이름만 학교일뿐 합법적인 학교가 아니라는 주장을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e뉴조(뉴스앤조이) · 아이굿뉴스 : 『[반론보도] ○○신학 및 교회○○○ 목사 안수식 관련』 제하의 기사 (e뉴조 2013년 6월 24일자, 아이굿뉴스 7월 15일자) • 컵뉴스 : 『[반론보도] ○○○○ ‘우리의 입장’ 성명서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6일자)
2013서울조정847~877, 929~930	채○○ 對 JTBC ^(847-848 정정·손배청구) , 인터넷 JTBC ^(849 정정청구) , 서울신문 Boom(붐) ^(850 정정청구) , 스포츠 서울닷컴 ^(851 정정청구) , 티브이데일리 ^(852 정정청구) , 온라인 중앙일보 ^(853 정정청구) , 오마이뉴스 ^(854 정정청구) , 엑스포츠뉴스 ^(855 정정청구) , 뉴스핌 ^(856 정정청구) , 인터넷 SBS CNBC ^(857 정정청구) , 풀리뉴스 ^(858 정정청구) , 인터넷 MBN ^(859 정정청구) , 인터넷 엠티엔(MTN) ^(860 정정청구) , 컨슈머타임스 ^(861 정정청구) , 민중의소리 ^(862 정정청구)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863 정정청구) , MK뉴스 ^(864 정정청구) , 조선비즈닷컴 ^(865 정정청구) , TV리포트 ^(866 정정청구) , 인터넷365 ^(867 정정청구) , SSTV ^(868 정정청구) , etv ^(869 정정청구) ,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870 정정청구) , 인터넷 스포츠동아 ^(871 정정청구) , 인터넷 스포츠한국 ^(872 정정청구) , 세계닷컴 ^(873 정정청구) , 인터넷 한국일보 ^(874 정정청구) , 아시아경제닷컴 ^(875 정정청구) , wow한국경제TV ^(876 정정청구) , 이투데이 ^(877 정정청구) , 인터넷 헤럴드경제 ^(879 정정청구) , Gvalley ^(930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JTBC : JTBC NEWS 9 프로그램 『집간에 아이들 태운 ○○ 어린이집 논란』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3일자 21:00) • 인터넷 JTBC : 『SUV 트렁크 열자 집칸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서울신문 Boom(붐) : 『어린이집 집칸, SUV 트렁크 집칸에서 아이들 우르르 ‘무슨 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스포츠 서울닷컴 : 『어린이집 집칸에 보호 장구 없이 아이들이?! ‘충격’』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티브이데일리 : 『어린이집, 집칸에 아이들 탑승시켜 귀가? ‘파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온라인 중앙일보 : 『SUV 트렁크 열자 집칸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오마이뉴스 : 『차 트렁크에 아이 태우고 소풍?... 누리꾼들 부글부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엑스포츠뉴스 : 『어린이집, 집칸에 아이들 태우고 소풍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뉴스핌 : 『어린이집 집칸, 트렁크 열자 아이들이 웅기종기... 보호장비도 없이 ‘충격’』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인터넷 SBS CNBC : 『어린이집 집칸에 아이들 태우고 소풍? ‘파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풀리뉴스 : 『SUV 집칸 어린이집 아이들, ‘우르르’...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인터넷 MBN : 『어린이집 집칸 파문, 네티즌 비난 폭발! 원장 해명 들어보니...』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인터넷 엠티엔(MTN) : 『어린이집 집칸 논란, 아이들을 SUV 트렁크에? ‘안전할까?’』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조 정 대 상	• 컨슈머타임스 : 『어린이집 짐칸, SUV 트렁크에 ‘우르르’... 어린이집 원장 직접 해명나서』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민중의소리 : 『어린이집 짐칸, 어이 없는 장면에 ‘당황’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어린이집 짐칸에 아이들 탑승? “안전장비 하나 없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MK뉴스 : 『어린이집 짐칸 논란, 해당원장 “안전 장치 설치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조선비즈닷컴 : 『어린이집 짐칸 논란 “해당 어린이집 원장 직접 해명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TV리포트 : 『어린이집 짐칸 논란에 원장 해명 “충격흡수 좌석 2개 설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인터뷰365 : 『어린이집 짐칸 논란, 아이들 트렁크에 태우고 소풍? ‘비난 폭발’』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SSTV : 『어린이집 짐칸 논란, “뒷좌석 개조했다” 해명에도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etv : 『어린이집 짐칸 논란... 원장 “안전 장치 설치 했다” 해명』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 『어린이집 짐칸 논란... “선생님은 좌석에 앉고 아이들은 짐칸에?”』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인터넷 스포츠동아 : 『어린이집 짐칸, 아이들을 짐짝같이... ‘누리꾼 충격’』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인터넷 스포츠한국 : 『어린이집 짐칸 논란, 알고보니...』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세계닷컴 : 『어린이집 짐칸 논란... “우리 아이가 짐짝?”』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인터넷 한국일보 : 『어린이집 짐칸 파문, 아이들 트렁크에 태우고... ‘네티즌 분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아시아경제닷컴 : 『[사회] 어린이집 짐칸 파문... 원장 해명에도 네티즌 비난 잇따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wow한국경제TV : 『어린이집 짐칸 파문, 해명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 분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이투데이 : 『어린이집 짐칸 파문, “아이들은 트렁크에 짐짝처럼... 선생님은 좌석에” 공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어린이집 짐칸 파문, 트렁크에 아이들 태우고 소풍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Gvalley : 『어린이집 짐칸 실어 ‘분통’... “어린이집이야? 지옥의집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차량의 짐칸을 개조해 어린이집 아이들을 태웠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JTBC · 인터넷 JTBC : 각 조정성립 (내용 : 인터넷 JTBC에 정정보도) • 서울신문 Boom(붐)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 123~124 참조)] • 스포츠 서울닷컴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 125~126 참조)] • 티브이데일리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27~128 참조)] • 온라인 중앙일보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 129~130 참조)] • 오마이뉴스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31~132 참조)]

처리 결과	• 엑스포츠뉴스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33~134 참조)] • 뉴스핌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35~136 참조)] • 인터넷 SBS CNBC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37~138 참조)] • 폴리뉴스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45~146 참조)] • 인터넷 MBN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47~148 참조)] • 인터넷 엠티엔(MTN)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49~150 참조)] • 컨슈머타임스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51~152 참조)] • 민중의소리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53~154 참조)]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43~144 참조)] • MK뉴스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보도 (2013서울중재155~156 참조)] • 조선비즈닷컴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57~158 참조)] • TV리포트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보도 (2013서울중재159~160 참조)] • 인터뷰365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보도 (2013서울중재161~162 참조)] • SSTV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63~164 참조)] • etv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보도 (2013서울중재165~166 참조)] •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71~172 참조)] • 인터넷 스포츠동아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73~174 참조)] • 인터넷 스포츠한국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67~168 참조)] • 세계닷컴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75~176 참조)] • 인터넷 한국일보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69~170 참조)] • 아시아경제닷컴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41~142 참조)] • wow한국경제TV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77~178 참조)] • 이투데이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79~180 참조)]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81~182 참조)] • Gvalley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39~140 참조)] ※ 기타 합의사항 • JTBC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를 방송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금전적 배상책임을 묻지 않도록 함 ※ 이행방법 • JTBC · 인터넷 JTBC : [인터넷 JTBC에 정정보도] 2013년 6월 28일 15:00부터 인터넷 JTBC 뉴스 섹션에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되, 그 지속시간은 72시간 이상으로 함
이행 결과	• 인터넷 JTBC : 『‘짐칸에 아이들 태운 ○○ 어린이집 논란’ 관련 고침』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2013강원조정11 (정정청구) 채○○ 對 인터넷 강원일보	
조 정 대 상	『어린이집 잠깐... “위험해 보여”』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차량의 짐칸을 개조해 어린이집 아이들을 태웠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어린이집 잠깐 논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아이들 좌석으로 최초 출고된 차량”』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일자)
2013경기조정68 (정정청구) 채○○ 對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어린이집 잠깐, 어린이집 “좌석으로 개조했다” 해명 ‘논란 여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차량의 짐칸을 개조해 어린이집 아이들을 태웠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알림기사 게재,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어린이집 잠깐 논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보자 “선부른 행동 죄송”』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2013서울조정883~884 (정정 · 손해청구) 정○○ 외 2인 對 KBS-1TV	
조 정 대 상	취재파일K 프로그램 『○○마을의 맨얼굴』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7일자 22:50)
신청인주장	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이 특혜를 받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885~890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한국은행 對 주간조선 ^(885~886) , 인터넷 주간조선 ^(887~888, 885~886과 병합) , 조선닷컴 ^(889~890)	
조 정 대 상	- 주간조선 · 인터넷 주간조선 : 『MB맨 김○○ △△금융 앞에선 왜 작아지나』 제하의 기사 (주간조선 2013년 6월 10일자 커버스토리면, 인터넷 주간조선 6월 10일자) - 조선닷컴 : 『MB맨 김○○ 한은총재의 △△금융자주 봐주기?』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8일자)
신청인주장	한국은행이 국내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000여억 원을 고스란히 날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주간조선 · 인터넷 주간조선 : [인터넷 주간조선에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커버스토리 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 조선닷컴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경제 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한국은행의 ○○은행 지분 매각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주간조선 2013년 7월 8일자 16면, 인터넷 주간조선 7월 10일자, 조선닷컴 7월 9일자)

2013대전조정53 (정정청구) 채○○ 對 인터넷 중도일보	
조 정 대 상	『어린이집 잠깐 논란 “이 모습 어이없어 촬영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차량의 짐칸을 개조해 어린이집 아이들을 태웠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일자)
2013대구조정25 (정정청구) 채○○ 對 인터넷 매일신문	
조 정 대 상	『어린이집 잠깐 논란 “아이를 트렁크 짐짝 취급?” 원장 해명 들어보니...』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차량의 짐칸을 개조해 어린이집 아이들을 태웠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알림기사 게재,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어린이집 잠깐 논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보자 “선부른 행동 심려끼쳐 죄송”』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2013서울조정891~894, 897~898 오○○ 對 전자신문 인터넷 ^(891~892 정정·손배청구) , 네이버 ^{(893~894, 897~898 기사별 정정·손배청구)(병합)}	
조 정 대 상	- 전자신문 인터넷 : 『살인진드기 같은 ‘짜통’제품, 기업 경쟁력 잡아먹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0일자) - 네이버 : (1) 『살인진드기 같은 ‘짜통’제품, 기업 경쟁력 잡아먹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0일자), (2) 『○○○전자 세계 제패 꿈, 협력사 짜통 제품에 발목』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짜통 전자제품을 불법 유통시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서울조정895~896 (정정·손배청구) 오○○ 對 조선비즈닷컴	
조 정 대 상	『○○○전자 세계 제패 꿈, 협력사 짜통 제품에 발목』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짜통 전자제품을 불법 유통시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899~90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주)북○○○○ 對 동아닷컴, 동아일보	
조 정 대 상	『수상한 독서캠페인... ‘단 한 번의 연애’등 22권 변종 사재기 의혹』 제하의 기사 (동아닷컴 2013년 6월 12일자, 동아일보 6월 12일자 1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진행한 얼리버드 캠페인이 사재기 수단으로 변질된 캠페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출판물 불법 유통 신고센터가 신청인의 ‘얼리버드 캠페인’에 대해 ‘사재기’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경우, 결론을 내린 후 1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도하도록 함 ※ 이행방법 : [동아닷컴에 반론보도] 사회면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수상한 독서캠페인’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동아닷컴 2013년 7월 10일자, 동아일보 7월 10일자 12면)

2013서울조정903~904 (반론 · 손해청구) 한국원자력연구원 對 전기신문	
조 정 대 상	『막대한 돈 쏟아붓고도 ‘애물단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3일자 1~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관이 듀픽, 초임계경수로 등 연구하는 것마다 실패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피신청인 사과, 부제소)
이 행 결 과	『원자력 연구 폐해’ 관련 한국원자력연구원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일자 1면)
2013서울조정905 (정정청구) ○○○○○사업협동조합 對 전자신문 인터넷	
조 정 대 상	『동반성장 역행하는 ○○○ 협동조합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이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움직임에 역행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그린데일리면의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사업협동조합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7일자)
2013경기조정69~70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하남시 對 하남신문, 인터넷 하남신문	
조 정 대 상	『부채비율 전국2위 하남시』 제하의 기사 (하남신문 2013년 6월 6일자 7면, 인터넷 하남신문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하남시가 부채비율 전국 2위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하남신문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칼럼 · 인터뷰 섹션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부채비율 전국2위 하남시’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하남신문 2013년 7월 4일자 7면, 인터넷 하남신문 6월 25일자)
2013서울조정906~907 (정정 · 반론청구) 유○○ 對 KBS-1TV	
조 정 대 상	취재파일K 프로그램 『○○마을의 맨얼굴』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7일자 22:50)
신청인주장	주민자치단체 회장인 신청인이 거액을 받고 외지인들을 마을 가옥의 세대주로 둔갑시켜 주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908~912 (매체별 손배청구) 조○○ 對 국민일보 ⁽⁹⁰⁸⁾ , 쿠키뉴스 ^(909, 908과 병합) , 네이버 ⁽⁹¹⁰⁾ , 네이트 ⁽⁹¹¹⁾ , 다음 ⁽⁹¹²⁾	
조 정 대 상	• 국민일보 : 『쏟아지는 복지정책 수발하느라 현장방문 엄두 못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0일자 10면) • 쿠키뉴스·네이버·네이트·다음 : 『위기의 사회복지공무원 “쏟아지는 복지정책 수발하느라 현장방문 엄두 못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9일자)
신청인주장	사회복지공무원의 심층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교수인 신청인의 논문 내용을 동의 없이 게재하고 실명을 적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국민일보·쿠키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쿠키뉴스 기사수정, 부제소) • 네이버·네이트·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약속) ※ 기타 합의사항 • 국민일보·쿠키뉴스 : 기사수정 내용을 포털에 전송하여 포털기사에도 반영되도록 함
2013서울조정913 (손배청구) 배○○ 對 꼴통뉴스	
조 정 대 상	『[단독] 도로교통공단, 감정사자격시험 문제로 책 장사 의혹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기획·출판하고, 도로교통공단 교육처의 직원이 함께 편찬한 수험서가 일반인에 비 공개된 문제를 수록하고 있는 등 문제점을 안고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경기조정71~72 (정정·손배청구) 김○○ 對 아시아뉴스통신	
조 정 대 상	『나○○교육감, “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현장지도』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7일자)
신청인주장	교사인 신청인이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교육감에게 존경심을 표하고자 허리를 굽혀 악수를 청했다는 내용을 사진과 함께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유감표명, 기사삭제,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조정대상기사 및 신청인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향후 제3자가 재보도 했을 경우 삭제요청을 하도록 함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인천 ○○초, ○○형 교육감 현장지도”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일자)
2013서울조정914 (반론청구) 한국철도시설공단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철도시설공단 노사관계 파탄 이유는?』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이사장의 독단 경영과 자질 부족으로 신청인 공단의 노사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 ‘철도시설공단 노사관계 파탄 이유는?’ 기사에 대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8일자)

2013서울조정915 (정정청구) 박원순 對 신동아	
조 정 대 상	『특급호텔보다 비싼 성북동 가구박물관에서 ‘작은 결혼식’?』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호 표지, 목차, 82~8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아들이 특급호텔보다 비싼 곳에서 호화롭게 결혼식을 치르면서 가격인하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호 91면)
2013서울조정916~917 (정정 · 손해청구) 이○○ 對 e파이낸셜신문	
조 정 대 상	(1) 『“○○ ○○병원” 의료과실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0일자) (2) 『“○○ ○○병원”에 무슨 일이 있길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과실 사고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정정보도문을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 되도록 함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이슈면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 ○○병원 의료과실 의혹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0일자)
2013서울조정918~919 (정정 · 손해청구) 강○○ 외 179인 對 채널A	
조 정 대 상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 『현장고발 - 진짜 영광굴비』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5일자 23:00)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굴비를 해풍에 자연 건조하지 않고 소금을 쳐서 냉동하는 방식으로 가공해 보통 참조기보다 7.5배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920 (손배청구) 박○○ 對 NSP통신	
조 정 대 상	『불법 쌍꺼풀 눈썹문신 시술 피부미용업소 20곳 ‘적발’』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9일자)
신청인주장	불법피부미용시술 관련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 가게의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100만 원 지급)

2013서울조정921~922 (정정·손배청구) 성남시청 對 경제투데이	
조 정 대 상	『[기자수첩] ‘괴력난신’ 성남시의 LH 습격사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1일자)
신청인주장	성남시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조폭수준의 공권력 행사라고 보도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성남시 LH 습격사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8일자)
2013광주조정20 (정정청구) 함평군 對 무등일보	
조 정 대 상	『“○○○산단 추진 재검토하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7일자 11면)
신청인주장	함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사업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조성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 하라고 통보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산단 추진 재검토하라”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일자 11면)
2013광주조정21 (정정청구) 광주○○○○고등학교 對 KBC-TV	
조 정 대 상	시사터치! 따따부따 프로그램 『자격증 없는 교사』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24일자 19:10)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에서 무자격 교사가 학생을 지도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 2013년 7월 11일까지 <시사터치! 따따부따>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되, 방송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 화면으로 함
이 행 결 과	시사터치! 따따부따 프로그램 『광주○○○○고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10일자 19:10)
2013서울조정923~924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재)○○문화재단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세금 먹는 하마, ○○ 예술의전당』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9일자 19:55) • iMBC : 『세금 먹는 하마, ○○ 예술의전당』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운영하는 예술의전당 재정 적자가 30여억 원에 달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925~926 (매체별 정정청구) 한국보청기협회 對 SBS CNBC-TV, 인터넷 SBS CNBC	
조 정 대 상	• SBS CNBC-TV : SBS CNBC 뉴스 프로그램 『‘소셜벤처’ 딜○○○, 34만원 보청기 어떻게 가능했나?』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14일자 19:00) • 인터넷 SBS CNBC : 『‘소셜벤처’ 딜○○○, 34만원 보청기 어떻게 가능했나?』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사회적 기업인 딜○○○가 최초로 보청기 보험을 만들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 및 기사에서 신청인이 특정되지 않았고, 신청인과 조정대상보도 및 기사 간에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3대전조정54~57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병합) 오○○ 對 대전투데이, 인터넷 대전투데이	
조 정 대 상	• 대전투데이 : (1) 『홍성군의원 이권개입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0일자 1면) (2) 『홍성군의원님 왜 이러시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1일자 오피니언면) (3) 『홍성군의원 관급 공사 개입 정황 포착』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3일자 1면) (4) 『군민은 안보이고 돈만 보이는 홍성군의원』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4일자 기자수첩면) • 인터넷 대전투데이 : (1) 『홍성군의원 이권개입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9일자) (2) 『홍성군의원님 왜 이러시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0일자) (3) 『홍성군의원 관급 공사 개입 정황 포착』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2일자) (4) 『군민은 안보이고 돈만 보이는홍성군의원』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3일자)
신청인주장	홍성군 의원인 신청인이 관급 공사에 개입하고 담당 공무원을 압박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대전투데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종합 뉴스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도록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홍성군 의원 이권개입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대전투데이 2013년 6월 28일자 2면, 인터넷 대전투데이 6월 27일자)
2013대전조정58~59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김○○ 對 태안미래신문, i태안미래	
조 정 대 상	(1) 『○○ 특산물판매장 불법 ‘수두룩’』 제하의 기사 (태안미래신문 2013년 5월 30일자 1면, i태안미래 5월 29일자) (2) 『해녀법인 보조금 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 (태안미래신문 2013년 6월 6일자 사회경제면, i태안미래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특산물판매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해녀법인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i태안미래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하단뿐만 아니라 『화력, 영수증 한 장 받고 3억여 원 지급』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9일자)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하고 이 기사에 대해서도 파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함 ※ 이행방법 : [i태안미래에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인물 · 사회 섹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태안미래신문 : 『○○ 특산물 판매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4일자 2면) • i태안미래 : 『[○○ 특산물 판매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일자)

2013경기조정73~76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對 경기일보, 인터넷 경기일보	
조 정 대 상	『사회복지공무원 증원·보호장치 있어야』 제하의 기사 (경기일보 2013년 6월 12일자 23면, 인터넷 경기일보 6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사회복지공무원의 심층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교수인 신청인의 논문 내용을 동의 없이 게재하고 실명을 적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경기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5일자 23면) - 인터넷 경기일보 : 『[알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5일자)
2013경기조정77~80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조○○ 對 인천일보, 인터넷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아파트 聯 전·현직 회장 區 보조금 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3년 6월 6일자 15면, 인터넷 인천일보 6월 6일자)
신청인주장	아파트연합회 전 회장인 신청인이 해당 구청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경기조정81~84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1. 박○○, 2. 김○○ 對 미디어와이, 뉴스1 코리아	
조 정 대 상	- 미디어와이 : 『화성에서 수십억대 아파트 하자보수금 분쟁』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6일자) - 뉴스1 코리아 : 『화성시 아파트, 수십억대 ‘하자보수금’ 어디로 갔나』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전·현직 대표인 신청인들에게 횡령혐의 등이 있다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을 확인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미디어와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뉴스1 코리아 : 조정불성립결정 ※ 이행방법 • 미디어와이 : [반론보도] 홈페이지 종합뉴스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미디어와이 : 『[화성시 ○○동 ○○1차 아파트 하자보수금] 관련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일자)
2013경남조정32 (반론청구) 황○○ 對 함안신문	
조 정 대 상	『주택단지 공사현장 소음으로 인근 돼지 100여 마리 폐사』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0일자 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건설 중인 주택단지 현장소음으로 인해 인근 농장의 돼지 100여 마리가 폐사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주택단지 공사현장 소음으로 인근 돼지 100여마리 폐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0일자 5면)

2013서울조정927~928, 948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병합) 이○○ 對 뉴스1 코리아
조 정 대 상	『현직 경찰관과 민원인 ‘먹살시비’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5일자)
신청인주장	파출소장인 신청인이 수렵용 총기 수령과정에서 민원인의 먹살을 잡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전국면의 주요 뉴스목록 상단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현직 경찰관 민원인 먹살시비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3일자)
2013광주조정22~25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병합) (주)○○○○○○○○○ 對 광주타임즈, 인터넷 광주타임즈
조 정 대 상	- 광주타임즈 : (1) 『진도군, 태양광발전 사업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7일자 7면) (2) 『‘특혜논란’ 진도 태양광사업 전면중단』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일자 9면) (3) 『특정업체, 특혜 위한 ‘짜 맞추기 행정’ 비난』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2일자 8면) (4) 『진도군, 멋대로 행정 “심하다”』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9일자 1면) (5) 『진도 태양광 발전사업 전면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0일자 9면) - 인터넷 광주타임즈 : (1) 『진도군, 태양광발전 사업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6일자) (2) 『‘특혜논란’ 진도 태양광사업 전면중단』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일자) (3) 『특정업체, 특혜 위한 ‘짜 맞추기 행정’ 비난』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1일자) (4) 『멋대로 행정 “심하다” 비난... ‘허위 공문서, 특정회사 결탁’ 수사 시급』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8일자) (5) 『진도 태양광 발전사업 전면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9일자)
신청인주장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태양광발전사업 시행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유명업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손해청구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 이행방법 : [인터넷 광주타임즈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진도군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광주타임즈 2013년 7월 5일자 4면, 인터넷 광주타임즈 7월 4일자)

2013광주조정26~29	(매체별 조정·손배청구) (병합) (주)○○○○○○○ 對 주간진도신문, 인터넷 주간진도신문
조 정 대 상	• 주간진도신문 : (1) 『태양광발전 및 LED 조명사업... 특혜이자 ‘폭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9일자 1면) (2) 『태양광 발전 및 LED조명사업에 대한 박○○의원 인터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9일자 8면) (3) 『태양광 사업, 진도군의 이상한 행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7일자 1면) (4) 『태양광 사업, 언론플레이 시작?』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7일자 2면) (5) 『[기획] 민선5기, 군정 막장 드라마 제1화 - 태양광사업편』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7일자 3면) (6) 『막장드라마 기사화... 이군수 낙선운동이다?』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7일자 6면) • 인터넷 주간진도신문 : (1) 『태양광발전 및 LED 조명사업... 특혜이자 ‘폭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9일자) (2) 『태양광 사업, 진도군의 이상한 행보』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일자) (3) 『태양광 사업, 본격적인 언론플레이 시작되나?』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1일자) (4) 『[기획] 민선5기, 군정 막장 드라마 제1화 - 태양광사업편』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0일자) (5) 『막장드라마 기사화... 이군수 낙선운동이다?』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4일자) (6) 『태양광 협정 “세상에 이런 일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진도군이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시행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931	(정정청구) 주식회사 ○○종합건설 對 KBS-1TV
조 정 대 상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프로그램 『거실이 흰히 보이는데 건축허가 문제없다고요?』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18일자 18:55)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4개 동만 짓기로 아파트설계허가를 받았음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1개 동을 추가로 건축해 80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조정대상 보도 중에 사용된 관련 화면을 방송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프로그램 『아파트 사생활침해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16일자 18:55)
2013서울조정932	(손배청구) 신○○ 對 인터넷 경기북부시민신문
조 정 대 상	(1) 『‘고삐 풀린’ 공무원들의 성추행 사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8일자) (2) 『‘나사 풀린’ 양주시 공무원, 여직원 폭행』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성추행 피해자인 신청인의 신원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유감표명, 손해배상 2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서울조정933, 949~950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 주식회사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조 정 대 상	『탄산수 제조기 소다○○○ 행세 ‘소다○○○○’ 주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수입 · 판매하는 탄산수 제조기가 타 업체제품의 모방품이며 정체불명의 탄산으로 소비자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934~937, 1200~1206	변○○ 對 한겨레 ^(934-935 정정 · 손배청구) , 인터넷 한겨레 ^(936-937 정정 · 손배청구, 934-935와 병합) , 노컷뉴스 ^(1200 정정청구) , 뉴스엔 ^(1201 정정청구) , 인터넷 스포츠조선 ^(1202 정정청구) , CNBNEWS ^(1203 정정청구) , 익스포츠뉴스 ^(1204 정정청구) , 오에스이엔(OSEN) ^(1205 정정청구) , 조선닷컴 ^(1206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 『○○○과 아무개』의 경우』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3년 4월 22일자 30면, 인터넷 한겨레 4월 21일자) • 노컷뉴스 : 『BBC, ○○○ 초청 ‘퍼포먼스’ 전면 취소』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9일자) • 뉴스엔 : 『[단독] ○○○, 英 BBC 섭외 ‘거지여왕 퍼포먼스’ 전면 취소』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8일자) • 인터넷 스포츠조선 : 『○○○, 英 BBC 섭외 전면취소... “父 논란 때문”』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8일자) • CNBNEWS : 『○○○, BBC 초청 ‘거지여왕 퍼포먼스’ 부친논란에...』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8일자) • 익스포츠뉴스 : 『○○○, 친부 박○○ 논란부터 BBC 행사 취소까지... ‘힘든 한 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9일자) • 오에스이엔(OSEN) : 『○○○, BBC 방송취소? “드릴 말씀 없다” 당혹』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8일자) • 조선닷컴 : 『○○○의 ‘거지여왕’ 퍼포먼스 초청... “英 BBC ‘전면취소’”』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8일자)
신청인주장	모 방송인이 부친의 생존을 부인한 데 대해 신청인은 부친 생존설을 주장했고, 이로 인해 일부 누리꾼들이 해당 방송인의 초청 행사를 열고자 했던 BBC에 관련된 항의 이메일을 보내 그 행사를 무산시켰다고 보도했으나 BBC는 해당 방송인을 초청한 바 없다.
처 리 결 과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조건부 정정보도, 부제소) • 노컷뉴스 · 뉴스엔 · 인터넷 스포츠조선 · CNBNEWS · 익스포츠뉴스 · 오에스이엔(OSEN) · 조선닷컴 :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이행방법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오피니언 사설 · 칼럼면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조건부 정정보도] 추가취재를 통해 조정대상기사에 언급된 ‘BBC ○○○ 초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한겨레 및 인터넷 한겨레에 이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2013년 7월 31일까지 게재하도록 함 (단, 2013년 7월 31일 이후에 밝혀질 경우, 사실관계가 밝혀진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함)

이 행 결 과	• 한겨레 : (1) 『“○○○과 아무개 의 경우’ 칼럼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33면), (2)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31일자 2면) • 인터넷 한겨레 : 『[반론] ‘○○○과 아무개 의 경우’ 칼럼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2)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30일자) • 노컷뉴스 : 『“BBC, ○○○ 초청 ‘퍼포먼스’ 전면 취소”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4일자) • 뉴스엔 : 『○○○, BBC로부터 행사초청 받은 사실 없는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4일자) • 인터넷 스포츠조선 : 『○○○, BBC로부터 행사초청 받은 사실 없는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4일자) • CNBNEWS : 『“○○○, 비비시(BBC)로부터 행사초청을 받는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4일자) • 엑스포츠뉴스 : 『[정정] “○○○, 친부 박○○ 논란부터 BBC 행사 취소까지... ‘힘든 한 주’”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6일자) • 오에스이엔(OSEN) : 『○○○, BBC로부터 행사초청 받은 사실 없었다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4일자) • 조선닷컴 : 『○○○, BBC로부터 행사초청 받은 사실 없는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4일자)

2013서울조정938~943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對 뉴스1 코리아 ^(938~939) , KNS뉴스통신 ^(940~941)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942~943)
조 정 대 상	• 뉴스1 코리아 : (1) 『인천시, ‘○○복지회 파행 운영 방치’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2) 『“○○사회복지법인 비리 의혹 기자회견”』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KNS뉴스통신 : 『“인천 H복지법인 불법 매매 의혹’ 제기... 인천시, 알고도 묵인했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인천시, ‘○○복지회 파행 운영 방치’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사회복지법인이 각종 비리와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뉴스1 코리아·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각 취하 (사유 : 인터뷰기사 게재) • KNS뉴스통신 : 취하 (사유 : 인터뷰기사 및 사과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뉴스1 코리아·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복지회 운영 불법 없어... 거짓 민원에 큰 피해”』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8일자) • KNS뉴스통신 : 『○○복지회, 정상적인 대표자 승계 불법 법인 매매로 호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1일자)

2013서울조정944 (정정청구) 경북공관리소 對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난장판 된 경북공의 밤... “야간개장 상설화 · 관람객 제한” 목소리』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7일자 20면)
신청인주장	경북공 야간개장 행사 중에 일부 관람객이 근정전 앞까지 돛자리를 깔고 술을 마시며 삼겹살을 구워먹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난장판 된 경북공의 밤” 보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5일자 23면)
2013서울조정945 (정정청구) ○○제약 주식회사 對 인터넷 스페셜경제	
조 정 대 상	『최○○ ○○제약 회장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는 헛구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제약회사가 의약품 연구개발은 소홀히 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음료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946 (정정청구) 오○○ 외 11인 對 이뉴스투데이	
조 정 대 상	『보험개발원 ‘AOS’ 독점체제 무너지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신청인주장	자동차 관련 연합회 이사장인 신청인들이 간담회 명분으로 제주도에 모여 연합회장의 회장추대나 위로금 전달 등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자동차면 기사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자동차○○○○연합회 제주간담회”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9일자)
2013대전조정60~61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태안군○○기계연합회 對 태안신문, 인터넷 태안신문	
조 정 대 상	『태안군○○기계협회, 표준 약관 준수 요구하며 집단행동 돌입』 제하의 기사 (태안신문 2013년 6월 6일자 2면, 인터넷 태안신문 6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명분 없는 집회를 열어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태안신문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전체기사 섹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7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태안군○○기계협회, 표준 약관 준수 요구하며 집단행동 돌입”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태안신문 2013년 7월 11일자 2면, 인터넷 태안신문 7월 5일자)

2013광주조정30	(정정청구) 1. 윤○○, 2. 윤△△ 對 목포KBS-1TV
조 정 대 상	KBS 뉴스9 프로그램 『다산 정약용 기념전시관 공사 본격화』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15일자 21:30)
신청인주장	강진 다산유물전시관의 건축양식을 둘러싸고 마을 주민 대표와 강진군이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 <KBS 뉴스9>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함
이 행 결 과	KBS 뉴스9 프로그램 『다산 정약용 기념전시관 공사 본격화』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22일자 21:30)

2013전북조정20~21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여객자동차(주) 對 전주매일, 인터넷 전주매일
조 정 대 상	- 전주매일 : 『자치단체 유가보조금 ‘버스회사 주머니 속으로’』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7일자 9면) - 인터넷 전주매일 : 『자치단체의 유가보조금, 버스회사 임원들 출퇴근 용』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유가보조금을 임원들의 개인 출·퇴근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전주매일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전주매일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보도에 대한 반론』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5일자 9면) - 인터넷 전주매일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0일자)

2013서울조정951~952	(정정·손배청구) 이○○ 對 YTN 사이언스TV
조 정 대 상	김생민의 프로파일 프로그램 『굿을 둘러싼 진실공방』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21일자 00:00, 6월 23일자 02:00)
신청인주장	무속인인 신청인의 주거지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고 신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손해배상 2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향후 조정대상보도를 재방송하지 않고, 포털 사이트나 YTN 사이언스TV가 운영하는 유튜브 사이트에서도 해당 영상을 삭제함

2013서울조정953~970, 1103~1122	김○○ 對 연합뉴스^(953-954 정정·손배청구), 인터넷 서울신문^(955-956 정정·손배청구), SBS^(957-958 정정·손배청구), 노컷뉴스^(959-960 정정·손배청구), 동아닷컴^(961-962 정정·손배청구), 인터넷 MBN^(963-964 정정·손배청구), EBS 뉴스^(965-966 정정·손배청구), SSTV^(967-968 정정·손배청구), 뉴데일리^(969-970 정정·손배청구), 인터넷 YTN^(1103 정정청구), 뉴스시^(1104 정정청구), 데일리안^(1105 정정청구), 뉴스핌^(1106 정정청구), 뉴스엔^(1107 정정청구), 이투데이^(1108 정정청구), 오마이뉴스^(1109 정정청구),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1110 정정청구), 아시아경제닷컴^(1111 정정청구), 스포츠 서울닷컴^(1112 정정청구), 엑스포츠뉴스^(1113 정정청구), 민중의소리^(1114 정정청구), 인터넷 문화일보^(1115 정정청구), 세계닷컴^(1116 정정청구), 인터넷 헤럴드경제^(1117 정정청구), wow한국경제TV^(1118 정정청구), 한경닷컴^(1119 정정청구), 컨슈머타임스^(1120 정정청구), 폴리뉴스^(1121 정정청구), 뉴스한국닷컴^(1122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1)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 4명…원장도 영장』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일자), (2) 『아동학대 부산 어린이집 원장·교사 영장 청구』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일자) • 인터넷 서울신문 : 『[동영상] 때리고…던지고… 부산 어린이집 폭행사건 CCTV 보니』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 SBS : (1)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원장도 폭행” 진술확보』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8일자), (2) 『아동학대 부산 어린이집 원장·교사 영장 청구』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일자) • 노컷뉴스 : (1)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SNS고발부터 불구속 입건까지』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2) 『“영아 폭행” 부산 어린이집 교사 구속, 원장은 영장 기각』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7일자) • 동아닷컴 : (1) 『부산 어린이집 교사, 17개월 된 아이 피멍 들도록…』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2) “원장에게 맞은 원생 더 있다”…부산 어린이집 폭행 수사확대』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7일자) • 인터넷 MBN : 『“맞은 아이들 더 있다”…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수사 확대』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7일자) • EBS 뉴스 : 『부산 어린이집 교사가 17개월 아기 폭행』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 SSTV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생후 17개월 아이 때려 ‘불구속 입건’』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 뉴데일리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여교사 둘이서 생후 17개월된 여아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5일자) • 인터넷 YTN : (1) 『부산 어린이집 폭행사건 원장 폭행 여부 수사』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8일자), (2) 『“부산 어린이집 폭행” 원장, 교사 영장 신청』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일자) • 뉴스시 : (1) 『17개월 여아 폭행 부산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3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5일자) (2) 『“맞은 아이 더 있다”…부산 어린이집 폭행 수사 확대』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7일자) (3) 『“부산 어린이집 원장도 원아 학대” 학부모들 탄원서』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일자) (4) 『아동학대 부산 어린이집 원장·교사 영장』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일자) • 데일리안 : (1) 『부산 어린이집 폭행에 ‘이런 나라에서 아이 낳아 기르라고?’』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2) 『천인공노 부산 어린이집 원장 알고보니 상습폭행?』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7일자) • 뉴스핌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수사 확대…“원장 때리는 것 봤다”』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7일자) • 뉴스엔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가장 연약한 아기를 어떻게’ 공분』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5일자) • 이투데이 : (1) 『부산 어린이집 폭행, 17개월 아기 등에 피멍… 네티즌 “내 아이 이제 어디에 맡기나”』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5일자) (2) 『부산 어린이집 폭행, “맞은 원생 더 있다”…경찰수사 확대』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7일자) (3) 『아동학대 부산 어린이집 교사 구속』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8일자)

조 정 대 상	• 오마이뉴스 : 『“때리고, 꼬집고...” 부산 어린이집에선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일자)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수사 확대...“원장도 때렸다”』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7일자) • 아시아경제닷컴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원장도 때렸다” 진술확보』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8일자) • 스포츠서울닷컴 : 『부산 어린이집 폭행, 교사가 17개월 여자 자주 운다고 폭행』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5일자) • 엑스포츠뉴스 : 『부산 어린이집 폭행, CCTV 확보에 여교사 징징대 짜증나서 때렸다』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 민중의소리 : (1) 『경찰 “부산 어린이집 원장도 때렸다” 진술 확보』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8일자), (2) 『부산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영상 신청.. 피해자 4명으로』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일자) • 인터넷 문화일보 : 『부산 어린이집 아동 학대 원장外 다른 교사도 가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일자) • 세계닷컴 : (1)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원장도 폭행 가담’ 충격』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8일자), (2) 『부산 어린이집 피해자 아동 4명으로 늘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일자) • 인터넷 헤럴드경제 : (1) 『부산 어린이집 폭행사건, “17개월 여아를 무참히...”』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5일자), (2) 『부산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원장도 폭행” 진술확보』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8일자) • wow한국경제TV : (1) 『부산 어린이집 폭행, 피해아동 아빠 “짐승만도 못한...”』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2) 『부산 어린이집 폭행 ‘충격’... “우리 아이는 괜찮나?”』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 한경닷컴 : 『부산 어린이집 교사들, 17개월 여아 폭행 ‘충격’』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5일자) • 컨슈머타임스 : 『부산 어린이집 폭행, 교사가 17개월 아기를 ‘피멍’ 들도록...』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 폴리뉴스 : (1) 『부산 어린이집 교사 ‘17개월 여아’ 폭행 물의』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5일자), (2) 『부산 어린이집 폭행, 피해 어린이 아빠 “짐승만도 못하다”』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 뉴스한국닷컴 : 『부산 어린이집 폭행, CCTV 화면 봤더니 ‘충격’』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5일자)
신청인주장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한 사건이 ‘부산 어린이집’ 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신청인의 어린이집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연합뉴스 · 인터넷 서울신문 · SBSi · 노컷뉴스 · 동아닷컴 · 인터넷 MBN · EBS 뉴스 · SSTV · 뉴데일리 : 각 조정성립 (내용 : 알림기사,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인터넷 YTN · 뉴시스 · 데일리안 · 뉴스핌 · 뉴스엔 · 이투데이 · 오마이뉴스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아시아경제닷컴 · 스포츠서울닷컴 · 엑스포츠뉴스 · 민중의소리 · 인터넷 문화일보 · 세계닷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wow한국경제TV · 한경닷컴 · 컨슈머타임스 · 폴리뉴스 · 뉴스한국닷컴 : 각 취하 (알림기사 게재) ※ 이행방법 • 연합뉴스 · 인터넷 서울신문 · SBSi · 노컷뉴스 · 동아닷컴 · 인터넷 MBN · EBS 뉴스 · SSTV · 뉴데일리 : [알림기사] 홈페이지의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면에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로 48시간 이상 게재함

이 행 결 과	• 연합뉴스 : 『〈알림〉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3일자) • 인터넷 서울신문 : 『[부산 어린이집 폭행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 SBSi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 노컷뉴스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 동아닷컴 : 『[조정합의서]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 인터넷 MBN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 EBS 뉴스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 SSTV : 『〈알림〉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 뉴데일리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 인터넷 YTN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일자) • 뉴시스 : 『[알림] ‘부산어린이집 폭행 사건 수사’ 기사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4일자) • 데일리안 : 『[부산 어린이집 폭행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9일자) • 뉴스핌 : 『[부산 어린이집 폭행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4일자) • 뉴스엔 : 『‘부산 어린이집 폭행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3일자) • 이투데이 : 『[알림] ‘부산 어린이집 폭행사건’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9일자) • 오마이뉴스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3일자)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3일자) • 아시아경제닷컴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4일자) • 스포츠서울닷컴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4일자) • 엑스포츠뉴스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 민중의소리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30일자) • 인터넷 문화일보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보도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6일자) • 세계닷컴 : 『‘부산 어린이집 폭행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 인터넷 헤럴드경제 : 『[부산 어린이집 폭행사건] 정정 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 wow한국경제TV : 『[부산 어린이집 폭행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 한경닷컴 : 『[알림]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30일자) • 컨슈머타임스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4일자) • 폴리뉴스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4일자) • 뉴스한국닷컴 : 『[부산 어린이집 폭행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4일자)

2013서울조정971~974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서○○ 對 관악뉴스, 인터넷 관악뉴스	
조 정 대 상	• 관악뉴스 : (1) 『관악 ○○○○ 아파트 內 분쟁 ‘뜨거운 감자’ 대두』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8일자 1면), (2) 『아파트 비리 문제 서울시 ‘감사철회’ 내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8일자 7면) • 인터넷 관악뉴스 : 『관악 ○○○○ 아파트 內 분쟁, ‘뜨거운 감자’ 대두』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아파트 전 부녀회장인 신청인이 회장 연임을 위해 회칙을 마음대로 바꾸고 회계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이 행 결 과	『관악 ○○○○ 아파트 분쟁의 실체, 부녀회장 D씨 “피 토하는 심정으로 진실을 밝힙니다”』 제하의 기사 (관악뉴스 2013년 7월 31일자 1~2면, 인터넷 관악뉴스 7월 23일자)

2013서울조정975~976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창원시청 對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닷컴	
조 정 대 상	• 스포츠서울 : 『창원시 ‘유령보고서’로 진해 선정』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4일자 3면) • 스포츠서울닷컴 : 『[단독] 창원시, 미완성 재조사로 신축야구장 선정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4일자)
신청인주장	통합창원시가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재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야구구단인 NC의 신축구장 부지를 선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스포츠서울닷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을 게재함
이 행 결 과	• 스포츠서울 : 『“창원시 ‘유령보고서’로 진해 선정”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3면) • 스포츠서울닷컴 : 『[“창원시 ‘유령보고서’로 진해 선정”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7일자)
2013서울조정977 (정정청구) ○○○○○운전전문학원연합회 對 KBS-1TV	
조 정 대 상	취재파일K 프로그램 『합격을 90%의 비밀』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14일자 22:50)
신청인주장	합격률이 높은 운전전문학원의 도로주행시험에 부정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978 (손배청구) 최민희 對 IPF 국제방송	
조 정 대 상	『민주당 여자의원 최민희에 항의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4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에게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979 (손배청구) 1. 김○○, 2. 김△△ 對 TV조선	
조 정 대 상	TV조선 뉴스 7 프로그램 『출소 20일 만에 또 소매치기』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19일자 07:30)
신청인주장	범죄관련 보도에 신청인이 운영하는 매장 및 직원의 얼굴이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신청인별 각 손해배상 50만 원,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경기조정85~96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對 기호일보 ^(85~86) , 인터넷 기호일보 ^(87~88) , 수도권지역뉴스 ^(89~90) , 인천뉴스 ^(91~92) , 한국기자연대 ^(93~94) , 연에스포츠포츠방송 ^(95~96)
조 정 대 상	• 기호일보·인터넷 기호일보 : 『인천시 불법적인 사회복지법인 매매 눈감아 줬다?』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3년 6월 5일자 3면, 인터넷 기호일보 6월 5일자) • 수도권지역뉴스 :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온갖 비리에 휘말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인천뉴스 : 『○○복지회 파행, 인천시 묵인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한국기자연대 : 『○○복지회 불법매매 파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연에스포츠포츠방송 : 『“○○사회복지법인 비리의혹 기자회견”』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사회복지법인이 각종 비리와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기호일보·인터넷 기호일보 :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약속) • 수도권지역뉴스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인천뉴스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한국기자연대·연에스포츠포츠방송 : 각 취하 (사유 : 인터뷰기사 게재)
이 행 결 과	• 기호일보·인터넷 기호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3년 7월 15일자 2면, 인터넷 기호일보 7월 14일자) • 수도권지역뉴스 : 『건설사 기자회견에 대한 ○○복지법인 입장 표명』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1일자) • 인천뉴스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 한국기자연대 : 『○○복지회 법리 논쟁 하자 없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0일자) • 연에스포츠포츠방송 : 『“○○복지회 법리 논쟁 하자 없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0일자)
2013서울조정980~981	(정정·손배청구) (사)○○주유소협회 對 e파이낸셜신문
조 정 대 상	『정부 보조금에 눈먼 ‘○○주유소협회’』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하려했고 이 과정에서 폐업 주유소 통계 및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주유소협회’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2013강원조정12~15	(매체별 반론·손배청구) (병합) 김○○ 외 3인 對 강원도민일보,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조 정 대 상	『“부동산 사기 부실수사… 경찰 징계해야”』 제하의 기사 (강원도민일보 2013년 6월 12일자 12면,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6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부동산 사기로 거액을 강탈했으나 경찰의 부실수사로 무혐의 송치됐다고 잘못 보도 하면서 신청인들의 성명을 그대로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손해배상 4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인터넷 강원도민일보에 신청인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향후 제3자에 의해 재보도 되었을 경우 삭제요청을 하도록 함 ※ 이행방법 : [인터넷 강원도민일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지역-평창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 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 강원도민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5일자 12면) •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5일자)
2013서울조정982	(반론청구) ○○상조○○○(주) 對 상조뉴스
조 정 대 상	『○○상조공제조합, 부산 소재 ○○○ 폐업 고객 피해보상 돌입』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1일자)
신청인주장	모 상조회사의 기존 회원들이 해당 법인을 인수한 신청인 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상조종합면의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주)○○○ 폐업 관련 ○○상조○○○(주)의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8일자)
2013서울조정983	(손배청구) 김○○ 외 2인 對 채널A
조 정 대 상	관찰카메라 24시간 프로그램 『하룻밤의 힐링, ○○ 캠핑장 24시간』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8일자 19:00)
신청인주장	캠핑장의 24시를 관찰하여 그 안에서의 일상을 담아 보도하면서 신청인 가족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해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인터넷 채널A 기사수정, 손해배상 3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각 포털에 신청인들이 나온 부분이 삭제된 보도를 다시 전송하도록 함 ※ 이행방법 : [인터넷 채널A 기사수정] 2013년 7월 19일까지 해당 조정대상보도 동영상 중 신청인들이 나온 부분을 삭제함

2013서울조정984		(반론청구) (사)한국○○○○협회 對 미디어스
조 정 대 상	『“○○○ 부수조작 의혹 없다면 자료 공개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2010년 종편방송사업자 신청당시 일부 신문사의 발행부수보고를 받지 않는 등 부수 조작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협회 부수조작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2013충북조정28~29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보은군청 對 보은신문, 인터넷 보은신문
조 정 대 상	『보은군의 고집스런 ‘성과 부풀리기’』 제하의 기사 (보은신문 2013년 5월 9일자 11면, 인터넷 보은신문 5월 9일자)	
신청인주장	보은군이 미국의 한 환경단체의 방문 체험단 규모를 부풀리는 등 성과를 과장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보은신문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종합면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보은군의 고집스런 성과 부풀리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보은신문 2013년 7월 25일자 11면, 인터넷 보은신문 7월 25일자)	
2013충북조정30~31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주식회사 ○○○○ 對 보은사람들, 인터넷 보은사람들
조 정 대 상	『보안등 교체사업 몸통 있을까』 제하의 기사 (보은사람들 2013년 6월 6일자 3면, 인터넷 보은사람들 6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은군 보안등 교체사업을 낙찰 받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보은사람들에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보은사람들 : 『“보안등 교체사업 몸통 있을까”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8일자 2면)	

2013광주조정31~38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외 4인 對 광주in ^(31~32) , 인터넷 광주타임즈 ^(33~34) , 뉴스1 코리아(광주전남) ^(35~36) , 광주KBS-1TV ^(37~38)
조 정 대 상	• 광주in : 『[광주앨범업체] ‘1원 입찰’ 이어 가격담합 시도』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7일자) • 인터넷 광주타임즈 : 『광주 앨범업체 담합 해마다 ‘골머리’』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7일자) • 뉴스1 코리아(광주전남) : 『광주 앨범업체 ‘가격인상 담합’ 의혹... 공정위 신고』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6일자) • 광주KBS-1TV : KBS 뉴스 9 프로그램 『광주 초중고 졸업앨범 가격 급등... 담합 의혹』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27일자 21:00)
신청인주장	학교 앨범을 제작하는 신청인들이 가격담합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광주in · 인터넷 광주타임즈 · 뉴스1 코리아(광주전남) : ▷ 정정청구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손배청구 -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 광주KBS-1TV : 조정불성립결정 ※ 이행방법 • 광주in · 인터넷 광주타임즈 · 뉴스1 코리아(광주전남)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기 시작하여 이후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광주in : 『[반론보도문] <광주앨범업체 ‘1원’ 입찰 이어 가격담합 시도>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1일자) • 인터넷 광주타임즈 · 광주타임즈 : 『[반론보도] “광주 앨범업체 담합 해마다 골머리” 관련』 제하의 기사 (인터넷 광주타임즈 2013년 7월 14일자, 광주타임즈 7월 15일자 8면) • 뉴스1 코리아(광주전남) : 『[반론보도문] “광주 앨범업체 ‘가격인상 담합’ 의혹... 공정위 신고”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2013서울조정985~986, 1061~1062	(매체별 정정청구) 이○○ 對 동아일보 ⁽⁹⁸⁵⁾ , 동아닷컴 ^(986, 985와 병합) , 쿠키뉴스 ⁽¹⁰⁶¹⁾ , 헬스포커스뉴스 ⁽¹⁰⁶²⁾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말기암 어머니 엉터리치료 한의사... 어찌해야 하나요”』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A12면) • 동아닷컴 : 『[窓] “말기암 어머니 엉터리치료 한의사... 어찌해야 하나요”』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 쿠키뉴스 : 『“유방암 말기환자에 부항 뜨고 달군 볼트로 지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1일자) • 헬스포커스뉴스 : 『“한의사 말기유방암 치료법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9일자)
신청인주장	한의사인 신청인이 유방암 말기환자에 부항을 뜨고 달군 볼트로 지지는 등 엽기적인 치료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동아일보 · 동아닷컴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쿠키뉴스 · 헬스포커스뉴스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쿠키뉴스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 헬스포커스뉴스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동아일보 · 동아닷컴 : 『[알려왔습니다]본보 6월 20일자 A12면』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7월 19일자 A31면, 동아닷컴 7월 19일자) • 쿠키뉴스 : 『[반론보도] “유방암 말기환자에 부항뜨고 달군 볼트로 지저”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일자) • 헬스포커스뉴스 : 『[“한의사 말기유방암 치료법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일자)

2013서울조정987~988 (정정 · 손해청구) 도○○ 對 주택뉴스	
조 정 대 상	『도○○ 이사장, 외국인 A씨와 주차장 시비 취재방향』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재단 이사장인 신청인이 자택 주차장 앞 소방도로에 주차금지 푯말을 설치해서 이웃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주차를 방해하려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홈페이지 상의 권○○(신청인 배우자) 관련 제보 안내는 2013년 7월 11일 09:00까지 삭제하고, 분쟁당사자 간 대승적 화해를 위해 신청인 건에 대하여 더욱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당사자들의 입장을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함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도○○ ○○○○재단 이사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9일자)
2013부산조정42~44 김○○ 對 울산매일 ^(42~43 정정 · 손해청구) , UBC ^(44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울산매일 : (1) 『한통 우편물로 시작된 악몽... 남 일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일자 5면), (2) 『“병원비 폭탄” 억울한 시민에 검찰도 도움 손길 내밀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3일자 5면) • UBC : ubc 프라임뉴스 프로그램 『스치지도 앓았는데.. 치료비까지?』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28일자 20:15)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가해자의 자전거와 별다른 접촉 없이 넘어졌음에도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한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울산매일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UBC : 취하
이 행 결 과	• 울산매일 : 『“한통 우편물로 시작된 악몽... 남 일 아니다”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5면)
2013부산조정45~48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병합) 김○○ 對 한국기독신문, 인터넷 한국기독신문	
조 정 대 상	• 한국기독신문 : 『무혐의 판결 난 임○○ 장로, ○○교회 수습국면 들어가나』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0일자 7면) • 인터넷 한국기독신문 : 『검찰 무혐의 통보 받은 임○○ 장로, 하단교회 수습국면 들어가나』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0일자)
신청인주장	교회 당회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에 체결된 협약서가 없는데도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신청인이 협약서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989~990 (기사별 정정·손배청구) 1. ○○○○(주), 2. 권○○ 對 인터넷 일요시사	
조 정 대 상	(1) 『‘○○ 압박’ 권○○ ○○○○○○ 회장 노림수』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1일자) (2) 『‘○○ 비방’ 권○○ ○○○○○○ 회장 철퇴 사연』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3) 『‘주민생계 위협’ 권○○ ○○○○○○ 대표의 두 얼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와 국내의 한 대기업이 추진했던 리조트 합작사업의 결렬 사유와 결렬 이후의 법적 분쟁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수정, 피신청인 사과, 부제소) ※ 이행방법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기사수정] 각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을 삭제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 관련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2013서울조정991~994 (매체별 반론청구) (사)○○어린이집○○○회 對 인터넷 서울신문 ⁽⁹⁹¹⁾ , 인터넷 경향신문 ⁽⁹⁹²⁾ , 인터넷 위클리오늘 ⁽⁹⁹³⁾ , 인터넷 뉴스포스트 ⁽⁹⁹⁴⁾	
조 정 대 상	- 인터넷 서울신문 : 『[사설] 고통받는 어린이보다 원장 눈치보는 국회』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7일자) - 인터넷 경향신문 : 『어린이집 원장들 “낙선” 위협... 무릎 꿇은 의원들 법안 철회』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6일자) - 인터넷 위클리오늘 : 『어린이집 원장들 협박에 백기든 국회의원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3일자) - 인터넷 뉴스포스트 : 『어린이집 원장들의 도 넘은 횡포에 무릎 꿇은 국회』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을 발의한 의원과 보좌관을 상대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인터넷 서울신문 : 『[‘고통받는 어린이보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0일자) - 인터넷 경향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 인터넷 위클리오늘 : 『[‘어린이집 원장들 협박에 백기든 국회의원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 인터넷 뉴스포스트 : 『‘어린이집 원장들의 도 넘은 횡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2013서울조정995~996 (정정·손배청구) 권 ○ 對 매일경제	
조 정 대 상	『보물섬 명단공개』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4일자 34면)
신청인주장	‘선박왕’으로 불리는 신청인이 홍콩에 비밀계좌를 두고 재산을 은닉하다가 발각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MK뉴스에 정정보도,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정정보도문을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하며,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 게재하도록 함 ※ 이행방법 : [MK뉴스에 정정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매일경제 : 『보물섬 명단 공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6일자 26면) • MK뉴스 : 『[보물섬 명단 공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2013서울조정997~999 (정정·반론·손배청구) 정○○ 對 KBS-1TV	
조 정 대 상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침을 맞으면 가슴이 커진다? 수상한 한의원』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10일자 19:3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시술종인 한방가슴성형이 효과가 전혀 없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KBS미디어의 다시보기 코너에서 조정대상보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한방가슴성형 기술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2일자 19:30)
2013경기조정97~102, 115 김○○ 對 인터넷 경기일보 ^{(97~98, 99~100 기사별 정정·손배청구)(병합)} , 인터넷 경인일보 ^(101~102 정정·손배청구) , 인터넷 중부일보 ^(115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인터넷 경기일보 : (1) 『부산 어린이집 폭행, 아이 등에 피멍 들도록 때린 이유? “짜증 나서”』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5일자), (2) 『맞은 아이가 또 있다고? 부산 어린이집 폭행 수사 확대』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7일자) • 인터넷 경인일보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여교사 2명이 17개월 여아 피멍이 들도록 ‘충격’』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5일자) • 인터넷 중부일보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여교사 2명이 17개월 된 여아 마구 폭행…비난 봇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5일자)
신청인주장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한 사건이 ‘부산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신청인의 어린이집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인터넷 경기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알림기사, 기사삭제, 부제소) • 인터넷 경인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알림기사, 기사수정, 부제소) • 인터넷 중부일보 : 취하 (사유 : 알림기사 게재) ※ 이행방법 • 인터넷 경기일보 : [알림기사] 홈페이지 뉴스섹션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위 앞부분에 알림기사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 인터넷 경인일보 [알림기사] 홈페이지 뉴스섹션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위 앞부분에 알림기사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기사수정]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중 『부산 어린이집』을 『부산의 모 공립 어린이집』으로 정정함
이 행 결 과	• 인터넷 경기일보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6일자) • 인터넷 경인일보 : (1) 『[알림]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2) 『부산 모 공립 어린이집 폭행... 여교사 2명이 17개월 여아 피멍이 들도록 ‘충격’』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 인터넷 중부일보 : 『[알림]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2013서울조정1000	(반론청구) 사회복지법인 ○○○○집 對 경인KBS-1TV
조 정 대 상	KBS 뉴스9 프로그램 『이상한 장애인 시설』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27일자 21:00)
신청인주장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신청인 법인이 시설물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장을 부당하게 징계하는 등 각종 불법을 일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 2013년 8월 9일까지 <KBS 뉴스9> 프로그램 중 경인 뉴스 시간에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화면으로 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KBS 뉴스9 프로그램 『이상한 장애인 시설』 보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5일자 21:00)

2013서울조정1001~1002	(정정·손배청구) (사)○○○○저작권협회 對 인터넷 PD저널
조 정 대 상	『○○저작권 복수 신탁단체 도입에 대한 기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저작권 사용료를 제멋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손해배상 1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 화면 중앙 상단에 16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을 게재함
이 행 결 과	『○○저작권 복수 신탁단체 도입에 대한 기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4일자)

2013서울조정1003~1004 (정정 · 반론청구) 국회사무처 對 인터넷 일요서울	
조 정 대 상	『국회사무처 도청탐지시스템 공개경쟁입찰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사무처의 도청탐지시스템 도입과정에 특정 입찰업체와 커넥션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정치 섹션 기사 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국회사무처 도청탐지업체선정 커넥션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8일자)
2013강원조정16~17 (정정 · 손해청구) 김○○ 對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조 정 대 상	『부산 어린이집 원생 학대 “원장도 폭행”』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9일자)
신청인주장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한 사건이 ‘부산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신청인의 어린이집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알림기사 게재)
이 행 결 과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2013경남조정33~36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종합건설(주) 對 경남도민일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조 정 대 상	- 경남도민일보 : 『내집 1m 앞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8일자 1면)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 『내집 1m 앞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중이라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신축공사 중인 아파트 인근 주택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서울조정1005~1008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1. (주)문화방송, 2. 박○○ 對 미디어오늘,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 미디어오늘 : (1) 『홍비서실장 MBC기자에 후임사장 물어봤다』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0일자 2면), (2) 『김○○ 사람들, MBC 보도국 요직 차지』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9일자 2면) - 인터넷 미디어오늘 : (1) 『청와대 비서실장, MBC기자에게 후임사장 물어봤다』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4일자), (2) 『김○○ 사람들, MBC 보도국 요직 차지』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청와대 비서실장이 MBC 출입기자에게 후임 사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청와대가 MBC 사장선임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미디어오늘에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미디어오늘 : 『〈MBC 기자, 청와대 비서실장에 후임사장 의견제시〉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4일자 2면)

2013경남조정37~40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1. ○○종합건설(주), 2. ○○디엔씨(주) 對 경남도민일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조 정 대 상	- 경남도민일보 : 『내집 1m 앞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8일자 1면)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 『내집 1m 앞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중이라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축공사 중인 주상복합건물의 시행사와 시공사인 신청인 회사들이 공사장 인근 주택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건축 인허가를 받았음에도 매입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약속)
이 행 결 과	- 경남도민일보 : 『진해 ○○동 아파트시공사 “주민민원 사실과 다르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0일자 4면)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 『진해 ○○동 아파트시공사 주민민원 반박』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0일자)
2013서울조정1009~1011	(정정·반론·손배청구) ○○○○기자협회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기자협회, 기업돈 받고 세미나 갔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의 부회장이 기업의 후원을 받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에 반발해 사퇴했으며, 해당 세미나에서 기업의 후원금으로 수상스키 타기 등의 행사를 가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012~1015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김○○ 對 동아일보, 성동신문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배심원들 “허위로 보기 힘들지만 비방목적 더 커”』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6일자 12면) - 성동신문 : 『성추행 사실은 허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2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배심원단이 그녀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에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 “허위로 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동아일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성동신문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기타 합의사항 - 동아일보 : 2013년 7월 26일까지 동아닷컴의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동아일보·동아닷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7월 26일자 27면, 동아닷컴 7월 26일자) - 성동신문 : 『〈정정보도문〉 재판부 “성추행 당했다는 폭로, 거짓으로 의심 가”』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1일자 3면)

2013서울조정1016~1017 (정정 · 손해청구) 1. (주)○○○○○, 2. (주)○○ 對 SBS-TV	
조 정 대 상	SBS 8 뉴스 프로그램 『애써 개발해 냈더니... 의류업계도 ‘갑의 횡포’』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29일자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 1 회사가 대기업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세 업체에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보도 내용과 무관한 신청인 2의 의류 브랜드를 자료화면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1018~1019 (정정 · 손해청구) 신○○ 對 시사저널	
조 정 대 상	『우리 전쟁'에 미국은 팔짱 끼고 무기나 판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1일자 52~5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작성한 칼럼을 동의 없이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알림기사, 인터넷 시사저널에 알림기사, 이행강제금) ▷ 손해청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시사저널에 알림기사]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알림 기사를 6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시사저널 : 『“우리 전쟁”에 미국은 팔짱 끼고 무기나 판다?』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7일자 53면) • 인터넷 시사저널 : 『“우리 전쟁”에 미국은 팔짱끼고 무기나 판다?』 관련해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4일자)
2013서울조정1020~1021 (매체별 손해청구) 백○○ 對 tvN, 인터넷 tvN	
조 정 대 상	• tvN : 화성인 X파일 프로그램 『만능 가제트녀』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25일자 00:20) • 인터넷 tvN : 『[다시보기] 만능 가제트녀』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전화번호가 방송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022~1027 (매체별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병합) 1. 전국○○노동조합, 2. 전국○○노동조합 ○○자동차지부 對 e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 e머니투데이 : 『일자리 창출 대신 일자리 없애는 한국의 귀족노조』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4일자) • 머니투데이 : 『“증산” 막는 노조 때문에... 일자리 늘린 협력업체들 ‘고통 2배’』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4일자 5면)
신청인주장	귀족노조인 신청인 단체가 집단 이기주의를 띄고 강경투쟁을 통해 회사의 폐업을 자초하는 등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e머니투데이에 반론보도] 2013년 8월 9일 전까지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하게 홈페이지 산업면 중앙 상단에 반론보도문을 48시간 이상 게재함
이 행 결 과	• e머니투데이 : 『일자리 없애는 귀족노조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6일자) • 머니투데이 : 『“증산 막는 노조 때문에”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7일자 2면)

2013경기조정103~108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병합) ○○○○○○재건축조합 對 경인일보, 인터넷 경인일보	
조 정 대 상	• 경인일보 : (1) 『건물 명의변경 허가에 불만 60대 ○○시청서 흥기 난동』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9일자 19면), (2) 『업체 “적법 절차 거친 합법적 취득”, 조합 “절차상 문제 있다” 법적 대응』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7일자 20면) • 인터넷 경인일보 : (1) 『건물 명의변경 허가에 불만 60대 ○○시청서 흥기 난동』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9일자), (2) 『시공사 부도 ‘미완성 주상복합아파트’ 소유권 다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시청에 난입해 흥기 난동을 부렸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1차 조정심리 후 2013년 7월 24일에 경인일보와 인터넷 경인일보에 게재한 신청인 관련 반론보도문을 2013년 7월 29일 20:00까지 포털에 제공하여 인터넷 검색이 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경인일보 : 『“대주보 서류발급 실수로 투자금 수백억 날릴판”』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4일자 20면) • 인터넷 경인일보 : 『“대주보 서류발급 실수로 투자금 수백억 날릴판”』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4일자)
2013광주조정39 (손배청구) 김○○ 對 교차로신문	
조 정 대 상	『정원박람회, 시민권 부정사용 여전 ‘단속 강화’』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1일자 1면)
신청인주장	정원박람회에 입장중인 신청인을 동의 없이 촬영·보도하면서 시민권을 부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150만 원 지급)
2013서울조정1028~103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주) 對 전자신문, 전자신문 인터넷	
조 정 대 상	• 전자신문 : 『LED 공급 과잉시대... 수익성 위주로 사업구조 재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일자 3면) • 전자신문 인터넷 : 『○○전자, LED 사업 수직 계열화 포기... LED 사업 수익성 위주로 개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국내 전자회사와 일본의 모 기업이 합작하여 설립한 신청인 회사의 채산성이 낮고 업계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약속)
이 행 결 과	• 전자신문 : 『○○전자, 미래 전략 새판 ‘돈 되는 사업 역량 집중’... 합작사 대폭 정리』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2일자 면) • 전자신문 인터넷 : 『○○전자, 미래 전략 새판 ‘돈 되는 사업 역량 집중’... 합작사 대폭 정리』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2일자)

2013서울조정1032~1033 (정정 · 손해청구) 1. 조○○, 2. 이○○ 對 MBC-TV	
조 정 대 상	블라인드 테스트 180° 프로그램 『가짜부부를 찾아라』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16일자 09:15)
신청인주장	출연한 부부 중 가짜부부를 찾는 예능프로그램에서 신청인 1의 남편(신청인 2의 아버지)과 내 연녀를 진짜 부부라고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유감표명, 손해배상 2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결정사항 : iMBC 내 아래 프로그램의 다시보기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함 (1) 경제매거진M 프로그램 『문화 즐기고 돈도 벌고 즐거운 백발 청춘』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8일자 08:00) (2) TV 특종 놀라운 세상 프로그램 『황혼의 댄서, 백발의 노부부』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13일자 18:50)
이 행 결 과	블라인드 테스트 180° 프로그램 『<가짜부부를 찾아라>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18일자 09:15)
2013서울조정1034~1035 (정정 · 손해청구) 권○○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정당한 의정활동이나, 학문의 자유 침해냐?』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4일자)
신청인주장	교육부 산하 연구원 교수인 신청인이 강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1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았으며 남미 출장경비를 과다 집행하여 교육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중앙연구원 권○○ 교수’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9일자)
2013서울조정1036 (정정청구) 권○○ 對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이승만 · 박정희 독재 미화’ 뉴라이트, 역사흔들기 본격화』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대표 집필한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독재시대에 대한 학생들의 시각을 왜곡 시킬 우려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 ‘이승만 · 박정희 독재 미화’ 뉴라이트, 역사흔들기 본격화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7일자)

2013서울조정1037 (반론청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對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부산, 7급 공무원에 변호사 채용 공고, 로스쿨생들 “법조계 욕... 신상 털자”』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7일자 13면)
신청인주장	로스쿨 학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부산시 7급 공무원 채용 전형 지원자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고, 20여개의 옹호댓글이 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과 조정대상기사 간에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3부산조정49~50 (정정·손배청구) 김○○ 외 10인 對 크리스찬타임	
조 정 대 상	『예정합동 ○○○노회 김○○ 목사 등 11명 면직』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9일자 5면)
신청인주장	목사인 신청인들이 헌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노회 임원을 조직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김○○ 목사외 11명 불법 면직,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4일자 5면)
2013경기조정109, 110, 113~114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안양시 對 경기뉴스신문 ^(109, 113) , e-경기뉴스인 ^(110, 114)	
조 정 대 상	- 경기뉴스신문 : 『안양시 비리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11면) - e-경기뉴스인 : 『[긴급취재] 안양시 비리의 끝은 어디까지 인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안양시가 재활용선별장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대전조정62 (정정청구) 양○○ 對 인터넷 굿모닝충청	
조 정 대 상	『대전 모 대학 의대교수 폭군?』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일자)
신청인주장	의대 교수인 신청인이 후배 교수를 구타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사과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 및 사과보도] 홈페이지 뉴스PLUS 섹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사과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3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대전 의대교수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9일자)

2013서울조정1038~1042, 1585~1590	(매체별 조정청구) 박○○ 對 연합뉴스 ⁽¹⁰³⁸⁾ , 국민일보 ⁽¹⁰³⁹⁾ , 동아일보 ⁽¹⁰⁴⁰⁾ , 서울신문 ⁽¹⁰⁴¹⁾ , 인터넷 MBN ⁽¹⁰⁴²⁾ , 세계일보 ⁽¹⁵⁸⁵⁾ , 아시아일보 ⁽¹⁵⁸⁶⁾ , 매일경제 ⁽¹⁵⁸⁷⁾ , 일간스포츠 ⁽¹⁵⁸⁸⁾ , 노컷뉴스 ⁽¹⁵⁸⁹⁾ , 데일리안 ⁽¹⁵⁹⁰⁾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가수 ○ 때문에 성폭행당해” 거짓말 50대 약식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7일자) • 국민일보 : 『“가수 ○에 성폭행 당했다” 현수막 건 50대 벌금형』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10면) • 동아일보 : 『“○ 때문에 성폭행 당하고 노숙자 돼” 거짓말한 50대 여성 약식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A14면) • 서울신문 : 『“가수 ○ 때문에 성폭행 당했다” 거짓말한 50대女 벌금 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10면) • 인터넷 MBN : 『“가수 ○에게 성폭행 당했다” 거짓말 50대 약식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7일자) • 세계일보 : 『“가수 ○ 때문에 성폭행” 50대女 벌금 300만원』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8면) • 아시아일보 : 『“건물 임대분쟁” 가수 ○ 명예훼손 세입자 약식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4면) • 매일경제 : 『“가수 ○ 때문에 성폭행” 거짓말 50대 여성 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31면) • 일간스포츠 : 『“○ 때문에 성폭행 당했다” 현수막 명예훼손 50대 여성 벌금 300만원』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22면) • 노컷뉴스 : 『“가수 ○ 때문에 성폭행당해” 거짓말 50대女 약식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7일자) • 데일리안 : 『“가수 ○때문 성폭행 당해” 허위 주장하더니...』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7일자)
신청인주장	가수 소유의 건물에 세들어 화랑을 운영하던 신청인이 임대료를 못내 쫓겨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해당 가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연합뉴스·국민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 : 각 조정불성립결정 • 인터넷 MBN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세계일보·아시아일보·매일경제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일간스포츠·노컷뉴스·데일리안 :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인터넷 MBN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인터넷 MBN :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9일자) • 세계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3일자 8면) • 인터넷 세계일보 : 『[알려왔습니다] 7월8일자 8면 “가수 ○ 때문에 성폭행” 50대女 벌금 300만원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3일자) • 아시아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5일자 4면) • 매일경제 : 『고침』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30일자 사회면) • 일간스포츠 : 『알려 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5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2일자) • 데일리안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2일자)

2013대전조정63 (정정청구) ○○산업 주식회사 對 꼴통뉴스	
조 정 대 상	『[고발] 충격적인 도로안전시설물 부실시공 실태고발』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도로안전시설물 규격에 미달되거나 사고로 파손된 부품을 사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꼴통뉴스 섹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3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도로안전시설물 부실시공실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7일자)
2013서울조정1043~1044 (정정·손배청구) ○○○○○○수련원 對 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수련원 밤엔 술집?』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9일자 19:55)
신청인주장	신청인 수련원이 최근 몇 년간 술장사를 해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 2013년 8월 5일까지 <마감뉴스> 프로그램 전국뉴스 시간대에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MBC 뉴스 24 프로그램 『“○○○○수련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2일자 00:40)
2013서울조정1047~1048 (정정·손배청구) (주)○○가구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47년 전통의 ○○가구, 수입가구 판매사로 '전락'』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수입가구 판매사로 전락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의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면 중앙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48시간 이상 게재함 [기사수정] 조정대상기사에 게재된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 사진은 삭제함
이 행 결 과	『○○가구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2013서울조정1049~1050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창원시 對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닷컴	
조 정 대 상	• 스포츠서울 : 『시의회 승인도 없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6일자 1면) • 스포츠서울닷컴 : 『창원시의 변명. 신축야구장 재조사는 중단됐지만, 보고서는 받았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창원시가 진해구장 선정근거로 내세운 야구장 신규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서가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보고서라 보도했으나 해당 보고서는 승인 절차가 필요 없는 용역물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스포츠서울닷컴에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스포츠서울 : 『“창원시 중간보고서”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3면) • 스포츠서울닷컴 : 『“창원시 중간보고서”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1일자)

2013서울조정1056~105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1. 안 ○, 2. 이○○ 對 코메디닷컴, 프레시안	
조 정 대 상	• 코메디닷컴 : 『UAE 귀족 소녀 국내서 척추교정 받다 사망』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 프레시안 : 『[단독] UAE 16세 귀족女, ○○○병원서 수술 중 사망』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척추수술 중 사망한 아랍에미리트(UAE) 귀족 소녀가 의료관광 프로그램으로 유치한 환자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060 (정정청구) 한국○○○협동조합 對 전자신문	
조 정 대 상	『○○○조합 출범, 독점·담합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4일자 1면)
신청인주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시너지효과를 목적으로 설립된 신청인 조합이 오히려 조합 내 대기업 등의 독점과 담합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대구조정26~27 (기사별 정정·손배청구) (사)○○○○○○수련원 對 안동MBC-TV	
조 정 대 상	(1) 특집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인성교육장... 밤에는 술장사?』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8일자 19:55) (2)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인성교육장... 밤에는 술장사?』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9일자 06:00)
신청인주장	신청인 수련원이 최근 몇 년간 술장사를 해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1)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수련원 ‘술장사 한 바 없다’ 주장』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28일자 19:55) (2)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수련원 ‘술장사 한 바 없다’ 주장』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29일자 06:00)
2013대구조정28~29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1. 고○○, 2. 박○○ 對 대구일보, 인터넷 대구일보	
조 정 대 상	『“종전 이사측 무리한 주장 안타까워”』 제하의 기사 (대구일보 2013년 5월 6일자 22면, 인터넷 대구일보 5월 6일자)
신청인주장	전임 이사인 신청인들의 비협조로 학원 이사회가 파행을 달리고 있다는 현 이사장의 인터뷰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대구조정30~33 (매체별 조정·손배청구) (병합) ○○○○○운동고령군협의회 對 고령군민신문, 인터넷 고령군민신문	
조 정 대 상	『“여직원 월급이 30만 원’ 저임금 노동착취 의혹』 제하의 기사 (고령군민신문 2013년 6월 18일자 1면, 인터넷 고령군민신문 6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의회가 직원 월급으로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저임금 노동착취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1063~1066 (매체별 조정·반론청구) (병합) 박영선 對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정무위도 모르게 FIU법 수정... 법사위, 또 수퍼갑 논란』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3년 7월 4일자 5면, 온라인 중앙일보 7월 4일자)
신청인주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인 신청인이 월권을 행사하여 정무위원회도 모르게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을 수정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조인스닷컴에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온라인 중앙일보 및 조인스닷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섹션의 각 정치면 전체 기사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36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중앙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6일자 2면) • 온라인 중앙일보·조인스닷컴 : 『[알려왔습니다] 7월 4일자 5면 ‘정무위도 모르게 FIU법 수정... 법사위, 또 수퍼갑 논란’ 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6일자)
2013서울조정1067~1068 (매체별 조정청구) (병합) (유)○○주택건설 對 한국경제, 한경닷컴	
조 정 대 상	『“안전 D등급’ 군산 ○○○○○타워에선 어떤 일이...』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3년 6월 15일자 B2면, 한경닷컴 6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건설한 건축물에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조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한경닷컴 : [조정 및 반론보도] 조정 및 반론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면 중앙 상단에 48시간 이상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 한국경제·한경닷컴 : 『군산 ○○○○○타워 조정·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3년 7월 25일자 26면, 한경닷컴 7월 24일자)
2013서울조정1069~1070 (조정·손배청구) 이○○ 對 프레스바이플	
조 정 대 상	『○○회원 “박원순 아들 차로 치겠다” 범죄계획』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박원순 아들을 차로 치겠다는 범죄 계획을 담은 글을 올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071	(정정청구) ○○○ 유한회사 對 MBC-TV
조 정 대 상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 『우리아이 생명을 책임지는 카시트 잘못 고르면 무용지물』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4일자 08:30)
신청인주장	영아가 영아용 카시트가 아니라 범용 카시트를 사용하면 차량 사고 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 『휴가철 어린이 사고 급증! 올바른 카시트 착용법은?』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9일자 08:30)
2013서울조정1072~1088	김○○ 외 44명 對 동아닷컴 ^(1072 반론청구)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1073 반론청구) , 연합뉴스 ^(1074 반론청구) , 한경닷컴 ^(1075 반론청구) , MK뉴스 ^(1076-1077 기사별 반론청구) , 인터넷 서울파이낸스 ^(1078 반론청구) , e머니위크 ^(1079 반론청구) , 인터넷 서울경제 ^(1080 반론청구) , 인터넷 헤럴드경제 ^(1081 반론청구) , e머니투데이 ^(1082 반론청구) , 조선비즈닷컴 ^(1083 반론청구) , 아시아경제닷컴 ^(1084 반론청구) , EBN ^(1085 반론청구)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1086 반론청구) , 인터넷 스포츠조선 ^(1087 반론청구) , 노컷뉴스 ^(1088 반론청구)
조 정 대 상	• 동아닷컴 : 『말했던 청라 ○○ ○○○○ 아파트 준공 승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8일자)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안전성 이상무’ 청라 ○○○○ 사용승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8일자) • 연합뉴스 : 『청라○○○○, 사용승인 받아... 입주 개시』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 한경닷컴 : 『부실논란 청라 ○○ ○○○○ 안전진단결과로 준공처리』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 MK뉴스 : (1) 『인천 청라 ○○○○ 사용승인 받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2) 『○○ 청라○○○○ 안전 이상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 인터넷 서울파이낸스 : 『‘청라 ○○○○’ 사용승인 획득』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 e머니위크 : 『○○건설 인천 청라 ○○○○ ‘안전 이상 無’』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 인터넷 서울경제 : 『인천 청라 ○○○○ 안전 이상 無』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 인터넷 헤럴드경제 : 『○○건설 ‘인천 청라 ○○○○’ 사용 승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 e머니투데이 : 『청라 ○○○○ 안전성 ‘이상무’... 사용승인 받아 입주 개시』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 조선비즈닷컴 : 『청라 ○○○○ 사용 승인... “안전 이상 없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 아시아경제닷컴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 ‘청라 ○○○○’ 사용승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 EBN : 『철근 누락 논란 ‘청라 ○○○○’, 사용 승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건설 ‘인천청라○○○○’ 사용승인 받았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 인터넷 스포츠조선 : 『○○건설, 인천 청라 ○○○○ 사용승인 받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 노컷뉴스 : 『인천 청라 ○○○○ 안전 이상 無』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가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준공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으나,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다.
처 리 결 과	• 동아닷컴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인터넷 서울파이낸스 · 인터넷 서울경제 · e머니투데이 · 아시아경제닷컴 · EBN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인터넷 스포츠조선 · 노컷뉴스 :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연합뉴스 · 한경닷컴 · e머니위크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조선비즈닷컴 :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 MK뉴스 : ▷ 2013서울조정1076 -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 2013서울조정1077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동아닷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3일자)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반론보도문] ‘청라○○○○ 사용승인’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8일자) • 연합뉴스 : 『청라○○○○ 입주민 “안전진단결과 나오기 전 승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3일자) • 한경닷컴 : 『청라 ○○○○ 입주자측 “인천경제청 안전진단 사실과 다르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8일자) • MK뉴스 : 『“청라 ○○○○ 안전진단 결과 나온 적 없어” 시공사 · 입주자 간 입장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7일자) • 인터넷 서울파이낸스 : 『[반론보도문] ‘청라 ○○○○, 사용승인 획득’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8일자) • e머니위크 : 『○○건설, 인천 청라 ○○○○ ‘안전 이상 無’?』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 인터넷 서울경제 : 『‘인천 청라 ○○○○ 안전이상 無’ 기사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8일자)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인천 청라○○○○ 입주예정자들 “사용 승인 주장,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 e머니투데이 : 『인천 청라○○○○ 아파트 사용승인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9일자) • 조선비즈닷컴 : 『청라 ○○○○, 사용승인 과정 논란... “주민 의견 반영 안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 아시아경제닷컴 : 『[반론보도문] ‘청라 ○○○○’ 사용승인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 EBN : 『인천 청라○○○○ 사용 승인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8일자)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반론보도문〉 인천 청라○○○○ 아파트 사용승인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9일자) • 인터넷 스포츠조선 : 『인천 청라○○○○ 아파트 사용승인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8일자) • 노컷뉴스 : 『[반론보도문] 인천 청라○○○○ 아파트 사용승인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2013경남조정41 (손배청구) 이○○ 對 영남방송	
조 정 대 상	『○○소방본부, 휴대폰 역추적으로 응급환자 살려』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지역소방본부에서 휴대폰 역추적으로 응급환자를 살렸다고 보도하면서 당시 응급상태에 있었던 신청인의 근무처와 집주소 등을 방송에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경기조정111~112 (매체별 반론청구) 김○○ 외 44인 對 인터넷 경기신문,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 인터넷 경기신문 : 『청라○○○○ 최종 사용 승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8일자) - 인터넷 중부일보 : 『철근 일부 누락 ‘청라○○○○아파트’ 사용검사 처리』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가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준공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으나,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다.
처 리 결 과	- 인터넷 경기신문 :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 인터넷 중부일보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인터넷 중부일보 : 『청라○○○○아파트 준공승인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2013서울조정1089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푸드투데이	
조 정 대 상	『“○○채” 허위 · 과대광고 주의보』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상표 출원한 농산물이 당뇨, 고혈압, 암, 다이어트, 골다공증 등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허위 · 과장 광고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1090~1092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김○○ 對 e그린경제	
조 정 대 상	『S대 미용예술학과 K교수 연수 · 교육비 착복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신청인주장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교육비를 부풀려 학생들로부터 600만 원을 착복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조건부 추후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정정 및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삭제하고, 구글에 남아있는 조정대상기사에 대해서도 2013년 7월 25일 09:00까지 삭제함 ※ 이행방법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조건부 추후보도] 신청인에 대한 검찰조사결과가 무혐의로 확인될 경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보도함 [기사삭제] 삭제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달리 아직 삭제되지 아니한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을 삭제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보도문] S대 미용예술학과 연수교육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2013서울조정1093~1094 (정정·손배청구) ○○○○○(주) 對 e그린경제	
조 정 대 상	『S대 미용예술학과 K교수 연수·교육비 착복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신청인주장	모 대학교수가 신청인 회사가 주최한 미용교육의 교육비를 부풀려 학생들로부터 600만원을 착복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조건부 추후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정정 및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삭제하도록 하고, 구글에 남아있는 조정대상기사에 대해서도 2013년 7월 25일 09:00까지 삭제하도록 함 ※ 이행방법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도록 함 [조건부 추후보도] 신청인에 대한 검찰조사결과가 무혐의로 확인될 경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보도하도록 함 [기사삭제] 삭제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달리 아직 삭제되지 아니한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을 삭제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보도문] S대 미용예술학과 연수교육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2013대구조정34~35 (정정·손배청구) 1. ○○금속노동조합 ○○지부 ○○○지회, 2. 김○○ 對 인터넷 중부신문	
조 정 대 상	(1) 『○○○ 지회 막무가내식 ‘떼법’ 고질적 병폐』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2) 『성명서 (사)한국○○장애인○○협회』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1일자) (3) 『장애인 폄하 발언한 ○○○ 지회에 강경 대응키로』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1일자) (4) 『과연 그들이 근로자인가』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일자) (5) 『“○○○ 지회에 장애인 비방 공개사과 요구”』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노동조합 지회의 회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격모독성 발언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전북조정22 (정정청구) 정읍시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정읍시, 인사 근평점수 늘리고 빼고 마음대로”』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정읍시가 특정 직원들의 근평점수를 마음대로 조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약속)
2013서울조정1095~1096 (정정·손배청구) 서울특별시 중구 외 2인 對 JTBC	
조 정 대 상	리얼시사매거진 뉴스맨 프로그램 『2회 - 나는 구청장이다』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14일자 21:55)
신청인주장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았던 가옥 일대를 기념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신청인의 사업 계획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부정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뉴스맨> 프로그램 말미에 정정 및 반론보도, 진행자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 및 내용을 블루바탕에 흰자막으로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계속 표시함
이 행 결 과	뉴스맨 프로그램 『4회 - 「박정희기념공간사업」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4일자 21:55)

2013서울조정1097 (정정청구) 경찰청 對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새누리 의원, 경찰 고위간부 술자리 폭행』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12면)
신청인주장	경찰 고위 간부가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회식자리에서 뺨을 맞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098 (정정청구) 이○○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종합] ‘甲’ 국회의원, 경찰 수뇌부 폭행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신청인주장	경찰 고위 간부인 신청인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회식도중 뺨을 맞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甲’ 국회의원, 경찰수뇌부 폭행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1일자)
2013서울조정1099 (정정청구) 허○○ 對 쿠키뉴스	
조 정 대 상	『“계곡주?”... 야구장女에 음란댓글 달더니 어떡해』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음란댓글 관련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50만 원 지급)
2013서울조정1100~1101 (정정 · 손해청구) (주)뉴스미디어그룹 對 프레스바이플	
조 정 대 상	『‘스타데일리’ 연예인 사생활 가점 아우팅 비판이 명예훼손?』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언론사가 아이돌 그룹 멤버 중 한 명의 태국 게이바 출입 의혹을 보도했다고 기사화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미디어 초기화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48 시간 이상 게시함
이 행 결 과	『‘스타데일리, 연예인 사생활 간접 아우팅’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7일자)
2013서울조정1102 (손배청구) 1. 오○○, 2. 오△△ 對 YTN 사이언스 TV	
조 정 대 상	김생민의 프로파일 프로그램 『곳을 둘러싼 진실공방』, 대한민국 사회악 권력형 성폭력』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21일자 24:00)
신청인주장	무속인인 신청인 과 지인에게 무속인을 소개한 신청인 2가 무속 사기의 공범인 것처럼 보도하고, 신청인들의 주택과 가게 등을 무단으로 촬영,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신청인 1에게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부산조정51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1) 『17개월 영아, 부산어린이집 폭행(동영상)』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2) 『“원장실서 맞은 애 더 있다” 부산 어린이집 폭행 수사 확대』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7일자)
신청인주장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한 사건이 ‘부산 어린이집’ 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신청인의 어린이집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알림기사 게재)
이 행 결 과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0일자)
2013서울조정1123~1126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환경운동연합 對 KBS-1TV, KBS미디어	
조 정 대 상	• KBS-1TV : (1) KBS 뉴스9 프로그램 『해외 수주에 ‘고춧가루’』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27일자 21:00), (2) KBS 뉴스9 프로그램 『[데스크 분석] 도 넘은 NGO 활동』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21:00) • 인터넷 KBS-1TV : (1) 『환경단체, ‘수공, 물 사업 능력 의문’ 발언 파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2) 『[데스크 분석] 도 넘은 NGO 활동』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태국에서 우리나라 수자원공사를 실제보다 저평가 되도록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127 (정정청구) 1. 김○○, 2. 김 △ 對 SBS-TV	
조 정 대 상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890회 - 밀물에 떠오른 손, 바다 위 과학 수사』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20일자 23:25)
신청인주장	해양 경찰의 과학 수사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 가족이 관련된 살인 사건에 대해 동의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100만 원 지급)
2013서울조정1128~1130 (매체별 정정청구) 변○○ 對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¹¹²⁸⁾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¹¹²⁹⁾ , 쿠키뉴스 ⁽¹¹³⁰⁾	
조 정 대 상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법원 “이정희 종북 발언 변○○, 이정희 대표에 1,500만 원 배상하라”』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법원, ‘이정희 종북’ 발언 변○○에 1,500만 원 배상 판결』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 쿠키뉴스 : 『‘변○○ 대표 어떡해’ 진○○·김○○ 등 줄소송 예고』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 주사파로 단정지어 표현한 것만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쿠키뉴스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83~186 참조)]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약속)

2013대전조정64	(정정청구) 예산군청 對 중도일보
조 정 대 상	『옛 산과대 불법토사 반입 말썽』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15면)
신청인주장	예산군이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토용 토사 수백 톤을 불법으로 반입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산과대부지 불법토사 반입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5일자 15면)
2013대전조정65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중도일보
조 정 대 상	『부산 어린이집 폭행, “아이가 하루종일 징징대서 짜증났다”』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6일자)
신청인주장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한 사건이 ‘부산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신청인의 어린이집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알림기사 게재)
이 행 결 과	『[부산 어린이집 폭행사건]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9일자)
2013서울조정1131~1132	(정정·손배청구) 이○○ 對 헬스코리아뉴스
조 정 대 상	『베일 속 리베이트 고발자 알고보면 ...』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9일자)
신청인주장	제약회사 직원이었던 신청인이 회사퇴직에 불만을 품고 검찰에 소속회사의 리베이트 사건을 고발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133~1136, 1142~1145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1. ○○○○교회연합회, 2. 박○○ 對 주간 교회연합신문^(1133~1134), 인터넷 교회연합신문^(1135~1136), 기독교신문^(1142~1143), 인터넷 기독교신문^(1144~1145)
조 정 대 상	- 주간 교회연합신문·인터넷 교회연합신문 : 『○○○교회, 후임 청빙 두고 내홍 일어』 제하의 기사 (주간 교회연합신문 2013년 7월 14일자 14면, 인터넷 교회연합신문 7월 11일자) - 기독교신문·인터넷 기독교신문 : 『○○○교회 목사 청빙에 원로목사 개입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4일자 1면, 인터넷 기독교신문 7월 22일자)
신청인주장	교회 원로목사인 신청인이 후임 담임목사 청빙 작업에 개입하고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 및 사과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주간 교회연합신문·인터넷 교회연합신문 : 『〈정정보도 및 사과문〉 ‘○○○교회, 후임 청빙 두고 원로목사의 개입 의혹’ 기사,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주간 교회연합신문 2013년 8월 25일자 1면, 인터넷 교회연합신문 8월 16일자) - 기독교신문·인터넷 기독교신문 : 『‘○○○교회 목사청빙에 박○○ 목사의 개입’에 관한 ‘정정보도 및 사과문’』 제하의 기사 (기독교신문 2013년 8월 18일자 1면, 인터넷 기독교신문 8월 14일자)

2013서울조정1137 (정정청구) (주)○○유타워 對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조 정 대 상	『통합 연금재단, 이번엔 비상장사에 불법 대출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진행 중인 분당수지 유타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승인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에 일부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의 사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므로 정정보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기타 결정사항 :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즉시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정정보도문을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하며,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 게재함 ※ 이행방법 : [정정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교계교단면 뉴스 목록 상단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2013서울조정1138~1139 (정정·손배청구) 강○○ 對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1) 『甲의 행패… 매 맞는 乙』 고발은커녕 ‘쉬쉬’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30일자 10면) (2) 『코레일관광개발 납품중단 통보… 강 회장 “폐업할 것”』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일자 10면)
신청인주장	제빵회사를 운영하는 신청인이 코레일관광개발(주)의 납품 중단 통보 때문에 폐업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140 (손배청구) 도○○ 對 SBSi	
조 정 대 상	(1) 『“온도를 26도로…” 찜통 지하철, 절약이 최선?』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1일자) (2) 『출퇴근 ‘찜통 지하철’, 에너지 절약도 좋지않…」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내부 온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141 (정정청구) 박 ○ 對 민중의소리	
조 정 대 상	『박○, 진보당 비례경선 데이터조작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3일자)
신청인주장	통합진보당 비례경선부정 진상조사위원이었던 신청인이 ‘진보당 비례경선 데이터 조작가능성을 제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대전조정66	(정정청구) 대전 ○구 ○○○○○○연합회 對 대전시티저널
조 정 대 상	『대전○○○○연합회 예산집행 내역 ‘공개하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 운영진이 후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 회비를 횡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기사삭제]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여 이후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하며, 신청 외 보도 하단에 기재된 조정대상기사의 링크를 삭제함
2013서울조정1146~1147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성남시회의 새누리당협의회 對 SBS-TV, SBSi
조 정 대 상	• SBS-TV : SBS 뉴스퍼레이드 프로그램 『성남시, ‘지불유예’ 3년 만에 벗어나』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19일자 17:00) • SBSi : 『[수도권] 성남시, ‘지불유예’ 3년 만에 벗어나』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출신 시장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시 재정에도움이 되는 위례 신도시 사업을 무산시켰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SBS-TV에 반론보도] 〈SBS 뉴스퍼레이드〉 프로그램 끝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 [SBSi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 순서 앞부분에 48시간 이상 게재함
이 행 결 과	• SBS-TV : SBS 뉴스퍼레이드 프로그램 『성남시 지불유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16일자 17:00) • SBSi :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6일자)
2013서울조정1148~1149	(정정 · 손배청구)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對 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단독취재] 빗더미 공기업 퇴직금 ‘핑퐁’』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17일자 19:55)
신청인주장	서울메트로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규정을 어겨가며 퇴직금 잔치를 벌였다고 보도했으나, 퇴직금 산정과 지급은 관련 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iMBC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iMBC의 반론보도문이 반영된 기사를 네이버, 다음 등에 전송함 ※ 이행방법 : [iMBC에 반론보도] 홈페이지의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 iMBC : 『[‘빗더미’ 서울메트로, 규정 어겨가며 퇴직금 잔치]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6일자)

2013서울조정1150~115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 ○○ 빨대에 껌대기만 남았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2012년에 큰 순이익을 기록했음에도 모기업이 재투자를 막아 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미디어오늘 : 『“○○○○○○, ○○ 빨대에 껌대기만 남았다”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8일자 2면)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정정 및 반론 보도문] “○○○○○○, ○○ 빨대에 껌대기만 남았다”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8일자)
2013서울조정1152~1157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병합) 전국○○노동조합 외 2인 對 한국경제, 한경닷컴	
조 정 대 상	• 한국경제 : (1) 『살아나던 ○○○○○ ‘청산 위기’』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6일자 1면) (2) 『그때 그 세력이 ○○○○○존폐 ‘위협’』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6일자 5면) (3) 『한국 철수 검토한다는 ○○○○○의 사례』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6일자 36면) • 한경닷컴 : 『살아나던 ○○○○○ ‘청산 위기’』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2) 『[사설] 한국 철수 검토한다는 ○○○○○의 사례』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노동조합이 벌이는 농성이 불법투쟁이며, 모 외국계회사의 한국 지사 청산이 신청인 노동조합 때문인 것처럼 잘못 보도해 명예가 훼손되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158 (정정청구) 안○○ 對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땅주인, 골목길에 ‘불법’ 벽돌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4일자 1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골목길의 사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골목길에 불법으로 창고를 지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동 골목길 불법 벽돌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6일자 12면)
2013서울조정1159~1160 (정정·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헤럴드경제	
조 정 대 상	『수신료 2배↑ ?...국민 82% “인상반대”』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9일자 24면)
신청인주장	KBS가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 대다수가 수신료 인상을 반대한다고 보도했으나, KBS는 그 동안 상업방송이 할 수 없는 다양한 공영적 서비스 방송을 해왔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헤럴드경제·인터넷 헤럴드경제 :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헤럴드경제 2013년 8월 5일자 22면, 인터넷 헤럴드경제 8월 5일자)

2013서울조정1161 (반론청구) ○○중학교 對 인터넷 서울일보	
조 정 대 상	『[사회] 태극모양 빨간색이 아래에 있는 이상한 태극기』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태극기를 거꾸로 게양함으로써 국가를 모독했다는 주장을 인용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中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5일자)
2013서울조정1162~1165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병합) 권○○ 외 15인 對 아시아일보, 인터넷 아시아일보	
조 정 대 상	• 아시아일보 : 『영양, 이장들 관광성 외유 지원에 반장들 ‘허탈’』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8일자 14면) • 인터넷 아시아일보 : 『영양군, 이장단 관광성 외유 지원에 반장들 허탈』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영양군청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 반장들에게 배정된 산업시찰 예산을 신청인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에 지원했다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아시아일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지방정부섹션 내 영남 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아시아일보 : 『영양군 이장들 해외연수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7일자 14면) • 인터넷 아시아일보 : 『영양군 이장들 해외연수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9일자)
2013서울조정1166~1168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 對 JTBC	
조 정 대 상	리얼시사매거진 뉴스맨 프로그램 『1회 - 암 치료, 한방병원 산삼 약침의 진실』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7일자 21:55)
신청인주장	신청인 한방병원이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으로서 가짜 산양산삼을 공급 받아 산삼 약침을 시술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169~1170 (정정 · 손해청구) 진○○ 對 뉴스1 코리아	
조 정 대 상	『진익철 서초구청장, 직권남용 · 불법정치자금 수수 적발』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으로 송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2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이 모씨가 조성한 불법후원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며, 경찰이 신청인이 모씨의 불법후원 사실을 인식했다는 물리적 증거가 불충분함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내용이 기사에 포함됐으므로 중재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이행방법 : [정정보도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8시간 동안 게재함

2013서울조정1171~1174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병합) 주식회사 ○○○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 한겨레 : (1) 『전○○의 ○○○, 고액 국외판권 ‘수상한 지급’』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4일자 1면), (2) 『○○○, 적자에도 연78억 수수료 ‘큰손’…비자금 ‘통로’ 의심』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4일자 3면) • 인터넷 한겨레 : 『○○○, 적자에도 연78억 수수료 ‘큰손’…비자금 ‘통로’ 의심』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출판사가 해외판권 수입과정에서 인세 등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은닉재산을 국외로 빼돌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175 (정정청구) 대한성형외과○○회 對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11건 의료사고 낸 성형외과, 아무도 못막았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성형외과에서 11건의 의료사고를 냈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병원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개설한 병원이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1176~1181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병합) 1. (사)○○○○ 시민연합, 2. 최○○ 對 헬로티비 은평뉴스, 인터넷 헬로티비은평뉴스	
조 정 대 상	• 헬로티비은평뉴스 : 헬로TV 서울뉴스 프로그램 『‘위탁 운영 특혜?’』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19일자 19:30, 7월 19일자 21:30, 7월 19일자 24:00, 7월 20일자 07:15, 7월 20일자 10:00, 7월 20일자 11:50) • 인터넷 헬로티비은평뉴스 : 『[다시보기] 헬로TV 서울뉴스 106화』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9일자, 7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1이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어서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기에 부적합한 단체이고, 신청인 2가 구청장의 대학 선배로 특혜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신청인2의 초상을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헬로티비은평뉴스에 정정 및 반론보도] 〈19시 30분 뉴스〉 프로그램 중에 정정 및 반론보도, 이후 8월 19일 20시, 21시 30분, 익일 오전 7시 15분, 10시, 12시 뉴스에 모두 6회에 걸쳐 보도함 [인터넷 헬로티비은평뉴스에 정정 및 반론보도] 헬로티비은평뉴스에 정정 및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즉시 홈페이지에 해당 뉴스 프로그램을 게시하여 다시보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뉴스 텍스트는 조정대상보도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 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헬로티비은평뉴스 : 헬로TV 서울뉴스 프로그램 『‘신나는 애프터센터 위탁’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19일자 19:30) • 인터넷 헬로티비은평뉴스 : 『[다시보기] 헬로TV 서울뉴스 126화』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9일자)

2013서울조정1182 (정정청구) 변○○ 對 국민TV뉴스	
조 정 대 상	『출판사 대표, “변○○, 혼자 고고한 척...보다못해 “폭로”』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출판사로부터 책을 출판하기로 하여 선인세 1,500만 원을 받고 10년째 책을 내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183, 1207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국회사무처 對 인터넷 일요시사, 일요시사	
조 정 대 상	• 인터넷 일요시사 : 『〈단독〉 국회의장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 추적』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9일자) • 일요시사 : 『국민혈세로 지급한 기름값이 의장님 쌔짓돈?』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8일자 10면)
신청인주장	국회의장의 차량 주유비가 사적으로 사용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일요시사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중간이상 부분에 반론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국회의장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일요시사 2013년 8월 19일자, 일요시사 9월 1일자 10면)
2013서울조정1184 (반론청구) (주)○○○○○ 對 SBS-TV	
조 정 대 상	현장 21 프로그램 『101회 - 가짜 베스트셀러』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7일자 20:55)
신청인주장	신청인 출판사가 지난해 발간한 책 세권에 대해 사재기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185~1188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송○○ 對 온라인 중앙일보, 뉴시스	
조 정 대 상	『“軍장교 민간인 위협” 검찰서 밝혀져 파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세종시 어린이집 원아폭행 사건과 관련, 보육교사의 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임을 내세워 피해 학부모를 위협한 사실이 국방부 직무감찰을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189 (정정청구) ○○○○아파트를 사랑하는 모임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아파트 雜 수입 3년간 1억 넘게 빼내 선물비용·행사비용으로 쓴 부녀회』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9일자 A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운영비뿐만 아니라 회의비도 매달 관리비에서 빼갔다고 보도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비만 잡수익에서 지원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3서울조정1190~1191	(정정·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일요신문
조 정 대 상	『부천 ○○병원, 환자가 봉이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할 정도가 아닌 환자의 어깨 연골을 인위적으로 절개한 후 다시 봉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192~1193, 1387~1390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1. 주식회사 ○○○, 2. 홍○○ 對 시사저널 ^(1192~1193) , 일요신문 ^(1387~1388) , 인터넷 일요신문 ^(1389~1390, 1387~1388과 병합)
조 정 대 상	• 시사저널 : 『[특집1] ○○○○○ Outlet 이명박·원세훈도 받았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7일자 34~40면) • 일요신문 : 『○○○아울렛 선물리스크 공개』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4일자 12면) • 인터넷 일요신문 : 『[단독공개] ○○○아울렛 정관계 '선물 리스트' 뇌관 터진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 및 고위 공무원에게 고가의 명절선물 또는 영전 축하금을 보냈으며 당사자가 수령사실을 시인하였고 매년 명절 선물비용으로 수익 원대를 지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시사저널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신청인별 손해배상 각 1,0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양당사자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소송으로 관련 사안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피신청인은 중재부가 결정한 정정보도문의 내용 일부에 관해 동의할 수 없고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 일요신문·인터넷 일요신문 : 조정성립 (내용 : 일요신문에 정정 및 반론보도, 인터넷 일요신문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일요신문·인터넷 일요신문 : 인터넷 일요신문의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함과 더불어 포털에 전송한 조정대상 기사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하도록 함 ※ 이행방법 • 일요신문·인터넷 일요신문 : [인터넷 일요신문에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홈페이지 조정대상 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함
이 행 결 과	• 일요신문 : 『○○○아울렛 보도 관련, 정정및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4일자 3면)

2013서울조정1194~1195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주)○○○○○ ○○○ 對 문화일보, 인터넷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영유아용 물티슈 알고 보니 毒티슈?』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3년 8월 1일자 16면, 인터넷 문화일보 8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영유아용 물티슈 제품에서 호흡기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진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문화일보에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경제섹션 기사목록(전체리스트)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문화일보 : 『‘○○○’ 물티슈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2일자 23면) • 인터넷 문화일보 : 『[‘○○○’물티슈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2일자)
2013서울조정1196~1199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병합) 이○○ 對 서대문신문, 서대문인터넷뉴스	
조 정 대 상	『인사(人事)는 만사(萬事)가 만사지탄(萬事指彈)으로!』 제하의 기사 (서대문신문 8월 1일자 2면, 서대문인터넷뉴스 7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서울시 서대문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과정에서 금전적 뇌물, 성상납, 불륜관계 등 인사비리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서대문신문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약속) • 서대문인터넷뉴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300만 원, 부제소) - 양당사자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 대한 피신청인이 사과 등이 없이 피신청인이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음에 불만을 갖은 반면,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는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일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여 인사의 공정과 객관성을 촉구하는 내용이며 신청인을 특정하여 지적하는 내용이 없으며, 제보에 근거하여 작성된 기사라고 주장했다)
2013전북조정23~26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병합) 신○○ 對 새전북신문, 인터넷 새전북신문	
조 정 대 상	『“여중생 강간사건” 부실수사 날선 공방』 제하의 기사 (새전북신문 2013년 7월 18일자 6면, 인터넷 새전북신문 7월 17일자)
신청인주장	현직 경찰관인 신청인이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인터넷 새전북신문 기사삭제, 손해배상 5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새전북신문에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여중생 강간사건” 부실수사 날선 공방”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새전북신문 2013년 8월 30일자 2면, 인터넷 새전북신문 8월 30일자)

2013전북조정27~30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유성엽 對 정읍신문, 인터넷 정읍신문	
조 정 대 상	• 정읍신문 : 『[망부상] 정치인들의 거짓말과 유권자 한 표의 결과치는...』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7일자 3면) • 인터넷 정읍신문 : 『정치인들의 거짓말과 유권자 한 표의 결과치는...』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9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지역구에 대학 캠퍼스를 유치하겠다고 거짓 공약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208, 1217 (매체별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서울뉴스통신, 인터넷 경인종합일보	
조 정 대 상	• 인터넷 서울뉴스통신 : 『남양주췌, 유치권 빌미 탈·불법 자행 사채업자 수사』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 인터넷 경인종합일보 : 『남양주 ○○빌리지 유치권 빌미 불법 난무』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사채업자인 신청인이 청년 수십 명을 동원해 특정 건물의 유치권을 빌미로 점거 후 일반인들에게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조건부 후속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서울뉴스통신·인터넷 경인종합일보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조건부 후속보도] 피신청인은 유치권불법행사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유치권 행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 관련 내용을 수사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추후보도함
이 행 결 과	• 인터넷 서울뉴스통신 : 『“불법 유치권 행사 사채업자 수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0일자) • 인터넷 경인종합일보 : 『“불법 유치권 행사 사채업자 수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0일자)
2013광주조정40 (정정청구) 이○○ 對 인터넷 광주타임즈	
조 정 대 상	『경기도교육청 일선 여교사 학부모 앞 막말 ‘충격’』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9일자)
신청인주장	교사인 신청인이 학부모에게 막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209~1210 (매체별 손해청구) (병합) 노○○ 對 MBN, 인터넷 MBN	
조 정 대 상	• MBN : MBN 뉴스 8 프로그램 『○○대 ‘성폭행 가해자 실명 공개’ 학칙 논란』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5일자 20:00) • 인터넷 MBN : 『[단독] ○○대 ‘성폭행 가해자 실명 공개’ 학칙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5일자)
신청인주장	대학내 성폭행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학칙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동의없이 신청인의 신체 일부(하반신) 등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인터넷 MBN 기사삭제, 부제소) - 피신청인이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보도는 공익적 성격이 큰 보도이므로 중재부의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이행방법 : [인터넷 MBN 기사삭제]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및 VOD 영상을 삭제함. 또한 피신청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및 VOD 영상을 삭제함
2013서울조정1211~1216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병합) 안○○ 對 MBC, iMBC	
조 정 대 상	• MBC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864회 - 딸기참쌀떡의 눈물』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28일자 23:15) • iMBC : 『[다시보기] 시사매거진 2580 864회 - 딸기참쌀떡의 눈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개발한 딸기참쌀떡을 다른 사람이 개발 판매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조건부 후속보도 게재 약속)
2013경기조정116~117 (매체별 정정청구) 경기도○○○○○○사업조합 ○○지부 對 기호일보, 인터넷 기호일보	
조 정 대 상	『중고차 허위 매매 ‘감시자들’ 없다』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3년 7월 12일자 8면, 인터넷 기호일보 7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 지부가 무허가 중고차매매상사의 불법 매매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3서울조정1218 (손배청구) 유○○ 對 KBS-1TV	
조 정 대 상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프로그램 『기름덩어리에 정화조가 자꾸 막혀요』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5일자 18:55)
신청인주장	돼지고기 가공공장이 관련 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 규제의 근거가 없다고 보도하면서 공장직원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219~1220, 1291~1293	○○○○○○○아파트 재건축조합 對 뉴시스 ^(1219~1220 정정·손배청구) , e그린경제 ^(1291~1293 정정·반론·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뉴시스 : 『안양시 ‘○○○○○○○ 재건축’ 4년째 표류중』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7일자) • e그린경제 : 『안양 ‘○○○○○○○’ 재건축, 4년째 해결책 난항』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의 재건축 사업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뉴시스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조건부 후속보도, 부제소) • e그린경제 : 기각결정 (사유 : 피신청인은 기사제공언론사(뉴시스)의 조정대상기사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시 사실을 인지한 후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고 해당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게시하였는 바, 신청인에게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 이행방법 • 뉴시스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조건부 후속보도] 피신청인은 고소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위조된 것으로 결론나면 그 결과를 신청인 측으로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보도함
이 행 결 과	• 뉴시스 : 『“안양시 ○○○○○○ 재건축사업 표류”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3일자)
2013서울조정1221~1244, 1289~1290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 병역비리 ○○○○○○ 對 연합뉴스 ^(1221~1222) , 인터넷 한겨레 ^(1223~1224) , 오마이뉴스 ^(1225~1226) , 조선닷컴 ^(1227~1228) , 인터넷 경향신문 ^(1229~1230) , 쿠키뉴스 ^(1231~1232) , KBS미디어 ^(1233~1234) , SBSi ^(1235~1236) , 뉴스1 코리아 ^(1237~1238) , 고발뉴스닷컴 ^(1239~1240) , 노컷뉴스 ^(1241~1242) , 한강타임즈 ^(1243~1244) , 인터넷 서울타임스 ^(1289~1290)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서울시 “시장아들 병역논란 ‘국정원 문건’과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8일자) • 인터넷 한겨레 : 『박원순 아들 병역 기피 혐의 고발, 국정원 추정 문건 실행?』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8일자) • 오마이뉴스 : (1) 『“박원순 아들 병역 논란, 국정원 추정 문건 탓”』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8일자), (2) 『서울시 “박원순 아들 병역 논란 배후에 국정원 있는 듯”』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8일자) • 조선닷컴 : 『서울시 “박원순 아들 병역 논란 배후에 국정원 있는 듯”』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8일자) • 인터넷 경향신문 : 『서울시 “국정원 문건 12건 중 5건은 실제 진행”』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8일자) • 쿠키뉴스 : 『“국정원, 비방 문건 작성하고 공작 실행?” 서울시, 고강도 대응 착수』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8일자) • KBS미디어 : 『““박원순 제압’ 국정원 추정문건, 실행 가능성 높아”』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8일자) • SBSi : 『서울시 “시장 아들 병역 논란 ‘국정원 문건’과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8일자)

조 정 대 상	• 뉴스1 코리아 : 『서울시, 국정원 ‘박원순 제압 문건’ 실체 분석 보고서 작성』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8일자) • 고발뉴스닷컴 : 『“박원순 아들 병역 고발, ‘국정원 추정문건’ 지침대로”』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9일자) • 노컷뉴스 : 『서울시 ‘국정원 문건’ 문석...적극 대응 나서』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9일자) • 한강타임즈 : 『○○○연합, 박원순 문건? “우리는 국정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1일자) • 인터넷 서울타임스 : 『“박 시장 아들 병역 논란 국정원 추정 ‘문건’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국정원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연합뉴스 · 인터넷 한겨레 · 오마이뉴스 · 조선닷컴 · 인터넷 경향신문 · 쿠파뉴스 · KBS미디어 · SBSi · 뉴스1 코리아 · 고발뉴스닷컴 · 노컷뉴스 · 인터넷 서울타임스 : 각 조정불성립결정 • 한강타임즈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한강타임즈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9일자)

2013서울조정1245~1246 (정정 · 손배청구) 황○○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수원 삼성 경기에 등장한 ‘프로이센기’... 왜?』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수원삼성블루윙즈의 서포터 모임인 청미르의 깃발이 독일 제국주의 상징물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스포츠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수원삼성 서포터 ‘청미르’ 깃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6일자)

2013서울조정1247~1248 (매체별 손배청구) 조○○ 對 KBS-1TV, SBS-TV	
조 정 대 상	• KBS-1TV : KBS뉴스 7 프로그램 『울산 도심서 조직폭력배들이 시민 집단 폭행』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29일자 19:00) •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왜 뽕뽕거려” 조폭 몰려와 폭행』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29일자 20:00)
신청인주장	조직폭력배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KBS-1TV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SBS-TV : :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3부산조정52 (손배청구) 조○○ 對 UBC	
조 정 대 상	ubc프라임뉴스 프로그램 『경정 왜 울려..시민 집단폭행』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29일자 20:35)
신청인주장	조직폭력배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1249~125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국회사무처 對 일요시사, 인터넷 일요시사	
조 정 대 상	• 일요시사 : 『뒤틀린 거래 의혹으로 ‘와글와글’』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4일자 10면) • 인터넷 일요시사 : 『국회 수상한 60억 리모델링 의혹 추적』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6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사무처가 향후 5년간 60억 원이 들어가는 국회 본회의장 리모델링을 시작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일요시사에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일요시사 : 『국회 본회의장 공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3일자 10면) • 인터넷 일요시사 : 『[국회 본회의장 공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6일자)
2013서울조정1253~1254 (정정·손배청구) 남○○ 對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조 정 대 상	『천주교인 출신과 담임목사의 재혼, 어떻게 봐야 하나』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신청인주장	목사인 신청인이 천주교인 이혼녀와 결혼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예수님 말씀을 왜곡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255~1257 (정정·반론·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인터넷 일간스포츠	
조 정 대 상	『위기에 빠진 ‘1박2일’, 가을 폐지설 ‘모락모락’』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8일자)
신청인주장	KBS가 내부적으로 ‘1박2일’ 프로그램 폐지를 논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연예섹션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이 행 결 과	『‘1박2일’ 가을 폐지설’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4일자)
2013경남조정42~43 (정정·손배청구) 이○○ 對 아시아뉴스통신(경남)	
조 정 대 상	『경남 거제 지심도 “도선”, “유람선” 둔갑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관리하는 거제 지심도 운항 도선(여객선)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관광객을 실어나르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258 (정정청구) 이○○ 對 스타데일리뉴스	
조 정 대 상	『‘프레스바이플’ 본지 관련 기사 반론 보도 게재, 언론중재위 조정 합의』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8일자)
신청인주장	기자인 신청인이 본인의 트위터에 스타데일리뉴스와의 분쟁 관련 내용을 호도하여 글을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1) 신청인은 『아이돌이 게이바 출입하면 사생활 공개되도 될까?』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스타데일리’ 연예인 사생활 간접 아우팅 비판이 명예훼손?』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경찰 “연예인 사생활 공개 연예매체 비판, 명예훼손 아냐”』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7일자)가 프레스바이플 및 3개 주요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버)을 통해 더 이상 검색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함 (2) 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트위터에 2013년 7월 15일부터 2013년 8월 21일 사이에 올린 피신청인 관련 글을 모두 삭제함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향후, 기사제작 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의 중요성을 깊이 새기고 이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도록 노력함 ※ 이행방법 : [기사삭제] 조정대상기사와 함께 『[단독] 남성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 A군, 태국서 게이바 출입?』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가 홈페이지 및 3개 주요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버)을 통해 더 이상 검색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함
2013서울조정1259~1260 (매체별 정정청구) 송○○ 對 뉴시스,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1) 『세종○○ 어린이집 학부모들 세종시에 사건규명 촉구』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9일자) (2) 『세종○○ 아동학대 교사 마땅히 처벌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9일자) (3) 『세종○○ 어린이집 학부모들 뿔났다!』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9일자) (4) 『탄원서 서식 작성하는 세종○○ 학부모들』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9일자) (5) 『세종○○ 어린이집 학부모들, 세종시에 억울함 호소』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9일자)
신청인주장	세종시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에 연루된 보육교사인 신청인의 딸과 신청인이 사건의 가해자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서울조정1261~1262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진성준 對 문화일보, 인터넷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 문화일보 : 『의원 3분의 1 ‘천막’ 불참 ‘의욕 없고’... ‘역풍 우려’』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일자 6면) • 인터넷 문화일보 : 『민주, 의원 3분의 1 ‘천막’ 불참 ‘의욕 없고’... ‘역풍 우려’』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불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 이행방법 : [후속보도] 신청인이 2013년 8월 1일 민주당 의원총회에 불참한사유를 소명하는 내용을 적절한 기회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문화일보 및 인터넷 문화일보에 게재하기로 약속함
이 행 결 과	• 문화일보 : 『●대공수사권 폐지 “赤化 고속도 갈아주는 일”』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7일자 3면) • 인터넷 문화일보 : 『대공수사권 폐지는 赤化 고속도 갈아주는 일』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7일자)
2013경기조정118~119 (정정·손배청구) 1. 김○○, 2. 김△△ 對 파도TV	
조 정 대 상	(1) 『[동영상뉴스] IBN 뉴스 - 담당자, 판매점에서 물품 갈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2) 『[동영상뉴스] IBN 뉴스 - 대형마트, ‘피해자만 해고’ 논란 부추겨...』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31일자)
신청인주장	대형마트의 직원인 신청인들이 납품업체의 물건을 무단으로 절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을 동영상뉴스 형식으로 제작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진행자의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제작함 [기사삭제]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고 향후 재방송에도 방송되지 않도록 함
이 행 결 과	『‘청라지구 대형마트 비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1일자)
2013서울조정1263 (손배청구) 공○○ 對 인터넷 독립신문	
조 정 대 상	『국정원 앞 ‘종북감시단’ 발족식』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9일자)
신청인주장	모 진보단체가 국가정보원 앞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어린 아이들을 동원했다고 보도하면서 농성에 참여하지 않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대전조정67	
(정정청구) 1. 김○○, 2. 최○○ 對 TJB-TV	
조 정 대 상	(1) TJB 아침뉴스 프로그램 『향토음식점에서 미국산 소고기?』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5일자 07:00) (2) TJB 8뉴스 프로그램 『향토음식점에서 미국산 소고기?』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5일자 20:35) (3) TJB 아침뉴스 프로그램 『특화거리, 만들기만 하면 끝?』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6일자 07:00) (4) TJB 8뉴스 프로그램 『특화거리, 만들기만 하면 끝?』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6일자 20:35)
신청인주장	판매 중인 고기 원산지를 속인 음식점을 적발했다고 보도하면서 이와는 무관한 신청인 업체를 배경화면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 기타 합의사항 : 피신청인 후속보도를 게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함 ※ 이행방법 : [후속보도] 피신청인은 2013년 8월 31일까지 TJB ‘6시뉴스’ 및 ‘8시뉴스’에 조정대상보도의 내용과 관련한 후속보도를 각 1회 방송하되, 조정대상보도에서 사용된 화면을 이용하여 단속된 두 개 업체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함
이 행 결 과	TJB 8뉴스 프로그램 『한우전문점서 수입고기 판 2명 입건...관리감독 강화』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26일자 20:00)
2013대전조정70	
(정정청구) 재단법인 ○○문화복지재단 외 2인 對 CTN	
조 정 대 상	『[칼럼] ○○문화복지재단의 이상한 조직체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복지재단이 퇴직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불필요한 직위를 마련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칼럼 ‘○○문화복지재단의 이상한 조직체계’와 관련』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6일자)
2013경남조정44~4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손○○ 對 영남매일, 영남방송	
조 정 대 상	『남의 집 담장 허물어 돌·흙 가져간 이웃』 제하의 기사 (영남매일 2013년 7월 24일자 6면, 영남방송 7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허락 없이 이웃집 담장과 창고벽을 헐고 돌과 흙을 훔쳐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264	
(정정청구) 손○○ 對 KBS-1TV	
조 정 대 상	KBS 스페셜 프로그램 『[밀착취재] 도망자의 천국, 필리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7일자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현지에서 다른 범행을 계획하다가 체포된 범죄자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265~1267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1) 『황교안 법무 아들, ‘이○○ 방어’ ○○ 법무실 근무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8일자) (2) 『○○, 낙하산엔 돈 ‘핑퐁’ 직원에겐 ‘허리띠 졸라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7일자) (3) 『“언론이 사망자 왜곡 보도” ○○, 알고 보니 ‘자기 부정’』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4) 『○○ 노동자 또 자살, 올해만 벌써 24명』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6일자) (5) 『이○○ ○○회장, 미련은 비극을 낳는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3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 사장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임기를 채우기 위한 활동에는 돈을 펍퐁 쓰는 반면 통신과 영업에 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년 9월 13일까지 홈페이지 경제섹션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3일자)
2013서울조정1268~127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송○○ 對 뉴시스,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 경찰 고소로 확대』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세종시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과 관련, 보육교사의 아버지인 신청인이 이를 제보한 학부모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 부당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대구조정36~37 (정정·손배청구) 김형태 對 인터넷 경북제일신보	
조 정 대 상	(1)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 ‘김무성 추대’ 여론 高潮』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7일자) (2) 『“김형태 의원 상고 버티기…4월 재선거 물건너 간다”』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국회의원직 유지 기간 벌기를 위해 상고를 제기해 재선거 일정에 차질을 주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272~1273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이○○ 對 MBN	
조 정 대 상	MBN뉴스8 프로그램 『[단독] 뿌리 깊은 동성에 성매매』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13일자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이용하는 휴게텔이 불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과 이 사건 보도와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어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2013부산조정53	(손배청구) 최○○ 외 2인 對 JCN 울산중앙방송
조 정 대 상	김PD의 맛짱 프로그램 『팔빙수편』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18일자 17:29) (2013년 7월 18일자 10:28)
신청인주장	촬영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팔빙수를 먹고 있는 신청인들의 초상을 임의로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신청인들에게 각 7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손해배상)
2013서울조정1274	(정정청구) ○○○○항공사 한국지점 對 MBC-TV
조 정 대 상	(1)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외국 항공사 배짱 장사』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13일자 19:55) (2) MBC 뉴스투데이 (1부) 프로그램 『외국 항공사 소비자 피해 급증』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14일자 06:00)
신청인주장	외국계 항공사인 신청인이 비행기 정비로 인한 출발지연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는 등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1275~1278	(매체별 반론청구) 공립○○어린이집 對 연합뉴스 ⁽¹²⁷⁵⁾ , 뉴스1 코리아 ⁽¹²⁷⁶⁾ , 인터넷 한겨레 ⁽¹²⁷⁷⁾ , 인터넷 YTN ⁽¹²⁷⁸⁾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참여연대, ‘어린이집 비리고발 교사’ 보호조치 신청』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4일자) • 뉴스1 코리아 : 『“어린이집 블랙리스트, 내부고발자 탄압”』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4일자) • 인터넷 한겨레 : 『“어린이집 내부고발 교사 보호해달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4일자) • 인터넷 YTN : 『“어린이집 비리고발 교사’ 보호조치 신청』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어린이집이 원장의 비리를 고발한 보육교사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연합뉴스 : 『[참여연대, ‘어린이집 비리고발 교사’ 보호조치 신청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8일자) • 뉴스1 코리아 : 『“공익제보 부당해고” vs “계약기간 만료해지”』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8일자) • 인터넷 한겨레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8일자) • 인터넷 YTN : 『“어린이집 비리고발 교사 보호조치 신청’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3일자)

2013서울조정1279~128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1. 이○○, 2. 이△△ 對 SBS-TV, SBSi	
조 정 대 상	• SBS-TV : SBS 12뉴스 프로그램 『성남시의원 2명 명예훼손 피소』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7일자 12:00) • SBSi : 『성남시의원 2명 ‘시의회의장 명예훼손 혐의’ 피소』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7일자)
신청인주장	성남시의회 의원인 신청인들이 근거 없는 이유로 시의회의장을 비난하다 피소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SBSi : 2013년 9월 26일 13:00까지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시 하도록 하되, 그 게시 지속시간은 최소 48시간 이상으로 함
이 행 결 과	• SBS-TV : SBS 12뉴스 프로그램 『성남시 의원 2명, 시의회 의장 명예훼손 혐의 피소 관련 알림』 제하의 보도 (2013년 9월 18일자 12:00) • SBSi : 『성남시 의원 2명, 시의회 의장 명예훼손 혐의 피소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8일자)
2013강원조정18~19 (정정·반론청구) 정○○ 對 강릉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덤프트럭 근로자 집단 시위』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16일자 19:55)
신청인주장	지역 덤프트럭 근로자 집단 시위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을 불법 중간알선업자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3대구조정38~4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권○○ 對 대구신문, 인터넷 대구신문	
조 정 대 상	『車사고 진술서 받기도 전에 신호위반 단정?』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7일자 6면, 인터넷 대구신문 8월 6일자)
신청인주장	경찰인 신청인이 교통사고 경위를 조사하면서 양측 운전자 진술조서를 받기도 전에 특정 운전자 가 신호위반을 했다고 단정하며 사고 상황 설명조차 거부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대구신문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인터넷 대구신문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대구신문 : 『바로 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9일자 5면)
2013경기조정120~125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병합) ○○○○○○아파트 재건축조합 對 경인일보, 인터넷 경인일보	
조 정 대 상	『안양 주상복합 인수 항소심 각하판결』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3년 8월 1일자 19면, 인터넷 경인일보 8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의 재건축 사업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283~1284 (매체별 정정청구) 1. 강○○, 2. 김영란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정○○의 법과 사회』 대법관 가족들까지 이래도 되나?』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3년 8월 1일자 A31면, 조선닷컴 8월 1일자)
신청인주장	김영란 대법관의 남편인 신청인이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부인이 소속된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에 관여했으며 대법원 선고 후 수임료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285~1288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KBS 불공정 보도 논란에…수신료 인상 토론도 ‘난항’』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3년 8월 16일자 19면, 인터넷 한겨레 8월 15일자)
신청인주장	KBS의 수신료 인상 토론이 불공정 보도 논란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알리기사 게재 약속)
이 행 결 과	• 한겨레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6일자 2면) • 인터넷 한겨레 : 『9월 6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5일자)
2013충북조정32~35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병합) 대한예수교○○○교회 對 충청일보, 인터넷 충청일보	
조 정 대 상	『서산시 불법 건축허가 ‘윗선 개입’ 의혹』 제하의 기사 (충청일보 2013년 8월 12일자 1면, 인터넷 충청일보 8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교회가 교회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유착해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2013년 9월 6일 09:00 이후부터 서산시 자유게시판에 조정대상기사의 내용을 게재한 민원 내용을 삭제하며, 추후 다시 게재하지 않음 ※ 이행방법 : [인터넷 충청일보에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 충청일보 : 『〈알려왔습니다〉 ‘서산시 불법건축허가 ‘윗선 개입’ 의혹’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0일자 2면) • 인터넷 충청일보 : 『[‘서산시 불법건축허가 ‘윗선 개입’ 의혹’ 관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9일자)

2013경남조정48~51, 56~57	(매체별 손배청구) 박○○ 외 2인 對 인터넷 경남신문 ⁽⁴⁸⁾ , MBC경남(진주, 창원) ⁽⁴⁹⁾ , 경남도민일보 ⁽⁵⁰⁾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⁵¹⁾ , 창원일보 ⁽⁵⁶⁾ , 인터넷 창원일보 ⁽⁵⁷⁾
조 정 대 상	• 인터넷 경남신문 : 『대리운전 노조 “대리업체 3곳 불배운동 추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4일자) • MBC경남(진주, 창원) : (1)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진보단체, “악덕 대리운전업체 불배운동”』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13일자 19:55), (2) MBC 뉴스투데이 (2부) 프로그램 『진보단체, “악덕 대리운전업체 불배운동”』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14일자 06:30) • 경남도민일보 : 『“업체 번호 지워주세요”』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4일자 4면)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 『“이들 대리운전 업체는 이용하지 말아 주세요”』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4일자) • 창원일보 : 『“대리운전업체 불공정 행위 수사하라”』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7일자 7면) • 인터넷 창원일보 : 『대리운전 기사는 5초 각각시 500원! ... “아는, 甲의 횡포입니다”, “대리운전업체 불공정 행위 수사하라”』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6일자)
신청인주장	대리운전업체 불공정행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들의 업체 상호명을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인터넷 경남신문 · MBC경남(진주, 창원) · 창원일보 :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 경남도민일보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 취하 (사유 : 기사수정) • 인터넷 창원일보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경남도민일보 : 『대리운전 업체, 노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7일자 5면)
2013서울조정1294~1295	(정정 · 손배청구) 금천구청 對 채널A
조 정 대 상	(1) 채널A 종합뉴스 프로그램 『단독/재래시장 공사 ‘뇌물파티’...금천구청 전면수사』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5일자 21:40) (2) 채널A 아침뉴스 프로그램 『단독/재래시장 현대화 비리...구청 결재라인 모두 적발』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6일자 07:30) (3)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단독/영터리 사업에 나랏돈 ‘핑퐁’...비리 공무원 무더기 적발』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6일자 11:40)
신청인주장	금천구청 전현직 간부와 직원들이 재래시장 시설개선공사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 <채널A 종합뉴스>(21:40~23:00) 프로그램을 통해 2013년 9월 16일 까지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부에 2단 자막으로 게시하고 본문은 프로그램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함
이 행 결 과	채널A 종합뉴스 프로그램 『금천구청, 재래시장 공사 ‘뇌물파티’ 관련 반론』 제하의 보도 (2013년 9월 13일자 21:40)

2013경기조정126~128	문○○ 對 인터넷 광명시민신문 ^(126 정정청구) ,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127~128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인터넷 광명시민신문 : (1)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배우해 ‘패밀리’ 있다고?』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2) 『문○○ 의원 신상발언, 다시 반박한 2차 특위의 ‘반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3) 『2차조사특위, 특정단체에 수탁기준점수표 사전 유출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 (1) 『복지시설 위탁에 M의원 개입했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1일자) (2) 『엇갈린 주장..문○○ 의원, 돈 반납하냐?』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3일자) (3) 『경력증명서도 없는데..안했나, 눈감아줬나』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2일자) (4) 『퇴직금도 호봉으로 결정되는데..』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5일자)
신청인주장	광명시의원인 신청인이 복지시설위탁 선정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인터넷 광명시민신문 : 취하 •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 [기사수정] 조정대상기사 (2)와 (3)의 자료사진을 삭제함
2013부산조정54~55	(매체별 손배청구) (병합) 최○○ 對 국제신문, 인터넷 국제신문
조 정 대 상	『아내와 다툼 50대 동반 음독 시도…혼자만 숨져』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3년 8월 8일자 8면, 인터넷 국제신문 8월 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과의 불화로 음독자살한 남편의 신원과 자살방법, 신청인의 신원 등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5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서울조정1296~1298, 1359~1362	(병합) 1. 이○○, 2. 유한회사 ○○○ 對 한겨레 ^(1296~1298 정정·반론·손배청구, 1359~1360 정정·손배청구) , 인터넷 한겨레 ^(1361~1362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전북경찰 간부의 ‘부적절한 외상’』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3년 8월 15일자 14A면, 인터넷 한겨레 8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지방경찰청의 간부인 신청인이 경찰조사 중인 피의자의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고, 제때에 음식값을 변제하지 않는 식의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2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에 정정 및 반론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조정대상 기사 하단에 게재함
이 행 결 과	『전북경찰 간부의 ‘부적절한 외상’』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3년 10월 15일자 14A면, 인터넷 한겨레 10월 14일자)

2013서울조정1299~130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김○○ 對 조선닷컴, 인터넷 MBN	
조 정 대 상	• 조선닷컴 : 『김○○ 벌금형, “故장○○ 소속사 대표 관련 성 상납 발언은 명예훼손”』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3일자) • 인터넷 MBN : 『김○○,故장○○ 관련 성 상납 발언 유죄...500 만 원 벌금형』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고인이 된 한 연예인의 전 소속사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선닷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인터넷 MBN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8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조선닷컴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년 9월 26일 15:00부터 홈페이지 연예섹션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함 • 인터넷 MBN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년 9월 26일 15:00부터 홈페이지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함
이 행 결 과	• 조선닷컴 : 『‘김○○ 벌금형’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5일자) • 인터넷 MBN : 『‘성 상납 발언 김○○ 벌금형’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6일자)
2013서울조정1303~1304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이○○ 외 3인 對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 정 대 상	• 국민일보 : 『고가 선물은 인기 척도...‘오빠’가 품목 지정하기로』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0일자 6면) • 쿠키뉴스 : 『[비뚤어진 팬문화] 고가 선물은 인기 척도...‘오빠’가 품목 지정하기로』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모 연예인의 ‘악플러 고소 비용’을 모금하던 신청인들이 모금한 비용을 착복해 잠적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쿠키뉴스에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팬 소송 비용 모금”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3년 9월 7일자 6면, 쿠키뉴스 9월 7일자)
2013서울조정1305 (정정청구) 이○○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뉴라이트가 부끄럽나? ○○사학회의 자기부정』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우파성향의 교원노조의 상임대표를 지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정치> 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사학회 이○○ 교수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30일자)

2013경기조정129~130 (정정 · 손해청구) 최○○ 對 미디어투데이	
조 정 대 상	『〈기자수첩〉 화성시는 지금 “그 나물에 그밥”!』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발행하는 지역매체가 한국기자협회윤리강령의 공정정보 강령을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WHY에 반론보도 게재 노력)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수도권뉴스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화성시는 지금 그 나물에 그 밥”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2일자)
2013서울조정1306 (정정청구) (주)○○○코리아 對 KBS-1TV	
조 정 대 상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19회 - 금연보조제의 불안한 진실』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23일자 19:3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판매하는 무연담배를 ‘금연보조제 부작용’ 관련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KBS미디어에 알람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알람보도] 알람보도문을 2013년 9월 9일부터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함 [기사삭제] 2013년 9월 9일까지 KBS 미디어 및 피신청인과 콘텐츠 공급계약을 통해 외부에 제공하는 조정대상보도를 모두 삭제하여 다시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함, 단, 조정대상 보도 중 신청인의 제품 관련 화면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재편집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음
이 행 결 과	• KBS미디어 : 『19회 금연보조제 방송 관련 알람』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6일자)
2013서울조정1307~1310 (매체별 추후 · 손해청구) 안○○ 對 주간 강남신문, 인터넷 주간 강남신문	
조 정 대 상	• 주간 강남신문 : (1) 『○○○부녀회 갈등, 폭력사태로 번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9일자 1면) (2) 『폭력사태로 얼룩진 강남구○○○』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6일자 1면) (3) 『국제도시 이미지에 ‘먹칠’』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9일자 1면) • 인터넷 주간 강남신문 : (1) 『○○○부녀회 갈등, 폭력사태로 번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9일자) (2) 『폭력사태로 얼룩진 강남구○○○』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7일자) (3) 『어수선한 강남구 ... 폭력 · 고소 · 고발 · 시위로 국제도시 이미지에 ‘먹칠’』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0일자)
신청인주장	부녀회장인 신청인이 부회장을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각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이행강제금) ▷ 손해청구 : 각 조정불성립결정 ※ 이행방법 • 인터넷 주간 강남신문 : [추후보도] 2013년 10월 11일까지 추후보도문을 홈페이지의 각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함

이 행 결 과	• 주간 강남신문 : 『“○○○부녀회 갈등, 폭력사태로 번져”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7일자 1면) • 인터넷 주간 강남신문 : 『“○○○부녀회 갈등, 폭력사태로 번져”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1일자)

2013서울조정1311	(정정청구) 우윤근 對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時論]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위헌이다』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1일자 38면)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이 헌법상 허용되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겸직 허용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통설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칼럼으로써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인 ‘사실적 주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조정보도내용에 현실적 악의가 없다)

2013서울조정1312	(손배청구) 1. 차○○, 2. 김○○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대리운전 업체, ‘불매운동 말라’ 가처분 신청』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6일자)
신청인주장	대리운전기사들이 업체의 횡포, 불법행위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벌이는 사진을 보도하면서 업체 대표인 신청인들의 성명을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 이행방법 : [기사삭제] 2013년 9월 26일 이후로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서 조정 대상기사가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함

2013경기조정131~134	(매체별 정정청구) 광명시 對 경도신문 ⁽¹³¹⁾ , 인터넷 경도신문 ^(132, 131과 병합) , 인천일보 ⁽¹³³⁾ , 인터넷 인천일보 ⁽¹³⁴⁾
조 정 대 상	• 경도신문 · 인터넷 경도신문 : 『광명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위법논란』 제하의 기사 (경도신문 2013년 7월 17일자 11면, 인터넷 경도신문 7월 17일자) • 인천일보 · 인터넷 인천일보 : 『광명시 ‘어린이집 위탁’ 불법투성이』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3년 7월 22일자 10면, 인터넷 인천일보 7월 22일자)
신청인주장	광명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는 과정에서 보육조례를 어기는 등 위법논란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경도신문 · 인터넷 경도신문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인천일보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약속) • 인터넷 인천일보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이행방법 • 경도신문 · 인터넷 경도신문 : [인터넷 경도신문에 정정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 경도신문 · 인터넷 경도신문 : 『“광명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위법논란”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경도신문 2013년 9월 12일자 11면, 인터넷 경도신문 9월 12일자) • 인천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0일자 10면) • 인터넷 인천일보 : 『“광명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위법논란”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9일자)

2013서울조정1313~1314 (매체별 정정청구) ○○대학교 對 세계일보,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 세계일보 : 『○○대 여직원 성추행 간부, 명퇴처리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9일자 12면) • 세계닷컴 : 『“○○대 여직원” 성추행 간부, 명퇴처리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대학교가 여직원을 성추행한 간부직원을 징계 없이 명예퇴직 처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세계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7일자 10면) • 세계닷컴 : 『[알려왔습니다] 7월9일자 12면 ‘○○대 여직원 성추행 간부, 명퇴처리 의혹’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6일자)
2013서울조정1315~1316 (정정 · 반론청구) ○○ 오브 ○○○○ 코리아 對 SBS-TV	
조 정 대 상	현장 21 프로그램 『113회 - 사람 잡는 ‘사설 캠프’』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6일자 20:55)
신청인주장	국토대장정을 진행해오던 신청인 단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단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SBS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SBS의 조정대상기사의 기사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던 것에 대한 사과문을 신청인의 홈페이지에 48시간 이상 게재함 ※ 이행방법 : [SBS에 반론보도] 신청인의 사과문 이행을 확인한 후 2013년 9월 12일 전까지 반론보도문을 SBS 홈페이지 시청자 코너에 관리자 명의로 48시간 이상 게재함
이 행 결 과	• SBS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1일자) • ○○ 오브 ○○○○ 코리아 홈페이지 : 『[공지] 김○○ 기자님께 사과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0일자)
2013서울조정1317, 1350 (매체별 손해청구) 남○○ 對 채널A, 인터넷 채널A	
조 정 대 상	• 채널A : 이영돈PD, 논리로 풀다 시즌2 프로그램 『14회 - 폭식』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25일자 21:50) • 인터넷 채널A : 『[다시보기] ‘이영돈PD, 논리로 풀다 시즌2’ 14회 (유료)』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6일자)
신청인주장	폭식증 환자인 신청인의 이름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50만 원 지급)

2013광주조정41~42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농업협동조합 對 호남매일, 인터넷 호남매일	
조 정 대 상	『○○ 농협, 불법주차장 운영 ‘말썽’』 제하의 기사 (호남매일 2013년 8월 14일자 15면, 인터넷 호남매일 8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농협이 주차장 부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호남매일에 반론보도] 2013년 10월 2일까지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농협’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호남매일 2013년 10월 1일자 15면, 인터넷 호남매일 10월 1일자)
2013서울조정1318~1321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병합) 한국방송공사 對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 경향신문 : 『공영방송 책임 묻게 하는 KBS MBC 보도행태』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8일자 27면) • 인터넷 경향신문 : 『[사설]공영방송 책임 묻게 하는 KBS MBC 보도행태』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7일자)
신청인주장	KBS가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과 관련해 축소 왜곡보도를 하는 등 공영방송으로서 지위를 망각한 채 불균형 보도를 일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경향신문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경향신문 : 『알려 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2일자 2면) • 인터넷 경향신문 : 『[알려왔습니다]2013년 8월8일자 사설』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1일자)
2013대구조정42~45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서○○ 외 2인 對 영남일보, 인터넷 영남일보	
조 정 대 상	『‘아파트 관리비리 의혹’ 입주민들 뿔났다』 제하의 기사 (영남일보 2013년 8월 28일자 6면, 인터넷 영남일보 8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전·현직 회장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신청인들이 유착해 아파트 관리 비리를 저질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인터넷 영남일보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영남일보에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아파트 비리 의혹’ 정정보도 합니다』 제하의 기사 (영남일보 2013년 9월 16일자 6면, 인터넷 영남일보 9월 16일자)

2013서울조정1322	(정정청구) 한국○○사학회 對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뉴라이트 교과서엔 “5·16은 혁명, 5·18은 폭동”』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사(史)학회가 집필을 주도한 역사교과서가 5·16은 혁명, 5·18은 폭동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 ‘이승만·박정희 독재 미화’ 뉴라이트, 역사흔들기 본격화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3일자)
2013서울조정1323~1327	(매체별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경향신문 ⁽¹³²³⁾ , 인터넷 경향신문 ^(1324, 1323과 병합) , 아이뉴스24(inews24) ⁽¹³²⁵⁾ , 오마이뉴스 ⁽¹³²⁶⁾ , 프레스바이플 ⁽¹³²⁷⁾
조 정 대 상	• 경향신문 : 『‘병’ 올리는 ‘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6일자 12면) • 인터넷 경향신문 : 『‘병’ 올리는 ‘을’ ... 대형마트 옷수선점 위탁운영하는 중견업체, 재위탁 점주에 관리비·법인세 등 전가 횡포』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6일자) • 아이뉴스24(inews24) : 『○○ ○○○위원회, 대형마트 의류수선점 피해사례 접수』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6일자) • 오마이뉴스 : 『대형마트 입점 수선점, 말이 좋아 사장님이지...』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6일자) • 프레스바이플 : 『○○○○○ 66점 리폼업자 합씨 “대통령도 소용없다”』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7일자)
신청인주장	대형마트 옷수선점을 위탁운영하는 신청인 회사가 재위탁 점주에게 관리비, 법인세 등을 전가 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경향신문·인터넷 경향신문 : 조정성립 (내용 : 인터넷 경향신문에 반론보도, 부제소) • 아이뉴스24(inews24)·오마이뉴스·프레스바이플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경향신문·인터넷 경향신문 : [인터넷 경향신문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 아이뉴스24(inews24)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일 09:00부터 24시간 동안 게재함 • 오마이뉴스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일 09:00부터 24시간 동안 게재함 • 프레스바이플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일 09:00부터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인터넷 경향신문 : 『[“위탁업체 횡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2일자) • 아이뉴스24(inews24) : 『[“대형마트 의류수선점 피해”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2일자) • 오마이뉴스 : 『“대형마트 입점 수선점 불공정 피해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2일자) • 프레스바이플 : 『[“○○○○○ 불공정계약”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2일자)

2013광주조정43	(정정청구) 강진군의회 對 장강신문
조 정 대 상	『[특별기고] 군의원들이여, 의원윤리강령을 되새겨 보라』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6일자 11면)
신청인주장	강진군의회 소속 의원이 불법 도축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군의원 불법 도축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6일자 6면)

2013서울조정1328~1329	(매체별 손해청구) 한○○ 對 YTN, 인터넷 YTN
조 정 대 상	• YTN : (1) 뉴스Q (1부) 프로그램 『공익요원 근무 중 칼부림』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23일자 15:58) (2) 뉴스Q (2부) 프로그램 『공익요원 교육 중 칼부림...1명 부상』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23일자 16:58) (3) 뉴스만만 (2부) 프로그램 『공익요원 교육 중 칼부림...1명 부상』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23일자 20:58) (4) YTN 뉴스나이트 (1부) 프로그램 『공익요원 교육 중 흉기 휘둘러』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23일자 21:58) (5) YTN24 프로그램 『공익요원 교육 중 흉기 휘둘러』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24일자 00:00) (6)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 『공익요원 교육 중 흉기 휘둘러』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24일자 08:50) • 인터넷 YTN : (1) 『[단독] 공익요원 교육 중 칼부림』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3일자) (2) 『[단독] 공익요원 교육 중 칼부림...1명 부상』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3일자) (3) 『공익요원 교육 중 흉기 휘둘러』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3일자)
신청인주장	공익요원이 교육 중 싸움이 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교육기관에 근무 중인 신청인의 초상을 몰래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YTN · 인터넷 YTN : 각 조정성립 (내용 : 인터넷 YTN 기사수정,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채소) ※ 이행방법 : [인터넷 YTN 기사수정] 2013년 10월 8일까지 인터넷 YTN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검색되는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제3자로 하여금 신청인을 추지할 수 없도록 조치함

2013서울조정1330~1346	(주)○○○○○ 對 뉴시스 ^(1330~1331 정정·손배청구) , 조선닷컴 ^(1332~1333 정정·손배청구) , 인터넷 헤럴드경제 ^(1334~1335 정정·손배청구)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1336~1337 정정·손배청구) , 인터넷 레프트21 ^(1338~1339 정정·손배청구) , 민중의소리 ^(1340~1341 정정·손배청구) , 디지털 에코데일리 ^(1342~1343 정정·손배청구) , 프레스바이플 ^(1344~1345 정정·손배청구) , 오마이뉴스 ^(1346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뉴시스 : 『민주, 대리기사 처우개선 입법 추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9일자) • 조선닷컴 : 『“乙종의 乙” 대리기사들, 강남 한복판서 구조 왜?』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새벽 3시, 대리기사들이 강남에 모인 이유는?』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4일자)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5초내 대답안하면 500원!”.. 대리운전업체의 황당한 벌금』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9일자) • 인터넷 레프트21 : 『투쟁에 나선 대리기사 노동자들 “더는 갑의 강도질을 참지 않겠다!”』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6일자) • 민중의소리 : 『집회도 새벽에 해야하는 ‘올빼미’ 대리 기사들의 절규』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6일자)

조 정 대 상	• 디지털 에코데일리 : 『○○타도 대리기사 투쟁본부 발족』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0일자) • 프레스바이플 : (1) 『난폭운영으로 대리기사 갈취한 대리운전업체』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4일자), (2) 『〈민주乙위〉 새벽2시 “대리기사” 길거리 간담회』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5일자) • 오마이뉴스 : 『“손님에게 2만원 받아서 3천원은 업소에 주세요”』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9일자)
신청인주장	대리운전 요청을 받은 업체와 대리기사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 개발 회사인 신청인이 대리기사에게 소개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뉴시스 · 조선닷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인터넷 레프트21 · 민중의 소리 · 디지털 에코데일리 · 프레스바이플 : 각 조정불성립결정 • 오마이뉴스 : 취하
2013서울조정1347~1348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김무성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 한겨레 : 『[아침 햇발] ‘백년전쟁’은 계속되는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8일자 31면) • 인터넷 한겨레 : 『[아침 햇발] ‘백년전쟁’은 계속되는가?/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7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의 부친이 친일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에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오피니언> 섹션의 <칼럼> 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김무성 의원 부친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3년 10월 11일자 2면, 인터넷 한겨레 10월 11일자)
2013서울조정1349 (정정청구) 라○○ 외 2인 對 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싸구려 컬러렌즈 착용 후 싹뚝이...막쓰면 ‘치명적’』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31일자 19:55)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안경사가 아닌 점원이 미용렌즈를 판매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iMBC에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iMBC에 정정보도] MBC-TV에서 정정보도 한 후에는 iMBC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MBC 이브닝 뉴스 프로그램 『“미용렌즈”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9월 27일자 17:00)

2013서울조정1351 (정정청구) 이○○ 對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단독] 뉴라이트 교과서 저자 “위안부 서술 잘못” 인정』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3일자)
신청인주장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사 교과서 저자인 신청인이 일본군 위안부 서술에서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수정할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약속)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뉴라이트 교과서 저자 “위안부 서술 잘못” 인정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7일자)
2013전북조정31 (정정청구) 1. (사)익산○○○○○○○○보전관리주민협의회, 2. 강○○ 對 익산시민뉴스	
조 정 대 상	『익산시 ○○ ○○마을가꾸기사업, ‘수상한 거래’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마을가꾸기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상한 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마을가꾸기 ‘수상한 거래’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6일자)
2013서울조정1352~1353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파주시청 對 파주신문, 인터넷 파주신문(파주뉴스)	
조 정 대 상	『1억 5천, 영국에 전달한 성금 불법으로 모금했다』 제하의 기사 (파주신문 2013년 8월 28일자 1면, 인터넷 파주신문(파주뉴스) 8월 28일자)
신청인주장	파주시장 일행이 영국을 방문해 전달한 전쟁박물관 지원을 위한 시민 성금이 기부금품 모집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파주신문(파주뉴스)에 반론보도] 2013년 10월 10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바로 아래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이 행 결 과	『“파주시장 불법 모금 성금 전달”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파주신문 2013년 10월 10일자 2면, 인터넷 파주신문(파주뉴스) 10월 10일자)
2013서울조정1354~1355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코스콤 對 뉴스1 코리아	
조 정 대 상	『사의표명 석달째인 사장이 인사권까지?』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3일자)
신청인주장	사의를 표명한 신청인 회사의 사장이 후임 전무이사 인사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금융·증권> 섹션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48시간 이상 게시함
이 행 결 과	『“사의 표명 코스콤 사장, 인사권 행사 시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일자)

2013서울조정1356~1357 (정정·손배청구) 신○○ 對 인터넷 기독교신보	
조 정 대 상	『이단과 이단연루자 소환조사키로』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0일자)
신청인주장	모 기독교 연합회 측이 목사인 신청인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신청인의 교회의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 손배청구 : 조정불성립결정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이단과 이단연루자 소환조사키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6일자)
2013서울조정1358 (정정청구) 전○○ 對 인터넷 일간스포츠	
조 정 대 상	『[단독 인터뷰] 이○○ “허위 사실 유포 경찰, 문책성 좌천”』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6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사건에 개입해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신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이○○, “허위 사실 유포 경찰, 문책성 좌천”]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3일자)
2013서울조정1363 (정정청구) 1. 황○○, 2. 최○○ 對 TV조선	
조 정 대 상	연예 해부 여기자 삼총사가 간다 프로그램 『3회 - 유명 아나운서 불륜설』 제하의 보도 (2013년 9월 6일자 19:40)
신청인주장	유명 아나운서가 남편과 별거 중 외도사실이 발각되어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증권가의 거짓 루머를 신청인의 실루엣 사진을 게재하여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경기조정135~136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협동조합 對 안산타임스, 인터넷 안산타임스	
조 정 대 상	『고금리 대출 ‘○○’ 선정 논란』 제하의 기사 (안산타임스 2013년 8월 12일자 2면, 인터넷 안산타임스 8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동조합이 아파트의 계약금 대출 금융사로 선정돼 논란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안산타임스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하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타운 계약금대출금융사 선정의혹 반론』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6일자 2면, 인터넷 안산타임스 9월 26일자)

2013경기조정137~138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안산시 對 안산타임스, 인터넷 안산타임스	
조 정 대 상	『고금리 대출 ‘○○’ 선정 논란』 제하의 기사 (안산타임스 2013년 8월 12일자 2면, 인터넷 안산타임스 8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안산시가 아파트 계약금 대출 금융사 선정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안산타임스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타운 계약금대출금융사 선정의혹 반론』 제하의 기사 (안산타임스 2013년 9월 26일자 2면, 인터넷 안산타임스 9월 26일자)
2013서울조정1364 (정정청구) (주)○○플랜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단독] 박○○ 전 차관 ‘○○랜드 공사청탁’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2010년 수주한 경관사업에 대해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청탁을 통해 수주하는 등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후속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후속보도] 2013년 9월 27일 10:00부터 홈페이지 사회면에 대체 기사를 게재함
이 행 결 과	『경찰, ○○랜드 석연치 않은 사업자선정 ‘내사’』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7일자)
2013서울조정1365~1366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 주식회사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뉴스 TALK] 마이너스 3만8914원 주식을 5,000원에 사라는 ‘○○○○’』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3년 9월 3일자 40면, 조선닷컴 9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20% 싼 기름’ 공급사업의 주식공모를 위해 금감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와 관련하여 외부 평가기관이 사실상 사업성이 없다고 판정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중재부의 결정에 따른 반론보도문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인 부당하다고 여기는 보도에 대한 정정내용이 제외됐다) ※ 이행방법 : [조선닷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경제면 초기화면에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로 반론보도문을 48시간 이상 게재함
2013서울조정1367 (손배청구) 이○○ 對 e채널	
조 정 대 상	대한민국 사건파일 No.5 프로그램 『11화 - 진실게임, 죽은 자는 알고 있다』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23일자 23:00)
신청인주장	유흥업소 여종업원 살인사건에 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간판이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200만 원 지급)

2013경기조정139 (반론청구) 광명시 對 인터넷 광명시민신문	
조 정 대 상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에 ‘공문서 위조’ 의혹까지...?』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4일자)
신청인주장	광명시가 한 민간위탁업체의 초과근무수당지급기준을 완화하는 등 특혜 논란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경기조정140~141 (정정 · 손배청구) 광명시 對 인터넷 광명시민신문	
조 정 대 상	『우리는 깃털일 뿐.. 몸통은 누구?』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5일자)
신청인주장	광명시의 민간위탁업체의 초과근무수당지급기준을 완화하는 등 특혜 논란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경남조정52~53 (매체별 정정청구) 거제시 對 경남신문, 인터넷 경남신문	
조 정 대 상	- 경남신문 : 『○○○ 협력사 기숙사 건립 특혜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2일자 6면) - 인터넷 경남신문 : 『거제 ○○협력사 기숙사 건립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2일자)
신청인주장	거제시가 도시계획 심의대상이 아닌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를 허가해 특혜논란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자연녹지지역도 심의대상이며 개발행위는 최종 허가된 바가 없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PR보도 게재 약속)
이 행 결 과	『거제시 ‘2020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추진 가속화』 제하의 기사 (경남신문 2013년 10월 7일자 8면, 인터넷 경남신문 10월 7일자)
2013서울조정1368~1369 (정정 · 손배청구) 채○○ 對 SBS-TV	
조 정 대 상	모닝와이드 (3부) 프로그램 『[현장] ① 버스에서 넘어진 남자, 왜?』 제하의 보도 (2013년 9월 2일자 07:3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시내버스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으나, 사고에 상습성과 고의가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에는 신청인의 성명, 초상 등 인적사항이 언급되지 않았고, 신청인이 유추되거나 특정되었다고 인정할만한 내용이 없다. 또한 피신청인이 언론사로서의 주의의무(모자이크, 음성변조, 반론권 등)를 충분히 기울였으며, 보도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2013대구조정46	(정정청구) 최○○ 對 뉴스쉐어
조 정 대 상	『타인의 채권, 채무 개입 ○○○파, 피의자 검거』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건물출입문 파손 외에도 횡령, 폭행, 주대 갈취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으나,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없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타인의 채권, 채무 개입 ○○○파, 피의자 검거’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5일자)

2013서울조정1370~1371	(매체별 반론청구) (주)○○○코리아 對 국토매일, 매일일보 인터넷
조 정 대 상	• 국토매일 : 『○○산업 공항철도 확충공사 속알이』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8일자) • 매일일보 인터넷 : 『○○○ 철도신호제어시스템 ‘부르는 게 값’』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공사 사업자에게 고액의 시스템 확장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국토매일 : [반론보도] 2013년 9월 30일 09:00부터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 매일일보 인터넷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국토매일 : 『[정정]』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30일자) • 매일일보 인터넷 : 『“○○○ 철도신호제어시스템 ‘부르는 게 값’”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30일자)

2013서울조정1372	(정정청구) (주)○○○홈즈 對 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이름만 ‘전기절감기’...』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17일자 19:55)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전기절감기 제품이 효과가 거의 없어 한 대형건물에서 제품설치 후 보름만에 떼어버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iMBC에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iMBC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iMBC : 『“전기절감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6일자)

2013서울조정1373 (정정청구) 서울특별시 對 KBS-1TV	
조 정 대 상	(1) KBS 뉴스9 프로그램 『현장추적』 차선 페인트 불량』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26일자 21:00) (2)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차선 페인트 ‘불량’』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27일자 06:00)
신청인주장	서울시 차선도색작업에 쓰이는 페인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서울시가 페인트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제품의 품질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1374~1376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한○○ 對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1) 『문캠프 투표 독려 카톡에 여성가슴사진』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9일자 6면) (2) 『[알려왔습니다] ◆2012년 12월 9일자 6면』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4일자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여성의 가슴에 대선 투표독려 글이 적힌 사진을 유포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 (1)은 ‘보도된 날로부터 6개월이 도과’ 한 경우에 해당되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대상 기사가 될 수 없으며, 조정대상기사 (2)로 인해 신청인의 인격적 · 사회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2013광주조정44 (정정청구) 신○○ 對 무안신문	
조 정 대 상	『노인회, 신구 회장간 폭력사태로 비화』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7일자 10면)
신청인주장	노인회 군지회의 회장인 신청인이 신체 건강한 사람들을 대동하고 지회 사무실을 방문해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노인회, 신구 회장간 폭력사태로 비화』 관련 반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일자 10면)
2013서울조정1377 (정정청구) ○○○성형외과병원 對 MBC-TV	
조 정 대 상	PD 수첩 프로그램 『969회 - 손님을 모십니다? 성형관광의 함정』 제하의 보도 (2013년 9월 10일자 23:15)
신청인주장	신청인 병원에서 중국인 환자가 양악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생겼으며, 상담의와 집도의가 다르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 이행방법 : [피신청인 유감표명] 조정대상보도와 관련, 중국인 환자의 수술 부작용이 신청인 병원의 시술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부정확하게 보도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대리인 명의로 유감을 표하는 서한을 발송하도록 함

2013경기조정142 (정정청구) ○○○노인복지회관 對 안성뉴스24	
조 정 대 상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기관, ‘관리감독 엉망’』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노인복지회관이 복지관 소속 활동보조인들의 근무일지를 위조하도록 부추기는 등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3부산조정56~57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주식회사 ○○○○○○ 對 울산신문, 인터넷 울산신문	
조 정 대 상	『이념편향적 구정 운영 비판 확산』 제하의 기사 (울산신문 2013년 9월 9일자 1면, 인터넷 울산신문 9월 8일자)
신청인주장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인 신청인 회사에 울산 북구청의 지원과 일감주기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울산신문에 정정 및 사과보도)
이 행 결 과	• 울산신문 : 『(주)○○○○○○○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4일자 2면)
2013서울조정1378 (정정청구) (주)○○제약 對 뉴시스헬스	
조 정 대 상	(1) 『“간 때문이야” ○○제약 ○○○...“건강한 사람에게 오히려 독(?)”』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1일자) (2) 『[종합] ○○제약 ‘○○○’...“건강한 사람에게 오히려 독(?)”』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제조, 판매해온 간기능 의약품이 피로회복 효과가 없는 간질환 치료제로서 건강한 사람이 복용할 경우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2013년 10월 2일 전까지 조정대상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란에서 조정대상 기사 검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함
2013서울조정1379 (반론청구) (주)○○저축은행 對 조선비즈닷컴	
조 정 대 상	『[단독] 황○○, ○○저축銀 수백억 원 부당이득 의혹증폭』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은행이 특정 회사에 대출집업무와 대출심사업무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과다지급하는 등 부당이득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반론보도문을 게재한 즉시, 포털사 네이버에 반론보도문을 전송하여 포털사 네이버를 통해 검색되도록 함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기업)섹션의 뉴스목록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013년 10월 17일 전까지 6시간(12:00부터 18:00까지)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저축은행 대출심사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6일자)

2013경기조정143~146	(매체별 조정 · 손해청구) 광명시의회 외 3인 對 경기일보, 인터넷 경기일보
조 정 대 상	• 경기일보 : 『광명시의회, 자매도시 의회와 도박판』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7일자 1면) • 인터넷 경기일보 : 『“광명 vs 안동” 시의원 자존심 걸고 멋진(?) 도박승부』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7일자)
신청인주장	광명시의회가 자매도시인 안동시의회와 합동세미나를 실시한 것이 관광성연수에 불과하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경기일보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인터넷 경기일보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경기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6일자 5면)
2013광주조정45~47	(매체별 조정청구) ○○유치원 對 연합뉴스 ⁽⁴⁵⁾ , 연합뉴스TV(뉴스Y) ⁽⁴⁶⁾ , 인터넷 연합뉴스TV 인터넷 뉴스Y ^(47. 46과 병합)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1) 『<유치원 간식이 국물뿐인 죽, 만두 한 개, 치즈 반쪽>』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9일자) (2) 『<기자수첩> 어른들 무관심에 배굶는 아이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3일자) (3) 『<“아이들은 상한음식에 부실간식, 보육교사는 라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3일자) (4) 『광주교육청 ‘부실 급식’ 유치원 특별 점검 착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3일자) (5) 『<고침> 지방(“아이들은 상한음식에 부실간식…”)』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3일자) (6) 『‘부실 급식’ 유치원 합동 점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5일자) (7) 『광주교육청 ‘부실 급식’ 유치원 특별 감사』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30일자) (8) 『<아이들에게 상한 김치 먹여도 처벌어려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30일자) • 연합뉴스TV(뉴스Y) : 지방시대 프로그램 『국물뿐인 죽, 치즈 반쪽…부실 급식 분통』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19일자 18:50) • 인터넷 연합뉴스TV(인터넷 뉴스Y) : 『국물뿐인 죽, 치즈 반쪽…부실 급식 분통』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아들에게 상한 음식을 먹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연합뉴스 : 취하 • 연합뉴스TV(뉴스Y) · 인터넷 연합뉴스TV(인터넷 뉴스Y) : 조정성립 (내용 : 인터넷 연합뉴스TV(인터넷 뉴스Y) 기사삭제, 이행강제금)

2013서울조정1380~1383, 1525, 1577	성○○ 對 국민일보 ^(1380~1381 정정·손배청구) , 경향신문 ^(1382~1383 정정·손배청구)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1525 정정청구) , 뉴스1 코리아 ^(1577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국민일보 : 『강사는 성희롱, 원장은 폭행... 조폭 뺨치는 무등록 과외학원』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7일자 8면) • 경향신문 : 『강사 성희롱 알렸다고 여중생 폭행, 무등록 학원 40대 원장 경찰 입건』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7일자 10면)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뉴스1 코리아 : 『‘여중생 둔기 폭행’ 무등록 과외교습소 원장 수사』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과외학원이 무등록 불법교습소이고, 학원 강사의 성희롱 때문에 과외를 그만두려는 여중생을 학원 원장인 신청인이 기절할 때까지 폭행했으며, 신청인이 여학생을 성희롱 했다는 보도 등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국민일보 : 조정불성립결정 • 경향신문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경향신문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취하 • 뉴스1 코리아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경향신문 : 조정대상기사가 2013년 10월 22일 이후로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뉴스섹션에서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함 • 뉴스1 코리아 : 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함, 단, 이는 신청인의 추후보도청구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이행방법 • 경향신문 : [인터넷 경향신문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 섹션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48시간 이상 게시함 • 뉴스1 코리아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에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48시간 이상 게재함
이 행 결 과	• 경향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7일자 2면) • 인터넷 경향신문 : 『[반론보도] <강사 성희롱 알렸다고 여중생 폭행>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7일자) • 뉴스1 코리아 : 『‘교습소 원장 여중생 폭행’ 관련 정정·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3일자)

2013광주조정48~53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조○○ 對 조간호남일보 ⁽⁴⁸⁻⁴⁹⁾ , 인터넷 조간호남일보 ^(50-51, 48-49와 병합) , 에버뉴스 ⁽⁵²⁻⁵³⁾
조 정 대 상	• 조간호남일보 : (1) 『옥상에 방치한 부패 김치...상한 수입산 음식』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4일자 1면), (2) 『[社説] ○○ 유치원 단속직원 책임 물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6일자 15면) • 인터넷 조간호남일보·에버뉴스 : (1) 『옥상에 방치한 부패 김치·상한 수입산 음식』 제하의 기사 (인터넷 조간호남일보 2013년 6월 23일자, 에버뉴스 6월 24일자) (2) 『교육청·구청 관리감독 이중 구조가 주범』 제하의 기사 (인터넷 조간호남일보 2013년 6월 23일자, 에버뉴스 6월 26일자) (3) 『○○ 유치원 합동 조사착수』 제하의 기사 (인터넷 조간호남일보 2013년 6월 25일자, 에버뉴스 6월 26일자) (4) 『○○ 유치원 단속직원 책임 물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아들에게 상한 음식을 먹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간호남일보·인터넷 조간호남일보 :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약속) • 에버뉴스 :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삭제, 이행강제금) ▷ 손배청구 - 취하 ※ 이행방법 • 조간호남일보·조간호남일보 : [인터넷 조간호남일보에 정정 및 반론보도] 2013년 10월 11일 까지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 시간 동안 게재함 • 에버뉴스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년 10월 11일까지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조간호남일보·인터넷 조간호남일보 : 『“옥상에 방치한 부패김치·상한 수입산 음식”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조간호남일보 2013년 10월 10일자 8면, 인터넷 조간호남일보 10월 11일자) • 에버뉴스 : 『“옥상에 방치한 부패김치,상한 수입산 음식”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0일자)
2013서울조정1384, 1396	(정정·손배청구) 도○○ 對 일요닷컴
조 정 대 상	『[박○○ 칼럼] 도○○ ○○○○ 재단 이사장의 해바라기는?』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일자)
신청인주장	최근 신청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의 홍보성 기사가 늘어난 이유가 신청인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친분을 과시해 이웃주민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500만 원,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중재부의 손해배상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손배청구 : 취하

2013서울조정1385~1386 (매체별 정정청구) (주)○○지오텍 對 전자신문 인터넷, 인터넷 주간조선	
조 정 대 상	- 전자신문 인터넷 : 『[기상청 그들만의 리그] (상)끊이지 않는 기상장비 입찰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3일자) - 인터넷 주간조선 : 『5개월 만에 청장 돌연 사임』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9일자)
신청인주장	기상산업진흥원의 지진조기경보관측 장비 입찰 과정에서 신청인 회사가 대표 배우자의 회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전자신문 인터넷 · 인터넷 주간조선 :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전자신문 인터넷 : 『“기상장비 입찰”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4일자) - 인터넷 주간조선 : 『“기상장비 입찰”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4일자)
2013서울조정1391~1393 (매체별 손해청구) 손○○ 對 e머니투데이 ⁽¹³⁹¹⁾ , 뉴스1 코리아 ^(1392, 1391과 병합) , 네이트 ⁽¹³⁹³⁾	
조 정 대 상	(1) 『이력서 사진 너무 잘 나와도 취업에 불리?』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9일자) (2) 『도곡동女 취업 면접 준비에 450만 원…뭘 했기에?』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이력서에 들어갈 증명사진의 보정에 대한 채용담당자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관해 보도하면서 동의 없이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e머니투데이 · 뉴스1 코리아 : 조정성립 (내용 : 연대하여 손해배상 25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트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5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e머니투데이 · 뉴스1 코리아 : 피신청인들은 각 포털사(네이버, 다음, 네이트, 파란, 구글 등)에 해당 사진 삭제(뉴스 및 이미지)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
2013서울조정1394~1395 (정정 · 손해청구) 정○○ 對 현대일보	
조 정 대 상	『광명, 어린이집 단속공무원 원장과 관외 ‘은밀한 식사’』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6일자 1면)
신청인주장	어린이집 원장인 신청인이 지역 어린이집의 지도감독과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시청 공무원과 부적절한 식사 자리를 가진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인터넷 현대일보에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현대일보에 정정보도] 홈페이지의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하되, 해당 기사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행 결 과	『“어린이집 원장과 공무원의 은밀한 식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현대일보 2013년 10월 18일자 2면)

2013서울조정1397~1400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병합) 조○○ 對 YTN, 인터넷 YTN	
조 정 대 상	• YTN : (1) 05:57 - 뉴스출발 (3,4부) 프로그램 『[현장24] 남대문 상인 ‘도로 사용료’ 날벼락』 제하의 보도 (2013년 9월 18일자 05:57), (2)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 『[현장24] 남대문 상인 ‘도로 사용료’ 날벼락』 제하의 보도 (2013년 9월 18일자 22:58) • 인터넷 YTN : 『남대문 상가 ‘도로 사용료’가 3억에 천만 원?』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8일자)
신청인주장	남대문시장 인근 도로 소유자인 신청인이 도로사용자들에게 부당한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YTN에 정정 및 반론보도] 2013년 10월 11일까지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23:00 <뉴스> 프로그램 말미에 방송하되, 원 조정대상보도 중에 사용된 관련 화면을 방송하도록 함 [인터넷 YTN에 정정 및 반론보도] YTN이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 후 3일 이내에, 홈페이지 다시보기 코너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검색될 수 있도록 함
이 행 결 과	• YTN :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 『남대문 상가 도로사용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9일자 23:40) • 인터넷 YTN : 『남대문 상가 도로사용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0일자)

2013경기조정147~148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주식회사 ○○○○○타운 對 안산타임스, 인터넷 안산타임스	
조 정 대 상	(1) 『○○○○타운 계약금 대출의 진실』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2일자 20면, 인터넷 안산타임스 8월 22일자) (2) 『[데스크] 의문이 풀리지 않는 김 시장의 성명서』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9일자 20면, 인터넷 안산타임스 8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회사가 아파트 계약금 대출 금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타금융사 보다 높은 금리의 금융사를 선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경기조정149 (손배청구) 김○○ 對 사자TV	
조 정 대 상	『성기노출 자위행위한 BJ○○ 8.15 특사』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인터넷개인방송에서 음란행위 중인 모습을 중계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 이행방법 : 조정대상기사에 게재된 모든 사진을 2013년 10월 8일 09:00까지 삭제하고 포털 사이트의 기사 검색에 있어서도 삭제 완료된 기사가 검색될 수 있도록 함

2013서울조정1401~1402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농림축산식품부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줄줄 새는 쌀 직불금』 제하의 보도 (2013년 9월 3일자 19:55) • iMBC : 『‘줄줄 새는’ 쌀 직불금...공무원, 농촌공사 직원 부정수령』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3일자)
신청인주장	쌀 직불금 부정수령자 명단에 정부 공무원과 공사 직원들이 올라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MBC-TV에 정정보도]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끝부분에 아나운서 육성으로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되, 그 동안 화면에는 위 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푸른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계속 표시하도록 함 [iMBC에 정정보도] 정정보도문을 홈페이지 경제면에 상위 5번째 이내로 48시간 이상 게재 하고, 다시보기 코너에 게시된 조 정 대 상 기사의 본문 바로 아래에도 이어서 게재함
이 행 결 과	• MBC-TV : MBC 뉴스데스크 『‘쌀 직불금 부정수령’ 관련 정정』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9일자 19:55) • iMBC : 『‘쌀 직불금 부정수령’ 관련 정정』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8일자)
2013서울조정1403~1404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대학교 산학협력단 對 전자신문, 전자신문 인터넷	
조 정 대 상	• 전자신문 : 『교육과정 늘리고 창업 활성화...○○·○○○·○○○대 최상위권 포진』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4일자 4면) • 전자신문 인터넷 : 『[2013 대학 지식재산 경쟁력평가]종합평가 1위부터 113위까지 공개』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피신청인의 대학평가 조사에 응한 바 없음에도 일부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측이 조정결과와 별도로 추가 소송에 대한 의사를 밝힌 바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 ※ 이행방법 : [전자신문 인터넷에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2013서울조정1405~1408 (매체별 정정청구) 허○○ 對 연합뉴스 ⁽¹⁴⁰⁵⁾ , 인터넷 미디어오늘 ⁽¹⁴⁰⁶⁾ , 노컷뉴스 ⁽¹⁴⁰⁷⁾ , 쿠키뉴스 ⁽¹⁴⁰⁸⁾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허○○ “일제시대 수탈과 개발 병존” 논란예고』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5일자)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일본 드라큐라 물려, 영생 얻어...‘일제강점기’는 북한용어”』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5일자) • 노컷뉴스 : 『‘일제시대에 ‘경제성장’을 했다고?’...국사편찬위원회 주장』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5일자) • 쿠키뉴스 : 『“일제시대 수탈·개발 병존”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일제시대에는 수탈과 개발이 병존했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연합뉴스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노컷뉴스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쿠키뉴스 :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정정보도] 홈페이지 정치면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연합뉴스 : 『〈허○○ 경희대 교수 특강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8일자)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정정보도] “허○○ 경희대 교수 특강”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8일자) • 노컷뉴스 : 『[허○○ 경희대 교수 특강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8일자) • 쿠키뉴스 : 『허○○ 교수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8일자)
2013서울조정1409~1410 (정정 · 손해청구) 1. 재단법인 ○○의료재단, 2. 주식회사 ○○ 對 투데이코리아	
조 정 대 상	『○○한방병원 “가족회사 통해 수십억 빼돌린 것 아니냐” 의혹에 .. “근거 없는 오해일 뿐?”』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의료재단의 이사장 일가가 자회사를 통해 수십억 원의 재단 이익을 착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3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사회〉 섹션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이상 게시함
이 행 결 과	『[보도문] ‘○○의료재단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3일자)
2013서울조정1411 (정정청구) 조달청 對 이데일리(인터넷)	
조 정 대 상	(1) 『[단독] ①○○, 10여년간 정부상대 4조 원 부당 이익』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4일자) (2) 『[단독] ②조달청 담합, 전자업체에 고질적 관행』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4일자) (3) 『조달청, ‘○○, 정부상대 4조 원 부당이익’ 본사기사에 변명 일관』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1일자) (4) 『○○ 조달청 비리의혹, 조달청 일방적 ○○편들기』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조달청이 실제 유통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국내 대기업과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하여 4조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해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전자 정부 상대 부당이익’ 기사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6일자)

2013서울조정412~1423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병합) 윤○○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1) 『파괴력 15배 강화한 장난감 총 주문하자 2시간만에 배송완료』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7일자 A10면), (2) 『진짜같은 장총·권총 즐비… 경찰 “무기庫 수준”』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2일자 A11면) • 조선닷컴 : (1) 『파괴력 15배 강화한 장난감 총 주문하자 2시간만에 배송완료』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7일자), (2) 『[단독] 파괴력 강화 ‘장난감 총’ 판매현장 단속 가 보니 … 진짜같은 장총·권총 즐비…경찰 “무기庫 수준”』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불법으로 모의 총기를 개조해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조선닷컴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조선닷컴에 반론보도] 2013년 10월 24일까지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도록 함 [조선닷컴 기사수정] 2013년 10월 24일까지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에 게재된 신청인 업체의 사진을 삭제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조선일보 : 『불법 총기 개조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3일자 2면) • 조선닷컴 : 『◇불법 총기 개조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2일자)
2013경기조정150~151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어린이집 對 경인일보, 인터넷 경인일보
조 정 대 상	『곰팡이 핀 위생 ‘찐찐한 어린이집’』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3년 8월 22일자 22면, 인터넷 경인일보 8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어린이집이 소속 원아들의 용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칫솔에 곰팡이가 피는 등 위생 점검 때문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경인일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 경인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0일자 22면) • 인터넷 경인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0일자)
2013서울조정1424	(정정청구) 이○○ 對 교회와신앙
조 정 대 상	『이○○ 목사 교회건물 등기, 여전히 진행 중?』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소유의 교회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이단&이슈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이상 동안 (단, 12:00부터 게재 시작) 게재함
이 행 결 과	『[○○○○교회 교회건물 등기이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7일자)

2013서울조정1425~1426 (매체별 손해청구) 안○○ 對 KBS-2TV, KBS미디어	
조 정 대 상	• KBS-2TV : KBS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천차만별! 교통사고 과실 비율』 제하의 보도 (2013년 9월 27일자 08:00) • KBS미디어 : 『[화제포착] ‘천차만별’ 교통사고 과실 비율』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7일자)
신청인주장	교통사고 관련 인터뷰를 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KBS-2TV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50만 원, 이행강제금) • KBS미디어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KBS미디어 : [기사수정] 2013년 10월 25일 15:00까지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 되는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도록 조치함
2013서울조정1427 (정정청구) 김명연 對 KBS-2TV	
조 정 대 상	추적 60분 프로그램 『19대 국회, 땅 보고서』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1일자 23:20)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시의원 시절 의회에서 자신의 땅이 포함된 신길동 그린벨트와 관련해 여러 차례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하결정 (사유 : 신청인은 2013. 10. 4. 당 위원회에 제출한 ‘언론조정신청서’ 상에 보도일자를 2013. 5. 1., 보도가 있음을 안 날을 2013. 5. 2.로 표기하였는 바, 신청인의 이 사건 조정신청일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이미 지난 시점이므로 신청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
2013서울조정1428~1429 (정정 · 반론청구) 1. 해양수산부, 2. 윤○○ 對 인터넷 미디어워치	
조 정 대 상	(1) 『해양수산 공기관 임직원들, 부산에 대규모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작성”』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6일자) (2) 『해양수산부, 부산민심 무시 “대연혁신도시 집단투기, ‘처음 듣는 일’”』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7일자)
신청인주장	부산으로 이전이 예정된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특별 분양 받은 혁신도시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세금을 탈루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해양수산부 고위층 대연혁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8일자)

2013서울조정1430~1435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병합) 주식회사 ○○○○ 對 일요서울, 인터넷 일요서울
조 정 대 상	• 일요서울 : (1) 『이○○ 회장 비리 의혹 문건 단독 입수』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2~3면) (2) 『○○ 내부 방패막 움직임 검찰, 이○○ 회장 겨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16~17면) (3) 『영포라인+이○○ 살생부작성→감찰→퇴출』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2~3면) • 인터넷 일요서울 : (1) 『[긴급점검]흔들리는 ○○ 기로에 서다-①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2) 『○○ 비자금 용처 주시...MB정권에 제공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3) 『[흔들리는 ○○ 기로에 서다-②탄] “이○○ 인사 전횡 화 부르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자회사가 96개나 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의 포털에도 전송하도록 함 ※ 이행방법 : [인터넷 일요신문에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16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일요서울 2013년 11월 15일자 3면, 인터넷 일요서울 11월 14일자)
2013서울조정1436	(정정청구) (주)○○○○○○○ 對 인터넷 한국마케팅신문
조 정 대 상	(1) 『6억여 원 매출 누락, 피해자들 어쩌나?』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3일자) (2) 『매출 누락은 자살행위다』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3일자)
신청인주장	모 대기업 통신사의 상품에 주력하여 다단계판매 사업을 해온 신청인이 고의로 매출을 누락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약속)
이 행 결 과	『○○○○○○○, ○○판매공제조합과 소송 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4일자)
2013서울조정1437~1438, 1478~147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홍○○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홍○○ 국기원 이사장 전횡...망가진 태권도계』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3년 10월 4일자 2면, 인터넷 한겨레 10월 4일자)
신청인주장	국기원 이사장인 신청인이 1억 원에 가까운 국기원 예산을 개인용으로 전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한겨레 : 조정성립 (내용 : 인터넷 한겨레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인터넷 한겨레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 :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스포츠> 섹션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48시간 이상 게시함
이 행 결 과	• 인터넷 한겨레 : 『<홍○○ 국기원 이사장 전횡...망가진 태권도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4일자)

2013서울조정1439~1440 (정정 · 손배청구) 성○ 對 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천만 원 ‘약침치료’·병원 피소』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18일자 19:55)
신청인주장	신청인 병원에서 암을 치료하던 환자가 신청인 병원의 거짓말 등으로 사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광주조정54 (정정청구) 강진군의회 對 장강신문	
조 정 대 상	『강진군의회, 의정비 동결 ‘눈 가리고 아웅’』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7일자 1면)
신청인주장	강진군의회 의정비가 전라남도 시·군 중에서 상위권이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1441~1443 (매체별 추후청구) 윤○○ 對 연합뉴스 ⁽¹⁴⁴¹⁾ , 네이버 ⁽¹⁴⁴²⁾ , 네이트 ⁽¹⁴⁴³⁾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1) 『장병원 “윤○○, 장애인 후원물품 횡령”(종합)』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2) 『장병원 “윤○○, 장애인후원물품 지역구 배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3) 『민주, 내곡동 사저·윤○○ 의혹에 공세』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0일자) (4) 『선관위 “윤○○ 장애인 후원물품 횡령의혹 조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5) 『장애인체육회, 직원 동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독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6) 『민주, 윤○○ 장애인 후원물품 횡령의혹 고발』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7) 『여야, ‘윤○○ 후원물품 횡령의혹’ 공방』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8) 『〈여야, ‘윤○○ 후원물품 횡령의혹’ 공방〉(종합)』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9) 『〈윤○○ 옥매트 횡령 의혹’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3일자) (10) 『검찰, 윤○○ 옥매트 횡령 의혹 수사착수』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9일자) (11) 『선관위, 주민투표법 위반혐의로 윤○○ 고발』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9일자) (12) 『옥매트 횡령 윤○○ 의원 불구속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4일자) (13) 『옥매트 횡령 윤○○ 의원 불구속 기소(종합)』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4일자) (14) 『장병원 “윤○○ 장애인체육회장 해임해야”』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5일자) (15) 『〈‘별금형 선고’ 장애인체육회장 거취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9일자) (16) 『〈윤○○ 직무정지..체육단체장 도덕성에 엄중한 잣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2일자) (17) 『‘직원 폭행’ 윤○○ 장애인체육회장 직무정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2일자) (18) 『‘직원 폭행’ 윤○○ 장애인체육회장 직무정지(종합)』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2일자) (19) 『체육단체 임원 직무상 범법 기소되면 직무정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3일자) • 네이버 · 네이트 : (1) 『장병원 “윤○○, 장애인 후원물품 횡령”(종합)』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2) 『장애인체육회, 직원 동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독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3) 『장애인체육회, 직원 동원 무상급식투표 독려(종합)』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4) 『‘별금형 선고’ 장애인체육회장 거취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9일자) (5) 『‘직원 폭행’ 장애인체육회장 직무정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2일자) (6) 『윤○○ 직무정지..체육단체장 도덕성에 엄중한 잣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2일자) (7) 『‘직원 폭행’ 윤○○ 장애인체육회장 직무정지(종합)』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2일자)
신청인주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인 신청인이 장애인 후원물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444~1447	(매체별 추후청구) 윤○○ 對 인터넷 한겨레 ⁽¹⁴⁴⁴⁾ , 네이버 ⁽¹⁴⁴⁵⁾ , 네이트 ⁽¹⁴⁴⁶⁾ , 다음 ⁽¹⁴⁴⁷⁾
조 정 대 상	(1) 『“기업 장애인용 기부→의원이 가로채→정치목적 사용”』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2) 『“장애인체육회장 한나라 윤○○ 의원 장애인 후원물품, 지역구·의원들에 뿌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3) 『“윤○○ 의원이 직원들 때렸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0일자) (4) 『선관위, 옥매트 빼돌린 윤○○ 의원 조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5) 『[사설] 장애인 기부물품 유용 의혹, 진상 규명 왜 피하나』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3일자) (6) 『“옥매트의 보복”』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4일자) (7) 『검찰 ‘옥매트 횡령 의혹’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0일자) (8) 『윤○○ 장애인체육회장 직무 정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2일자)
신청인주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인 신청인이 장애인 후원물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448~1451	(매체별 추후청구) 윤○○ 對 오마이뉴스 ⁽¹⁴⁴⁸⁾ , 네이트 ⁽¹⁴⁴⁹⁾ , 네이버 ⁽¹⁴⁵⁰⁾ , 다음 ⁽¹⁴⁵¹⁾
조 정 대 상	• 오마이뉴스·네이트·네이버 : (1) 『“장애인 지원용 ‘옥매트’, 한나라당 의원들이 착복”』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2) 『노조 간부 “윤○○이 욕설 후 얼굴 때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0일자) (3) 『음주 방송·옥매트 횡령, MB 아들까지... 나경원 먹구름』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0일자) (4) 『“장애인 폭행한 자가 장애인올림픽 개막식 참가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1일자) • 다음 : (1) 『“장애인 지원용 ‘옥매트’, 한나라당 의원들이 착복”』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2) 『노조 간부 “윤○○이 욕설 후 얼굴 때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0일자) (3) 『“장애인 폭행한 자가 장애인올림픽 개막식 참가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1일자)
신청인주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인 신청인이 장애인 후원물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윤○○ 장애인체육회장, 업무상횡령·선거법위반 무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8일자)
2013서울조정1452~1454	(매체별 추후청구) 윤○○ 對 뉴스1 코리아 ⁽¹⁴⁵²⁾ , 네이버 ⁽¹⁴⁵³⁾ , 네이트 ⁽¹⁴⁵⁴⁾
조 정 대 상	• 뉴스1 코리아·네이트 : (1) 『민주, 문방위 소속 의원들 “윤○○ 회장 장애인올림픽 참석은 국가적 망신”』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1일자) (2) 『장병완 의원 “윤○○ 회장 장애인올림픽 참석은 국가적 망신” 성명』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1일자) (3) 『직원 폭행’ 윤○○ 장애인체육회장, 직무정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2일자) • 네이버 : 『직원 폭행’ 윤○○ 장애인체육회장, 직무정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2일자)
신청인주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인 신청인이 장애인 후원물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뉴스1 코리아·네이트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네이버 : 취하

2013서울조정1455~1457	(매체별 추후청구) 윤○○ 對 인터넷 문화일보 ⁽¹⁴⁵⁵⁾ , 네이트 ⁽¹⁴⁵⁶⁾ , 다음 ⁽¹⁴⁵⁷⁾
조 정 대 상	『선거법 위반』 윤○○ 의원 벌금 80만 원 ~~...~~ 의원직 유지』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4일자)
신청인주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인 신청인이 장애인 후원물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458~1459	(매체별 추후청구) 윤○○ 對 프레시안, 네이버
조 정 대 상	(1) 『“한나라, 장애인 자원용 옥매트까지 빼돌려 지역에 살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2) 『“옥매트 횡령” 의혹 윤○○, 장애인체육회 직원 폭행』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0일자) (3) 『나경원, ‘음주방송’ 불끄니 ‘옥매트’에 ‘MB타운’까지』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0일자) (4) 『‘옥매트’ 윤○○ “폭행할 찰나까지 갔는데 말려서...”』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5) 『한나라 의원, ‘무상급식 투표’ 부정 행위로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9일자)
신청인주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인 신청인이 장애인 후원물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윤○○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횡령·선거법 위반 무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1일자)

2013서울조정1460~1465	(매체별 추후청구) 윤○○ 對 시사N Live(시사인 라이브) ⁽¹⁴⁶⁰⁾ , 네이버 ⁽¹⁴⁶¹⁾ , 뉴스토마토 ⁽¹⁴⁶²⁾ , 다음 ⁽¹⁴⁶³⁾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¹⁴⁶⁴⁾ , 네이트 ⁽¹⁴⁶⁵⁾
조 정 대 상	• 시사N Live(시사인 라이브) · 네이버 : 『“의혹 제기”를 ‘미담’으로 둔갑시킨 KBS』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4일자) • 뉴스토마토 · 다음 : (1) 『투표법 위반』 윤○○ 前의원 항소심서 벌금 3백만 원으로 감형』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8일자)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네이트 : (1) 『장애인체육회, 무상급식투표 직원동원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2) 『민주당 ‘장애인 후원물품 횡령 혐의’ 윤○○ 의원 고발』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3) 『윤○○ 후원물품 횡령의혹 ‘공방’』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4) 『“옥매트 빼돌린 혐의” 윤○○ 의원 불구속 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4일자)
신청인주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인 신청인이 장애인 후원물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시사N Live(시사인 라이브) · 네이버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네이트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뉴스토마토 · 다음 : 각 취하

2013서울조정1466~1467	(매체별 추후청구) 윤○○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네이트
조 정 대 상	(1) 『한나라당, ‘옥매트 스캔들’로 부패 의혹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2) 『윤○○ 장애인체육회장, 후원물품 횡령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신청인주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인 신청인이 장애인 후원물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468~1476

(매체별 추후청구) 윤○○ 對 에이블뉴스⁽¹⁴⁶⁸⁾, 뉴스캔⁽¹⁴⁶⁹⁾, 동아닷컴⁽¹⁴⁷⁰⁾, 민중의소리⁽¹⁴⁷¹⁾, 디지털 포천신문⁽¹⁴⁷²⁾, 인터넷 서울타임스⁽¹⁴⁷³⁾, 인터넷 데일리경제⁽¹⁴⁷⁴⁾, KNS뉴스통신⁽¹⁴⁷⁵⁾, 다음⁽¹⁴⁷⁶⁾

조 정 대 상

- 에이블뉴스 : (1) 『장애인체육회 공채, 부정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3일자)
- (2) 『윤○○ 회장, 후원 옥매트 ‘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7일자)
- (3) 『“윤○○ 회장, 직원폭행에 사직강요”』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0일자)
- (4) 『민주당, ‘윤○○ 회장 사퇴’ 촉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0일자)
- (5) 『선관위, 윤○○ 회장 선거법 위반 조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 (6) 『윤○○, ‘아니잖아’ vs 노조, ‘맞는데’』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 (7) 『민주, 윤○○ 장애인 후원물품 횡령의혹 고발』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 (8) 『윤○○, 알아서 의원·회장에서 물러나야』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 (9) 『“윤○○, 옥매트 횡령 해명 새빨간 거짓”』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 (10) 『민주당 진상조사위, ‘윤○○ 회장 고발’』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 (11) 『“윤○○ 회장, 모든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3일자)
- (12) 『윤○○ 회장 ‘일부 의혹’ 사실로』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3일자)
- (13) 『체육회 사무총장·홍보부장 직위해제』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4일자)
- (14) 『“윤○○ 회장, 보복인사 중단해야”』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4일자)
- (15) 『“정부, 윤○○ 회장 직무정지 시켜라”』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4일자)
- (16) 『“불법적 인사조치는 명백한 보복행위”』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4일자)
- (17) 『장애인체육회 직원, 윤○○ 회장 ‘고소’』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7일자)
- (18) 『대한장애인체육회 사태 냉정하게 대처하자』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7일자)
- (19) 『윤○○ 회장 의혹 진위여부 가려지나』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8일자)
- (20) 『“윤○○ 회장 해명자료 거짓” 질타』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0일자)
- (21) 『“적반하장 윤○○ 회장 사퇴해야”』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4일자)
- (22) 『윤○○ 회장 즉각 사퇴 촉구 침묵시위』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4일자)
- (23) 『“윤○○ 회장 사퇴촉구” 투쟁 강도 높여』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4일자)
- (24) 『장병완 의원, 윤○○ 회장 해임 촉구』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6일자)
- (25) 『[속보] 동부지검, 체육회 압수 수색 중』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8일자)
- (26) 『검찰, 윤○○ 옥매트 횡령 의혹 수사착수』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1일자)
- (27) 『장병완 의원, 윤○○ 회장 해임 촉구 등 주간뉴스』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3일자)
- (28) 『문광부, 윤○○ 회장 사태 뒷집지지 말아야』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3일자)
- (29) 『장애인체육 무시 장애인문화체육과에 분노』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5일자)
- (30) 『체육회 노조, ‘사무총장 임명 절차’ 반발』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30일자)
- (31) 『장병완 의원, 윤○○ 회장 해임 촉구 등 주간뉴스』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30일자)
- (32) 『“옥매트” 윤○○, 이번에는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일자)
- (33) 『강동구선관위, 윤○○ 의원 검찰에 고발』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2일자)
- (34) 『옥매트 횡령 윤○○ 의원 불구속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4일자)
- (35) 『윤○○ 회장 불구속 기소 엇갈린 ‘반응’』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5일자)
- (36) 『윤○○ 회장 정치노름 중단하고 사퇴하라』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7일자)
- (37) 『대한장애인체육회이사회 회장 해임 결의하라』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6일자)
- (38) 『“대의원들 윤○○ 회장 해임 결의하라”』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2일자)
- (39) 『“윤○○ 회장 장애인올림픽 참석, 국가 망신”』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1일자)
- (40) 『윤○○ 회장, 투표법위반·직원폭행 ‘유죄’』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9일자)
- (41) 『윤○○ 회장은 모든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6일자)
- (42) 『장애인체육회 윤○○ 회장 ‘직무정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3일자)
- (43) 『문광부, 윤○○ 회장 ‘직무정지’ 배경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3일자)

조 정 대 상	(44) 『문광부의 윤○○ 회장 취임 상인 철회 환영』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5일자) (45) 『윤○○ 회장 직무정지...법정공방 예고 등 주간 뉴스』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0일자) (46) 『윤○○ 회장님 제발 물러나 주세요』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6일자) (47) 『윤○○ 회장, 향소심서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8일자) • 뉴스캔 : 『민주당 “윤○○ ‘옥매트 차떼기’ 수사의뢰’』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 동아닷컴 : (1) 『선관위, 장애인후원 옥매트 뿌린 윤○○ 의원 조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8일자) (2) 『[@뉴스룸/이○○] 누가 그를 떠나게 했을까』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7일자) (3) 『갈 데까지 간 장애인체육회』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민중의소리 : (1) 『한나라당 의원 5인, 장애인 ‘옥매트 차떼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2) 『윤○○ ‘옥매트 횡령’ 의혹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3) 『윤○○ ‘옥매트 횡령’ 의혹, 장애인체육회 직원 증언 확보』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4일자) (4) 『‘옥매트’ 윤○○ 의원, 이번에는 주민투표법 위반』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9일자) • 디지털 포천신문 : (1) 『김영우 의원 ‘옥매트 사건’ 연루...선거법 위반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2) 『[社設] ‘옥매트 연루’ 김영우 의원의 도덕적 책임』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3) 『검찰, 옥매트 횡령 의혹 윤○○ 의원 수사착수』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0일자) • 인터넷 서울타임스 : (1) 『윤○○ 의원 서울 강동을 옥매트 배포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4일자) (2) 『윤○○ 의원(강동을) ‘옥매트 의혹’ 수사착수』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1일자) (3) 『윤○○ 의원 업무상 횡령혐의 불구속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5일자) • 인터넷 데일리경제 : 『민주, 한나라 ‘옥매트 차떼기’ 수사 촉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 KNS뉴스통신 : (1) 『민주당 “한나라당 옥매트차떼기 사건 규탄, 즉각적인 수사 착수 촉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2) 『장병완 의원 “한나라당 윤○○ 의원, 장애인 후원품 착복”』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3) 『민주당 “옥매트 차떼기 의혹 철저한 수사 촉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0일자) (4) 『민노당 “옥매트 사건, 윤○○ 의원 즉각 사퇴하라” 촉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5) 『민주당 “윤○○, 옥매트 의혹 거짓 해명하고 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6) 『“윤○○ 회장 해명시 제시한 기부금영수증도 가짜”』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0일자) (7) 『검찰, 윤○○ 한나라당 의원 ‘옥매트 횡령 의혹’ 수사착수』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9일자) (8) 『강동구 선관위, 강동구 윤○○ 한나라당 의원 고발』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9일자) (9) 『옥매트 횡령 새누리당 윤○○ 의원, 불구속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4일자) • 다음 : (1) 『‘벌금형 선고’ 장애인체육회장 거취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9일자) (2) 『‘직원 폭행’ 윤○○ 장애인체육회장 직무정지(종합)』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2일자) (3) 『윤○○ 직무정지..체육단체장 도덕성에 엄중한 잣대』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2일자)
신청인주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신청인이 장애인 후원물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에이블뉴스 :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기사삭제) • 뉴스캔 · 민중의소리 · 인터넷 서울타임스 · 인터넷 데일리경제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동아닷컴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디지털 포천신문 · KNS뉴스통신 :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처 리 결 과	• 다음 : 취하 ※ 기타 합의사항 • 동아닷컴 : 조정대상 기사를 매개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네이버, 다음, 네이트등)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함 ※ 이행방법 • 동아닷컴 [기사삭제] 조정대상기사 (1)을 삭제하고 검색되지 않도록 함 [기사수정] 조정대상기사 (3)의 내용 중 특정 문구를 삭제함
이 행 결 과	• 에이블뉴스 : 『윤○○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7일자) • 디지털 포천신문 : 『윤○○ 장애인체육회장, 업무상횡령·선거법위반 무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30일자) • KNS뉴스통신 : 『[추후보도문 대한장애인체육회 윤○○ 회장, 업무상횡령과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선고]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1일자)』

2013서울조정1477	(정정청구) 인천국제공항공사 對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1) 『인천공항 ‘서비스 평가 8연패’ 비결은 ‘특혜 보안검색’』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4일자 14면) (2) 『ASQ 평가 대상 항공기 탑승자 검색 특혜 사실』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8일자 9면) (3) 『[마감 후] 인천공항의 눈치와 억지』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7일자 30면)
신청인주장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세계공항서비스평가 평가 1위를 지키기 위해 평가 대상 항공편 승객들에게 보안검색에 대한 특혜를 주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7일자)

2013광주조정55~57	(매체별 추후청구) 윤○○ 對 광주일등뉴스 ⁽¹⁴⁶⁸⁾ , 인터넷 시민의소리 ⁽¹⁴⁶⁹⁾ , 중앙통신뉴스 ⁽¹⁴⁷⁰⁾
조 정 대 상	• 광주일등뉴스 : 『장병완 “비리혐의 기소 윤○○ 장애인체육회장 패럴림픽 참석은 국가적 망신”』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1일자) • 인터넷 시민의소리 : 『[장병완] 윤○○ 회장 해임 해야...』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5일자) • 중앙통신뉴스 : (1) 『윤○○ 의원 ‘장애인 후원 물품 옥매트 횡령의혹’ 조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2) 『장병완 의원 ‘윤○○ 옥매트 횡령 사건’ 해명 거짓말』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3) 『장병완 의원 ‘윤○○ 회장이 제시한 기부금 영수증 가짜로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0일자) (4) 『장병완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에 윤○○ 회장 해임 촉구”』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5일자) (5) 『장병완 의원 “윤○○ 장애인체육회장 올림픽 참석 국가 망신”』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1일자)
신청인주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인 신청인이 장애인 후원물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경남조정54 (정정청구) 의료법인 ○○재단 對 창원KBS-1TV	
조 정 대 상	뉴스인사이드 프로그램 『사천노인병원 횡포』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25일자 22:50)
신청인주장	도립 사천노인병원의 전 위탁운영자인 신청인 재단이 병원 진입로를 막고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현 수탁자가 병원 운영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480~1485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병합) ○○○○○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노조사무실 단전단수에 농약살포까지...판결 짓밟는 ○○○○○』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3년 7월 16일자 9면, 인터넷 한겨레 7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노조사무실 앞 잔디밭에 머물던 노조원들에게 대놓고 농약을 살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486 (정정청구) 1. ○○교회, 2. 윤○○ 對 MBC-TV	
조 정 대 상	PD 수첩 프로그램 『967회 - 목사님, 돈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27일자 23:15)
신청인주장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가 개인 재산을 축적하고 부당하게 재정을 전횡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487 (정정청구) ○○○○교육문화회관 對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교육문화회관 소속 수영강사들 부당 대우 '반발'』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관 소속 수영강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교육문화회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5일자)
2013서울조정1488 (정정청구) 황교안 對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1) 『황교안 법무 '떡값' 수수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4일자 A01면) (2) 『삼성X파일 수사 소극적... '떡값'과 관련 있었나』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4일자 A02면)
신청인주장	법무부 장관인 신청인이 과거 검사 시절 삼성 관련 수사 후 삼성으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489~149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김○○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地自體 기관長 궤찬 통진당원 38명… 野圈연대의 특혜?』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1일자 A05면) • 조선닷컴 : 『[단독] 地自體 기관長(산하 단체장, 지자체 지원 사회적 기업·민간단체 대표 등 포함) 궤찬 통진당원 38명… 野圈연대의 특혜?』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통합진보당 당위원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조선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4일자 2면) • 조선닷컴 : 『[바로잡습니다] 11일자 A5면 ‘地自體 기관長 궤찬 통진당원 38명…野圈 연대의 특혜?’ 기사』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4일자)
2013서울조정1493~1496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네트워크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통진당, 서울시 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바람처럼 궤찼다’』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9월 6일자 4면, 동아닷컴 9월 6일자)
신청인주장	통합진보당 당원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및 사회적 기업에 진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단체를 소개하였으나 신청인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이고 통합진보당과 관련이 없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10월 26일자 22면, 동아닷컴 10월 26일자)
2013광주조정58~62 (매체별 정정청구) ○○○○교육문화회관 對 뉴시스 ⁽⁵⁸⁾ , 전남매일 ⁽⁵⁹⁾ , 인터넷 전남매일 ⁽⁶⁰⁾ , 호남신문 ⁽⁶¹⁾ , 인터넷 호남신문 ^(62, 61과 병합)	
조 정 대 상	• 뉴시스 : 『“하루 7시간을 물속에서” 비정규직 수영 강사 반발』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5일자) • 전남매일·인터넷 전남매일 : 『“생리 중 물속에서 강습하라고?”』 제하의 기사 (전남매일 2013년 9월 16일자 8면, 인터넷 전남매일 9월 16일자) • 호남신문·인터넷 호남신문 : 『광주시 비정규직 수영 강사 ‘뿔났다’』 제하의 기사 (호남신문 2013년 9월 16일자 8면, 인터넷 호남신문 9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관이 소속 수영강사들에게 하루 7시간을 물속에서 강습하게 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뉴시스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전남매일·호남신문·인터넷 호남신문 :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인터넷 전남매일 : 취하 (사유 : 전남매일에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뉴시스 : 『[반론보도문] ‘하루 7시간을 물속에서’ 비정규직 수영강사 반발』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31일자) • 전남매일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2일자 6면) • 호남신문·인터넷 호남신문 : 『[바로잡습니다] ○○○○교육문화회관 수영강사 관련』 제하의 기사 (호남신문 2013년 10월 30일자 2면, 인터넷 호남신문 10월 29일자)

2013서울조정1497	(정정청구) ○○○○○협회아시아 서울지점 對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원전 품질서류 재검증 업체, 8년간 기기 검증 '0'』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4일자 17면)
신청인주장	원전의 품질서류 재검증 업체로 선정된 신청인이 최근 8년간 원전 기기검증 실적이 전무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3서울조정1498~1501	(매체별 추후청구) 양○○ 외 12인 對 조선일보 ⁽¹⁴⁹⁸⁾ , 중앙일보 ⁽¹⁴⁹⁹⁾ , 동아일보 ⁽¹⁵⁰⁰⁾ , MBC-TV ⁽¹⁵⁰¹⁾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광고주 협박 24명 전원 유죄』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0일자 1면) - 중앙일보 : 『광고주 압박 24명 모두 유죄』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0일자 2면) - 동아일보 : 『광고주 협박' 누리꾼 24명 모두 유죄』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0일자 1면) -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모두 유죄” .. 반발』 제하의 보도 (2009년 2월 19일자 20:55)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조선, 중앙, 동아일보 광고불매운동과 관련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신문에 대한 업무방해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조선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조선닷컴에 추후보도, 부제소) - 중앙일보 : 취하 (사유 : 온라인 중앙일보에 추후보도 게재) - 동아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동아닷컴에 추후보도, 부제소) - MBC-TV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피신청인 방송사 내부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중재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 기타 합의사항 - 조선일보 : 조선닷컴에 추후보도문을 게재한 즉시, 계약관계에 있는 포털사이트에 추후보도문을 전송하여 검색되도록 함 - 동아일보 : 동아닷컴에 추후보도문을 게재한 즉시, 계약관계에 있는 포털사이트에 추후보도문을 전송하여 검색되도록 함 ※ 이행방법 - 조선일보 : [조선닷컴에 추후보도] 조선닷컴 홈페이지 사회면(법원·검찰·경찰)색션의 뉴스 목록에 추후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 동아일보 : [동아닷컴에 추후보도] 동아닷컴 홈페이지 사회면(검찰·법원판결)색션의 뉴스 목록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 MBC-TV : [추후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말미에 추후보도, 진행자가 추후보도문을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함
이 행 결 과	- 조선일보 :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관련 추후 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일자 2면) - 조선닷컴 :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일자) - 온라인 중앙일보 : 『중·조·동 광고불매운동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8일자) - 동아일보·동아닷컴 : 『동·조·중 광고불매운동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11월 11일자 2면, 동아닷컴 11월 11일자)

2013서울조정1502~1503 (정정·손배청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對 뉴포커스	
조 정 대 상	『[단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현 직원 인터뷰(1)』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6일자)
신청인주장	정부예산 등으로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예산낭비 등 운영전반에 문제가 많다는 신원불명의 직원 인터뷰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현 직원 인터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0일자)
2013서울조정1504~1505 (정정·손배청구) 임○○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1) 『민주평통 ○○ 회장 ‘북한 막말 발언’ 도마에』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6일자) (2) 『안일한 민주평통 ○○ 회장...안보 ‘연수’를 ‘여행’으로 여겨』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6일자) (3) 『공·사 구분 못하는 민주평통 ○○ 회장』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6일자) (4) 『○○ 민주평통 “조국 통일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2일자)
신청인주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 협의회장인 신청인이 공식 회의에서 북한 정권에 대해 막말을 하고, 안보연수를 여행쯤으로 여기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지역섹션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이상 게시함
이 행 결 과	『“○○ 평통 회장의 북한 막말”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8일자)
2013서울조정1506 (정정청구) ○○○○(주) 對 SBS-TV	
조 정 대 상	SBS 8 뉴스 프로그램 『○○○○, ‘임대 수수료’ 덜 내려고...』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13일자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멀리플렉스 영화관의 홍보시설 재임대과정에서 이면계약을 통해 8억 6천여만 원의 임대수수를 빼돌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SBS에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점 이면계약 및 수수료 누락 사실 없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5일자)
2013서울조정1507~1508 (정정·반론청구) ○○○○대학교 對 인터넷 U s line	
조 정 대 상	(1) 『교육부, “번져가는 ○○○대 사태 보고만 있지 않겠다.”』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2일자) (2) 『[단독] 이사회-대학본부 내홍 ○○○대, 30일부터 감사원 감사』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대학교가 학교법인과 대학본부의 내홍으로 인해 2013. 9. 30부터 감사원 특별 감사를 받게 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감사받은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509	(정정청구) (주)○○제약 對 이버즈
조 정 대 상	『○○○가 피로회복제?...‘고객님~세뇌되었군요’』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피로회복제 광고를 하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하였으나 권고조치는 이미 광고를 수정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510~1513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1. 한국방송공사, 2. 이○○ 對 미디어오늘,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KBS, 이○○ 이사장 ‘인사청탁’ 의혹 특별감사』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3년 10월 9일자 1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10월 9일자)
신청인주장	KBS 이사장이 자신의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직접 KBS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 의혹을 부각하고 감사결과를 부정적으로 예단하여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514~1515	(정정 · 손해청구) 재단법인 ○○시청소년수련관 對 구리남양주넷
조 정 대 상	『○○○시청소년수련관, 중증장애인에 “XX욕감하네” 파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인이 주차문제로 항의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수련관의 장애인 출대가 심각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189~190 참조)]
2013경기조정152~153	(정정 · 손해청구) 이○ 對 미디어와이
조 정 대 상	『슈퍼 ‘갑’의 대명사 이○, 그 명예를 모르는 이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언론사 편집국장인 신청인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의 법적책임은 후배에게 강요하고 회사 수익을 챙긴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확인 되지 않은 근거 없는 보도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경기조정154~155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안산시 對 안산타임스, 인터넷 안산타임스
조 정 대 상	『김철민 시장에게 상식이란?』 제하의 기사 (안산타임스 2013년 10월 4일자 18면, 인터넷 안산타임스 10월 4일자)
신청인주장	안산시장이 특정 지역신문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안산타임스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전체기사’면 초기화면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에 24간 이상 반론보도문을 게재함
이 행 결 과	- 안산타임스 : 『김철민 시장에게 상식이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7일자) - 인터넷 안산타임스 : 『[반론보도문] ‘김철민 시장에게 상식이란?’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7일자)

2013서울조정1516~1519 (매체별 손해청구) 유○○ 對 연합뉴스 ⁽¹⁵¹⁶⁾ , 뉴스1 코리아 ⁽¹⁵¹⁷⁾ , 미디어스 ⁽¹⁵¹⁸⁾ , 오마이뉴스 ⁽¹⁵¹⁹⁾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신문 보는(?) 회장님』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7일자) • 뉴스1 코리아 : 『‘○○일보’로 얼굴 가린 장○○ 회장』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7일자) • 미디어스 : 『○○일보 전직기자들 ‘장○○ 구속수사’ 탄원』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8일자) • 오마이뉴스 : 『신문으로 얼굴 가리는 장○○ ○○일보 회장』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7일자)
신청인주장	모 언론사 회장의 수행기사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연합뉴스 :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50만 원 지급, 기사삭제) • 뉴스1 코리아 :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50만 원 지급, 기사수정) • 미디어스 :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50만 원 지급, 기사수정) • 오마이뉴스 :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50만 원 지급, 기사수정)
2013서울조정1520~1521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주)○○제약 對 헬스경향, 인터넷 헬스경향	
조 정 대 상	『‘○○○ 효능 논란’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헬스경향 2013년 10월 17일자 5면, 인터넷 헬스경향 10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일반의약품이 광고와는 달리 실제로 피로회복 효능이 없다는 주장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헬스경향 반론보도] 홈페이지 <기획특집>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이상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헬스경향 : 『○○제약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8일자 6면) • 인터넷 헬스경향 : 『[‘○○제약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헬스경향 2013년 11월 11일자)
2013서울조정1522 (정정청구) 이○○ 외 12인 對 인터넷 YTN	
조 정 대 상	『[뉴스! 정면승부] “완공 5개월된 송례문, 단청 벗겨진 이유는?” [YTN FM]』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참여한 송례문 보수 공사 석공팀이 전통기법이 아닌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현대공법으로 작업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1523~1524 (정정·반론청구) 국회사무처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430억짜리 ‘국회 전용 콘도’ 짓는 이유는?’』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제2국회의원 회관이 지나치게 호화스러우며, 장애인 편의성은 열악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후속보도] 후속보도문([알림])을 홈페이지의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기사 중 첫 머리 [편집자의 말]에 이어 상자기사 형태로 게재함
이 행 결 과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일자)

2013전북조정32~34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이○○ 對 전주MBC-TV
조 정 대 상	생방송 VIEW 프로그램 『〈오늘의 이슈〉 전북지방경찰청 부적절한 외상』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19일자 18:20)	
신청인주장	경찰청 경무과장인 신청인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제때 음식값을 내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알림기사 게재,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생방송 VIEW 프로그램 『지난 8월 19일 생방송 뷰에서...』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29일자 18:20)	
2013서울조정1526~1527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1. ○○○○○○학교, 2. 전○○ 對 서울문화투데이, 인터넷 서울문화투데이
조 정 대 상	- 서울문화투데이 : (1) 『예술계 대학 각종 비리 또다시 도마에...』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4일자 1면), (2) 『비리로 흔들리는 예술대학, 출구는 어디에』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4일자 5면) - 인터넷 서울문화투데이 : 『예술계 대학 각종 비리 또다시 도마에...』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1 대학의 교수 임용에 비리가 있었으며, 소속 교수(신청인 2)가 학생들에게 금품을 강요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서울문화투데이에 정정 및 반론보도] 서울문화투데이에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게재하는 합의사항을 이행한 직후 가장 빨리 도래하는 날 오전 10시부터 24시간 동안 인터넷서울문화투데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함	
이 행 결 과	- 서울문화투데이 : 『“H대학 비리 의혹”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3일자 2면) - 인터넷 서울문화투데이 : 『[“H대학 비리 의혹”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3일자)	
2013경남조정55		(정정청구) 거제시 對 거제인터넷신문
조 정 대 상	『[논평] ‘MOU’ 좋아하다가 ‘양치기 소년’ 될 수 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1일자)	
신청인주장	거제시가 한국해양대와 거제캠퍼스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캠퍼스 부지 20만평을 제공해주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최상단에 조정대상기사 상의 MOU 체결 사진과 함께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함	
이 행 결 과	『거제시, 한국해양대 거제캠퍼스 구축 MOU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1일자)	

2013서울조정1528, 1535~1536, 1564~1565	(정정청구) (병합) ○○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3인 對 1. 전자신문 인터넷 ^(1528, 1535~1536, 1565 각 정정청구) , 2. 전자신문 ^(1564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전자신문 인터넷 : 『[2013 대학 지식재산 경쟁력평가]종합평가 1위부터 113위 까지 공개』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3일) • 전자신문 : 『교육과정 늘리고 창업 활성화...○○·○○○·○○○대 최상위권 포진』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4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들이 피신청인의 대학평가 조사에 응한 바 없음에도 일부 항목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전자신문에 정정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들이 조정결과와 별도로 추가 소송에 대한 의사를 밝혀온 바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 ※ 이행방법 : [전자신문 인터넷에 정정보도] 전자신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날의 정오부터 48시간 동안 전자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함
2013서울조정1529~153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김○○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영주시, 시의원 땅 용도변경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3년 10월 16일자 13C면, 인터넷 한국일보 10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시의원인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용도변경의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광주조정63	(정정청구) 장성군 對 장성군민신문
조 정 대 상	『군, 내년도 예산 줄어들 것으로 관측돼』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30일자 2면)
신청인주장	장성군의 국비 사업 유치와 관련해 적자가 예상되는 수영장 건립을 제외하고 새로운 국비사업 유치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군, 내년도 예산 줄어들 것으로 관측돼』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4일자 2면)
2013서울조정1533~1534	(정정·손배청구) 광○○ 對 서울교육방송
조 정 대 상	『양기대 시장을 데리고 살아-성희롱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8일자)
신청인주장	공무원인 신청인이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여성에게 시장을 데리고 살라는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취재수첩섹션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1주일 이상 게시함, 이를 완료한 후 정정보도문을 삭제할 경우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하나 조정대상기사도 함께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행 결 과	『광명시 ○○○○실 ○○, 민원인에 “시장 데리고 살아라” 사실과 달라(2013서울조정1533·1534 정정, 손배1,000만 원 사건 조정합의서)』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7일자)

2013강원조정20	(손배청구) 최○○ 對 삼척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삼척) 프로그램 『대형마트 영업제한 행정예고, 다음달 시행 예정』 제하의 보도 (2013년 9월 9일자 20:40)
신청인주장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행에 관해 보도하면서 마트에서 시식 중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50만 원, 삼척MBC-TV 홈페이지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삼척MBC-TV 홈페이지 기사삭제] 조정대상보도를 포함하여 신청인이 보도된 영상 일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향후 재방송 및 인터넷 VOD영상에도 방송되지 않도록 함
2013서울조정1537~1538	(정정 · 손배청구) 옥○○ 對 미디어펜(Mediapen)
조 정 대 상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왜 옥○○ 사무총장을 문제삼지 않는가?』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한 것을 상속받은 것임에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기사수정]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와 남편 구속, 법의 준엄한 판단 필요』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3일자) 중 “옥○○ ○○○ 발전위원회 前사무총장도 마찬가지다” 부분을 삭제함
2013서울조정1539	(손배청구) 재단법인○○○○장학재단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장학숙 부지매입과정 들여다보니 (수정 종합)』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재단이 기숙사 건립부지를 시세보다 과다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 매입과정에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540~1541	주식회사 ○○○인터내셔널 對 MBC-TV^(1540 반론청구), 쿠키뉴스^(1541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납’ 함유 과일주스 수백 톤 유통』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20일자 19:55) • 쿠키뉴스 : 『수입이래서 좋은 줄 알았는데...○○○ 주스, 납 범벅』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국제 기준치보다 3배 높은 납 성분이 포함된 과일주스를 현재에도 유통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MBC-TV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iMBC에 반론보도, 부제소) • 쿠키뉴스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후속보도 게재) ※ 이행방법 • MBC-TV [반론보도] <MBC 이브닝 뉴스>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하고, 진행자의 멘트 중 배경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되지 아니한 <○○○> 제품 그림이 포함되도록 함 [iMBC에 반론보도] 홈페이지에 반론보도의 VOD 화면을 보도함
이 행 결 과	• MBC-TV : MBC 이브닝 뉴스 프로그램 『반론 보도문 “남아공산 주스, 2011년 이후 수입 제품은 국제 기준치 적합”』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15일자 17:00) • 쿠키뉴스 : (1) 『“납성분 제로 ○○○ 주스, 안심하고 드세요”』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6일자), (2) 『“친절한 쿠키자” ○○○야, 미안~ 색시한 기사로 많이 아팠지?』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6일자)

2013서울조정1542 (정정청구) 최○○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청와대 춘추관장 부친 조의금 10억 넘었다는데...”』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4일자)
신청인주장	청와대 춘추관장인 신청인이 부친상 중 받은 조의금이 15~17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최○○ 춘추관장 조의금’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일자)
2013대전조정71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충청투데이	
조 정 대 상	『LH ○○신도시 첫 아파트 청약미달 사태』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일반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로 인해 신도시 LH아파트 청약 미달사태가 발생했다는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과 조정대상기사 사이의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정대상기사에 신청인의 인격적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만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3서울조정1543~1544 (정정·반론청구) ○○대학교병원 對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대병원, 환자보다 ‘비용 절감’ 신경』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4일자 1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병원이 재정적자 타개를 위해 각종 검사실적을 늘리고 진료용 물품을 저렴한 것으로 구입해 환자보다 비용절감에 신경 쓰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경향신문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경향신문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섹션 내 <사회>섹션 초기화면 주요기사 코너의 기사목록 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경향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3일자 2면) - 인터넷 경향신문 : 『[반론보도문]2013년 10월 4일자 12면』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2일자)
2013서울조정1545~1548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류○○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민간단체 기부금 씹짓돈처럼 사용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6일자 12면) - 동아닷컴 : 『[단독] 유니세프 한국총 첫 공채출신 사무총장 1월초 해임 이유 알고 보나...』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전 사무총장인 신청인이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개인용으로 사용해 해임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대구조정47	(정정청구)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對 대가야신문
조 정 대 상	(1) 『지난해 태풍 산바로 인한 회천제방 붕괴 원인, 성주댐 방류가 직접적 원인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0일자 1면) (2) 『2013년 회천 제방붕괴 사건 재구성』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0일자 6~7면)
신청인주장	고령군 회천 제방 붕괴의 직접적 원인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성주댐의 방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사실적 주장이 아닌 피신청인 언론사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며, 관련 논란을 둘러싸고 충분히 사실과 후속보도를 통해 보도한 바 있다)
2013서울조정1549~156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함○○ 외 7인 對 컵뉴스 ^(1549~1550) , 크리스찬연합신문 ^(1551~1552) , 인터넷 교회연합신문 ^(1553~1554) , 주간 교회연합신문 ^(1555~1556) ,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 ^(1557~1558) , 기독교한국신문 ^(1559~1560) , 인터넷 국제경찰신문 ^(1561~1562)
조 정 대 상	• 컵뉴스 : (1) 『○○○○교회 “정당한 권한 절차” 입증』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0일자) (2) 『유언비어에 휩싸인 ○○○교회의 정상화 열망』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8일자) (3) 『○○○○교회 1년8개월, 무슨 일이 있었나』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9일자) (4) 『작교연 ○○○교회서 희망콘서트 개최』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6일자) (5) 『○○○○교회 목사 면직 청원 접수 적법성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0일자) • 크리스찬연합신문 : (1) 『○○○○교회의 제명 출교 “정당한 권한과 절차” 입증』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8일자 12면) (2) 『유언비어에 휩싸인 ○○○교회의 정상화 열망』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9일자 9면) (3) 『작교연 ○○○교회서 희망콘서트 개최』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일자 5면), • 인터넷 교회연합신문 : (1) 『징계자 8인 주장에 ‘허위 사실 유포’ 맞대응』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0일자), (2) 『노회측 “문제 없다” VS 교회측 “총회 헌법 위반”』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0일자) • 주간 교회연합신문 : 『○○○○교회, “모든 절차 문제 없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8일자 7면) •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 : (1) 『○○○○교회, 교인 제명출교처분 두고 상반된 주장』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0일자) (2) 『“천주교인과 재혼” 두고 진실공방 가열』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3) 『○○○○교회 사태, ‘선부른 판단 이르다’』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9일자) (4) 『○○○○교회, 목사면직청원접수 적법성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0일자) • 기독교한국신문 : 『○○○○교회, 교인 제명출교처분 두고 상반된 주장』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8일자 6면) • 인터넷 국제경찰신문 : 『교회를 빼앗으려는 노회 기사분류: 교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0일자)
신청인주장	교회에서 제명출교 처리를 당한 신청인들이 모 목사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렸으며, 이들이 제기한 목사 면직청원 접수에 적법성 논란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컴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반론·사과보도,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크리스찬연합신문 : 조정성립 (내용 : 반론 및 사과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인터넷 교회연합신문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주간 교회연합신문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5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독교한국신문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인터넷 국제경찰신문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3서울중재 187~188 참조)] ※ 이행방법 • 컴뉴스 : [정정·반론·사과보도] 홈페이지 <교회·교단> 섹션에 정정·반론·사과보도문 제목을 72시간 이상 게재함 • 인터넷 교회연합신문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종합기사> 섹션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72시간 이상으로 게재함 •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교계교단> 코너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72시간 이상 게재하고, 이를 완료한 후에는 조정대상기사 (1) 및 (3)의 본문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함
이 행 결 과	• 컴뉴스 : 『“○○○교회 사태’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2일자) • 크리스찬연합신문 : 『“○○○교회 사태’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4일자 2면) • 인터넷 교회연합신문 : 『“○○○교회 제명출교’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0일자) • 주간 교회연합신문 : 『“○○○교회 제명출교’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4일자 7면) •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 : 『“○○○교회 사태’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2일자) • 기독교한국신문 : 『“○○○교회 사태’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일자 6면)
2013광주조정64~6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건설(주) 對 전광일보, 인터넷 전광일보	
조 정 대 상	『○○ 관내 건설현장 폐기물 불법자행 ‘또 말썽’』 제하의 기사 (전광일보 2013년 9월 30일자 1면, 인터넷 전광일보 9월 30일자)
신청인주장	도로확장공사를 시행중인 신청인 회사가 허가 없이 폐기물을 처리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약속) ※ 이행방법 : [인터넷 전광일보에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 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전광일보 : 『“○○ 관내 건설현장 폐기물 불법 자행 ‘또 말썽’』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2일자 2면) • 인터넷 전광일보 : 『[“○○ 관내 건설현장 폐기물 불법 자행 ‘또 말썽’』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1일자)

2013서울조정1563	(정정청구) 국가인권위원회 對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또, 귀 막고 입 닫은 인권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0일자 8면)
신청인주장	국가인권위원회가 밀양송전탑 긴급구제 신청건에 대해 인권침해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인터넷 서울신문에 정정보도, 인터넷 서울신문 기사수정, 부제소) ※ 이행방법 [인터넷 서울신문에 정정보도] 홈페이지 사회면의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24시간동안 정정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게재함 [인터넷 서울신문 기사수정]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중 <표>는 삭제하며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이 행 결 과	『국가인권위원회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3년 11월 16일자 6면, 인터넷 서울신문 11월 16일자)
2013서울조정1566	(정정청구) 서울시태권도협회 對 스포츠서울닷컴
조 정 대 상	『국기원 신임 이사 선임은 했지만? 임원 결격 사유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의 회장이 국기원 신임이사로 선출됨에 있어 결격 사유가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국기원 신임이사 서울시태권도협회 임○○ 회장 결격 사유 안 돼』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1일자)
2013서울조정1567	(정정청구) 장○○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여당의 ‘SNS 흑역사’를 보면 국정원 댓글이 보인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국회의원 시절 제한한 법률개정안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정치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이 행 결 과	『“SNS 흑역사” 기사 관련 장○○ 전 의원의 반론』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9일자)

2013서울조정1568~1569 (정정·손배청구) 심○○ 對 SBS-TV	
조 정 대 상	SBS 뉴스퍼레이드 프로그램 『네트워크 현장』 청주 - 800만 관객 사로잡은 한복』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4일자 17:00)
신청인주장	영화 ‘관상’에 나오는 의상 대부분이 청주의 한 한복집에서 만들어졌다는 보도되었으나, 해당 한복집은 신청인에 원단만 제공하였을 뿐 의상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정정보도] <뉴스 퍼레이드 - 네트워크 현장(전국방송)> 프로그램 말미(기상 정보 전)에 정정보도함
이 행 결 과	SBS 뉴스퍼레이드 프로그램 『800만 관객 사로잡은 한복』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6일자 17:00)

2013서울조정1570~1573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최○○ 對 현대일보, 인터넷 현대일보	
조 정 대 상	• 현대일보 : 『인천시, 비공개 처리 결정』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2일자 1면) • 인터넷 현대일보 : 『4년간 정보공개 청구 1,608건 ‘악성민원’』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인천시에 4년간 1,680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해 왔으며,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많아 최근 신청인이 제기한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정보공개심의회 결정 처분」 취소청구가 각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현대일보에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인천시, 비공개 처리 결정」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현대일보 2013년 11월 22일자 2면, 인터넷 현대일보 11월 22일자)

2013경기조정156~15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최○○ 對 기호일보, 인터넷 기호일보	
조 정 대 상	• 기호일보 : 『3년여간 진정·민원만 1,608건 악성민원인 알권리 거부 타당』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7일자 18면) • 인터넷 기호일보 : 『3년여간 진정·민원만 1,608건 악성민원인 알권리 거부 타당』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인천시에 4년간 1,680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해 왔으며,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많아 최근 신청인이 제기한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정보공개심의회 결정 처분」 취소청구가 각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기호일보에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3년 11월 22일자 2면, 인터넷 기호일보 11월 22일자)

2013서울조정1574~1575 (정정·손배청구) 김○○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주미 외교관 영주권 신청설 ‘진위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주한미국 외교관인 신청인과 그 배우자가 미국 정부에 영주권을 신청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미 애틀랜타주 K영사, “영주권 신청한 사실 없어”』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14일자)
2013서울조정1576 (반론청구) ○○○코리아 주식회사 對 KBS-1TV	
조 정 대 상	(1) KBS뉴스 7 프로그램 『납품 규정 변경 ‘의혹’』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29일자 19:00) (2)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의혹의 KTX 선로』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30일자 06:00) (3) KBS 뉴스12 프로그램 『값싼 부품·AS 단축…의혹의 KTX 선로』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30일자 12: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납품한 경부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구성품이 저가 외국산이며, 레일체결장치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단축 변경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조건부 추후보도 게재 약속)
2013광주조정68~69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담양군 對 담양신문, 인터넷 담양신문	
조 정 대 상	- 담양신문 : 『‘사설’-수사 받고 있는 메타세쿼이아 입장료 수입』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2일자 1면) - 인터넷 담양신문 : 『[사설]수사 받고 있는 메타세쿼이아 입장료 수입』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3일자)
신청인주장	담양군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 수입에 대해 의혹 보도를 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담양신문에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담양신문 : 『「사설」 - 수사 받고 있는 메타세쿼이아 입장료 수입』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6일자 2면) - 인터넷 담양신문 : 『‘담양군 성명서에 대하여’ 관련 반론 보도문 : ‘사설’- 수사 받고 있는 메타세쿼이아 입장료 수입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일자)
2013전북조정35 (손배청구) 재단법인 ○○○○장학재단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장학숙 부지매입과정 들여다보니 (수정 종합)』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장학재단의 기숙사 부지 매입 과정에 의혹이 있으며, 과도한 비용으로 부지를 매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경남조정58	(정정청구) 거제시 對 거제인터넷신문
조 정 대 상	『[社告] 거제시의 ‘거제인터넷신문 탄압’ 당당히 맞설 것이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8일자)
신청인주장	거제시 소속 공무원이 시에 비우호적인 논평기사를 게재한 언론사를 상대로 기사를 삭제하도록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피신청인 유감표명)
2013경남조정59	(정정청구) 거제시 對 거제인터넷신문
조 정 대 상	『거제 택시 탑재 네비게이션 부실 의혹 논란 계속될 전망』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2일자)
신청인주장	택시에 탑재된 네비게이션 부실 의혹에 관해 거제시브랜드택시위원회가 해명설명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거제시가 위원회와 사전 대책회의를 한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메인탑 하단 기사목록에 조정대상기사 하단의 사진과 함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거제시, 브랜드택시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8일자)
2013서울조정1578~1579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조○○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초특가” “반값 할인” 조심』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15일자 19:55), (2)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할인을 뺏기기” 꿈수』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16일자 06:00) • iMBC : (1) 『소셜커머스 ‘할인을 뺏기기’...“반값 할인” 꿈수 조심』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5일자), (2) 『“1만 원 할인해준단더니 4천 원?”...소셜커머스업체 ‘꿈수’』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쌀국수집이 소셜커머스에서의 ‘뺏기기 할인’으로 소비자를 속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반론보도] <이브닝 뉴스> 및 <뉴스투데이> 프로그램에 반론보도,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화면으로 함 [iMBC에 반론보도] MBC-TV에 반론보도가 있는 후 2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반론보도문을 제공함
이 행 결 과	• MBC-TV : (1) MBC 이브닝 뉴스 프로그램 『‘소셜커머스 할인율’ 보도 관련 반론』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13일자 17:00), (2) MBC 뉴스투데이 (1부) 프로그램 『‘소셜커머스 할인율’ 보도 관련 반론』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14일자 06:00) • iMBC : 『‘소셜커머스 할인율’ 보도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3일자)

2013경기조정160~161 (정정 · 손해청구) 인천국제공항공사 對 경인일보	
조 정 대 상	『공항공사 해외출장비는 ‘쌈짓돈’ 통장으로 받고 법인카드로 결제』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6일자 1면)
신청인주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들이 해외출장비를 개인통장으로 지급받은 뒤 현지에서는 법인카드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해외출장비”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2일자 2면)
2013서울조정1580, 1592 (매체별 정정청구) 한국○○○○○협동조합 對 전자신문 인터넷, 전자신문	
조 정 대 상	- 전자신문 인터넷 : 『[이슈분석]속살이 ‘한전PLC’ 사업』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5일자) - 전자신문 : 『“담합에 불랑까지...스마트그리드 ○○○ 사업 중단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8일자 6면)
신청인주장	한국전력공사가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저압원격검침 사업에 사용되는 PLC(전력선통신)기술에 대해 현장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업에 관련된 납품업체들의 조합인 신청인이 조합에 참여한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PLC칩을 공급하는 담합을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전자신문 인터넷 : 취하 - 전자신문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전자신문 인터넷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전자신문 : [전자신문 인터넷에 반론보도] 홈페이지의 전자신문섹션 내 디바이스섹션 내 전체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전자신문 :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2일자 6면) - 전자신문 인터넷 : 『○○○칩 공급 담합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1일자)
2013서울조정1581~1582 (정정 · 손해청구) ○○건설주식회사 對 현대일보	
조 정 대 상	(1) 『김포시, 불법매립으로 ‘몸살’』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30일자 1면) (2) 『김포시장 최측근 개입설 ‘파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김포시 고촌지역 토사운반 계약과 관련하여 시장의 최측근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583~1584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대학교 對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닷컴	
조 정 대 상	• 아시아투데이 : 『“정부 지원금 못 받으니, 졸업유예자 등록금 내라”』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3일자 10면) • 아시아투데이닷컴 : 『교육역량사업 탈락한 ○○○○, ‘졸업유예자’에 돈 내라』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교육역량사업의 탈락 책임을 졸업유예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아시아투데이닷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섹션의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24시간동안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함
이 행 결 과	『○○○○ 졸업유예자 대상 학칙개정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아시아투데이 2013년 12월 3일자 10면, 아시아투데이닷컴 12월 3일자)
2013서울조정1591 (반론청구) 이○○ 對 선경일보	
조 정 대 상	『부평구 산곡동 ○○산 수백여명 서명 날인하여 본보와 구청에 진정서와 탄원서 제기… 부평구청 확인조사 나서』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9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식당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등산로를 넓혀 자동차가 왕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산객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부평구 산곡동 △△산 등산로 기사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0일자 4면)
2013광주조정70~71 (정정·손배청구) 이○○ 對 무안신안인터넷뉴스	
조 정 대 상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28일자)
신청인주장	공무원인 신청인이 민원인의 상담을 거부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전체적으로 평가적 표현에 의해 구성된 논평 또는 비평에 해당되어 정정 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손배청구 : 취하 ※ 기타 결정사항 : [기사수정]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서 신청인과 관련된 동영상(제목: ‘공무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수행해야 한다’, 제목 : ‘무안○○○○○실에 왜 경찰이’)을 삭제함 ※ 이행방법 :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2013서울조정1593 (정정청구) 한국농어촌공사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얼빠진 농어촌공사… 72억詐欺 당하고도 몰라』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4일자 10면)
신청인주장	한국농어촌공사가 거액을 대출해 주고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이 ‘불량 담보물’이어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부동산은 ‘불량 담보물’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조선닷컴 기사수정)
2013서울조정1594 (정정청구) 한국농어촌공사 對 TV조선	
조 정 대 상	TV조선 뉴스쇼 판 프로그램 『“22조 초대형 국책사업” 공무원 고발』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16일자 21:40)
신청인주장	신청인 공사가 주관하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에 부풀려진 사업비를 승인하여 특정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고, 총 사업비대비 국가채무상환액이 너무 적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TV조선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TV조선 기사수정] 인터넷 TV조선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VOD다시보기 및 한글자막)의 본문 바로 아래에도 이어서 반론보도문을 게재함
이 행 결 과	• TV조선 : TV조선 뉴스쇼 판 프로그램 『“새만금 방조제 사업 공무원 고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1일자 21:40)) • 인터넷 TV조선 : 『“새만금 방조제 사업 공무원 고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1일자)
2013서울조정1595~1596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한국방송공사 對 미디어오늘,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 미디어오늘 : (1) 『“2012 관권부정선거”, 공영방송도 사실상 ‘공범’』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30일자 1면), (2) 『“1면 ‘2012 관권부정선거, 공영방송도 사실상…’서 계속』 KBS·MBC의 대 보도·불방 논란…박근혜 당선에 결정적 역할』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30일자 3면) • 인터넷 미디어오늘 : 『“2013 관권부정선거”, 공영방송도 사실상 ‘공범’』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지난 대선 기간동안 불공정선거방송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미디어오늘 기사수정, 부제소) ※ 이행방법 [인터넷 미디어오늘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정치섹션의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함 [인터넷 미디어오늘 기사수정]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을 『“2012년 관권부정선거” 의혹, 공영방송도 비난 받아야』로 수정함
이 행 결 과	• 미디어오늘 : 『KBS 불공정 선거방송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4일자 2면) • 인터넷 미디어오늘 : (1) 『KBS 불공정 선거방송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30일자), (2) 『“2012년 관권부정선거” 의혹, 공영방송도 비난 받아야』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30일자)

2013경기조정162~165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이○○ 對 기호일보, 인터넷 기호일보	
조 정 대 상	『성추행 구청간부 징계 받고도 피해여성의 삶 끝없이 난도질』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4일자 18면, 인터넷 기호일보 11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성추행과 관련해 징계를 받고도 해당 피해여성을 계속 괴롭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조건부 후속보도,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행정심판이나 무고죄 등 재판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확정판결 전까지 보도하거나 관련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함 ※ 이행방법 : [조건부 후속보도] 신청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이나 B씨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결과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면 기호일보와 기호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회면 기사로 이를 즉시 보도함
2013서울조정1597~1598 (정정·손배청구) 남○○ 對 NSP통신	
조 정 대 상	『“女 담임이 학교에서 어이 왕따시켜” 외조부, 학교앞 1인 시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일자)
신청인주장	초등학교 교사인 신청인이 학급의 아이를 왕따시켜 아이가 정신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599 (정정청구) 문화체육관광부 對 뉴스타파	
조 정 대 상	『문체부의 끝없는 ‘갑질’ - ‘찍어서 자르겠다’ 녹취 폭로 이후에도 보복성 압박가해』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5일자)
신청인주장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재단 전 대표의 업무추진비를 문제 삼아 무리한 감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파신청인 이익신청 (사유 : 중재부의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음)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뉴스타파N>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 또한 결정이 확정된 후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 (메인)화면 좌측 상단의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에 48시간 이상 게재함
2013경기조정166~167, 173~174 (병합) 시흥시 對 시흥뉴스라인 ^(166, 173 각 정정청구) , 뉴스라인 ^(167, 174 각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신천역 삼미시장 출구 시흥시가 변경 요구”』 제하의 기사 (시흥뉴스라인 2013년 8월 12일자 1면, 뉴스라인 8월 12일자) (2) 『시흥시장, 삼미시장 출구폐쇄 공문 보내놓고 시위 참여』 제하의 기사 (시흥뉴스라인 2013년 8월 19일자 1면, 뉴스라인 8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시흥시가 복선전철의 사업시행업자 측에 신천역 삼미시장 방향 출입구의 설치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입구의 개설을 요구하는 시위현장을 방문하는 식의 표리부동한 행정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600 (정정청구) 사단법인 ○○○○경영연구회 對 KBS-1TV	
조 정 대 상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 『미납 추징금 25조 원...안 내실 겁니까?』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22일자 22:00)
신청인주장	모 전자용품점, 모 중견기업진단 등이 신청인 단체 소속 회원들이 재직하 바 있는 대기업의 위장계열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이 언급되거나 거명된 바 없어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동일성을 추지할 수 있거나 이와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라 할 수 없다)
2013서울조정1601~1602 (매체별 손해청구) (병합) 김○○ 對 KBS-1TV, KBS미디어	
조 정 대 상	• KBS-1TV :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 『미납 추징금 25조 원...안 내실 겁니까?』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22일자 22:00) • KBS미디어 : 『미납 추징금 25조 원...안 내실 겁니까?』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2일자)
신청인주장	대기업 회장이었던 신청인이 머물렀던 해외 소재 골프장 클럽하우스의 전경과 신청인이 잠을 자는 모습 등을 무단으로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1603~1604 (매체별 정정청구) 신의진 對 한경닷컴, 게임톡	
조 정 대 상	• 한경닷컴 : 『술-도박-마약 그리고 게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1일자) • 게임톡 : 『[만화 4대 중독법] 술-도박-마약 그리고 게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1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대표 발의한 ‘4대 중독법안’이 게임중독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게임업체에 떠넘기는 법안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한경닷컴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섹션 내 산업 섹션 초기화면 최신뉴스 코너의 기사목록 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 게임톡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의 뉴스섹션 초기화면 좌측상단 기사목록 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한경닷컴 : 『[중독예방법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1일자) • 게임톡 : 『중독예방법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1일자)

2013서울조정1605	(정정청구) ○○○○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 역북지구 옆 ○○지구 개발사업 성사될까>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이 지역 개발사업의 자금주관사와 시공사를 선정하였고, 총회를 열어 관련 사항을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알림기사, 부제소) ※ 이행방법 : [알림기사] 홈페이지 전국-경기면에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알림기사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단, 신청인이 '조합장'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알림기사문을 삭제할 수 있음)
이 행 결 과	『○○ ○○지구 개발' 기사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7일자)
2013서울조정1606	(손배청구) 신의진 對 이투데이
조 정 대 상	『신의진-게임업계 2차전?...』서명운동 방해" Vs. "압박한 적 없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3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게임중독법 반대서명운동을 하는 단체에게 이를 중지하라고 압박을 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607, 1614	(기사별 정정청구) (병합) ○○○○○대학교부속○○○○○고등학교 對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1) 『○○○○고 전·편입학 부정... 교육 당국은 무덤덤』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3일자) (2) 『사교육업체에 평가 맡겨 성적 반영한 ○○○고』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일반전형에서 떨어진 학생들 중 부유층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 전·편입학 전형에 지원하라고 권유했으며, 신청인 학교의 일부 교사가 사교육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고'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8일자)

2013서울조정1608~1611 (매체별 정정청구) (주)한국○○○카드 對 KBS-1TV, KBS미디어	
조 정 대 상	• KBS-1TV : (1) KBS 뉴스9 프로그램 『한국 ○○○카드 대부분 수의계약...○○ ○○○만 수익』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25일자 21:00) (2) 서울시 ○○○카드 ‘특혜 의혹’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25일자 21:00) (3) KBS 뉴스9 프로그램 『서울 ○○○카드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명단 넘겨』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28일자 21:00) (4) KBS 뉴스9 프로그램 『서울시, 입찰참여 업체에 제안서 대리 작성 의혹』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29일자 21:00) (5) KBS 뉴스광장 (1부) 프로그램 『서울시 ○○○카드 시스템 특혜 의혹 ‘점입가경’』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일자 06:00) (6) KBS 뉴스9 프로그램 『서울시 ○○○카드 최근 입찰에도 비리 있었다』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11일자 21:00) • KBS미디어 : (1) 『한국 ○○○카드 대부분 수의계약...○○ ○○○만 수익』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5일자) (2) 『[단독] 서울 ○○○카드 사업 ‘특혜 의혹’...복취록 입수』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5일자) (3) 『[단독] “서울시 공무원, 선정 당일 심사위원 명단 넘겨”』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8일자) (4) 『[단독] ○○○카드 사업 제안서 대리 작성 의혹까지』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9일자) (5) 『[단독] 서울 ‘○○카드’ 권한 통째로 대기업에 넘어가』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31일자) (6) 『서울시, 교통카드 최근 입찰에도 비리 있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3서울조정1612~1613 (정정 · 반론청구) ○○농산(주) 對 푸드투데이	
조 정 대 상	『○마켓서 구매한 ‘○○떡국’ 먹은 소비자 구토 · 복통』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제조한 ‘떡국’ 제품을 먹고 복통 등을 일으킨 소비자의 항의에 신청인 회사가 무성의하게 대응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결정사항 : [기사수정]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본문 내용 중에 있는 ‘○마켓’을 ‘V마켓’으로 수정하고, ○마켓 전경 사진의 상호를 음영처리함 ※ 이행방법 :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후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면에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로 48시간 이상 게재함
이 행 결 과	『“○○떡국” 먹은 소비자 구토, 복통’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0일자)

2013서울조정1615~1616 (정정·손배청구) 조○○ 對 서로를살리는교육민들레	
조 정 대 상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것』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1일자 통권 88호 45~53면)
신청인주장	공동육아어린이집 조합원인 신청인이 다른 아이의 엄마로부터 ‘그 집 아이가 불쌍하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인터넷 서로를살리는교육민들레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서로를살리는교육민들레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민들레이야기 섹션 ‘알려드립니다’ 코너에 반론보도문을 3개월 이상 게재함
이 행 결 과	• 인터넷 서로를살리는교육민들레 : 『민들레 88호 부모일기를 읽고』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8일자)
2013광주조정72~73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담양군 對 담양신문, 인터넷 담양신문	
조 정 대 상	『‘담양군 성명서’에 대하여』 제하의 기사 (담양신문 2013년 9월 10일자 1면, 인터넷 담양신문 9월 11일자)
신청인주장	담양군이 기사의 오타 등을 문제삼아 조정신청을 남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담양신문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 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담양신문 : 『“‘담양군 성명서’에 대하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6일자 2면) • 인터넷 담양신문 : 『“‘담양군 성명서’에 대하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일자)
2013전북조정36~37 (정정·손배청구) (유)○○종합건설 對 익산 인터넷뉴스	
조 정 대 상	『익산시 창인시장 주차장, ‘특혜 의혹과 시민들에게 원성 높아져 대책마련 시급』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9일자)
신청인주장	익산 창인시장 주차장 공사를 시공한 신청인 회사 대표가 언론사 대표이며 이로 인해 익산시로 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경기조정168~172	(매체별 정정청구) ○○○○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對 경기신문 ⁽¹⁶⁸⁾ , 인터넷 경기신문 ^(168, 168과 병합) , 인터넷 경기일보 ⁽¹⁷⁰⁾ , 용인신문 ⁽¹⁷¹⁾ , 인터넷 용인신문 ^(172, 171과 병합)
조 정 대 상	- 경기신문 · 인터넷 경기신문 : 『○○ ○○지구 개발 ‘본궤도’』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3년 11월 5일자 1면, 인터넷 경기신문 11월 4일자) - 인터넷 경기일보 : 『○○ ○○지구 개발 기지개 이달중 조합원 총회』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6일자) - 용인신문 · 인터넷 용인신문 : 『○○의 새로운 랜드마크 ‘○○지구’ 개발 청신호』 제하의 기사 (용인신문 2013년 11월 4일자 1면, 인터넷 용인신문 11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이 지역 개발사업의 자금주간사와 시공사를 선정해 협약을 맺고, 총회를 열어 관련 사항을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경기신문 · 인터넷 경기신문 · 인터넷 경기일보 : 각 취하 (사유 : 알림기사 게재) - 용인신문 · 인터넷 용인신문 : 조정성립 (내용 : 알림기사, 부제소) ※ 이행방법 용인신문 · 인터넷 용인신문 : [알림기사] 홈페이지 기사목록 앞부분에 알림기사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경기신문 · 인터넷 경기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3년 11월 25일자 2면, 인터넷 경기신문 11월 24일자) - 인터넷 경기일보 : 『[알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5일자) - 용인신문 · 인터넷 용인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용인신문 2013년 12월 2일자 2면, 인터넷 용인신문 12월 3일자)
2013서울조정1617~1618	(매체별 손해청구) (병합) 윤○○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여학생회 선거권 우리에게도 달라” ○○대 남학생들의 속내는』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3년 11월 9일자 9면, 인터넷 한국일보 11월 9일자)
신청인주장	대학교 총여학생회장인 신청인이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619~1620	(정정 · 손해청구) 신○○ 對 시사저널
조 정 대 상	『“대통령 동생” 친구 건드린 캐쥬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1일자 10~12면)
신청인주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인 신청인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바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과 육군사관학교 동기라는 이유로 초고속 승진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 반론 · 사과보도, 인터넷 시사저널에 정정 · 반론 · 사과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시사저널에 정정 · 반론 · 사과보도] 조정대상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정정 · 반론 · 사과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재함
이 행 결 과	『“대통령 동생” 친구 건드린 캐쥬죄」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4일자 15면)

2013서울조정1621~1628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옥○○ 對 서울교육방송 ^(1621~1622) , 한국대학방송 ^(1623~1624) , 주택뉴스 ^(1625~1626) , HKBC환경방송 ^(1627~1628)
조 정 대 상	• 서울교육방송 : (1) 『옥○○ 사무총장, 정당한 취재에 ‘검찰고소’로 기사를 협박』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1일자) (2) 『옥○○ ○○관광역발전위원회 사무총장, 원가 미심쩍다』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8일자) (3) 『홍준표 도지사는 왜 옥○○ 사무총장을 문제삼지 않는가?』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8일자) • 한국대학방송 : (1) 『옥○○ 사무총장 명의수탁의혹 재산상속 ‘도마’』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4일자) (2) 『옥○○ 사무총장, “검찰에 고소하겠다”며 기사를 겁박 협박』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1일자) (3) 『옥○○ ○○관광역발전위원회 사무총장 도덕성 계속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8일자) (4) 『옥○○ 사무총장 여전히 ○○관광발전위원회에... 왜??』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8일자) • 주택뉴스 : 『옥○○氏 사무총장으로서 공무원 자격 충분인가?』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8일자) • HKBC환경방송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왜 옥○○ 사무총장을 문제삼지 않는가?』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지역관광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이 신청인이 부친명의의 신탁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이를 실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서울교육방송·한국대학방송·주택뉴스 : 각 조정불성립결정 • HKBC환경방송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629, 1639, 1641	(매체별 추후청구) 1. 광○○, 2. 장○○ 對 민중의소리 ⁽¹⁶²⁹⁾ , KBS미디어 ⁽¹⁶³⁹⁾ , 디오데오 ⁽¹⁶⁴¹⁾
조 정 대 상	• 민중의 소리 : 『꾸지뽕이 뇌졸중 약?... 허위·과대광고 일당, ‘덜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 KBS미디어 : 『원산지 둔갑에 과장광고 혐의 건강식품업자 입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 디오데오 : 『꾸지뽕추출액 허위광고 역대판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꾸지뽕 추출액의 생산지를 허위표시하고 과대광고하여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민중의소리·디오데오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KBS미디어 : 취하
2013서울조정1630, 1650	(매체별 추후청구) 1. 광○○, 2. 장○○ 對 노컷뉴스, 네이트
조 정 대 상	『‘꾸지뽕’ 추출액 알고보니...원산지도 효과도 가짜』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꾸지뽕 추출액의 생산지를 허위표시하고 과대광고하여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631, 1644	(매체별 추후청구) 1. 광○○, 2. 장○○ 對 e머니투데이, 네이트
조 정 대 상	『형성 청정 ‘꾸지뽕’...원산지도, 효능도 ‘가짜’』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꾸지뽕 추출액의 생산지를 허위표시하고 과대광고하여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632, 1648	(매체별 추후청구) 1. 광○○, 2. 장○○ 對 뉴스1 코리아, 네이트
조 정 대 상	『과대 · 허위광고, 꾸지뽕 판매 4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꾸지뽕 추출액의 생산지를 허위표시하고 과대광고하여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633, 1646	(매체별 추후청구) 1. 광○○, 2. 장○○ 對 인터넷 경향신문, 네이트
조 정 대 상	『“꾸지뽕 추출액으로 치료하세요” 허위광고 한 업자들 검거』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꾸지뽕 추출액의 생산지를 허위표시하고 과대광고하여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634, 1649	(매체별 추후청구) 1. 광○○, 2. 장○○ 對 한경닷컴, 네이트
조 정 대 상	『혈전제거에 특효? 꾸지뽕 허위 과장광고한 제조업자 검거』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꾸지뽕 추출액의 생산지를 허위표시하고 과대광고하여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635, 1651	(매체별 추후청구) 1. 광○○, 2. 장○○ 對 인터넷 YTN, 네이트
조 정 대 상	『꾸지뽕 과장광고로 7억 챙긴 업자들 입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꾸지뽕 추출액의 생산지를 허위표시하고 과대광고하여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636, 1653 (매체별 추후청구) 1. 광○○, 2. 장○○ 對 메디컬투데이, 네이트	
조 정 대 상	『꾸지뽕 추출액 “혈전 제거에 좋다” …속여 7억여 원 편취한 일당 적발』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꾸지뽕 추출액의 생산지를 허위표시하고 과대광고하여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637, 1643, 1645 (매체별 추후청구) 1. 광○○, 2. 장○○ 對 연합뉴스 ⁽¹⁶³⁷⁾ , 네이버 ⁽¹⁶⁴³⁾ , 네이트 ⁽¹⁶⁴⁵⁾	
조 정 대 상	『꾸지뽕추출액 허위광고 역대판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꾸지뽕 추출액의 생산지를 허위표시하고 과대광고하여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638, 1642, 1647 (매체별 손배청구) 윤○○ 對 뉴시스 ⁽¹⁶³⁸⁾ , 네이버 ⁽¹⁶⁴²⁾ , 네이트 ⁽¹⁶⁴⁷⁾	
조 정 대 상	『“꾸지뽕이 특효약?”…허위·과장광고 판매자 달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꾸지뽕추출액의 생산지를 허위표시하고 과대광고하여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640, 1652 (매체별 추후청구) 1. 광○○, 2. 장○○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 네이트	
조 정 대 상	『꾸지뽕추출액, 치료제로 허위광고 일당 입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꾸지뽕 추출액의 생산지를 허위표시하고 과대광고하여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654~1655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사단법인 대한○○협회 對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닷컴	
조 정 대 상	• 아시아투데이 : 『법 이해 못하는 공무원, 분쟁때 무조건 “甲이 잘못”』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8일자 10면) • 아시아투데이닷컴 : 『법 이해 못 하는 공무원, 무조건 “갑” 잘못?』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축산계열화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업무처리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아시아투데이닷컴에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경제섹션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협회 계열화사업협의회 분쟁조정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아시아투데이 2013년 12월 6일자 12면, 아시아투데이닷컴 12월 5일자)

2013서울조정1656~1657 (정정·손배청구) 백○○ 對 동북일보	
조 정 대 상	(1) 『[황설수설 ① 죄충우돌] 대인과 소인의 차이는 무엇이고 대기와 종지와와의 차이는 왜있을까?』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9일자 7면) (2) 『[황설수설 ② 죄충우돌] 대인이 소인으로 보일 때 그 사람 행동에 있다.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직위를 이용 협박할 때』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5일자 7면) (3) 『[황설수설 ③ 죄충우돌] 큰 그릇이 종지로 보일 때 추하게 보인다』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2일자 7면) (4) 『[직언 ⑤ 직설] 편리한대로 말 바꾸고 행동 바꿀 때 배신감 생겨』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9일자 7면)
신청인주장	2005년 강북구의회 예산심의시 신청인이 선물을 받고 특정신문 구매 예산을 통과시킨 것처럼 보도했던 내용을 다시 언급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사과보도, 인터넷 동북일보에 정정 및 사과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동북일보에 정정 및 사과보도] 홈페이지에 정정 및 사과보도문을 3개월 이상 게재함
이 행 결 과	『[황설수설-죄충우돌]대인과 소인의 차이, 대기와 종지의 차이』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동북일보 2013년 12월 6일자 7면, 인터넷 동북일보 12월 6일자)
2013서울조정1658 (정정청구) 1. ○○○○학교, 2. 이○○ 對 KBS-2TV	
조 정 대 상	추적 60분 프로그램 『따돌림, 파면, 소송 “내부고발의 늪”』 제하의 보도 (2013년 9월 14일자 22:25)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의 교사가 현장학습 중 학생에게 성적수치심을 주고 인격을 모독한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KBS미디어에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정정 및 반론보도] <추적60분> 프로그램 끝 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 [KBS미디어에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의 ‘다시보기’ 코너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종료 후에 이어서 게시하여 조정대상보도가 검색되는 한 함께 나타나도록 함
이 행 결 과	추적 60분 프로그램 『“그들은 곧 돌아온다” 아동성범죄 피해자 긴급 설문』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14일자 22:25)

2013서울조정1659~1660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강○○ (병합)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 한국일보 : 『군산경찰서 한 간부의 수상한 명예퇴직 신청』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0일자 12A면) • 인터넷 한국일보 : 『군산경찰서 한 간부의 수상한 명예퇴직 신청』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9일자)
신청인주장	군산경찰서 간부인 신청인이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이를 무마한 의혹이 있으며, 지역 건설업체에게 납품압력을 가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의 작성 근거가 된 관련자들의 구체적 진술과 증언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해명을 기사에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재부의 반론보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국일보에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뉴스 섹션 내 사회섹션 내 지역소식 코너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2013서울조정1661~1667 (매체별 손해청구) 박○○ 對 뉴스1 코리아 ⁽¹⁶⁶¹⁾ , 동아닷컴 ⁽¹⁶⁶²⁾ , 인터넷 서울신문 ⁽¹⁶⁶³⁾ , 세계닷컴 ⁽¹⁶⁶⁴⁾ , 아시아경제닷컴 ⁽¹⁶⁶⁵⁾ , 온라인 중앙일보 ⁽¹⁶⁶⁶⁾ , 조선닷컴 ⁽¹⁶⁶⁷⁾	
조 정 대 상	• 뉴스1 코리아 : 『‘화성인’ 귀족녀, 남친에 복수하다 형사처벌』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7일자) • 동아닷컴 : 『[휴지통]방송 화제 ‘CEO 귀족녀’의 파혼 복수극』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8일자) • 인터넷 서울신문 : 『‘화성인’ 귀족녀, 파혼 남친에게 복수하다가...』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8일자) • 세계닷컴 : 『‘화성인’ CEO 귀족녀, 파혼 남친 집·차에 낙서하더니...』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8일자) • 아시아경제닷컴 : 『[사회] CEO 귀족녀, 파혼 남친에 복수하다 형사처벌』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8일자) • 온라인 중앙일보 : 『여성 사업가, 파혼한 의사 남친에 복수하다 형사처벌...왜?』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8일자) • 조선닷컴 : 『‘화성인’ 출연 ‘CEO 귀족녀’, 파혼 전남친에 대한 복수극 형사처벌로 막 내려』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과 남자친구간 진행중인 소송사건에서 신청인의 형사처벌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부산조정58~59 (매체별 손해청구) 조○○ 對 KNN, iKNN	
조 정 대 상	• KNN : KNN 뉴스아이 프로그램 『부산시체육회 비리 의혹 ‘질타’』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14일자 20:25) • iKNN : 『부산시의회, 체육회 의혹 질타』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4일자)
신청인주장	부산시 체육회 복싱팀 감독인 신청인이 폭행혐의로 입건되면서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유감표명)

2013경남조정60~63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안○○ 對 주간남해뉴스, 인터넷 남해뉴스	
조 정 대 상	『○○가요제, 나이롱 경품추첨 말썽』 제하의 기사 (주간남해뉴스 2013년 10월 29일자 1면, 인터넷 남해뉴스 10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경품추첨을 진행하면서, 1등 당첨번호를 반복하고 다른 사람을 당첨자로 하는 등 엉터리 추첨을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사과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남해뉴스 정정 및 사과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사과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가요제, 나이롱 경품추첨 말썽’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주간남해뉴스 2013년 12월 11일자 1면, 인터넷 남해뉴스 12월 9일자)
2013경기조정175~176 (정정·손배청구) 1. 성남시, 2. 이재명 對 성남일보	
조 정 대 상	『이재명 성남시장과 발렌타인 21년산』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성남시 이재명시장이 성남시의회 의정연수에 참석해 발렌타인 21년산 21병을 선물하고 건배 제의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668~1669 (매체별 정정청구) 허○○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순천 ‘제1호 기적의 도서관’ 명성 회복 나서』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3년 10월 29일자 13A면, 인터넷 한국일보 10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순천 기적의 도서관 관장인 신청인이 도서관을 파행적으로 운영해 교체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부 관할 변경 (서울→광주))
이 행 결 과	• 인터넷 한국일보 : 『“순천 ‘제1호 기적의 도서관’ 명성 회복 나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3일자)
2013서울조정1670~1671 (정정·손배청구) 김○○ 외 2인 對 평북민보	
조 정 대 상	『“자기 얼굴에 스스로 자기가 침을 뱉는 격”』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5일자 2면)
신청인주장	2012년 말 평안북도 중앙도민회 정기총회에서 감사인 신청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옥지구 폐쇄’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감사 3인, “총회에서 ‘군옥지구 폐쇄’ 논의된 적 없어”』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5일자 2면)

2013서울조정1672~1673 (정정·손배청구) 최민희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식품원 원장, 소관기관에 “성추행 아냐” 확인받아〉(종합)』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1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국정감사 당시 식품연구원 윤 모 원장에 대해 제기한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 아닌 무분별한 폭로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경기조정177~178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對 중부일보,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 중부일보 : 『농어촌공 경기본부 ‘거짓 농활’ 술 파티』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5일자 1면) • 인터넷 중부일보 : 『[단독] 농어촌공사 경기본부, ‘거짓 농촌봉사활동’ 술 파티』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5일자)
신청인주장	한국농어촌공사가 평일 정상업무시간에 농촌봉사활동이라는 거짓명목을 내세워 술파티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중부일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위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 중부일보 : 『 ‘농어촌공 경기본부, 거짓 농촌봉사활동 술 파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0일자 2면) • 인터넷 중부일보 : 『[‘농어촌공 경기본부, 거짓 농촌봉사활동 술 파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0일자)
2013경기조정179~180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 전국축구연합회 對 경인일보, 인터넷 경인일보	
조 정 대 상	• 경인일보 : 『무성의 식단·난민촌 같은 잠자리… “코치님, 한국은 가난한 나라인가요”』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0일자 23면), (2) 『“아시아 ○○○ 축구축제 운영 미숙 사실로 드러날 땐 경고 등 행정 조치”』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1일자) • 인터넷 경인일보 : (1) 『“아시아 ○○○ 축구축제” 미숙한 대회 운영 국제적 망신살』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9일자), (2) 『“아시아 ○○○ 축구축제 운영 미숙 사실로 드러날 땐 경고 등 행정 조치”』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아시아유소년축구축제를 주최하면서 미숙한 대회준비와 운영으로 인해 참가자들로부터 국제적 망신을 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경인일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 경인일보 : 『“2013년 아시아 ○○○ 축구축제”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5일자 23면) • 인터넷 경인일보 : 『“2013년 아시아 ○○○ 축구축제”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5일자)

2013서울조정1674~1675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신○○ 외 2인 對 한겨레21, 인터넷 한겨레21	
조 정 대 상	『범인 ‘만들어낸’ 경찰 조서』 제하의 기사 (한겨레21 2013년 9월 2일자 58~63면, 인터넷 한겨레21 8월 27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들이 신청인들이 회유와 협박을 통해 조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무고한 미성년자들을 성폭행범으로 구속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21에 반론보도] 한겨레21에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직후 가장 빨리 도래하는 날 인터넷 한겨레21 홈페이지 사회면에 반론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한겨레21 : 『범인 ‘만들어낸’ 경찰 조서’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6자 8면) - 인터넷 한겨레21 : 『범인 ‘만들어낸’ 경찰 조서’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8일자)
2013서울조정1676, 1685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국민건강보험공단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1) 『공기관, 직원 법인카드로 年 5,075억 ‘평평’』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1일자 A01면), (2) 『법인카드 1인 사용액 3,360만 원… 월급 뺀 유학비 1억 원』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1일자 A04면) - 동아닷컴 : 『공기관, 직원 법인카드로 年 5,075억 ‘평평’』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공단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간접복지비로 사용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동아일보에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동아일보 : 『국민생활체육회-국민건강보험공단 법인카드 관련 정정·반론』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1일자 29면)
2013서울조정1677~1680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구○○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아파트 어린이집이 뭐길래…억대 이권 ‘치열한 입점 경쟁’』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5일자 19:55) - iMBC : 『아파트 어린이집이 뭐길래…억대 이권 ‘치열한 입점 경쟁’』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수원의 모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입점경쟁과 관련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전경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iMBC 기사삭제)
2013서울조정1681~1682 (매체별 정정청구) 김○○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사고 헬기, 227억 보험 가입… 市, 주내 아파트 안전진단』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8일자 5면) - 조선닷컴 : 『[헬기, 강남 아파트 충돌]사고 헬기, 227억 보험 가입… 市, 주내 아파트 안전진단』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8일자)
신청인주장	헬기사고가 난 아파트의 20층 주민인 신청인이 강남구에 불안을 호소하며 억지로 호텔객실을 요구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조선닷컴 기사수정)

2013서울조정1683~1684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사)대한○○회 對 MBN, 인터넷 MBN	
조 정 대 상	• MBN : MBN 뉴스 8 프로그램 『‘마약’ 동물마취제…약국서 판다?』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28일자 20:00) • 인터넷 MBN : 『[단독]사람잡는 동물마취제…약국서 버젓이 판매』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8일자)
신청인주장	동물용 마취제가 성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약국에서 아무런 원칙 없이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MBN : 굿모닝 MBN 프로그램 『“동물마취제, 안전하게 취급 노력”』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16일자 07:00) • 인터넷 MBN : 『약사회 “동물마취제, 안전하게 취급 노력”』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6일자)
2013서울조정1686~1691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병합) 주식회사 ○○○○네트웍스 對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철도 마피아에 일감 몰아준 철도공단”』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3년 10월 25일자 12면, 온라인 중앙일보 10월 25일자)
신청인주장	보안장비 등을 설치·공급하는 회사인 신청인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CCTV 사업을 독점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온라인 중앙일보에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섹션의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중앙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3일자 2면) • 온라인 중앙일보 : 『[알려왔습니다] “철도 마피아에 일감 몰아준 철도공단”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3일자)
2013서울조정1692~1697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병합) 한국방송공사 對 PD저널, 인터넷 PD저널	
조 정 대 상	『PD 출신 첫 사장의 선택, ‘땡박뉴스’』 제하의 기사 (PD저널 2013년 11월 20일자 3면, 인터넷 PD저널 11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지난 해 11월 대선후보 인물 검증 프로그램을 방송 하루 전날 ‘불방조치’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PD저널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미디어뉴스 섹션에 반론보도문을 1주일 이상 게재함
이 행 결 과	『PD 출신 첫 사장의 선택, 땡박뉴스』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PD저널 2013년 12월 18일자 2면, 인터넷 PD저널 12월 16일자)

2013서울조정1698~1703	(매체별 정정청구) (사)국민생활체육회 對 동아일보 ⁽¹⁶⁹⁸⁾ , 동아닷컴 ^(1699, 1698과 병합) , 채널A ^(1700, 1698과 병합) , 인터넷 채널A ^(1701, 1698과 병합) , TV조선 ⁽¹⁷⁰²⁾ , 인터넷 TV조선 ^(1703, 1702와 병합)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동아닷컴 : (1) 『『공기관, 직원 법인카드로 年 5,075억 ‘평평’』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11월 21일자 A01면, 동아닷컴 11월 21일자) (2) 『『법인카드 1인 사용액 3,360만 원… 월급 뱅 유학비 1억원』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11월 21일자 4면, 인터넷 동아일보 11월 21일자) (3) 『『홍청망청 법인카드 방치하면 ‘파티’는 계속된다』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11월 22일자 A31면, 동아닷컴 11월 22일자) • 채널A : (1) 채널A 아침뉴스 프로그램 『『신의 직장』 직원 지원금 1조』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1일자 07:00) (2) 뉴스 10 프로그램 『『신의 직장』 직원 지원금 1조』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1일자 10:00) (3) 뉴스특보 프로그램 『『복지 천국』 공공기관 지원금 1조 원』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1일자 13:00) • 인터넷 채널A : (1) 『[아침뉴스] ‘신의 직장’ 공공기관, 각종 직원 지원금 1조』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1일자) (2) 『[뉴스 10] 과연 ‘신의 직장’…공공기관들 직원 지원금만 1조』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1일자) (3) 『[뉴스특보] ‘복지 천국’ 공공기관, 각종 직원 지원금 1조 원』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1일자) • TV조선 : 뉴스특보 프로그램 『방만경영 ‘상상초월’』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1일자 12:00) • 인터넷 TV조선 : 『『법인카드 쌈짓돈처럼 쓰고 수백만 원 복지포인트 뿌리고… 방만 경영 ‘상상초월’』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의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간접복지비로 사용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동아일보·동아닷컴·채널A·인터넷 채널A : 조정성립 (내용 : 동아일보에 정정 및 반론보도, 동아닷컴 기사삭제, 채널A에 정정 및 반론보도, 인터넷 채널A 기사삭제, 부제소) • TV조선·인터넷 TV조선 : 조정성립 (내용 : TV조선 반론 및 후속보도, 인터넷 TV조선 기사삭제,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동아일보·동아닷컴·채널A·인터넷 채널A :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한 즉시, 제휴관계에 있는 포털사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전송하여 포털사를 통해 검색되도록 하며,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 게재하도록 함 ※ 이행방법 • 동아일보·동아닷컴·채널A·인터넷 채널A : [채널A에 정정 및 반론보도] <채널 A 아침뉴스> 프로그램 말미에 정정 및 반론보도, 진행자의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함 • TV조선·인터넷 TV조선 : <뉴스특보>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 및 후속보도, 진행자의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함
이 행 결 과	• 동아일보·동아닷컴 : 『국민생활체육회-국민건강보험공단 법인카드 관련 정정·반론』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12월 11일자 29면, 동아닷컴 12월 11일자) • 채널A : 채널A 아침뉴스 프로그램 『국민생활체육회 법인카드 사용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11일자 08:10) • TV조선 : 뉴스특보 프로그램 『국민생활체육회 법인카드 사용 관련 추후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11일자 11:39)

2013서울조정1704~170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이○○ 對 인터넷 채널A, 채널A	
조 정 대 상	• 인터넷 채널A :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94회 (유료)』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3일자) • 채널A :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 『94회 - 녹차 안 먹은 녹차 먹인 돼지?』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1일자 23:00)
신청인주장	정육점 소매업을 하고 있는 신청인이 '녹차 먹인 돼지'가 사실은 녹차를 먹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제보를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광주조정74~75 (매체별 반론청구) 허○○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순천 '제1호 기적의 도서관' 명성 회복 나서』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3년 10월 29일자 13A면, 인터넷 한국일보 10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순천 기적의 도서관 관장인 신청인이 도서관을 파행적으로 운영해 교체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한국일보 : 취하 (사유 : 인터넷 한국일보 반론보도 게재 약속) • 인터넷 한국일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국일보 :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지역소식) 초기 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위의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인터넷 한국일보 : 『“순천 '제1호 기적의 도서관' 명성 회복 나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6일자)
2013서울조정1708~1709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주)○○○○ 對 MBN, 인터넷 MBN	
조 정 대 상	• MBN : MBN 뉴스8 프로그램 『“무연 담배” 몸에 덜 해롭다?』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15일자 20:00) • 인터넷 MBN : 『티백 모양 신종 담배, 몸에 덜 해롭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5일자)
신청인주장	무연담배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이 수입·유통하는 제품을 화면에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PR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MBN에 PR보도] 조정사건이 종료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아침뉴스 시간에 신청인 회사의 마케팅 관련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되, 보도전날 신청인 회사에 보도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함. 홈페이지 사회면에 관련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MBN : 굿모닝 MBN 프로그램 『간접흡연 피해 줄이는 담배 화제』 제하의 보도 (2014년 1월 8일자 07:00) • 인터넷 MBN : 『간접흡연 피해 줄이는 담배 화제』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8일자)
2013서울조정1710 (손배청구) 박○○ 對 MBN	
조 정 대 상	MBN 뉴스8 프로그램 『“무연 담배” 몸에 덜 해롭다?』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15일자 20:00)
신청인주장	무연담배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 보도하면서 무연담배 수입·유통 회사직원인 신청인과의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3서울조정1711	(정정청구) (주)○○○월드 對 엔디엔뉴스
조 정 대 상	『○○○월드의 의심스런 ‘○○○○○○○ 콘도’ 인수 주장』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휴양 시설(콘도)을 경영권을 인수한 것을 두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업체가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기사] ○○○월드의 의심스런 ○○○○○○○○ 인수주장의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6일자)

2013서울조정1712~1713	(정정 · 손해청구) 이○○ 對 뉴스에이
조 정 대 상	(1) 『[사회] 동성애자 이○○씨는 과연 성추행범인가?』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22일자) (2) 『[사회] ○○○○○○○교회에 “후장을 노리는 호모들의 모임” 카페 개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시민기자인 신청인이 작성한 기사가 해킹으로 변조되는 바람에 내용이 왜곡되는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3부산조정60~63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병합) ○○고등학교 對 부산일보, 인터넷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성적 조작 고교 ‘도덕적 해이’ 심각』 제하의 기사 (부산일보 2013년 11월 25일자 6면, 인터넷 부산일보 11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관리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약속)

2013부산조정64~67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병합) 한○○ 對 부산일보, 인터넷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 부산일보 : 『성적 조작 고교 ‘도덕적 해이’ 심각』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5일자 6면) - 인터넷 부산일보 : 『성적 조작 고교 ‘도덕적 해이’ 심각』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교감 직무 대행 당시, 수업을 다른 교사에게 맡긴 뒤 자신이 수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부산일보에 정정보도, 인터넷 부산일보 기사수정) ※ 이행방법 : [인터넷 부산일보 기사수정] 조정대상기사 중 특정 문구를 삭제함
이 행 결 과	부산일보 : 『‘A고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7일자 10면)

2013서울조정1714~1717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병합) 사회복지법인 ○○○○전우회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방위사업청, 비리 처벌 군납업체와 수상한 거래』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11월 25일자 12면, 인터넷 동아일보 11월 25일자)
신청인주장	방위사업청과 군수의류 납품계약을 맺은 신청인 단체가 뇌물비리로 납품자격을 상실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718~1719 (정정·반론청구) ○○종합개발 주식회사 對 YTN	
조 정 대 상	뉴스출발 (1부) 프로그램 『YTN현장24 - 호화 골프장에 훼손된 선산…후손들 ‘한숨만’』 제하의 보도 (2013년 9월 17일자 04:4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영월 엄씨 종친회의 선산과 봉분을 훼손하면서 골프장을 건설하고, 대법원의 공사 중지 결정을 어기고 호텔신축을 강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YTN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조정대상 기사를 매개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전송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이 내용을 매개하고 검색될 수 있도록 함 ※ 이행방법 [반론보도] <뉴스출발 1부> 프로그램 종료 직전에 반론보도, 진행자가 낭독하는 동안 화면에는 조정대상 보도 영상과 함께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하단에 계속 표시함 [인터넷 YTN에 반론보도] 인터넷 YTN의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바로 아래에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함
이 행 결 과	뉴스출발 (1부) 프로그램 『호화 골프장에 훼손된 선산』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13일자 04:40)
2013서울조정1720 (정정청구) ○○대학교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경기도 대학 3곳 교육부 감사 미이행 입학정원 감축』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대학이 교육부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입학정원 감축, 모집정지 등의 행정 제재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대 “법원, 교육부 입학정원 감축 가처분 인용”』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9일자)
2013경기조정181~182 (매체별 정정청구) ○○대학교 對 경기일보, 인터넷 경기일보	
조 정 대 상	- 경기일보 : 『내년 △△대 신입생 입학정원 5% 축소… 왜?』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4일자) - 인터넷 경기일보 : 『교육부 지시사항 콧방귀 뀌던 대학들 결국…』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대학이 교육부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입학정원 감축, 모집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교육부 ‘○○대, 입학정원 5% 감축 행정처분’ 행정법원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정지”』 제하의 기사 (경기일보 2013년 12월 10일자 7면, 인터넷 경기일보 12월 10일자)

2013대전조정72~73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한○○ 對 대전일보, 인터넷 대전일보	
조 정 대 상	『산림관리 공공근로 인력 사적 동원 논란』 제하의 기사 (대전일보 2013년 11월 4일자 16면, 인터넷 대전일보 11월 3일자)
신청인주장	부여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조장인 신청인이 조원들에게 사적으로 동원된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대전일보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이 행 결 과	『산림관리공공근로 인력 사적동원 관련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6일자 2면, 인터넷 대전일보 12월 16일자)
2013대전조정74~75 (정정 · 반론청구) 이○○ 對 CTN	
조 정 대 상	『대전 ○○○고, 권력남용 영양사 ‘숨방망이 처벌’ 논란 - 행정실장 ‘중징계’』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4일자)
신청인주장	고등학교 영양사인 신청인의 권력 남용으로 조리원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2013서울조정1721~1722 (정정 · 손해청구) ○○○ 주식회사 對 뉴스토마토	
조 정 대 상	『“○○○” 블랙박스 시장 미스터리한 ‘1위’』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자사의 자동차용 블랙박스 제품이 ‘업계 판매 1위’라고 주장하나 정확한 수치나 근거가 없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주) 블랙박스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6일자)
2013서울조정1723~1724 (정정 · 손해청구) ○○개똥쑥산업협회 對 채널A	
조 정 대 상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 『91회 - 개똥쑥, 기적의 함암 약초인가?』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1일자 23:00)
신청인주장	개똥쑥이 아닌 다른 풀의 복용자 사례를 개똥쑥 부작용 사례라고 보도해 개똥쑥 재배 농민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 단체의 경우 비법인 사단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가사 그 요건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 사건 보도에서 직접 언급된 바가 없어 조정대상보도의 당사자로서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할 수 없다)

2013서울조정1725 (정정청구) 문화재청 對 MBN	
조 정 대 상	MBN 뉴스8 프로그램 『송례문 소방시설 ‘엉망’』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0일자 20:00)
신청인주장	방화로 소실되었던 송례문이 복원되었으나 복원과정에 소방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아 화재 대비에 미흡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MBN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MBN에 반론보도] <MBN 뉴스8> 프로그램의 말미에 반론보도, 조정대상보도 중에 사용된 관련 화면을 방송하면서 반론보도문의 본문을 진행자로 하여금 낭독하게 함 [인터넷 MBN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다만 조정대상보도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행 결 과	• MBN : 『MBN 뉴스8 프로그램 『송례문 소방시설 미흡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20일자 20:00) • 인터넷 MBN : 『송례문 소방시설 미흡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1일자)
2013서울조정1726~1727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사단법인 한국○○○○협회 對 미디어오늘,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신문 안보는데, 조중동 유료부수는 왜 그대로?』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3년 11월 20일자 2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11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문독자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일부 일간지의 유료 인증부수는 감소하지 않는 등 한국ABC협회의 일간지 유료부수 인증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약속)
이 행 결 과	• 미디어오늘 : 『한국○○○○협회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5일자) • 인터넷 미디어오늘 : 『[반론보도문] ‘신문 안보는데, 조중동 유료부수는 왜 그대로?’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9일자)
2013부산조정68~69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울산광역시 북구청 對 경상일보, 인터넷 경상일보	
조 정 대 상	• 경상일보 : 『북구청 직원용 고가의류 편법구매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9일자 1면) • 인터넷 경상일보 : 『울산 북구청 직원용 고가의류 편법구매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울산 북구청이 예산부족으로 소나무고사목을 제거하지 못하고 재선충병을 확산시켜 정부로부터 산림사업 일부 제한 등의 벌칙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벌칙을 받은 바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인터넷 경상일보 기사수정, 부제소) ※ 이행방법 [인터넷 경상일보에 정정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인터넷 경상일보 기사수정] 조정대상기사 중 특정 문구를 삭제함
이 행 결 과	• 경상일보 : 『‘울산광역시 북구청’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0일자 2면)

2013서울조정1728 (매체별 손해청구) 천○○ 對 채널A	
조 정 대 상	이영돈PD, 논리로 풀다 프로그램 『9회 - 암 4부』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21일자 21:50, 7월 25일자 00:10, 7월 27일자 11:20, 7월 30일자 02:20, 8월 2일자 13:00)
신청인주장	소아암 치료법에 관해 보도하면서 환자인 신청인 자녀 및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채널A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500만 원, 인터넷 채널A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채널A 기사수정]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조정대상방송에서 신청인과 신청인 가족 방송 부분을 삭제하고, 해당 프로그램 다시 보기 화면에 ‘초상권 침해 문제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제기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였으므로 불법으로 다운받아 배포할 시 법적 책임을 물겠다’는 취지의 안내 문구를 게시하며, 해당 프로그램이 게시된 다음과 네이버 사이트 관리자에게 해당 방송분이 게시되지 않도록 조치함. 또한 향후 신청인이 조정대상 프로그램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었다고 통지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경우 그 통지나 삭제를 요청받은 때로부터 1주일 이내에 피신청인은 배포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함
2013서울조정1729~1730 (매체별 손해청구) 천○○ 외 2인 對 리얼TV, 디원TV	
조 정 대 상	- 리얼TV : 이영돈PD, 논리로 풀다 프로그램 『9회 - 암 4부』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30일자 02:35, 16:25, 23:50, 9월 18일자 02:30, 09:20, 15:50, 11월 12일자 09:05, 16:15, 23:25) - 디원TV : 이영돈PD, 논리로 풀다 프로그램 『9회 - 암 4부』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8일자, 12월 3일자)
신청인주장	소아암 치료법에 관해 보도하면서 환자인 신청인 자녀 및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리얼TV · 디원TV : [기사수정]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과 신청인 가족 방송 부분이 방송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함
2013서울조정1731~1732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1. 사단법인 ○○○○○○회, 2. 송○○ 對 아시아일보, 인터넷 아시아일보	
조 정 대 상	『“○○○○○○지회 관변단체 전락”』 제하의 기사 (아시아일보 2013년 11월 25일자 1면, 인터넷 아시아일보 11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2가 지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신청인 1의 대표가 되면서 지역의 댜건립찬성을 주도하는 등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아시아일보에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의 초기화면에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업데이트에 따라 순서는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음)로 48시간 이상 게재함
이 행 결 과	『“○○○○○○지회 관변단체 전락”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아시아일보 2013년 12월 20일자 2면, 인터넷 아시아일보 12월 19일자)

2013경기조정183 (정정청구) 임수경 對 뉴스웍	
조 정 대 상	『임수경 패소, 재판부 “김일성 주석 ‘아버지’ 발언” 인정』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1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1989년 방북 당시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사과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 및 사과보도] 홈페이지 뉴스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에 정정 및 사과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임수경 패소, ‘재판부 김일성 주석 아버지 발언 인정’ 보도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8일자)
2013서울조정1733 (정정청구) 국립현대미술관 對 시사IN	
조 정 대 상	『‘시대정신’ 속 빠진 시대정신 전시회』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30일자 60~62면)
신청인주장	국립현대미술관이 청와대의 압력으로 특정 화백들의 작품을 서울관 개관전에서 제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국립현대미술관 개관전, 청와대 외압설’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8일자 9면)
2013광주조정76 (손배청구) 김○○ 對 광주KBS-1TV	
조 정 대 상	KBS 뉴스9 프로그램 『복지 사각지대 소홀』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5일자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공공근로 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기사삭제) ※ 이행방법 : [기사삭제] 결정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KBS미디어 홈페이지에서 조정대상 보도를 삭제함
2013서울조정1734~1735 (정정·손배청구) (주)○○○○○ 對 컨슈머타임스	
조 정 대 상	『‘월회비 150만 원’ ○○○○○ 아동 폭력사건 뒷집?』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유치원이 아동 간 폭력사고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가해아동의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대응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5일자)

2013충북조정36~37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이○○ 對 중부매일, 인터넷 중부매일	
조 정 대 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전횡 ‘논란’』 제하의 기사 (중부매일 2013년 11월 27일자 5면, 인터넷 중부매일 11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신청인이 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중부매일에 반론보도]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그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장 전횡 ‘논란’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부매일 2013년 12월 23일자 5면, 인터넷 중부매일 12월 19일자)
2013서울조정1736~1737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1. 박○○, 2. 서○○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1) 『상아탑의 파벌싸움, 세계 정상급 테너 교수영입 막았다』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1일자 A12면), (2) 『‘파벌싸움’ ○○대 성악과 또 교수 임용 갈등』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일자 A10면) • 동아닷컴 : 『[단독] 상아탑의 파벌싸움, 세계 정상급 테너 교수영입 막았다』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1일자), (2) 『‘파벌싸움’ ○○대 성악과 또 교수 임용 갈등』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일자)
신청인주장	성악과 교수인 신청인들이 파벌싸움으로 세계 정상급 테너를 교수로 임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대 성악과 교수 임용’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12월 26일자 12면, 동아닷컴 12월 26일자)
2013경기조정184~18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여행(주) 對 OBS경인TV, 인터넷 OBS경인TV	
조 정 대 상	• OBS경인TV : OBS 뉴스 M 프로그램 『[뉴스 M 포커스] 열차 티켓 특혜 의혹』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4일자 19:45) • 인터넷 OBS경인TV : 『‘수상한’ 열차 티켓…발매 즉시 매진?』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코레일로부터 철도여행상품을 지원받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OBS경인TV에 반론보도] <OBS 뉴스 M>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의 멘트로 반론보도 [인터넷 OBS경인TV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 OBS경인TV : 뉴스 M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19일자 19:45) • 인터넷 OBS경인TV : 『[‘코레일 특혜’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7일자)

2013서울조정1738~1739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1.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 2. 이○○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 ○○○○○○ 조합 ‘세입자 내쫓기’ 계약 맺어』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3년 11월 28일자 16면, 인터넷 한겨레 11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이 법을 어겨가며 철거업체를 선정하고 비인간적인 처사를 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섹션 내 사회섹션 내 지역 코너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당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조합 계약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3년 12월 27일자 10면, 인터넷 한겨레 12월 27일자)
2013서울조정1740~1741, 1798~1799	(기사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강○○ 對 데일리 위기관리경영
조 정 대 상	(1) 『[위기관리경영] 소방방재청, R&D사업과 학위취득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5일자) (2) 『[위기관리경영] 소방방재청, R&D사업과 학위취득 의혹? 두 번째』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박사학위 취득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은 박사학위심사위원장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첫화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72시간 이상 게재함
이 행 결 과	『現 한국방재협회 회장 보도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3일자)
2013서울조정1742~1743	(정정·손배청구) (주)○○○○○○○ 對 MBN
조 정 대 상	MBN 뉴스8 프로그램 『작통부품으로 시속300km 달린 KTX』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1일자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납품한 제품을 작통 부품이라고 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공문발송,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 소유 공장 및 부품과 관련한 영상을 DB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하여 향후 해당 영상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함
2013서울조정1744~1745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주식회사 ○○○○○○ 對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철거왕” 경찰 수사 때 … 간부, 후배 불러 “이○○ 봐 달라”』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3년 12월 5일자 12면, 온라인 중앙일보 12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 대표가 횡령혐의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경찰 등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유감표명)

2013서울조정1746~1747 (정정 · 손해청구) 이○○ 對 쿠키뉴스	
조 정 대 상	『“내 여동생이랑 누나 몰래 찍었는데, 좀 볼래?”...○○, 가족 성노리게 인증 물의』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연인이 신청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 게재한 이후로 수개월이 지나서 해당 사진이 신청인 가족에 의해 몰래 촬영된 사진인 것처럼 기사화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1748~1749 (정정 · 손해청구) 박○○ 對 YTN	
조 정 대 상	(1) 뉴스 Q (1부) 프로그램 『의료기기 리베이트 챙겨 ‘흥청망청’』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1일자 16:00) (2) 뉴스 Q (2부) 프로그램 『의료기기 리베이트 챙겨 ‘흥청망청’』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1일자 17:00) (3) 뉴스만만 (1부) 프로그램 『78억 리베이트...유흥 · 외제차 ‘흥청망청’』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1일자 20:00) (4) 뉴스만만 (2부) 프로그램 『78억 리베이트...유흥 · 외제차 ‘흥청망청’』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1일자 21:00)
신청인주장	병원장인 신청인이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유흥과 외제차 구입같은 호화생활에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제주조정2~3 (정정 · 손해청구) 한동주 對 제주의소리	
조 정 대 상	(1) 『한동주 시장, 우근민 제주지사 노골적 지지유도 파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30일자) (2) 『내가 당선되면 너는 시장 더해, 거래하고 왔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4일자) (3) 『한동주, 우지사지지 발언 반나절 만에 ‘직위해제’』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30일자) (4) 『선관위, 한동주 선거법위반 조사...“소환할 것”』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일자) (5) 『한동주 후폭풍 확산...몸통 우근민 지사 ‘수사’ 촉구』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일자) (6) 『시장이 ‘학연’ 이용 서귀포사회 분열, 갈등 조장』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일자) (7) 『드디어 입 연 우근민 “공무원 중립 훼손 도민께 송구”』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일자) (8) 『선거 거래설 파문 한동주 시장 무슨 말 할까?』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일자) (9) 『10개월짜리 시장? 수군거릴 분위기 아니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4일자)
신청인주장	서귀포시 시장이었던 신청인이 우근민 제주 지사를 노골적으로 지지 유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750~1751 (정정 · 손해청구) 주식회사 도서출판 ○○○○ 對 EBS-TV	
조 정 대 상	EBS 뉴스 프로그램 『교육청 추천도서?·알고 보니 거짓』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17일자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 출판사가 발간한 도서가 서울시 교육청의 추천도서가 아니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 <EBS뉴스>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진행자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함
이 행 결 과	EBS 뉴스 프로그램 『교육청 추천도서’ 보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4년 1월 17일자 20:00)

2013서울조정1752~1753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미디어스	
조 정 대 상	『○○○○○○○○○, 사장에게 직언했던 직원 ‘해고’』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모 직원이 사장에게 직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결정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미디어스에 반론보도를 게재한 이후,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반론 보도문을 즉시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직원 해고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5일자)
2013경기조정188~191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병합) ○○고등학교 對 경기신문, 인터넷 경기신문	
조 정 대 상	『찜질방 전전... “퇴사조치 부당” 반발』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3년 11월 14일자 23면, 인터넷 경기신문 11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자율학습시간에 음악을 들은 여학생을 기숙사에서 쫓아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경기신문 : [반론보도]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찜질방 전전... “퇴사조치 부당” 반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3년 12월 23일자 23면, 인터넷 경기신문 12월 22일자)
2013서울조정1754~1756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주)○○○○○○○○○직업전문학교 對 TIN뉴스 ⁽¹⁷⁵⁴⁾ , 인터넷 TIN뉴스 ^(1755, 1754와 병합) , 코리아패션뉴스 ^(1756, 1754와 병합)	
조 정 대 상	• TIN뉴스 : 『비싼 입학금과 학비만 받으면 끝? 입학생이 봉인가?』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4일자 11면) • 인터넷 TIN뉴스 : 『패션 전문학교 입학생이 봉인가?...』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3일자) • 코리아패션뉴스 : 『비싼 입학금과 학비만 받으면 끝? 입학생이 봉인가?...』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과목 부족으로 타 교육기관에서 학점을 채워야만 졸업이 가능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인터넷 TIN뉴스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업데이트에 따라 순서는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음)로 48시간 이상 게재함 [코리아패션뉴스에 반론보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업데이트에 따라 순서는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음)로 48시간 이상 게재함
이 행 결 과	• TIN뉴스 : 『『○○○○○○○○○직업전문학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6일자 21면) • 인터넷 TIN뉴스 : 『『○○○○○○○○○직업전문학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5일자) • 코리아패션뉴스 : 『『○○○○○○○○○직업전문학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7일자)

2013서울조정1757 (정정청구) 서영교 對 동아일보	
조 정 대 상	(1) 『공식회의장서 “닥쳐” 부끄러운 막말 국회』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2일자 A1면) (2) 『“돼지 눈엔 돼지만” “땀! 건방지게” ... ‘거친 입’ 국회』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2일자 A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막말 국회의원 1위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동아닷컴에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동아닷컴 : 『서영교 “국회의원 발언 공개되기 마련 좋은 언어 써야 한다는 데 공감”』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5일자)
2013경기조정192~195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주)○○○○○ 對 연수신문, 인터넷 시사 연수신문	
조 정 대 상	『상수도사업본부 토지 ‘임대계약서’ 논란』 제하의 기사 (연수신문 2013년 7월 24일자 1면, 인터넷 시사 연수신문 2013년 7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편법 임대차 계약을 맺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758~176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한○○ 對 조선닷컴, 티브이데일리	
조 정 대 상	• 조선닷컴 : 『○○ 정○○ 결혼, 예비신부 뒷모습 공개 “척 보니 미인이겠네”』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6일자) • 티브이데일리 : 『정○○ 결혼, 예비신부 뒷모습만 봐도 미인 예감? 과거 방송 ‘눈길’』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모 가수와 결혼할 예비 신부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선닷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15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티브이데일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조선닷컴 : [정정보도] 홈페이지 연예섹션에 정정보도문을 48시간 이상 게재함 • 티브이데일리 : [정정보도] 홈페이지 가요섹션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이상 게재함
이 행 결 과	• 조선닷컴 : 『○○ 정○○ 예비신부 공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7일자) • 티브이데일리 : 『○○ 정○○ 예비신부 공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0일자)
2013광주조정77 (정정청구) 허남석 對 광주타임즈	
조 정 대 상	『“허남석 곡성군수, 사전 선거운동 의혹” 파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4일자 1면)
신청인주장	군수인 신청인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1762	(반론청구) 서울시○○구○○○○공단노동조합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공기업마저 ‘노조 탄압 시대’』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노조가 사측의 어용노조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 홈페이지 뉴스섹션 내 사회섹션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구○○○○공단노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7일자)
2013서울조정1763	(정정청구) 정○○ 對 컨슈머타임스
조 정 대 상	『‘월회비 150만 원’ ○○○○○ 아동 폭력사건 뒷집?』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유치원의 한 지점에서 폭력 사건이 있었으며 이를 편파적으로 대응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기타 합의사항 :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한 이후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즉시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하고,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은 1주일간 게재 후 조정대상기사와 함께 삭제하여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함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홈페이지 교육섹션 기사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5일자)
2013서울조정1764	(손배청구) 1. (사)대한○○○○협회, 2. 표○○ 對 인터넷 국토일보
조 정 대 상	『진정한 勝者は 누구인가 !』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1 협회의 회장인 신청인 2가 선거 과정에서 마치 대의원들과 부정한 결탁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기타) ※ 기타 합의사항 [국토일보에 정정보도] 국토일보 1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해당 신문을 신청인들이 제공하는 신청인 회원들(약 250명)에게 피신청인 부담으로 배포함 [코스카저널에 정정보도] 신청인 단체가 운영하는 코스카저널에 정정보도문을 전재하여 편집, 발행, 배포하는 데 동의함 ※ 이행방법 : [정정보도] 홈페이지 뉴스면의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정정보도문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함, 정정보도문은 1주일간 게재 후, DB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함
이 행 결 과	• 인터넷 국토일보·국토일보 : 『대한○○○○협회 중앙회장 선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국토일보 2014년 1월 20일자, 국토일보 1월 20일자 1면)

2013서울조정1765 (정정청구) 정○○ 對 TV조선	
조 정 대 상	뉴스쇼 판 프로그램 『[TV조선 단독] 카메론 도피 ‘○○○ 핵심’ 영장』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17일자 21:40)
신청인주장	본인이 소액주주로 있는 회사에 관한 부정적인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에는 신청인의 성명, 초상 등 인적사항이 언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과 직접 관련된 사항도 적시되지 않았으므로 그와 신청인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13서울조정1766~1767 (정정 · 손해청구) 1. 최○○, 2. 이○○ 對 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新풍속도.. 월세살며 벤츠탄다』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30일자 19:55)
신청인주장	젊은 세대의 新소비풍속도를 전하면서, 신청인들이 월세를 살면서 빚을 내어 벤츠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신청인별 각 손해배상 200만 원,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보도는 허위보도가 아니며 인터뷰에 응한 신청인들의 신변을 보호하고자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다. 또한 신청인들의 불만제기 후에 iMBC 및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의 관련 기사를 삭제하면서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양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 이행방법 :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확정 전 이행도 가능)에 <8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2013서울조정1768 (손배청구) 이○○ 對 SBS-TV	
조 정 대 상	TV 동물농장 프로그램 『644회 - 낚새 맡는 犬 [영애]씨』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8일자 09:25)
신청인주장	TV 예능프로그램에 동의 없이 신청인의 모습을 방송에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250만 원 지급)
2013서울조정1769 (손배청구) 이○○ 對 SBS-TV	
조 정 대 상	TV 동물농장 프로그램 『644회 - 낚새 맡는 犬 [영애]씨』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8일자 09:25)
신청인주장	TV 예능프로그램에 동의 없이 신청인의 모습을 방송에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250만 원 지급)
2013서울조정1770 (정정청구) 구○○ 외 27인 對 채널A	
조 정 대 상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 『91회 - 개똥썩, 기적의 향암 약초인가?』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1일자 23:00)
신청인주장	개똥썩이 아닌 다른 풀의 복용자 사례를 개똥썩 부작용 사례라고 보도해 개똥썩 재배 농민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인 신청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771~1772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경찰청 對 시사저널, 인터넷 시사저널	
조 정 대 상	• 시사저널 : 『[단독보도] “송례문 기동에 러시아 소나무 썼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6일자 20~24면) • 인터넷 시사저널 : 『[단독] “송례문 기동에 러시아 소나무 썼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송례문 복원 공사에 러시아산 수입목재가 사용되었다는 의혹건과 관련해 경찰청에서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준 바가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시사저널에 반론보도] 시사저널에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후 가장 빨리 도래하는 날 홈페이지 사회면에 반론보도문을 24시간 게재함
이 행 결 과	• 시사저널 : 『“송례문 기동에 러시아산 소나무 사용”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0일자 35면) • 인터넷 시사저널 : 『[“송례문 기동에 러시아산 소나무 사용”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0일자)
2013전북조정38~39 (정정·손배청구) 1. 대한○○○○협회 ○○○○회, 2. 신○○ 對 전주매일	
조 정 대 상	(1) 『○○○○협 파행운영... 회원사 반발 확산』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8일자 1면) (2) 『○○협 ○○○회 회장직 ‘사고 파나’?』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6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차기 회장 선거를 임의로 지연시키는 등 파행운영이 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3서울조정1773~1774 (정정·손배청구) (사)한국○○○○○○○○협회 對 MBC-TV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881회 - 수상한 법인카드』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8일자 23:15)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 회원들이 가족들을 동반하여 해외 연수를 갔으며, 매주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눈먼 돈 잔치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iMBC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 iMBC 홈페이지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의 다시보기 화면 하단에 48시간 이상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이 행 결 과	• iMBC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0일자)
2013서울조정1775 (정정청구) 장○○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大 ‘시험의 神’ 비법은 교수실 문제 도둑질』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8일자 A12면)
신청인주장	모 대학 수의학과생 시험 부정행위 적발건과 관련해 신청인도 공범인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8일자 A10면)

2013서울조정1776~1777 (정정·손배청구) ○○○○○○○○○○○모임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대선전 보수단체 국가지원금, SNS 여론조작에 사용됐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이념 편향적인 단체로 국가 보조금을 편중 지원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778 (정정청구) 김○○ 對 국민일보	
조 정 대 상	『조폭 두목 조양은 필리핀서 검서』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7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폭력조직인 양은이파의 간부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779~1783 (매체별 추후청구) ○○수산(주) 對 연합뉴스 ⁽¹⁷⁷⁹⁾ , 한경닷컴 ⁽¹⁷⁸⁰⁾ , NSP통신 ⁽¹⁷⁸¹⁾ , 쿠키뉴스 ⁽¹⁷⁸²⁾ , 인터넷 여성소비자신문 ⁽¹⁷⁸³⁾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유통기한 지난 고등어로 만든 가공식품 적발·회수』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0일자) • 한경닷컴 : 『○○수산 고등어 회수 조치』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1일자) • NSP통신 : 『유통기한 지난 제품사용 고등어 가공품 제조판매 ‘물상식’ 식품업체 식약청에 적발』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0일자) • 쿠키뉴스 : 『○○수산, 유통기한 지난 고등어 재포장해 판매』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0일자) • 인터넷 여성소비자신문 : 『○○○ 다시마 간고등어 등 유통기한 지난 고등어 사용 ‘충격’』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해 유통한 것으로 적발되었으나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은 받았다.
처 리 결 과	• 연합뉴스 · 한경닷컴 · NSP통신 :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 쿠키뉴스 · 인터넷 여성소비자신문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연합뉴스 : 『○○수산 “유통기한 지난 고등어 식품 판매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31일자) • 한경닷컴 : 『○○수산(주) 유통기한 지난 고등어 사용은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3일자) • NSP통신 : 『○○수산, 유통기한 지난 고등어 식품 판매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3일자)
2013대구조정48 (정정청구) 박○○ 對 대구KBS-1TV	
조 정 대 상	시선, 오늘을 보다 프로그램 『4회 - ○○학원의 파행』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0일자 19:30)
신청인주장	학원 이사회의 파행 원인이 전임 이사인 신청인에게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784 (정정청구) ○○대학교병원 對 동아일보	
조 정 대 상	『이○○ 회장 수술 ○○대병원 의사 환자 사망 의료과실로 2억대 배상』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4일자 14면)
신청인주장	대기업 그룹 회장 수술을 집도했던 신청인 병원 의사가 의료과실로 환자를 사망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동아닷컴 기사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대병원 의료과실”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4일자)
2013서울조정1785 (손배청구) 최○○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졸업 미룬다고? 60만 원 내라” 취업난 학생에 무질하는 대학들』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취직을 못해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대학생들을 인터뷰하면서 신청인의 신원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3서울조정1786~1787 (정정·손배청구) (주)한국○○○○○○사업단 對 SBS-TV	
조 정 대 상	SBS 8 뉴스 프로그램 『‘아역배우’로 키워주겠다더니...』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15일자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아역배우로 키워 준다고 계약금을 받은 뒤 폐업한 업체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788~1794 전국철도노동조합 對 TV조선 ^(1788~1789 정정·손배청구) , MBN ^(1790~1792 정정·반론·손배청구) , 세계닷컴 ^(1793~1794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TV조선 : TV조선 뉴스9 프로그램 『‘철도 마피아 폭주’... 기관사가 파업 주도』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25일자 08:50) • MBN : MBN 뉴스 8 프로그램 『‘철도 마피아’ 폭주... 그들은 누구』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25일자 20:00) • 세계닷컴 : 『대화 귀담은 政 VS 조합비 막강 勞... ‘파국열차’』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5일자)
신청인주장	모 고등학교 및 대학교 동문 출신 기관사들로 구성된 속칭 ‘철도마피아’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TV조선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MBN · 세계닷컴 : 각 취하 ※ 이행방법 • TV조선 : [반론보도]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확정 전 이행도 가능)에 <TV조선 뉴스 9>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TV조선 : TV조선 뉴스9 프로그램 『철도노조 “철도고·철도대 출신 파업참가 10% 미만”』 제하의 보도 (2014년 2월 12일자 08:50)

2013서울조정1795~1796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평택시청 對 KBS-1TV, KBS미디어	
조 정 대 상	• KBS-1TV : (1) 취재파일 K 프로그램 『[기자가 간다] 제2의 용산? 지금 평택에선...』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13일자 22:50), (2) 뉴스 토크 프로그램 『[오늘의 현장] 제2의 용산? 지금 평택에선...』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16일자 15:00) • KBS미디어 : (1) 『[기자가 간다] 제2의 용산? 지금 평택에선...』 제하의 기사(2013년 12월 13일자), (2) 『[오늘의 현장] 제2의 용산? 지금 평택에선...』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6일자)
신청인주장	평택시가 추진하는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KBS미디어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KBS-TV에 반론보도] <취재파일 K>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진행자의 멘트 중 배경 화면은 원문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함 [KBS미디어 기사수정] 홈페이지의 다시보기 코너에 게시된 조정대상기사의 <취재파일 K> 및 <뉴스토크> VOD의 말미에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삽입함
이 행 결 과	• KBS-1TV : 취재파일 K 프로그램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4년 2월 21일자 22:50)

2013광주조정78 (정정청구) 1. (주)○○○○○특화시장, 2. 장○○ 對 KBC-TV	
조 정 대 상	(1) KBC 저녁뉴스 프로그램 『○○○○○특화시장 운영싸고 갈등』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1일자 17:15) (2) KBC 뉴스 8 프로그램 『○○○○○특화시장 상가 무단전대 의혹』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6일자 20:35) (3) KBC 뉴스 8 프로그램 『○○시 아케이드 상가 특혜성 지원 논란』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9일자 20:35) (4) KBC 뉴스 8 프로그램 『아케이드, 주식 매개로 한 불법 분양』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2일자 20:35) (5) KBC 뉴스 8 프로그램 『○○○○○특화시장 의혹 수사 착수』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13일자 20:35)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상가를 무단 전대한 의혹 등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3서울조정1797 (손배청구) 이○○ 對 KBS-2TV	
조 정 대 상	VJ특공대 프로그램 『695회 - 추울수록 대박! 겨울 특수를 잡아라!』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20일자 22:00)
신청인주장	공장에서 근무 중인 신청인의 모습을 촬영해 동의 없이 방송에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100만 원 지급)

2013서울조정1800~1801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대학교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1) 『대학이 학생회장 자격제한 못한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3년 11월 14일자 12면, 인터넷 한겨레 11월 13일자) (2) 『[단독] 귀막은 ○○대...판결 무시하고 징계 학생 출마 또 막아』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3년 11월 22일자 9면, 인터넷 한겨레 11월 22일자)
신청인주장	법원이 총학생회장 피선거권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신청인 대학의 학칙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한겨레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3일자 2면) • 인터넷 한겨레 : 『1월 13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2일자)
2013서울조정1802~1804 (정정·반론·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1) 『KBS, “스마트폰·PC도 수신료”』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8일자 2면) (2) 『스마트폰 수신료 불발 KBS 9시뉴스서 거짓말보도 파장』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0일자 2면) (3) 『영세상인·기업 1兆 ‘수신료 폭탄’』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1일자 1면)
신청인주장	KBS가 스마트폰, PC 등에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중장기적인 제안일 뿐이나, 마치 해당 사안에 대해 거짓보도를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e머니투데이에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합의사항 : e머니투데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즉시 전송하여 해당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KBS 수신료 인상 관련 정정·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머니투데이 2014년 2월 14일자 2면, e머니투데이 2월 14일자)
2013서울조정1805~1806 (매체별 정정청구) 사회복지법인 ○○○○○회 對 노컷뉴스,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 노컷뉴스 : 『엄마 노점 때려 부순 용역... 알고보니 같은 반 친구』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7일자) • 경향신문 : 『“노점 철거 용역에 고교생 알바”』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7일자 1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법인이 동원한 노점철거 용역직원 중에 고등학생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제 2 장 : 중재사건 전체 목록

2013서울중재1~2		(매체별 손해청구) (병합) 박○○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중 재 대 상	『감옥서 18개월 기른 둘째와 헤어지던 날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못난 엄마 되지말자고』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11월 14일자 11면, 조선닷컴 11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여성 재소자인 신청인이 수감 중 출산한 자녀를 친정으로 보낸 사연을 보도하면서 자녀이름 등을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손해배상 100만원, 부제소)	
2013서울중재3~4		(정정 · 반론청구) 양천구시설관리공단 對 디지털강서양천일보
중 재 대 상	『양천시설관리공단, 부당해고 · 모해위증 ‘소요’』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공단이 직원을 부당 해고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정치색션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1개월 이상 게시함	
이 행 결 과	『“양천시설관리공단, 부당해고”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4일자)	
2013서울중재5~6		(매체별 손해청구) (병합) 장○○ 對 이데일리(신문), 이데일리(인터넷)
중 재 대 상	• 이데일리(신문) : 『야후의 쓴소리』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7일자 1면) • 이데일리(인터넷) : 『“韓 소비자 지나치게 까다롭다”...야후 前 임직원 작심 발언』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개인 블로그에 쓴 글을 신청인의 동의 없이 왜곡 편집하여 기사에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중재화해결정 (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3서울중재7		(반론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미디어스
중 재 대 상	『블랙아웃 사고낸 KBS경인방송, ‘1년’ 재허가』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9일자)	
신청인주장	방송통신위원회가 KBS경인방송의 재허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 것이 블랙아웃 사고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반론보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미디어뉴스면 기사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24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블랙아웃 사고낸 KBS경인방송, 1년 재허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일자)	

2013서울중재8 (반론청구) 박○○ 對 오마이뉴스	
중 재 대 상	『천연기념물 흑두루미 내쫓는 4대강사업 막읍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8일자)
신청인주장	흑두루미 도래지인 해평습지를 대체하기 위해 조성된 강정생태하천이 대학교수인 신청인의 자문에 따라 조성된 곳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반론보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낙동강 해평습지 대체 생태하천 자문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일자)
2013서울중재9~11 (매체별 추후청구) 정○○ 對 네이버 ⁽⁹⁾ , 다음 ⁽¹⁰⁾ , 네이트 ⁽¹¹⁾	
중 재 대 상	『경찰이 지인 돈뜯거나 뺑소니 피의자 갈취』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권자를 협박하는 등 금전비리 혐의로 해임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 이행방법 • 네이버 : [추후보도] 기사제공언론사((주)연합뉴스)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추후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추후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또한 기사제공언론사((주)연합뉴스)로부터 추후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반론·추후 보도 기사 모음’란에도 추후보도문을 게시함 • 다음 : [추후보도] 기사제공언론사((주)연합뉴스)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추후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추후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또한 기사제공언론사((주)연합뉴스)로부터 추후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 홈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언론중재법 피해구제보도’란에도 추후보도문을 게시함 • 네이트 : [추후보도] 기사제공언론사((주)연합뉴스)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추후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추후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또한 기사제공언론사((주)연합뉴스)로부터 추후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기사’란에도 추후보도문을 게시함
이 행 결 과	『‘지인 돈 뜯은 경찰’ 기사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2013서울중재12~13	(매체별 추후청구) 정○○ 對 네이버, 다음
중 재 대 상	『협박 통해 돈 뜯어낸 경찰 해임』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권자를 협박하는 등 금전비리 혐의로 해임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 이행방법 • 네이버 : [추후보도] 기사제공언론사(디지털와이티엔(주))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추후기자 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추후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또한 기사제공언론사(디지털와이티엔(주))로부터 추후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반론·추후 보도 기사 모음’란에도 추후보도문을 게시함 • 다음 : [추후보도] 기사제공언론사(디지털와이티엔(주))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추후기자 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추후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기사제공언론사(디지털와이티엔(주))로부터 추후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 홈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언론 중재법 피해구제보도’란에도 추후보도문을 게시함
이 행 결 과	• 네이버 : 『추후 보도문』 공갈혐의 경찰관, 무혐의처분받아』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9일자) • 다음 : 『추후 보도문』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9일자)

2013서울중재14~16	(매체별 추후청구) 정○○ 對 네이버 ⁽¹⁴⁾ , 다음 ⁽¹⁵⁾ , 네이트 ⁽¹⁶⁾
중 재 대 상	『조폭 동원하고… 뺑소니 무마하고…』 돈 뜯어낸 경찰』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권자를 협박하는 등 금전비리 혐의로 해임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 이행방법 • 네이버 : [추후보도] 기사제공언론사(주)뉴시스)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추후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추후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기사제공언론사(주)뉴시스)로부터 추후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반론·추후보도 기사 모음’란에도 추후보도문을 게시함 • 다음 : [추후보도] 기사제공언론사(주)뉴시스)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추후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추후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기사제공언론사(주)뉴시스)로부터 추후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 홈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언론중재법 피해구제보도’란에도 추후보도문을 게시함 • 네이트 : [추후보도] 기사제공언론사(주)뉴시스)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추후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추후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기사제공언론사(주)뉴시스)로부터 추후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기사’란에도 추후보도문을 게시함
이 행 결 과	『‘돈 뜯은 경찰’기사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2013서울중재17~20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1.고○○, 2. 최○○ 對 네이버, 다음	
중 재 대 상	『‘대낮 폭행신고’... ○○○시청 기자실에 무슨일이?』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기자인 신청인들이 상습적으로 음주, 폭행 등을 하여 기자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시청 기자실 폭행 사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0일자)
2013서울중재21~24 (매체별 추후청구) 정○○ 對 인터넷 MBN ⁽²¹⁾ , 네이버 ⁽²²⁾ , 네이트 ⁽²³⁾ , 동아닷컴 ⁽²⁴⁾	
중 재 대 상	- 인터넷 MBN·네이버·네이트 : 『교통경찰관 잇따라 금전 비리...경찰 진화 나서』 제하의 기사 (인터넷 MBN·네이버 2011년 5월 30일자, 네이트 5월 31일자) - 동아닷컴 : 『경찰이 지인 돈 뜯거나 뺑소니 피의자 갈취』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1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권자를 협박하는 등 금전비리 혐의로 해임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인터넷 MBN·네이버·네이트 : 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 동아닷컴 :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기사삭제) ※ 기타 결정사항 - 인터넷 MBN : 추후보도문을 게재한 즉시, 계약관계 각 포털사에 추후보도문을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 이행방법 - 네이버 : [추후보도] 기사제공언론사((주)매일방송(인터넷MBN))으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추후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추후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기사제공언론사((주)매일방송(인터넷MBN))으로부터 추후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반론·추후보도 기사 모음’란에도 추후보도문을 게시함 - 네이트 : [추후보도] 기사제공언론사((주)매일방송(인터넷MBN))으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추후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추후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기사제공언론사((주)매일방송(인터넷MBN))으로부터 추후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기사’란에도 추후보도문을 게시함 - 동아닷컴 : [추후보도]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홈페이지 사회면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추후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이상 게재함
이 행 결 과	- 인터넷 MBN·네이버·네이트 : 『‘교통경찰관 잇따라 금전 비리’ 기사 관련 추후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8일자) - 동아닷컴 : ‘경찰이 지인 돈 뜯거나 뺑소니 피의자 갈취’ 관련 추후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일자)

2013서울중재25~26	
중 재 대 상	(매체별 반론청구) 김○○ 對 다음, 네이버
신청인주장	『○○○○ 추가조작』 김○○ 전 대사 구속 방침』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9일자)
신청인주장	에너지자원대사를 역임한 신청인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과 관련한 외교통상부의 보도자료 발표 직전에 친인척 명의로 회사주식을 사들여 수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다음 :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기사제공언론사(주식회사 인터넷 한국일보)로부터 전송받은 반론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미디어 다음>의 뉴스 검색기능을 통해 함께 검색되도록 하되, 뉴스 홈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 난에도 게시하도록 함 • 네이버 :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기사제공언론사(주식회사 인터넷 한국일보)로부터 전송받은 반론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네이버 뉴스>의 뉴스 검색기능을 통해 함께 검색되도록 하되,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반론·추후 보도 기사 모음’ 난에도 게시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김○○ 전 대사 “친인척 명의 ○○○주식 사들인 적 없어”』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7일자)
2013서울중재27	
중 재 대 상	(반론청구) ○○상조○○○(주) 對 조선비즈닷컴
신청인주장	『선수금 속이고 피해보험계약 건너뛴 상조업체 3개 제재』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9일자)
신청인주장	상조회사인 신청인 업체가 고객 돈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이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반론보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정책분석섹션 중 산업 · 통상면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함
이 행 결 과	『“○○상조○○○”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8일자)
2013서울중재28~29, 36~37	
중 재 대 상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 지주단체 對 네이트,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신청인주장	『<단독> 일개 인터넷 동호회에 ‘질질’ 끌려다니 코레일』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인터넷 기차여행 동호회 카페인 신청인 단체가 한국철도공사 지역본부에 대해 무리한 지원요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타 결정사항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네이트 등 중재대상기사를 매개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전송하여 중재대상기사가 게재된 동일한 섹션에 게재되고 검색될 수 있도록 함 ※ 이행방법 • 네이트 :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기사제공언론사(주식회사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인터넷 아주경제))로부터 전송받은 반론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가 위치한 동일한 섹션에 반영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기사 모음’ 난에 게재함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반론보도]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48시간 동안 중재대상기사와 동일한 섹션(뉴스)(한국어)부동산)교통)에 제목을 클릭하면 전체 내용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게재하되, 기사순서는 최초에는 위에서 첫 번째에 등재하고 새로운 다른 기사 업데이트에 따라 차례로 아래로 내려오도록 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기차여행 B카페의 금품수수 및 무리한 협조요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9일자)

2013서울중재30~35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엄○○ 對 YTN ^(30~31) , 인터넷 YTN ^(32~33) , 뉴스1 코리아 ^(34~35)
중재대상	• YTN : (1) 뉴스오늘 (1부) 프로그램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적절 발언’』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8일자 07:58) (2) 뉴스오늘 (2부) 프로그램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적절 발언’』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8일자 08:58) (3) 뉴스현장 (2부) 프로그램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적절 발언’』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8일자 10:58) (4) 뉴스12 프로그램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적절 발언’』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8일자 11:58) (5) 뉴스&이슈 (1부) 프로그램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적절 발언’』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8일자 12:58) (6) 뉴스&이슈 (2부) 프로그램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적절 발언’』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8일자 13:58) • 인터넷 YTN :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적절 발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8일자) • 뉴스1 코리아 :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 “아빠랑 사귀었냐”』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의붓딸이 신청인한테 성폭행 피해를 받았던 것으로 단정하여 보도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 YTN·인터넷 YTN :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 뉴스1 코리아 :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이행방법 • YTN : [반론보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YTN24>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또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중재대상보도에 대한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지함 • 인터넷 YTN : [반론보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면에 반론 보도문을 1개월 이상 게시함, 또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YTN의 중재 대상보도에 대한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지함 • 뉴스1 코리아 :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게시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이행결과	• YTN : YTN24 프로그램 『‘10대 의붓딸 성폭행’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3월 27일자 20:58) • 인터넷 YTN : 『‘10대 의붓딸 성폭행’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7일자) • 뉴스1 코리아 : 『[성폭행 피해자에 “아빠랑 사귀었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6일자)

2013서울중재38~43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對 네이버 ⁽³⁸⁻³⁹⁾ , 네이트 ⁽⁴⁰⁻⁴¹⁾ , 다음 ⁽⁴²⁻⁴³⁾
중 재 대 상	『비서진 달랑 1명…차에 홀대 우울한 서강대』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대학교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경의선 서강역의 명칭을 서강대역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네이버 :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기사제공언론사(주식회사 문화일보)로부터 전송 받은 정정보도문을 뉴스 홈의 중재대상기사가 위치한 동일한 섹션에 반영하여 검색되도록 함, 또한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반론·추후 보도 기사 모음'란에 정정보도문을 게시함 • 네이트 :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기사제공언론사(주식회사 문화일보)로부터 전송 받은 정정보도문을 뉴스 홈의 중재대상기사가 위치한 동일한 섹션에 반영하여 검색되도록 함, 또한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기사 모음'란에 정정보도문을 게시함 • 다음 :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기사제공언론사(주식회사 문화일보)로부터 전송 받은 정정보도문을 뉴스 홈의 중재대상기사가 위치한 동일한 섹션에 반영하여 검색되도록 함, 또한 뉴스 홈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란에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차에 홀대받는 우울한 서강대』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8일자)
2013서울중재44~4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네이버, 다음
중 재 대 상	『[집중취재] 학교 식중독 예방 오존살균기 'एं터리'』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만든 오존살균기가 제 역할을 못할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기 까지 하는 엔터리 제품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네이버 :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네이버 뉴스>의 뉴스 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게시하되, 뉴스홈에 마련된 <정정·반론·추후 보도 기사 모음>란에 반론 보도문을 게시함 • 다음 :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미디어 다음>의 뉴스 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게시하되, 뉴스홈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란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이 행 결 과	『<학교 식중독 예방 오존살균기 'एं터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네이버 2013년 4월 8일자, 다음 4월 9일자)
2013서울중재48~75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주)○○○○○○○○ 對 뉴시스 ⁽⁴⁸⁻⁴⁹⁾ , 연합뉴스 ⁽⁵⁰⁻⁵¹⁾ , 뉴스1 코리아 ⁽⁵²⁻⁵³⁾ , 디지털 세상신문 ⁽⁵⁴⁻⁵⁵⁾ , 스타뉴스 ⁽⁵⁶⁻⁵⁷⁾ , 미디어스 ⁽⁵⁸⁻⁵⁹⁾ , 노컷뉴스 ⁽⁶⁰⁻⁶¹⁾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⁶²⁻⁶³⁾ , 오마이뉴스 ⁽⁶⁴⁻⁶⁵⁾ , 인터넷 미디어오늘 ⁽⁶⁶⁻⁶⁷⁾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⁶⁸⁻⁶⁹⁾ , 온라인 중앙일보 ⁽⁷⁰⁻⁷¹⁾ , 아이피디저널(IPD저널) ⁽⁷²⁻⁷³⁾ , 인터넷 기자협회보 ⁽⁷⁴⁻⁷⁵⁾
중 재 대 상	• 뉴시스 : 『MBC 위법 경찰 수사 촉구하는 MBC 노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연합뉴스 : 『MBC노조, '해킹 의혹' 사측에 7 천만 원 손해소송』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뉴스1 코리아 : 『MBC 노조 김○○ 사장 상대 손해 청구』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디지털 세상신문 : 『MBC 노조, 김○○ 사장 등 상대로 손해소 제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5일자) • 스타뉴스 : 『MBC 노조 "사측 해킹프로그램 유포"..7 천만 원 손해소』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5일자)

중재대상	• 미디어스 : 『MBC노조, 김○○ 사장과 MBC에 ‘7천만 원’ 손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노컷뉴스 : 『MBC노조 “사측이 악성프로그램으로 해킹했다” 7천만 원 손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MBC노조, ‘해킹 피해’로 사측에 손배소송 제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오마이뉴스 : 『회사가 조직원 해킹?...MBC 노조원 회사 상대로 민사소송』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인터넷 미디어오늘 : 『MBC 노조, 사측 ‘해킹’ 의혹에 손해배상 제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MBC노조, ‘해킹 의혹’ 사측에 7천만 원 손배소송』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온라인 중앙일보 : 『MBC노조 “사측이 악성프로그램으로 해킹했다” 7천만 원 손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아이피디저널(IPD저널) : 『MBC노조, 사측 ‘해킹’ 의혹에 7000만 원 손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 인터넷 기자협회보 : 『MBC 노조, ‘○○○○’ 손해배상 소송 제기』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악성 해킹프로그램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뉴시스 : [반론보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뉴스포토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되, 게시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 연합뉴스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되, 게시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 뉴스1 코리아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사회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되, 게시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 디지털 세상신문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뉴스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되, 게시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 스타뉴스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방송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되, 게시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 미디어스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미디어뉴스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되, 게시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 노컷뉴스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되, 게시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되, 게시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 오마이뉴스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뉴스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되, 게시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 인터넷 미디어오늘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정치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되, 게시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뉴스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되, 게시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 온라인 중앙일보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뉴스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되, 게시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 아이피디저널(IPD저널)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미디어뉴스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되, 게시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 인터넷 기자협회보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의 기자협회보섹션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되, 게시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이 행 결 과	• 뉴스 : 『〈MBC 위법 경찰 수사 촉구하는 MBC 노조〉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9일자) • 연합뉴스 : 『〈MBC 노조, ‘해킹 의혹’ 사측에 7 천만 원 손해소송〉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9일자) • 뉴스1 코리아 : 『〈MBC 노조, 김○○ 사장 상대 손해 청구〉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9일자) • 디지털 세상신문 : 『〈MBC 노조, 김○○ 사장 등 상대로 손해소 제기〉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0일자) • 스타뉴스 : 『〈MBC노조 “사측 해킹프로그램 유포”..7천만 원 손해소〉 기사관련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0일자) • 미디어스 : 『〈MBC노조, 김○○ 사장과 MBC에 ‘7천만 원’ 손해소〉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1일자) • 노컷뉴스 : 『〈MBC노조 “사측이 악성프로그램으로 해킹했다” 7천만 원 손해소’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2일자)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MBC 노조, ‘해킹 피해’로 사측에 손해소송 제기〉 보도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5일자) • 오마이뉴스 : 『〈반론보도문〉 ‘회사가 조직원 해킹?...MBC 노조원 회사 상대로 민사소송 관련』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5일자) • 인터넷 미디어오늘 : 『〈MBC 노조, 사측 ‘해킹’ 의혹에 손해배상 제기〉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5일자)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MBC 노조, ‘해킹 의혹’ 사측에 7 천만 원 손해소송〉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1일자) • 온라인 중앙일보 : 『〈MBC노조 “사측이 악성프로그램으로 해킹했다” 7천만 원 손해소’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2일자) • 아이피디저널(IPD저널) : 『〈MBC노조, 사측 ‘해킹’ 의혹에 7000만 원 손해소〉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2일자) • 인터넷 기자협회보 : 『〈MBC 노조, ‘○○○○’ 손해배상 소송 제기’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2일자)
2013서울중재76~77 (기사별 정정·손배청구) 대한불교조계종 ○○사 對 네이버	
중 재 대 상	(1) 『○○사 前 부주지,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3일자) (2) 『○○ 스님, ‘불자가 술·담배도 모자라 살인까지 하려 들어’』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5일자) (3) 『○○사 부주지 등 살인혐의로 고발한 ○○ 스님』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사찰 소속 부주지와 승려들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정정보도) ※ 이행방법 : 기사제공언론사(뉴스)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정정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반론·추후보도 기사 모음’ 난에도 게시함
이 행 결 과	『○○사 前 부주지,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3일자)

2013서울중재78~81	(매체별 추후·손배청구) 김○○ 對 네이트, 다음
중 재 대 상	『“벽보고 움직이지 마”... 어린이집 아동학대』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기사삭제)
2013서울중재82~88, 93~94	(매체별 추후청구) 최○○ 對 인터넷 경향신문 ⁽⁸²⁾ , MK뉴스 ⁽⁸³⁾ , e머니투데이 ⁽⁸⁴⁾ , 인터넷 문화일보 ⁽⁸⁵⁾ , 한경닷컴 ⁽⁸⁶⁾ , 인터넷 YTN ⁽⁸⁷⁾ , 인터넷 MBN ⁽⁸⁸⁾ , YTN ⁽⁹³⁾ , 연합뉴스TV(뉴스Y) ⁽⁹⁴⁾
중 재 대 상	• 인터넷 경향신문 : 『국내산 고급 홍삼 알고봤더니... 중국산 수삼』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 MK뉴스 : 『중국산 수삼을 홍삼으로 속여 판매』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 e머니투데이 : 『중국산 홍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일당 검거』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 인터넷 문화일보 : 『中 수삼을 ‘국산홍삼’ 둔갑 제조·유통시킨 60대 할머니』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 한경닷컴 : 『중국산 수삼, 국산홍삼으로 둔갑』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3일자) • 인터넷 YTN : 『중국 인삼 ‘고려 홍삼’ 으로 둔갑』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 인터넷 MBN : 『중국산 인삼, 국산 홍삼으로 ‘둔갑’』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 YTN : 뉴스출발 프로그램 『중국 인삼 ‘고려 홍삼’으로 둔갑』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2일자 05:57) • 연합뉴스TV(뉴스Y) : 뉴스 프로그램 『가짜 홍삼 1억 원 어치 판매 일당 검거』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2일자 09: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중국산 수삼을 국내산 홍삼으로 표시하여 판매해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고 보도 하였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경향신문·MK뉴스·e머니투데이·인터넷 문화일보·한경닷컴·인터넷 MBN: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뉴스란 사회섹션에 추후보도문을 게시함 • 인터넷 YTN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뉴스란 사회섹션에 추후 보도문을 게시함
이 행 결 과	• 인터넷 경향신문 : 『‘국내산 고급 홍삼, 중국산 수삼’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6일자) • MK뉴스 : 『‘중국산 수삼, 홍삼으로 속여 판매’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1일자) • e머니투데이 : 『‘중국산 홍삼, 국내산으로 둔갑’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0일자) • 인터넷 문화일보 : 『‘중국산 홍삼을 국산으로 둔갑 제조 유통’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2일자) • 한경닷컴 : 『‘중국산 수삼, 국산 홍삼으로 둔갑’ 관련 추후 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인터넷 YTN : 『‘중국 인삼 ‘고려 홍삼’으로 둔갑’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5일자) • 인터넷 MBN : 『‘중국산 인삼, 국산 홍삼으로 둔갑’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4일자) • YTN : 뉴스출발 프로그램 『중국인삼 고려홍삼으로 둔갑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15일자 05:57) • 연합뉴스TV(뉴스Y) : 뉴스 프로그램 『‘가짜 홍삼 판매 일당 검거’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15일자 09:00)

2013서울중재89~92	(매체별 정정청구) ○○○어린이집연합회 ○○○위원회 對 네이버 ⁽⁸⁹⁾ , 다음 ⁽⁹⁰⁾ , 줌 ⁽⁹¹⁾ , 네이트 ⁽⁹²⁾
중 재 대 상	(1) 『살생부 오른 어린이집 교사 “살려달라”』 제하의 기사 (네이버 · 다음 · 줌 · 네이트 2013년 5월 9일자) (2) 『어린이집, 집단행동 거두고 투명 운영 나서야』 제하의 기사 (네이버 · 다음 · 줌 · 네이트 2013년 5월 9일자)
신청인주장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에 협조한 보육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돌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네이버 : 기사제공언론사(온라인 중앙일보)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이 뉴스 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게시하고, 뉴스홈에 마련된 ‘정정 · 반론 · 추후보도 기사 모음’ 난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온라인 중앙일보)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이 뉴스 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게시하고, 뉴스홈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 난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 줌 : 기사제공언론사(온라인 중앙일보)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이 뉴스 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게시하고, 뉴스홈에 마련된 ‘정정기사’ 난에도 게시함 • 네이트 : 기사제공언론사(온라인 중앙일보)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이 뉴스 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게시하고, 뉴스홈에 마련된 ‘정정기사 모음’ 난에도 게재함
이 행 결 과	『어린이집 블랙리스트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3일자)
2013서울중재95~98	(매체별 정정청구) (주)○○○ 對 네이버 ⁽⁹⁵⁾ , 다음 ⁽⁹⁶⁾ , 네이트 ⁽⁹⁷⁾ , 줌 ⁽⁹⁸⁾
중 재 대 상	(1) 『○○ 브랜드택시사업, 장비하자 논란에 출발부터 삐걱』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3일자) (2) 『브랜드택시사업, 악취 진동』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8일자)
신청인주장	택백시 브랜드택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 회사가 제안요청서와 달리 저가품을 고가에 납품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기사삭제)
2013서울중재99~106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이○○ 對 네이버 ^(99~100) , 다음 ^(101~102) , 네이트 ^(103~104) , 줌 ^(105~106)
중 재 대 상	『자격증 ‘우후죽순’... 돈벌이 전락!』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극심한 취업난을 틈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자격증 취득 학원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이 경영 중인 업체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기사수정) ※ 이행방법 : 기사제공언론사(인터넷 YTN)가 신청인, 신청인이 운영하는 학원 및 수강생의 영상 · 음성 부분이 삭제된 기사를 전송하면 3일 이내에 이를 게시함

2013서울중재107~11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문○○ 외 44인 對 네이버 ^(107~108) , 다음 ^(109~110) , 네이트 ^(111~112)
중 재 대 상	『○○○구역 찬성파 “주민투표 실시하라”... 시청 점거농성』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지역 재개발사업을 찬성하는 주민의 점거농성을 보도하면서 빌라 사업자들이 개발을 반대하고 있으며, 빌라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사업성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네이버 : 기사제공언론사(e머니투데이)로부터 정정 및 반론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뉴스 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게시하고, 뉴스홈에 마련된 ‘정정·반론·추후보도 기사 모음’ 난에도 게시하도록 함 •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e머니투데이)로부터 정정 및 반론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뉴스 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게시하고, 뉴스홈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 난에도 게시하도록 함 • 네이트 : 기사제공언론사(e머니투데이)로부터 정정 및 반론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뉴스 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게시하고, 뉴스홈에 마련된 ‘정정기사 모음’ 난에도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 ○구역 재개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0일자)
2013서울중재113~114, 118	(매체별 추후청구) 은○○ 對 뉴스엔 ⁽⁸³⁵⁾ , 동아닷컴 ⁽⁸³⁶⁾ , 네이버 ⁽⁸⁷⁸⁾
중 재 대 상	• 뉴스엔 : 『나꼼수, 강○○ 신○○ 검찰소환 예상 “정치비리 은폐카드” 주장』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5일자) • 동아닷컴·네이버 : 『은○○ 前 PD ‘식칼 테러’ 50대는 조폭 두목』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저축은행 불법대출에 관련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 이행방법 • 뉴스엔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시하되, 중재대상기사 전체를 삭제하거나 중재대상기사 중 신청인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아닷컴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시하되, 중재대상기사 전체를 삭제하거나 중재대상기사 중 신청인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네이버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시하되, 중재대상기사 전체가 삭제되거나 중재대상기사 중 신청인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행 결 과	• 뉴스엔 : 『뉴스엔은 지난해 7월 25일자 ‘나꼼수, 강○○·신○○ 검찰소환 예상 “정치비리 은폐카드” 주장’ 제하의 기사에서...』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8일자) • 동아닷컴·네이버 : 『“○○저축은행 대출비리”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일자)

2013서울중재115, 119 (매체별 추후청구) 은○○ 對 오마이뉴스, 네이버	
중 재 대 상	『검찰소환설’ 신○○, 음모론 피해자가 되선 안 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저축은행 불법대출에 관련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 이행방법 • 오마이뉴스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시하되, 중재대상기사 전체를 삭제하거나 중재대상기사 중 신청인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네이버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시하되, 중재대상기사 전체가 삭제되거나 중재대상기사 중 신청인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행 결 과	『○○저축은행 대출비리’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일자)
2013서울중재116, 120 (매체별 추후청구) 은○○ 對 인터넷 스포츠한국, 네이버	
중 재 대 상	『강○○에 엄청난 시련 닥치나... 나꼼수 주장 파문』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저축은행 불법대출에 관련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스포츠한국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시하되, 중재대상기사 전체를 삭제하거나 중재대상기사 중 신청인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네이버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시하되, 중재대상기사 전체가 삭제되거나 중재대상기사 중 신청인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행 결 과	『○○저축은행 대출비리’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일자)
2013서울중재117, 121 (매체별 추후청구) 은○○ 對 인터넷 한국일보, 네이버	
중 재 대 상	『은○○ 전 PD 불법대출’ 연예계 뒤흔드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저축은행 불법대출에 관련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국일보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시하되, 중재대상기사 전체를 삭제하거나 중재대상기사 중 신청인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네이버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시하되, 중재대상기사 전체가 삭제되거나 중재대상기사 중 신청인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행 결 과	『○○저축은행 대출비리’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일자)

2013서울중재122	(기사별 추후청구) 은○○ 對 네이버
중 재 대 상	(1) 『○○ 최대 저축은행이 거덜난 까닭』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3일자) (2) 『저축은행 수사, 핵심은 다 빠졌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저축은행 불법대출에 관련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 이행방법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저축은행 수사, 핵심은 다 빠졌네) 하단에 이어서 게시하되, 중재대상기사 전체가 삭제되거나 중재대상 기사 중 신청인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행 결 과	『은○○ 전PD ○○저축은행 불법대출』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30일자)
2013서울중재123~182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채○○ 對 서울신문 Boom(봄) ⁽¹²³⁻¹²⁴⁾ , 스포츠서울닷컴 ⁽¹²⁵⁻¹²⁶⁾ , 티브이데일리 ⁽¹²⁷⁻¹²⁸⁾ , 온라인 중앙일보 ⁽¹²⁹⁻¹³⁰⁾ , 오마이뉴스 ⁽¹³¹⁻¹³²⁾ , 엑스포츠뉴스 ⁽¹³³⁻¹³⁴⁾ , 뉴스핌 ⁽¹³⁵⁻¹³⁶⁾ , 인터넷 SBS CNBC ⁽¹³⁷⁻¹³⁸⁾ , Gvalley ⁽¹³⁹⁻¹⁴⁰⁾ , 아시아경제닷컴 ⁽¹⁴¹⁻¹⁴²⁾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¹⁴³⁻¹⁴⁴⁾ , 폴리뉴스 ⁽¹⁴⁵⁻¹⁴⁶⁾ , 인터넷 MBN ⁽¹⁴⁷⁻¹⁴⁸⁾ , 인터넷 엠티엔(MTN) ⁽¹⁴⁹⁻¹⁵⁰⁾ , 컨슈머타임스 ⁽¹⁵¹⁻¹⁵²⁾ , 민중의소리 ⁽¹⁵³⁻¹⁵⁴⁾ , MK뉴스 ⁽¹⁵⁵⁻¹⁵⁶⁾ , 조선비즈닷컴 ⁽¹⁵⁷⁻¹⁵⁸⁾ , TV리포트 ⁽¹⁵⁹⁻¹⁶⁰⁾ , 인터넷 365 ⁽¹⁶¹⁻¹⁶²⁾ , SSTV ⁽¹⁶³⁻¹⁶⁴⁾ , etv ⁽¹⁶⁵⁻¹⁶⁶⁾ , 인터넷 스포츠한국 ⁽¹⁶⁷⁻¹⁶⁸⁾ , 인터넷 한국일보 ⁽¹⁶⁹⁻¹⁷⁰⁾ ,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¹⁷¹⁻¹⁷²⁾ , 인터넷 스포츠동아 ⁽¹⁷³⁻¹⁷⁴⁾ , 세계닷컴 ⁽¹⁷⁵⁻¹⁷⁶⁾ , wow한국경제TV ⁽¹⁷⁷⁻¹⁷⁸⁾ , 이투데이 ⁽¹⁷⁹⁻¹⁸⁰⁾ , 인터넷 헤럴드경제 ⁽¹⁸¹⁻¹⁸²⁾
중 재 대 상	• 서울신문 Boom(봄) : 『어린이집 잠깐, SUV 트렁크 잠깐에서 아이들 우르르 ‘무슨 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스포츠서울닷컴 : 『어린이집 잠깐에 보호 장구 없이 아이들이?! ‘충격’』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티브이데일리 : 『어린이집, 잠깐에 아이들 탑승시켜 귀가? ‘파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온라인 중앙일보 : 『SUV 트렁크 열자 잠깐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오마이뉴스 : 『차 트렁크에 아이 태우고 소풍?... 누리꾼들 부글부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엑스포츠뉴스 : 『어린이집, 잠깐에 아이들 태우고 소풍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뉴스핌 : 『어린이집 잠깐, 트렁크 열자 아이들이 웅기충기... 보호장비도 없이 ‘충격’』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인터넷 SBS CNBC : 『어린이집 잠깐에 아이들 태우고 소풍? ‘파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Gvalley : 『어린이집 잠깐 실어 ‘분통’... “어린이집이야? 지옥의집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아시아경제닷컴 : 『[사회] 어린이집 잠깐 파문... 원장 해명에도 네티즌 비난 잇따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어린이집 잠깐에 아이들 탑승? “안전장비 하나 없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폴리뉴스 : 『SUV 잠깐 어린이집 아이들, ‘우르르’...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인터넷 MBN : 『어린이집 잠깐 파문, 네티즌 비난 폭발! 원장 해명 들어보니...』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인터넷 엠티엔(MTN) : 『어린이집 잠깐 논란, 아이들을 SUV 트렁크에? ‘안전할까?’』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컨슈머타임스 : 『어린이집 잠깐, SUV 트렁크에 ‘우르르’... 어린이집 원장 직접 해명 나서』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민중의소리 : 『어린이집 잠깐, 어이 없는 장면에 ‘당황’』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중 재 대 상	• MK뉴스 : 『어린이집 집단 논란, 해당원장 “안전 장치 설치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조선비즈닷컴 : 『어린이집 집단 논란 “해당 어린이집 원장 직접 해명해...”』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TV리포트 : 『어린이집 집단 논란에 원장 해명 “충격흡수 좌석 2개 설치”』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인터뷰365 : 『어린이집 집단 논란, 아이들 트렁크에 태우고 소풍? ‘비난 폭발’』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SSTV : 『어린이집 집단 논란, “뒷좌석 개조했다” 해명에도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etv : 『어린이집 집단 논란... 원장 “안전 장치 설치 했다” 해명』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인터넷 스포츠한국 : 『어린이집 집단 논란, 알고보니...』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인터넷 한국일보 : 『어린이집 집단 파문, 아이들 트렁크에 태우고... ‘네티즌 분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 『어린이집 집단 논란... “선생님은 좌석에 앉고 아이들은 집단에?”』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인터넷 스포츠동아 : 『어린이집 집단, 아이들을 짐짝같이... ‘누리꾼 충격’』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4일자) • 세계닷컴 : 『어린이집 집단 논란... “우리 아이가 짐짝?”』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wow한국경제TV : 『어린이집 집단 파문, 해명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 분노』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이투데이 : 『어린이집 집단 파문, “아이들은 트렁크에 짐짝처럼... 선생님은 좌석에” 공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어린이집 집단 파문, 트렁크에 아이들 태우고 소풍을?』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차량의 집칸을 개조해 어린이집 아이들을 태웠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서울신문 Boom(붐) · 스포츠서울닷컴 · 온라인 중앙일보 · 엑스포츠뉴스 · 뉴스핌 · 인터넷 SBS CNBC · 폴리뉴스 · 인터넷 MBN · 인터넷 엠티엔(MTN) · 민중의소리 · SSTV · 인터넷 한국일보 · 이투데이 : 각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티브이데일리 · 오마이뉴스 · Gvalley · 아시아경제닷컴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컨슈머타임스 · 조선비즈닷컴 · 인터넷 스포츠한국 ·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 인터넷 스포츠동아 · 세계닷컴 · wow한국경제TV · 인터넷 헤럴드경제 :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 MK뉴스 · TV리포트 · 인터뷰365 · etv : 각 중재결정 (내용 : 정정보도) ※ 이행방법 • 서울신문 Boom(붐)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란 사회섹션에 게시하도록 함 • 스포츠서울닷컴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란 사회섹션에 게시하도록 함 • 티브이데일리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문화/사회 섹션에 게시하도록 함 • 온라인 중앙일보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란 사회섹션에 게시하도록 함 • 오마이뉴스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란 사회 섹션에 게시하도록 함 • 엑스포츠뉴스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전체 섹션에 게시하도록 함

처 리 결 과	• 뉴스핍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란에 게시함 • 인터넷 SBS CNBC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속보란에 게시함 • Gvalley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G뉴스 종합섹션에 게시함 • 아시아경제닷컴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란 사회 섹션에 게시함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 섹션에 게시함 • 폴리뉴스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사회·문화 섹션에 게시함 • 인터넷 MBN : 홈페이지 뉴스란 사회 섹션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 인터넷 엠티엔(MTN)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센터 사회섹션에 게시함 • 컨슈머타임스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 섹션에 게시함 • 민중의소리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섹션 게시함 • MK뉴스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섹션 게시함 • 조선비즈닷컴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섹션에 게시하도록 함 • TV리포트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 종합 섹션에 게시함 • 인터넷365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 섹션에 게시함 • SSTV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전체기사 섹션에 게시함 • etv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 사회 섹션에 게시함 • 인터넷 스포츠한국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라이프 섹션에 게시함 • 인터넷 한국일보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사회 섹션에 게시함 •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이슈 섹션에 게시함 • 인터넷 스포츠동아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이슈 섹션에 게시하도록 함 • 세계닷컴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사회 섹션에 게시함 • wow한국경제TV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한국경제TV 와우스타 홈페이지 사회섹션에 게시함 • 이투데이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홈에 게시함 • 인터넷 헤럴드경제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사회 섹션에 게시함

이 행 결 과

- **서울신문 Boom(붐)** : 『‘집간에 아이들 태운 어린이집’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4일자)
- **스포츠토크** : 『‘어린이집 집간에 보호 장구 없이 아이들!’ ‘충격’』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 **티브이데일리** : 『‘어린이집, 집간에 아이들 탑승시켜 귀가?’ ‘파문’』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5일자)
- **온라인 중앙일보** : 『[정정 및 반론보도] SUV 트렁크 열자 집간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8일자)
- **오마이뉴스** : 『‘차 트렁크에 아이 태우고 소풍’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 **엑스포츠뉴스** : 『‘어린이집, 집간에 아이들 태우고 소풍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9일자)
- **뉴스핌** : 『‘집간에 아이들 태운 어린이집’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9일자)
- **인터넷 SBS CNBC** : 『(정정보도) 어린이집 집간에 아이들 태우고 소풍? ‘파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 **Gvalley** : 『[정정보도문] 어린이집 집간 실어 ‘분통’.. “어린이집이야? 자육의집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일자)
- **아시아경제닷컴** : 『‘[어린이집 집간 파문’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6일자)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어린이집 집간에 아이들 탑승? “안전장비 하나 없이...”』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5일자)
- **폴리뉴스** : 『‘집간에 아이들 태운 어린이집’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 **인터넷 MBN** : 『[정정보도문] 어린이집 차량의 진실!』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8일자)
- **인터넷 엠티엔(MTN)** : 『‘집간에 아이들 태운 어린이집’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2일자)
- **컨슈머타임스** : 『‘집간에 아이들 태운 어린이집’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6일자)
- **민중의소리** : 『“어린이집 집간, 어이없는 장면에 ‘당황’”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3일자)
- **MK뉴스** : 『‘[어린이집 집간 논란, 해당원장 “안전장치 설치했다”]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6일자)
- **조선비즈닷컴** : 『‘어린이집 집간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6일자)
- **TV리포트** : 『‘어린이집 집간 논란’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6일자)
- **인터넷365** : 『‘어린이집 집간 논란’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6일자)
- **SSTV** : 『‘어린이집 집간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 **etv** : 『‘어린이집 집간 논란’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6일자)
- **인터넷 스포츠한국** : 『‘어린이집 집간 논란, 알고보니...’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 **인터넷 한국일보** : 『‘어린이집 집간 파문’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 『‘어린이집 집간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 **인터넷 스포츠동아** : 『‘어린이집 집간, 아이들을 짐짝같이... ‘누리꾼 충격’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 **세계닷컴** : 『‘어린이집 집간 논란... “우리 아이가 짐짝?”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5일자)
- **wow한국경제TV** : 『‘어린이집 집간 파문’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4일자)
- **이투데이** : 『‘어린이집 집간 파문’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9일자)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어린이집 집간 파문’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9일자)

2013서울중재183~186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변○○ 對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쿠키뉴스	
중 재 대 상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법원 “이정희 중복 발언 변○○, 이정희 대표에 1500만원 배상 하라”』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5일자) • 쿠키뉴스 : 『‘변○○ 대표 어떡해’ 진○○·김○○ 등 줄소송 예고』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중복 주사파로 단정지어 표현한 것만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쿠키뉴스 :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뉴스섹션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이 행 결 과	•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 『‘이정희 중복 발언 변○○, 1500만원 배상 판결’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6일자) • 쿠키뉴스 : 『‘변○○ 대표 어떡해’ 진○○ 등 줄소송 예고』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26일자)
2013서울중재187~188 (정정·반론청구) 함○○ 외 7인 對 인터넷 국제경찰신문	
중 재 대 상	『교회를 빼앗으려는 노회』 기사분류: 교계』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0일자)
신청인주장	교회에서 제명출교 처리를 당한 신청인들이 모 목사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뜨렸으며, 이들이 제기한 목사 면직청원 접수에 적법성 논란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홈페이지 ‘교계’ 코너에 48시간 이상 게재함
이 행 결 과	『“교회를 빼앗으려는 노회”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6일자)
2013서울중재189~190 (정정·반론청구) 재단법인 ○○시청소년수련관 對 구리남양주넷	
중 재 대 상	『○○시청소년수련관, 중증장애인에 “XX욕갑하네” 파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인이 주차문제로 항의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수련관의 장애인 홀대가 심각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홈페이지 초기화면 우측상단에 박스기사 형태로 48시간 이상 게재함
이 행 결 과	『“○○시청소년수련관, 중증장애인에 막말”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6일자)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및 지역사무소 안내

서울

- * 주 소 : (100-75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 * 대표전화 : 02) 397-3114
- * 상담전화 : 02) 397-3000, 3010, 3100

- * 홈페이지 : www.pac.or.kr
- * 전자조정중재홈페이지 : people.pac.or.kr
- * 트 위 터 : twitter.com/pac_news
-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pacnews

지 역

■ 중부본부

경기사무소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8층

☎ 031) 211-9027, 9022 / FAX 031) 212-0223

대전사무소

(302-220)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5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빌딩 5층

☎ 042) 525-0778~9 / FAX 042) 525-0768

충북사무소

(361-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4
엔젤 변호사빌딩 404호

☎ 043) 286-8083, 8081 / FAX 043) 286-8084

강원사무소

(200-03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8층

☎ 033) 255-2878~9 / FAX 033) 255-2872

■ 영남본부

부산사무소

(613-832)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 051) 759-7083~4 / FAX 051) 759-7093

대구사무소

(706-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6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빌딩 5층

☎ 053) 763-0020~1 / FAX 053) 763-0242

경남사무소

(642-82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번길 5 보고빌딩 601호

☎ 055) 263-1787, 1780 / FAX 055) 263-1769

■ 호남본부

광주사무소

(503-310)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8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빌딩 5층

☎ 062) 676-0360~1 / FAX 062) 676-0362

전북사무소

(560-04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 063) 288-0010, 0981 / FAX 063) 288-0980

제주사무소

(690-625) 제주도 제주시 남광복5길 6
현곡빌딩 4층

☎ 064) 722-3328, 3352 / FAX 064) 726-3201

2013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2014년 4월 28일 제작

2014년 4월 30일 발행

편저_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연구팀

발행_언론중재위원회

제작_(주)계문사 02) 725-5216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화: 02)397-3114 FAX: 02)397-3089
<http://www.pac.or.kr>